

#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책임연구원 최창욱

공동연구원 황세영 유민상 이민희 김진호



---

연구보고 18-R12

---

#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

**책임연구원** 최창욱(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황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유민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이민희(평택대학교·교수)

김진호(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수)

**연구보조원** 문지혜(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사업운영원)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적·사회적 노력 정도를 진단하여 인권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제3기 아동·청소년 인권 연구의 2차년도 과제이다.

한국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정책적 노력에 대한 기초 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설문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주요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 등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를 확정하고 조사·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인권관련 연구동향과 영국의 제5차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사회적 논의 및 제도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태조사 및 제5·6차 민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로서, 기존 정책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19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아동인권/권리, 청소년인권/권리, 인권지표, 인권실태, 유엔 아동권리협약, 모니터링

## 연구요약

### 1. 연구배경 및 내용

●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의 종합적·체계적 조사와 점검을 통해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 및 수준을 파악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과 조사연구를 수행해왔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연구는 역사적으로 3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제3기 제2차 년도 연구에 해당함.

● 제1기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를 수행하였으며, 제2기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I~IV)’를 수행하였음. 제3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2017~2021)’를 수행하며, 본 연구는 이에 해당함.

● 이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를 개발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며(국가승인통계 제402001호), 주요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인권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함.

●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2017년 제1차 년도 연구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CRC/C/ 58/Rev.3)’에 기초하여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11개)’, ‘시민적 권리와 자유(20개)’, ‘폭력 및

학대(9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13개)',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32개)',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19개)', '특별보호조치(31개)' 등 7개 대분류 영역에 총 135개 지표항목으로 구성함. 이 중에서 행정통계 및 타분야 통계를 통해 생산되는 지표는 83개, 인권실태 설문조사로 결과를 생산하는 지표는 52개임.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첫 번째로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지표체계를 검토하고 확정함. 두 번째로는 국내 연구동향과 외국의 사례를 분석함. 국내 연구동향은 최근 3년간의 연구들을 분석하였고, 외국 사례는 영국의 제5차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사회적 논의 및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관련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세 번째,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8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실시함. 네 번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함. 정책과제는 국가승인통계인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의 결과, 제5·6차 민간보고서의 시사점, 2017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제에 대한 모니터링결과, 아동·청소년 인권상황과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함.

## 2. 연구결과

### [국내 연구동향과 외국사례 분석]

●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논의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3년 간 국내에서 출간된 학술논문과 보고서의 연구 동향을 살펴봄. 2015년~2018년 사이에 발간된 학술논문과 보고서 중에 제목에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0~18세 미만의 대상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와 인권, 권리 등의 주제가 함께 들어가 있는 문헌을 선별하여 총 65건의 문헌을 취합하였고, 각 권리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24건의 문헌을 선별하여 정리함.

● 영국에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제5차 국가보고서 제출과 이후의 사회적 논의, 아동·청소년 인권 제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첫째, 영국은 분권 정부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정도에 차이가 나며, 웨일즈 아동청소년권리조치(2011),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 제정(2014)처럼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법적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영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의견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일치를 강조하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둘째, 영국은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아동위원회, 시민단체, 평등·인권위원회, 의회 등 다양한 주체가 논평과 제안에 참여함으로써 긍정적인 담론을 형성함. 셋째, 영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의견 표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입각하여 권고사항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SDGs와 아동·청소년 인권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함.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은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2 개의 중분류, 5개 지표(소분류), 총 11개의 지표항목으로 구성됨. 인권 인프라와 관련하여 2018년도에 아동수당법 제정, 아동학대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법 개정, 청소년 참여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 기본법 개정 등이 이루어짐.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2.7%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11.8%, 6.6%, 15.6%로 여전히 낮으며, 협약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44.0%로 절반에 이르고 있음.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는 가정(95.2%), 지역사회(90.6%), 학교(90.6%), 사이버 공간(78.4%), 우리나라 전체(77.9%) 순으로 나타났으며,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률은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존중 정도만 낮아졌음. 인권의식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87.5%)과 학생자치조직 의의(82.3%)에 대해 높은 인식을 나타냈으며, 표현의 자유(95.8%), 경제적 이유로 차별금지(97.2%), 양성평등(96.2%), 이주배경 주민의 교육권(93.6%) 등에 대해서도 높은 인식을 보여줌. 인권교육 경험률은 70.2%로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인권교육 경험자의 75.1%가 인권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1년에 1회 이상 행해지는 차별 가해 경험은 외모·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이 13.3%로 가장 많았고, 학업성적(11.9%), 성별(11.7%), 연령(11.3%) 등의 순으로 나타남. 차별 피해 경험은 연령에 따른 차별이 3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별(28.8%), 학업성적(28.5%), 외모 및 신체조건(24.1%) 등의 순으로 나타남. 최근 들어 외모,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과 성차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연령 차별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음.

●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은 의견표명권과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등 5개 중분류의 20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됨. 가정에서의 참여정도는 진로(직업)(94.2%), 상급학교 결정(92.9%), 집안 중대사 결정(91.2%), 공부 시간과 방법 결정(89.5%) 등의 순으로 자녀 의견 존중도가 높게 나타남. 학생회 운영의 자율권 보장 정도는 자치권 보장(31.7%), 학생회 의견존중(36.9%), 학생회 임원 후보 성적 제한 없음(38.0%), 예산-장소-시간 보장(40.3%) 등으로 낮은 수준임.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및 의견표명권은 18.6%로 여전히 낮고,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 반영율은 7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는 2013년 이후 더 늘어나지 않고 각각 189개, 305개로 정체되어 있음.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11.5%로 여전히 낮고, 참여기구 활동 경험률은 2.2%로 큰 변화가 없음. 선거연령 하향화 의견은 35.7%로 전년도의 급격한 상승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하였음.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은 62.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참여의 방해요인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8.7%), 시간 부족(26.0%), 활동정보 부족(20.1%),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11.6%) 순으로 나타남. 학교 종교행사 의무참여율은 67.4%로 전년도(62.7%)보다 다소 하락함. 사회문제 관련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경험(12.2%)은 전년도(17.2%)보다 감소함.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용모 검사(52.5%), 복장 검사(48.7%), 소지품 검사(18.0%) 모두 경험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줄어듦.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교육비 미납자 이름(11.1%), 징계사항(10.4%), 시험성적(20.2%) 공개비율 모두 낮아져 정보 보호 실태는 개선되는 경향을 보임. 인터넷과 스마트 폰이 청소년 생활-문화의 주요영역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사이버공간의 인권이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 학생들에게 학교규칙 공지(88.4%),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책 홍보자료(17.9%),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정보(17.1%), 권리상담 및 구제기관 정보(27.0%) 제공 등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폭력 및 학대」 영역은 2개의 중분류와 4개의 소분류로 구성됨. 중분류 수준은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와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였음. 청소년폭력 경험률 중 정서적 폭력의 경험률은 부모, 교사, 또래 등으로부터의 모욕이나 욕설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으며, 부모로부터는 31.1%, 교사로부터는 18.9%, 또래로부터는 15.1%가 정서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래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피해경험은 6.6%로 나타났고, 따돌림 피해경험은 5.6% 등이었음. 중고등학생의 경험비율이 감소하는 것에 비해 초등학생의 경험 비율은 약간의 증가경향이 나타났음. 또래로부터의 성희롱이나 추행 경험은 4.3%였음. 사이버상에서의 정서적 폭력 피해경험은 16.6%, 성희롱 피해경험은 4.2%, 사생활 공개 피해경험은 5.3% 등이었음. 가정, 학교, 학원에서의 체벌경험률을 보면,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체벌 경험비율은 26%, 교사로부터의 체벌경험비율은 12.2%, 학원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비율은 5.9%였음. 학교와 학원에서의 체벌경험비율은 연도별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가정에서의 체벌경험비율의 감소폭은 크지 않아서 가정 내 체벌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사회적 인식변화와 인프라 확충 등으로 중앙아동보호기관이 접수한 아동학대의 신고건수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종사자의 수는 부족하고, 지역 간 격차도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 아동학대사례를 보면 중복학대 사례가 48.0%로 가장 많고, 정서학대가 19.2%, 방임이 15.6%, 신체학대가 14.5%였음. 성학대는 2.6%로 비율이 낮았지만 주피해자는 연령별로 13-15세, 성별로 여자 청소년이었음. 방임에 대한 자기보호 응답 결과를 보면, 밤늦게까지 부모님 없는 집에 있었던 경험을 한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60.4%로 과반수 이상이 부모의 돌봄 부재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거나 청결하지 않은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8.7%였고, 식사를 못해도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아동청소년은 6%, 자신이 아파도 부모님이 그냥 내버려둔

경험이 있었던 아동청소년은 4.8%, 학교를 결석해도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1.4%였음.

●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은 3개의 중분류와 6개의 소분류로 구성됨. 첫 번째 중분류는 부모의 지도와 책임, 두 번째 중분류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임. 부모의 지도와 책임 영역에서는 가정 내 아동청소년들의 가족과의 생활과 보육·보호 실태를 살펴보았음. 부모와의 대화시간을 보면 주중 1시간 이상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경우는 16.6%, 어머니와 1시간 이상 대화하는 경우는 37.4%였음. 반면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는 아버지 6.2%, 어머니 1.4%였음. 일주일에 부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횟수는 매일 같이 하는 경우가 27%, 주4-6회를 하는 경우가 24%, 주1-3회를 하는 경우가 32.9%였음. 반면 월 1-3회를 하는 경우가 11.6%,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4.5%로 나타났음. 보육시설 이용실태를 보면, 0-2세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 92.3%였고, 3세 이상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률은 66.1%였음.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2013년 4.9명에서 2017년 4.4명으로 감소하였음. 학령기 아동청소년들의 돌봄 상황을 살펴보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중고등학생의 참여는 점차 감소하고 있었음. 방과후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은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았으나 중고등학생은 교과 관련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방과후학교의 만족도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초등학생의 만족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개소수와 이용인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만족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은 2017년에 4,846명이 발생했음. 보호대상아동의 주요 발생원인은 빈곤, 실직, 학대,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으로 전체의 72.1%였음. 미혼자녀 출산은 발생원인의 17.5%로 나타났음.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아동 수 감소로 점차 감소되고 있음. 대안양육 배치 결과를 보면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가정위탁 보호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음. 인구구조변화로 인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절대적인 수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입양아동 수는 입양특례법 개정과 보호대상아동의 감소로 점차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고 있음. 2017년에는 국내입양 아동이 465명, 국외입양 아동이 398명이었음. 대리양육 배치에서 가정위탁보호의 구성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조부모에게 양육 받는 대리양육위탁이 7,950명, 조부모 이외의 친인척에게 양육 받는 친인척 위탁이 3,100명, 그 외의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인 일반가정위탁이 933명으로 일반가정위탁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음. 학교기반 설문조사에서 최근 1년 간 가출해본 청소년은 3.8%였음. 가출경험 비율은 중고등학생들은 감소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은 낮게 유지되고 있었음. 가출이유는 상당수는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이었음. 가출을 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조금씩 확충되고 있지만,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88.1%는 아무런 청소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음.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청소년쉼터를 이용해본 사람은 4.9%에 불과하였음.

●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영역은 중분류 수준에서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특수교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였음. 특수학급에 배치된 장애아동·청소년의 수는 2011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인 반면, 일반학급에 배치하는 장애아동·청소년의 수는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임. 장애청소년의 고졸 이후 진학률과 취업률은 모두 감소한 반면, 무직률은 증가함.

● 아동·청소년의 생존 및 발달과 관련하여 0세의 기대여명은 2016년 현재 82.36세이며, 영아의 사망률은 1,000명당 2.8명임. 연령별 사고사망률은 14세까지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반면 15세부터 급격한 증가 패턴을 보임. 사고사망의 주요 외인은 운수사고였으며, 15세 이후부터는 자살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임. 범죄 피해율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거주지역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

로 긍정적이었음. 아동·청소년의 보건서비스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아토피 피부염과 폐렴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보건교사는 학교 중 64.5%에 배치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보건소 포함 신체·정신건강관련 시설들은 보건진료소, 특수병원 중 결핵과 한센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에서 증가함.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45.7%였음.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과 치과 미치료율은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음.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음. 아동·청소년의 87.1%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였으며, 54.1%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하였음. 70.0%는 아침식사를 하였음. 아동·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17분으로 전년도와 유사하였으며, 과반수 이상(52.4%)은 수면부족을 호소함. 수면부족의 이유는 가정학 습과 학원 및 과외가 가장 높았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조사대상 청소년의 33.8%가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으며, 1/3정도는 우울증관련 경험을 하고 있었음. 스트레스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높아졌으며,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의 17.0%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함. 고민거리의 주된 대화상대는 어머니와 친구였으며, 없다는 응답도 9.0%로 상당히 높았음. 절대아동빈곤율과 상대아동빈곤율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음. 24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수는 전체 수급자의 약 30.6%였으며, 한부모 가구는 2008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임. 드림스타트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역시 현재까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에서 각 세부지표들의 2018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먼저 2016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5세~14세가 97%로 OECD 평균 98%보다 낮았으나, 15~19세가 87%, 20~24세가 50%로 OECD 평균 (15~19세 85%, 20~24세 4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학생들의 학교급별 진학률에 있어서는 2015년 이후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 특히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일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평균 78%에 가까워 세계 최상위에

해당하지만, 직업계고인 특성화고의 진학률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 있어서는 초중등교육과정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과정에서는 OECD 평균보다 많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임.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에서는 전반적으로 인구의 자연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되는 추세라 상황이 좋아지고 있지만 OECD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임. 학업중단율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각급 학교의 학업중단율이 미세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학업중단자 수로 보면 지난 6년 간 누적 계수가 총 325,452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의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학업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교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바람직한 인성, 배려와 공동체 의식, 실용적 지식에 대한 교육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교육의 실태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주목할 만 한 변화는 없으나, 직업교육에 있어서는 유럽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직업계고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에서는 문화예술 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및 이용시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해야 할 청소년수련시설을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57.2%로 나타나 정책적 해결이 필요한 과제로 드러남. 여가문화예술 활동에의 참여율은 취미와 오락 활동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평일 여가활동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는 학생이 16.8%에 해당하고 있고, 학업부담이 많은 고학년 및 일반계고일수록 상대적으로 평일에 여가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평일과 휴일의 전체 여가시간 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시간의 비중이 각각 74.1%와 51.0%로 나타나 상황이 매우 심각함. 청소년 단체 활동과 동아리 활동에의 참가율은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청소년이 86.0%, 동아리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이 75.9%로 조사되

있음. 응답청소년의 73.2%는 부모로부터, 78.3%는 학교로부터 긍정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특별보호조치」영역은 중분류 수준에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소년 사범 아동,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2017년 현재 전체 난민신청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약 4.0%이며, 2013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임.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은 매년 증가함.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은 2014년 대비 소폭 감소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호프로그램 참여율과 관련하여 다문화예비학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무지개청소년센터의 레인보우스쿨 참가자도 매년 증가 추세임.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7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2016년에 총 2,018명이며,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이고, 주요 범죄유형은 강간과 폭력·상해, 절도, 강도 등임. 성폭력범죄와 학대를 받은 아동피해자의 법률적 부조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선 변호사 접수건수와 지정건수, 지정률은 모두 매년 증가함. 소년원의 교육체계는 전년 대비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며, 소년교도소 수용청소년의 처우불복제도 신청건수는 청원과 고소·고발이 가장 많았음.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수는 감소 추세이며, 청소년대상 사회봉사명령 집행자 수 역시 소폭 감소함.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착취와 관련하여 2016년 기준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1.2일, 월평균 근로시간은 177.0시간으로 전년 대비 증가함.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11년 이후 증가 추세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11.0%였으며, 아르바이트 피해경험 중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3.0%, 근로계약서 미작성 67.5%, 폭언 등 인격모독 경험 12.2%, 구타/폭행경험 3.3%, 성적 피해경험 2.91%로 나타남. 2017년 관계

기관 합동점검 결과에서도 22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많았음.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 성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는 2017년 9월 현재 총 1,224명이며, 2009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함. 청소년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76.2%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추세임. 성범죄자의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신상 공개자 역시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 이후 소폭 감소함. 2017년의 성폭력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의 비중은 33.1%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폭력 피해자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전년 대비 크게 변화되지 않았음.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은 30개소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전년 대비 증가함.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200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실적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3. 정책제언

- 정책제언을 위한 정책과제는 국가승인통계인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의 결과, 제5·6차 민간보고서의 시사점, 2017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제에 대한 모니터링결과, 아동·청소년 인권상황과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함.



● 위의 과정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인권 정책과제를 선정함. 선정된 과제는 총 19개 과제이며, 이 중 8개 과제는 2017년도 과제를 보완한 것이며, 11개 과제는 신규로 제시함.

● 인권 하위 영역 클러스터별로는 ①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3과제, ②시민적 권리와 자유 2과제, ③폭력 및 학대 3과제, ④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3과제, ⑤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3과제, ⑥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3과제, ⑦특별 보호조치 2과제 등으로 구성됨.

● 구체적인 과제명은 다음과 같음.

---

---

## 아동·청소년인권 정책과제명

---

---

### I.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과제1.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과제2. 인권교육원 설립 등 범부처 인권증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 조성

과제3. 연령, 성적지향, 인종, 민족 등 청소년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 법적 근거 마련

### II. 시민적 권리와 자유

과제1.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인 시민권 보장

과제2. 아동·청소년의 자유로운 의사표명 및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 III. 폭력 및 학대

과제1. 폭력, 범죄 가해·피해 청소년 관련 회복적 정의 중심의 대응체계 마련

과제2.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조사 시 대응체계 강화

과제3. 아동·청소년 성폭력·성학대·성매매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 IV.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과제1. 입양 및 파양 관련 체계적 DB구축과 사후관리 강화

과제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과제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노력

### V.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과제1.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교육 운영기반 확충

과제2. 청소년상담체계 접근성 제고 및 이용 활성화

과제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

### VI.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1. 지역사회 밀착형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강화

과제2. 지역 간·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학습지원 플랫폼 조성

과제3. 주중 방과 후 등 취약 시간대에 안전하고 편안한 청소년 돌봄·휴식공간 마련

### VII. 특별보호조치

과제1. 난민 및 망명희망 가족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발달·교육권 보장

과제2. 법정 연소자 근로권익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사회적 인식 확산

---

---



한 눈에 보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 2018

##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 유엔아동권리협약

9,052명 응답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있다



이름만 들어봤다



모른다



### 국가인권위원회

9,050명 응답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있다



이름만 들어봤다



모른다



단위 : %



## 차별경험

### 차별 받은 경험

	응답	없다	있다
연령차별	9,042명	68.6	31.4
성차별	9,043명	71.2	28.8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9,045명	71.5	28.5
외모,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9,043명	75.9	24.1

### 차별한 경험

	응답	없다	있다
외모,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9,049명	86.7	13.3
성차별	9,050명	88.3	11.7
연령차별	9,051명	88.7	11.3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9,053명	88.1	11.9

단위 : %



## 청소년 참여의 방해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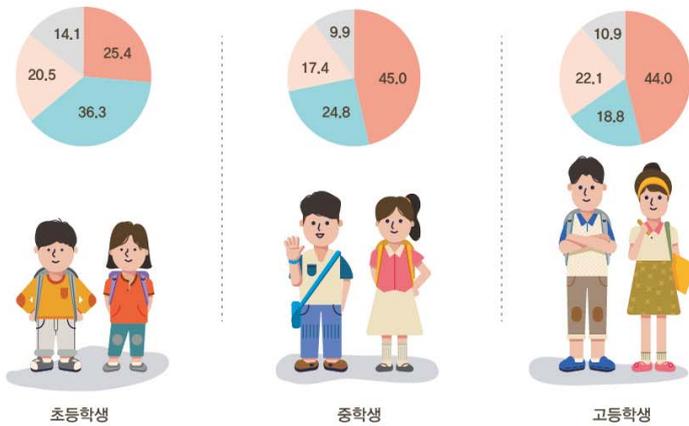
9,024명 응답



## 연령별 응답



단위 :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최근 1년 이내 부모, 교사로부터의 체벌 경험

### 부모님(보호자)에게 받은 신체적 벌



단위 : %

- 일주일에 1-2회이상
- 일년에 1-2회정도
- 기타
- 한번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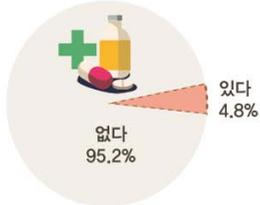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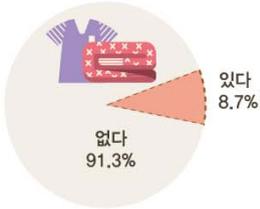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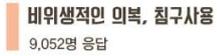
### 학교선생님에게 받은 신체적 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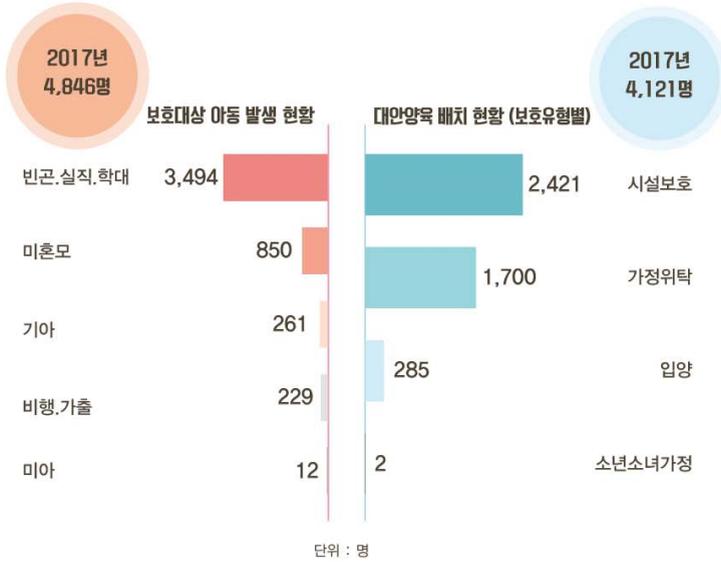
9,044 명 응답



## 방입 경험



## 보호대상 아동 발생 및 대안양육 현황



##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

■ 우리학교 급식은 위생적이다?

9,047명 응답



■ 우리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9,053명 응답



■ 우리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9,046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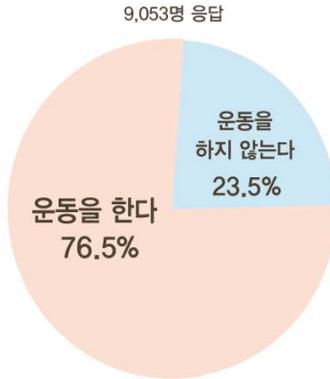


■ 우리동네 가게의 음식물은 안전하다?

9,034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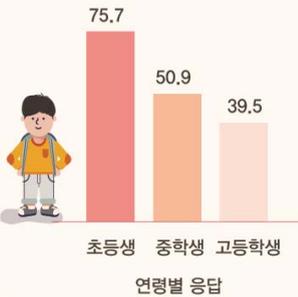
##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실천율



단위 : %

5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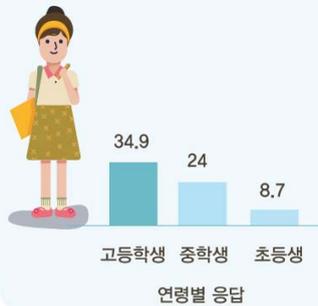
1주일에 1회이상  
운동을 한다



단위 : %

23.5%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



## 평일 여가시간 및 공부시간

### 평일 여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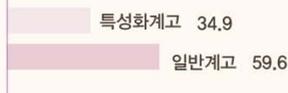
9,049명 응답



평일 하루 평균  
여가시간 2시간 미만



고교유형별 응답



### 공부시간

9,051명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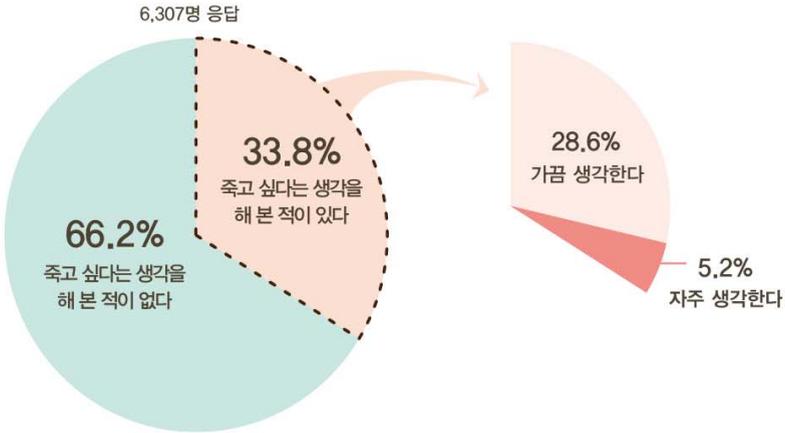
평일 하루 평균  
공부시간 3시간 이상



고교유형별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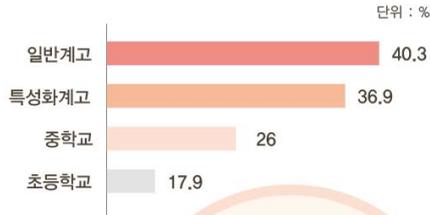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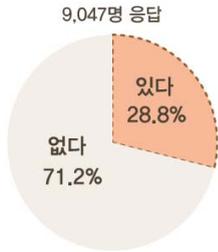
##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정도



## 죽고 싶은 이유



##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다?



###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공부가 하기 싫어서 **28.2%**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18.4%**

성적이 좋지 않아서 **12.9%**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12.2%**

기타 **11.7%**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6.2%**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5.3%**

괴롭힘을 당해서 **4.8%**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0.2%**

#### 공부가 하기 싫어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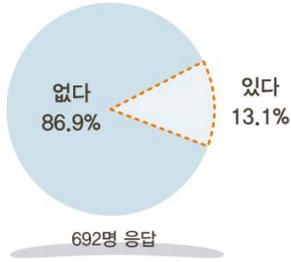
####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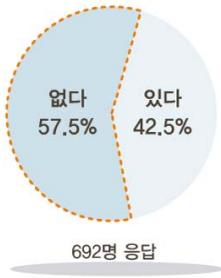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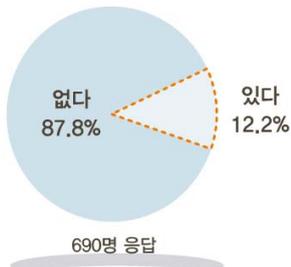
## 근로 시 청소년 부담처우 경험률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적게 받은 경험이 있다



근로계약을 작성해 본 적이 없다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 성적인 피해 경험

###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 성적인 피해 경험이 있다



### 성적인 피해 시 도움을 받은 사람

단위 : %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38.4**

친구 23.1

부모님(보호자) 18.8

선생님 8.5

선·후배 3.5

경찰 2.5

형제·자매 2.4

기타 1.9

전문상담기(상담전화등) 1.0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8-R12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6
1) 연구내용 .....	6
2) 연구방법 .....	10

## II.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지표체계

1.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과 모니터링 .....	15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관련 국제협약과 기구 실태 ·	15
2) 해외사례: 영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협약 이행 점검 현황 .....	18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협약이행 관련 국내외 논의 ·	41
1)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연구 동향 .....	41
3.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 .....	55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지표체계 개요 .....	55

### III. 조사방법

1. 조사목적	71
2. 조사대상	72
1) 모집단	72
2) 응답자 특성	72
3. 조사내용	74
4. 조사방법	77
5. 조사기간	77
6. 무응답 현황	77
7. 모집단 분석	85
8. 표본설계	92
1) 표본크기	92
2) 층화	93
3) 표본배분	98
4) 표본추출	100
5) 성별 사후층화	100
9. 가중치와 모수추정	101
1) 가중치	101
2) 모수추정	102

### IV.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07
1) 인권일반	107
2) 일반원칙	153
3) 소결	158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59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159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88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191
4) 사생활의 보호	193
5) 정보접근권	196
6) 소결	207

3. 폭력 및 학대 .....	209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209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233
3) 소결 .....	252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253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	253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	265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	280
4) 소결 .....	284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287
1) 장애 .....	287
2) 생존 및 발달 .....	291
3) 보건서비스 .....	305
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	321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	387
6) 소결 .....	397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401
1) 교육에의 권리 .....	401
2) 교육의 목표 .....	419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	435
4) 소결 .....	459
7. 특별보호조치 .....	463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	463
2) 소년 사법 아동·청소년 .....	478
3) 경제적 착취 .....	490
4) 성적 착취 .....	513
5) 소결 .....	530

## V. 정책제언

1. 정책제언 개발 과정 .....	537
2. 2018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의 주요 시사점 분석 ·	539
3.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민간보고서 분석 .....	549

4. 전문가 의견조사 및 2017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분석 .....	555
5.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	565

<b>참고문헌 .....</b>	<b>591</b>
-------------------	------------

<b>부    록 .....</b>	<b>611</b>
---------------------	------------

1. 201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산출방법 및 자료원 ..	611
2.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설문지 .....	669
3. 전문가 의견조사지 .....	707

## 표 목차

표 II-1	영국의 제5차 유엔아동권리보고서 제출 이후 주요 경과	19
표 II-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쟁점목록에 대한 스코틀랜드 정부 답변서 주요 내용	24
표 II-3	영국의 제5차 유엔아동권리보고서 관련 주요 논의: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26
표 II-4	영국의 제5차 유엔아동권리보고서 관련 주요 논의: 자유권	28
표 II-5	영국의 제5차 유엔아동권리보고서 관련 주요 논의: 폭력 및 학대	29
표 II-6	영국의 제5차 유엔아동권리보고서 관련 주요 논의: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31
표 II-7	영국의 제5차 유엔아동권리보고서 관련 주요 논의: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32
표 II-8	영국의 제5차 유엔아동권리보고서 관련 주요 논의: 교육, 여가 및 문화	34
표 II-9	영국의 제5차 유엔아동권리보고서 관련 주요 논의: 특별 보호 조치	36
표 II-10	영국의 제5차 유엔아동권리보고서 관련 주요 논의: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38
표 II-11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권리일반)	43
표 II-12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시민적 권리와 자유)	45
표 II-13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폭력 및 학대)	46
표 II-14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8
표 II-15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49

표 II-16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50
표 II-17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특별보호조치) .....	52
표 II-18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그 외의 주제들) .....	54
표 II-19 2006년-2017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변화 (대분류) .....	58
표 II-20 2017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	59
표 II-21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 항목 .....	65
표 III-1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	73
표 III-2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 항목 .....	74
표 III-3 2018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조사 개요 .....	77
표 III-4 단위 무응답 .....	78
표 III-5 항목 무응답 .....	79
표 III-6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	86
표 III-7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 수 .....	87
표 III-8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 수 .....	88
표 III-9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 수 .....	89
표 III-10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 수 .....	90
표 III-11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 수 .....	91
표 III-12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	94
표 III-13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 수 .....	95
표 III-14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 .....	96
표 III-15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 수 .....	97
표 III-16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 수 .....	98
표 IV-1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 (2013~2018) .....	113
표 IV-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	114
표 IV-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 .....	117
표 IV-4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 .....	119
표 IV-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 .....	122
표 IV-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 .....	124
표 IV-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	126

표 IV-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우리나라 전체 .....	128
표 IV-9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	130
표 IV-10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	132
표 IV-11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	134
표 IV-12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136
표 IV-13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	138
표 IV-14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	140
표 IV-15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	142
표 IV-16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	144
표 IV-1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 .....	146
표 IV-18 인권교육 경험 여부 .....	147
표 IV-19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 (복수응답) .....	149
표 IV-20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	151
표 IV-21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_전체 .....	153
표 IV-22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 .....	159
표 IV-23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161
표 IV-24 학급회의 운영 여부 .....	163
표 IV-25 학급회의 참여정도(자유로운 의견 제시 가능여부) .....	165
표 IV-26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	168
표 IV-27 학교규칙 및 규정 제·개정 시 학생의견 반영 .....	170
표 IV-28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	172
표 IV-29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2008~2017) .....	174

표 IV-30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7) .....	175
표 IV-31 아동총회 개최현황 .....	176
표 IV-32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	177
표 IV-33 투표 연령에 대한 의견 .....	180
표 IV-34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참여 권리보장 수준 .....	183
표 IV-35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	185
표 IV-36 사상의 자유 보장 .....	188
표 IV-37 종교의 자유 보장 .....	190
표 IV-38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 .....	191
표 IV-39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 .....	193
표 IV-40 개인의 정보 보호 .....	195
표 IV-41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 .....	197
표 IV-42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	198
표 IV-43 인터넷 이용 목적 .....	199
표 IV-44 주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	200
표 IV-45 스마트폰에서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종류 .....	200
표 IV-46 성인용 영상물 이용경험 .....	201
표 IV-47 성인용 간행물 이용경험 .....	202
표 IV-48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 .....	202
표 IV-49 학생 1인당 장서 수 .....	203
표 IV-50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	203
표 IV-5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	204
표 IV-52 인권 관련 정보제공 .....	206
표 IV-53 욕설 경험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	210
표 IV-54 욕설 경험_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	212
표 IV-55 욕설 경험_친구, 선·후배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	214
표 IV-56 욕설 경험_사이버 공간에서의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욕설이나 모욕 .....	216
표 IV-57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폭행이나 구타 .....	217
표 IV-58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따돌림 .....	219
표 IV-59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 .....	221
표 IV-60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성희롱(놀림) .....	223
표 IV-61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사생활이 알려짐 .....	225

표 IV-6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따돌림 .....	226
표 IV-63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 .....	229
표 IV-64	체벌 경험여부_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	230
표 IV-65	체벌 경험여부_학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	232
표 IV-66	2016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	234
표 IV-67	아동학대 사례접수 경로 .....	235
표 IV-6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236
표 IV-69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	237
표 IV-70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	237
표 IV-71	방임_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	239
표 IV-72	방임_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거나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	241
표 IV-73	방임_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	243
표 IV-74	방임_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 .....	245
표 IV-75	방임_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	247
표 IV-76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249
표 IV-77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	251
표 IV-78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	252
표 IV-79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2004년-2017년) .....	257
표 IV-80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4년-2017년) .....	258
표 IV-81	어린이집 1개소 당 아동 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2014년-2017년) .....	260
표 IV-82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2010년-2017년) .....	261
표 IV-8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0년-2017년) .....	263
표 IV-8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 (2005년-2017년) .....	264
표 IV-8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 .....	264
표 IV-86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2007년-2017년) .....	266
표 IV-87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07년-2017년) .....	267
표 IV-88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	269
표 IV-89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 .....	272
표 IV-90	가출을 한 주된 이유 .....	274

표 V-91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2008-2017년) ……	276
표 V-92 가출 후 이용한 기관 ……	277
표 V-93 가출 후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	279
표 V-94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2016년도 평가지표 대비 2019년도 평가지표) ……	280
표 V-95 보호·양육시설 예산(2012년-2018년) ……	284
표 V-96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	288
표 V-97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	289
표 V-98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	290
표 V-99 0세의 기대여명 ……	291
표 V-100 연도별 영아사망률 ……	292
표 V-101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	293
표 V-102 사고 사망률 ……	294
표 V-103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 ……	294
표 V-104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 ……	297
표 V-105 학교급식의 위생도 ……	298
표 V-106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	300
표 V-107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	302
표 V-108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	304
표 V-109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	306
표 V-110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 ……	308
표 V-111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 ……	310
표 V-112 2017년도 보건교사 배치현황 ……	312
표 V-113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 추세 ……	312
표 V-114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	313
표 V-115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	314
표 V-116 아동·청소년 연간 병원원 미치료율 ……	315
표 V-117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	316
표 V-118 흡연율 추이 ……	317
표 V-119 음주율 추이 ……	318
표 V-120 평생 약물 경험률 ……	319
표 V-121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	320

표 V-122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321
표 V-123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322
표 V-124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324
표 V-125	아침식사 여부	326
표 V-126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328
표 V-127	수면 시간	330
표 V-128	수면 부족 여부	331
표 V-129	수면 부족 이유(1순위)	334
표 V-130	수면 부족 이유(1+2+3순위)	335
표 V-131	2010~2016년도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	338
표 V-132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340
표 V-133	죽고 싶은 이유	342
표 V-134	우울증_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345
표 V-135	우울증_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347
표 V-136	우울증_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349
표 V-137	스트레스 인지율	351
표 V-138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학업문제	352
표 V-139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가정 불화	354
표 V-140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또래와의 관계	356
표 V-141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경제적인 어려움	358
표 V-142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외모·신체조건	360
표 V-143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365
표 V-144	현재 행복 정도	364
표 V-145	행복하지 않은 이유	366
표 V-146	삶의 만족도	370
표 V-147	삶의 만족도(한국과 WHO의 HBSC 연구결과의 비교)	372
표 V-147-1.	삶의 만족도(학생삶의만족도 척도)	374
표 V-148	자아존중감_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376
표 V-149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378
표 V-150	자아존중감_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380
표 V-152	자아존중감_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382
표 V-153	고민거리 대화 상대	385
표 V-154	아동빈곤율	387

표 V-15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4세 미만) .....	392
표 V-156	한부모가구 비율 .....	393
표 V-157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 .....	394
표 V-158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	396
표 V-159	디딤씨앗통장 저축 현황 .....	397
표 V-160	각급 학교의 연도별 취학을 추이(2011~2017) .....	403
표 V-161	교육단계별 연도별 진학을 추이(2011~2017) .....	404
표 V-162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	406
표 V-163	교원 1인당 학생 수(2011~2017) .....	407
표 V-164	학급당 학생 수(2011~2017) .....	408
표 V-165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12~2017) .....	410
표 V-166	자퇴 총동 여부 .....	411
표 V-167	자퇴 총동 이유(1순위) .....	412
표 V-168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	414
표 V-169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	416
표 V-170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	417
표 V-171	학교에 대한 생각_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	420
표 V-172	학교에 대한 생각_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	421
표 V-173	학교에 대한 생각_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	422
표 V-174	학교에 대한 생각_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	424
표 V-175	공립·사립 대안학교(각종학교) 39개교 현황 .....	426
표 V-176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	428
표 V-177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현황 .....	430
표 V-178	마이스터고·특성화고·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비교 .....	432
표 V-17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및 참여기업 지원내용 .....	433
표 V-180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	435
표 V-18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436
표 V-182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437
표 V-183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공공도서관 .....	438
표 V-184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청소년시설 .....	440
표 V-185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체육시설 .....	441

표 N-186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문화 예술 공간	443
표 N-187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 - 상위 10개	445
표 N-188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446
표 N-189	여가활동 동반자 1순위	446
표 N-190	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447
표 N-191	동아리활동 여부	449
표 N-192	평일 여가시간	450
표 N-193	평일 공부 시간	452
표 N-194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	454
표 N-195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가정	456
표 N-196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학교	457
표 N-197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465
표 N-198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466
표 N-199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467
표 N-200	차별받은 경험: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468
표 N-201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469
표 N-202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470
표 N-203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최근 6년)	470
표 N-204	2015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상태	471
표 N-205	탈북학생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472
표 N-206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	472
표 N-2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	473
표 N-208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	474
표 N-209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	476
표 N-210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정서 상담건수	477
표 N-211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 수용기간	479
표 N-21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480
표 N-213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	481
표 N-214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	484
표 N-215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485
표 N-216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486
표 N-217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487
표 N-218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488
표 N-219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489

표 IV-220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	490
표 IV-221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	493
표 IV-222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	495
표 IV-22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1)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	497
표 IV-224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2)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일을 하였다 .....	499
표 IV-225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 .....	500
표 IV-22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	502
표 IV-227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	503
표 IV-22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	505
표 IV-22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	506
표 IV-23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	508
표 IV-231 청소년 고용사업장 법령위반 내역 및 건수 .....	510
표 IV-23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9)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	512
표 IV-233 청소년 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	513
표 IV-234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 수 .....	514
표 IV-235 연간 성교육 경험률 .....	514
표 IV-236 신상공개 성범죄자수 .....	515
표 IV-237 지역별 신상공개 성범죄자 .....	516
표 IV-238 연령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	517
표 IV-239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	519
표 IV-240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	521
표 IV-241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	523
표 IV-242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변화 .....	524
표 IV-24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525
표 IV-24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현황 (2013-2017) ..	526
표 IV-245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	527
표 IV-246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 .....	528
표 IV-247 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	529

표 V-1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 .....	556
표 V-2 2017년도 제안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	558
표 V-3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의 방해 요인 관련 전문가 응답 결과 .....	560
표 V-4 지난 10년 간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개선 또는 미개선 이유 .....	563
표 V-5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전문가 종합 의견 (클러스터별 요약) .....	563
표 V-6 아동·청소년인권 정책과제 .....	565
표 V-7 아동·청소년인권 정책과제별 추진일정과 주관부처(안) .....	567

## 그림 목차

그림 I-1 제3기 연구의 연도별 추진계획(안) .....	8
그림 IV-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	
1) 유엔아동권리협약(연도별 추이) .....	116
그림 IV-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	
2) 학생인권조례(연도별 추이) .....	118
그림 IV-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	
3) 국가인권위원회(연도별 추이) .....	120
그림 IV-4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	121
그림 IV-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연도별 추이) .....	123
그림 IV-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연도별 추이) .....	125
그림 IV-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연도별 추이) .....	127
그림 IV-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우리나라 전체(연도별 추이) ..	129
그림 IV-9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연도별 추이) .....	131
그림 IV-10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1)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연도별 추이) .....	133
그림 IV-11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2) 청소년도 사회문제가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연도별 추이) .....	135
그림 IV-12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3)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연도별 추이) .....	137
그림 IV-13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4) 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연도별 추이) .....	139

그림 IV-14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연도별 추이) .....	141
그림 IV-15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6)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	143
그림 IV-16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7)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	145
그림 IV-17 인권교육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	148
그림 IV-18 인권교육 경험 장소(연도별 추이) .....	150
그림 IV-19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연도별 추이) .....	152
그림 IV-20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1년에 1-2회 정도) .....	154
그림 IV-21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2-3개월에 1-2회 정도) .....	154
그림 IV-22 차별경험(연도별 추이) .....	155
그림 IV-23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의견존중 정도) (연도별 추이) .....	161
그림 IV-24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연도별 추이) .....	163
그림 IV-25 학급회의 운영여부(연도별 추이) .....	165
그림 IV-26 학급회의 참여정도(연도별 추이) .....	167
그림 IV-27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연도별 추이) .....	169
그림 IV-28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연도별 추이) .....	171
그림 IV-29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08~2017) .....	174
그림 IV-30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연도별 추이) .....	178
그림 IV-31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 전체 응답(연도별 추이) .....	179
그림 IV-32 투표 연령에 대한 의견(연도별 추이) .....	181
그림 IV-33 투표 연령에 대한 의견(연도별 추이) .....	182
그림 IV-34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참여 권리보장 수준 (연도별 추이) .....	184
그림 IV-35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연도별 추이) ..	187
그림 IV-36 사상의 자유 보장(연도별 추이) .....	189
그림 IV-37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연도별 추이) .....	190
그림 IV-38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연도별 추이) .....	191
그림 IV-39 용모, 복장, 소지품검사 경험 .....	192
그림 IV-40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연도별 추이) ..	194
그림 IV-41 개인의 정보 보호(연도별 추이) .....	196

그림 IV-42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5)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연도별 추이) .....	205
그림 IV-43 인권 관련 정보제공(연도별 추이) .....	206
그림 IV-44 욕설 경험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연도별 추이) .....	211
그림 IV-45 욕설 경험_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연도별 추이) .....	213
그림 IV-46 욕설 경험_친구, 선·후배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연도별 추이) .....	215
그림 IV-47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폭행이나 구타 (연도별 추이) .....	218
그림 IV-48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따돌림 (연도별 추이) .....	220
그림 IV-49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 (연도별 추이) .....	222
그림 IV-50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성희롱(놀림) (연도별 추이) .....	224
그림 IV-51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사생활이 알려짐 .....	226
그림 IV-5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따돌림 (연도별 추이) .....	227
그림 IV-53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 (연도별 추이) .....	229
그림 IV-54 체벌 경험여부_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연도별 추이) .....	231
그림 IV-55 체벌 경험여부_학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연도별 추이) .....	233
그림 IV-56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	234
그림 IV-57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	236
그림 IV-58 피해아동 연령과 아동학대사례 유형 .....	238
그림 IV-59 방임_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연도별 추이) .....	240
그림 IV-60 방임_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거나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연도별 추이) .....	242
그림 IV-61 방임_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연도별 추이) .....	244

그림 IV-62 방임_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 .....	246
그림 IV-63 방임_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	248
그림 IV-64 아동학대 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연도별 추이) .....	249
그림 IV-64-1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	250
그림 IV-65 부모님과과의 주중 대화시간(연령별 구분) .....	254
그림 IV-66 부모님과과의 주중 저녁식사 횟수(연도별 비교) .....	255
그림 IV-67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연도별 비교) .....	259
그림 IV-68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연도별 비교) .....	263
그림 IV-69 방과후학교 교급별 서비스 만족도 .....	266
그림 IV-70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2007년-2017년) ·	266
그림 IV-71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07년-2017년) .....	268
그림 IV-72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 .....	270
그림 IV-73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 .....	271
그림 IV-74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 .....	273
그림 IV-75 가출을 한 주된 이유(연도별 비교) .....	275
그림 IV-76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추이 .....	276
그림 IV-77 가출 후 이용한 기관(연도별 추이) .....	278
그림 IV-78 가출 후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	279
그림 IV-79 학교급식의 위생도(연도별 추이) .....	299
그림 IV-80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연도별 추이) .....	301
그림 IV-81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연도별 추이) .....	303
그림 IV-8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연도별 추이) .....	305
그림 IV-83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연도별 추이) .....	323
그림 IV-84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실천율(성별) .....	325
그림 IV-85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연도별 추이) .....	325
그림 IV-86 아침식사 여부(연도별 추이) .....	327
그림 IV-87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연도별 추이) .....	329
그림 IV-88 수면 시간(연도별 추이) .....	331
그림 IV-89 수면 부족 여부(연도별 추이) .....	332
그림 IV-90 수면 부족 이유(1순위 기준) .....	333
그림 IV-91 수면이 부족한 이유(1+2+3순위)(연도별 추이) .....	336

그림 IV-92 2008-2017년 비만도 현황 .....	338
그림 IV-93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연도별 추이) .....	341
그림 IV-94 죽고 싶은 이유(학교급별) .....	342
그림 IV-95 죽고 싶은 이유(연도별 추이) .....	343
그림 IV-96 우울정도 항목별 비교표 .....	344
그림 IV-97 우울증_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	346
그림 IV-98 우울증_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	348
그림 IV-99 우울증_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연도별 추이) .....	350
그림 IV-100 원인별 스트레스 정도 .....	351
그림 IV-101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학업문제(연도별 추이) .....	353
그림 IV-102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가정 불화(연도별 추이) .....	355
그림 IV-103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또래와의 관계(연도별 추이) ...	357
그림 IV-104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경제적인 어려움(연도별 추이)	359
그림 IV-105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외모·신체조건(연도별 추이) ...	361
그림 IV-106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연도별 추이) .....	363
그림 IV-107 현재 행복 정도(연도별 추이) .....	365
그림 IV-108 행복하지 않은 이유(연도별 추이) .....	367
그림 IV-109 삶의 만족도 평균(연도별 추이) .....	369
그림 IV-110 삶의 만족도 응답 구성(연도별 추이) .....	371
그림 IV-111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15세 청소년 기준) .....	373
그림 IV-112 자아존중감 항목별 비교 .....	375
그림 IV-113 자아존중감_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	377
그림 IV-114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	379
그림 IV-115 자아존중감_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연도별 추이) .....	381
그림 IV-116 자아존중감_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연도별 추이) .....	383
그림 IV-117 고민거리 대화 상대(연도별 추이) .....	386
그림 IV-118 0세~17세 아동빈곤율 OECD 국제비교 .....	389
그림 IV-119 OECD 국가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 (2011, 2013) .....	390

그림 IV-120	자퇴 충동 여부(연도별 추이) .....	411
그림 IV-121	자퇴 충동 이유(1순위) (연도별 추이) .....	413
그림 IV-122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연도별 추이) .....	415
그림 IV-123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연도별 추이) .....	416
그림 IV-124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연도별 추이) .....	418
그림 IV-125	학교에 대한 생각_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연도별 추이) .....	420
그림 IV-126	학교에 대한 생각_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연도별 추이) .....	421
그림 IV-127	학교에 대한 생각_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연도별 추이) .....	423
그림 IV-128	학교에 대한 생각_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연도별 추이) .....	424
그림 IV-129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공공도서관(연도별 추이) .....	439
그림 IV-130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청소년시설(연도별 추이) .....	441
그림 IV-131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체육시설(연도별 추이) .....	442
그림 IV-132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문화 예술 공간 (연도별 추이) .....	443
그림 IV-133	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연도별 추이) .....	448
그림 IV-134	동아리활동 여부(연도별 추이) .....	449
그림 IV-135	평일 여가시간(연도별 추이) .....	451
그림 IV-136	평일 공부 시간(연도별 추이) .....	453
그림 IV-137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연도별 추이) .....	455
그림 IV-138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가정(연도별 추이) .....	456
그림 IV-139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학교(연도별 추이) .....	458
그림 IV-140	소년원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절차 .....	483
그림 IV-141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492
그림 IV-142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 (2010/2015) .....	494
그림 IV-143	아르바이트시 청소년의 주요 부당처우 경험률 .....	496
그림 IV-144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1)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연도별 추이) .....	498

그림 IV-145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2)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일을 하였다(연도별 추이) ..	499
그림 IV-14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연도별 추이) .....	501
그림 IV-147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연도별 추이) .....	502
그림 IV-14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연도별 추이) .....	504
그림 IV-14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연도별 추이) .....	505
그림 IV-15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연도별 추이) .....	507
그림 IV-15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연도별 추이) .....	508
그림 IV-15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성적 피해를 경험했다 (연도별 추이) .....	512
그림 IV-153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	520
그림 IV-154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연도별 추이) .....	522
그림 V-1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도출 과정 .....	538
그림 V-2 2017년도 제안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중요도 순) .....	559
그림 V-3 우리나라의 현재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	561
그림 V-4 지난 10년 간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	562

#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유엔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 협약은 이듬해인 1990년 9월 2일에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한국은 협약이 발효된 다음해인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 되었다. 한국정부는 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인권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5년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과 청소년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담은 협약으로 전문과 7대 영역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대 영역은 ①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② 시민적 권리와 자유, ③ 폭력 및 학대, ④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⑤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⑥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⑦ 특별보호조치 등이다. 각 영역별로 세부 조항들이 편재되어 있다.

한국정부는 1994년 11월에 제1차, 2000년 5월에 제2차, 2008년 12월(유엔

1) 이 장은 최창욱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다.

접수 2009. 5)에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10월 제58차 회기에서 한국의 제3·4차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88개 항목으로 구성된 권고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진전시키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다각적 노력이 추진되어 왔다(김영지 외 2017:3). 2017년에는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담은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이행사항에 대한 심의가 진행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아동·청소년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과도한 학업부담과 각종 위험요인으로 인해 삶의 질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한국정부의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강화, 아동·청소년 분야 재원확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의 체계적 파악, 인권교육 강화 및 협약 인지도 개선 등을 비롯하여 차별금지, 아동 최선의 이익 보장, 아동견해의 존중 등 88개 항목의 최종 권고문을 발표하였다.

특히,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증거기반 인권정책 수립의 기본전제가 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인권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인권 통계 수집 체계와 인권 지표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권고: 1차 1996년, 2차 2003년, 3-4차 2011년 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과 조사연구를 수행해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권연구를 역사적으로는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가 수행되었다. 제2기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로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연구(I~IV)’가 수행되었으며, 제3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로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2021)’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제3기 연구에 해당한다.

이 연구는 제3기 2차 년도 연구로 종합적·체계적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와 점검을 통해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 현황 및 진전 수준을 파악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을 수행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지표체계를 검토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과 모니터링 현황을 검토하였고,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협약이행 관련 국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를 확정하였다.

둘째, 국내 연구동향과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특히, 영국<sup>2)</sup>의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관련 제도 현황과 영국의 제5차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사회적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 이행 수준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셋째,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2018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인권지표별 변화상황을 분석하였다. 특히 제3기 1차 년도 연구인 2017년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18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조사도구는 최소한의 수정(1개 문항 통계청 승인 하에 수정)을 통해

---

2) 당초 2017~2021년의 중장기 계획 속에는 외국사례분석 부분이 없었으나, 협약이행 관련 논의에서 외국의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의 사회적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이행수준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외부 심의위원, 연구진의 협의를 거쳐 2018년도에는 영국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영국의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측면도 고려되었다. 향후에는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국가를 유럽-아시아-아메리카 등의 순서로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계청 승인통계(승인번호 402001)로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넷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과제는 국가승인통계인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의 결과, 제5·6차 민간보고서의 시사점, 2017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제에 대한 모니터링결과, 아동·청소년 인권상황과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1) 연구내용

2017년부터 중장기 연구로 수행된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의 연도별 추진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추진과정은 5개년 계획이며 2017년 1차 년도 연구 진행과정에서 확정하였다.

연도	주요 내용	특별과업(안)
1차년도 (201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권리협약 이행 연구를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연구 추진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협약 모니터링 체계 마련: 주무부처와의 협업 시스템 구축</li> <li>- ② 연도별 예상 주요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에 따른 특별과업(안) 마련</li> </ul> </li> <li>○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li> <li>-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li> <li>- ③ 심화분석 : 특정 인권주제 심층분석</li> </ul> </li> <li>※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6차 CRC 국가보고서 유엔 제출 (2017. 6. 19)</li> <li>- 제4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국제규약 심의(9월)</li> <li>- 제3기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보고서 제출(8월), 심의(11월)</li> <li>-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7~2021)</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제5·6차 국가보고서 작성 지원 [협약 작업집단 및 주무부처 협업]</p>

	<p>추진 : 아동·청소년분야</p> <p>- 제3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실시(여성가족부, 3년 주기)</p>	
	↓	
2차년도 (2018년)	<p>○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분석</p> <p>-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p> <p>-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p> <p>- ③ 해외 사례 분석(영국)</p> <p>※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p> <p>- 제5·6차 CRC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10월~)</p> <p>- 제8차 여성차별철폐협약 국가보고서 심의(2018.2): 여성 아동 이슈</p> <p>- 제3차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보건복지부, 5년 주기)</p> <p>-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수립·시행</p>	제5·6차 민간 보고서 분석
	↓	
3차년도 (2019년)	<p>○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분석</p> <p>-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p> <p>-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p> <p>- ③ 해외 사례 분석</p> <p>※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p> <p>- 제5·6차 CRC 국가보고서 추가자료 제출 및 유엔 본심의(예상)</p> <p>- 제2·3차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장애아동 이슈</p> <p>-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제출</p> <p>-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종료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p> <p>- 아동정책영향평가(아동복지법 11조의2) 시행 예정</p>	제5·6차 국가보고서 쟁점목록 (List of issues) 추가보고서 작업 지원 [주무부처 협업]
	↓	
4차년도 (2020년)	<p>○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분석</p> <p>-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p> <p>-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p> <p>- ③ 해외 사례 분석</p> <p>※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p> <p>-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결과 최종건해 국내 확산</p> <p>-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 수립·시행</p>	협약 이행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권고사항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 및 담당부서 설정 [주무부처 협업]
	↓	

5차년도 (20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 분석</li> <li>- ①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실태결과 생산</li> <li>- ② 협약이행 관련 법, 제도, 정책 개선 현황 모니터링</li> <li>- ③ 해외 사례 분석</li> </ul>	5개년 연구성과 종합분석 및 2022년부터의 5개년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환경</li> <li>-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평가 및 제4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22~2026) 수립: 아동· 청소년 분야</li> <li>- 제4기 국가별정례인권검토(UPR): 2021~</li> </ul>	

\* 출처: 김영지 외(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행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pp. 5-6.(일부 수정보완함)

### 그림 1-1 제3기 연구의 연도별 추진계획(안)

2018년도 2차 연구에서는 외국사례 연구, 민간보고서 검토, 2017년도 제안 정책과제 모니터링 및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1)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점검체계 보완 및 2018년도 인권실태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인권지표를 개발하고 전국 단위 조사를 수행하여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을 점검하여 왔다. 이 시기들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위한 계획 작성 내용에 따라 크게 2006~2010년 1기 체제, 2011~2016년 2기 체제, 2017~2021년 3기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2018년 연구는 제3기 체제의 제2차 년도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이에 2018년 연구는 2017년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의 수정을 최소화하여 통계청 승인통계(승인번호 402001)로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 (2)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분석 : 민간보고서 분석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모든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제적 약속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모든 영역의 인권 개선을 위해 법·제도·정책적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정도를 국가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2018년은 정부가 2017년에 유엔에 제출한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와 2018년에 민간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통합적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검토하는 해이다.

즉, 2018년에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국제아동인권센터 등 30여개 아동·청소년 관련 NGO들이 공동으로 민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민간보고서의 구성 대부분은 국가보고서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연구진은 민간보고서 작성 주체들과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민간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민간보고서 주요 내용 분석 결과들 중 주요 사항들은 본 연구의 정책과제에 반영하여 제시하였다.

## (3) 국내 연구동향과 외국사례 분석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협약 이행 관련 국내외 논의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연구동향과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 논의동향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과 관련된 최근 연구동향(2015~2018)을 분석하였다. 2015년~2018년 사이에 발간된 학술논문과 보고서 중에 제목에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0~18세 미만의 대상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와 인권, 권리 등의 주제어가 함께 들어가 있는 문헌을 선별하였다. 이를 통해 총 65건의 문헌을 취합하였고, 각 권리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24건의 문헌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외국사례는 기존 연구계획에는 없었지만 자문회의를 통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2018년 연구부터 시작하였다. 외국의 사례에서는 영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

터링 관련 제도 현황과 영국의 제5차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사회적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인권 이행 수준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실행계획서 발표에서 자문위원들의 제언으로 대륙별 외국 사례에 대한 접근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먼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였다. 국가는 영어사용국으로서 자료 접근이 용이하고, 2014년 5차 국가보고서 제출 경험이 있는 영국으로 선정하였다.

#### (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본 연구에서는 국가승인통계인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시사점, 제 5·6차 민간보고서의 검토 결과, 2017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아동·청소년 인권상황과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 2)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설문조사, 정책과제 모니터링 및 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개최하였다.

### (1) 문헌연구

국내·외 아동·청소년의 인권 모니터링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이행 수준 모니터링과 관련한 문헌연구를 위해 선행연구 자료와 유엔 및 국내외 아동·청소년 인권보고서와 관련 문헌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외국사례로는 영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관련 제도 현황과 제 5차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사회적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인권 이행 수준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2) 설문조사

조사대상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며 표본수는 2017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해 9,060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 (3) 정책과제 모니터링 및 전문가 의견조사

2017년 제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14개의 정책과제의 이행 수준과 중요도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아울러 이 조사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이 결과들은 2018년도 정책과제 개발에 활용하였다.

## (4)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연구의 정책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실행계획서 및 중간보고서의 검토, 인권 지표체계 검토, 인권이슈별 정책 현황 진단 및 개선 방안 도출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정부부처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정부부처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4개 부처가 중요하게 분류된다. 4개 부처 공무원들과 수차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정책과제의 개발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 ————— 제2장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협약 이행과 인권지표체계

- 1.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  
협약과 모니터링
-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협약이행 관련 국내외 논의
- 3.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



## 1.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과 모니터링

###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기구 실태

아동권리협약에서는 각 국의 아동권리 실태 파악 및 협약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공적기관에 의한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있다. 공적기관에 의한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아동권리협약 이행점검을 위해서 별도의 상설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비슷한 시기에 수행된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연구(한국아동단체협의회·한국아동권리학회, 2004), 중장기 아동정책 연구(이봉주 외, 2006) 등에서도 아동권리모니터링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를 공통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김승권 외, 2007: 92-93에서 재인용). 이에 2006년부터 보건복지부의 민간위탁 형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였다.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의 주요 기능은 1)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수집, 2) 아동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 이행사항에 대한 감시, 3) 법, 정책, 서비스 등에 대한 개선 촉구, 4) 아동권리 관련연구의 수행, 5) 아동권리 홍보 등으로 이루어졌다(김승권 외, 2007: 174). 특히, 아동권리 침해사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옴부즈퍼슨’ 활동을 지원하였다.

3) 이 장은 황세영 부연구위원과 유민상 부연구위원이 집필하였다. 황세영 부연구위원은 1절(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국제협약과 모니터링)을, 유민상 부연구위원은 2절(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협약이행 관련 국내 논의), 3절(2018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을 집필하였다.

이러한 활동성과는 유엔아동특별총회 이행성과보고서와 유엔인권이사회 제출 국가보고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3·4차 국가보고서 등에 반영되었으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동권리 실태 및 협약 이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1) 센터가 법적 지위를 갖추지 않았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책정 받는다는 점, 2)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이 적극적으로 아동권리위반을 감시 및 조사하고 진정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없다는 점, 3) 센터의 임부권한이 한국 정부의 연간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센터의 독립성과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충분한 독립적인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보건복지부·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1: 470). 이와 같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논란은 이재연 외(2009) 및 김형욱(2011)의 연구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 되어왔다.

하지만 센터의 독립적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이 단시간 내에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보건복지부는 센터의 위탁운영기관 선정 방식을 공개경쟁으로 전환하였고 2012년부터는 민간단체인 굿네이버스를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였다. 굿네이버스는 옴부즈퍼슨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의 강화 및 체계화를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 NPO 및 민간단체의 협조로 전국 단위의 옴부즈퍼슨 활동 확대를 피하여 전국 7개, 지역 8개 조직을 구성하였다(김경준 외, 2014b: 31). 이후 2015년부터는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 예산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되었고, 현재 정부 내 상설 협약 모니터링 기구는 부재한 상황이다(김영지 외, 2017: 4). 그 결과 2017년 5·6차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준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수탁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이후 정부 차원의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모니터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및 2012년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통해 공적기관에 의한 모니터링과 별개로 아동권리 실태의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전담 소위원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다. 이후 201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인권 전담부서로 ‘아동·청소년인권팀’이 신설되고, 2016년에는 아동권리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2017년에는 아동·청소년인권팀이 ‘아동·청소년인권과’로 확대되는 등, 인권위 내 아동권리 전문성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영지 외, 2017: 73).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책 개선 권고, 아동인권 침해 사례 관련 조사와 구제, 아동인권 관련 연구 및 실태, 아동·청소년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아동권리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f). 2017년에는 교사의 폭언, 학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미흡, 아동 대상 총기 체험행사에 관한 의견표명, 상업시설 이용 시 나이 제한 등, 총 8건의 아동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제시하였다<sup>4)</sup>.

이러한 제도적 모색과 함께 아동옴부즈맨 제도와 같은 아동·청소년의 참여에 의한 모니터링 강화 방안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희진·김현신(2011)의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활동과 권리 모니터링 활동의 연계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김영지 외(2013)의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인권모니터링 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제안하였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의 개정 및 새로운 법안 입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ibid: 413).

또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요건에 옴부즈퍼슨이나 아동권리위원 등 아동권리를 위한 독립적 기구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자체들은 이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포함시키고 있어 이들 지자체를 중심으로 아동권리 모니터링이 활성화되는 추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조례에 ‘아동권리지킴이’

4) 국가인권위원회(2018b). 결정례.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decision/listDecision> 에서 2018년 2월 7일 인출.

조항을 포함시켜 지자체의 시민인권보호관을 임명하거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김영지 외, 2017: 74).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공적 기관에 의한 모니터링과 독립적인 모니터링의 제도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2006년 당시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가 운영한 아동옴부즈퍼슨 활동은 유럽 여러 국가에서 도입한 아동옴부즈맨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었다. 그 밖에도 여러 나라에서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아동권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당시, 영국의 아동위원회, 노르웨이 옴부즈맨, 일본의 아동권리 지방조례 등 해외 선진 사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김승권 외, 2007). 하지만 유엔 아동권리 협약 이행 및 모니터링에 대한 국가별 제도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파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제 5·6차 국가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의견 채택이 이루어진 영국 사례를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중심으로 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다양한 논의 구조와 최근의 이슈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 2) 해외사례: 영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국제협약 이행 점검 현황

### (1) 유엔아동권리보고서 관련 주요 현황

영국 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고, 2014년 5월 제5차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 절에서는 영국의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의회와 아동 인권 전담 독립기구인 아동위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활동과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표 II-1〉 참고).

표 II-1 영국의 제5차 유엔아동권리보고서 제출 이후 주요 경과

연도	내용
2014. 5.	영국 정부 제5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보고서 제출
2015. 3.	영국 상·하원공동인권조사위원회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조사
2015. 7.	웨일즈, 잉글랜드 아동보고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
2015. 9.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영국 정부에 쟁점목록 발송
2016. 3.	영국 정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서면 답변서 제출
2016. 4.	영국 평등·인권위원회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준수 검토보고서 제출
2016. 5.	제5차 보고서에 대한 아동위원회 권고사항 발표
2016. 7.	5차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의견 채택
2017. 5.	유엔인권위원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2017. 12.	잉글랜드아동권리연대 연간 아동권리실태 발표

\* 출처: 유엔인권사무국고위급위원회 CRC 데이터베이스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 에서 2018. 5. 10 인출.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2015). UK Children's Commissioners(2016). CRAE(2017).

영국 정부의 이번 제5차 보고서는 2007년 이후 잉글랜드,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등 영국 영토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와 진전 정도를 담고 있다. 보고서 서론에서는 아동 사망률, 알콜 및 약물 남용 실태, 교육 성취도, 학교 탈락률, 범죄율 등에서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교육 성취도에 있어 학생 간 격차, NEET 비율 등에서 여전히 문제점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CRC, 2014: 3-4). 또한 변화하는 세계에서 영국 국내의 재정 감소와 세계화의 문제를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세계화와 관련해서는 인터넷의 안정한 이용, 사이버상의 괴롭힘,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의 증가 경향, 경기불황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아동 및 성인 대상 밀매와 착취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ibid: 6). 보고서의 본문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지표에 따라 기술되어 있다. 보고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한편 보고서 부록으로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개발과 실행 과정에서 영국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총리실이 청소년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한 16-17세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민주적 참여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교육부, 보건부, 법무부, 교통부, 내무부, 고용부, 국방부 등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의 정책 관련 포럼 또는 토론회 등의 내역을 제시하였다(ibid: 69).

이후 2015년 3월에는 제출된 정부 보고서에 대한 의회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상하원공동인권위원회(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는 상원 의원 6명, 하원 의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한 검토와 이행 방안 제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가 발간한 영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준수 검토 보고서는 향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정책과 법제정의 평가 도구로서 활용하고,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5: 3). 위원회는 정부의 5차 보고서 제출 이후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바를 지적하면서, 의회 차원에서의 평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ibid: 4). 위원회 보고서는 정부의 5차 보고서가 이전 보고서보다 질적으로 나아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 생략된 내용이 많으며, 정부 정책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외부의 불일치 의견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기술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ibid: 54). 또한 위원회는 2010년 아동위원회의 독립적 검토 보고서에서 영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및 법률 제정에 있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사항을 고려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것을 상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러한 의지가 정부 부처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ibid: 51).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아동 담당 장관(Children's Minister)의 지위가 모든 정부 부처의 정책 결정상의 상위단계에서 영향을 미칠 만큼 높지 않음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ibid: 53).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구로서 아동위원회(Children's Commissioner)의 권한과 독립성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잉글랜드의 아동위원회의 경우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아동위원회에 비해 개별 사안에 대한 중재 권한이 부족하다는 점을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로 제시하였다(ibid: 54). 다른 한편으로 위원회는 이러한 독립 기구의 활동과 별개로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개별적, 통합적인 방식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ibid: 54).

영국에서 아동 인권 전담 독립기구인 아동위원회(Children's Commissioner)는 2000년 웨일즈 정부에서 최초로 설치되었고,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2003년, 잉글랜드에서는 2004년에 설치되었다(Rees & Williams, 2016: 412). 잉글랜드를 제외한 지역 정부의 아동위원회가 처음부터 감독 및 모니터링 기능을 가진 것과 달리 잉글랜드 아동위원회의 경우 아동의 견해에 대한 조사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권고안을 제안하는 정도에 그쳤다가, 2014년 아동가족법의 개정을 계기로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위원장은 해마다 의회의 아동 권리 증진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스코틀랜드 아동위원회의 경우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아동 개별 사안에 대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위원회의 임명 절차 역시 정부마다 다르다. 잉글랜드 아동위원회는 국무부 장관(Secretary of State)이 임명하고, 교육부의 후원을 받으며, 사무소 역시 교육부 내에 설치되어 있다. 스코틀랜드의 아동위원회는 여왕의 승인으로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임명함으로써, 정부로부터 독립된 절차를 따르고 있다.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아동위원회의 경우 각 정부의 대표에 해당하는 제1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은 잉글랜드와 유사하나, 사무소 자체는 독립적인 공간에 설치되어 있다(ibid: 416-417). 네 위원회는 2015년 발표한 공동 보고서에서 아동위원회가 정부가 아닌 의회에 의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UK Children's

Commissioners, 2015, Rees & Williams, 2016: 418에서 재인용). 한편 네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잉글랜드 아동위원회는 11-18세 아동·청소년이 해마다 세 차례씩 모이는 Amplify라는 기구가 있고, 북아일랜드는 40여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패널(Youth Panel)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웨일즈 아동위원회의 지역사회 대사(community ambassador)는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에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인권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ibid: 426-427). 이들 아동위원회 기구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크다고 보기 어렵다. 이들 위원회가 주최하는 활동들은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특정 사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법 개정과 같은 정부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ibid: 429).

영국에서는 아동위원회의 활동과 별개로 국가 평등·인권위원회에서도 아동권리협약 검토 보고서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위원회는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에서와 같이, 영국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제도화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아동 빈곤, 정신 건강 서비스, 교육 성취도 등에서의 정책적 조치가 미흡함을 지적하였다(EHRC, 2016).

한편,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6차 정부 보고서의 제출과 별개로 웨일즈와 잉글랜드에서는 아동 권리에 대해 아동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아동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웨일즈 아동·청소년 인권 감시단(The Wales Observatory on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은 Big Lottery Fund의 지원으로 『작은 목소리 모아 외치기(Little Voices Shouting Out)』 프로젝트를 실시하였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7-11세 아동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된 쟁점을 파악하고 스스로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등, 연구 과정 전반에 참여하였으며, 이 과정은 웨일즈 아동·청소년의회의 활동 절차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동·청소년들은 놀이권, 건강권, 환경권, 정보접근권, 교육권

등 영역별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사항을 작성하였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 및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The Wales Observatory on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2015).

잉글랜드에서는 아동권리연대(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CRAE)의 주관으로 『보고, 말하고, 바꾸기(See it, Say it, Change it)』프로젝트가 실시되었다. 이 프로젝트에는 7-18세의 아동·청소년 22명이 참여하였고, 이 가운데는 장애, 흡리스, 아동 시설 이용 청소년 등 다양한 취약계층 집단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잉글랜드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점검을 위해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와 137명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 면담을 기획하고 이끌었다(CRAE, 2015: 6).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보고서에는 아동에 대한 존중, 자유, 폭력, 복지서비스, 삶의 질, 건강, 교육, 놀이, 범죄, 이민 등, 각 영역별 권고사항이 도출되었다(ibid).

영국의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아동 참여 프로젝트와 더불어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에 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CRAE의 경우 2003년부터 해마다 잉글랜드 지역을 대상으로 『아동권리실태(State of children's rights)』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촉구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전국아동학대예방협회(Nation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Children)의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안전한가?(How safe are our children?)』조사는 영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에 포함된 20개의 지표는 아동에 대한 폭력, 학대, 보호체계 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이후 2016년에는 영국 정부의 제5차 보고서에 대한 아동위원회의 권고사항 발표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의견 채택 등이 이루어졌다. 2017년에는 유엔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227개의 권고사항이 제시되었다. 영국 정부는 이 가운데 96개 권고사항에 대해 '지지'(완전한 이행 또는 이행 의지 표명)를 표명하였고, 131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인지’(일부 수용 또는 거부)를 결정하였다(UN UPR, 2017). 이에 대해 CRAE는 정부가 전체 권고사항의 42%를 지지한 반면, 아동인권과 관련해서는 28%만을 지지한 점을 비판하였다(CRAE, 2017).

한편, 영국에서는 최초로 웨일즈 정부가 2011년 아동·청소년권리조치(Rights on the Children and Young Persons Measure)를 마련한 이래, 스코틀랜드에서는 2014년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ople Act)을 제정하여 아동권리협약의 가치를 법률로서 실현하였다.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은 「Getting It Right For Every Child」라는 국가적 틀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웰빙을 보장하기 위한 8가지 핵심 지표(안전, 건강, 성취, 보살핌, 참여, 존중, 책임, 포용)<sup>5)</sup>를 제시하고 있다. 2016년 3월 스코틀랜드 정부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의견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법은 아래 <표II-2>와 같이 정책, 인식증진, 모니터링, 학교교육, 침해구제 등, 다방면에 걸쳐 아동권리협약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II-2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쟁점목록에 대한 스코틀랜드 정부 답변서 주요 내용**

영역	주요 내용
아동권리 정책	아동권리·웰빙영향평가 실시
아동권리 인식	교육 분야 및 지역사회 유관분야에서의 아동권리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확산 전체 학교의 50%가 유니세프 권리존중학교 수상(Rights Respecting School Award)
아동권리 모니터링	정부는 의회에 3년 주기로 협약 준수사항 및 계획을 제출(2018년 예정) 공공기관에서의 협약 준수사항 및 계획 보고 의무화
학교교육	아동권리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과정 실천
아동권리 침해구제	아동권리 침해 사례에 대하여 개별 아동을 대신하여 아동위원회가 조사 실시

5) 안전(Safety), 건강(Health), 성취(Achieving), 보살핌(Nurtured), 참여(Active), 존중(Respected), 책임(Responsible), 포용(Included)의 머릿 글자를 따 SHANARRI라 칭함(Scottish Government, 2015, p. 16).

\* 출처: Scottish Government (2016). List of issues in relation to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Scottish Government response (March 2016).

## (2) 유엔아동권리협약 주요 사안별 논의

본 절에서는 영국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상황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의견을 중심으로, 독립기구인 아동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시민단체의 추가적인 의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아동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의견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의견보다 구체적이거나 진일보한 의견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시민단체 CRAE의 연간보고서는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빈곤, 안전, 이민, 교육, 보건, 사법조치 등 영역별 브리핑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절에서는 CRC의 영역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 ①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아동위원회, 시민단체 CRAE의 의견을 간단히 정리하면 <표II-3>과 같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법·제도 측면에서 공통적으로 협약과 국내법의 일치와 협약 준수를 위한 실행 계획의 채택, 아동권리영향평가 도입 등이 강조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자원 할당과 모든 부처에서의 이행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아동위원회는 실행 계획상에 효과적인 실행 조치의 제공 및 모니터링, 실무 조율을 담당하는 영구적인 조직 구성, CRC에 대한 인식 제고, 체계적인 데이터 구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CRC 실행그룹을 통해 정책 평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마련을 강조하였고, 2016년 새로운 내각 구성 결과 아동 담당 장관의 지위가 축소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아동위원회와 CRAE는 테러방지의 명목하에 추진되고 있던 인권법 개정 움직임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독립적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제안하였고, 아동위원회는 특별히 웨일즈 아동위원회의 감독을 현행 정부가 아닌 국회에 위임할 것을 제안하였다.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영국 본토뿐만 아니라 모든 영토에서 결혼 최소연령을 18세로 규정할 것과 테러방지법에 의한 차별 발생의 가능성 감시, 유아 및 아동 사망률의 불평등 요인 규명 등을 권고하였다. 아동위원회는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 개정과 평등영향평가에서의 연령에 따른 차별 금지를 통해 아동 권리 보호를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CRAE는 테러방지법에 따라 교사가 극단주의 징후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이 무슬림 학생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폐기할 것과 학교에서 소수 인종, 소수자 집단 등에 대한 폭력과 따돌림 문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참여권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관련 정책에 아동·청소년의 참여 기회 확대, 아동·청소년 의회 개설, 선거권 하향 논의에서 사전에 시민교육 및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였다. CRAE는 스코틀랜드에서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잉글랜드에서도 이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표 II-3 영국의 제5차 유엔아동권리보고서 관련 주요 논의: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내용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 의견	영국아동위원회	잉글랜드아동권리연대 (CRAE)
법·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약과 국내법 일치</li> <li>- 실행 계획 채택</li> <li>- 전략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한 자원 할당</li> <li>- 아동권리영향평가 도입</li> <li>- 정부 모든 부처에서 CRC 이행체계 구축</li> </ul>	인권법 현행 유지 실행 계획 수립 데이터 수집 체계 확충 아동권리영향평가 도입	인권법 개정 계획 폐기 CRC 실행그룹의 정책 평가들 개발에 대한 제도적 근거 필요 아동 담당 장관 지위축소 우려
독립적 모니터링	아동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웨일즈아동위원회감독의 국회 위임	-
차별 금지	- 모든 영토에서 18세를 결혼 최소연령으로 규정	아동 연령 차별 금지를 위해 기존 평등 법률	교사의 극단주의 징후 보고 의무조항 폐기

내용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 의견	영국아동위원회	잉글랜드아동권리연대 (CR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러방지법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가능성에 대한 감시 강화</li> <li>- 유아 및 아동 사망률의 불평등 요인 규명</li> </ul>	<p>개정 공공기관은 평등영향평가에서 아동의 권리 고려</p>	<p>소수집단에 대한 학교 폭력과 따돌림에 대한 조치 필요</p>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 폭력, 성적 착취, 대안 양육, 성교육, 여가 등 정책에 참여 보장</li> <li>- 영구적 참여장치로서 아동·청소년의회 개설</li> <li>- 선거권 하향 관련 시민교육 및 인권교육 사전 실시</li> </ul>	<p>청소년목소리 프로그램에 10세 미만 아동 참여(잉글랜드) 아동·청소년의회 개설</p>	<p>- 선거권 연령 16세로 하향 조정</p>

\* 출처: CRC (2016). pp.2-7, CRAE (2017). pp.4-5, CRAE (2016a). p.10, UK Children's Commissioners (2016). pp.5-8.

## ② 자유권 관련

자유권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집단 종교 활동의 의무 참여 폐지와 집회 해산시 소음장치 사용 금지 및 관련 데이터 수집을 권고하였다. 또한 수색과 관련하여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아동에 대한 정지 및 수색(stop and search)을 금지하고, 수색 시행시 연령을 고려할 것과 집단에 따른 차별적 시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과 이와 관련된 통계 자료의 수집을 권고하였다.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관련하여 영국아동위원회는 16, 17세 청소년에 선거권과 투표권 부여를 권고하였다. 또한 테러방지 정책이 소수민족 집단에 미치는 차별과 낙인효과를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아동의 견해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다.

표 II-4 영국의 제5차 유엔아동권리보고서 관련 주요 논의: 자유권

내용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 의견	영국아동위원회	잉글랜드아동 권리연대 (CRAE)
자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립학교에서 집단 종교 활동의 의무 참여 폐지</li> <li>- 집회 해산 목적의 소음장치 사용 금지</li> <li>- 아동의 반사회적 행동 및 집회해산 등의 조치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li> <li>-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정지 및 수색 금지</li> <li>- 법정 정지 및 수색의 시행시 연령 고려 및 차별 금지</li> <li>- 정지 및 수색에 대한 통계 자료 수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 17세 청소년에 선거권, 투표권 부여</li> <li>- 테러방지정책이 소수민족 집단에 미치는 영향 조사 및 그 과정에서 아동의 견해 조사</li> </ul>	-

\* 출처: CRC (2016). p.8, UK Children's Commissioners (2016). p.8.

### ③ 폭력 및 학대 관련

폭력 및 학대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영국아동위원회는 거의 유사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먼저 폭력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전기충격기 사용 금지, 구금 조치 철폐, 훈육 방식에 대한 모니터링, 체벌 금지, 비폭력적 훈육 방법의 촉진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더 나아가 CRAE는 체벌의 완전한 금지를 위해 법률상의 “합리적 징벌”을 옹호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에게는 침뱉기 또는 물어뜯기 피해로부터 경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 장치(spit hood)의 착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하였다. 또한 아동의 밤샘 구금의 금지와 유사 구금시설을 복지시설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학대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학대 근절을 위한 법 개정, 가정폭력, 젠더폭력 등에 대한 체계적 자료수집,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및 역량 강화 등을 권고하였으며, 여성 대상 및 가정 폭력 예방, 그리고 아동 대상 성적 착취 및 남용에 대한 유럽 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16, 17세

결혼에 대해 청소년의 완전한 동의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시행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과 의료행위를 통한 신체 학대 금지 및 간성(intersex) 아동이 있는 가정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CRAE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18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표준조사도입, 온라인상의 아동이미지 남용에 대한 경찰력 증대, 성적 착취 및 길들이기 관련 조치의 재검토, 강제·강압 행위 피해자 연령 상향 등을 제시하였다.

표 II-5 영국의 제5차 유엔아동권리보고서 관련 주요 논의: 폭력 및 학대

내용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 의견	영국아동위 원회	잉글랜드아동권리연대 (CRAE)
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에 대한 전기충격기 사용 금지와 관련 데이터 수집</li> <li>- 아동에 대한 모든 구금 조치 철폐</li> <li>- 교육, 구금, 복지, 이민 시설 등에서 아동에 대한 훈육 방식의 적절성 모니터링 실시</li> <li>- 가족 내 체벌 금지</li> <li>- 학교, 대안양육 시설 등에서 체벌 금지 명시화</li> <li>- 긍정적이고 비폭력적 형태의 훈육 방법의 촉진</li> </ul>	-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벌의 완전한 금지를 위해 법률상의 "합리적 징벌" 옹호조항 삭제</li> <li>- 경찰 방어용 장치(spit hood)의 아동대상 착용 금지</li> <li>- 밤샘 구금 금지</li> <li>- 유사 구금시설을 복지시설로 대체</li> </ul>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이하 아동에 대한 학대 근절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법의 개정</li> <li>- 가정폭력, 젠더폭력, 학대 등에 대한 체계적 기록 및 자료수집</li> <li>- 아동학대 대처를 위한 사회복지사 배치 확대 및 역량 강화</li> <li>- 법정에서 학대 아동의 견해 고려</li> <li>- 여성 대상 및 가정 폭력의 예방 및 근절과 관련된 협약 기준</li> <li>- 아동 대상 성적 착취 및 남용에 대한 유럽 협약의 기준</li> <li>- 16-17세 결혼에 대하여 해당 청소년의 완전한 동의에 따른 제한적 실시</li> <li>- 의료행위를 통한 신체 학대 금지 및 간성(intersex) 아동이 있는 가정에 상담 제공</li> </ul>	- 상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표준조사도입</li> <li>- 온라인상의 아동이미지 남용에 대한 경찰력 증대</li> <li>- 성적 착취 및 길들이기(grooming) 관련 조치의 재검토</li> <li>- 강제·강압행위 피해자 연령 18세 상향을 위해 성폭력법(2003) 개정</li> </ul>
<p>* 출처: CRC (2016). pp.8-11, CRAE (2016c). p.10. CRAE (2016g). p.10, UK Children's Commissioners (2016). pp.9-10.</p>			

#### ④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가정환경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복지 및 가족지원 예산 삭감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권고하였다. 아동위원회는 가족이민규정상의 최소임금기준에 의해 가족 구성원이 분리될 가능성을 검토하여 아동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권고하였다.

대안양육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을 가족에게서 격리할 때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고려되고, 아동과 생물학적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접촉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더해 영국아동위원회는 모든 의사결정에 위탁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아동의 정신건강 평가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입법화하며, 위탁을 떠난 아동이 지역 허브와 네트워크 등의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하였다.

시설보호 아동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안정적 주거 확보, 퇴소 후 주거, 고용, 교육 등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권고하였고, 영국아동위원회는 웨일즈 지역에서 아동 본인의 준비 계획에 따라 21세까지 지원할 것과 시설 이동을 다수 경험한 아동의 비율 축소 조치 실시를 권고하였다. CRAE는 시설퇴소 후 지방세 면제와 지방정부에서 25세까지 주거 지원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밖에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북아일랜드에서의 입양법 통과를, 영국아동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사 이직률 감소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다.

표 II-6 영국의 제5차 유엔아동권리보고서 관련 주요 논의: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내용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 의견	영국아동위원회	잉글랜드아동 권리연대 (CRAE)
가정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예산 삭감에 따른 아동권리영향평가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이민규정'상의 최소임금기준에 따른 가족 분리 가능성을 재검토하여 아동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고려</li> </ul>	-
대안 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을 가족에게서 격리시 아동의 이익 최우선 고려</li> <li>- 아동과 생물학적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접촉 지원</li> <li>- 시설보호 아동의 안정적 주거 확보</li> <li>- 시설퇴소 후 주거, 고용, 교육 등 충분한 지원</li> <li>- 입양법 통과(북아일랜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의사결정에 위탁아동의 참여보장</li> <li>- 위탁 아동의 정신건강 평가에 대한 법적 권리 보장 입법화</li> <li>- 위탁을 떠난 아동의 지역 허브와 네트워크 등 설계에 참여 촉진</li> <li>- 아동 본인의 준비계획에 따라 21세까지 지원(웨일즈)</li> <li>- 시설 이동을 다수 경험한 아동 비율 축소를 위한 명확한 일정이 담긴 조치 시행</li> <li>- 사회복지사 이직률 감소 방안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퇴소 후 21세까지 지방세 면제</li> <li>- 지방정부의 25세까지 주거지원의무 도입</li> </ul>

\* 출처: CRC (2016). pp.12-13, CRAE (2017). CRAE (2016b). p.10, UK Children's Commissioners (2016). pp.10-11.

### ⑤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장애 아동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인권에 기반한 포괄적인 전략 수립을 권고하였고, 영국아동위원회는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축소 철회를 권고하였다. CRAE는 장애 아동에 대한 긍정적 행동 지원방식이 촉진될 것을 권고하였다. 기초보건 문제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 해소, 아동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영양상태 데이터 수집,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심리치료시 약물 남용 방지, ADHD의 진단 및 증가원인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성·생식보건정책에 있어 불평등 문제 해소와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의 참여를 고려하고 학교교육과정 상에 관련 내용을 의무화할 것, 임신중절 수술에 대한 처벌을 제외할 것과 모유 수유 장려 등을 권고하였다. 그 밖에도 환경보건과 관련하여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언급하면서, 학교, 거주지역의 대기오염 감소이행계획 수립과 국가 또는 국제 수준의 기후변화적응 및 완화조치에 아동의 참여 증진을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영국아동위원회는 아동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 현황을 공개할 것과 예외적인 경우에만 아동의 성인정신병동 입원을 허용할 것, 북아일랜드에서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조치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CRAE는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서비스에 최대대기시간표준제의 도입과 14억파운드 예산을 지정 할당하고 서비스 대상 선정 방식을 등급제에서 맞춤형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모든 입·퇴소 아동에 대한 정신건강 진단 실시, 정신병동에서의 아동 사망률 조사를 권고하였고, 아동의 영양과 관련해서는 9시 이후 비만유발 식품 광고의 금지를 권고하였다.

표 II-7 영국의 제5차 유엔아동권리보고서 관련 주요 논의: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내용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 의견	영국아동위원회	잉글랜드아동권리연대 (CRAE)
장애	- 인권기반 포괄적인 전략 수립	- 장애아동 복지서비스 축소 철회	- 긍정적 행동 지원의 활용 촉진
기초 보건	- 보건요리서비스의 불평등 해소 - 아동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 영양상태 데이터 수집 -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 심리치료시 약물 남용 방지 - ADHD의 진단 및 증가원인에 대한 독립적인 모니터링 실시	-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달성 현황 공개 - 예외적인 경우에만 아동의	- 아동·청소년정신 보건서비스(CAMHS) 최대 대기시간표준제 도입 - CAMHS에 14억 파운드 지정할당 및 등급제에서

내용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 의견	영국아동위원회	잉글랜드아동권리연대 (CRA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생식보건정책에 있어 불평등 해소 및 아동참여 고려 및 학교교육과정 의무화</li> <li>- 임신중절수술의 처벌제외</li> <li>- 모유수유의 장려</li> <li>- 학교, 거주지역의 대기오염 감소이행계획 수립(SDG 1.5)</li> <li>- 국가 및 국제 기후변화적응·완화조치에 아동 참여 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인정신병동 입원 허용</li> <li>- 높은 자살률에 대한 조치 (북아일랜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맞춤형으로 전환</li> <li>- 모든 시설 입·퇴소 아동에 정신건강 진단 실시</li> <li>- 정신병동에서의 아동 사망률 조사</li> <li>- 9시 이후 비만유발 식품광고 금지</li> </ul>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빈곤퇴치를 위한 명확한 계획 수립(SDG 1.2)</li> <li>- '생애기회전략'에 아동부문명시화</li> <li>- 사회보장 및 조세개혁조치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 평가</li> <li>- 노숙 아동의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 예산 유지</li> <li>- 18세미만 아동의 가정에 복지혜택 제재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5년간 아동빈곤율 감소 계획 수립과 이행</li> <li>- 아동 관련 수당 인상율이 물가상승율을 상회하도록 보장</li> <li>- 구직·훈련 중 부모에 양육시간을 30시간에서 추가지원</li> </ul>

\* 출처: CRC (2016). pp.13-17, CRAE (2016b). p.10, CRAE (2016f). p.10, UK Children's Commissioners (2016). pp.11-12.

## ⑥ 교육, 여가 및 문화

교육권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교육성취에 있어 불평등 문제의 해소와 학교 정착조치 최소화 및 학생의 항소권 보장, 학생 분리교실 폐지, 북아일랜드에서의 완전한 통합교육 실시, SDGs 관련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확대, 아동인권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하였다. 영국아동위원회와 CRAE의 권고안은 이와 맥이 닿아 있으면서도 보다 구체적이다. 먼저 영국아동위원회는 CRC 원칙과 가치를 모든 학교의 구조 및 실무와 통합하여 학교 운영 전반에 학생 인권의 가치를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학교, 교실, 학습 관련 사안에 아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잉글랜드에서 학생이 학교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교육법 개정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과 학업중단 후 대안교육을 즉시 제공할 것, 북아일랜드에서 성취도에 따른 학생 선별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CRAE는 중등학교인 Grammar School의 입시교육과 학생선별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즉시 조사할 것과 취약계층 아동지원금(Pupil Premium) 사업의 유지, 따돌림과 인종차별에 대한 교사교육 실시,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교육 의무화, 표준성취시험 재검토 및 교사참여 등을 제안하였다.

아동의 여가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놀이·여가 정책의 이행과 충분한 자원 마련, 장애·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안전한 놀이·여가 공간 마련, 놀이·여가 정책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아동의 완전한 참여보장 등, 놀이·여가 정책 전반에 대한 아동 인권 기반 접근을 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영국아동위원회는 보다 구체적으로 장애·비장애 아동의 평등한 놀이참여 보장과 관련하여 정부의 명확한 일정과 달성 현황 보고를 권고하였다. CRAE는 지방정부의 청소년서비스 확대와 청소년 클럽 폐지를 중지할 것, 아동 놀이공간에서의 흡연금지 조치 등을 제안하였다.

표 II-8 영국의 제5차 유엔아동권리보고서 관련 주요 논의: 교육, 여가 및 문화

내용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 의견	영국아동위원회	잉글랜드아동권리연대 (CRAE)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성취의 불평등 문제 해소</li> <li>- 학교의 정학조치 최소화 및 아동의 항소권 보장</li> <li>- 학생 분리교실 폐지</li> <li>- 완전한 통합교육 실시(북아일랜드)</li> <li>-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확대(SDG 4.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RC 원칙과 가치를 모든 학교의 구조와 실무에 통합</li> <li>- 학교, 교실, 학습 관련 사안에 아동의 적극적 참여 보장</li> <li>- 학생의 학교이사회 참여관련 교육법개정 진행상황 보고(잉글랜드)</li> <li>- 모든 필요 아동에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rammar School(중등학교)에서의 입시교육과 학생선별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즉각적 조사 실시</li> <li>- 취약계층 아동 지원금(Pupil Premium) 유지</li> <li>- 따돌림과 인종차별 관련 교사교육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인권교육 의무화</li> </ul>	<p>대안교육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중단 후 대안교육 즉시 제공</li> <li>- 성취도에 따른 학생 선별 폐지(북아일랜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공립학교에 성교육 의무화</li> <li>- 표준성취시험 재검토 및 교사참여</li> </ul>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놀이·여가정책의 이행과 충분한 자원 마련</li> <li>- 장애·소외계층 아동대상 안전한 놀이·여가 공간 마련</li> <li>- 놀이·여가정책수립 과 이행과정에 아동의 완전한 참여보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비장애 아동의 평등한 놀이참여 보장 및 명확한 일정과 달성 현황 보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정부의 청소년 서비스 확대 및 청소년 클럽폐지 중지</li> <li>- 지방정부의 아동 놀이공간에서 흡연금지 시행</li> </ul>

\* 출처: CRC (2016), pp.13-17, CRAE (2016e), UK Children's Commissioners (2016), pp.13-14.

### ⑦ 특별 보호 조치

특별 보호 조치와 관련하여 영국 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소년사법과 이민·이주와 관련하여 제시되었다. 먼저 소년 사법과 관련하여 2008년에 이미 권고한 형사책임 최소연령 상향 제안을 이행할 것과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종신형 금지, 유죄판결 전후 구금 최소화와 구금시 아동의 필요 충족, 아동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시 비디오촬영 실시 등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제안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아동위원회는 성인이 아닌 소년사법체계 내 재판 받을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 범죄 조기·예방 서비스 강화, 소수인종, 정신질환, 위탁아동의 사법 처리 비율이 높은 원인에 대한 검토와 해결, 모든 기관에서 아동에 대한 훈육·행동관리 방법을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민·이주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망명 신청 아동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 심각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연령 평가 허용, 망명·이민 아동에 대한 구금

금지, 이민·난민·망명 아동에 필요한 기초 서비스의 충분한 제공, CRC와 일치하도록 이민법 개정, 충분한 보호와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아동의 출국 조치 실시를 권고하였다. 영국아동위원회는 이주 아동 보호를 위해 다른 유럽국가와 협력, 난민 아동의 가족 상봉 조치 실행, 보호자 없는 아동의 구금 금지 및 이익제기 권리 보장, 강제추방 전에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 및 영국 내 항소권 보장, 아동·임산부에 대한 제압 금지, 망명 신청 아동의 법률 대리인 동행 보장, 유효한 이민 문건이 없이 입국한 아동의 변호 보장을 위해 망명이민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CRAE는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독립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아동의 견해와 경험을 고려하여 이주 제도를 검토할 것, 이민 통제 조치로 인해 부모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금지할 것, 난민 아동의 주거비용 상향 등을 권고하였다.

표 II-9 영국의 제5차 유엔아동권리보고서 관련 주요 논의: 특별 보호 조치

내용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 의견	영국아동위원회	잉글랜드아동권리연대(CRAE)
소년 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책임 최소연령 상향 권고이행(2008년)</li> <li>- 18세 미만 아동 종신형 금지</li> <li>- 유죄판결 전후 구금 최소화 및 구금시 아동의 필요 충족</li> <li>- 아동 피해자·목격자 진술시 비디오회영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이 아닌 소년사법체계 내 재판받을 권리 보장</li> <li>- 개인정보 보호</li> <li>- 조기·예방 서비스 강화</li> <li>- 소수인종, 정신질환, 위탁 아동의 사법 처리 비율이 높은 원인 검토 및 해결</li> <li>- 모든 기관에서 훈육·행동관리 방법 공개</li> </ul>	-
이민·이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망명 신청 아동 데이터 체계적 수집</li> <li>- 심각한 사유 인정시에만 연령 평가 허용</li> <li>- 망명, 이민 아동 구금 금지</li> <li>- 이민, 난민, 망명 아동에 필요한 기초 서비스의 충분한 제공</li> <li>- CRC와 일치하도록 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 아동 보호를 위해 다른 유럽국가와 협력</li> <li>- 난민 아동의 가족 상봉 조치 실행</li> <li>- 보호자 없는 아동의 구금 금지 및 이익제기 권리보장</li> <li>- 강제추방 전에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영국 내에서 항소권 보장</li> <li>- 아동·임산부에 대한 제압 금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독립적인 자문 제공 및 아동의 견해와 경험을 고려하여 이주제도 검토</li> <li>- 이민통제 조치로 인한 부모</li> </ul>

내용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 의견	영국아동위원회	잉글랜드아동권리연대(CRAE)
	민법 개정 - 충분한 보호와 이익이 보장되는 경우에만 아동의 출국 실시	- 망명 신청 아동의 법률 대리인 동행 보장 - 유효한 이민문건없이 입국한 아동의 변호 보장을 위해 망명이민법 개정	와 격리 금지 - 난민 아동 주 거비용 상향
* 출처: CRC (2016a). pp.20-24. CRAE (2016d). CRAE (2016). UK Children's Commissioners (2016). pp.15-17.			

### ⑧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선택의정서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매매·성매매·포르노물 제재를 위한 성폭력법 개정을 권고하였고, 아동위원회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를 제안하였으며, CRAE는 아동 매매 관련 독립적인 법적 체계를 즉각 이행할 것을 제안하는 등, 관련 법적 제도의 정비를 권고하고 있다.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와 관련해서는 군대 모집 연령과 모집 방식에 대한 권고가 주로 이루어졌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군대 모집 연령을 만 18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였고, 아동위원회는 군대의 학교 방문을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CRAE는 군대 모집 시 부모에게 위험과 의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외에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커뮤니케이션 절차와 국제인권 도구에 대한 선택 의정서의 비준을 영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표 II-10 영국의 제5차 유엔아동권리보고서 관련 주요 논의: 선택의정서 후속조치

내용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 의견	영국아동위원회	잉글랜드아동권리연대(CRAE)
아동매매·성매매·포르노물	잉글랜드·웨일즈 성폭력법(2003)과 북아일랜드 성폭력령(2008) 개정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해당 선택의정서에 명시된 모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화	아동매매 관련 독립적인 법적체계 즉각 이행
아동의 무력분쟁참여	군대 모집 연령 만 18세로 상향	18세 미만 아동 대상 군대 모집 및 군대의 학교 방문 금지	부모에게 위험과 의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커뮤니케이션 절차	해당 선택의정서 비준		-
국제인권 도구	해당 선택의정서 비준		-

\* 출처: CRC (2016a). p.24, CRAE (2016c). p.10. CRAE (2016d), UK Children's Commissioners (2016). p.18.

### (3) 시사점

지금까지 영국에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제5차 국가보고서 제출과 이후의 사회적 논의, 그리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환경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은 분권 정부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정도에 차이가 나며, 웨일즈 아동청소년권리조치(2011),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 제정(2014)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아동·청소년법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학교 교육 과정의 개정에 반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속에서 인권 증진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반면,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입법 조치가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법적 준비가 이루어지는 방향에 있고, 영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의견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내법의 일치를 강조하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영국은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아동위원회, 시민단체, 평등·인권위원회, 의회 등, 다양한 주체가 논평과 제안에 참여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각인시키고, 올바른 협약 이행의 방향에 대한 담론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아동위원회의 제안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의견 표명과 일치하는 경우가 다수로, 이는 아동위원회의 기능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아동위원회의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을 위해서 독립성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영국의회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의견 표명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고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과가 설치됨에 따라 그 기능이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전반에 대한 대응이나 국가보고서에 대한 독립적인 의견 표명과 같은 적극적인 역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보고서 발표 및 NGO 보고서 발표 등, 아동과 시민사회의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바, 향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국회 등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셋째, 영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의견 표명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입각하여 권고사항을 제안하였다는 점이다. 예컨대, 기초보건 영역에서 학교, 거

주지역의 대기오염 감소를 위한 이행계획의 수립, 국가 및 국제 기후변화적응·완화조치에 아동 참여의 증진을 권고한 것은 “SDG 세부목표 1.5.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기후 관련 극한 현상 및 기타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 적 충격 및 재해에 대한 노출 및 취약성 감소”에 입각한 것이다. 보건 영역에서 아동빈곤퇴치를 위해 명확한 계획을 수립할 것(SDG 1.2)과 교육 영역에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을 확대할 것(SDG 4.2)이라고 제안한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는 향후 우리나라 국가 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의견 표명에 대한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의 범위와 관점을 확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초보건 영역에서 학교, 거주지역의 대기오염 감소 조치와 같은 내용은 아동·청소년 인권 논의에서 ‘환경권’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2017년 보고서에서도 SDGs가 아동·청소년 인권 지표체계가 갖는 의미를 고찰한 바 있다. 본 보고서 III장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실태 분석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 2019.2.15., 제정 2018.8.14.) 관련 내용을 기술한 바와 같이, 환경권과 아동·청소년 인권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며, 이미 사회적, 제도적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형 SDGs 지표 개발을 위해 국가지속발전목표(K-SDGs)<sup>6)</sup>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 바, 향후 이러한 과정이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SDGs와 아동·청소년 인권의 상호연계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6) 환경부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에는 SDGs 각 영역에 대한 이해관계자 그룹 및 작업반을 구성하고 한국형 SDGs의 세부 목표 및 지표를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18).

##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협약이행 관련 국내 논의

### 1) 국내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연구 동향 (2015~2018)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논의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 3년 간 국내에서 출간된 학술논문과 보고서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의 수집은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2015년~2018년 사이에 발간된 학술논문과 보고서 중에 제목에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 0~18세 미만의 대상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와 인권, 권리 등의 주제어가 함께 들어가 있는 문헌을 선별하였다.<sup>7)</sup> 이를 통해 총 65건의 문헌을 취합하였고, 각 권리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24건의 문헌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sup>8)</sup>

이 연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권리의 주체는 영유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주아동, 난민아동, 다문화아동, 장애아동, 양육시설아동, 군인청소년,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한청소년 등 다양하였다. 권리와 관련된 주제는 권리의 주요 개념과 원칙, 인권교육, 인권 관련 제도, 인권의식, 인권인식과 인식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었다.

여기서는 본 보고서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한 권리 영역들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들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 영역들은 권리일반,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 7가지이며, 이외의 주제들을 추가하여 8가지 영역으로 정리하였다. 각 영역별로 2~3가지의 대표 문헌들을 정리

7) 온라인 자료 검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술정보검색사이트 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를 통해 2018년 4월~5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www.riss.kr).

8) 권리는 특정 주제어와 결합하여 '-권'의 형태로 표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교육권, 노동권, 참정권 등의 단어를 사용한 연구들도 인권 연구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제어를 사용한 연구들도 인권 선행연구에 포함하여 정리하였다.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권리일반 관련 선행연구

권리일반 관련 선행연구는 제3선택의정서,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 미래를 향한 권리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먼저 이노홍(2015a)의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OP3CRC)의 의의와 개인청원제도의 내용 및 쟁점을 분석하였다.<sup>9)</sup>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에 대비하여 아동의 권리침해에 대한 국내적 차원의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방안으로서 아동소송적격 인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경은(2016)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에 대한 법리(法理)와 한국의 아동보호 법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 협약 제3조<sup>10)</sup>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법리로 볼 수 있지만,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아동보호절차에 있어서 법규정과 법이 집행되는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백승흠(2017)의 연구는 국제법적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친권제한과 입양 절차 등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유럽인권재판소의 로벤 판결(Robben and others v. Norway)의 사례를 소개한다. 로벤 판결은 노르웨이에서 지역행정기관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적용하여 부모의 친권을 박탈하고 아동의 입양을 허가하였고, 노르웨이 법원은 법원이 아닌 지역행정기관이 먼저 개입한 사건에 대해 정당하다고 인정, 유럽인권재판소도 이를 승인한 판결이다. 저자는 국내에서 아동학대 등의 사례에서도 법원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적용

9) 제3선택의정서는 개인청원절차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Provide a Communications Procedure)를 의미한다.

10)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①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하여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을 박탈한 예를 찾아보기 어려워, 우리나라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이 더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II-11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권리일반)

저자 (연도)	제목 (발간정보)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내용 및 시사점
이노홍 (2015a)	UN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상 개인청원제도와 아동의 재판청구권. (世界憲法研究, 21(2), 113-144)	문헌연구 (개인청원제도의 내용과 쟁점 분석)	-	-UN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상 개인청원제도의 내용과 쟁점 분석 -UN 아동청원제도의 비준 권고에 따른 아동의 재판청구권 보장 쟁점 분석
이경은 (2016)	UN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법리와 한국의 아동보호 법제. (입법과 정책, 8(2), 193-219)	문헌연구 (비교법적 고찰)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의 의의 -국내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의 원리 구현의 현실과 대안 제시 (친권에 대한 국가개입과 후견인 지정 등에서의 법집행의 한계와 개선과제)
백승흠 (2017)	아동의 최선의 복리와 친권의 제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검토. (國際私法研究, 23(2), 147-181)	문헌연구 (판례분석)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과 친권 제한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로벤 판결의 소개 및 쟁점 분석 -국내법에서 로벤 판결과 같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 친권이 제한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연도)	제목 (발간정보)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내용 및 시사점
이기범 (2018)	'열린 미래를 향한 권리'를 통한 아동의 의견 존중과 최상 이익의 조화 방안. (아동과 권리, 22(1), 23-43)	문헌연구	-	-아동 인권에 대한 철학적 분석 -아동 의견 존중과 최상의 이익 원칙의 충돌과 그 대안으로서 '열린 미래를 향한 권리'에 대한 제시

마지막으로 이기범(2018)의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 의견 존중원칙과 최상의 이익 원칙이 상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열린 미래를 향한 권리(right to an open future) 혹은 신임권(right-in-trust)을 제안한다. 아동 의견 존중 원칙은 자율적 선택을 중시하고,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은 아동 이익 극대화를 위해 성인의 개입을 허용하므로 두 원리가 충돌할 수 있어, 두 원리가 충돌할 경우 균형을 맞추는 상위 기준을 아동의 미래의 가능성 확대에 둘 수 있다는 것이다.

##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관련 선행연구

시민적 권리와 자유 관련 선행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참정권을 위한 대안적 제도(데미니 투표)와 참여권 행사의 영향에 대해 살펴본 연구들이다. 김효연(2016)은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제한 현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데미니 투표(Demeny voting)의 개념과 논거에 대해 설명한다. 데미니 투표는 인구학자 Paul Demeny(1986)가 제안한 투표방식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없으므로 이들의 부모에게 자녀의 선거권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아동청소년에게 선거권이 없어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정책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채은영·이재연(2016)은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살

펴보면서 참여권 행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기본심리욕구(관계성 욕구, 유능성 욕구, 자율성 욕구)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참여권 행사가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참여권 행사는 아동이 일상적이거나 개인적인 수준에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동·청소년이 개인적 생활에 대한 참여나 공적인 영역에 참여함으로써 주관적 행복감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II-12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시민적 권리와 자유)

저자 (연도)	제목 (발간정보)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내용 및 시사점
김효연 (2016)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 거권연령. (헌법 연구, 3(1), 137-163)	문헌연구	-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제한 현황과 정치적 참여 및 선거권 부여의 정당성 논거 -데미니 투표(Demenry voting)의 개념과 논거
채은영, 이재연 (2016)	아동의 기본심리 욕구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참여권 행사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0(3), 347-366)	양적연구 (설문조 사, 매개 효과분 석)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209 명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는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 참여권 행사는 두 변수의 관계를 부분 매개함.

### (3) 폭력 및 학대 관련 선행연구

폭력과 학대에 관한 선행연구는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정 내 아동체벌 금지 정책과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노홍(2015b)의 연구는 아동의 권리와 가정 내 아동체벌금지에 대해 헌법적인 고찰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은 1979년에 스웨덴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 가정 내 체벌금지 정책에 대해 역사적으로 소개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의 실현 수단으로서 이 정책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류정희(2017)의 연구는 아동학대의 현황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특히 현재 아동학대를 사후적으로 민간서비스체계에서 개입하는 현실에 대해, 예방적으로 잠재적 위기 아동에 대해 포괄하고, 공적인 책무성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체계 재편과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하고 있다.

표 II-13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폭력 및 학대)

저자 (연도)	제목 (발간정보)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내용 및 시사점
이노홍 (2015b)	아동의 권리와 가정내 아동체벌금지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홍익법학, 16(1), 123-157)	문헌연구	-	-1979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스웨덴에서 도입된 가정 내 아동체벌금지 정책의 역사적 맥락 소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의 실현 수단으로서의 가정 내 체벌금지 정책의 국내 도입에 대한 필요성 및 방안 논의
류정희 (2017)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247(-), 5-23)	문헌연구	-	-아동학대 발생의 한국적 특성 분석 -아동학대 발생의 특성을 빙산에 비유하여 아동학대 보호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함.

####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관련 선행연구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관련 선행연구는 한국의 해외입양제도, 출생신고, 양육시설 아동들의 인권실태와 관련한 연구들이다. 김재민(2016)의 연구는 한국의 해외입양 관련 제도변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해외입양의 흐름을 형성-촉진-전환의 3시기로 구분하고, 한국전쟁 이후 전쟁 고아와 혼혈아동을 입양하였던 형성기, 산업화시기 인구관리 측면에서 이주정책을 펼쳤던 촉진기, 국내입양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전환기 등으로 설명한다. 역사적으로 해외입양이 요보호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정책적 흐름에 의해 이루어졌고, 따라서 해외입양 문제

인권적 관점에서의 전환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소라미(2016)는 출생신고 밖에 존재하는 아동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과 과제를 연구하였다. 출생신고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이지만 국내에서는 출생신고 절차의 미비로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미혼부모의 자녀와 이주아동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은주·박명숙(2016)은 양육시설에 거주중인 아동들의 인권실태를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은 아동의 인권수준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분하고, 23개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1001명의 아동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스스로의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일부 양육시설에서는 보호권(폭력과 사생활침해)과 참여권이 제한되어 있고, 아동의 인권의식이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는 주목받지 못하였던 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인권수준을 파악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철호(2017)는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의 문제에 주목하여, 아동양육시설(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서약서와 그 내용이 아동권리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있다. 일부 아동양육시설은 보호자에게 양육권 포기, 보호아동의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호시설의 면책, 보호아동의 간병비 부담 등을 서약하게 하고 있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요구를 하고 있다.

표 II-14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저자 (연도)	제목 (발간정보)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내용 및 시사점
김재민 (2016)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에 투영된 인권의 공백. 기억과 전망, 35(-), 282-318.	문헌연구	-	-한국의 해외입양 관련 제도변화 분석 -해외입양 관련 정책에서의 여성과 아동인권의 부재와 인권친화적 제도로 변화 모색
소라미 (2016)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가족법연구, 30(3), 481-496.	문헌연구	-	-시민권의 사각지대로서 출생신고 밖에 존재하는 아동들에 대한 제한 -출생신고제도의 개선과제(미혼모, 미혼부, 이주아동, 친생추정 조항 정비 등)
이은주, 박명숙 (2016)	양육시설 아동들의 인권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동보호연구, 1(2), 23-53.	양적연구 (설문조사, 기술 통계)	양육시설 거주아동	-아동양육시설 거주 아동들의 인권수준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구분하고,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함. -보호권(폭력과 사생활침해)과 참여권이 제한되어 있고, 아동의 인권의식이 낮게 나타남.
정철호 (2017)	아동복지시설 입소과정에서 권리포기각서의 위법성: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7), 91-117.	문헌연구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서약서와 그 내용이 아동권리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됨 -보호자에게 양육권 포기, 보호아동의 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호시설의 면책, 보호아동의 간병비 부담 등을 서약하게 하는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 관련법을 위반하는 것임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관련 선행연구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관련 선행연구는 청소년복지권, 장애아동인권에 대한

인식,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 등에 관한 연구이다. 김선애(2015)의 연구는 사회권으로서의 청소년 복지권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고, 복지권의 범주 안에서 청소년복지권의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정미 외(2016)는 장애아동인권에 대한 아동용 인식척도를 개발하고 초등학교 382명에게 이를 조사하여 이 척도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들은 장애인권인식을 생존권 인식, 발달권 인식, 참여권 인식, 돌봄권 인식으로 구성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비장애아동의 개념 및 태도에 대해 측정하고자 하였다.

장필화 외(2017)의 연구는 국제적 인권개념으로서의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SRHR: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분석 및 정책 제언을 하였다. 성재생산건강권은 성건강, 재생산건강, 성적권리, 재생산권리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국내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개념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여성청소년들의 성재생산건강권 보장은 국제적 합의나 흐름과 큰 괴리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장해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표 II-15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저자 (연도)	제목 (발간정보)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내용 및 시사점
김선애 (2015)	청소년복지권의 성격과 증진 방안 연구. 청소년복지 연구, 17(4), 93-115.	문헌연구	-	-사회권으로서의 청소년 복지권의 개념과 특성 논의 -복지권의 범주 안에서 청소년복지권의 증진 방안 논의
이정미 외 (2016)	장애아동인권에 대한 아동용 인식 척도개발. 장애아동인권연구, 7(2), 49-71.	양적연구 (설문조사, 확인적 요인분석)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59명	-장애아동인권에 대한 아동용 인식척도 개발 및 신뢰도 및 타당도의 검증

저자 (연도)	제목 (발간정보)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내용 및 시사점
장필화 외 (2017)	여성청소년 성재 생산건강권 개념 과 정책제언. 여 성학논집, 34(1), 61-101.	문헌연구	여성 청소년	-국제적 인권개념으로서의 여성 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에 대한 개념 정의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 보장 을 위한 정책 분석 및 정책 제언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관련 선행연구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관련 선행연구는 놀 권리에 관한 연구와 성소수자 아동을 위한 포용적 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황옥경 외(2015b)의 연구는 최근의 놀이권과 관련하여 권리로서의 놀이와 여가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행복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들은 놀이와 여가에 대해 권리로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낮았고, 놀이와 여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다. 반면 여가와 놀이 경험이 있는 아동들은 행복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김지혜(2016)의 연구는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을 위한 포용적 교육을 제안하였다. 이는 기존 교육제도가 성소수자에 대한 관용적 교육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성소수자 아동을 위한 포용적 교육(inclusive education)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표 II-16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저자 (연도)	제목 (발간정보)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내용 및 시사점
황옥경 외 (2015b)	권리로서의 놀이와 여가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행복감의 관 계. 아동과 권리, 19(4), 755-774.	양적연구 (설문조사)	초,중,고 등학생 563명	-아동청소년이 놀이를 권리로 인식하 고 있는지, 놀이 및 여가를 충분히 보 장받고 있는지 조사하고, 놀이 및 여 가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김지혜 (2016)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을 위한 포용적 교육. 동향과 전망, -96), 153-178.	문헌연구	-	-기존 교육제도의 성소수자에 대한 불 관용에 대한 비판과 성소수자 아동을 위한 포용적 교육(inclusive education) 제안

### (7) 특별보호조치 관련 선행연구

특별보호조치에 관한 연구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인권, 이주 아동의 인권, 난민 아동의 인권,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보호 중인 청소년의 인권, 아르바이트 등 일하는 청소년의 인권 등 다양하다. 손영화·박봉수(2015)는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인권문제는 생활·문화적 현실(상호작용의 부재와 차별 등)과 제도적 현실(체류신분, 부모와의 분리 등)에서 발생한다고 분석하였고,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경험을 토대로 인권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중희·구은미(2016)는 이주 아동의 인권에 대한 연구를 교육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이주 아동 청소년이 한국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의 차원에서 교육권과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남미애(2017)의 연구는 6호 처분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생태체계 모형을 적용하여 확인하였다.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지는 않았으며,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인권의식의 하위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정요인, 시설요인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서정애(2017)는 한국 거주 난민 아동의 권리에 관한 연구를 아동의 교육권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난민아동이 경험하는 출생등록문제와 사회적 권리로서의 교육권 문제를 지적하면서 난민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황진구·유민상(2018)의 연구는 일하는 청소년의 문제를 권리 차원의 문제로 확대하고, 근로기준법 상의 소극적 권리뿐만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의 적극적·포괄

적 권리로 노동기본권을 정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일하는 청소년들은 일자리에 대한 권리, 일 할 조건에 대해 알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건강에 대한 권리, 적절한 보상에 대한 권리, 학습에 대한 권리, 인격보호에 대한 권리, 참여에 대한 권리 등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표 II-17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특별보호조치)

저자 (연도)	제목 (발간정보)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내용 및 시사점
손영화, 박봉수 (2015)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21(1), 75-102.	질적연구 (심층면 접)	중도입국 청소년 4 명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인권문제는 생활문화적 현실(상호작용의 부재와 차별 등)과 제도적 현실(체류신분, 부모와의 분리 등)에서 발생 -중도입국청소년들이 경험을 토대로 인권개선 방안을 제안함
이중희, 구은미 (2016)	이주 아동의 인권 에 대한 연구 : 교 육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공공사 회연구, 6(4), 297-323.	문헌연구	-	-이주 아동 청소년이 한국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의 차원에서 교육권과 건강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
남미애 (2017)	6호처분 아동보 호치료시설 청소 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생 태체계 요인. 교 정복지연구, -(49), 31-58.	양적연구 (회귀분 석)	6호처분 을 받은 청소년 218명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생활하는 인권의식을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생태체계 모형을 적용하여 확인함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지는 않았으며,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인권의식의 하위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저자 (연도)	제목 (발간정보)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내용 및 시사점
서정애 (2017)	한국 거주 난민 아동의 권리 - 아 동 교육권을 중심 으로. 在外韓人 研究, 41(-), 79-101.	문헌연구	-	-난민아동의 출생등록문제와 사 회적 권리로서의 교육권 -난민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필요
황진구, 유민상 (2018)	청소년의 노동기 본권 보장 방안 연구. 청소년정책 연구원.	문헌연구 및 질적연 구	일하는 청 소년 15 세-24세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노동 기본권으로 설정하고, 노동기본 권을 8가지로 구분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보장 대안 제시

#### (8) 그 외의 주제들 관련 선행연구

그 외의 주제의 연구로는 TV 프로그램 속 출연자 아동의 인권, 남북한 아동들의 인권 등이 있다.<sup>11)</sup> 김동운(2015)은 TV 프로그램 속의 다양한 인권침해(외모편견, 의견무시, 사생활침해, 대결 및 경쟁구도 조장, 성역할 편견, 언어폭력, 신체폭력, 정서적 폭력, 지적능력비하)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TV프로그램 속에서 아동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었으며 피해 아동과 가해자의 성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이 연구는 권리침해에 대한 성찰과 비판이 필요하며, TV 프로그램의 제작 가이드라인에 아동출연자에 대한 항목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김석향 외(2016)은 남북한 아동들의 권리수준을 비교하기 위하여 유엔아동권리 협약 국가보고서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북한 아동들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지만, 남북한의 아동 권리 개념 및 내용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한국의 아동권리 증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 TV 프로그램 속 아동·청소년은 아역배우나 가수뿐만 아니라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일반인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주제를 일하는 청소년이 포함된 '특별보호조치'로 분류하지 않고 그 외의 주제로 분류하였다.

표 II-18 국내 아동청소년 권리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그 외의 주제들)

저자 (연도)	제목 (발간정보)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내용 및 시사점
김동윤 (2015)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 나타난 아동권리 침해.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8(2), 13-37.	TV프로그램 내용 분석	아동, 어린이, 청소년 (18세 이하)	-TV 프로그램 속의 다양한 인권 침해(외모편견, 의견무시, 사생활침해, 대결 및 경쟁구도 조장, 성역할 편견, 언어폭력, 신체폭력, 정서적 폭력, 지적능력비하)의 유형 분석 -TV프로그램 속에서 아동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 -아동출연자에 대한 제작가이드 라인 제정 필요
김석향 외 (2016)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통해 본 남북한 아동권리 내용 비교. 한국아동복지학, 54(-), 1-44.	문헌연구	-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통하여 남북한 아동들의 권리 상황을 비교함 -남북한 아동들의 권리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지만, 남북한의 아동 권리 개념 및 내용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한국의 아동 권리 증진방안을 모색해야 함

### 3.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

####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지표체계 개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청소년들의 다양한 권리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회·경제·문화적 특성이 다른 국가들에서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매우 추상적인 언어로 기술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러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특징은 협약의 이행상황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지표체계의 구축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이행지표체계에 대한 많은 고민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여기서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지표체계가 반영해야 하는 주요 고려사항들을 소개하고 이전 연구들의 이행지표체계 변화와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지표체계의 주요 고려사항

선행연구들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지표체계를 구성하는데 있어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여기서 정리된 것은 네 가지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포괄적 반영, 현실에 대한 측정, 현실 변화에 대한 반영, 구조·노력·결과 등에 대한 종합적 반영 등이다.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의 포괄적 반영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들은 개별적으로 측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권리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지표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표의 수가 너무 많아져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은 실제 아동권리의 상태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반면 간단명료한 지표체계를 구성하면 측정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늘어나게 되고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양산하게 된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기본틀을 설정하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세부 지표를 설정하는 작업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여부를 측정하는 데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현실에서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에서 추상적으로 기술된 권리들은 실제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아동권리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측정되기 어렵다. 실제 측정이 어려운 경우 대리지표를 사용해야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 측정 가능하고 활용 가능한 지표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실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는 아동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그러한 변화에 따라 과거에는 주목받지 못하였던 아동권리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지표체계는 사회적 변화와 그로 인한 아동들의 권리상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이행지표체계가 새롭게 발생한 현상들에 대해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아동인권개선을 위한 사회적 구조, 노력,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지표체계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제도와 법제 등의 구조(structure),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과정(process), 그리고 권리보장에 따른 아동청소년들의 발달 결과(outcome)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지표체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조란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기제 마련 여부 및 법적 도구의 비준과 채택 여부 등을 의미하며, 권리보장에 대한 헌법과 국내법 규정, 권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틀 등과 관련이 있다. 과정이란 의무주체들이 인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관련 정책, 수단과 같은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하며, 재정지표, 물질적 지표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성과지표는 아동이 권리를 누리는 상태를 의미하며, 권리와 분명한 관련성을 가지고, 과정의 영향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등의 지표체계와 관련이 있다(UN OHCHR, 2012, 김영지 외, 2017: 34-36에서 재인용). 요컨대 아동권

리협약 이행지표체계는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이로 인한 아동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발달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체계여야 한다. 이러한 체계로 구성될 때 한 국가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정의 모니터링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다.

## (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지표체계의 주요 변화

이러한 고민은 지난 12년 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의 지표체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녹아 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는 1기(2006년-2010년), 2기(2011년-2016년), 3기(2017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시기마다 지표체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1기 연구에서 지표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던 최창욱 외(2006)의 연구는 아동인권 관련 국내외 지표들을 참고하여 생존, 보호, 발달, 참여, 인권 인프라의 5개 영역으로 지표들을 구분하였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를 중심으로 직관적인 지표체계를 구축하고, 현재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정부의 노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인권 인프라를 추가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1기의 이후 연구들은 최창욱 외(2006)의 지표체계를 중심으로 생존, 보호와 발달, 참여권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기의 연구(2011년~2016년)들은 지표체계를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의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 보호 조치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2기에서 지표체계가 변화된 것은 앞선 아동의 권리를 4가지로 분리한 체계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동권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임희진 외, 2011).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작성 지침을 기본틀로 활용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 적용된 지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의 기본틀을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국내외의 인권지표 자료들을 활용하여 지표체계를 재구조화하였다. 2기 연구의 세 번째 연구인 김영지

외(2013)에서는 2기의 지표체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김영지 외(2013)는 기존의 지표체계를 ‘대분류-지표체계-지표항목’의 구조에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지표항목’으로 수정하고, 대분류 항목에서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을 추가하여 6개 대분류 체계로 변경하였다. 이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 지침의 변화에 따른 조치였다.

3기의 연구(2017~)에서는 지표체계의 큰 틀이 유지되었다. 김영지 외(2017)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을 기반으로 한 지표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2015년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의 개정으로 추가된 ‘폭력과 학대’를 대분류로 분리하여 7개 대분류 체계로 재개정되었다. 이외에도 3기 연구는 7개 대분류에서 하위 지표들을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었다.

요컨대 1기에서부터 3기까지의 변화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지표들을 선택 보완하는 과정이었으며, 본 연구가 모니터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적, 국제적 기준들과 상호 연관될 수 있도록 조정되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표 II-19 2006년-2017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변화 (대분류)

구분	1기 (2006~2010)	2기 (2011~2016)		3기 (2017~ )
	최창욱 외 (2006)	임희진 외(2011)	김영지 외(2013)	김영지 외(2017)
대분류 내용	1. 생존	1. 시민적권리와 자유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2. 보호	2.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3. 발달	3. 장애, 기초적 보건 및 복지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3. 폭력 및 학대
	4. 참여	4.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4.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5. 인권인프라	5. 특별 보호 조치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6. 특별 보호조치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7. 특별 보호 조치

(3)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제3기 2년차 연구로 2017년 제3기 1년차 연구의 인권지표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2018년 인권지표체계는 2017년과 같이 '7개 대분류 - 24개 중분류 - 56개 소분류(지표) - 135개 지표항목'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 영역별 지표항목 개수는 1영역 인권일반 11개, 2영역 시민적 권리와 자유 20개, 3영역 폭력 및 학대 9개, 4영역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3개, 5영역 장애·기초 보건 및 복지 32개, 6영역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19개, 7영역 특별보호조치 31개 등이다. 135개 지표항목 중에서 행정통계 및 타분야 통계를 통해 생산되는 지표는 83개,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인권실태 설문조사로 결과를 생산하는 지표는 52개이다.

표 II-20 2017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 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1-1-1-3.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1-1-2. 인권에 대한 인식	1-1-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1-1-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지역, 전체, 사이버공간)
			1-1-2-3. 인권인식 및 태도*
		1-1-3. 인권교육	1-1-3-1. 인권교육 실시 현황
			1-1-3-2. 인권교육 경험(횟수, 장소, 도움정도)*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2-1. 차별 경험률	1-2-1-1. 차별받은 경험*
			1-2-1-2. 차별해 본 경험*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1-2-2-1.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2-1-1-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2-1-2-1.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2-1-2-2. 학급회의 활성화 정도(운영 여부, 참여정도)*
			2-1-2-3.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2-1-2-4. 교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2-1-3.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	2-1-3-1.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2-1-3-1.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2-1-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2-1-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2-1-3-3.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2-1-3-3.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2-1-3-4.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2-1-3-4.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2-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2-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2-2-1-1. 사상·양심의 자유 보장 정도*
		2-2-2. 종교자유 보장정도	2-2-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2-2-2-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3-1. 결사·집회 경험률	2-3-1-1. 결사·집회 경험률(경험여부, 피해경험)*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4-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4-1-1. 용모·복장 제한 및 소지품 검사 경험률*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2-4-2-1. 학교에서 개인정보 공개정도(교육비 미납, 징계처분 내용, 개인 성적)*
2-5. 정보접근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율	2-5-1-1. 매체 이용률	2-5-1-1. 매체 이용률
		2-5-1-2. 유해매체 이용률	2-5-1-2. 유해매체 이용률
		2-5-1-3. 아동·청소년 매체 접근성	2-5-1-3. 아동·청소년 매체 접근성
	2-5-2. 정보제공 정도	2-5-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2-5-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2-5-2-2.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2-5-2-2.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3. 폭력 및 학대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3-1-1. 청소년폭력 경험률	3-1-1-1. 폭력피해 경험* 3-1-1-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3-1-2. 체벌 경험률	3-1-2-1. 체벌 경험률*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3-2-1-1. 아동학대 사례건수	
			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3-2-1-3. 방임 정도*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대화시간	
			4-1-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1.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4-1-2-2.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
	4-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4-2-1. 입양률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4-2-2. 대안양육 비율	4-2-1-2. 입양 사후조치(입양성공률/파양률)
				4-2-2-1. 요보호아동 현황
	4-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4-2-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4-3-1.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4-2-3-1. 가출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4-2-3-2.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5-1. 장애(제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기관 및 만족도*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4-3-1-1.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5-3. 보건서비스 (제24조)
	4-3-1-3.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5-1. 장애(제23조)	5-2-1. 사망률	5-1-1-1.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5-2-2. 안전에 대한 인식률	5-1-1-2.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5-1-1-3. 장애 청소년 진학을 및 취업률 추이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5-3-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5-2-1-1.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2-1-2.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5-2-1-3. 사고 사망률
	5-3. 보건서비스 (제24조)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2-2-1. 범죄 피해율	
			5-3-1-1.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	5-2-2-2. 지역사회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5-3-1-2. 보건교사 배치 현황				
5-3. 보건서비스 (제24조)	5-3-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5-3-1-3.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5.	5-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5-3-3-1. 흡연을	
			5-3-3-2. 음주를	
			5-3-3-3. 기타 약물 사용을	
			5-3-3-4.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5-4-1. 건강에 대한 인식	5-4-1. 건강에 대한 인식	5-4-1-1. 주관적 건강평가*
				5-4-2-1. 운동 실천율*
		5-4-2. 신체적 건강	5-4-2. 신체적 건강	5-4-2-2. 아침식사 결식률과 결식이유*
				5-4-2-3. 수면시간과 수면부족 이유*
				5-4-2-4. 비만을
				5-4-3-1.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5-4-3. 정신적 건강	5-4-3. 정신적 건강	5-4-3-2. 우울증*
				5-4-3-3. 스트레스 인지율*
				5-4-3-4.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5-4-3-5. 삶의 만족도*
				5-4-3-6. 자아존중감*
5-4-3-7. 고민거리대화상대*				
5-5-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국가간 비교				
5-5.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5-5-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국가간 비교	5-5-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국가간 비교	5-5-1-1. 아동·청소년 빈곤율, 빈곤율 국제비교	
			5-5-1-2. 아동·청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	5-5-2-1. 취약계층아동현황	
			5-5-2-2.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학생 취학률	
			6-1-1-2. 학생 진학률	
			6-1-1-3.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6-1-1-4. 교원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6-1-2. 학교 부적응률	6-1-2. 학교 부적응률	6-1-2-1. 학업중단율	
			6-1-2-2.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6-1-2-3.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6-2. 교육의 목표 (제29조)	6-2-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6-2-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6-2-1-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6-2-2-1. 대안교육 참여 기회
		6-2-2.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6-2-2.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6-2-2-2. 직업교육 참여 기회
				6-3-1-1.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6-3-1.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수	6-3-1.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수	6-3-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7. 특별 보호 조치	7-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6-3-2. 여가문화 예술활동 참여율	6-3-2-1. 여가문화·예술활동 참여도
			6-3-2-2. 아동·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6-3-2-3. 동아리활동 참가율*
			6-3-2-4.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6-3-2-5. 하루평균학습시간*
		6-3-3. 여가문화·예술활 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	6-3-3-1.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6-3-3-2.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지지 정도*
	7-2. 소년 사법 아동	7-1-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7-1-1-1.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7-1-1-2. 탈북 난민 아동수
			7-1-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7-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7-1-3. 이주배경아동·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7-1-3-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7-1-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서비스		
	7-3. 경제적 착취	7-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7-2-1-1.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7-2-1-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7-2-2-1.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7-2-2.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7-2-2-2.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3년주기)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7-2-3-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7-2-3.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	7-2-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7-2-3-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7-3-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7-3-1.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근로조건 수준	7-3-1-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7-3-2-1.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7-3-2-2.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7-3-2.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대분류	중분류	지표(소분류)	지표항목(*표시는 설문조사 항목)
		7-3-3.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노력정도	7-3-3-1.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수
			7-3-3-2.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7-4. 성적 착취	7-4-1.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7-4-1-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수
			7-4-1-2.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7-4-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7-4-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7-4-2-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7-4-2-3. 성적 피해 시 도움제공자*
		7-4-3.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7-4-3-1.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7-4-3-2.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3년주기)
		7-4-4.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4-4-1.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7-4-4-2.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7-4-4-3.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 출처: 김영지 외(2017). pp. 65-68의 표 인용

#### (4)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항목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는 다년간 수행되어 오고 있는 연속조사로서, 동일한 지표를 반복하여 측정하여 매년 특정 지표의 현황을 살펴보고 시계열적인 변화를 추적하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번조사는 2017년 아동·청소년실태조사의 설문조사체계를 유지하였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행복도 문항으로 아동·청소년용으로 개발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척도이다. 이 척도는 기존의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 문항을 보완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주관적 안녕감 수준을 보여줄 것이다.

표 II-21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 항목

조 사 내 용			문 항 번 호	
			초등 학생용	중·고등 학생용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인권 협약, 기관 인지도	35(1~3)	45(1~3)
		인권의 존중정도 (가정, 학교, 지역, 사이버공간)	36(1~5)	46(1~5)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 (1)결정능력	37(1)	47(1)
		- (2)사회참여	37(2)	47(2)
		- (3)자치조직	-	47(3)
		- (4)표현의 자유	37(3)	47(4)
		- (5)차별(경제적이유)	-	47(5)
		- (6)차별(성별)	37(4)	47(6)
	- (7)차별(민족,인종)	37(5)	47(7)	
	인권교육 경험	38	48	
	인권교육 받은 기관	38-1	48-1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38-2	48-2	
일반원칙	차별 피해 경험	39(1~10)	49(1~10)	
	차별 가해 경험	39(1~10)	50(1~10)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의견 표명권	의사결정시 부모님 태도	1(1~4)	1(1~4)
		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2(1~4)
		학급회의 운영 여부	2	3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2-1	3-1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4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3(1)	5(1)
		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4	6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	7
		참여권 보장 수준	5	8
		참여 장애 이유	6	9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	10(2~4)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	11,11-1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	10(1)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결사·집회 경험률	-	12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	12-1
	사생활의 보호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	13(1~3)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	5(2)

조 사 내 용			문 항 번 호	
			초등 학생용	중·고등 학생용
	정보접근권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3(2)	5(3)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3(3)	5(4)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3(4)	5(5)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	14(1~3)
3. 폭력 및 학대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7(2,4,6)	15(2,4,6)
		폭력피해 경험	8(1~7)	16(1~7)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9(1~5)	17(1~5)
		체벌 경험률	7(1,3,5)	15(1~6)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 복귀	방임유형 및 정도	10(1~5)	18(1~5)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가출 경험 여부	11	19
		가출 이유	11-1	19-1
		가출시 서비스 이용 기관, 만족도	-	19-2, 19-3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생존 및 발달	사고 및 급식 안전 등에 대한 인식률 (교통사고, 범죄, 먹거리, 학교급식)	12	20,29
			13(1~3)	21(1~3)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14	22
		운동 실천율	15	23
		아침식사 결식률	16	24
		아침식사 결식이유	16-1	24-1
		수면시간	17	25
		수면부족 여부	18	26
		수면부족 이유	18-1	26-1
		자살에 대한 생각	-	27
		자살 생각 이유	-	27-1
		우울감	19(1~3)	28(1~3)
		자아존중감	19(4~7)	28(4~7)
		스트레스 인지율	20(1~6)	29(1~6)
		행복도 (※주관적 안녕감 척도추가)	21, 22	30, 31
행복하지 않은 이유	22-1	31-1		
삶의 만족도	23	32		
고민거리 대화상대	24	33		
6.	교육에의 권리	학업포기 생각여부	25	34

조 사 내 용			문 항 번 호		
			초등 학생용	중·고등 학생용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 동		학업포기 생각 이유	25-1	34-1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1) 친구가 나를 존중 -(2) 선생님이 학생 존중 -(3) 학교가는 것이 즐거움	26(1~3)	35(1~3)	
		교육의 목표	27(1~4)	36(1~4)	
	여가, 놀이 및 문 화·예술활동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28	37
			아동·청소년단체활동 참가경험	29	38
			동아리활동 참가율	30	39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31	40
			하루평균학습시간	32	41
			여가활동 및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28-1	37-1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지지 정도	33	42
7. 특별보호 조치	경제적 착취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	43, 43-1 (1~9)	
		성적 착취	34	44	
		성적 피해시 도움제공자	34-1	44-1	





## 제3장 조사방법

- 1. 조사목적
- 2. 조사대상
- 3. 조사내용
- 4. 조사방법
- 5. 조사기간
- 6. 무응답현황
- 7. 모집단 분석
- 8. 표본설계
- 9. 가중치와 모수추정



## 1. 조사목적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 조사는 기존의 행정데이터나 2차 자료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에 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들에게 자기응답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이 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02001호)로 통계청의 정기통계 품질진단 등에 의해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이 조사의 지표체계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의 인권 클러스터에 따라 7개의 영역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7개의 영역은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 및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로 반복횡단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보장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 연구자, 시민단체가

12) 이 장의 표본설계 파트는 2018년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통합조사의 설계를 담당한 강현철 교수(호서대학교)가 집필한 것으로, 통합조사에 참여한 과제에서 공통으로 수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독자들에게 조사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자 총괄보고서와 기초분석보고서에 이 원고를 공통으로 수록하였다. 이외의 부분은 조사를 담당한 한국리서치에서 제출한 '2018년 통합조사 TF'의 결과보고서를 유민상 부연구위원이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본인들의 인권 개선활동을 하는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

## 2. 조사대상

### 1) 모집단

이 조사는 조사시점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 2) 응답자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이 조사에는 총 9,060명이 참여하였으며, 남학생이 4,704명(51.9%), 여학생이 4,356명(48.1%)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2,745명(30.3%), 중학생 2,858명(31.6%), 고등학교 학생 3,456명(38.1%)이었으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지역 학생 3,690명(40.7%), 중소도시지역 학생 4,416명(48.7%), 읍면지역 학생 954명(10.5%)이었다. 가족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의 학생 8,265명(91.3%), 한부모 가정의 학생 601명(6.6%), 조손가정의 학생 89명(1.0%)이었으며,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가정의 학생은 97명(1.1%)이었다. 학생 본인의 학업성적이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2,950명(32.6%), '중'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012명(44.3%), '하'라고 응답한 학생이 2,090명(23.1%)이었으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상'으로 인식하는 학생은 4,985명(55.1%), '중'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은 3,197명(35.3%), '하'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870명(9.6%)으로 나타났다.

표 III-1 조사대상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례 수(명)	비율(%)
전체		9,060	100.0
성별	남학생	4,704	51.9
	여학생	4,356	48.1
학교유형1	초등학교	2,745	30.3
	중학교	2,858	31.6
	고등학교	3,456	38.1
학교유형2	초등학교	2,745	30.3
	중학교	2,858	31.6
	일반계고	2,792	30.8
	특성화계고	664	7.3
학교유형3	초등학교	2,745	30.3
	중학교	2,858	31.6
	일반고	2,456	27.1
	특수목적고	60	0.7
	특성화계고	664	7.3
	자율고	277	3.1
지역규모	대도시	3,690	40.7
	중소도시	4,416	48.7
	읍면지역	954	10.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265	91.3
	한부모가정	601	6.6
	조손가정	89	1.0
	기타	97	1.1
학업성적	상	2,950	32.6
	중	4,012	44.3
	하	2,090	23.1
경제적수준	상	4,985	55.1
	중	3,197	35.3
	하	870	9.6

### 3. 조사내용

조사의 영역은 7가지로 인권 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폭력과 학대,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 등이다. 각 영역은 하위 영역과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7개 영역에서의 설문조사 결과와 행정데이터 및 2차 자료들을 결합하여 종합적인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2018년의 문항은 2017년에서 주관적 행복감 척도가 추가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조사내용의 변경은 통계청 통계작성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

표 III-2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조사 항목

조 사 내 용		문 항 번 호		
		초등학 생용	중·고등 학생용	
1. 인권일반 및 일 반원칙	인권일반	인권 협약, 기관 인지도	35(1~3)	45(1~3)
		인권의 존중정도 (가정, 학교, 지역, 사이버공간)	36(1~5)	46(1~5)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1)결정능력		
		- (2)사회참여	37(1)	47(1)
		- (3)자치조직	37(2)	47(2)
		- (4)표현의 자유	-	47(3)
			37(3)	47(4)
		- (5)차별(경제적이유)	-	47(5)
		- (6)차별(성별)	37(4)	47(6)
			37(5)	47(7)
	- (7)차별(민족,인종)			
	인권교육 경험	38	48	
	인권교육 받은 기관	38-1	48-1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38-2	48-2		
일반원칙	차별 피해 경험	39(1~10)	49(1~10)	
	차별 가해 경험	39(1~10)	50(1~10)	
2.	의견 표명권	의사결정시 부모님 태도	1(1~4)	1(1~4)

조 사 내 용		문 항 번 호		
		초등학 생용	중·고등 학생용	
시민적 권리와 자유		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2(1~4)
		학급회의 운영 여부	2	3
		학급회의에서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2-1	3-1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4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3(1)	5(1)
		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4	6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	7
		참여권 보장 수준	5	8
	참여 장애 이유	6	9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	10(2~4)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	11,11-1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	10(1)
	결사 및 집회의 자유	결사·집회 경험률	-	12
		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	12-1
	사생활의 보호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	13(1~3)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	5(2)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3(2)	5(3)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3(3)	5(4)	
정보접근권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3(4)	5(5)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	14(1~3)	
3. 폭력 및 학대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7(2,4,6)	15(2,4,6)
		폭력피해 경험	8(1~7)	16(1~7)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9(1~5)	17(1~5)
		체벌 경험률	7(1,3,5)	15(1~6)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 복귀	방임유형 및 정도	10(1~5)	18(1~5)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가출 경험 여부	11	19
		가출 이유	11-1	19-1
		가출시 서비스 이용 기관, 만족도	-	19-2, 19-3
5.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생존 및 발달	사고 및 급식 안전 등에 대한 인식률 (교통사고, 범죄, 먹거리, 학교급식)	12 13(1~3)	20,29 21(1~3)
		신체적, 정신적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14

조 사 내 용			문 항 번 호		
			초등학 생용	중·고등 학생용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건강 증진	운동 실천율	15	23	
		아침식사 결식률	16	24	
		아침식사 결식이유	16-1	24-1	
		수면시간	17	25	
		수면부족 여부	18	26	
		수면부족 이유	18-1	26-1	
		자살에 대한 생각	-	27	
		자살 생각 이유	-	27-1	
		우울감	19(1~3)	28(1~3)	
		자아존중감	19(4~7)	28(4~7)	
		스트레스 인지율	20(1~6)	29(1~6)	
		행복도 (※주관적 안녕감 척도추가)	21, 22	30, 31	
		행복하지 않은 이유	22-1	31-1	
		삶의 만족도	23	32	
		고민거리 대화상대	24	33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에의 권리	학업포기 생각여부	25
학업포기 생각 이유	25-1			34-1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1) 친구가 나를 존중 -(2) 선생님이 학생 존중 -(3) 학교가는 것이 즐거움	26(1~3)			35(1~3)	
교육의 목표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27(1~4)	36(1~4)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28	37
			아동·청소년단체활동 참가경험	29	38
			동아리활동 참가율	30	39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31	40
			하루평균학습시간	32	41
			여가활동 및 여가시설 이용만족도	28-1	37-1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지지 정도	33	42			
7. 특별보호조치	경제적 착취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	43, 43-1 (1~9)	
		성적 착취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34	44
	성적 착취	성적 피해시 도움제공자	34-1	44-1	

## 4. 조사방법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의 조사대상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으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다. 2017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해 지난 조사와 같은 규모인 9,500여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17개시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중 총 336개교가 섭외되었고, 총 9,060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실사는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해 수행되었다.

표 III-3 2018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전국의 초(4~6학년)·중(1~3학년)·고등학교(1~3학년) 학생
표집틀	2017년 교육통계연보
표본수	9,500여명
추출학교수	전국 17개시도 336개교
표집방법	층화다단계집락표집
조사시기	2018년 5월~7월
조사방법	학교 컨택 후 학교 방문 집단 면접 조사 진행. 학생들의 자기기입식 설문 응답

## 5. 조사기간

이 연구의 조사기간은 2018년 5월부터 7월까지이다.

## 6. 무응답 현황

다음은 이번 조사의 무응답 현황으로 단위 무응답과 항목 무응답으로 나누어져

보고되어 있다. 단위 무응답은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항목 무응답은 일부 항목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이다. 「2018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 조사」의 성별, 학교급별, 지역규모별 무응답률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대상자 9,260명 중 187명이 결석 또는 거절을 이유로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무응답자의 비율은 전체 2.0%였다.

표 III-4 단위 무응답

		조사대상 수(명)	무응답자 수(명)	무응답자 비율(%)	
전체		9,260	187	2.0	
성별	남자	4,724	101	2.1	
	여자	4,536	86	1.9	
교급별	초등학교	2,934	40	1.4	
	중학교	2,784	53	1.9	
	고등학교	전체	3,542	94	2.7
		일반계고	2,867	61	2.1
특성화계고		675	33	4.9	
지역 규모	대도시	3,745	79	2.1	
	중소도시	4,508	77	1.7	
	읍면지역	1,007	31	3.1	
지역별	서울	1,462	11	0.8	
	경기	2,205	21	1.0	
	인천	521	13	2.5	
	강원	232	5	2.2	
	충북	287	7	2.4	
	충남	358	3	0.8	
	대전	325	9	2.8	
	세종	211	3	1.4	
	경북	503	22	4.4	
	경남	697	23	3.3	
	부산	474	18	3.8	
	대구	472	16	3.4	
	울산	270	11	4.1	
	전북	351	13	3.7	
	전남	338	7	2.1	
	광주	300	3	1.0	
	제주	254	2	0.8	

주요 항목 무응답률은 최소 0.0%에서 최대 3.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5%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여 무응답 대체를 실시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무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항목은 ‘아침식사를 하지 않은 이유’로 무응답 비율은 3.5%였다.

표 III-5 항목 무응답

내 용	명	(%)
문1.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_1)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2	(0.0)
문1.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_2) 진학할 상급학교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존중해 주신다	15	(0.2)
문1.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_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를 존중해 주신다	26	(0.3)
문1.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_4) 공부 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49	(0.5)
문2. 학생회 활동_1)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11	(0.2)
문2. 학생회 활동_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12	(0.2)
문2. 학생회 활동_3)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18	(0.3)
문2. 학생회 활동_4) 학생회 의견을 존중해준다	18	(0.3)
문3. 학급회의 운영여부	40	(0.4)
문3-1. 학급회의 참여정도	76	(1.1)
문4.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163	(2.6)
문5.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21	(0.2)
문5.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2) 교육비를 내지 않는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	6	(0.1)
문5.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3) 학생의 징계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49	(0.5)
문5.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4) 개인의 시험성적을 공개한다	40	(0.4)
문5.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5)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	42	(0.5)
문6.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15	(0.2)
문7. 투표 연령에 대한 의견	4	(0.1)
문8.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참여 권리보장 수준	9	(0.1)
문9.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37	(0.4)

문10.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_1) 부모형제와 상관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12 (0.2)
문10.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_2) 가정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5 (0.1)
문10.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_3) 학교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6 (0.1)
문10. 청소년의 자유 보장수준_4) 사회에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5 (0.1)
문11. 종교재단 학교 여부	0 (0.0)
문11-1.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 정도	12 (1.6)
문12. 사회 문제 관련 참여활동_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13 (0.2)
문12. 사회 문제 관련 참여활동_2)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27 (0.4)
문12-1. 사회 문제 관련 참여활동으로 인한 피해 경험	17 (1.3)
문13.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1) 용모 검사	3 (0.0)
문13.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2) 복장 검사	7 (0.1)
문13.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3) 소지품 검사	4 (0.1)
문14.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_1)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4 (0.1)
문14.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_2)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관련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4 (0.1)
문14.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_3)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5 (0.1)
문15. 체벌 경험여부_1) 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 벌	8 (0.1)
문15. 체벌 경험여부_3)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15 (0.2)
문15. 체벌 경험여부_5) 학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20 (0.2)
문15. 욕설 경험여부_2) 부모님(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14 (0.2)
문15. 욕설 경험여부_4)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14 (0.2)
문15. 욕설 경험여부_6) 학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18 (0.2)
문16.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1) 심한 욕설이나 모욕	2 (0.0)
문16.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2) 폭행이나 구타	6 (0.1)
문16.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3) 따돌림	10 (0.1)
문16.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3 (0.0)
문16.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5) 협박	6 (0.1)
문16.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6)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	6 (0.1)
문16.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7) 강제적인 심부름	3 (0.0)
문17.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1) 욕설이나 모욕	5 (0.1)
문17.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2) 협박	5 (0.1)
문17.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3) 성희롱(놀림)	8 (0.1)
문17.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알려짐	6 (0.1)

문17.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_5) 따돌림	5	(0.1)
문18. 가정에서 소홀 여부_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2	(0.0)
문18. 가정에서 소홀 여부_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거나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8	(0.1)
문18. 가정에서 소홀 여부_3)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	12	(0.1)
문18. 가정에서 소홀 여부_4) 내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13	(0.1)
문18. 가정에서 소홀 여부_5)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15	(0.2)
문19. 가출 여부	31	(0.3)
문19-1. 가출을 한 주된 이유	7	(2.1)
문19-2. 가출 후 이용 기관	5	(2.0)
문19-3. 가출 후 이용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1	(3.4)
문20.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도	12	(0.1)
문21.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4	(0.0)
문21.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15	(0.2)
문21.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3)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26	(0.3)
문22.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2	(0.0)
문23.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7	(0.1)
문24. 아침식사 여부	50	(0.6)
문24-1. 아침식사 하지 않는 이유	91	(3.5)
문25.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 - 시	8	(0.1)
문25.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 - 분	8	(0.1)
문25. 학교에 가는 날(평일) 잠자리에 드는 시간 - 시	9	(0.1)
문25. 학교에 가는 날(평일) 잠자리에 드는 시간 - 분	12	(0.1)
문26. 수면 부족 여부	8	(0.1)
문26-1. 수면 부족 이유(1+2+3순위, 복수응답)	16	(0.4)
문27.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8	(0.1)
문27-1. 죽고 싶은 이유	39	(1.9)
문28. 자신에 대한 생각_1) 외로운 적 있다	6	(0.1)
문28. 자신에 대한 생각_2) 불안한 적 있다	8	(0.1)
문28. 자신에 대한 생각_3) 우울한 적 있다	17	(0.2)
문28. 자신에 대한 생각_4) 가치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17	(0.2)
문28. 자신에 대한 생각_5)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4	(0.3)
문28. 자신에 대한 생각_6)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23	(0.3)
문28. 자신에 대한 생각_7)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20	(0.2)

문29.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1) 학업 문제	6 (0.1)
문29.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2) 가정 불화	11 (0.1)
문29.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3) 또래와의 관계	10 (0.1)
문29.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4) 경제적인 어려움	19 (0.2)
문29.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5) 외모·신체조건	10 (0.1)
문29.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11 (0.1)
문30.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견 - 1)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3 (0.0)
문30.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견 - 2)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4 (0.0)
문30.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견 - 3)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5 (0.1)
문30.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견 - 4)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12 (0.1)
문30.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견 - 5)나는 내 인생이 좋다	12 (0.1)
문30.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견 - 6)나는 내 인생에 대해 행복감을 느낀다	8 (0.1)
문31. 현재 행복 정도	26 (0.3)
문31-1. 행복하지 않은 이유	38 (2.5)
문32. 삶의 만족도	19 (0.2)
문33. 고민을 나눌 지인	136 (1.5)
문34. 자퇴 충동여부	12 (0.1)
문34-1. 자퇴 충동이유(1+2+3순위, 복수응답)	5 (0.2)
문35.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1) 친구들이 존중하고 배려한다	12 (0.1)
문35.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11 (0.1)
문35.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3)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13 (0.1)
문36. 학교에 대한 생각_1)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8 (0.1)
문36. 학교에 대한 생각_2)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8 (0.1)
문36. 학교에 대한 생각_3)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9 (0.1)
문36. 학교에 대한 생각_4)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7 (0.1)
문37.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1) 공공도서관	19 (0.2)
문37.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2) 청소년시설	68 (0.7)
문37.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3) 체육시설	54 (0.6)
문37.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4) 문화 예술 공간	37 (0.4)
문37-1.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	87 (1.0)
문38. 청소년 단체 가입/활동 여부	5 (0.1)
문39. 동아리 활동여부	8 (0.1)
문40. 평일 여가시간	10 (0.1)
문41. 정규 수업시간 제외 공부 시간	9 (0.1)
문42.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1) 가정	12 (0.1)

문42.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2) 학교	11 (0.1)
문43.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9 (0.1)
문43-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1)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1 (0.2)
문43-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2)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1 (0.2)
문43-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3)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	1 (0.2)
문43-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4)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1 (0.2)
문43-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2 (0.3)
문43-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2 (0.3)
문43-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2 (0.3)
문43-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성적 피해를 경험했다	3 (0.5)
문43-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9)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1 (0.2)
문44.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13 (0.1)
문44-1.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9 (2.0)
문45.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아동권리협약	8 (0.1)
문45.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	9 (0.1)
문45.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	9 (0.1)
문4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	7 (0.1)
문4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	11 (0.1)
문4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19 (0.2)
문4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우리나라 전체	18 (0.2)
문4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27 (0.3)
문47.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1)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9 (0.1)
문47.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2) 청소년도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	11 (0.1)
문47.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3)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6 (0.1)
문47.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4) 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15 (0.2)
문47.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4 (0.1)
문47.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6)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13 (0.1)
문47.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7)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9 (0.1)
문48. 인권교육 경험여부	11 (0.1)

문48-1. 인권교육 경험 장소	106 (1.7)
문48-2.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218 (3.4)
문49. 차별받은 경험_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18 (0.2)
문49. 차별받은 경험_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16 (0.2)
문49. 차별받은 경험_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17 (0.2)
문49. 차별받은 경험_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18 (0.2)
문49. 차별받은 경험_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16 (0.2)
문49. 차별받은 경험_6)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	18 (0.2)
문49. 차별받은 경험_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21 (0.2)
문49. 차별받은 경험_8) 부모님이 안계신다고	14 (0.2)
문49. 차별받은 경험_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14 (0.2)
문49. 차별받은 경험_10)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13 (0.1)
문50. 차별해 본 경험_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12 (0.1)
문50. 차별해 본 경험_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8 (0.1)
문50. 차별해 본 경험_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10 (0.1)
문50. 차별해 본 경험_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12 (0.1)
문50. 차별해 본 경험_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9 (0.1)
문50. 차별해 본 경험_6) 외모나 신체조건 때문에	11 (0.1)
문50. 차별해 본 경험_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12 (0.1)
문50. 차별해 본 경험_8) 부모님이 안계신다고	9 (0.1)
문50. 차별해 본 경험_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10 (0.1)
문50. 차별해 본 경험_10)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9 (0.1)

## 7. 모집단 분석

### 1) 모집단

본 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 2) 모집단 분석

먼저 16개 광역 시도별, 학교급별, 학년별 학생 수를 <표 III-1>과 <표 III-2>에 정리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 수는 4,343,464명이며 각 학교급별 학생 수는 초등학교 1,316,061명(30.3%), 중학교 1,370,382명(31.6%), 고등학교 1,657,021명(38.1%)이다. 지역 × 학교급 × 학년별 학교 수 및 학생 수 분포는 <표 III-2>~<표 III-8>에 정리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고교유형과 학제를 기준으로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등학교의 유형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유형 1(일반고): 일반고 중 일반, 종합고등학교
- 유형 2(자율고): 자율고 중 일반고등학교
- 유형 3(특성화고): 가사, 공업, 농림업, 상업, 수산, 실업, 해양고등학교, 특성화고(대안교육), 특수목적고 중 예술, 체육고등학교
- 유형 4(특수목적고): 과학, 국제, 외국어고등학교

표 III-6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 학생 수, 학교 수

구분	학생 수						학교 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75,523	70,048	67,579	73,778	76,568	75,229	601	601	601	383	383	383
경기	129,555	118,190	111,809	120,923	123,672	119,356	1,248	1,245	1,245	624	624	622
인천	27,761	24,704	23,930	25,537	26,756	25,839	248	245	249	133	133	133
강원	13,349	12,168	12,305	13,268	13,683	13,966	323	337	333	163	162	162
충북	14,857	13,363	13,092	14,128	14,436	14,505	263	263	262	127	126	127
충남	20,480	18,563	17,721	18,938	19,184	18,788	397	398	398	189	188	188
대전	14,860	13,703	13,252	14,577	15,104	14,883	148	148	148	88	88	88
세종	3,500	3,207	2,904	3,106	2,919	2,536	43	43	43	22	22	22
경북	22,240	20,121	19,758	21,144	22,107	22,081	409	401	399	274	271	273
경남	33,120	29,490	28,334	30,553	31,453	31,086	510	507	504	269	267	266
부산	26,461	24,032	23,562	25,834	27,339	26,917	307	307	307	173	173	172
대구	22,191	20,167	20,281	21,868	23,692	22,841	228	228	228	125	123	121
울산	11,652	10,378	9,976	10,682	11,221	10,763	118	119	119	63	63	62
전북	17,201	15,607	15,692	17,101	17,792	18,044	392	390	391	209	209	209
전남	16,362	14,945	14,470	15,877	16,475	16,757	416	412	413	252	250	249
광주	15,829	14,400	13,958	15,219	16,372	15,994	155	155	155	90	90	90
제주	6,883	6,389	6,139	6,351	6,688	6,452	115	116	114	45	45	45
합계	471,824	429,475	414,762	448,884	465,461	456,037	5,921	5,915	5,909	3,229	3,217	3,212

표 III-7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생 수

	유형 1 (일반고)			유형 2 (자율고)			유형 3 (특성화고)			유형 4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54,150	64,830	63,231	12,670	13,634	13,327	18,108	17,533	17,789	1,950	1,964	2,045
경기	106,704	120,516	116,190	3,795	3,769	3,695	18,672	19,001	19,297	2,550	2,549	2,475
인천	19,246	21,761	21,391	1,776	2,014	1,940	6,781	7,110	7,087	814	819	688
강원	12,325	13,684	13,656	155	153	145	3,113	3,354	3,081	180	175	202
충북	9,956	11,131	10,722	1,521	1,531	1,500	4,713	4,985	4,991	251	236	207
충남	14,990	16,185	15,535	1,885	1,896	1,989	5,110	5,822	5,597	248	234	215
대전	10,177	12,011	11,792	2,655	2,588	2,578	3,384	3,538	3,369	429	422	381
세종	2,248	2,034	1,713	201	201	203	134	145	138	194	193	193
경북	17,811	19,785	19,656	2,574	2,665	2,646	5,877	6,365	6,251	224	214	178
경남	26,628	29,897	29,600	2,508	2,716	2,671	4,986	5,248	5,201	518	512	462
부산	18,455	21,313	20,954	3,104	3,471	3,480	7,948	8,410	8,469	1,178	1,114	1,067
대구	15,532	17,781	18,053	4,774	5,440	5,433	5,902	6,186	6,089	325	320	287
울산	8,749	10,315	10,260	963	992	1,033	2,850	2,888	2,902	229	230	221
전북	15,268	16,943	16,471	1,012	1,000	961	4,519	5,017	4,922	222	219	182
전남	11,893	13,402	13,234	1,906	2,201	2,160	5,649	6,034	5,979	205	206	173
광주	13,451	15,192	14,813	1,069	1,081	1,091	3,587	3,990	4,030	97	93	94
제주	4,981	5,456	5,162	.	.	.	2,021	2,150	2,108	142	141	119
합계	362,564	412,236	402,433	42,568	45,352	44,852	103,354	107,776	107,300	9,756	9,641	9,189

표 III-8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학교 수

	유형 1 (일반고)			유형 2 (자율고)			유형 3 (특성화고)			유형 4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188	186	186	41	41	41	81	81	81	10	10	10
경기	364	362	353	13	13	13	82	82	82	13	13	13
인천	80	80	79	8	8	8	31	31	31	6	6	5
강원	86	86	86	1	1	1	28	28	28	2	2	2
충북	47	46	46	6	6	6	29	29	29	2	2	2
충남	68	67	67	9	9	9	38	38	38	2	2	2
대전	38	38	38	7	7	7	14	14	14	3	3	3
세종	12	10	9	1	1	1	1	1	1	2	2	2
경북	116	116	117	12	12	12	56	56	56	3	3	3
경남	139	138	138	10	10	10	39	39	39	4	4	4
부산	81	81	81	14	14	14	41	41	42	7	7	7
대구	51	50	50	17	17	17	22	22	22	3	3	3
울산	38	37	36	4	4	4	13	13	13	2	2	2
전북	94	94	94	3	3	3	34	34	34	2	2	2
전남	78	78	78	8	8	8	55	55	54	2	2	2
광주	46	46	46	4	4	4	16	16	16	1	1	1
제주	18	18	18	.	.	.	10	10	10	2	2	2
합계	1,544	1,533	1,522	158	158	158	590	590	590	66	66	65

표 III-9 초등학교, 중학교 지역×학년별×성별 학생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남학생 수			여학생 수			남학생 수			여학생 수		
	4학년	5학년	6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38,714	36,132	34,903	36,809	33,916	32,676	38,234	39,774	39,227	35,544	36,794	36,002
경기	66,188	60,578	57,451	63,367	57,612	54,358	62,153	63,878	61,875	58,770	59,794	57,481
인천	14,152	12,732	12,261	13,609	11,972	11,669	13,122	13,739	13,372	12,415	13,017	12,467
강원	6,958	6,282	6,399	6,391	5,886	5,906	6,920	7,081	7,327	6,348	6,602	6,639
충북	7,672	6,819	6,792	7,185	6,544	6,300	7,405	7,543	7,623	6,723	6,893	6,882
충남	10,617	9,604	9,089	9,863	8,959	8,632	9,755	9,924	9,890	9,183	9,260	8,898
대전	7,559	7,075	6,884	7,301	6,628	6,368	7,539	7,785	7,815	7,038	7,319	7,068
세종	1,711	1,642	1,465	1,789	1,565	1,439	1,543	1,472	1,271	1,563	1,447	1,265
경북	11,519	10,514	10,280	10,721	9,607	9,478	11,207	11,654	11,734	9,937	10,453	10,347
경남	17,050	15,285	14,736	16,070	14,205	13,598	16,122	16,622	16,414	14,431	14,831	14,672
부산	13,612	12,389	12,215	12,849	11,643	11,347	13,272	14,285	14,052	12,562	13,054	12,865
대구	11,336	10,485	10,642	10,855	9,682	9,639	11,427	12,480	12,244	10,441	11,212	10,597
울산	5,996	5,422	5,251	5,656	4,956	4,725	5,652	5,979	5,650	5,030	5,242	5,113
전북	8,826	8,005	8,235	8,375	7,602	7,457	8,842	9,148	9,539	8,259	8,644	8,505
전남	8,379	7,620	7,404	7,983	7,325	7,066	8,284	8,565	8,720	7,593	7,910	8,037
광주	8,275	7,456	7,224	7,554	6,944	6,734	7,914	8,566	8,325	7,305	7,806	7,669
제주	3,510	3,350	3,265	3,373	3,039	2,874	3,342	3,508	3,464	3,009	3,180	2,988
합계	242,074	221,390	214,496	229,750	208,086	200,266	232,733	242,003	238,542	216,151	223,458	217,495

표 III-10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남학생 수

	유형 1 (일반고)			유형 2 (자율고)			유형 3 (특성화고)			유형 4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6,619	32,445	31,304	8,698	9,325	9,207	8,449	8,021	8,193	723	738	732
경기	55,398	62,555	59,966	1,837	1,820	1,747	10,099	10,380	10,502	816	826	796
인천	9,883	11,191	11,147	1,005	1,182	1,188	3,505	3,650	3,676	410	386	282
강원	6,122	6,855	6,726	85	87	77	2,020	2,256	2,029	94	78	91
충북	4,925	5,543	5,295	923	894	874	2,609	2,832	2,813	95	87	66
충남	7,435	8,118	7,868	1,114	1,098	1,187	3,014	3,414	3,247	90	77	66
대전	4,766	5,645	5,617	1,896	1,839	1,834	1,934	1,997	1,916	199	171	151
세종	1,076	1,006	836	94	89	82	117	119	125	94	109	104
경북	8,514	9,688	9,457	1,649	1,673	1,722	3,851	4,136	4,120	111	95	79
경남	12,796	14,632	14,191	1,975	2,145	2,181	3,315	3,435	3,353	233	225	149
부산	8,955	10,631	10,400	1,690	1,934	1,917	4,859	5,108	5,205	509	454	433
대구	7,610	8,833	8,689	2,533	2,910	2,976	3,714	3,869	3,852	166	178	144
울산	4,495	5,247	5,187	531	556	566	1,731	1,772	1,815	97	87	75
전북	7,199	8,130	7,853	882	871	833	2,742	3,056	2,994	77	78	61
전남	5,444	6,244	6,134	1,388	1,645	1,607	3,347	3,515	3,493	97	90	69
광주	6,615	7,629	7,338	675	682	671	1,980	2,226	2,191	73	80	81
제주	2,552	2,737	2,604	.	.	.	1,129	1,192	1,196	65	52	48
합계	180,404	207,129	200,612	26,975	28,750	28,669	58,415	60,978	60,720	3,949	3,811	3,427

표 III-11 고등학교 지역×학교급×학년별 여학생 수

	유형 1 (일반고)			유형 2 (자율고)			유형 3 (특성화고)			유형 4 (특수목적고)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서울	27,531	32,385	31,927	3,972	4,309	4,120	9,659	9,512	9,596	1,227	1,226	1,313
경기	51,306	57,961	56,224	1,958	1,949	1,948	8,573	8,621	8,795	1,734	1,723	1,679
인천	9,363	10,570	10,244	771	832	752	3,276	3,460	3,411	404	433	406
강원	6,203	6,829	6,930	70	66	68	1,093	1,098	1,052	86	97	111
충북	5,031	5,588	5,427	598	637	626	2,104	2,153	2,178	156	149	141
충남	7,555	8,067	7,667	771	798	802	2,096	2,408	2,350	158	157	149
대전	5,411	6,366	6,175	759	749	744	1,450	1,541	1,453	230	251	230
세종	1,172	1,028	877	107	112	121	17	26	13	100	84	89
경북	9,297	10,097	10,199	925	992	924	2,026	2,229	2,131	113	119	99
경남	13,832	15,265	15,409	533	571	490	1,671	1,813	1,848	285	287	313
부산	9,500	10,682	10,554	1,414	1,537	1,563	3,089	3,302	3,264	669	660	634
대구	7,922	8,948	9,364	2,241	2,530	2,457	2,188	2,317	2,237	159	142	143
울산	4,254	5,068	5,073	432	436	467	1,119	1,116	1,087	132	143	146
전북	8,069	8,813	8,618	130	129	128	1,777	1,961	1,928	145	141	121
전남	6,449	7,158	7,100	518	556	553	2,302	2,519	2,486	108	116	104
광주	6,836	7,563	7,475	394	399	420	1,607	1,764	1,839	24	13	13
제주	2,429	2,719	2,558	.	.	.	892	958	912	77	89	71
합계	182,160	205,107	201,821	15,593	16,602	16,183	44,939	46,798	46,580	5,807	5,830	5,762

## 8. 표본설계

### 1) 표본크기

표본크기는 표본추출방법과 모집단의 특성 및 층화방법 등의 영향을 받지만, 단순임의추출의 상황 하에서 통계분석 단위별로 평균 추정치의 목표오차  $d$ 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통제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s)^2}{Nd^2 + (zs)^2}$$

여기에서  $N$ 은 모집단의 크기이고,  $s$ 는 관심변수의 표준편차이며,  $z$ 은 신뢰계수이다(신뢰수준 95% 하에서  $z = 1.96$ 이다).

조사내용이 비율인 경우에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본크기는 아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n = \frac{Nz^2pq}{Nd^2 + z^2pq}$$

여기에서  $p$ 는 비율의 값이며  $q = 1 - p$ 이다. 본 연구에서는 1차 표본추출 단위가 학교이고 추출된 학교에서 표본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의 모든 학생을 조사하는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할 것이므로, 목표오차를 실제로  $d$  이하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산출한 값보다 표본크기를 더 크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사에 따른 소요비용과 조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전체 목표 표본크기는 조사의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9,000명(초등학교: 2,727명, 중학교: 2,840명, 고등학교: 3,433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때 모비율의 추정에 대하여 예상되는 표본오차는 단순임의추출을 가정하는 경우 95%

신뢰수준 하에서 약  $\pm 1.0\%P$ 이다. 층화집락추출의 상황 하에서의 실제 표본오차는 이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충분히 허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 2) 층화

조사내용의 특성과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모집단을 2017년 4월 교육통계DB 기준의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기초로 지역구분과 학교구분을 층화변수로 고려한다. 즉,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구분 : 광역 시도 (17개)
- 학교구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6개)
- 학년 (3개)

단, 고등학교 중 유형 2(자율고)와 유형 3(특성화고)은 광역시도별로 층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묶어서 층화한다. 또한 유형 4(특수목적고)는 지역별 층화를 수행하지 않는다.

표 III-12 학교급×학년별 모집단 크기, 목표 표본크기

학교급	학년	모집단크기		단순비례배분 목표 표본크기	변형비례배분 예상 표본크기	
초등학교	4	471,824	1,316,061 (30.3%)	2,727 (30.3%)	2,592 (28.6%)	
	5	429,475				
	6	414,762				
중학교	1	448,884	1,370,382 (31.6%)	2,840 (31.6%)	2,772 (30.6%)	
	2	465,461				
	3	456,037				
고등학교	유형 1 (일반고)	1	362,564	1,177,233 (27.1%)	2,439 (27.1%)	2,430 (26.8%)
		2	412,236			
		3	402,433			
	유형 2 (자율고)	1	42,568	132,772 (3.1%)	275 (3.1%)	450 (5.0%)
		2	45,352			
		3	44,852			
	유형 3 (특성화고)	1	103,354	318,430 (7.3%)	660 (7.3%)	675 (7.5%)
		2	107,776			
		3	107,300			
	유형 4 (특수목적고)	1	9,756	28,586 (0.7%)	59 (0.7%)	132 (1.5%)
		2	9,641			
		3	9,189			
합계		4,343,464 (100.0%)		9,000 (100.0%)	9,051 (100.0%)	

표 III-13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생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학교	특수목적고	
서울	442	467	378	46	197	59	
경기	745	754	711	67	84		
인천	158	162	129				
강원	78	85	82	44	95		
충북	86	89	66				
충남	118	118	97				
대전	87	92	70				
세종	20	18	12				
경북	129	135	119	74	221		
경남	188	193	178				
부산	153	166	126				
대구	130	142	106				
울산	66	68	61				
전북	100	110	101	43	62		
전남	95	102	80				
광주	92	99	90				
제주	40	40	32				
합계	2,727	2,840	2,439				275

\* 총계: 9,000명

표 III-14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학교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학교	특수목적고
서울	18.4	16.7	12.6	1.5	7.9	2.7
경기	31.0	26.9	23.7	2.2	3.4	
인천	6.6	5.8	4.3			
강원	3.3	3.0	2.7	1.5	3.8	
충북	3.6	3.2	2.2			
충남	4.9	4.2	3.2			
대전	3.6	3.3	2.3			
세종	0.8	0.6	0.4			
경북	5.4	4.8	4.0	2.5	8.8	
경남	7.9	6.9	5.9			
부산	6.4	5.9	4.2			
대구	5.4	5.1	3.5			
울산	2.8	2.4	2.0			
전북	4.2	3.9	3.4	1.4	2.5	
전남	4.0	3.6	2.7			
광주	3.8	3.5	3.0			
제주	1.7	1.4	1.1			
합계	113.6	101.4	81.3	9.2	26.4	2.7

\* 총계: 334.6개

표 III-15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교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학교	특수목적고	
서울	15(5)	15(5)	12(4)	3(1)	9(3)	6(2)	
경기	27(9)	24(8)	21(7)	3(1)	3(1)		
인천	6(2)	6(2)	3(1)				
강원	3(1)	3(1)	3(1)	3(1)	3(1)		
충북	3(1)	3(1)	3(1)				
충남	6(2)	3(1)	3(1)				
대전	3(1)	3(1)	3(1)				
세종	3(1)	3(1)	3(1)				
경북	6(2)	6(2)	3(1)	3(1)	9(3)		
경남	9(3)	6(2)	6(2)				
부산	6(2)	6(2)	3(1)				
대구	6(2)	6(2)	3(1)				
울산	3(1)	3(1)	3(1)				
전북	3(1)	3(1)	3(1)	3(1)	3(1)		
전남	3(1)	3(1)	3(1)				
광주	3(1)	3(1)	3(1)				
제주	3(1)	3(1)	3(1)				
합계	105(35)	99(33)	81(27)				15(5)

\* ( ) 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 수임. 총계: 336(108)개

표 III-16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예상 표본크기, 학생 수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	자율고	특성학교	특수목적고	
서울	360	420	360	90	225	132	
경기	648	672	630	90	75		
인천	144	168	90				
강원	72	84	90	90	75		
충북	72	84	90				
충남	144	84	90				
대전	72	84	90				
세종	72	84	90				
경북	144	168	90	90	225		
경남	216	168	180				
부산	144	168	90				
대구	144	168	90				
울산	72	84	90				
전북	72	84	90	90	75		
전남	72	84	90				
광주	72	84	90				
제주	72	84	90				
합계	2,592	2,772	2,430				450

\* 총계: 9,051명

### 3) 표본배분

학생 수에 단순비례하도록 지역구분×학교급=62개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III-8>과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조사하되 선정된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할 것이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면 <표 III-9>와 같이 조사될 학교 수가 할당된다. 결론적으로 총 336개 정도의 학교가 조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한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라 지역의

자율고 고등학교에 43명(학년당 약 14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렇게 소수의 표본만 조사한다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한 학급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므로 실제로는 학년당 약 30명의 학생이 조사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표본크기가 목표한 것보다 커지게 된다. 아니면 전라 지역의 자율고에 대해서는 한 학급에서 14명만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 즉, 목표보다 표본크기가 커지는 것을 허용하든가 아니면, 다른 층에서 일부 표본크기를 줄여서 변형비례배분 형태의 표본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표 III-7>에서 볼 수 있듯이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여도 단순비례배분에 비하여 각 층의 표본크기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 하에 학교 수 및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변형비례배분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62개 각 층에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가 할당되도록 한다.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 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 수를 할당하되 조사될 예상 학생 수가 9,000명을 넘도록 한다.

조사모집단의 전국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대략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28명, 고등학교 일반고(유형 1) 30명, 자율고(유형 2) 30명, 특성화고(유형 3) 25명, 특수목적고(유형 4) 22명이다. 따라서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되, 위의 원칙과 상황을 고려하여 보완함으로써 각 층별 조사될 학교 수를 결정하고 예상되는 조사 학생 수를 계산하면 <표 III-10> 및 <표 III-11>과 같다.

#### 4) 표본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III-10>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한다. 즉,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학교급=62개 층 내에서 조사대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한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한다.

추출된 학교 층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한다. 또한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하며, 지역별 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한다.

#### 5) 성별 사후층화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및 학급을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사 시에는 성별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다. 즉, 성별은 매우 중요한 변수이지만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시 성별을 고려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성별 분포가 모집단 분포와 다르게 조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후층화 가중치를 통해 표본에서의 성별 분포의 편향을 조정하고자 한다.

## 9. 가중치와 모수추정

### 1) 가중치

본 조사의 표본추출은 일종의 층화집락추출법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구분과 지역구분을 층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각 층에서 일차추출단위인 학교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추출된 표본학교에서는 학급을 랜덤하게 선정한 후에 학생을 조사하므로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학생을 랜덤하게 선정하여 조사하는 이단집락추출법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표본추출률을 아래 식과 같다.

$$f_{hij} = n_h \frac{B_{hi}}{\sum_{i=1}^{N_h} B_{hi}} \cdot \frac{n_{hi}}{B_{hi}} = n_h \frac{n_{hi}}{\sum_{i=1}^{N_h} B_{hi}}$$

여기에서  $N_h$ 는  $h$ 층에 속한 전체 학교의 수이고,  $n_h$ 는  $h$ 층의 표본 학교 수이며,  $B_{hi}$ 는  $h$ 층에서  $i$ 번째 학교의 학생 수를 나타내고,  $n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에 착수한 학생 수를 나타낸다.

표본추출률에 대한 가중치(설계 가중치)는 추출률의 역수이므로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W_{hij} = \frac{\sum_{i=1}^{N_h} B_{hi}}{n_h n_{hi}}$$

그리고 최초 표본단위가 단위무응답인 경우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최초 목표 표본크기( $n_{hi}$ )를 유효 표본크기( $r_{hi}$ )로 나누어 조정하였다. 즉, 기본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조정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ij}^a = \frac{\sum_{i=1}^{N_h} B_{hi}}{n_h n_{hi}} \times \frac{n_{hi}}{r_{hi}} = \frac{\sum_{i=1}^{N_h} B_{hi}}{n_h r_{hi}}$$

여기에서  $r_{hi}$ 는 추출된 표본학교에서 조사가 완료된 학생 수를 나타낸다.

또한 각 세부 층의 성별( $k=1,2$ ) 모집단 크기를 반영하여 사후층화 가중치를 산출한다. 즉, 사후층화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_{h(k)j}^b = \frac{N_{h(k)}}{\sum_{l=1}^{n_{h(k)}} W_{h(k)j}^a}$$

여기에서  $N_{h(1)}$ 과  $N_{h(2)}$ 는 각 세부 층에 속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모집단 크기이고,  $\sum W_{h(k)j}^a$ 는 각 세부 층의 성별 기본 가중치의 합계이다.

최종 가중치는 기본 가중치와 사후층화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W_{h(k)ij}^f = W_{hij}^a \times W_{h(k)j}^b$$

## 2) 모수추정

### (1) 용어 정의

- $Y_{hij}$  : 관측치 (각 조사항목에 대한 응답)
- $h$  : 층의 번호 ( $h = 1, 2, \dots, H$ ). 학교×지역구분에 따른 번호.
- $i$  : 각 층 내에서의 집락(학교)의 번호 ( $i = 1, 2, \dots, n_h$ ).
- $j$  : 각 집락 내의 학생의 번호 ( $j = 1, 2, \dots, m_{hi}$ ).

- $m_{hi}$  :  $h$ 번째 층의  $i$ 번째 집락으로부터 추출된 학생 수.
- $w_{hij}$  : 표본 가중치
- $h$ 번째 층,  $i$ 번째 집락,  $j$ 번째 학생에 대한 표본 가중치
- $n = \sum_{h=1}^H \sum_{i=1}^{n_h} m_{hi}$  : 전체 표본크기.

(2) 모평균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수치형(numerical) 변수인 경우,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표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Ratio estimator)으로 계산됨.

- $\bar{Y} = \left(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 \right) / w \dots$  :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

- $w \dots = \sum_{h=1}^H \sum_{i=1}^{n_h} \sum_{j=1}^{m_{hi}} w_{hij}$  : 표본 가중치의 합계

(3) 모비율에 대한 추정

- 관찰값  $Y_{hij}$ 가 범주형(categorical) 변수인 경우, 각 범주  $c_k$ 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이 지시변수(indicator variable)를 생성함.

- $Y_{hij}^{(c_k)} = I(Y_{hij} = c_k) = \begin{cases} 1, & \text{if } Y_{hij} = c_k \\ 0, & \text{otherwise} \end{cases}$

- $c_k$  :  $Y_{hij}$ 가 가질 수 있는 범주의 값 ( $k = 1, \dots, l$ )

이러한 지시변수  $Y_{hij}^{(c_k)}$ 로부터 모평균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중평균을 계산하여 범주  $c_k$ 의 모비율에 대한 추정치를 계산함.

(4) 분산의 추정

-  $\widehat{V}(\bar{Y}) = \sum_{h=1}^H \widehat{V}_h(\bar{Y})$  : 분산의 추정치

-  $N_h$  : 층  $h$ 의 총 집락의 수

-  $f_h$  :  $h$ 번째 층의 표본추출율,  $n_h/N_h$ .

-  $n_h > 1$  일 때,  $\widehat{V}_h(\bar{Y}) =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cdot} - \bar{e}_{h..})^2$

$$e_{hi\cdot} = \left( \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hi\cdot}$$

$$\bar{e}_{h..} = \left( \sum_{i=1}^{n_h} e_{hi\cdot} \right) / n_h$$

-  $n_h = 1$  일 때,

$$\widehat{V}_h(\bar{Y}) = \begin{cases} \text{missing, if } n_{h'} = 1 \text{ for } h' = 1, 2, \dots, H \\ 0, \text{ if } n_{h'} > 0 \text{ for some } 1 \leq h' \leq H \end{cases}$$

(5) 표준오차,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

-  $\text{StdErr}(\bar{Y}) = \sqrt{\widehat{V}(\bar{Y})}$  : 표준오차의 추정치

-  $z_{\alpha/2} \times \text{StdErr}(\bar{Y})$  : 오차한계(표본오차)의 추정치, 95% 신뢰수준의 경우 ( $\alpha=0.05$ )  $z_{\alpha/2}=1.96$ 임.

## ○ ————— 제4장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3. 폭력 및 학대
-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7. 특별보호조치



##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1) 인권일반

#### (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 ① 아동·청소년인권관련 법·제도<sup>16)</sup>

2018년에 이루어진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하면 다

- 13) 이 장은 황세영 부연구위원, 유민상 부연구위원, 이민희 교수, 김진호 교수가 집필하였다. 황세영 부연구위원은 1절(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2절(시민적 권리와 자유)을, 유민상 부연구위원은 3절(폭력 및 학대), 4절(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을, 김진호 교수가 5절(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과 7절(특별보호조치)을, 이민희 교수가 6절(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을 집필하였다.
- 14) 인권 모니터링 자료는 두 가지 성격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행정데이터나 2차 자료, 다른 하나는 이 연구의 서베이 자료이다. 행정데이터나 2차 자료의 경우 되도록 인용한 모든 자료의 출처를 세세히 밝히고자 하였으나, 인용할 자료의 양이 방대할 경우 이 연구의 과거 보고서를 인용하거나 재인용하였다. 이 연구의 서베이 자료는 교차분석표로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조사되는 문항의 경우 연차별 추이도 제시하였다.
- 15) 서베이자료의 결과는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교차분석 시 학교급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세 집단을 기본으로 분석하였으며, 고등학교 세부유형별 분석을 한 경우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계고등학교’로 구분하였다. ‘일반계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 상 ‘일반고, 특수목적고 일부(외고, 과학고 등), 자율고’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반고’보다 더 큰 범위의 용어이고, ‘특성화계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 제91조)에서 말하는 ‘특성화고’ 뿐만 아니라 특수목적고 중에서 예술, 체육, 산업수요 맞춤형 학교를 포괄하는 용어로, ‘특성화고’ 보다 더 큰 개념의 구분이다(김영지 외, 2016).
- 16)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8년 10월 12일 검색.

음과 같다.

먼저 아동수당법(공포 2018.3.27., 시행 2018.9.1.)이 제정되어 경제 수준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의 6세 미만의 아동에 매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아동복지법 개정(개정 2017.10.24., 시행 2018.4.25.)을 통해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 체계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 구축,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공공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 관리 및 운영 위탁, 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 관련 연차보고서 작성 등을 명시하여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2017.12.19., 시행 2018.6.20.)이 개정되어 판사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 상담·치료 위탁하도록 하여 정서적·심리적 차원의 피해아동 보호 규정을 보완하였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017.10.24., 시행 2018 4.25.)을 통하여 사전등록 신청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 등록 후 해당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종아동 조기발견 지침의 교육·훈련 및 효과적인 점검을 위하여 대상 시설의 신고, 허가 등의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2018.3.13., 시행 2018.9.14.) 개정을 통하여 지자체 공공시설 및 교육청이 설치하는 교육문화회관, 어린이회관 등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하였다.

청소년 기본법(개정 2017.12.12., 시행 2018.6.13.)을 통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서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안 사항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한다고 명시하는 등,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보호법(개정 2017.12.12., 시행 2018.3.13.) 개정을 통하여 유해 매체물의 항목 가운데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인터넷신문’을 제외하던 것에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만을 제외하도록 하여 인터넷신문을 통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 2017.12.12., 시행 2018.6.13.) 개정을 통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018. 1.16., 시행 2018.7.17.)의 개정을 통하여 건강진단 외에도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개정 2018.2.2.1., 시행 2018.5.22.)의 개정을 통하여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 있어 다른 학교와 학칙을 다르게 규정하는 차별을 시정하고, 해당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개정 2017.12.12., 시행 2018.6.13.)의 개정을 통하여 학교에서의 다문화이해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교육 또는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고, 결혼이민자 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또는 교육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 2018.1.16., 시행 2018.7.17.)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며, 이혼자, 출산 전 임신부,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지 않은 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19.2.15., 제정 2018.8.14.) 제정을 통하여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계획 마련 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와 아동권리협약의 이념을 반영하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2018년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제정 2018.4.5.), 은평구(제정 2018.7.5.), 중구(제정 2018.3.7.), 대전광역시 대덕구(제정 2018.4.6.), 구리시(제정 2018.4.30.), 익산시(제정 2018.4.13.), 포항시(제정 2018.8.7.), 김해시(제정 2018.2.9.)에서 아동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되었고, 전라남도 화순군(제정 2018.2.27.)에서는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례가 제정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 증진과 관련하여 2018년에 제정된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제정 2018.3.2.), 고양시(제정 2018.3.30.), 천안시(제정 2018.4.23.)의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제정 2018.1.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제정 2018.1.2.)가 있다.

아동영향평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2018년에 완주군(제정 2018.3.15.)이 추가됨에 따라 총 7곳으로 늘어났다. 아동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아동권리지킴이의 구성원에 '아동'을 명시한 경우는 완주군, 서울 강동구, 계룡시 등 3곳으로 나타난다.

## ②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인권전담기구로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에는 아동권리위원회가 설치되고, 2017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청소년인권과가 설치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청소년 인권 담당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센터에서는 교원 및 시민(청소년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하여, 국제아동탈취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 의견표명, 아동 대상 총기 체험 행사에 관한 의견표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초등학교 비뇨기 검진 시 인격권 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지원 시 인터넷 사용 양태 정보 수집 관련 의견표명, 특성화고 취업 관련 홍보물 게시에 관한 의견표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출생등록 통보제도 개선 권고, 학교 생활에서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학교 거점 위기 청소년 보호체계 관련 정책 검토,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권평가지표 마련을 통해 아동 인권 사각지대의 취약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sup>17)</sup>.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의견 표명 또는 관련 활동으로는 학교 내 대자보 게시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2018. 1. 31), 선거권 연령 하향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2018. 2. 7), 원생 의사 무시한 아동양육시설 진학지도는 인권침해(2018. 2. 28),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 축소·은폐한 교사 징계 권고(2018. 3. 13), 자폐증 학생에게 한자쓰기 강요는 ‘장애인 괴롭힘’(2018. 4. 10),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2018. 5. 3), 거주 아동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는 인권침해(2018. 5. 9), 초등학교 출석번호, 남학생만 앞 번호 지정은 성차별(2018. 7. 3),

17) 국가인권위원회(2018d), “인권위 ‘2017년 연간보고서’ 발간”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7&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2920> (검색일: 2018년 10월 12일)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토론회(2018. 6. 22) 등이 있다<sup>18)</sup>.

한편 여성가족부 사업으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희망센터의 권리교육 사업이 있다. 청소년희망센터는 청소년 권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권리교육 강사 양성,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권리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 권리보호 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청소년 대상 권리교육은 전국 초·중·고교 및 청소년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기관에 강사 파견을 통해 찾아가는 청소년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청소년 권리교육 강사양성과정은 사전교육, 기초교육, 현장실습, 심화교육 등으로 진행되며, 이 밖에도 초등용, 중·고등용, 청소년지도자용 인권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 맞춤형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sup>19)</sup>.

### ③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본 연구에서는 유아·초중등교육, 소년사법, 아동복지, 보육, 아동폭력예방, 청소년 관련 예산 등 정책 사업으로 그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항목들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으로 포함시키고 있다(김영지 외, 2017). 아동·청소년 관련예산 총액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아동·청소년 1인당 지출 비용 역시 2017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2018년에는 1인당 지출비용이 5,999천원으로 감소하였고, GDP 대비 예산 비율은 3% 미만에 이르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3·4차 정부 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재원의 증가를 제안한 바 있어, 향후 관련 예산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18) 국가인권위원회(2018c) 보도자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boardtypeid=24&menuid=001004002001> (검색일: 2018년 10월 12일)

19)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8) 청소년 권리교육 사업 [https://www.kyci.or.kr/userSite/sub02\\_11.asp](https://www.kyci.or.kr/userSite/sub02_11.asp) (검색일: 2018년 10월 12일)

표 IV-1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2013~2018)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국가예산(A)	236,225,287,896	247,203,163,288	258,585,647,374	268,387,199,393	275,010,413,607	301,417,202,896	
아동· 청소년 예산 (천원)	유아·초 등교육	41,523,622,672	41,465,434,441	39,565,607,727	41,511,850,346	47,149,425,794	53,716,467,248
	소년사법	13,991,000	16,981,000	20,331,000	20,960,000	22,371,000	23,967,000
	아동복지	239,061,000	213,511,000	222,801,000	229,831,000	245,178,000	189,758,000
	보육	4,131,345,000	5,273,819,000	4,943,994,000	5,270,824,000	5,373,451,000	5,505,231,000
	아동폭력 예방	6,811,000	10,397,000	12,482,000	13,650,000	11,773,000	12,251,000
	청소년	57,527,000	67,694,000	67,711,000	68,691,000	87,169,000	12,230,000
	소계(B)	45,972,357,672	47,047,836,441	44,832,926,727	47,115,806,346	52,889,367,794	59,459,904,248
	(B)/(A)*100(%)	19.5	19.0	17.3	17.6	19.2	19.7
아동청소년 인구 (명)	9,431,699	9,186,841	8,961,805	8,736,051	8,587,747	8,954,106	
1인당 지출비용	4,874	5,121	5,003	5,393	6,159	5,999	
GDP	1,429.4조원	1,486.1조원	1,564.1조원	1,641.8조원	1,730.4조원	-	
GDP 대비 아동· 청소년 예산비율 (%)	3.2	3.2	2.9	2.9	2.7	-	

\* 예산 출처: 기획재정부(2013). 2013 나라살림 예산. pp.3, 116, 167, 271-272, 278, 277, 315, 317-318.  
 기획재정부(2014). 2014 나라살림 예산. pp.3, 134, 175, 263-264, 269, 268, 302-305.  
 기획재정부(2015). 2015 나라살림 예산. pp.3, 129, 164, 168, 255-256, 261, 260, 294, 296-297.  
 기획재정부(2016). 2016 나라살림 예산. pp.3, 117, 167, 171, 252-253, 258, 257, 291, 293.  
 기획재정부(2017). 2017 나라살림 예산. pp.3, 117, 165, 169, 249, 254, 255, 286, 287, 288.  
 기획재정부(2018). 2018 나라살림 예산. pp.3, 115, 161, 165, 248, 253, 254, 286, 287, 288.  
 \* 아동·청소년 예산 산출식: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 기준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051항 유아 및 초중등교육) + (소년사법 예산: 1137항 여성아동인권증진+1632항 소년보호) + (아동복지 예산: 1300항 요보호아동+1400항 아동복지 +1000항 아동·청소년정책) + (보육 예산: 3100항 보육지원) + (아동폭력예방 예산: 4131항 아동·여성안전정책지원 +4132항 아동·청소년성보호정책지원) + (청소년 예산: 2100항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2200항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 인구 출처(~18세 미만): 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에서 2018년 7월 15일 인출.  
 \* GDP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 에서 2018년 8월 15일 인출.  
 \* GDP 대비 아동·청소년 예산비율(%) 산출식: 아동·청소년 예산(총계)/GDP×100

## (2) 인권에 대한 인식

‘인권일반’ 중분류 중 두 번째 소분류 항목은 ‘인권에 대한 인식’으로,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 인권의식 및 태도 항목으로 구성된다.

### ①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 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인권에 대한 인식’ 소분류의 첫 번째 지표항목은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인지도 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고 있다. 2018년 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44%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이름만 들어봤다’는 44.2%,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는 11.8%로 응답하여,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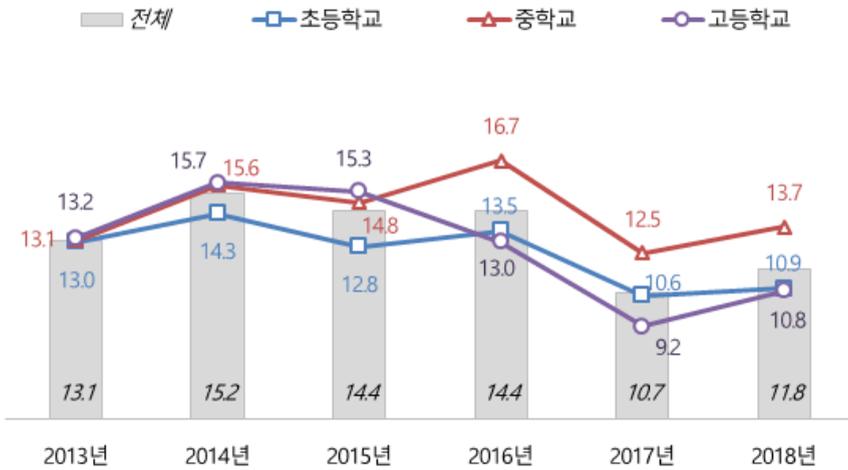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 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chi^2$	
전체	44.0	44.2	11.8	100.0(9,052)		
성별	남학생	45.9	42.1	11.9	100.0(4,701)	17.823***
	여학생	42.0	46.4	11.6	100.0(4,351)	
학교급	초등학교	54.0	35.1	10.9	100.0(2,742)	180.271***
	중학교	37.7	48.6	13.7	100.0(2,857)	
	고등학교	41.4	47.7	10.8	100.0(3,453)	
지역규모	대도시	40.4	46.4	13.2	100.0(3,687)	35.416***
	중소도시	46.5	42.6	10.9	100.0(4,410)	
	읍면지역	46.6	42.9	10.5	100.0(954)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 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chi^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3.7	44.3	11.9	100.0(8,258)	6.828
	한부모가정	46.7	44.1	9.2	100.0(600)	
	조손가정	50.0	38.4	11.6	100.0(89)	
	기타	47.4	40.5	12.1	100.0(97)	
학업성적	상	40.4	43.7	15.9	100.0(2,947)	78.780***
	중	46.0	43.9	10.1	100.0(4,007)	
	하	45.3	45.6	9.1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43.2	43.7	13.1	100.0(4,982)	19.577***
	중	45.3	44.7	9.9	100.0(3,193)	
	하	44.0	45.1	10.8	100.0(870)	

\* $p < .05$ , \*\* $p < .01$ , \*\*\* $p < .001$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의 응답률에 대해 배경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남 11.9%, 여 11.6%)인 경우, 중학생(13.7%), 초등학생(10.9%), 고등학생(10.8%)의 순으로, 대도시일수록(대도시 13.2%, 중소도시 10.9%, 읍면지역 10.5%),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15.9%, 중 10.1%, 하 9.1%), 경제적 수준이 상(13.1%), 하(10.8%), 중(9.9%) 순으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IV-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1) 유엔아동권리협약(연도별 추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 문항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15.2%로 가장 높았다가 이후 감소해 왔으며, 201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으로(1.1p)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 차이를 보면, 2016년 이래로 3년 동안 고등학생의 인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나. 학생인권조례

다음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54.7%가 '모른다'고 응답하였고, '이름만 들어봤다' 38.7%,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6.6%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수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보다 낮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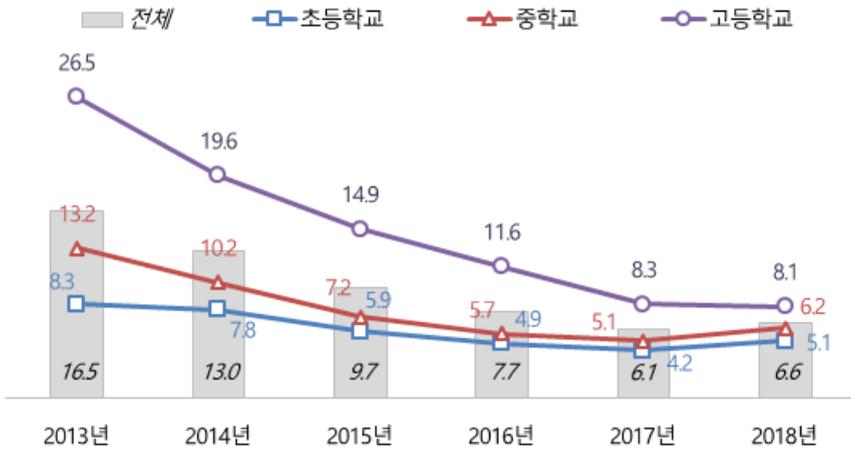
표 IV-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 봤다	이름도 들어 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chi^2$	
전체	54.7	38.7	6.6	100.0(9,050)		
성별	남학생	55.2	37.9	6.9	100.0(4,700)	3.917
	여학생	54.1	39.6	6.3	100.0(4,351)	
학교급	초등학교	61.5	33.5	5.1	100.0(2,742)	97.450***
	중학교	54.7	39.1	6.2	100.0(2,856)	
	고등학교	49.3	42.6	8.1	100.0(3,453)	
지역규모	대도시	55.7	38.4	6.0	100.0(3,687)	15.874**
	중소도시	53.0	39.7	7.3	100.0(4,409)	
	읍면지역	58.8	35.4	5.9	100.0(95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4.4	38.8	6.8	100.0(8,258)	9.187
	한부모가정	57.6	38.0	4.4	100.0(600)	
	조손가정	60.3	34.7	5.0	100.0(89)	
	기타	59.0	37.0	4.0	100.0(96)	
학업성적	상	49.8	41.1	9.1	100.0(2,947)	67.861***
	중	57.1	37.6	5.4	100.0(4,007)	
	하	57.1	37.6	5.3	100.0(2,089)	
경제적 수준	상	53.5	39.6	6.9	100.0(4,982)	25.586***
	중	57.6	37.0	5.4	100.0(3,192)	
	하	51.3	40.0	8.8	100.0(870)	

\*p<.05, \*\*p<.01, \*\*\*p<.001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이 높을수록(초 5.1%, 중 6.2%, 고 8.1%), 중소도시(7.3%), 대도시(6.0%), 읍면지역(5.9%) 순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9.1%, 중 5.4%, 하 5.3%), 경제적 수준 하(8.8%), 상(6.9%), 중(5.4%)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았다.



\*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곳인지도 알고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IV-2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2) 학생인권조례(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교인권조례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2018년에는 2017년보다 소폭(0.5%p) 상승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과 중학교에서 소폭(초 0.9%p, 중 1.1%p) 상승한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소폭(0.2%p) 하락하였다. 지난 5년간의 추이를 볼 때 2013년부터 하락해온 추세에 큰 변화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 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모른다' 29.6%, '이름만 들어봤다' 54.8%,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곳인지도 알고 있다' 15.6%로 나타나,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학생인권조례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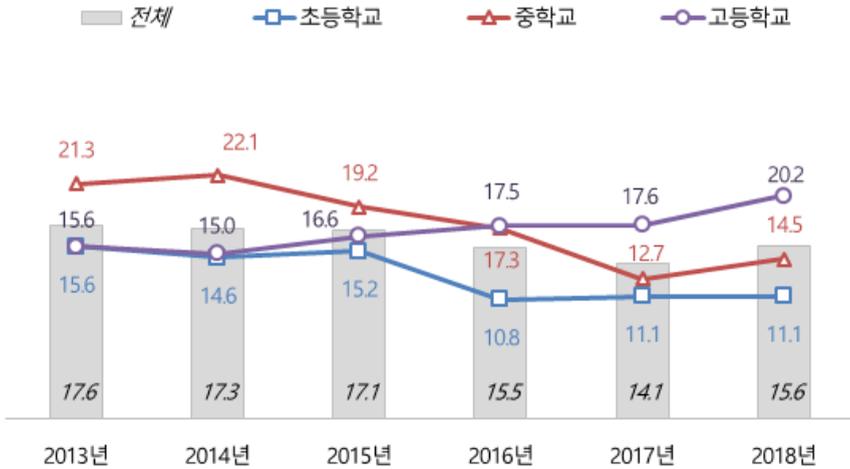
표 IV-4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곳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chi^2$	
전체	29.6	54.8	15.6	100.0(9,050)		
성별	남학생	32.2	52.4	15.3	100.0(4,699)	34.583***
	여학생	26.7	57.4	15.9	100.0(4,351)	
학교급	초등학교	35.6	53.3	11.1	100.0(2,742)	149.714***
	중학교	29.8	55.7	14.5	100.0(2,855)	
	고등학교	24.5	55.3	20.2	100.0(3,453)	
지역규모	대도시	28.0	55.0	17.0	100.0(3,687)	16.706**
	중소도시	31.0	54.8	14.3	100.0(4,409)	
	읍면지역	29.0	54.2	16.9	100.0(95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2	54.9	16.0	100.0(8,258)	16.043*
	한부모가정	31.8	55.6	12.7	100.0(600)	
	조손가정	38.8	54.0	7.3	100.0(89)	
	기타	38.0	48.1	13.9	100.0(96)	
학업성적	상	25.5	55.0	19.5	100.0(2,947)	80.167***
	중	30.0	56.1	13.9	100.0(4,007)	
	하	34.4	52.2	13.4	100.0(2,088)	
경제적 수준	상	28.3	55.2	16.6	100.0(4,982)	22.048***
	중	32.3	53.8	14.0	100.0(3,192)	
	하	27.2	56.5	16.3	100.0(870)	

\*p<.05, \*\*p<.01, \*\*\*p<.001

배경변인별로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곳인지도 알고 있다’의 응답률을 살펴 보면, 여학생(여 15.9%, 남 15.3%), 학교급이 높을수록(초 11.1%, 중 14.5%, 고 20.2%), 대도시, 읍면지역, 중소도시(대도시 17.0%, 읍면지역 16.9%, 중소도시 14.3%) 순으로, 가족 유형(양부모가정 16.0%, 기타 13.9%, 한부모가정 12.7%, 조손가정 7.3%)에 따라,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19.5%, 중 13.9%, 하 13.4%), 경제적 수준이 상(16.6%), 하(16.3%), 중(14.0%)의 순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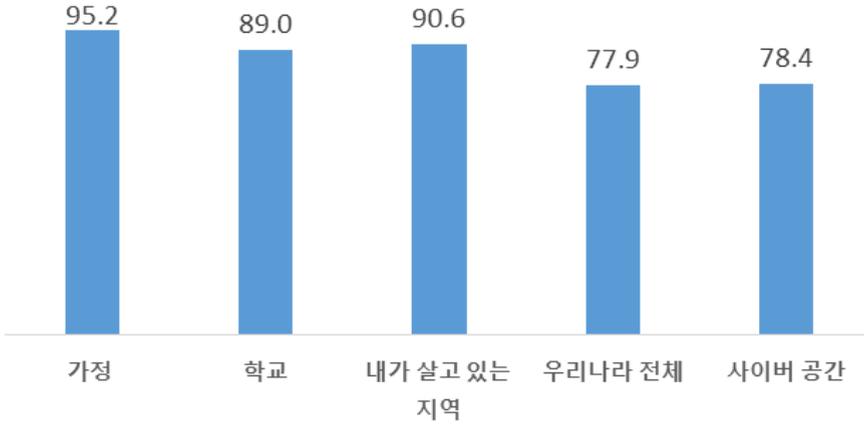
\* 주: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IV-3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_3) 국가인권위원회(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인지도가 소폭(1.5%p) 상승하였고, 중학생(1.8%p)과 고등학생(2.6%p)의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고등학생의 경우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가정, 학교, 지역, 대한민국 전체, 사이버공간)

'인권에 대한 인식'소분류의 다음 지표항목은 아동·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인권 존중정도로, 가정, 학교, 지역, 대한민국 전체, 사이버공간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4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아동·청소년의 인권 존중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가정(95.2%), 내가 살고 있는 지역(90.6%), 학교(89.0%), 사이버 공간(78.4%), 우리나라 전체(77.9%)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학교, 지역에서는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 비율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 전체와 사이버 공간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인식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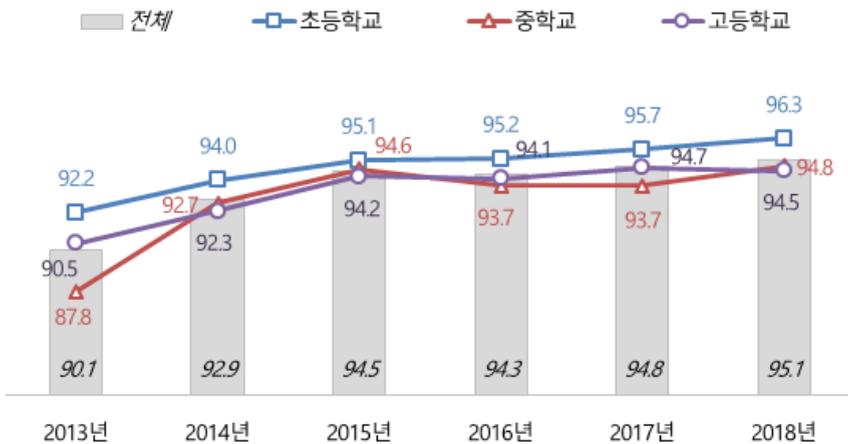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 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chi^2$	
전체	3.46(0.616)	0.8	4.0	43.7	51.5	100.0(9,053)		
성별	남학생	3.48(0.606)	0.8	3.6	42.1	53.6	100.0(4,699)	20.350 ***
	여학생	3.43(0.626)	0.9	4.6	45.3	49.2	100.0(4,354)	
학교급	초등학교	3.59(0.588)	0.7	3.0	33.3	63.0	100.0(2,740)	212.646 ***
	중학교	3.42(0.617)	0.8	4.4	46.9	47.9	100.0(2,857)	
	고등학교	3.39(0.622)	1.0	4.5	49.2	45.3	100.0(3,456)	
지역 규모	대도시	3.50(0.616)	0.9	3.7	39.6	55.8	100.0(3,687)	54.320 ***
	중소도시	3.42(0.618)	0.9	4.3	47.0	47.8	100.0(4,412)	
	읍면지역	3.47(0.597)	0.4	4.1	44.0	51.5	100.0(95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47(0.608)	0.8	3.7	43.2	52.3	100.0(8,259)	91.179 ***
	한부모가정	3.32(0.646)	0.7	7.9	50.1	41.3	100.0(601)	
	조손가정	3.32(0.884)	6.5	8.1	31.9	53.5	100.0(89)	
	기타	3.38(0.670)	2.5	3.0	48.5	46.1	100.0(97)	
학업 성적	상	3.61(0.559)	0.5	2.4	32.7	64.5	100.0(2,946)	405.189 ***
	중	3.44(0.597)	0.5	4.0	46.7	48.9	100.0(4,010)	
	하	3.28(0.673)	2.0	6.5	53.2	38.2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3.56(0.583)	0.7	2.7	36.9	59.8	100.0(4,981)	422.553 ***
	중	3.38(0.601)	0.5	4.7	51.5	43.3	100.0(3,196)	
	하	3.18(0.725)	3.1	9.5	53.4	34.0	100.0(870)	

\*p<.05, \*\*p<.01, \*\*\*p<.001

가정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를 조사한 결과, 95.1%가 긍정적으로(‘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받는다’) 응답하였고, 부정적인(‘전혀 존중받지 못한다’와 ‘존중받지 못한다’) 응답은 4.8%로 낮게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남학생(95.7%)이 여학생(94.5%)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96.3%. 중 94.8%, 고 94.5%), 읍면지역(95.5%), 대도시(95.4%), 중소도시(94.8%) 순으로, 양부모가정(95.5%), 기타(94.6%), 한부모가정(91.4%), 조손가정(85.4%) 순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97.2%, 중 95.6%, 하 91.4%),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96.7%, 중 94.8%, 하 87.4%)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 5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1) 가정(연도별 추이)

가정에서의 인권 존중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90.1%에서 2018년 95.1%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긍정적인 응답률이 소폭(초 0.6%p, 중 1.1%p) 증가하였다.

표 IV-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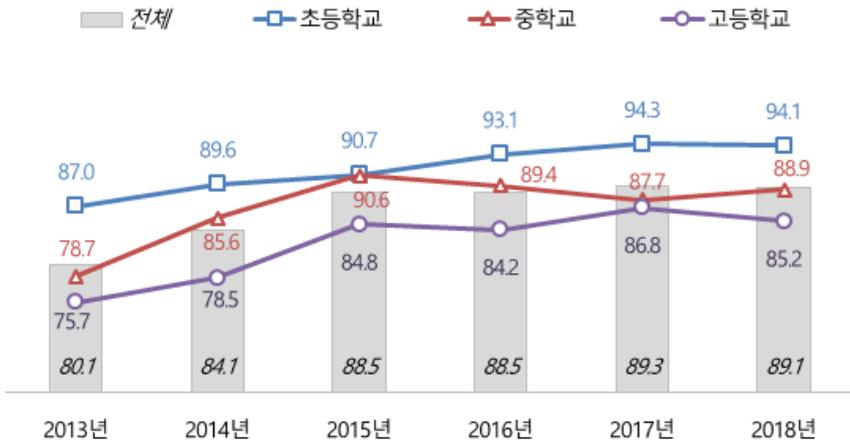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chi^2$	
전체	3.16(0.658)	2.0	8.9	60.4	28.6	100.0(9,048)	-	
성별	남학생	3.21(0.658)	1.9	7.8	58.1	32.3	100.0(4,695)	69.274***
	여학생	3.10(0.653)	2.2	10.2	62.9	24.7	100.0(4,353)	
학교급	초등학교	3.34(0.615)	0.9	5.0	53.3	40.8	100.0(2,737)	370.303** *
	중학교	3.14(0.647)	2.0	9.1	62.2	26.7	100.0(2,856)	
	고등학교	3.03(0.666)	3.0	11.8	64.6	20.6	100.0(3,455)	
지역 규모	대도시	3.21(0.660)	1.9	8.0	57.7	32.5	100.0(3,686)	53.762***
	중소도시	3.11(0.653)	2.2	9.8	62.7	25.3	100.0(4,409)	
	읍면지역	3.17(0.654)	1.9	8.7	60.3	29.1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6(0.657)	2.0	8.9	60.1	29.0	100.0(8,256)	14.837
	한부모가정	3.09(0.652)	2.3	10.3	63.9	23.5	100.0(601)	
	조손가정	3.18(0.713)	4.1	5.3	58.7	31.8	100.0(87)	
	기타	3.20(0.627)	1.9	5.6	62.6	29.9	100.0(97)	
학업 성적	상	3.31(0.663)	1.6	6.5	51.0	40.9	100.0(2,947)	473.914** *
	중	3.15(0.610)	1.5	7.8	64.8	25.9	100.0(4,008)	
	하	2.94(0.678)	3.8	14.5	65.2	16.6	100.0(2,086)	
경제적 수준	상	3.25(0.658)	1.8	7.1	56.0	35.2	100.0(4,981)	326.712** *
	중	3.09(0.623)	1.9	9.6	66.0	22.5	100.0(3,192)	
	하	2.88(0.677)	4.1	17.3	65.0	13.6	100.0(869)	

\*p<.05, \*\*p<.01, \*\*\*p<.001

학교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를 조사한 결과, 89.1%가 긍정적으로(‘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받는다’) 응답하였고, 부정적인(‘전혀 존중받지 못한다’와 ‘존중받지 못한다’) 응답은 10.9%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남학생(90.4%)이 여학생(87.6%)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94.1%. 중 88.9%, 고 85.2%), 대도시(90.2%), 읍면지역(89.4%), 중소도시(88.0%) 순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91.9%, 중 90.7%, 하 81.8%),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91.2%, 중 88.5%, 하 78.5%)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6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2) 학교(연도별 추이)

학교에서의 인권 존중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80.1%에서 2018년 89.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도에는 전년도보다 0.2%p 감소하였고, 중학생만 긍정적인 응답률이 소폭(1.2%p) 증가하였다.

표 IV-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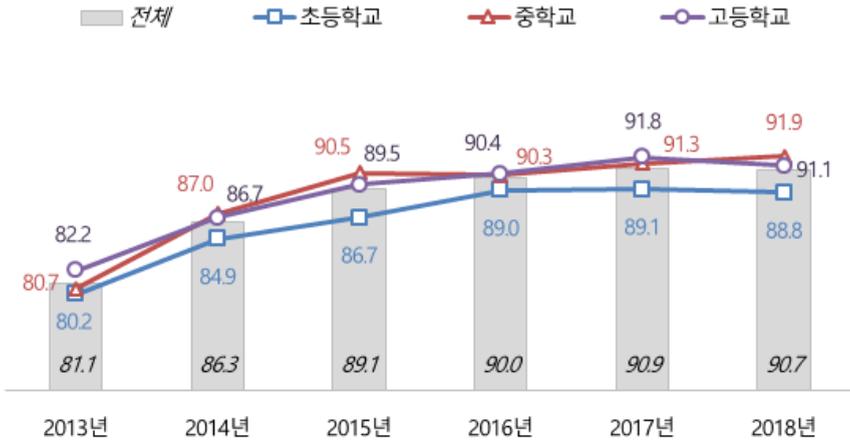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 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chi^2$	
전체	3.16(0.610)	1.2	8.1	63.8	26.8	100.0(9,039)		
성별	남학생	3.21(0.616)	1.2	7.0	61.0	30.8	100.0(4,692)	84.147***
	여학생	3.11(0.598)	1.2	9.3	66.9	22.6	100.0(4,347)	
학교급	초등학교	3.22(0.684)	1.7	9.4	53.5	35.3	100.0(2,734)	222.954 ***
	중학교	3.18(0.581)	0.7	7.4	65.3	26.6	100.0(2,855)	
	고등학교	3.10(0.563)	1.2	7.7	70.8	20.3	100.0(3,450)	
지역 규모	대도시	3.23(0.606)	0.8	7.0	60.4	31.9	100.0(3,681)	99.001***
	중소도시	3.10(0.610)	1.6	9.2	66.5	22.7	100.0(4,405)	
	읍면지역	3.17(0.592)	1.0	7.7	65.0	26.4	100.0(95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7(0.608)	1.2	8.0	63.7	27.2	100.0(8,250)	36.109***
	한부모가정	3.09(0.598)	1.1	10.5	66.9	21.5	100.0(598)	
	조손가정	3.17(0.794)	5.6	7.6	51.5	35.4	100.0(87)	
	기타	3.16(0.590)	2.5	3.1	70.5	24.0	100.0(97)	
학업 성적	상	3.29(0.611)	0.7	6.3	56.5	36.6	100.0(2,943)	274.494 ***
	중	3.14(0.594)	1.1	8.2	66.0	24.6	100.0(4,002)	
	하	3.02(0.604)	2.2	10.6	70.0	17.2	100.0(2,087)	
경제적 수준	상	3.25(0.613)	0.9	6.7	59.2	33.2	100.0(4,971)	297.626 ***
	중	3.10(0.575)	1.1	8.7	69.4	20.7	100.0(3,193)	
	하	2.93(0.625)	3.2	13.8	70.0	13.0	100.0(869)	

\*p<.05, \*\*p<.01, \*\*\*p<.001

살고 있는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존중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의 90.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9.3%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남학생(91.8%)이 여학생(89.5%)보다, 중학생(91.9%), 고등학생(91.1%), 초등학교(88.8%) 순으로, 대도시(92.3%), 읍면지역(91.4%), 중소도시(89.2%) 순으로

로, 기타(94.5%), 양부모가정(90.9%), 한부모가정(88.4%), 조손가정(86.9%)의 순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93.1%, 중 90.6%, 하 87.2%),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92.4%, 중 90.1%, 하 83%)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7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3)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연도별 추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오다가 2018년에는 2017년보다 소폭(0.2%p) 하락하였다. 학교급별로는 2017년에 비해 2018년에 중학생(0.6%p)은 긍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높아졌고, 초등학생(0.3%p)과 고등학생(0.7%p)은 약간 낮아졌다.

표 IV-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우리나라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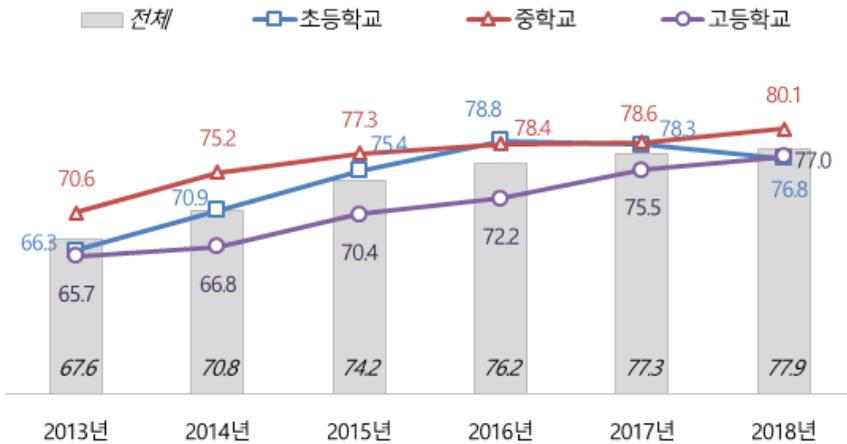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 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chi^2$	
전체	2.94(0.760)	5.0	17.1	56.9	21.0	100.0(9,041)		
성별	남학생	3.01(0.767)	4.8	14.5	55.6	25.0	100.0(4,694)	116.867 ***
	여학생	2.86(0.744)	5.2	19.9	58.3	16.6	100.0(4,347)	
학교급	초등학교	2.99(0.847)	6.5	16.7	47.9	28.9	100.0(2,734)	258.189 ***
	중학교	2.98(0.726)	3.6	16.3	58.1	22.0	100.0(2,853)	
	고등학교	2.86(0.705)	4.9	18.1	63.1	13.9	100.0(3,454)	
지역 규모	대도시	3.00(0.762)	4.3	16.2	54.8	24.8	100.0(3,685)	61.973 ***
	중소도시	2.89(0.756)	5.6	18.0	58.5	17.9	100.0(4,405)	
	읍면지역	2.94(0.753)	4.9	16.6	57.8	20.7	100.0(95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5(0.755)	4.8	16.9	57.1	21.2	100.0(8,250)	29.974 ***
	한부모가정	2.85(0.788)	6.8	19.0	56.2	18.0	100.0(599)	
	조손가정	2.80(0.946)	13.6	15.3	48.3	22.8	100.0(89)	
	기타	2.90(0.749)	2.5	25.7	51.0	20.8	100.0(96)	
학업 성적	상	3.05(0.781)	4.4	14.6	52.1	28.9	100.0(2,944)	236.366 ***
	중	2.94(0.738)	4.6	16.6	59.1	19.7	100.0(4,001)	
	하	2.77(0.741)	6.5	21.7	59.6	12.2	100.0(2,089)	
경제적 수준	상	3.03(0.759)	4.1	15.2	54.6	26.0	100.0(4,975)	238.070 ***
	중	2.88(0.731)	5.3	17.9	60.8	16.0	100.0(3,189)	
	하	2.67(0.782)	9.1	25.0	55.5	10.4	100.0(870)	

\*p<.05, \*\*p<.01, \*\*\*p<.001

다음으로 우리나라 전체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하여 77.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부정적인 응답 비율은 22.1%였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남학생(80.6%)이 여학생(74.9%)보다, 중학생(80.1%), 고등학생(77%), 초등

학생(76.8%) 순으로, 대도시(79.6%), 읍면지역(78.5%), 중소도시(76.4%) 순으로, 양부모가정(78.3%), 한부모가정(74.2%), 기타(71.8%), 조손가정(71.1%) 순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81%, 중 78.8%, 하 71.8%),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80.6%, 중 76.8%, 하 65.9%)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다.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8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4) 우리나라 전체(연도별 추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인식 비율이 2013년부터 5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긍정적인 인식 비율이 2016년 이후 조금 감소한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IV-9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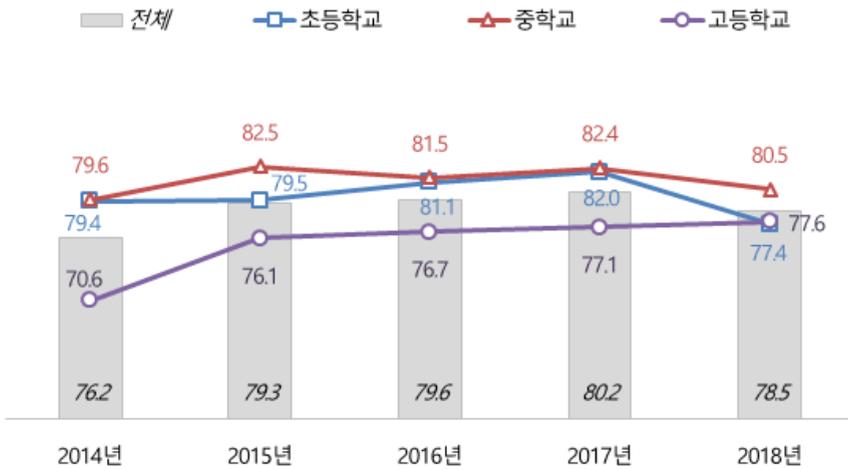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존중 받지 못한다	존중 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 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전체(n)	$\chi^2$	
전체	2.94(0.783)	6.2	15.4	56.9	21.5	100.0(9,032)		
성별	남학생	2.96(0.812)	6.9	14.4	54.6	24.1	100.0(4,688)	52.988 ***
	여학생	2.91(0.750)	5.4	16.4	59.4	18.7	100.0(4,344)	
학교급	초등학교	2.98(0.902)	9.6	13.0	47.3	30.1	100.0(2,721)	338.871 ***
	중학교	2.99(0.734)	4.1	15.4	58.4	22.1	100.0(2,855)	
	고등학교	2.87(0.712)	5.3	17.2	63.3	14.3	100.0(3,456)	
지역 규모	대도시	3.00(0.781)	5.6	13.5	55.9	25.0	100.0(3,679)	56.432 ***
	중소도시	2.89(0.783)	6.7	16.9	57.5	18.9	100.0(4,402)	
	읍면지역	2.93(0.770)	6.1	15.4	58.4	20.2	100.0(95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4(0.779)	6.0	15.4	56.9	21.7	100.0(8,243)	30.007 ***
	한부모가정	2.89(0.795)	7.2	15.8	57.3	19.6	100.0(600)	
	조손가정	2.72(1.027)	18.4	14.9	43.1	23.7	100.0(86)	
	기타	3.03(0.716)	4.7	10.0	63.2	22.1	100.0(96)	
학업 성적	상	3.03(0.807)	5.6	14.3	51.7	28.3	100.0(2,937)	151.125 ***
	중	2.93(0.775)	6.3	14.9	58.4	20.3	100.0(3,999)	
	하	2.83(0.749)	6.7	17.7	61.2	14.3	100.0(2,089)	
경제적 수준	상	2.99(0.807)	6.2	14.4	53.3	26.1	100.0(4,969)	165.067 ***
	중	2.90(0.732)	5.5	15.4	62.1	16.9	100.0(3,187)	
	하	2.75(0.788)	8.7	20.5	57.9	12.9	100.0(869)	

\*p<.05, \*\*p<.01, \*\*\*p<.001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존중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 전체의 78.5%가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부정적인 인식의 비율은 21.5%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남학생(78.7%)이 여학생(78.1%)보다, 중학생(80.5%), 고

등학생(77.6%), 초등학생(77.4%)의 순으로, 대도시(80.9%), 읍면지역(78.6%), 중소도시(76.4%)의 순으로, 기타(85.3%), 양부모 가정(78.6%), 한부모가정(76.9%), 조손가정(66.8%)의 순으로,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상 80%, 중 78.7%, 하 75.5%),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79.4%, 중 79%, 하 70.8%), 긍정적인 인식 비율이 높았다.



\* 주: '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 받는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9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_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연도별 추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긍정적인 인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다 2018년에는 전년보다 1.7%p 감소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고등학생만 0.5%p 상승하였고, 초등학생은 4.6%p, 중학생은 1.9%p가 감소하여 특히 초등학생에서의 감소 경향이 두드러졌다.

③ 인권의식 및 태도

‘인권에 대한 인식’ 소분류의 마지막 지표항목은 인권의식 및 태도로, 청소년의 결정능력, 사회참여 필요성, 학생자치조직의 의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하여 경제적 배경, 성별, 민족 등에 따른 차별에 대해 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V-10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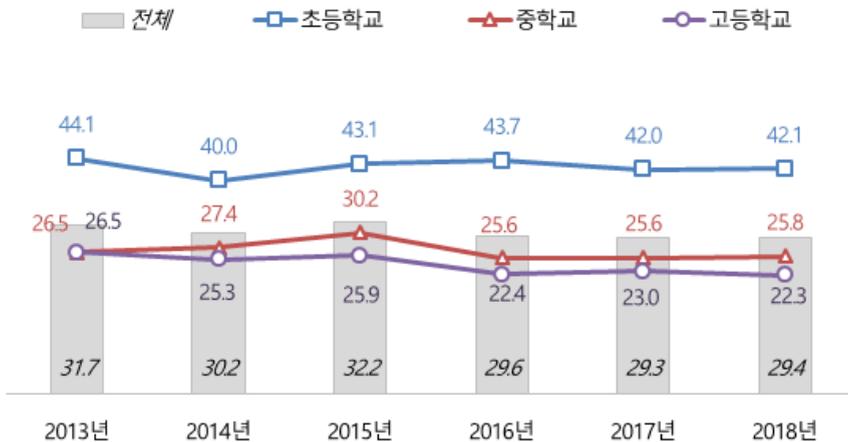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2.06(0.849)	28.3	42.3	24.5	4.9	100.0(9,051)		
성별	남학생	2.14(0.870)	25.6	41.2	26.9	6.2	100.0(4,700)	85.470***
	여학생	1.98(0.818)	31.1	43.5	21.9	3.5	100.0(4,351)	
학교급	초등학교	2.29(0.947)	23.8	34.1	31.4	10.7	100.0(2,740)	447.112 ***
	중학교	1.99(0.793)	29.5	44.7	23.3	2.5	100.0(2,856)	
	고등학교	1.94(0.772)	30.8	46.9	20.0	2.3	100.0(3,455)	
지역 규모	대도시	2.06(0.857)	28.3	42.7	23.5	5.5	100.0(3,688)	8.784
	중소도시	2.05(0.840)	28.4	42.3	24.9	4.4	100.0(4,412)	
	읍면지역	2.09(0.859)	27.6	40.9	26.3	5.2	100.0(95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06(0.847)	28.4	42.4	24.4	4.8	100.0(8,258)	24.167**
	한부모가정	2.08(0.831)	25.7	45.2	24.0	5.0	100.0(600)	
	조손가정	2.10(1.004)	34.9	30.6	24.1	10.4	100.0(89)	
	기타	2.25(0.923)	26.3	29.0	38.2	6.5	100.0(97)	
학업 성적	상	2.08(0.882)	29.0	40.9	23.7	6.4	100.0(2,947)	44.726***
	중	2.09(0.835)	26.2	43.4	25.8	4.6	100.0(4,008)	
	하	1.99(0.825)	31.2	42.1	23.2	3.4	100.0(2,089)	
경제적 수준	상	2.12(0.875)	26.8	40.3	26.8	6.1	100.0(4,983)	100.596 ***
	중	2.02(0.815)	28.4	45.0	22.8	3.8	100.0(3,192)	
	하	1.86(0.778)	36.1	44.3	17.3	2.2	100.0(870)	

\*p<.05, \*\*p<.01, \*\*\*p<.001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70.6%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29.4%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여학생(74.6%)이 남학생(57.9%)보다, 학교급이 높을수록(초 57.9%, 중 74.2%, 고 77.7%), 한부모가정(70.9%), 양부모가정(70.8%), 조손가정(65.5%), 기타(55.3%)의 순으로, 학업성적 하(73.3%), 상(69.9%), 중(69.6%)의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상 67.1%, 중 73.4%, 하 80.4%),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해마다 감소해오다가 2018년에는 약간 주춤한 상태를 보였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0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1) 청소년은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연도별 추이)

표 IV-11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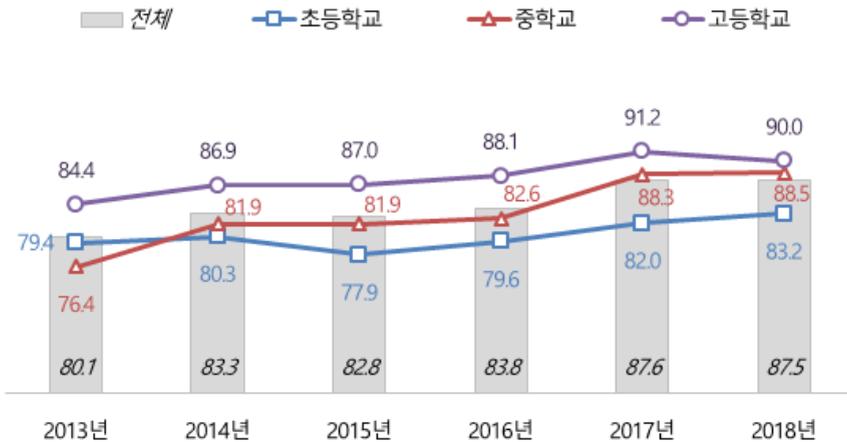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3.18(0.709)	2.6	9.9	54.5	33.0	100.0(9,050)		
성별	남학생	3.10(0.740)	3.5	12.3	54.7	29.4	100.0(4,698)	123.710 ***
	여학생	3.26(0.663)	1.7	7.3	54.3	36.7	100.0(4,352)	
학교급	초등학교	3.16(0.794)	4.0	12.8	46.6	36.5	100.0(2,738)	135.528 ***
	중학교	3.16(0.662)	1.7	9.8	58.7	29.7	100.0(2,856)	
	고등학교	3.20(0.674)	2.3	7.7	57.3	32.8	100.0(3,455)	
지역 규모	대도시	3.20(0.713)	2.7	9.4	53.1	34.9	100.0(3,688)	12.577
	중소도시	3.16(0.705)	2.6	10.4	55.5	31.5	100.0(4,411)	
	읍면지역	3.17(0.707)	2.8	9.6	55.6	32.0	100.0(95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8(0.705)	2.5	9.8	54.5	33.2	100.0(8,257)	29.957***
	한부모가정	3.14(0.701)	2.4	11.3	56.3	30.0	100.0(601)	
	조손가정	3.00(0.926)	10.3	11.5	46.0	32.2	100.0(89)	
	기타	3.10(0.834)	6.3	11.1	48.9	33.7	100.0(96)	
학업 성적	상	3.29(0.693)	2.0	7.7	49.7	40.6	100.0(2,948)	129.119 ***
	중	3.13(0.705)	2.9	10.5	57.1	29.6	100.0(4,005)	
	하	3.10(0.721)	3.1	12.0	56.3	28.6	100.0(2,089)	
경제적 수준	상	3.19(0.720)	2.8	9.7	53.0	34.5	100.0(4,981)	20.600**
	중	3.16(0.691)	2.4	10.0	57.2	30.4	100.0(3,192)	
	하	3.18(0.705)	2.1	11.1	53.2	33.6	100.0(870)	

\*p<.05, \*\*p<.01, \*\*\*p<.001

청소년의 사회 참여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의 87.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12.5%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

면, 여학생(91%)이 남학생(84.1%)보다, 학교급이 높을수록(초 83.1%, 중 88.4%, 고 90.1%), 양부모가정(87.7%), 한부모가정(86.2%), 기타(82.6%), 조손가정(78.2%)의 순으로,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상 90.3%, 중 86.7%, 하 84.9%), 경제적 수준 중(87.6%), 상(87.5%), 하(86.8%)의 순으로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1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2) 청소년도 사회문제가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연도별 추이)**

연도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8년에는 그 추세가 약간 주춤하였다. 학교급별로 는 초등학생(1.2%p)과 중학생(0.2%p)의 경우 긍정적인 인식 비율이 약간 증가하였고, 고등학생(1.2%p)의 경우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표 IV-12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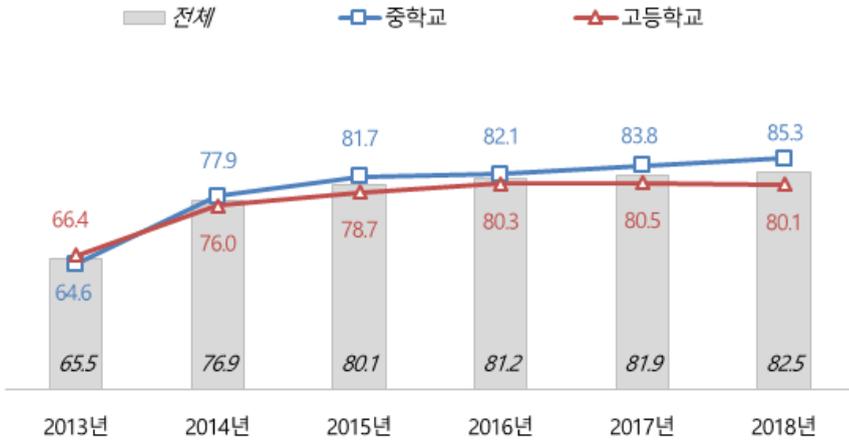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3.00(0.702)	3.5	14.0	61.3	21.2	100.0(6,309)		
성별	남학생	2.99(0.727)	4.4	13.8	60.4	21.5	100.0(3,286)	17.682***
	여학생	3.02(0.673)	2.5	14.3	62.2	20.9	100.0(3,023)	
학교급	중학교	3.06(0.659)	2.1	12.6	62.6	22.7	100.0(2,854)	42.801***
	고등학교	2.95(0.732)	4.7	15.2	60.2	20.0	100.0(3,455)	
지역 규모	대도시	3.03(0.694)	3.2	12.7	61.5	22.6	100.0(2,603)	11.255
	중소도시	2.97(0.708)	3.8	14.9	61.2	20.0	100.0(3,076)	
	읍면지역	3.00(0.700)	3.1	15.0	60.5	21.4	100.0(63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1(0.699)	3.4	13.9	61.3	21.4	100.0(5,747)	33.549***
	한부모가정	2.94(0.698)	3.7	16.3	62.3	17.7	100.0(452)	
	조손가정	2.76(0.947)	15.4	12.7	52.6	19.3	100.0(49)	
	기타	3.19(0.683)	2.2	8.7	57.2	31.9	100.0(56)	
학업 성적	상	3.10(0.723)	3.3	11.8	56.5	28.4	100.0(1,661)	102.046 ***
	중	3.00(0.660)	2.9	12.9	65.1	19.0	100.0(2,716)	
	하	2.91(0.728)	4.6	17.4	60.0	18.0	100.0(1,925)	
경제적 수준	상	3.03(0.707)	3.3	13.5	59.9	23.2	100.0(3,054)	24.609***
	중	2.98(0.680)	3.4	13.7	64.0	18.9	100.0(2,482)	
	하	2.95(0.743)	4.5	16.7	58.1	20.8	100.0(768)	

\*p<.05, \*\*p<.01, \*\*\*p<.001

학생회 등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2.5%가 긍정적으로, 17.5%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여학생(83.1%)이 남학생(81.9%)보다, 중학생(85.3%)이 고등학생보다

(80.2%), 기타(89.1%), 양부모가정(82.7%), 한부모가정(80%), 조손가정(71.9%)의 순으로,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상 84.9%, 중 84.1%, 하 78%),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83.1%, 중 82.9%, 하 78.9%) 긍정적인 인식의 비율이 높았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2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3) 청소년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긍정적 인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전년도에 비해 중학생의 긍정적 인식 비율은 1.5%p 증가하였고, 고등학생은 0.4%p 감소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의 긍정적 인식 비율 차이가 커졌다.

표 IV-13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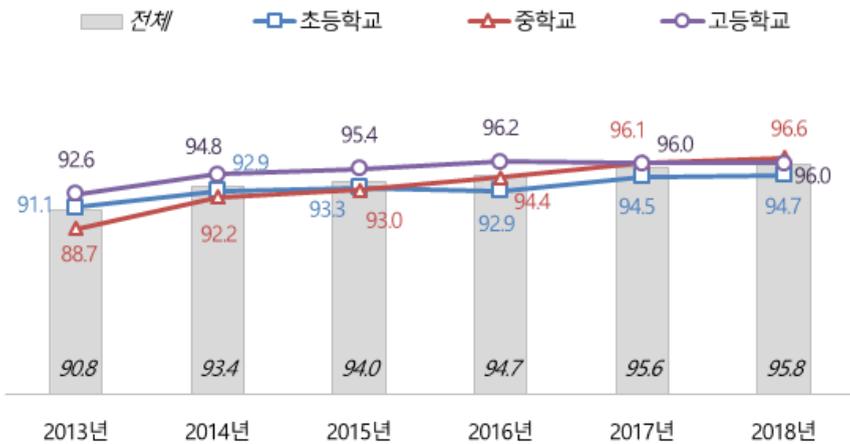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3.51(0.617)	1.2	3.0	39.0	56.8	100.0(9,045)		
성별	남학생	3.45(0.651)	1.6	4.1	42.5	51.8	100.0(4,694)	125.184 ***
	여학생	3.59(0.569)	0.8	1.8	35.3	62.1	100.0(4,350)	
학교급	초등학교	3.56(0.645)	1.6	3.7	32.0	62.8	100.0(2,738)	96.820***
	중학교	3.49(0.586)	0.6	2.8	43.5	53.1	100.0(2,857)	
	고등학교	3.50(0.618)	1.3	2.6	41.0	55.0	100.0(3,450)	
지역 규모	대도시	3.55(0.601)	1.0	2.8	37.0	59.3	100.0(3,684)	18.890**
	중소도시	3.49(0.630)	1.4	3.2	40.2	55.2	100.0(4,408)	
	읍면지역	3.49(0.615)	1.1	3.1	41.4	54.4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52(0.611)	1.1	2.9	39.0	57.0	100.0(8,251)	32.978***
	한부모가정	3.48(0.632)	1.3	3.7	40.7	54.4	100.0(601)	
	조손가정	3.40(0.851)	6.5	4.3	32.0	57.2	100.0(89)	
	기타	3.38(0.717)	2.4	6.5	41.6	49.5	100.0(97)	
학업 성적	상	3.63(0.556)	0.6	2.0	31.6	65.8	100.0(2,948)	163.399 ***
	중	3.48(0.626)	1.3	3.3	41.8	53.6	100.0(4,002)	
	하	3.42(0.659)	1.9	3.9	44.2	50.1	100.0(2,087)	
경제적 수준	상	3.54(0.611)	1.1	2.9	36.8	59.1	100.0(4,978)	34.191***
	중	3.47(0.621)	1.3	3.0	42.9	52.9	100.0(3,193)	
	하	3.51(0.632)	1.3	3.7	37.6	57.5	100.0(867)	

\*p<.05, \*\*p<.01, \*\*\*p<.001

자유로운 의사 표시의 권리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95.8%가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부정적인 응답 비율은 4.2%에 불과하였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여학생(97.4%)이 남학생(94.3%)보다, 중학생(96.6%), 고등학생(96%), 초등학생(94.8%)의 순으로, 대도시(96.3%), 읍면지역(95.8%), 중소도시(95.4%)의 순으로, 양부모가정(96%), 한부모가정(95.1%), 기타(91.1%), 조손가정(89.2%)의 순으로,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상 97.4%, 중 95.4%, 하 94.3%),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95.9%, 중 95.8%, 하 95.1%), 자유로운 의사 표시의 권리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3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4) 모든 사람들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5년간 자유로운 의사 표시의 권리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초등학생(0.2%p)과 중학생(0.5%p)에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고, 고등학생은 차이가 없었다. 또한, 지난 5년간 중학생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표 IV-14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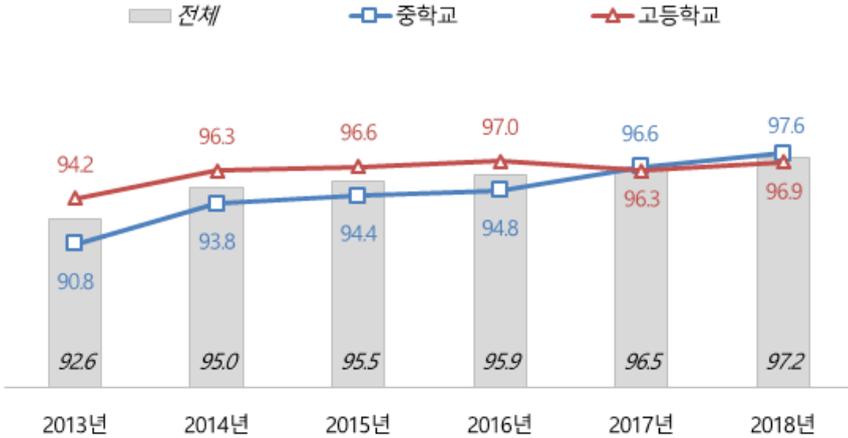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3.64(0.566)	0.9	1.9	29.1	68.1	100.0(6,310)		
성별	남학생	3.58(0.613)	1.3	2.8	32.7	63.3	100.0(3,286)	92.040 ***
	여학생	3.71(0.501)	0.4	1.0	25.3	73.3	100.0(3,024)	
학교급	중학교	3.65(0.546)	0.6	1.8	29.3	68.3	100.0(2,857)	5.373
	고등학교	3.64(0.582)	1.1	2.0	29.0	67.8	100.0(3,453)	
지역 규모	대도시	3.66(0.557)	0.8	1.9	27.5	69.8	100.0(2,602)	8.002
	중소도시	3.63(0.568)	0.9	1.8	30.3	67.0	100.0(3,077)	
	읍면지역	3.62(0.591)	1.0	2.5	30.3	66.2	100.0(63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65(0.559)	0.8	1.8	29.0	68.3	100.0(5,747)	66.697 ***
	한부모가정	3.63(0.549)	0.3	2.4	31.5	65.8	100.0(452)	
	조손가정	3.34(0.975)	9.7	6.2	24.4	59.7	100.0(49)	
	기타	3.56(0.728)	3.0	4.7	25.9	66.5	100.0(57)	
학업 성적	상	3.71(0.513)	0.5	1.5	24.2	73.8	100.0(1,662)	51.869 ***
	중	3.64(0.555)	0.8	1.5	30.8	66.9	100.0(2,716)	
	하	3.59(0.618)	1.4	2.8	31.0	64.8	100.0(1,926)	
경제적 수준	상	3.66(0.566)	0.9	2.0	27.6	69.5	100.0(3,054)	10.591
	중	3.62(0.569)	0.9	1.8	31.3	66.0	100.0(2,483)	
	하	3.66(0.557)	0.7	2.2	27.9	69.2	100.0(768)	

\*p<.05, \*\*p<.01, \*\*\*p<.001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7.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2.8%에 머물렀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여학생(98.6%)이 남학생(96%)보다, 양부모, 한부모가정(97.3%), 기타(92.4%), 조손가정(84.1%)의 순으로,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상

98%, 중 97.7%, 하 95.8%) 그렇다는 인식 비율이 높았다. 학교급, 지역 규모,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4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은 2013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8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중학생은 1.0%p, 고등학생은 0.6%p 증가하였다.

표 IV-15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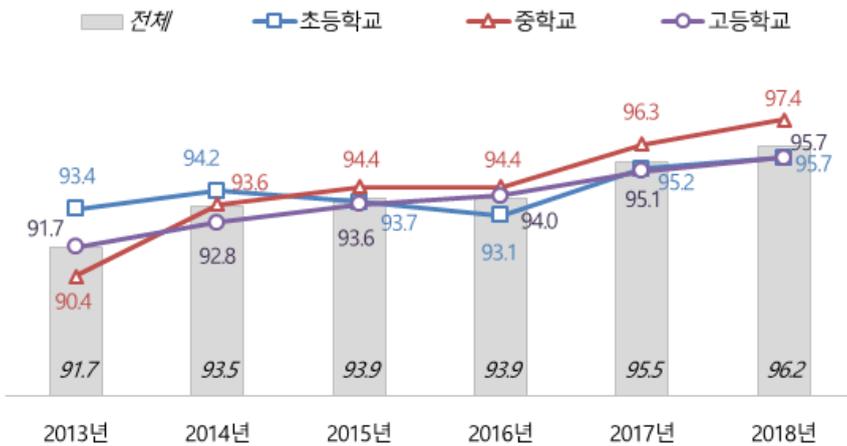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3.64(0.596)	1.2	2.6	27.4	68.8	100.0(9,047)		
성별	남학생	3.55(0.645)	1.6	3.7	32.6	62.2	100.0(4,697)	213.170** *
	여학생	3.73(0.524)	0.8	1.4	21.9	75.9	100.0(4,350)	
학교급	초등학교	3.67(0.605)	1.4	2.9	23.0	72.6	100.0(2,737)	55.229***
	중학교	3.65(0.552)	0.6	2.0	29.1	68.3	100.0(2,857)	
	고등학교	3.60(0.623)	1.6	2.8	29.5	66.2	100.0(3,453)	
지역 규모	대도시	3.66(0.587)	1.1	2.7	25.0	71.2	100.0(3,684)	21.927**
	중소도시	3.62(0.599)	1.3	2.3	29.3	67.1	100.0(4,411)	
	읍면지역	3.61(0.618)	1.4	3.1	28.4	67.2	100.0(9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64(0.594)	1.2	2.5	27.1	69.2	100.0(8,253)	28.419***
	한부모가정	3.60(0.572)	0.4	3.1	32.4	64.1	100.0(601)	
	조손가정	3.53(0.820)	5.8	3.5	22.9	67.8	100.0(89)	
	기타	3.55(0.673)	2.4	2.9	31.9	62.8	100.0(97)	
학업 성적	상	3.72(0.552)	1.1	1.9	21.2	75.8	100.0(2,947)	104.369** *
	중	3.61(0.603)	1.2	2.8	30.5	65.6	100.0(4,002)	
	하	3.59(0.632)	1.6	3.1	30.4	65.0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3.66(0.594)	1.3	2.4	25.4	70.8	100.0(4,976)	26.870***
	중	3.61(0.602)	1.2	2.7	30.3	65.8	100.0(3,194)	
	하	3.64(0.584)	0.9	2.9	28.2	68.1	100.0(870)	

\*p<.05, \*\*p<.01, \*\*\*p<.001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96.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8%였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여학생(97.8%)이 남학생(94.8%)보다, 중학생(97.4%), 고등학생

(95.7%), 초등학생(95.6%) 순으로, 중소도시(96.4%), 대도시(96.2%), 읍면지역 (95.6%) 순으로, 한부모가정(96.5%), 양부모가정(96.3%), 기타(94.7%), 조손가정(90.7%)의 순으로,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상 97%, 중 96.1%, 하 95.4%), 경제적 수준 하(96.3%), 상(96.2%), 중(96.1%)의 순으로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5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6)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연도 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3년부터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초·중·고등학생 모두 그렇다는 인식 비중이 높아졌고, 중학생의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2017년에 비해 2018년에도 가장 높았다.

표 IV-16 여러 인권상황에 대한 생각\_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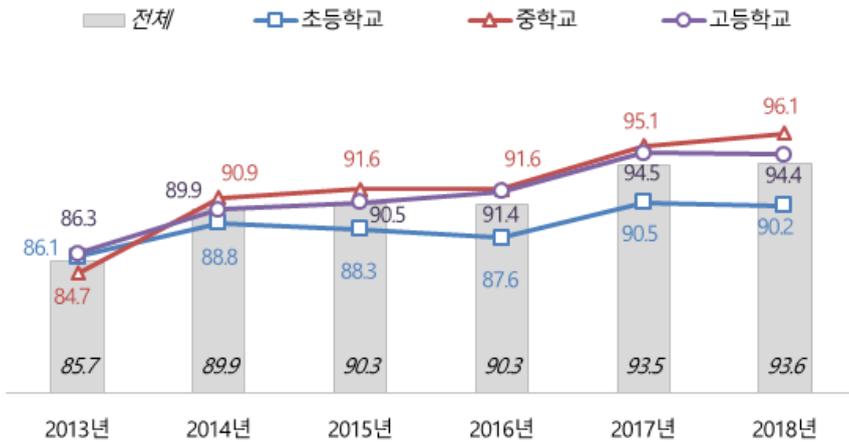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3.51(0.672)	1.9	4.5	34.1	59.5	100.0(9,050)		
성별	남학생	3.46(0.708)	2.5	5.3	36.3	56.0	100.0(4,698)	65.852***
	여학생	3.57(0.626)	1.2	3.6	31.8	63.4	100.0(4,352)	
학교급	초등학교	3.48(0.751)	2.9	6.9	29.4	60.8	100.0(2,740)	109.019 ***
	중학교	3.55(0.602)	0.9	3.0	36.3	59.7	100.0(2,857)	
	고등학교	3.51(0.660)	1.8	3.8	36.0	58.4	100.0(3,453)	
지역 규모	대도시	3.56(0.649)	1.5	4.1	31.5	62.9	100.0(3,684)	35.359***
	중소도시	3.48(0.686)	2.2	4.5	36.0	57.3	100.0(4,413)	
	읍면지역	3.47(0.689)	1.8	6.0	35.5	56.7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52(0.667)	1.8	4.3	33.8	60.0	100.0(8,256)	21.885**
	한부모가정	3.46(0.693)	1.8	6.1	36.8	55.3	100.0(601)	
	조손가정	3.38(0.804)	5.3	4.2	38.0	52.5	100.0(89)	
	기타	3.36(0.778)	3.8	7.1	38.7	50.5	100.0(97)	
학업 성적	상	3.60(0.636)	1.6	3.6	28.3	66.6	100.0(2,948)	91.311***
	중	3.47(0.684)	2.1	4.7	37.0	56.2	100.0(4,005)	
	하	3.47(0.688)	1.9	5.4	36.7	56.0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3.53(0.683)	2.3	4.1	32.4	61.3	100.0(4,981)	33.436***
	중	3.50(0.655)	1.4	4.7	36.6	57.3	100.0(3,193)	
	하	3.49(0.670)	1.2	6.2	34.6	57.9	100.0(870)	

\*p<.05, \*\*p<.01, \*\*\*p<.001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가운데 93.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6.4%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여학생(95.2%)이 남학생(92.3%)보다, 중학생(96%), 고등학생(94.4%), 초등학생(90.2%) 순으로, 대도시(94.4%), 중소도시(93.3%), 읍면지역(92.2%)의 순으로, 양부모가정(93.8%), 한부모가정(92.1%), 조손가정(90.5%), 기타(89.2%) 순으로,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상 94.9%, 중 93.2%, 하 92.7%), 경제적 수준이 중(93.9%), 상(93.7%), 하(92.5%)의 순으로 그렇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았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 그림 IV-16 여러 인권 상황에 대한 생각\_7)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인식 비율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8년은 중학생의 긍정적인 인식 비율만 증가하였고, 2014년 이후 중학생의 긍정적인 인식 비율이 계속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3) 인권교육

‘인권일반’ 중분류 중 세 번째 항목은 인권교육으로, 관련 지표항목은 인권교육 실시 현황과 인권교육 경험으로 구성된다.

#### ① 인권교육 실시 현황

인권교육 실시 현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추진 실적을 통해 알아보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에 연수과정 운영, 방문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등을 통해 3,910회에 걸쳐 221,171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유아 및 초·중등학교 분야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총 7회(270명) 운영, 인권 강사 역량강화교육 총 7회(105명) 실시, 영유아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총 2회(96명) 운영, 찾아가는 영유아 인권교육 총 150회(2,323명) 실시, 찾아가는 학교인권 특강 총 902회(27,333명) 실시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18a: 169-170).

표 IV-1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 회, 명)

구분	계		연수과정 운영		방문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3년	1,834	168,580	245	11,382	159	4,588	150	39,654	1,280	112,956
2014년	2,334	164,075	334	14,325	206	4,926	288	34,744	1,506	110,080
2015년	2,509	145,322	438	18,468	239	9,194	353	34,635	1,479	83,025
2016년	3,702	207,619	734	33,953	380	5,930	828	71,434	1,760	96,302
2017년	3,910	221,171	494	28,916	533	10,974	915	79,799	1,506	110,080
누계	20,518	1,459,900	3,054	145,009	2,189	53,421	2,920	343,273	12,355	918,287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8a). 2017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p.200.

② 인권교육 경험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조사 항목은 인권교육 경험 여부, 인권교육을 받은 기관,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등,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최근 1년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70.2%로 나타났고, 29.8%는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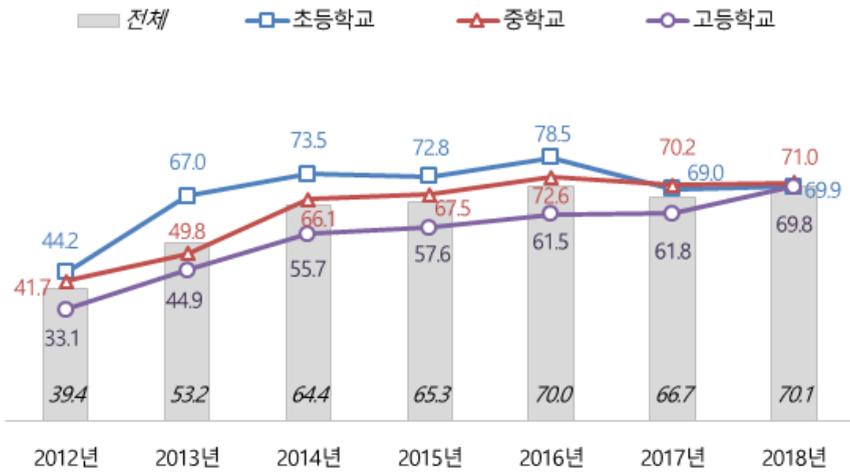
표 IV-18 인권교육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1회 이상 경험 합계	교육 받은 적 없음	전체(n)	$\chi^2$	
전체	15.9	21.6	16.5	4.7	11.4	70.2	29.8	100.0(9,049)		
성별	남학생	15.0	20.3	15.7	4.6	12.6	68.2	31.8	100.0(4,696)	44.046
	여학생	16.9	23.1	17.5	4.7	10.2	72.4	27.6	100.0(4,353)	***
학교급	초등학교	12.8	18.3	17.8	6.1	14.9	70	30.0	100.0(2,740)	117.399 ***
	중학교	16.3	23.3	16.4	4.5	10.5	71	29.0	100.0(2,855)	
	고등학교	18.1	22.9	15.6	3.7	9.5	69.8	30.2	100.0(3,455)	
지역 규모	대도시	16.8	21.5	15.8	4.4	11.1	69.6	30.4	100.0(3,689)	14.485
	중소도시	15.1	21.8	17.3	4.9	11.3	70.5	29.5	100.0(4,408)	
	읍면지역	16.3	21.2	16.1	4.4	13.5	71.5	28.5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5.9	21.7	16.8	4.7	11.5	70.6	29.4	100.0(8,259)	12.127
	한부모가정	17.0	21.2	14.5	4.1	10.6	67.4	32.6	100.0(600)	
	조손가정	16.8	20.9	11.6	5.2	15.0	69.5	30.5	100.0(88)	
	기타	11.8	20.6	16.3	4.4	8.5	61.6	38.4	100.0(96)	
학업 성적	상	14.8	21.7	19.1	5.7	13.5	74.9	25.1	100.0(2,948)	103.188 ***
	중	15.7	22.3	15.9	4.4	11.0	69.4	30.6	100.0(4,007)	
	하	17.9	20.2	14.1	3.6	9.5	65.3	34.7	100.0(2,087)	
경제적 수준	상	15.9	21.6	17.3	5.3	12.1	72.1	27.9	100.0(4,982)	42.276 ***
	중	16.2	22.1	15.7	3.7	11.1	68.9	31.1	100.0(3,190)	
	하	15.0	20.2	15.6	4.5	9.1	64.4	35.6	100.0(870)	

\*p<.05, \*\*p<.01, \*\*\*p<.001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1회 이상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여학생(72.4%)이 남학생보다(68.2%), 중학생(71%), 초등학생(70%), 고등학생(69.8%)의 순으로,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상 74.9%, 중 69.4%, 하 65.3%),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72.1%, 중 68.9%, 하 64.4%) 높게 나타났다.



\* 주: '교육 받은 적 없음'을 제외한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V-17 인권교육 경험여부(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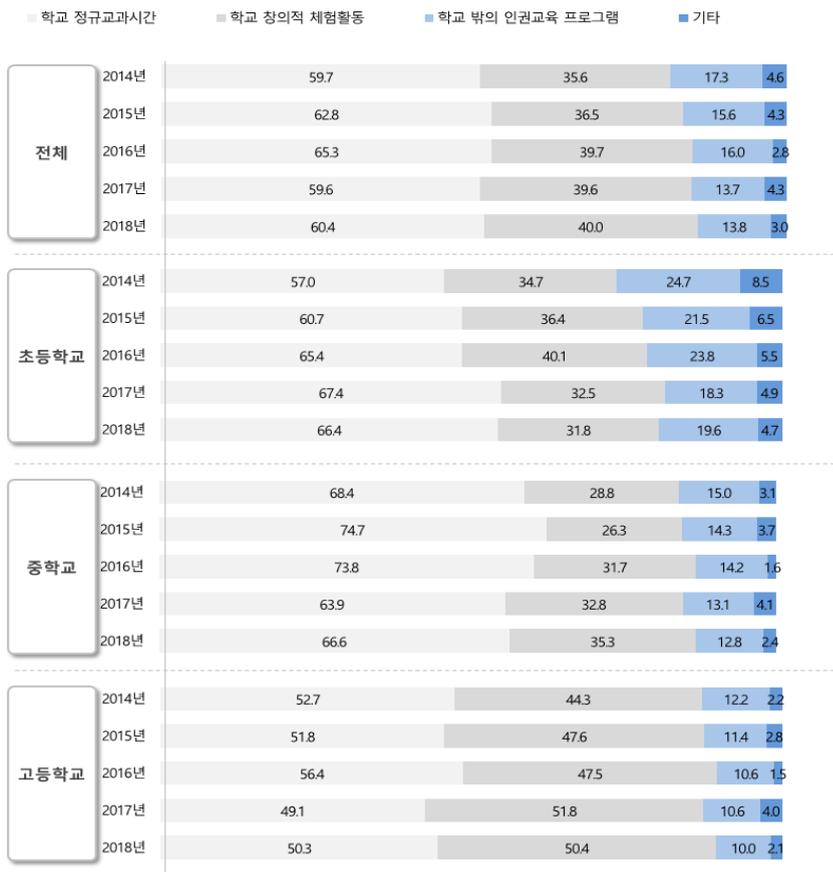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인권교육을 받은 비율은 2017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학교급별로는 2018년의 경우 초·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폭이 컸고(8%p), 2017년부터는 학교급 간 비율의 차이가 줄어들어 가는 추세에 있다.

표 IV-19 인권교육을 받은 장소 (복수응답)

(단위 : %(명))

구분		학교 정규교과50시간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타	전체(n)
전체		60.4	40.0	13.8	3.0	100.0(6,252)
성별	남학생	58.8	40.9	13.7	2.7	100.0(3,136)
	여학생	62.0	39.0	13.9	3.3	100.0(3,116)
학교급	초등학교	66.4	31.8	19.6	4.7	100.0(1,892)
	중학교	66.6	35.3	12.8	2.4	100.0(1,985)
	고등학교	50.3	50.4	10.0	2.1	100.0(2,375)
고교 유형	일반계고	49.4	52.6	9.9	2.1	100.0(1,980)
	특성화계고	55.3	39.3	10.5	2.1	100.0(395)
지역 규모	대도시	58.6	41.3	13.8	3.3	100.0(2,532)
	중소도시	62.2	38.1	13.3	2.6	100.0(3,045)
	읍면지역	58.7	43.7	16.4	3.8	100.0(67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0.3	40.6	13.5	2.9	100.0(5,737)
	한부모가정	60.4	35.4	17.6	4.7	100.0(396)
	조손가정	54.1	33.4	15.1	2.4	100.0(59)
	기타	74.0	16.3	20.7	1.6	100.0(57)
학업 성적	상	62.7	40.4	15.3	3.3	100.0(2,178)
	중	61.0	38.9	12.6	2.7	100.0(2,729)
	하	55.4	41.3	13.7	3.1	100.0(1,339)
경제적 수준	상	61.1	38.2	14.9	3.0	100.0(3,532)
	중	60.8	41.7	11.7	2.9	100.0(2,160)
	하	54.1	44.4	15.4	3.5	100.0(555)

인권교육을 경험한 곳은 학교 정규 교과시간이 60.4%로 가장 많았고, 창의적 체험활동 40.0%, 학교 밖 인권교육 프로그램 13.8%, 기타 3.0%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학교 정규 교과시간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고등학생은 정규교과 시간(50.3%)과 창의적 체험활동(50.4%)의 비율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학교 밖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경험 비율은 초등학생(19.9%)과 기타 가정(20.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주: (단위: %)

그림 IV-18 인권교육 경험 장소(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교 정규교과시간을 통한 인권교육의 경험 비율이 가장 높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인권교육을 경험하는 비율은 조금씩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정규교과시간을 통한 인권교육 경험 비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2017년까지 증가해 오다가 2018년에는 소폭 감소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약간 증가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인권교육 경험 비율은 2018년의 경우 중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이(2.7%p) 증가하였다. 반면,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경험 비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전년 대비 약간 감소하였고, 초등학생은 약간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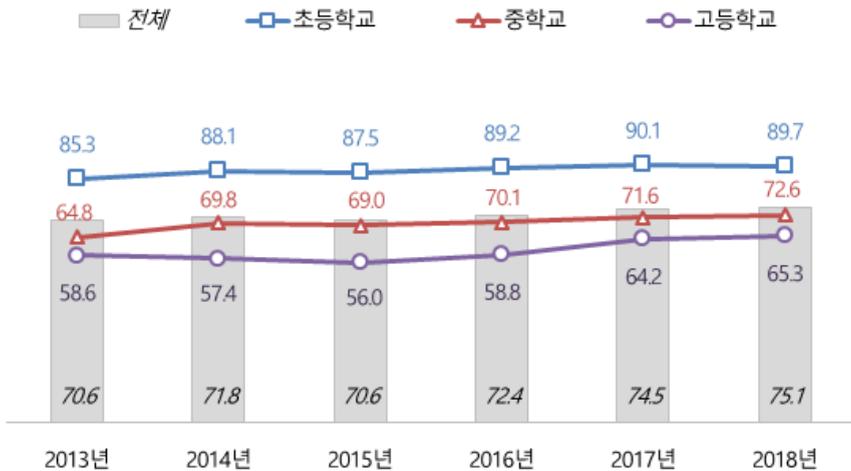
표 IV-20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전체(n)	$\chi^2$	
전체	2.82(0.723)	5.8	19.1	62.1	13.0	100.0(6,138)		
성별	남학생	2.82(0.758)	7.2	17.9	60.9	14.1	100.0(3,086)	31.484***
	여학생	2.83(0.687)	4.5	20.3	63.3	11.9	100.0(3,052)	
학교급	초등학교	3.14(0.650)	2.3	8.1	62.6	27.0	100.0(1,878)	692.554 ***
	중학교	2.76(0.687)	5.4	21.9	63.5	9.1	100.0(1,952)	
	고등학교	2.61(0.719)	9.1	25.7	60.4	4.8	100.0(2,308)	
지역 규모	대도시	2.87(0.704)	4.9	17.9	63.2	14.1	100.0(2,486)	44.588***
	중소도시	2.77(0.730)	6.8	20.6	61.7	10.9	100.0(2,990)	
	읍면지역	2.91(0.744)	5.3	16.8	59.6	18.3	100.0(66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82(0.717)	5.7	19.2	62.5	12.6	100.0(5,633)	21.106*
	한부모가정	2.87(0.785)	7.4	15.8	59.0	17.9	100.0(390)	
	조손가정	2.72(0.838)	8.1	28.3	47.3	16.4	100.0(58)	
	기타	2.89(0.792)	6.8	16.7	57.5	19.0	100.0(57)	
학업 성적	상	2.89(0.730)	4.9	17.6	60.4	17.0	100.0(2,148)	107.352 ***
	중	2.84(0.698)	5.0	18.4	63.9	12.7	100.0(2,679)	
	하	2.66(0.739)	9.1	22.7	61.3	7.0	100.0(1,306)	
경제적 수준	상	2.90(0.719)	5.0	16.5	62.3	16.1	100.0(3,472)	118.158 ***
	중	2.75(0.702)	6.5	21.0	63.8	8.7	100.0(2,121)	
	하	2.64(0.773)	8.8	27.6	54.1	9.5	100.0(541)	

\*p<.05, \*\*p<.01, \*\*\*p<.001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75.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4.9%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여학생(75.2%)이 남학생보다(75%),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89.7%, 중 72.6%, 고 65.3%), 읍면지역(77.9%), 대도시(77.3%), 중소도시(72.6%)의 순으로, 한부모가정(76.9%), 기타(76.5%), 양부모가정(75.1%), 조손가정(63.7%) 순으로,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상 77.4%, 중 76.6%, 하 68.3%),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78.4%, 중 72.5%, 하 63.6%),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 주: '도움이 되는 편이다'와 '매우 도움이 된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9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5년간 인권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생은 전년도에 비해 소폭(0.4%) 감소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소폭(중 1.0%, 고 1.1%)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에 있어 초등학생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계속 유지되고 있다.

## 2) 일반원칙

일반원칙 중분류는 차별 경험률과 아동이의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차별 경험률

차별 경험률은 성별, 학업성적, 연령, 가정형편, 지역, 외모 및 신체적 조건, 종교, 가족 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등, 10가지 유형별로 최근 1년간 차별한 경험과 차별받은 경험을 조사하는 방식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 IV-21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_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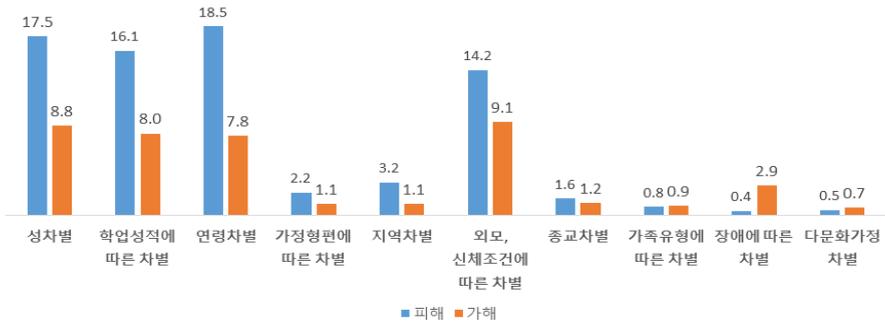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차별 가해 경험				차별 피해 경험			
	1년에 1-2회 정도	2-3개 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년에 1-2회 정도	2-3개 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성차별	8.8	1.5	0.9	0.5	17.5	5.4	3.7	2.2
2)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8.0	2.4	1.0	0.5	16.1	6.6	3.9	1.9
3) 연령차별	7.8	2.0	0.9	0.6	18.5	7.5	3.8	1.6
4)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1.1	0.5	0.2	0.1	2.2	0.5	0.3	0.1
5) 지역차별	1.1	0.4	0.2	0.3	3.2	1.0	0.6	0.3
6) 외모,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9.1	2.4	1.1	0.7	14.2	4.3	3.6	2.0
7) 종교차별	1.2	0.4	0.2	0.2	1.6	0.5	0.3	0.2
8)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	0.9	0.3	0.1	0.2	0.8	0.2	0.1	0.1
9) 장애에 따른 차별	2.9	0.6	0.3	0.2	0.4	0.2	0.2	0.1
10) 다문화가정 차별	0.7	0.4	0.1	0.1	0.5	0.2	0.1	0.2

먼저 1년에 1-2회 차별받은 경험을 살펴보면, 연령(18.5%), 성별(17.5%), 학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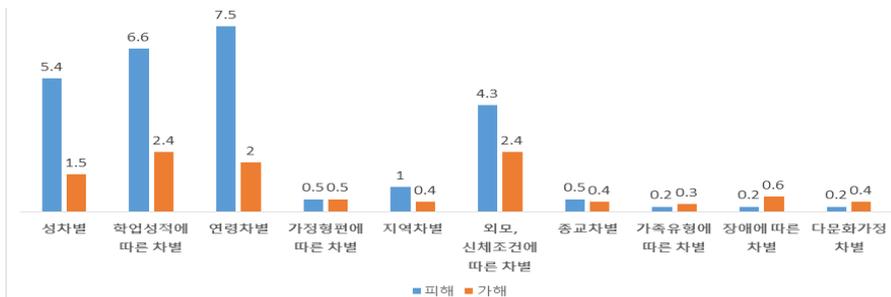
성적(16.1%), 외모, 신체조건(14.2%), 지역(3.2%), 가정형편(2.2%), 종교(1.6%), 가족 유형(0.8%), 다문화가정(0.5%), 장애(0.4%) 순으로 차별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 응답치를 모두 합산해 보면, 전체 차별경험 비율은 연령(31.4%), 성별(28.8%), 학업성적(28.5%), 외모, 신체조건(24.1%)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차별 가해 경험을 살펴보면, 1년에 1-2회 경험 기준으로 외모, 신체조건(9.1%), 성별(8.8%), 학업성적(8.0%), 연령(7.8%), 장애(2.9%), 종교(1.2%), 가정형편, 지역(1.1%), 가족 유형(0.9%), 다문화가정(0.7%) 순으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경험 응답치를 모두 합산해 보면, 전체 가해경험 비율은 외모, 신체조건(13.3%), 학업성적(11.9%), 성별(11.7%), 연령(11.3%)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 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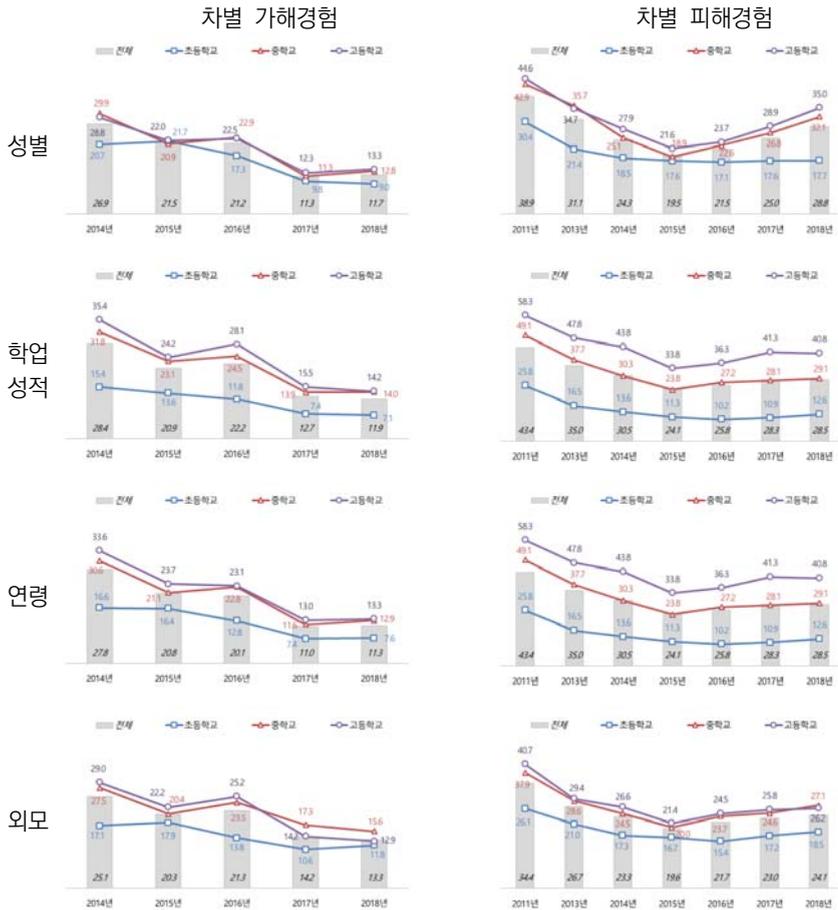
그림 IV-20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1년에 1-2회 정도)



\* 주: (단위: %)

그림 IV-21 차별 가해 및 피해 경험(2-3개월에 1-2회 정도)

위 그래프와 같이 차별 유형별로 가해·피해 경험의 비율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은 많은 경우 차별을 하기 보다는 차별받는 경험이 많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가족 유형, 장애, 다문화가정 차별의 경우 응답자 수가 높지 않음을 감안할 때, 소폭이지만 가해 경험보다 피해경험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값(단위: %)

그림 IV-22 차별경험(연도별 추이)

차별 경험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차별 가해경험은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학업성적과 외모 관련 차별 경험은 약간 감소하였고, 나머지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피해 경험 가운데 성별, 학업성적, 연령, 외모에 따른 차별 경험 모두 2015년까지 감소해오다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8년의 경우 전년도 대비 성차별 경험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성별: 3.8%p, 학업성적: 0.2%p, 연령: 0.2%p, 외모: 1.1%p).

연도별 추이를 살펴볼 때, 차별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간의 간극은 커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차별 가해 경험의 경우 2014년에는 학업성적(28.4%)과 연령(27.8%)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2018년에는 외모, 신체 차별(13.3%) 연령 차별(11.3%)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 피해 경험의 경우 2014년에는 학업성적(30.5%), 연령(25.5%) 비율이 높았으나 2018년에는 연령(31.4%), 성별(28.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들어 외모, 신체 차별과 성차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연령 차별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 ①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일반원칙 중분류의 두 번째 지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정책화한 아동영향평가제도 실시 현황을 통해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노력을 제한적이거나 살펴보고 있다(김영지 외, 2017: 110).

2016년 3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제11조의2(아동정책영향평가)이 신설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 관련 정책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

에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에 관심을 갖는 자치단체들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아동영향평가를 준비하거나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 7월 현재 서울 성북구를 비롯하여 유니세프 인증을 받은 총 29개 자치단체가<sup>20)</sup>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하였으며 29개 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에 가입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 13개 자치단체가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있다.<sup>21)</sup> 하지만 아동영향평가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 성북구와 강동구, 2곳에 불과하다.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지표항목이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아동영향평가 방법과 지표의 타당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17년 개발된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는 아동의 권리, 아동의 참여,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필수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양적, 질적 평가 방식이 혼용되어 있다(송이은, 2017). 2019년부터 아동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2018년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다.

---

20) 29개 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2013.11), 전라북도 완주군(2016), 부산광역시 금정구(2016.9), 전라북도 군산시(2016.10), 서울특별시 도봉구(2016.11), 서울특별시 송파구(2016.12), 서울특별시 강동구(2017.3), 경기도 오산시(2017.5.), 전라북도 전주시(2017.6), 광주광역시 서구(2017.8), 서울특별시 종로구(2017.8), 충청북도 충주시(2017.8), 경기도 수원시(2017.9), 세종특별자치시(2017.9), 대전광역시 유성구(2017.10), 인천광역시 서구(2017.11), 충청남도 아산시(2017.11), 경상북도 영주시(2017.12), 서울특별시 강서구(2017.12), 전라남도 광양시(2018.1), 서울특별시 노원구(2018.2), 서울특별시 성동구(2018.2), 전라남도 순천시(2018.2), 경기도 광명시(2018.3), 서울특별시 광진구(2018.3), 충청남도 당진시(2018.3), 충청북도 음성군(2018.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2018.5), 경기도 화성시(2018.6)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웹사이트 <http://childfriendlycities.kr>에서 2018년 7월 18일 인출.

2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main.html>에서 2018년 7월 18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에서 2018년 7월 18일 인출.

### 3) 소결

이 절에서는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대분류에 속하는 2개의 중분류(인권일반, 일반원칙), 5개의 소분류(인권 인프라 구축 정도, 인권에 대한 인식, 인권교육, 차별 경험률,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에 대한 11개의 지표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인권 인프라 구축 정도와 관련하여,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었고, 아동학대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청소년의 참여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 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2.7%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각각 11.8%, 6.6%, 15.6%로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는 가정(95.2%), 학교(90.6%), 지역사회(90.6%), 우리나라(77.9%), 사이버공간(78.4%) 등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전년 대비 사이버 공간에서의 존중 정도만 낮아졌다. 인권의식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사회참여 필요성(87.5%), 학생자치조직의 필요성(82.3%), 표현의 자유(95.8%), 경제적 이유로 차별금지(97.2%), 양성평등(96.2%), 이주배경 주민의 교육기회(93.6%) 등,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인 인식 비율은 지난 5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권교육 경험률은 70.2%(초 70%, 중 71%, 고 69.8%)로, 전년 대비 고등학생의 경험률 증가(7%p)가 두드러졌다. 인권교육을 경험한 곳은 학교 정규 교과시간이 60.4%로 가장 많았고, 창의적 체험활동 40.0%, 학교 밖 인권교육 프로그램 13.8%이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인권교육 경험자의 75.1%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이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년에 1회 이상 차별 가해 경험은 외모와 신체조건(13.3%), 학업성적(11.9%), 성별(11.7%), 연령(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년에 1회 이상 차별 피해 경험은 연령(31.4%), 성별(28.8%), 학업성적(28.5%), 외모와 신체조건(24.1%)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외모·신체조건에 대한 차별과 성차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연령차별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 존중과 아동·청소년의 인권 의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외모, 성별로 인한 차별 등,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 경험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정책이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 성, 인종 등,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 (1) 가정에서의 참여정도

##### ① 가정에서의 참여정도(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

‘의견표명권 및 표현의 자유’중분류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자유권에 대한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가정에서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는 집안의 중대사, 상급학교 결정, 진로(직업) 결정, 공부 시간·방법 결정 등의 항목으로 알아보았다.

표 IV-22 의사결정 시 보호자의 태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 다	매우 그렇 다	전체(N)	$\chi^2$
1) 집안의 중대사 결정	전체	3.33(0.670)	1.3	7.6	48.2	43.0	100.0(9,059)	-
	초등학교	3.39(0.668)	1.2	6.7	43.6	48.5	100.0(2,745)	51.048***
	중학교	3.31(0.660)	1.1	7.9	50.1	41.0	100.0(2,858)	
	고등학교	3.29(0.676)	1.5	8.0	50.2	40.3	100.0(3,456)	
전체	3.41(0.654)	1.1	6.0	43.8	49.1	100.0(9,047)	-	
2) 상급 학교 결정	초등학교	3.43(0.667)	1.4	5.8	41.7	51.1	100.0(2,734)	13.433*
	중학교	3.40(0.637)	0.8	5.8	45.6	47.8	100.0(2,858)	
	고등학교	3.40(0.657)	1.1	6.2	44.0	48.7	100.0(3,456)	
3) 진로 (직업) 결정	전체	3.50(0.635)	0.9	4.9	37.3	56.9	100.0(9,033)	-
	초등학교	3.59(0.636)	1.1	4.9	28.4	65.6	100.0(2,726)	137.755** *
	중학교	3.47(0.621)	0.7	4.8	41.7	52.8	100.0(2,858)	
	고등학교	3.46(0.638)	1.0	4.9	40.7	53.4	100.0(3,449)	
4) 공부 시간·방법 결정	전체	3.32(0.719)	2.2	8.4	44.3	45.2	100.0(9,013)	
	초등학교	3.35(0.789)	3.6	9.1	36.4	50.9	100.0(2,714)	158.301** *
	중학교	3.26(0.711)	1.8	10.2	48.2	39.7	100.0(2,848)	
	고등학교	3.36(0.664)	1.4	6.3	47.2	45.1	100.0(3,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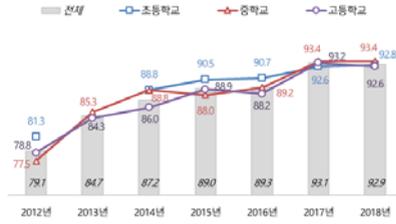
\*p<.05, \*\*p<.01, \*\*\*p<.001

집안의 중대사 결정시 의견 존중 정도는 91.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학교  
급이 낮을수록(초 92.1%, 중 91.1%, 고 90.5%) 긍정 응답률이 높았다. 상급학교  
결정시 의견 존중 정도는 92.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중학생(93.4%), 초등  
학생(92.8%), 고등학생(92.7%) 순으로 나타났다. 장래 진로(직업) 결정 시 존중  
정도 94.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중학생(94.5%), 고등학생(94.1%), 초등  
학생(94%)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부 시간과 방법을 결정할 때 의견 존중 정도는  
89.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학교급이 높을수록(고 92.3%, 중 88.0%, 초  
87.3%) 긍정 응답률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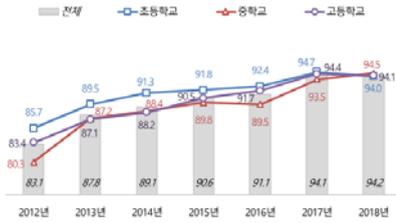
항목별로 비교해보면, 진로(직업) 결정(94.2%), 상급학교 결정(92.9%), 집안의  
중대사 결정(91.2%), 공부 시간·방법 결정(89.4%) 순으로 긍정 응답률이 높았다.  
초·중·고등학생 모두 진로(직업) 결정에 대한 긍정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1) 집안의 중대사 결정



2) 상급학교 결정



3) 진로(직업) 결정



4) 공부 시간·방법 결정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23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 태도(의견존중 정도)(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4개 항목 모두 지난 5년 간 긍정 응답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볼 때, 2018년에는 상급학교 결정에 대한 긍정 응답률은 약간 감소하였고, 집안의 중대사 결정, 진로(직업) 결정, 공부 시간·방법 결정은 약간 증가하였다.

## (2) 학교에서의 참여정도

### ①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는 교사·교장의 간섭 여부, 성적 기준 여부, 예산·장소·시간 보장 여부, 학생회 의견 존중 여부 등으로 살펴보았다.

표 IV-23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chi^2$
1) 교사·교장의 간섭없이 활동(자치권)	전체	14.8	31.7	53.5	100.0(6,301)	-
	중학교	10.1	33.4	56.5	100.0(2,855)	91.269
	고등학교	18.7	30.3	51.0	100.0(3,447)	***
2) 임원후보 성적기준	전체	38.0	24.6	37.5	100.0(6,301)	-
	중학교	36.1	25.5	38.4	100.0(2,853)	7.750*
	고등학교	39.5	23.8	36.7	100.0(3,449)	
3) 예산, 장소, 시간 보장	전체	7.0	40.3	52.7	100.0(6,297)	-
	중학교	5.8	40.7	53.6	100.0(2,849)	12.180**
	고등학교	8.0	39.9	52.1	100.0(3,448)	
4) 학생회 의견 존중	전체	12.5	36.9	50.6	100.0(6,297)	-
	중학교	8.1	42.4	49.6	100.0(2,850)	124.871
	고등학교	16.2	32.4	51.4	100.0(3,447)	***

\*p<.05, \*\*p<.01, \*\*\*p<.001

먼저 교사·교장의 간섭에서 자유롭다고 응답한 비율은 31.7%로 나타났고, 중학생(33.4%)이 고등학생(30.3%)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생회 임원이 되기 위해 성적 기준이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4.6%였고, 중학생(25.3%)이 고등학생(23.8%)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는 응답은 40.3%로 나타났고, 중학생(40.7%)이 고등학생(39.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생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응답은 36.9%이었고, 중학생(42.4%)과 고등학생(32.4%)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와 관련하여 임원 후보의 성적 기준을 제외하고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았다.



### 1) 자치권 보장



### 2) 임원후보 성적기준



### 3) 예산, 장소, 시간 보장

### 4) 학생회 의견 존중

\*주: '그렇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IV-24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생회 활동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에 대한 응답은 일정한 추세보다는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편이다. 2018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자치권 보장(0.1%p), 임원후보 성적기준(2.7%p), 예산·장소·시간 보장(0.7%p)면에서는 자율권 보장 정도가 높아졌고, 학생회 의견존중(1.5%p)만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② 학급회의 활성화 정도

학급회의 활성화 정도는 학급회의 운영 여부와 학급회의에서 자유로운 의견제시 가능 여부를 통해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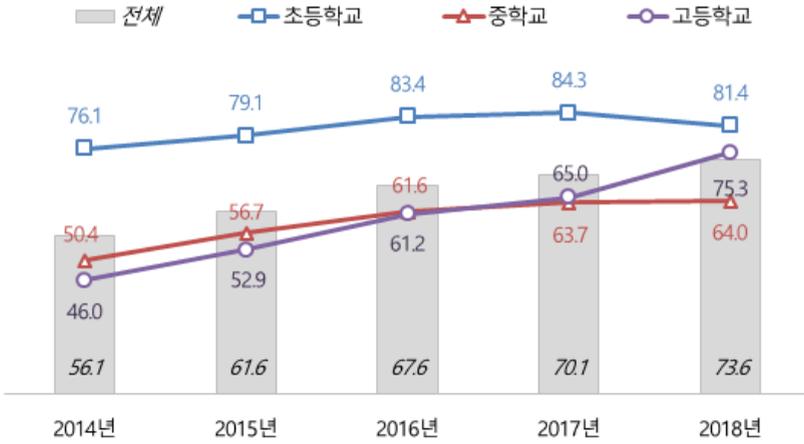
표 IV-24 학급회의 운영 여부

(단위 : %(명))

구분	운영되고 있다	운영되지 않는다	전체(n)	$\chi^2$
전체	73.6	26.4	100.0(9,022)	
성별	남학생	73.5	100.0(4,687)	0.005
	여학생	73.6	100.0(4,335)	
학교급	초등학교	81.4	100.0(2,726)	224.852***
	중학교	64.0	100.0(2,847)	
	고등학교	75.3	100.0(3,449)	
지역 규모	대도시	72.2	100.0(3,680)	6.354*
	중소도시	74.6	100.0(4,394)	
	읍면지역	74.1	100.0(94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3.6	100.0(8,230)	0.613
	한부모가정	73.8	100.0(598)	
	조손가정	73.5	100.0(88)	
	기타	70.4	100.0(97)	
학업 성적	상	74.5	100.0(2,941)	8.902*
	중	74.2	100.0(3,993)	
	하	71.1	100.0(2,079)	
경제적 수준	상	74.0	100.0(4,966)	3.049
	중	73.5	100.0(3,182)	
	하	71.2	100.0(865)	

\*p<.05, \*\*p<.01, \*\*\*p<.001

학교에서 학급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73.6%, 운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4%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81.4%), 고등학생(75.3%), 중학생(64.0%) 순으로, 중소도시(74.6%), 읍면지역(74.1%), 대도시(72.2%) 순으로,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74.5%, 74.2%, 71.1%) 응답률이 높았다.



\* 주: '운영되고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IV-25 학급회의 운영여부(연도별 추이)

연도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학급회의 운영 비율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크게(10.3%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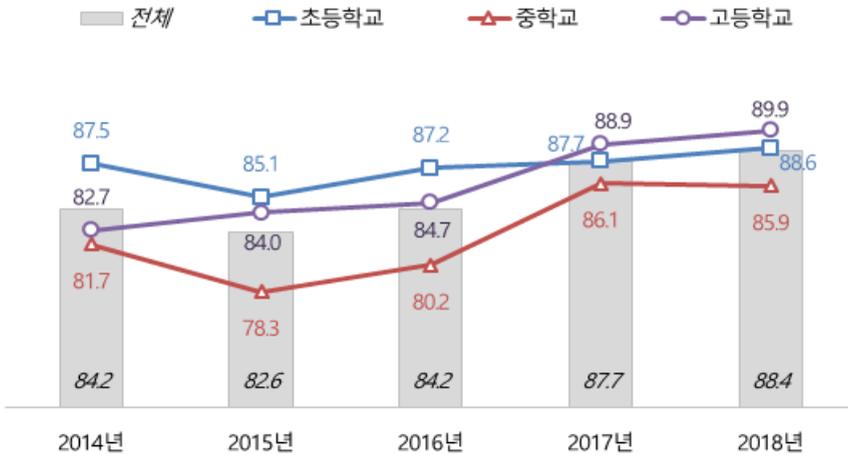
표 IV-25 학급회의 참여정도(자유로운 의견 제시 가능여부)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 이다	매우 그 렇다	전체(n)	$\chi^2$	
전체	3.19(0.687)	2.1	9.5	55.7	32.7	100.0(6,554)		
성별	남학생	3.19(0.696)	2.5	9.1	55.6	32.8	100.0(3,404)	6.059
	여학생	3.19(0.677)	1.7	10.0	55.8	32.5	100.0(3,150)	
학교급	초등학교	3.27(0.718)	2.2	9.2	47.8	40.7	100.0(2,188)	124.404 ***
	중학교	3.11(0.680)	1.9	12.2	58.4	27.5	100.0(1,801)	
	고등학교	3.17(0.657)	2.2	7.9	60.4	29.5	100.0(2,565)	
지역 규모	대도시	3.24(0.682)	2.0	8.1	53.5	36.4	100.0(2,631)	46.590***
	중소도시	3.16(0.672)	1.9	10.1	58.1	29.8	100.0(3,231)	
	읍면지역	3.13(0.756)	3.6	12.1	52.1	32.3	100.0(69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9(0.683)	2.0	9.5	55.7	32.8	100.0(5,983)	5.120
	한부모가정	3.14(0.736)	3.5	10.4	54.6	31.4	100.0(436)	
	조손가정	3.17(0.730)	3.5	8.7	55.4	32.3	100.0(64)	
	기타	3.21(0.671)	1.5	9.4	55.6	33.6	100.0(64)	
학업 성적	상	3.32(0.683)	1.7	7.4	48.5	42.4	100.0(2,166)	148.010 ***
	중	3.15(0.673)	2.1	10.1	58.9	28.9	100.0(2,926)	
	하	3.09(0.693)	2.8	11.6	59.6	26.0	100.0(1,457)	
경제적 수준	상	3.22(0.688)	1.9	9.5	53.7	34.9	100.0(3,630)	25.056***
	중	3.17(0.677)	2.3	9.1	58.2	30.4	100.0(2,311)	
	하	3.11(0.712)	3.0	11.3	57.3	28.3	100.0(608)	

\*p<.05, \*\*p<.01, \*\*\*p<.001

학급회의에서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88.4%였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1.6%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89.9%), 초등학생(88.5%), 중학생(85.9%) 순으로, 대도시(89.9%), 중소도시(87.9%), 읍면 지역(84.4%) 순으로,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상 90.9%, 87.8%, 85.6%),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88.6%, 중 88.6%, 하 85.6%)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26 학급회의 참여정도(연도별 추이)

학급회의에서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는 응답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까지는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가, 2017년부터는 고등학생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 ③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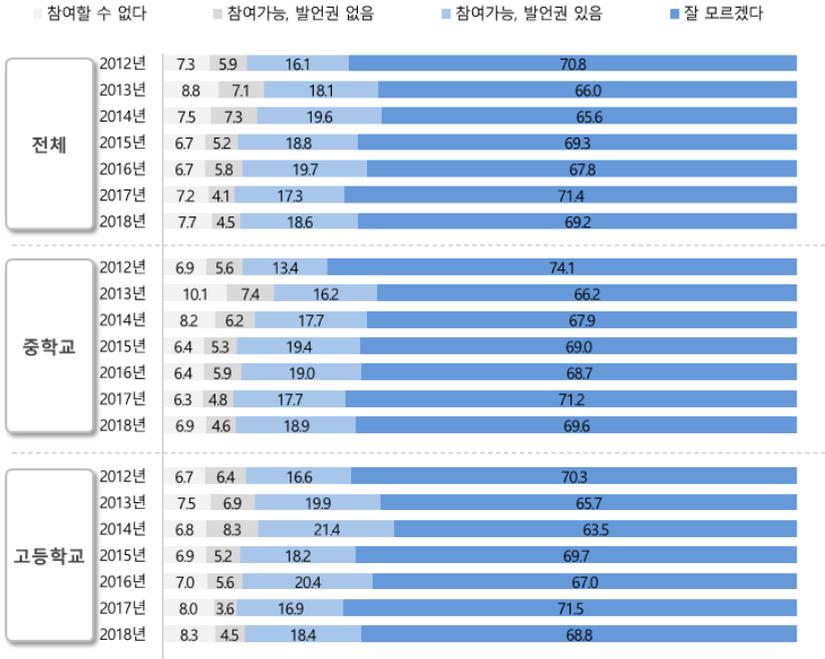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에 대하여 참여불가 7.7%, 참여가능, 발언권 없음 4.5%, 참여가능, 발언권 있음 18.6%, 잘 모르겠다 69.2% 등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참여가능, 발언권 있음 응답이 대도시(19.1%), 중소도시(19.0%), 읍면지역(14.9%) 순으로,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상 20.7%, 중 19.0%, 하 16.1%), 경제적 수준 상 20.4%, 하 19.8%, 중 16.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6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단위 : %(명))

구분	참여할 수 없다	참여가능, 발언권 없음	참여가능, 발언권 있음	잘 모르겠다	전체(n)	$\chi^2$	
전체	7.7	4.5	18.6	69.2	100.0(6,156)		
성별	남학생	8.4	4.3	18.2	69.1	100.0(3,211)	6.287
	여학생	6.9	4.8	19.1	69.3	100.0(2,945)	
학교급	중학교	6.9	4.6	18.9	69.6	100.0(2,790)	3.920
	고등학교	8.3	4.5	18.4	68.8	100.0(3,366)	
지역 규모	대도시	7.0	4.2	19.1	69.8	100.0(2,549)	15.148*
	중소도시	7.6	4.7	19.0	68.7	100.0(2,989)	
	읍면지역	10.5	5.1	14.9	69.4	100.0(61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7	4.5	18.7	69.1	100.0(5,618)	8.429
	한부모가정	7.0	5.4	16.5	71.0	100.0(431)	
	조손가정	7.3	1.8	16.6	74.3	100.0(48)	
	기타	11.0	0.0	25.9	63.2	100.0(54)	
학업 성적	상	8.6	4.0	20.7	66.8	100.0(1,631)	26.394***
	중	7.4	3.9	19.0	69.7	100.0(2,640)	
	하	7.3	6.0	16.1	70.6	100.0(1,879)	
경제적 수준	상	7.7	5.0	20.4	66.9	100.0(2,988)	28.539***
	중	7.7	3.7	16.0	72.6	100.0(2,423)	
	하	7.3	5.4	19.8	67.4	100.0(740)	

\* $p < .05$ , \*\* $p < .01$ , \*\*\* $p < .001$



\* 주: (단위: %)

그림 IV-27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연도별 추이)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일정한 증가 또는 감소 추세를 보이기보다는 연도별로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 2018년에는 참여가능, 발언권 있음의 응답 비율이 전년 대비 1.3%p 증가하였다. 참여할 수 없다는 응답 비율도 전년 대비 중학생(0.6%p), 고등학생(0.3%p)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

#### ④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정도에 대하여 응답자의 75.7%는 ‘그렇다’, 24.3%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남학생(78.5%)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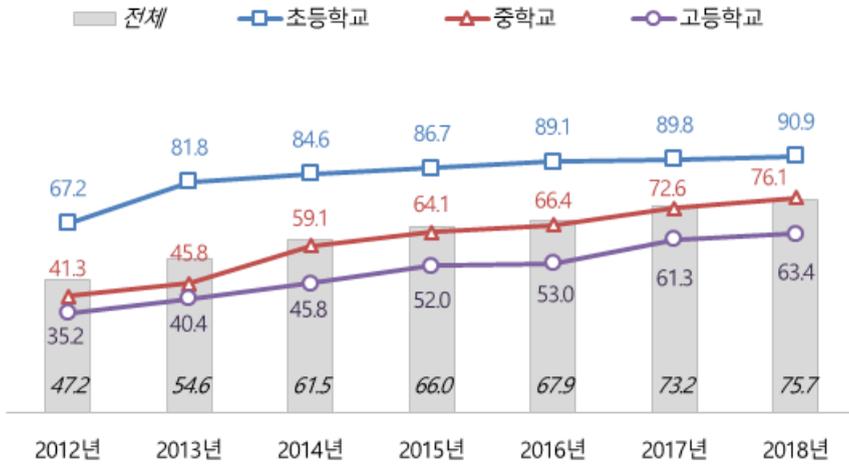
여학생(72.7%)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90.9%, 중 76.1%, 고 63.4%), 읍면지역(78.5%), 대도시(76.2%), 중소도시(74.7%)의 순으로, 학교성적이 높을수록(상 79.9%, 중 76.9%, 하 67.7%),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79%, 중 74%, 하 62.9%)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IV-27 학교규칙 및 규정 제·개정 시 학생의견 반영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 렇지 않다	그 렇지 않은 편이다	그 런 편이다	매우 그 렇다	전체(n)	$\chi^2$	
전체	2.89(0.784)	6.4	17.9	56.4	19.4	100.0(9,043)		
성별	남학생	2.93(0.778)	6.3	15.2	57.9	20.6	100.0(4,694)	51.930***
	여학생	2.84(0.788)	6.4	20.8	54.7	18.0	100.0(4,349)	
학교급	초등학교	3.28(0.678)	1.9	7.2	52.3	38.6	100.0(2,735)	1279.354 ***
	중학교	2.84(0.734)	6.1	17.8	61.9	14.2	100.0(2,855)	
	고등학교	2.62(0.779)	10.1	26.5	55.0	8.4	100.0(3,453)	
지역 규모	대도시	2.91(0.805)	6.8	17.0	54.7	21.5	100.0(3,683)	31.388***
	중소도시	2.86(0.776)	6.5	18.7	57.2	17.5	100.0(4,407)	
	읍면지역	2.94(0.731)	4.1	17.3	58.7	19.8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89(0.783)	6.3	17.9	56.3	19.5	100.0(8,249)	14.983
	한부모가정	2.80(0.794)	8.1	19.4	57.2	15.3	100.0(600)	
	조손가정	3.00(0.837)	7.0	13.5	51.7	27.8	100.0(88)	
	기타	2.96(0.758)	5.0	15.5	58.0	21.4	100.0(97)	
학업 성적	상	3.02(0.806)	5.8	14.4	52.4	27.5	100.0(2,944)	294.206***
	중	2.90(0.756)	5.6	17.5	58.5	18.4	100.0(4,006)	
	하	2.69(0.766)	8.8	23.6	57.8	9.9	100.0(2,085)	
경제적 수준	상	2.97(0.784)	5.7	15.3	55.5	23.5	100.0(4,976)	195.497***
	중	2.82(0.759)	6.6	19.4	59.0	15.0	100.0(3,192)	
	하	2.65(0.810)	9.5	27.6	51.0	11.9	100.0(868)	

\*p<.05, \*\*p<.01, \*\*\*p<.001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28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1)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연도별 추이)**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 정도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모든 학교급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 (3) 사회에서의 참여정도

사회에서의 참여 정도는 아동·청소년 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정도,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선거참여 연령에 대한 인식,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등 네 가지 지표항목으로 구성된다.

①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정도는 청소년특별회의 의 제수용률을 비롯하여,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현황을 통해 살펴본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정책화하는 참여기구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2018c: 89). 2017년에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연계 등 30개 과제를 발굴·제안하였고, 이 중 24개 과제가 정부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수용률 80.0%를 보였다.

표 IV-28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연도	의제	수용률
2004 (시범)	• 청소년 인권·참여 (13개 과제)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
2005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35개 과제)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 영역 31개 과제 수용	31개 수용 (88.6%)
2006	• 청소년 성장의 사회자원망 조성(37개 과제)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33개 수용	33개 수용 (89.2%)
2007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18개 과제) - 선거연령 하향 등 15개 수용	15개 수용 (83.3%)
2008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35개 과제)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29개 수용	29개 수용 (82.9%)
2009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만들기(20개 과제)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14개 수용	14개 수용 (70.0%)
2010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53개 과제)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49개 수용	49개 수용 (92.4%)
2011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41개 과제)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3개 영역 30개 과제(89개 세부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2013	• 꿈을 향한 두드림, 끼를 찾는 청소년 - 진로체험활동 등 3개 영역 29개 과제 제안	28개 수용 (96.5%)

연도	의제	수용률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미래,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로</li> <li>- 청소년 참여로 만드는 안전 등 4개 영역 31개 과제 제안</li> </ul>	28개 수용 (90.3%)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역사이해, 미래를 향한 발걸음</li> <li>- 역사교육 질적 강화 및 역사 인재 양성 등 3개 분야 23개 과제 제안</li> </ul>	20개 수용 (87.0%)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틀림이 아닌 다름, 소수를 사수하라</li> <li>- 학교 밖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활성화 등 4개 분야 29개 과제 제안</li> </ul>	28개 수용 (96.5%)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진로라는 미로에서 꿈의 날개를 펼치다</li> <li>-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등 3개 분야 30개 과제 제안</li> </ul>	24개 수용 (80.0%)

\* 출처: 여성가족부(2018c). 청소년백서. p.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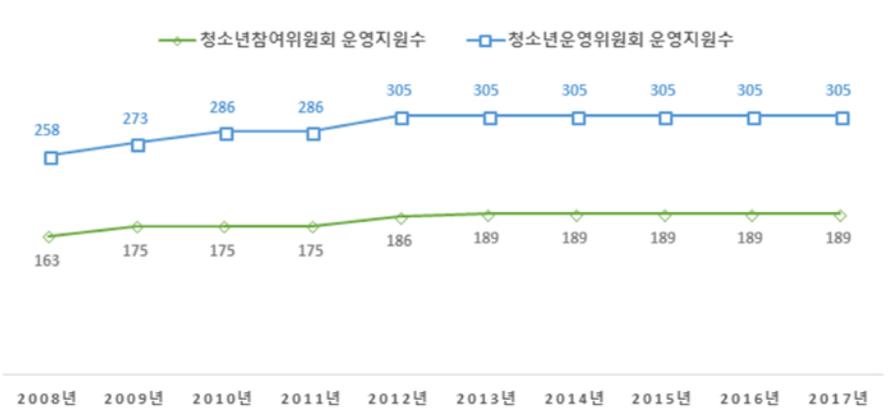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 중인 참여기구로,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과정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기준 여성가족부, 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총 189개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의 사업,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구로서, 2017년 기준 전국 305개소, 총 5,281명의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8c: 88). 그러나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013년부터 189개로 정체되어 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2012년부터 305개로 정체되어 있어 지자체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역별 기구 현황은 <표 IV-30>에 제시되어 있다.

표 IV-29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08~2017)

(단위 : 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청소년참여위원회	163	175	175	175	186	189	189	189	189	189
청소년운영위원회	258	273	286	286	305	305	305	305	305	305

\* 출처: 여성가족부(2018c). 청소년백서. pp.87-89. 재구성



(단위 : 개)

\* 출처: 여성가족부(2018c). 청소년백서. pp.87-89. 재구성

그림 IV-29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08~2017)

표 IV-30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7)

(단위 : 개)

	계	여 성 가 족 부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청소년참여 위원회	189	1	6	3	3	10	2	2	6	1	32	19	5	16	15	23	24	20	1
청소년운영 위원회	305	-	44	14	9	12	6	10	7	1	62	32	15	13	16	14	13	15	22

\* 출처: 여성가족부(2018c). 청소년백서. pp.84-90. 재구성

아동총회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본대회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이 참여하여 전국 지역대회 활동과 본대회를 통해 정책 모니터링과 제안 등을 하는 정책 참여활동이다(김영지 외, 2016: 170). 2017년 제14회 아동총회에서는 ‘아동의 목소리, 대한민국에서 살아 숨쉬다 - 아동의 정책, 아동이 직접 만들어 나가요’라는 주제로 130여명의 아동이 참여하였고, 웹툰의 연령등급 구분과 이 과정에서 아동의 참여, 아동 관련 형사재판에 아동이 배심원으로 참여, 장애아동 참여기구 설치 등, 13개 정책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표 IV-31 아동총회 개최현황

구분	주요내용
제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11. 8. 17 ~ 19(2박 3일)</li> <li>• 주제: 세상과 함께하는 행복한 소통</li> <li>• 참여인원: 총 1,741명(아동 1,338명, 지도자 및 실무자 403명)</li> <li>•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li> </ul>
제9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12. 8. 8 ~ 10(2박 3일)</li> <li>• 주제: 꿈, 행복을 향한 도전</li> <li>• 참여인원: 총 1,831명(아동 1,529명, 지도자 및 실무자 402명)</li> <li>•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li> </ul>
제10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13. 8. 7 ~ 9(2박 3일)</li> <li>• 주제: 건강한 아동, 건강한 대한민국</li> <li>• 참여인원: 총 1,174명(아동 897명, 지도자 및 실무자 277명)</li> <li>• 주관: InCRC 국제아동인권센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li> </ul>
제1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14. 8. 11 ~ 13(2박 3일)</li> <li>• 주제: 대한민국 아동안전은 녹색불입니까?</li> <li>• 참여인원: 총 810명(아동 555명, 지도자 및 실무자 255명)</li> <li>•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li> </ul>
제1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15. 8. 5 ~ 7(2박 3일)</li> <li>• 주제: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 “미래를 준비하는 삶”</li> <li>• 참여인원: 총 1,119명(아동 818명, 지도자 및 실무자 301명)</li> <li>•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li> </ul>
제1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16. 8. 9 ~ 11(2박 3일)</li> <li>• 주제: 우리의 꿈, 말해도 되나요? - 내가 바라는 세상</li> <li>• 참여인원: 총 1,262명(아동 924명, 지도자 및 실무자 338명)</li> <li>• 주관: 한국아동단체협의회</li> </ul>
제14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17. 8. 8 ~ 10(2박 3일)</li> <li>• 주제: 아동의 목소리, 대한민국에서 살아 숨쉬다. - 아동의 정책 아동이 직접 만들어 나가요</li> <li>• 참여인원: 총 170명(아동 130명, 지도자 및 실무자 40명)</li> <li>• 주관: 보건복지부, 한국아동단체협의회</li> </ul>

\* 출처: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18). 대한민국 아동총회(제1회~제14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웹 사이트 <http://www.kocconet.or.kr/>에서 2018년 7월 24일에 인출, 재구성.

## ②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활동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9%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35.5%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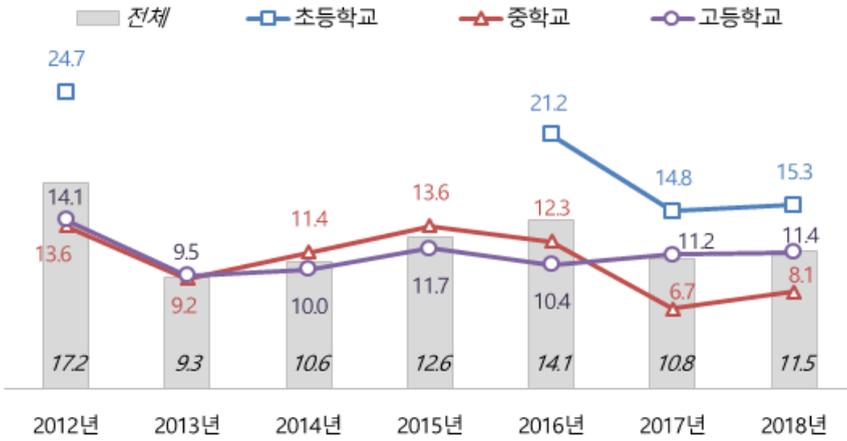
내용은 모른다', 9.3%는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2.2%는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하여, 11.5%가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알고 있었다. 배경변인 별로 살펴보면, 여학생(11.8%)이 남학생(11.3%)보다, 초등학교(15.3%), 고등학교(11.4%), 중학생(8.1%) 순으로, 읍면지역(15.8%), 중소도시(11.2%), 대도시(10.8%) 순으로,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상 14.4%, 중 10.7%, 하 9.1%),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12.9%, 중 10.1%, 하 9.0%),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V-32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름을 들어	알고 있으나	잘 알고	전체(n)	x <sup>2</sup>	
		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참여해 보지 않았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전체	52.9	35.5	9.3	2.2	100.0(9,047)		
성별	남학생	55.5	33.2	9.3	2.0	100.0(4,694)	29.131***
	여학생	50.1	38.0	9.4	2.4	100.0(4,353)	
학교급	초등학교	43.8	40.9	12.9	2.4	100.0(2,740)	179.057***
	중학교	58.8	33.1	6.9	1.2	100.0(2,853)	
	고등학교	55.4	33.3	8.5	2.9	100.0(3,454)	
지역 규모	대도시	52.2	37.1	9.1	1.7	100.0(3,684)	42.080***
	중소도시	54.3	34.4	9.1	2.1	100.0(4,410)	
	읍면지역	49.4	34.8	11.1	4.7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2.8	35.6	9.4	2.2	100.0(8,254)	7.428
	한부모가정	56.0	34.6	7.4	2.1	100.0(599)	
	조손가정	48.2	37.5	9.9	4.4	100.0(89)	
	기타	52.0	33.7	12.4	1.8	100.0(97)	
학업 성적	상	47.5	38.1	11.8	2.6	100.0(2,948)	72.438***
	중	54.5	34.8	8.6	2.1	100.0(4,004)	
	하	57.8	33.1	7.1	2.0	100.0(2,087)	
경제적 수준	상	50.6	36.5	10.7	2.2	100.0(4,975)	41.071***
	중	55.9	34.0	7.7	2.4	100.0(3,194)	
	하	56.1	35.0	7.3	1.7	100.0(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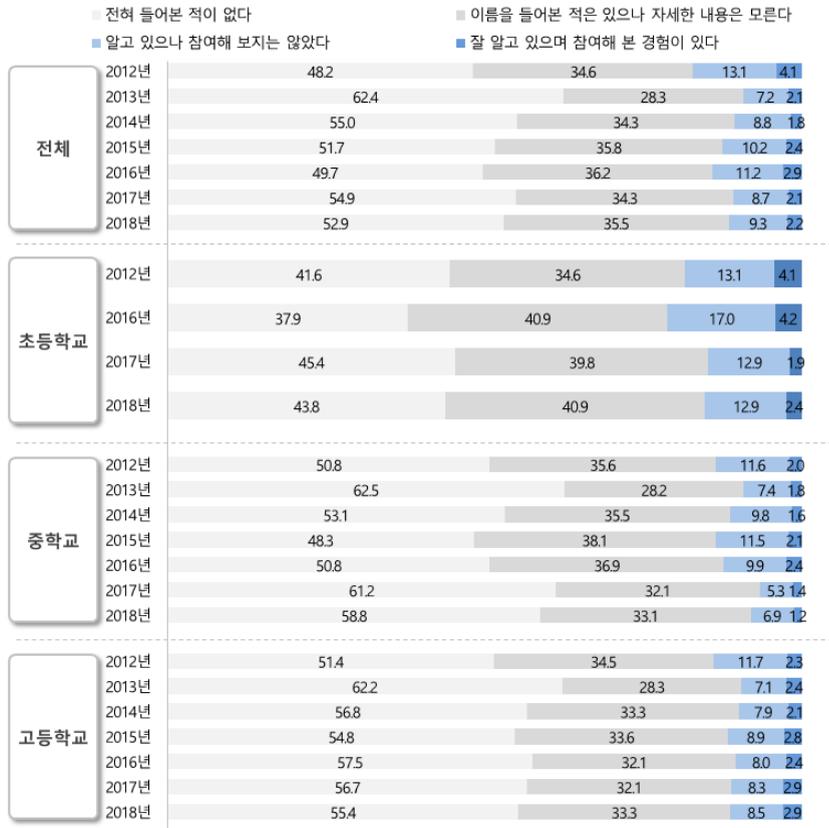
\*p<.05, \*\*p<.01, \*\*\*p<.001



\* 주: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와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의 합계(단위: %)  
 \* 주: 2013~2015년 전체값에는 중/고등학교 응답값만 포함됨.

**그림 IV-30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연도별 추이)**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현재까지 2017년에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에 대한 조사는 2016년부터 이루어졌는데 2017년에 하락폭이 컸으나(6.4%p) 2018년에는 다시 증가하였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전년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다.



\* 주: (단위:%)

그림 IV-31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 전체 응답(연도별 추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응답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응답 비율에 편차가 있으며, 2018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소폭(2.0%p) 감소하였다.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활동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1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약간(0.5%p) 증가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미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③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투표 연령에 대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만 19세보다 낮추어야한다'가 35.8%,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가 45.2%,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가 5.5%, '잘 모르겠다'가 13.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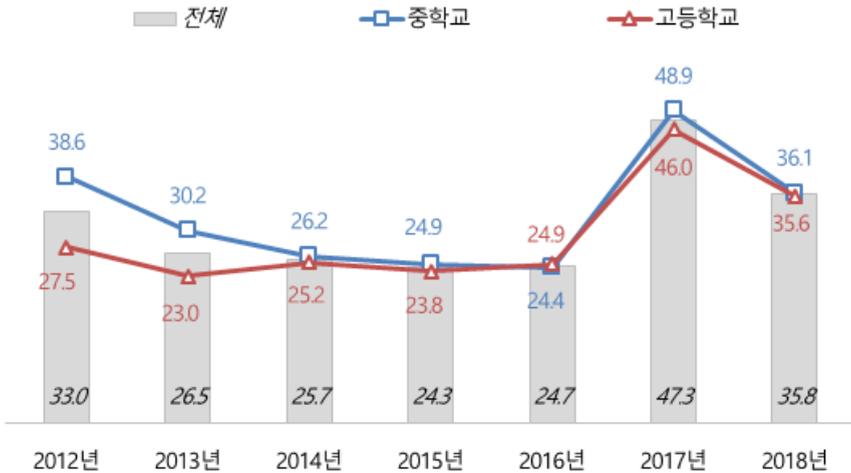
표 IV-33 투표 연령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예, 만 18세 등)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예, 만 20세 등)	잘 모르겠다	전체(n)	$\chi^2$	
전체	35.8	45.2	5.5	13.5	100.0(6,312)		
성별	남학생	35.8	41.6	7.3	15.3	100.0(3,288)	78.995***
	여학생	35.8	49.2	3.5	11.5	100.0(3,024)	
학교급	중학교	36.1	42.5	5.4	16.0	100.0(2,856)	34.306***
	고등학교	35.6	47.5	5.5	11.4	100.0(3,456)	
지역 규모	대도시	35.5	46.1	5.2	13.2	100.0(2,602)	5.096
	중소도시	36.1	44.1	5.7	14.1	100.0(3,077)	
	읍면지역	35.4	47.2	5.6	11.7	100.0(63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5.9	45.5	5.6	13.0	100.0(5,748)	21.300*
	한부모가정	33.5	44.1	4.0	18.5	100.0(452)	
	조손가정	34.7	39.7	7.2	18.4	100.0(49)	
	기타	42.0	33.0	2.8	22.1	100.0(57)	
학업 성적	상	38.2	48.4	4.5	8.9	100.0(1,661)	65.570***
	중	35.1	45.7	5.7	13.5	100.0(2,718)	
	하	34.7	41.8	6.0	17.5	100.0(1,926)	
경제적 수준	상	35.9	46.1	6.0	12.0	100.0(3,053)	28.216***
	중	34.5	45.7	4.5	15.3	100.0(2,485)	
	하	39.3	40.5	6.9	13.3	100.0 (768)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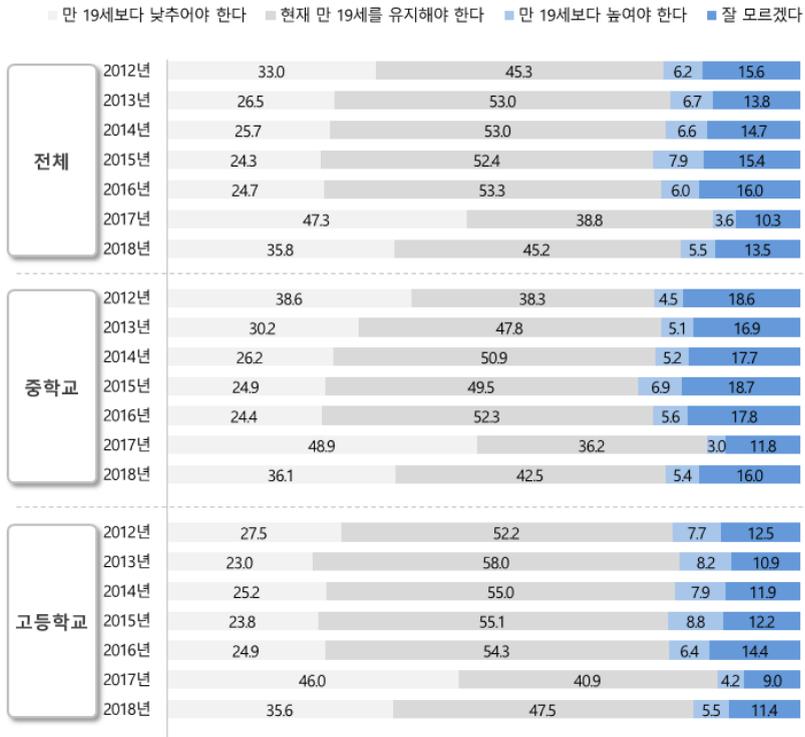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투표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중학생 (36.1%)이 고등학생(35.6%)보다, 기타(42.%), 양부모가정(35.9%), 조손가정 (34.7%), 한부모가정(33.5%) 순으로,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상 38.2%, 중 35.1%, 하 34.7%), 경제적 수준 하(39.3%), 상(35.9%), 중(34.5%)의 순으로 높았다.



\* 주: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IV-32 투표 연령에 대한 의견(연도별 추이)

선거연령을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에 급격히 응답 비율이 증가했다가 2018년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2016년 이전보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 주: (단위:%)

그림 IV-33 투표 연령에 대한 의견(연도별 추이)

‘잘 모르겠다’는 응답 비율 역시 2017년에 감소폭이 컸다가(5.7%p), 2018년에는 다소 증가했지만, 여전히 2016년 이전보다는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의 응답 비율 역시 마찬가지로 경향을 보이고 있다.

#### ④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방해 요인

##### 가. 참여권 보장 수준

참여권 보장 수준은 ‘우리사회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 62.1%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27.9%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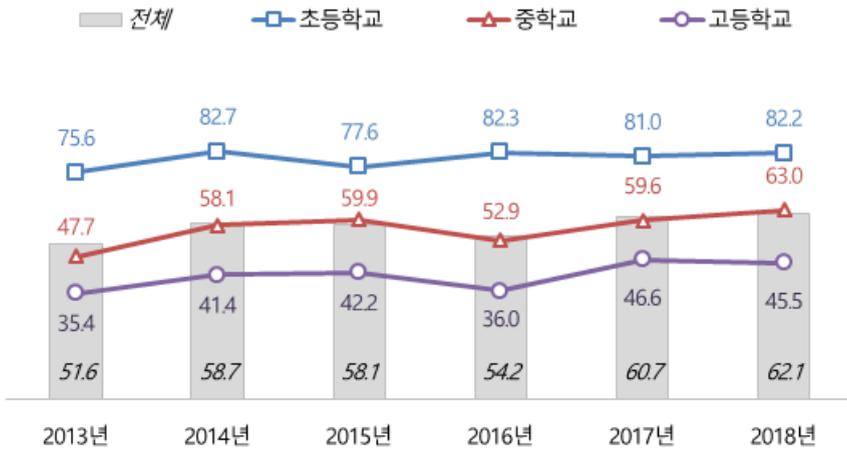
표 IV-34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참여 권리보장 수준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2.69(0.834)	8.7	29.2	46.8	15.4	100.0(9,052)		
성별	남학생	2.72(0.844)	9.1	26.1	48.3	16.5	100.0(4,698)	47.028***
	여학생	2.65(0.821)	8.2	32.5	45.2	14.1	100.0(4,353)	
학교급	초등학교	3.03(0.726)	3.6	14.2	58.0	24.2	100.0(2,741)	932.163***
	중학교	2.69(0.819)	8.4	28.6	48.6	14.4	100.0(2,858)	
	고등학교	2.42(0.827)	12.9	41.6	36.4	9.1	100.0(3,452)	
지역 규모	대도시	2.69(0.849)	9.0	28.9	45.6	16.4	100.0(3,687)	14.620*
	중소도시	2.68(0.818)	8.3	30.0	47.4	14.2	100.0(4,412)	
	읍면지역	2.72(0.843)	9.1	26.1	48.4	16.4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69(0.833)	8.7	29.1	47.0	15.2	100.0(8,260)	10.623
	한부모가정	2.70(0.830)	7.5	31.2	44.9	16.3	100.0(598)	
	조손가정	2.70(0.948)	14.3	20.9	45.1	19.7	100.0(89)	
	기타	2.75(0.870)	8.1	29.2	42.8	19.9	100.0(97)	
학업 성적	상	2.78(0.836)	7.3	26.3	47.3	19.0	100.0(2,946)	140.477***
	중	2.70(0.803)	7.5	28.8	49.4	14.3	100.0(4,007)	
	하	2.53(0.867)	12.8	34.0	41.0	12.3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2.78(0.815)	7.0	25.6	49.8	17.7	100.0(4,979)	178.370***
	중	2.60(0.826)	9.7	32.8	45.0	12.4	100.0(3,195)	
	하	2.47(0.896)	14.7	36.0	36.3	12.9	100.0(870)	

\* $p < .05$ , \*\* $p < .01$ , \*\*\* $p < .001$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남학생(64.8%)이 여학생(59.3%)보다,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82.2%, 중 63.0%, 고 45.5%), 읍면지역(64.8%), 대도시(62.0%), 중소도시(61.6%) 순으로,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상 66.3%, 중 63.7%, 하 53.3%),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67.5%, 중 57.4%, 하 49.2%),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34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참여 권리보장 수준(연도별 추이)

참여권 보장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 이후 긍정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에는 전년도 대비 초등학교생과 중학생에게서 긍정 응답 비율이 약간(초 1.2%p, 중 3.4%) 증가하였고, 고등학생은 약간(1.1%p) 감소하였다.

#### 나. 참여의 방해요인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라는 응답이 38.7%로 가장 높았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26.0%, '참여 활동 정보 부족' 20.1%, '참여 기회와 방법이 없음' 11.6%, '학교의 반대' 1.9%, '부모(보호자)의 반대' 1.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5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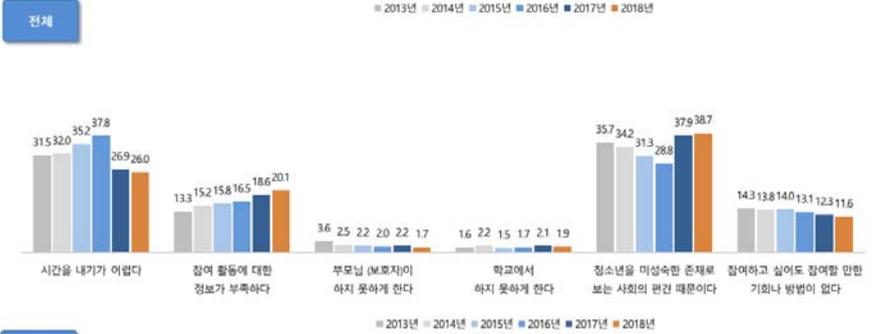
구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전체(n)	$\chi^2$	
전체	26.0	20.1	1.7	1.9	38.7	11.6	100.0(9,024)		
성별	남학생	31.5	19.5	2.2	2.2	33.5	11.2	100.0(4,683)	199.153**
	여학생	20.1	20.8	1.2	1.6	44.2	12.0	100.0(4,341)	*
학교급	초등학교	36.3	20.5	3.1	0.6	25.4	14.1	100.0(2,734)	499.511**
	중학교	24.8	17.4	1.2	1.7	45.0	9.9	100.0(2,851)	
	고등학교	18.8	22.1	1.0	3.1	44.0	10.9	100.0(3,438)	
지역 규모	대도시	25.4	19.6	1.6	1.6	40.9	10.9	100.0(3,679)	22.079*
	중소도시	26.2	20.1	1.9	2.1	37.6	12.1	100.0(4,396)	
	읍면지역	28.0	22.3	1.3	1.6	34.9	11.8	100.0(94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6.0	20.3	1.7	1.9	38.7	11.4	100.0(8,232)	26.689*
	한부모가정	25.9	18.5	1.1	1.2	40.8	12.5	100.0(598)	
	조손가정	27.7	16.4	0.0	6.0	30.2	19.7	100.0(88)	
	기타	32.2	20.2	4.5	2.5	29.7	11.0	100.0(97)	
학업 성적	상	28.3	18.6	1.6	1.4	38.7	11.4	100.0(2,942)	46.879***
	중	26.5	21.4	1.8	1.9	36.6	11.9	100.0(3,995)	
	하	22.0	19.8	1.7	2.5	42.6	11.4	100.0(2,079)	
경제적 수준	상	28.7	20.4	1.6	1.7	35.8	11.7	100.0(4,962)	67.366***
	중	23.7	20.0	1.9	2.0	41.3	11.1	100.0(3,186)	
	하	19.0	18.9	1.8	2.0	45.5	12.8	100.0(868)	

\*p<.05, \*\*p<.01, \*\*\*p<.001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남 33.5%, 여 44.2%)에 가장 많이 응답한 가운데, 남학생은 ‘시간 부족’(31.5%), 여학생은 ‘정보 부족’(20.8%)에 더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은 ‘시간부족’(36.3%)에, 중학생(45.0%)과 고등학생(44.0%)은 ‘사회 편견’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참여 방해요인에 대한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시간 부족’에 응답한 비율은 2016년 이후 감소해온 반면, ‘활동정보 부족’에 응답한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응답한 비율은 2016년 까지 감소해 오다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참여 기회와 방법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응답자에 계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시간 부족’이라는 응답이 지속적으로 높고, ‘부모님(보호자) 반대’ 응답 비율이 다른 학교급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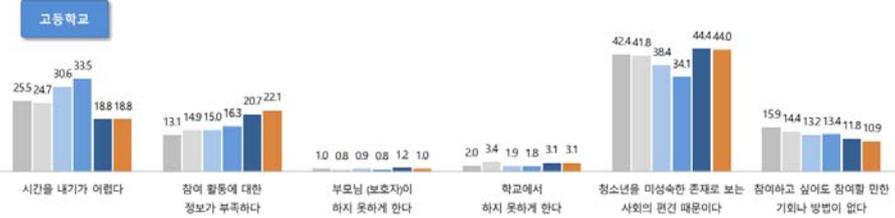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주: (단위:%)

그림 IV-35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연도별 추이)

##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 (1) 사상, 양심적 자유 보장 정도

#### ①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

사상의 자유 보장 정도는 가정, 학교,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 묻는 것으로 알아보았다. 가정에서 의견 표현 정도는 전체의 91.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고등학생(92.0%)의 긍정 응답 비율이 중학생(89.8%)보다 높았다. 학교의 경우 83.7%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고등학생의 긍정응답(84.2%)이 중학생(83.0%)에 비해 높았다. 사회의 경우 70.9%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중학생(74.3%)이 고등학생(67.2%)보다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IV-36 사상의 자유 보장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1) 가정	전체	3.36(0.679)	1.3	7.6	45.2	45.8	100.0(6,311)
	중학교	3.32(0.686)	1.2	8.9	46.0	43.8	100.0(2,858)
	고등학교	3.38(0.672)	1.4	6.6	44.6	47.4	100.0(3,453)
2) 학교	전체	3.12(0.727)	2.5	13.8	53.2	30.5	100.0(6,308)
	중학교	3.10(0.717)	2.2	14.8	54.2	28.8	100.0(2,855)
	고등학교	3.13(0.735)	2.7	13.1	52.3	31.9	100.0(3,453)
3) 사회	전체	2.89(0.823)	5.5	23.6	47.5	23.4	100.0(6,310)
	중학교	2.95(0.836)	5.9	19.8	47.6	26.7	100.0(3,289)
	고등학교	2.82(0.802)	5.0	27.8	47.5	19.7	100.0(3,021)

\*p<.05, \*\*p<.01, \*\*\*p<.001



1) 가정



2) 학교



3) 사회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주: 2017, 2018년 전체값에는 중/고등학교 응답값만 포함됨.

그림 IV-36 사상의 자유 보장(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긍정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에 있었으나, 201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종교 자유 보장정도

종교의 자유는 학교와 가정에서의 보장 정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종교재단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32.6%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67.4%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형제와 관계없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81.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고등학생(84.6%)이 중학생(78%)에 비해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IV-37 종교의 자유 보장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1) 학교 종교행사에 자율적 참여	전체	2.00(1.067)	44.6	22.8	20.5	12.2	100.0(664)	0.314
	중학교	2.03(1.086)	44.2	22.2	20.4	13.2	100.0(213)	
	고등학교	1.99(1.060)	44.8	23.0	20.5	11.7	100.0(451)	
2) 부모형제와 관계없이 종교 선택	전체	3.22(0.863)	5.1	13.2	36.1	45.5	100.0(6,304)	58.196***
	중학교	3.14(0.921)	7.1	14.9	34.4	43.6	100.0(2,851)	
	고등학교	3.28(0.807)	3.5	11.8	37.5	47.1	100.0(3,453)	

\*p<.05, \*\*p<.01, \*\*\*p<.001



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주: 2012년에는 '학교의 종교행사에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질문하였으므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합산한 값을 제시함.

\*주: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2017, 2018년 전체값에는 중/고등학교 응답값만 포함됨.

그림 IV-37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응답률은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다소 감소되었고, 가정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 (1) 결사·집회 경험률

##### ① 결사·집회 경험률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경험이 있는 응답 비율은 14.3%로 중학생(16.2%)의 응답 비율이 고등학생(12.7%)보다 높았다.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12.2%로 나타났고, 고등학생(12.7%)의 비율이 중학생(11.5%)보다 높았다.

표 IV-38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전체(N)	$\chi^2$
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전체	1.63(0.819)	55.1	30.7	10.5	3.8	100.0(6,303)	21.714 ***
	중학교	1.68(0.842)	52.5	31.3	12.1	4.2	100.0(2,854)	
	고등학교	1.59(0.797)	57.2	30.1	9.2	3.5	100.0(3,448)	
2) 거리 집회나 문화 행사 참여	전체	1.59(0.743)	54.7	33.1	10.5	1.7	100.0(6,288)	12.588 **
	중학교	1.60(0.742)	53.9	34.6	9.5	2.0	100.0(2,845)	
	고등학교	1.59(0.743)	55.4	31.9	11.3	1.4	100.0(3,443)	

\*p<.05, \*\*p<.01, \*\*\*p<.001



#### 1)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 2)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주: '가끔 있다'와 '자주 있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38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 경험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경험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경험은 2017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이후 2018년에는 조금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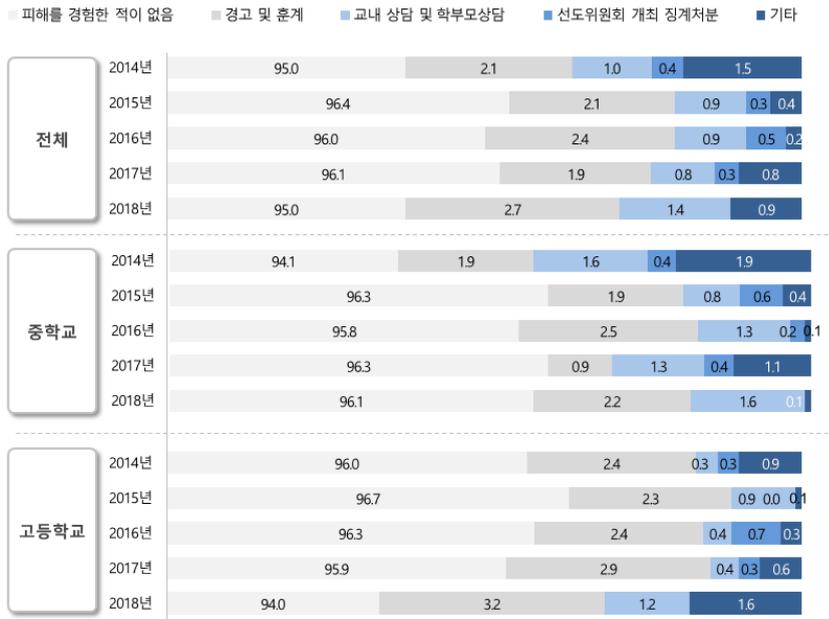


그림 IV-39 용모, 복장, 소지품검사 경험

사회문제 관련 참여활동 경험자를 대상으로 해당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조사한 결과,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95.0%로 가장 많았고, 경고 및 훈계 2.7%,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1.4%, 기타 0.9%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피해 경험률은 5% 내외로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경고 및 훈계(0.8%p),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0.6%p) 비율이 약간 증가하였다.

#### 4) 사생활의 보호

##### (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 ①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각종 검사여부를 조사하였다. 1년에 1회 이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용모 검사 경험률은 52.5%로 나타났고, 고등학생(57.7%)이 중학생(46.2%)보다 높게 나타났다. 복장 검사 경험률은 48.7%였고, 마찬가지로 고등학생(54.2%)이 중학생(42.2%)보다 높게 나타났다. 소지품 검사 경험률은 전체 18.0%로,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IV-39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일 년에	2~3개	한 달에	1주일에	1년에	전체(N)	$\chi^2$
		없음	1~2회 정도	월 1~2회 정도	1~2회 정도	1~2회 이상	1회 이 상 합계		
1) 용모 검사	전체	47.5	15.6	11.9	12.0	13.0	52.5	100.0(6,312)	89.635 ***
	중학교	53.8	13.7	10.4	9.7	12.4	46.2	100.0(2,858)	
	고등학교	42.3	17.1	13.2	13.9	13.5	57.7	100.0(3,453)	
2) 복장 검사	전체	51.2	14.3	11.0	10.1	13.3	48.7	100.0(6,307)	96.961 ***
	중학교	57.8	13.1	9.2	9.2	10.7	42.2	100.0(2,854)	
	고등학교	45.8	15.3	12.5	10.9	15.5	54.2	100.0(3,453)	
3) 소지 품 검사	전체	82.0	12.2	2.9	1.6	1.3	18	100.0(6,310)	9.167
	중학교	83.1	11.8	2.8	1.3	1.0	16.9	100.0(2,856)	
	고등학교	81.1	12.6	2.9	1.9	1.5	18.9	100.0(3,454)	

\*p<.05, \*\*p<.01, \*\*\*p<.001



1) 용모 검사



2) 복장 검사



3) 소지품 검사

\*주: '한 번도 없음'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값의 합계(단위: %)

그림 IV-40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_용모·복장·소지품(연도별 추이)

사생활 관련 각종 검사 경험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모든 검사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 2018년도에 경험률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모검사와 복장 검사는 경험률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소지품 검사 경험률은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임을 알 수 있다.

## (2) 학생 정보 보호정도

학교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 정도를 조사한 결과, 교육비 미납자 이름 공개는 11.0%, 학생 징계사항 공개는 20.5%, 시험성적 공개는 20.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학생 징계사항 공개(고 22.9%, 중 19.3%, 초 18.6%)와 시험성적 공개(고

30.5%, 중 20.1%, 초 7.3%)의 경우 학교급이 높을수록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개인 정보 공개 비율은 해마다 점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0 개인의 정보 보호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1) 교육 비 미납	전체	1.49(0.741)	63.6	25.4	9.1	2.0	100.0(6,309)	7.105
	중학교	1.47(0.718)	64.9	25.0	8.4	1.6	100.0(2,854)	
	고등학교	1.52(0.759)	62.4	25.7	9.6	2.2	100.0(3,455)	
2) 징계 사항	전체	1.87(0.833)	37.6	42.0	16.1	4.3	100.0(9,020)	70.228 ***
	초등학교	1.81(0.840)	41.7	39.7	14.0	4.6	100.0(2,726)	
	중학교	1.84(0.831)	39.6	41.1	15.1	4.2	100.0(2,851)	
3) 개인 시험 성 적	전체	1.78(0.879)	47.5	32.4	15.3	4.9	100.0(9,023)	1147.16 7***
	초등학교	1.38(0.696)	72.3	20.3	4.8	2.6	100.0(2,730)	
	중학교	1.81(0.849)	43.1	36.8	15.9	4.1	100.0(2,848)	
	고등학교	2.07(0.914)	31.3	38.2	23.1	7.4	100.0(3,445)	

\*p<.05, \*\*p<.01, \*\*\*p<.001



1) 교육비 미납



2) 징계사항



3) 개인 시험성적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주: 2012년에는 질문 문장이 부정형이었으므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그렇지 않은 편이다'를 합산한 값을 제시함.

그림 IV-41 개인의 정보 보호(연도별 추이)

## 5) 정보접근권

### (1) 매체 접근율

#### ① 매체 이용률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지상파 TV 94.9%,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92.5%, 인터넷/모바일메신저 91.7%, 지상파 제외 TV 86.9%, 웹툰 81.5%, SNS 78.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1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

(단위 : %)

구분	지상파 TV	지상파 제외 TV	종이 신문	종이 만화책	종이 잡지/책	인터넷 신문	웹툰	인터넷 잡지/전자서적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 / 모바일 메신저	SNS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전체	94.9	86.9	26.3	54.4	63.3	55.2	81.5	26.0	92.5	91.7	78.9	34.3	
학교급	초등학교	95.9	81.5	27.0	77.5	69.7	34.1	69.6	22.7	92.2	82.7	56.1	22.9
	중학교	95.5	88.9	23.1	53.9	61.6	55.4	86.6	26.4	94.4	96.2	88.0	32.1
	고등학교	93.7	89.2	28.6	37.5	60.1	70.7	86.0	28.2	91.2	94.4	88.0	44.8

\* 출처: 여성가족부 (2016c).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70.  
김영지 외(2017). p. 141.

\* 주: 복수응답 결과

인터넷 이용 빈도와 시간을 보면, 10대의 98.1%가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평균 이용시간은 16.9시간으로 나타났다. 3-9세의 경우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73.1%였고 주평균 이용시간은 7.2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2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단위 : %, 시간)

구분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주평균 이용시간(시 간)
2011	10대	97.8	2.2	0.1	0.0	13.2
	20대	98.5	1.5	-	0.0	20.4
2012	10대	97.6	2.4	0.0	0.0	14.1
	20대	98.5	1.4	0.0	0.0	21.7
2013	10대	95.8	4.1	0.0(0.02)	-	14.1
	20대	99.3	0.7	0.0(0.03)	-	20.3
2014	10대	95.2	4.7	0.1	-	14.4
	20대	99.3	0.7	0.0(0.026)	-	20.5
2015	10대	96.6	3.3	0.1	0.1	14.5
	20대	99.8	0.2	-	-	21.0
2016	3-9세	54.0	42.9	2.9	0.2	5.3
	10대	93.9	5.6	0.3	0.2	15.4
	20대	99.6	0.4	-	-	22.8
2017	3-9세	73.1	15.2	11.0	0.7	7.2
	10대	98.1	0.9	1.0	-	16.9
	20대	100.0	-	-	-	23.6

\* 출처: 김영지 외 (2016).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VI: 총괄보고서. pp.208-2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a).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32.

인터넷 이용 목적을 보면 3-9세의 경우 여가활동이 9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커뮤니케이션(42.2%), 교육·학습(31.5%) 순으로 나타났으며, 10대의 경우 커뮤니케이션(97.1%), 여가활동(98.9%), 자료 및 정보 획득(92.6%), 교육·학습(73.6%)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IV-43 인터넷 이용 목적

(단위 : %)

구분		커뮤니케이션	여가활동	자료 및 정보 획득	홈페이지 등 운영	교육·학습	직업·직장
2015	3-9세	34.0	95.6	17.9	4.9	25.9	0.4
	10대	95.7	96.7	85.3	48.5	58.7	6.5
	20대	100.0	97.4	99.6	70.3	50.6	33.8
2016	3-9세	35.3	95.0	16.9	5.7	33.9	-
	10대	95.1	94.5	88.4	51.5	72.4	7.9
	20대	99.9	98.5	99.8	74.7	60.4	42.2
2017	3-9세	42.2	97.7	31.5	5.6	42.9	-
	10대	97.1	98.9	92.6	53.8	73.6	7.8
	20대	100.0	99.4	100.0	78.2	64.3	51.3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39.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a).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35.

\* 주: 복수응답 결과

한편, 만6세 이상 인구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9.5%이고 6~19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92.8%로 나타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a: 49). 3~9세의 주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5.7시간이고, 10대의 경우는 10.9시간으로 나타나 10대 청소년은 하루에 1.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예상해 볼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7a: 48).

표 IV-44 주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단위 : %, 시간)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3시간 미만	3시간~ 7시간 미만	7시간~ 14시간 미만	14시간~ 21시간 미만	21시간~ 35시간 미만	35시간 이상	주평균 (시간)
3-9세	9.7	19.1	30.5	31.6	6.7	1.8	0.6	5.7
10대	1.1	5.2	16.3	42.4	22.4	11.0	1.6	10.9
20대	0.0	1.1	7.4	38.1	31.1	18.6	3.7	14.3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7b).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p.48.

12~19세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서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종류는 커뮤니케이션(채팅, SNS 등)(84.5%), 사진 및 동영상(67.3%), 게임(49.3%), 음악, 미디어(37.7%), 뉴스(25.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5 스마트폰에서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종류

(단위 : %)

구분	채팅, SNS 등 커뮤니케이션	사진 및 동영상	뉴스	게임	음악, 미디어	맛집 등 지역정보	사전, 백과사전 등 지식	버스, 철도, 항공 등 공공교통 수단
12-19세	84.5	67.3	25.7	49.3	37.7	4.0	7.1	6.5
20대	80.3	61.7	39.7	30.7	31.8	9.0	5.3	8.1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7b).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p.240.

② 유해매체 이용률

유해매체 이용률은 성인용 영상물과 간행물 이용경험을 통해 알아본다. 2016년 기준, 최근 1년간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전체 41.5%이고, 남학생(51.6%)이 여학생(30.5%)보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초 18.6%, 중 42.4%, 고 58.0%)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영상물의 이용 경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27.6%,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19.1%, SNS 18.1%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은 전체 22.0%이고, 남학생(25.8%)이 여학생(17.8%)보다, 학교급이 높을수록(초 11.8%, 중 22.5%, 고 29.1%)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간행물의 이용 경로는 인터넷 만화(웹툰)(17.8%), 종이 만화책(5.2%), 전자 사진집(3.8%), 전자책(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46 성인용 영상물 이용경험

(단위 : %)

구분	이용률	TV방송	인터넷 포털 사이트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인터넷/모바일 메신저	SNS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스마트폰 앱
전체	41.5	13.8	27.6	19.1	10.0	18.1	10.4	11.2
성별	남자	51.7	16.3	37.4	21.6	12.4	15.2	15.1
	여자	30.5	11.1	17.0	16.3	7.3	5.0	6.9
학교급	초등학교	18.6	10.0	10.3	13.1	9.8	3.2	10.4
	중학교	42.4	12.7	30.4	19.4	10.5	6.6	11.0
	고등학교	58.0	17.7	38.2	23.2	9.6	19.0	11.8

\* 출처: 여성가족부 (2016c).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p.77-78.  
김영지 외(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p.142.

\* 주: 최근 1년간 경험(복수응답), 초등학교는 4-6학년 대상조사

표 IV-47 성인용 간행물 이용경험

(단위 : %)

구분	이용률	신문		잡지		만화책		사진집		소설책		
		종이 신문	인터 넷 신문	종이 잡지	인터 넷 잡지	종이 만화 책	인터 넷 만화 (웹툰)	종이 사진 집	전자 사진 집	서적	전자 책 (eBo ok)	
전체	22.0	1.4	3.1	1.8	2.3	5.2	17.8	1.8	3.8	2.5	3.1	
성별	남자	25.8	1.5	3.3	1.8	2.5	5.8	20.9	1.9	5.0	2.4	2.7
	여자	17.8	1.4	2.9	1.8	2.0	4.6	14.5	1.6	2.4	2.7	3.6
학교급	초등학교	11.8	2.4	2.4	2.4	1.8	7.4	8.1	2.2	1.8	2.6	1.8
	중학교	22.5	1.1	3.1	1.8	2.6	4.4	18.7	2.0	4.2	2.3	3.3
	고등학교	29.1	1.0	3.7	1.4	2.4	4.3	24.4	1.3	4.8	2.7	4.0

\* 출처: 여성가족부 (2016c).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p.82-83.  
김영지 외(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p.142.

\* 주: 최근 1년간 경험(복수응답), 초등학교는 4-6학년 대상조사

### ③ 아동·청소년 매체 접근성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매체 접근성은 도서관 수와 도서 접근성으로 알아본다. 일반 공공도서관은 2012년 745개에서 2016년 918개까지 늘어나고 있으며 어린이도서관은 2012년 83개에서 2016년 92개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V-48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

(단위 : 개)

구분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 공공도서관		745	780	842	889
어린이도서관		83	85	88	89	92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년도(2016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1.

학교도서관의 학생 1인당 장서 수는 2012년 초등학교 26.6권, 중학교 18.2권, 고등학교 14.4권이었던 것에서 2017년 초등학교 37.8권, 중학교 32.1권, 고등학교 21.7권 등으로 증가하였다. 학교급이 높을수록 1인당 장서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9 학생 1인당 장서 수

(단위 : 권)

구분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초등학교	26.6	30.2	33.4	34.9	36.6	37.8
중학교	18.2	19.8	22.6	25.9	29.4	32.1
고등학교	14.4	16.0	17.2	18.7	19.9	21.7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b). 2017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유·초·중등 교육통계편). p.124.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를 살펴보면, 2017년 59,724종의 신간 중에 아동 도서는 6,698종으로 점유율 11.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간 발행 부수 중 아동 도서 점유율은 20.51%를 차지하여 2013년 이후 감소하였다가 20% 내외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0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단위 : 종, 부)

구분	신간 발행 종수(종)					신간 발행 부수(부)				
	2013년	2014년	2015년	2015년	2016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계	43,146	47,589	45,213	60,864	59,724	86,513,472	94,165,930	85,018,354	88,676,892	83,656,330
아동	7,424	7,269	5,572	7,217	6,698	24,862,658	26,166,569	16,837,125	19,346,676	17,158,526
점유율	17.21%	15.27%	12.32%	11.86%	11.21%	28.74%	27.79%	19.80%	21.82%	20.51%

\*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2013~2016). 출판통계. p.1. 각 연도 (2018년 7월 20일 인출)

(2) 정보제공 정도

①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정보제공 정도는 학교에서 학교생활규정을 알려주거나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는 정도와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 제공 정도를 통해 알아보았다. 학교의 학교생활규정 공지 정도에 대해 88.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11.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IV-5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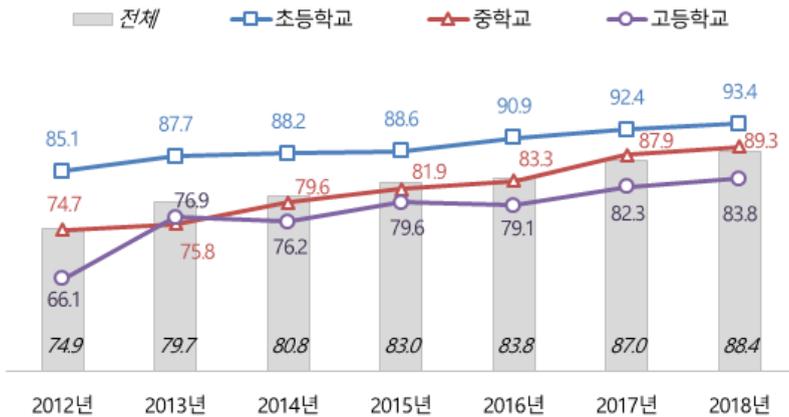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3.21(0.722)	3.1	8.5	52.6	35.8	100.0(9,021)		
성별	남학생	3.21(0.732)	3.3	8.7	52.1	35.9	100.0(4,686)	2.911
	여학생	3.22(0.711)	2.8	8.3	53.1	35.8	100.0(4,334)	
학교급	초등학교	3.44(0.682)	2.2	4.5	40.9	52.5	100.0(2,733)	591.690 ***
	중학교	3.21(0.699)	2.7	8.0	54.8	34.5	100.0(2,846)	
	고등학교	3.03(0.722)	4.1	12.1	60.1	23.7	100.0(3,442)	
지역 규모	대도시	3.25(0.733)	3.3	7.6	49.7	39.4	100.0(3,669)	47.938 ***
	중소도시	3.17(0.715)	3.0	9.4	55.0	32.5	100.0(4,400)	
	읍면지역	3.24(0.700)	2.5	7.9	52.5	37.1	100.0(95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1(0.722)	3.0	8.6	52.4	35.9	100.0(8,229)	7.505
	한부모가정	3.20(0.715)	3.1	8.0	54.4	34.4	100.0(599)	
	조손가정	3.16(0.758)	5.9	3.7	58.4	32.0	100.0(88)	
	기타	3.28(0.711)	2.7	6.8	50.3	40.2	100.0(97)	
학업 성적	상	3.34(0.720)	2.7	6.6	44.7	46.0	100.0(2,937)	242.219 ***
	중	3.19(0.712)	3.1	8.4	54.9	33.6	100.0(3,996)	
	하	3.07(0.715)	3.6	11.4	59.2	25.8	100.0(2,079)	
경제적 수준	상	3.27(0.730)	3.1	7.6	49.0	40.3	100.0(4,964)	104.010 ***
	중	3.15(0.706)	2.9	9.5	56.6	30.9	100.0(3,187)	
	하	3.11(0.712)	3.5	9.8	58.7	28.0	100.0(863)	

\*p<.05, \*\*p<.01, \*\*\*p<.001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초 93.4%, 중 89.3%, 고 83.8%), 읍면지역(89.6%), 대도시(89.1%), 중소도시(87.5%) 순으로,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상 90.7%, 중 88.5%, 하 85.0%),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89.3%, 중 87.5%, 하 86.7%)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교가 학교생활규정을 공지한다는 응답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42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 및 존중\_5)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연도별 추이)

## ②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보제공 정도는 정책자료, 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정보, 인권상담·구제기관 정보 등의 제공 정도를 통해 알아보았다.

아동·청소년용 정책자료를 받아봤다는 응답 비율은 17.9%로 나타났고, 중학생(21.0%)이 고등학생(15.3%)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정보를 받아봤다는 응답 비율은 17.1%였고, 중학생(19.0%)이 고등학생(15.6%)보다 응답률이 높았다. 인권상담·구제기관정보를 받아봤다는 응답 비율은 27.0%로, 고등

학생(28.8%)이 중학생(24.9%)보다 높았다.

표 IV-52 인권 관련 정보제공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전체(N)	$\chi^2$	
1) 아동·청소년 년용 정책자료	전체	82.1	17.9	100.0(6,312)	33.918***
	중학교	79.0	21.0	100.0(2,856)	
	고등학교	84.7	15.3	100.0(3,456)	
2) 아동권리 협약 등 인권 정보	전체	82.9	17.1	100.0(6,312)	13.079***
	중학교	81.0	19.0	100.0(2,856)	
	고등학교	84.4	15.6	100.0(3,456)	
3) 인권상담· 구제 기관 정보	전체	73.0	27.0	100.0(6,311)	12.372***
	중학교	75.1	24.9	100.0(2,855)	
	고등학교	71.2	28.8	100.0(3,456)	



1)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책자료



2) 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정보



3) 인권 상담·구제기관 정보

\*주: '그렇다'의 응답값(단위: %)

\*주: 2017, 2018년 전체값에는 중/고등학교 응답값만 포함됨.

그림 IV-43 인권 관련 정보제공(연도별 추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2018년에 세 항목 모두에서 정보제공 비율이 약간씩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 6) 소결

이 절에서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 대분류 영역에서 5개 중분류(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사생활 보호, 정보접근권)에 속하는 10개 소분류, 20개 지표항목을 점검하였다.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가정에서의 참여정도(의사결정시 존중 정도)는 진로(직업) 결정(94.2%), 상급학교 결정(92.9%), 집안의 중대사 결정(91.2%), 공부 시간·방법 결정(89.5%) 순으로 긍정 응답률이 높았다. 학생회 운영의 자율권 보장 정도는 자치권 보장 수준 31.7%, 학생회 임원 성적 기준 없음 38.0%, 학생회 활동 예산·장소·시간 보장 40.3%, 학생회 의견 존중 36.9%로 나타났다. 학급회의 운영 비율은 73.6%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학급회의 시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가능한 정도는 88.4%로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응답은 18.6%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생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응답은 7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는 2013년 이후 더 늘어나지 않고 각각 189개, 305개로 정체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참여기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11.5%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활동 경험 비율은 2.2%로 큰 변화가 없다.

선거연령을 현재 만19보다 낮추자는 의견은 35.7%로, 전년도의 급격한 상승 이후 다소 하락하였다.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62.2%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참여 방해요인으로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 38.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26.0%, ‘참여 활동 정보 부족’ 20.1%, ‘참여 기회와 방법이 없음’ 11.6% 순으로 나타났다.

사상의 자유는 가정(91.0%), 학교(83.7%) 사회(70.9%)의 순으로 높게 나타

났고,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201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종교의 자유는 학교 32.7%, 가정 81.6%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고,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사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사회문제 관련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경험률은 14.3%,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경험률은 12.2%로 나타났다.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경험률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경험률은 2017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후 2018년에는 조금 감소하였다.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용모 검사 52.5%, 복장 검사 48.7%, 소지품 검사 18.0%로 각각 나타났다. 모든 검사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 2018년도에 경험률이 약간 감소하였고, 용모 검사와 복장 검사는 경험률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고, 소지품 검사 경험률은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학생 정보 보호정도는 교육비 미납자 이름공개 11.1%, 학생 징계사항 공개 10.4%, 시험성적 공개 20.2%로 나타났고, 해마다 정보 보호 수준은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10대 청소년의 주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16.9시간,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10.9시간으로, 인터넷 이용 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97.1%,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종류는 84.5%가 채팅, SNS 등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인터넷과 스마트 폰이 10대 청소년의 일상적인 소통방식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에 있어서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27.6%),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9.1%)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보제공 정도와 관련하여 학교생활규정 공지는 88.4%, 아동·청소년용 정책 자료 제공은 17.9%, 아동권리협약 등 인권정보 제공은 17.1%, 인권상담·구제기관 정보 제공은 27.0%로, 해마다 정보제공 수준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에서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정도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실질적인 시민권 보장을 위해서는 참여기구 활동 기회의 확대,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

### 3. 폭력 및 학대

####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 (1) 청소년폭력 경험률

청소년폭력 경험률은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의 폭력피해경험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경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① 폭력피해 경험

아동·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은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에 대한 피해 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폭력 및 학대’ 대분류에 체벌과 아동학대에 대해 다루고 있으므로 또래폭력에 한정하여 기술한다.

##### 가. 정서적 폭력 경험률

정서적 폭력 경험률은 부모, 학교교사, 또래(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정서적 폭력과 사이버 상에서의 정서적 폭력 경험을 다루고 있다.

표 IV-53 욕설 경험\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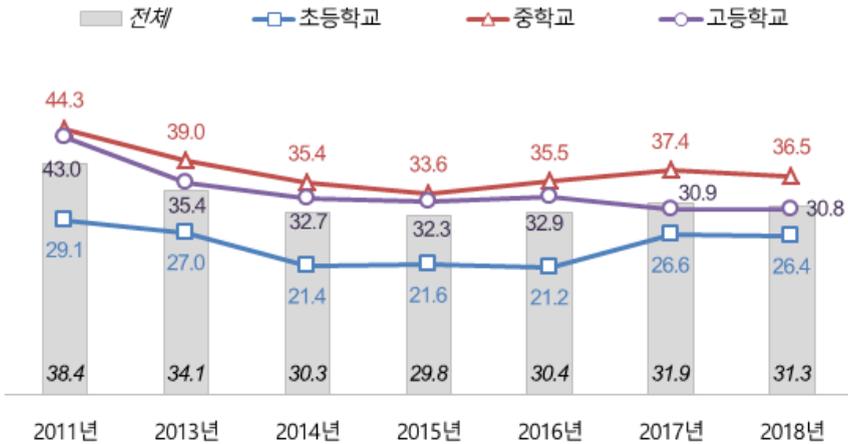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 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68.7	14.6	7.1	5.4	4.2	100.0(9,046)	
성별	남학생	71.2	13.5	6.5	5.0	100.0(4,697)	27.105***
	여학생	66.1	15.9	7.7	5.8	100.0(4,349)	
학교급	초등학교	73.6	13.4	5.6	3.9	100.0(2,735)	77.524***
	중학교	63.5	15.8	8.8	6.6	100.0(2,858)	
	고등학교	69.2	14.7	6.8	5.5	100.0(3,453)	
지역 규모	대도시	70.1	13.1	7.5	5.2	100.0(3,685)	22.884**
	중소도시	67.1	16.0	6.8	5.6	100.0(4,408)	
	읍면지역	71.1	14.5	6.5	4.8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9.0	14.6	7.0	5.2	100.0(8,255)	18.273
	한부모가정	65.4	14.3	8.5	7.2	100.0(598)	
	조손가정	67.6	15.5	1.2	10.5	100.0(89)	
	기타	70.1	16.8	6.7	2.2	100.0(96)	
학업 성적	상	69.6	14.6	7.5	4.9	100.0(2,946)	43.003***
	중	69.9	14.6	6.8	4.9	100.0(4,005)	
	하	65.3	14.8	6.9	6.9	100.0(2,086)	
경제적 수준	상	71.7	13.5	6.4	5.0	100.0(4,978)	133.783** *
	중	67.6	16.0	7.3	4.9	100.0(3,193)	
	하	56.0	16.0	9.8	9.1	100.0(868)	

\*p<.05, \*\*p<.01, \*\*\*p<.001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1.3%였다. 일 년에 1-2회 정도 경험한 청소년이 14.6%로 가장 많았으나, 1주일에 1-2회 이상 경험하는 청소년도 4.2%나 되었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경험

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학업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 좋은 학생에 비해 경험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수준이 안 좋은 학생이 좋은 학생에 비해 경험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주: 단위: %

그림 IV-44 욕설 경험\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연도별 추이)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는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1년에서 2015년까지는 완만하게 감소되었으나 이후로는 유지되거나 약간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었다는 비율이 5%p가량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교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들은 경험은 18.9%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급,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큰 편이었다. 학교급에서는 초등학교(초등학생)에 비해 고등학교(고등학생)가, 학업성적에서는 학업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 좋은 학생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안 좋은 학생이 경제적 수준이 좋은 학생에 비해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54 욕설 경험\_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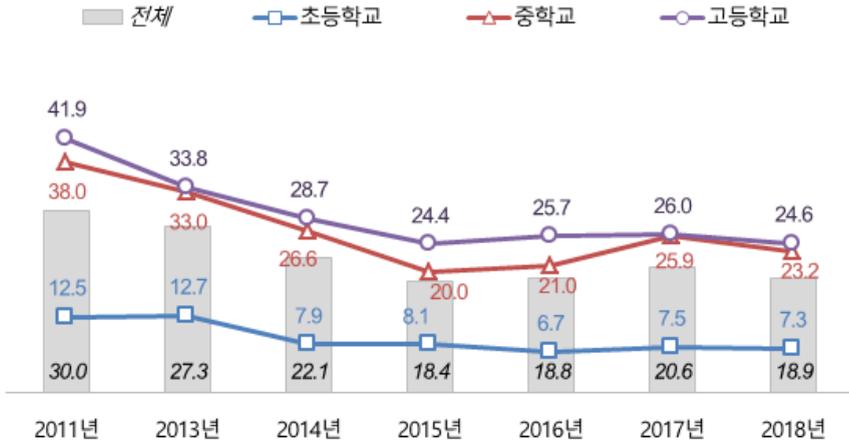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 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81.1	9.8	3.8	2.6	2.7	100.0(9,047)		
성별	남학생	80.4	9.4	4.0	3.1	3.1	100.0(4,698)	18.838 ***
	여학생	81.9	10.2	3.5	2.1	2.2	100.0(4,349)	
학교급	초등학교	92.6	4.5	1.4	0.7	0.7	100.0(2,738)	364.975 ***
	중학교	76.8	11.3	4.4	4.2	3.3	100.0(2,856)	
	고등학교	75.5	12.8	5.1	2.9	3.8	100.0(3,452)	
지역 규모	대도시	80.9	9.5	4.1	2.8	2.7	100.0(3,687)	11.018
	중소도시	80.8	10.1	3.5	2.6	3.0	100.0(4,407)	
	읍면지역	83.3	9.7	3.5	1.9	1.6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1.0	10.0	3.8	2.5	2.7	100.0(8,254)	24.050*
	한부모가정	80.5	8.2	3.9	4.2	3.2	100.0(600)	
	조손가정	88.6	2.8	2.2	6.4	0.0	100.0(88)	
	기타	83.0	8.6	2.6	3.4	2.4	100.0(97)	
학업 성적	상	83.2	8.9	3.2	2.2	2.4	100.0(2,944)	60.674 ***
	중	82.2	9.7	3.4	2.5	2.1	100.0(4,006)	
	하	75.9	11.3	5.3	3.4	4.2	100.0(2,088)	
경제적 수준	상	83.0	8.9	3.2	2.5	2.4	100.0(4,977)	58.553 ***
	중	80.5	10.0	4.2	2.5	2.9	100.0(3,193)	
	하	72.4	14.6	5.5	3.7	3.7	100.0(869)	

\*p<.05, \*\*p<.01, \*\*\*p<.001

학교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청소년들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1년에서부터 2015년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4명 중 1명이 교사로부터 모욕적

인 말이나 욕설을 들을 만큼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학교 내 체벌금지 정책이 교실 안에서 신체적 폭력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폭력을 함께 감소시키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주: 단위: %

그림 IV-45 욕설 경험\_학교선생님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연도별 추이)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들은 경험은 15.0%로 나타났다. 일 년에 1-2회 정도 경험하는 비율이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주일에 1-2회로 자주 경험하는 청소년들도 2.2%로 적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성별, 학교급, 지역규모, 가족 유형,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서 모두 차이가 났다. 특히 가족 유형에서 조손가정은 22.8%로 경험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들은 경험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1년에서부터 2016년까지는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학교급에 따라 추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초등학생의 경우 2011년 수준으로 회귀하였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IV-55 욕설 경험\_친구, 선·후배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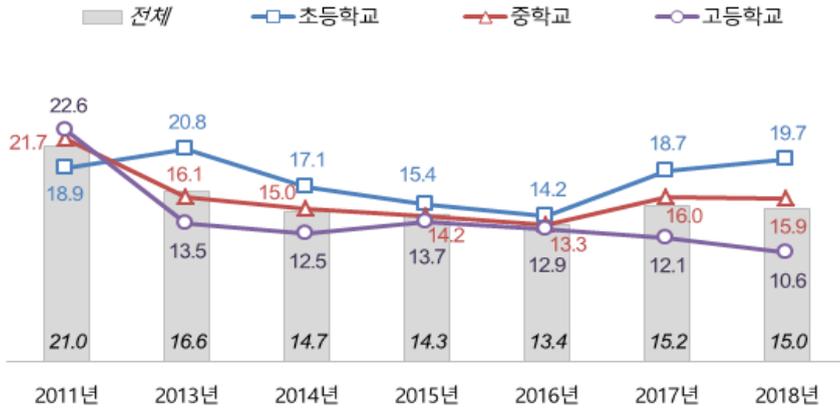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 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84.9	8.5	2.6	1.7	2.2	100.0(9,058)		
성별	남학생	82.7	9.2	2.9	2.1	3.1	100.0(4,703)	56.846 ***
	여학생	87.3	7.8	2.3	1.2	1.3	100.0(4,355)	
학교급	초등학교	80.3	11.3	3.6	2.2	2.6	100.0(2,744)	109.249 ***
	중학교	84.1	9.2	2.4	2.1	2.2	100.0(2,857)	
	고등학교	89.3	5.7	2.0	0.9	2.0	100.0(3,456)	
지역 규모	대도시	86.4	7.8	2.2	1.4	2.1	100.0(3,690)	15.907*
	중소도시	83.9	8.8	2.9	1.9	2.4	100.0(4,414)	
	읍면지역	84.1	9.8	2.8	1.4	1.9	100.0(95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5.3	8.3	2.4	1.7	2.3	100.0(8,264)	26.418**
	한부모가정	81.1	11.0	4.7	1.1	2.1	100.0(600)	
	조손가정	77.2	14.3	2.7	2.1	3.8	100.0(89)	
	기타	81.1	10.6	5.4	2.0	0.9	100.0(97)	
학업 성적	상	84.5	9.3	2.7	1.6	2.0	100.0(2,950)	16.051*
	중	85.0	8.4	2.9	1.6	2.1	100.0(4,010)	
	하	85.5	7.7	1.9	2.0	2.9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85.3	8.5	2.6	1.6	2.0	100.0(4,984)	24.644**
	중	85.7	8.1	2.4	1.6	2.1	100.0(3,197)	
	하	80.0	10.2	3.7	2.3	3.9	100.0(869)	

\*p<.05, \*\*p<.01, \*\*\*p<.001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들은 경험은 16.6%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와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학교급은 중학교(중학생)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은

청소년의 경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의 경험률은 1주일에 1-2회 이상의 경험률도 5.4%로 나타나 온라인 상의 폭력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 단위: %

그림 IV-46 욕설 경험\_친구, 선·후배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연도별 추이)

표 IV-56 욕설 경험\_사이버 공간에서의 친구나 선·후배로부터의 욕설이나 모욕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 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83.4	9.0	2.7	2.4	2.4	100.0(9,055)		
성별	남학생	82.4	8.5	2.9	2.8	3.4	100.0(4,702)	49.263***
	여학생	84.6	9.6	2.5	1.9	1.4	100.0(4,353)	
학교급	초등학교	86.0	9.0	2.0	1.7	1.3	100.0(2,742)	89.071***
	중학교	78.9	11.0	3.4	3.6	3.1	100.0(2,857)	
	고등학교	85.1	7.4	2.8	1.9	2.8	100.0(3,456)	
지역 규모	대도시	85.0	8.1	2.3	2.2	2.3	100.0(3,690)	19.925*
	중소도시	81.9	9.9	3.0	2.5	2.7	100.0(4,412)	
	읍면지역	84.4	8.1	3.4	2.3	1.7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3.7	8.9	2.6	2.3	2.4	100.0(8,262)	18.483
	한부모가정	79.2	10.5	4.4	2.5	3.3	100.0(599)	
	조손가정	81.5	8.3	1.7	5.5	3.0	100.0(89)	
	기타	81.5	11.2	3.2	2.5	1.6	100.0(97)	
학업 성적	상	84.4	9.0	2.0	2.6	2.0	100.0(2,947)	35.507***
	중	83.4	9.6	2.9	2.0	2.2	100.0(4,009)	
	하	82.2	7.9	3.6	2.7	3.5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84.7	8.8	2.3	2.2	2.0	100.0(4,981)	58.648***
	중	83.3	8.8	3.1	2.4	2.3	100.0(3,197)	
	하	76.4	11.1	3.9	3.2	5.4	100.0(869)	

\*p<.05, \*\*p<.01, \*\*\*p<.001

나. 신체적 폭력 경험률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폭행이나 구타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6.6%로 나타났다. 1주일에 1-2회 이상 자주 폭행을 당하는 청소년은 1.1%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폭력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초등학생)가 고등학교(고등학생)에 비해 폭력 경험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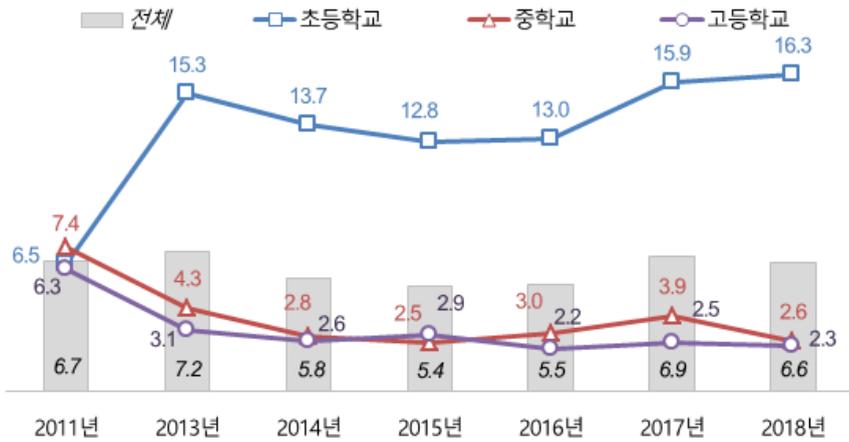
표 IV-57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폭행이나 구타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 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93.4	3.5	1.1	0.9	1.1	100.0(9,054)	
성별	남학생	90.9	4.5	1.5	1.3	100.0(4,702)	100.775 ***
	여학생	96.1	2.3	0.7	0.4	100.0(4,353)	
학교급	초등학교	83.7	8.8	2.8	2.3	100.0(2,741)	606.960 ***
	중학교	97.5	1.5	0.4	0.3	100.0(2,857)	
	고등학교	97.7	0.8	0.5	0.3	100.0(3,456)	
지역 규모	대도시	93.6	3.4	1.1	0.8	100.0(3,688)	4.423
	중소도시	93.3	3.5	1.1	1.0	100.0(4,413)	
	읍면지역	93.2	3.6	1.4	0.5	100.0(95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3.7	3.4	1.0	0.8	100.0(8,260)	48.546***
	한부모가정	92.0	3.3	2.5	1.3	100.0(600)	
	조손가정	79.8	8.6	3.1	2.3	100.0(89)	
	기타	91.1	4.2	2.5	2.2	100.0(97)	
학업 성적	상	93.1	3.6	1.0	0.9	100.0(2,949)	36.615***
	중	92.2	4.2	1.5	1.0	100.0(4,008)	
	하	96.1	1.8	0.7	0.6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92.9	3.7	1.2	1.0	100.0(4,982)	14.022
	중	93.7	3.6	1.2	0.7	100.0(3,197)	
	하	95.4	1.8	0.8	0.9	100.0(867)	

\*p<.05, \*\*p<.01, \*\*\*p<.001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폭행이나 구타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중고등학교의 경우 2011년 이후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며 연도별로 약간의 변동을 보이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2013년 이후의 증가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폭력 경험 비율이 높은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주: 단위: %

그림 IV-47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폭행이나 구타(연도별 추이)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5.6%로 나타났다. 학교 급에 따른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초등학교에서의 경험비율이 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에서 3.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 규모, 성별,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도 발생하였으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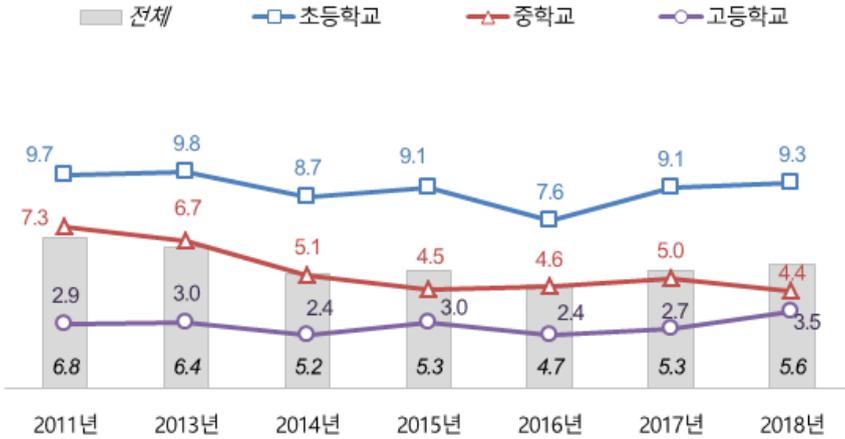
표 IV-58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따돌림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 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94.4	3.5	0.8	0.6	0.7	100.0(9,050)	
성별	남학생	94.5	3.1	0.8	0.7	100.0(4,697)	12.168*
	여학생	94.3	4.0	0.7	0.4	100.0(4,353)	
학교급	초등학교	90.7	6.0	1.1	1.1	100.0(2,741)	113.357 ***
	중학교	95.6	2.9	0.5	0.4	100.0(2,854)	
	고등학교	96.4	2.0	0.7	0.3	100.0(3,455)	
지역 규모	대도시	95.1	3.1	0.5	0.7	100.0(3,683)	16.048*
	중소도시	93.6	4.1	1.0	0.6	100.0(4,413)	
	읍면지역	95.9	2.5	0.7	0.4	100.0(95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4.5	3.5	0.7	0.6	100.0(8,256)	13.398
	한부모가정	94.3	3.2	0.9	0.4	100.0(600)	
	조손가정	90.3	5.8	0.0	1.5	100.0(89)	
	기타	91.4	5.5	2.2	0.0	100.0(97)	
학업 성적	상	94.7	3.6	0.6	0.7	100.0(2,950)	6.743
	중	94.3	3.3	0.9	0.6	100.0(4,005)	
	하	94.2	3.7	0.9	0.4	100.0(2,087)	
경제적 수준	상	94.6	3.3	0.6	0.6	100.0(4,981)	17.974*
	중	94.6	3.5	0.7	0.6	100.0(3,193)	
	하	92.6	4.5	1.8	0.5	100.0(868)	

\*p<.05, \*\*p<.01, \*\*\*p<.001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2011년 이래로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중학생의 경우 완만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만 예외적으로 2016년까지의 완만한 감소 이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주: 단위: %

그림 IV-48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따돌림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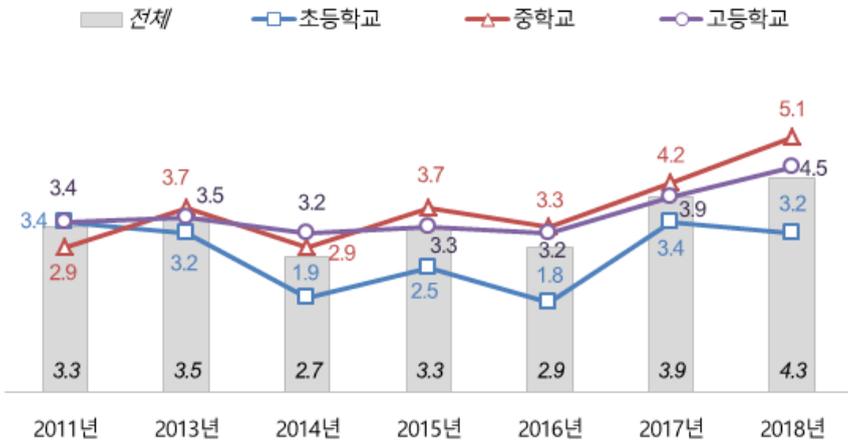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한 청소년의 비율은 4.3%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남학생의 경험비율(4.3%), 여학생의 경험 비율(4.2%)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경험비율도 유의하였으며 경제적 수준이 가장 낮은 청소년이 다른 청소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V-59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 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95.7	2.2	0.8	0.5	0.8	100.0(9,052)	
성별	남학생	95.7	1.9	0.6	0.6	100.0(4,701)	28.756***
	여학생	95.8	2.4	1.0	0.3	100.0(4,351)	
학교급	초등학교	96.9	2.2	0.4	0.1	100.0(2,743)	33.608***
	중학교	94.9	2.5	1.2	0.7	100.0(2,855)	
	고등학교	95.5	2.0	0.8	0.5	100.0(3,453)	
지역 규모	대도시	96.5	1.9	0.8	0.5	100.0(3,689)	22.082**
	중소도시	95.0	2.5	0.9	0.5	100.0(4,410)	
	읍면지역	96.1	1.9	0.9	0.2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8	2.3	0.8	0.4	100.0(8,259)	32.110**
	한부모가정	95.4	1.0	1.5	0.7	100.0(599)	
	조손가정	94.1	2.9	0.0	3.0	100.0(89)	
	기타	96.3	0.5	1.4	0.0	100.0(97)	
학업 성적	상	95.8	2.2	0.8	0.4	100.0(2,948)	4.413
	중	95.8	2.2	0.7	0.5	100.0(4,006)	
	하	95.4	2.1	1.1	0.5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95.9	2.2	0.7	0.4	100.0(4,982)	25.239**
	중	95.9	1.9	1.0	0.5	100.0(3,194)	
	하	93.6	3.3	0.8	0.3	100.0(868)	

\*p<.05, \*\*p<.01, \*\*\*p<.001



\* 주: 단위: %

**그림 IV-49 친구, 선·후배로부터 폭력 경험여부\_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  
(연도별 추이)**

친구나 선후배로부터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한 청소년의 비율을 연도 별로 보면 다른 폭력경험과는 상이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었다. 다른 폭력경험 비율은 점차 완만하게 감소하거나, 감소 후 반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이 지표는 201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 ②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희롱 경험률은 4.1%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경험률이 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가족 유형에 따른 차이는 조손가정에서 사는 청소년이 다른 가정에서 사는 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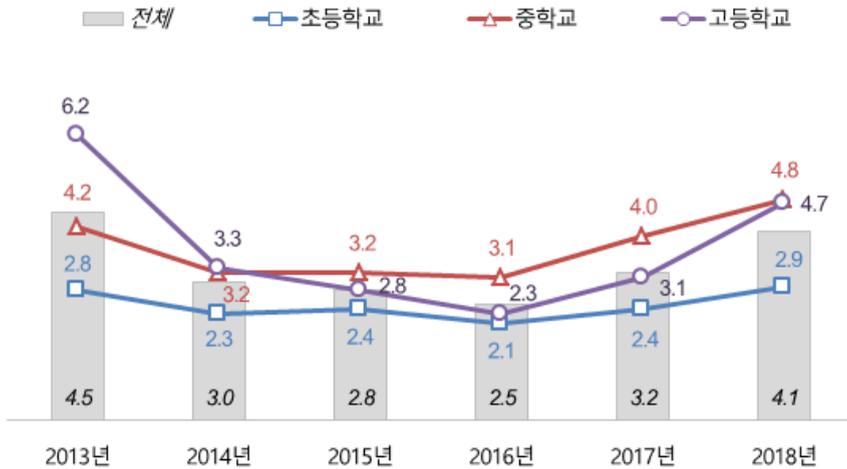
표 IV-60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성희롱(놀림)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 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95.8	2.0	0.8	0.6	0.7	100.0(9,052)	
성별	남학생	95.9	1.8	0.8	0.7	100.0(4,700)	7.890
	여학생	95.8	2.3	0.9	0.6	100.0(4,352)	
학교급	초등학교	97.2	1.9	0.5	0.2	100.0(2,738)	37.903***
	중학교	95.1	2.5	0.8	0.7	100.0(2,857)	
	고등학교	95.3	1.8	1.2	0.9	100.0(3,456)	
지역 규모	대도시	96.1	2.0	0.8	0.4	100.0(3,690)	13.636
	중소도시	95.5	2.2	0.7	0.9	100.0(4,411)	
	읍면지역	96.1	1.4	1.3	0.5	100.0(95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9	2.0	0.8	0.6	100.0(8,261)	44.930***
	한부모가정	95.6	2.3	1.0	0.5	100.0(597)	
	조손가정	88.6	2.8	1.2	5.9	100.0(89)	
	기타	93.6	4.9	1.5	0.0	100.0(97)	
학업 성적	상	96.6	1.5	0.8	0.6	100.0(2,948)	18.817*
	중	96.0	2.1	0.7	0.5	100.0(4,008)	
	하	94.4	2.5	1.1	0.9	100.0(2,088)	
경제적 수준	상	96.1	2.1	0.7	0.5	100.0(4,980)	15.899*
	중	96.0	1.8	0.8	0.7	100.0(3,196)	
	하	93.7	2.7	1.7	0.9	100.0(868)	

\*p<.05, \*\*p<.01, \*\*\*p<.001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희롱 경험률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다시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사이버 상의 소통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 주: 단위: %

그림 IV-50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성희롱(놀림) (연도별 추이)

사이버 공간에서 사생활이 알려지는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비율은 5.3%였으며, 일년에 1-2회 정도 경험한 비율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 발생비율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남학생들의 발생 빈도가 더 자주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 유형에서는 조손가정 청소년의 피해경험이 가장 높았고, 경제적 수준에서는 경제 수준이 낮은 청소년의 피해경험이 높았다.

표 IV-61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사생활이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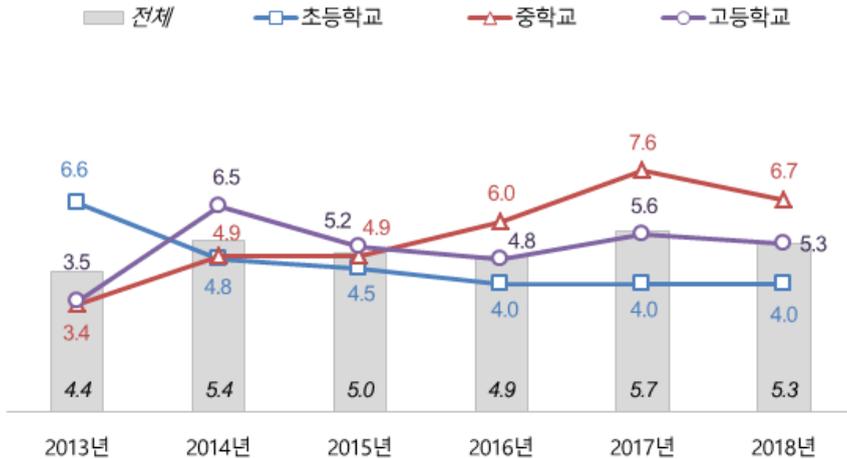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 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94.7	3.7	0.9	0.5	0.2	100.0(9,053)	
성별	남학생	94.7	3.5	0.8	0.8	100.0(4,701)	19.187***
	여학생	94.7	3.9	1.0	0.2	100.0(4,352)	
학교급	초등학교	96.0	2.8	0.8	0.2	100.0(2,740)	23.343**
	중학교	93.4	4.7	1.1	0.5	100.0(2,857)	
	고등학교	94.8	3.6	0.8	0.7	100.0(3,456)	
지역 규모	대도시	94.9	3.5	0.8	0.5	100.0(3,690)	4.533
	중소도시	94.6	3.7	0.9	0.6	100.0(4,410)	
	읍면지역	94.3	4.2	1.1	0.2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4.7	3.7	0.9	0.4	100.0(8,261)	24.567*
	한부모가정	95.3	2.7	1.2	0.6	100.0(598)	
	조손가정	91.1	3.2	1.3	2.9	100.0(89)	
	기타	93.7	6.3	0.0	0.0	100.0(97)	
학업 성적	상	95.3	3.5	0.6	0.3	100.0(2,947)	18.136*
	중	95.1	3.3	1.0	0.4	100.0(4,009)	
	하	93.2	4.7	1.1	0.8	100.0(2,089)	
경제적 수준	상	95.3	3.3	0.9	0.3	100.0(4,980)	25.920**
	중	94.7	3.8	0.7	0.5	100.0(3,197)	
	하	91.8	5.0	1.4	1.2	100.0(868)	

\*p<.05, \*\*p<.01, \*\*\*p<.001

사이버 공간에서 사생활이 알려지는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비율의 추이는 학교  
 급별로는 변동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연도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단, 사이버 상에서 사생활이 알려지는 피해는 개인에게 큰 충격과 고통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의 유형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 단위: %

그림 IV-51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사생활이 알려짐

사이버 공간에서 따돌림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비율은 2.4%였고, 일 년에 1-2회 정도 피해를 경험하는 비율이 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대상은 가족 유형의 구분 중 조손가정으로 7.7%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따돌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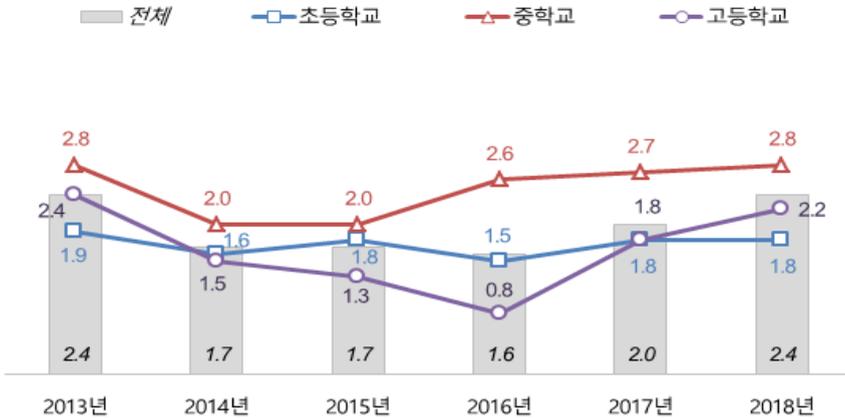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97.7	1.6	0.3	0.3	0.2	100.0(9,054)	
성별	남학생	97.9	1.2	0.3	0.3	100.0(4,703)	14.690**
	여학생	97.4	2.0	0.3	0.2	100.0(4,352)	
학교급	초등학교	98.2	1.4	0.1	0.2	100.0(2,741)	17.348*
	중학교	97.2	2.1	0.4	0.2	100.0(2,857)	
	고등학교	97.7	1.3	0.4	0.3	100.0(3,456)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 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지역 규모	대도시	98.0	1.4	0.2	0.2	0.2	100.0(3,690)	13.556
	중소도시	97.3	1.8	0.4	0.4	0.2	100.0(4,411)	
	읍면지역	98.3	1.0	0.5	0.0	0.3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7	1.6	0.2	0.2	0.2	100.0(8,262)	52.348***
	한부모가정	97.5	1.0	0.9	0.3	0.2	100.0(598)	
	조손가정	92.3	2.1	3.3	2.2	0.0	100.0(89)	
	기타	97.8	2.2	0.0	0.0	0.0	100.0(97)	
학업 성적	상	98.2	1.4	0.1	0.2	0.2	100.0(2,947)	9.999
	중	97.6	1.6	0.3	0.3	0.2	100.0(4,010)	
	하	97.2	1.9	0.5	0.3	0.1	100.0(2,089)	
경제적 수준	상	98.0	1.3	0.3	0.3	0.2	100.0(4,981)	11.680
	중	97.5	1.7	0.3	0.2	0.2	100.0(3,197)	
	하	96.5	2.7	0.5	0.3	0.1	100.0(868)	

\*p<.05, \*\*p<.01, \*\*\*p<.001

사이버 공간에서 따돌림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사이버공간에서의 괴롭힘(cyber bullying)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 주: 단위: %

그림 IV-5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_따돌림 (연도별 추이)

## (2) 체벌 경험률

### ① 체벌 경험률

체벌(corporal punishment)은 전통적으로 훈육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체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동학대로 발전되기 쉽고, 어디까지가 체벌이고 어디부터가 아동학대인지를 구분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19조가 체벌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불명확성이 있었으나, 2006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일반논평 No.8 (신체적 처벌 및 기타의 잔혹하거나 굴욕적인 형태의 처벌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을 채택함으로써 보다 분명해졌다. 따라서 제19조가 금지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폭력의 범위에 폭력적 양육방식인 체벌도 함께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인 벌을 받은 적이 있는 청소년은 26%였다. 대부분의 청소년이 일년에 1-2회 정도 체벌을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 별 차이가 가장 두드러졌는데, 초등학생의 체벌 경험률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체벌 경험률이 17.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인 훈육방식이 비교적 저연령에서 사용되다가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줄어드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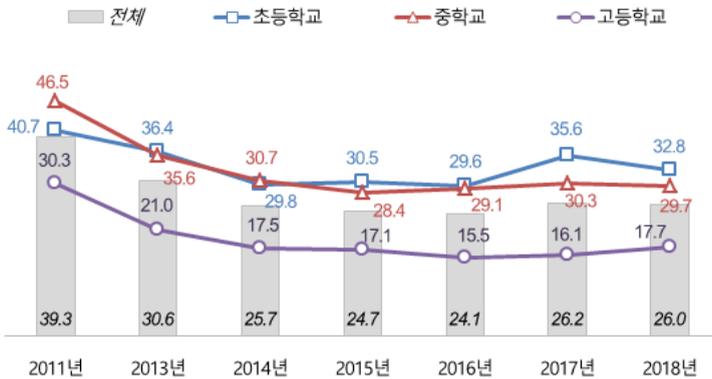
부모님(보호자)로부터 신체적인 벌을 받은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이래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2016년 이후 약간 증가를 하였고, 이것이 전체적인 평균을 약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표 IV-63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 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74.0	18.1	4.7	2.3	0.9	100.0(9,051)	
성별	남학생	75.0	17.2	4.5	2.2	100.0(4,702)	9.398
	여학생	72.8	19.2	4.9	2.4	100.0(4,349)	
학교급	초등학교	67.2	21.4	6.3	3.6	100.0(2,740)	231.596** *
	중학교	70.3	20.8	5.5	2.5	100.0(2,858)	
	고등학교	82.3	13.4	2.7	1.1	100.0(3,453)	
지역 규모	대도시	74.3	17.9	4.3	2.4	100.0(3,687)	13.546
	중소도시	73.1	18.9	5.0	2.3	100.0(4,410)	
	읍면지역	76.9	15.8	4.7	1.8	100.0(95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3.9	18.4	4.6	2.3	100.0(8,257)	11.046
	한부모가정	75.4	15.2	6.0	2.3	100.0(600)	
	조손가정	67.5	20.5	6.6	3.9	100.0(89)	
	기타	77.8	13.9	3.3	2.7	100.0(97)	
학업 성적	상	73.6	18.6	4.2	2.7	100.0(2,947)	18.320*
	중	73.4	18.9	4.5	2.2	100.0(4,009)	
	하	75.6	15.9	5.6	1.9	100.0(2,087)	
경제적 수준	상	74.0	18.0	4.8	2.4	100.0(4,979)	19.629*
	중	74.6	18.4	4.2	1.9	100.0(3,194)	
	하	71.7	17.6	5.9	2.8	100.0(870)	

\*p<.05, \*\*p<.01, \*\*\*p<.001



\* 주: 단위: %

그림 IV-53 체벌 경험여부\_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신체적 벌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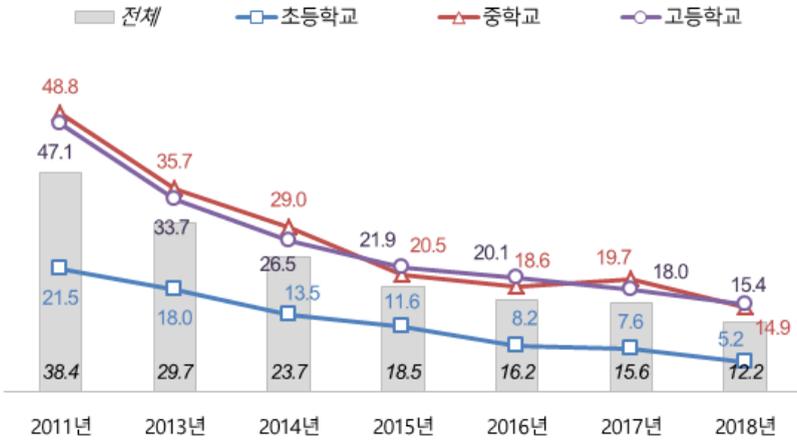
학교교사로부터 신체적인 벌을 받은 적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12.2%였다.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의 체벌 경험 비율이 높았고,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체벌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 내에서는 초등학생의 체벌 경험 비율이 높은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도 체벌경험 비율에서 차이가 났는데, 학업성적이 높거나(상) 보통(중)인 학생에 비해 낮은(하) 학생의 체벌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64 체벌 경험여부\_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 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87.8	6.4	2.5	1.7	1.6	100.0(9,044)		
성별	남학생	83.6	8.0	3.7	2.3	2.5	100.0(4,696)	178.128**
	여학생	92.4	4.7	1.3	1.0	0.6	100.0(4,347)	*
학교급	초등학교	94.7	3.0	1.2	0.5	0.5	100.0(2,736)	178.954**
	중학교	85.1	7.4	3.4	2.2	1.9	100.0(2,856)	*
	고등학교	84.6	8.3	2.9	2.1	2.1	100.0(3,451)	
지역 규모	대도시	87.8	6.4	2.6	1.7	1.3	100.0(3,685)	
	중소도시	88.2	6.2	2.3	1.6	1.8	100.0(4,405)	8.774
	읍면지역	85.9	7.4	3.3	1.8	1.6	100.0(95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7.8	6.5	2.5	1.7	1.5	100.0(8,252)	
	한부모가정	88.3	4.6	2.6	2.0	2.5	100.0(600)	8.304
	조손가정	87.3	7.3	2.6	1.3	1.5	100.0(88)	
	기타	88.4	6.1	2.2	1.4	1.9	100.0(96)	
학업 성적	상	89.6	5.9	1.8	1.3	1.4	100.0(2,944)	
	중	88.1	6.2	2.8	1.6	1.3	100.0(4,006)	37.170***
	하	84.7	7.5	3.1	2.3	2.4	100.0(2,086)	
경제적 수준	상	88.7	5.8	2.5	1.6	1.4	100.0(4,974)	
	중	87.3	6.8	2.4	1.6	1.8	100.0(3,194)	17.987*
	하	84.6	8.2	3.1	2.6	1.5	100.0(868)	

\*p<.05, \*\*p<.01, \*\*\*p<.001



\* 주: 단위: %

그림 IV-54 체벌 경험여부\_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연도별 추이)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이 개정되면서 학교 내에서의 체벌이 전면 금지되었다. 2011년 이후 학생들이 응답한 학교 내 체벌 경험 비율을 살펴보면, 이러한 법령 변화가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냈음을 볼 수 있다. 2011년 조사 당시 중학생의 체벌경험비율은 48.8%였으나 2018년 조사에서는 14.9%로 하락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2011년 47.1%에서 2018년 15.4%로 하락하는 변화를 보였다. 학교 내에서의 체벌은 실효성 있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약 15%의 중고등학생과 5%의 초등학생은 여전히 체벌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대체 왜 체벌을 경험하고 있는가? 교사들은 신고의 위험성을 감수하며 왜 이들에게 체벌을 하는가?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현재 남아 있는 학교 내 체벌의 비율을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원선생님으로부터의 신체적인 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5.9%였다. 전체 청소년 중에는 학원을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이 포함되어 있어, 학원을 다니는 청소년만을 놓고 보면 학원에서의 체벌 경험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 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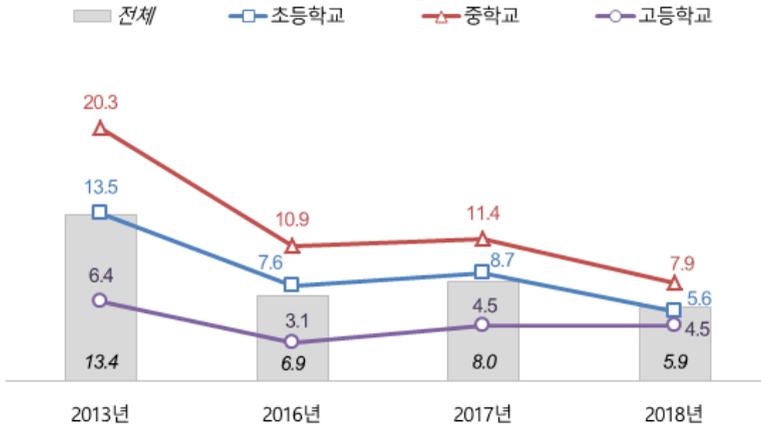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인 벌을 받은 비율은 성별과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났다. 성별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체벌 경험률이 높았고, 학교급은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체벌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학교에서의 체벌 경험률과 달리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V-65 체벌 경험여부\_학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 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94.1	2.5	1.4	1.0	1.0	100.0(9,039)	
성별	남학생	92.4	2.9	1.6	1.6	100.0(4,689)	63.145***
	여학생	95.8	2.1	1.2	0.4	100.0(4,350)	
학교급	초등학교	94.4	2.6	1.2	0.9	100.0(2,733)	38.176***
	중학교	92.1	3.4	1.6	1.5	100.0(2,852)	
	고등학교	95.5	1.7	1.3	0.7	100.0(3,454)	
지역 규모	대도시	94.3	2.7	1.2	0.9	100.0(3,680)	6.322
	중소도시	94.1	2.3	1.5	1.0	100.0(4,408)	
	읍면지역	93.1	2.8	1.7	1.4	100.0(9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4.2	2.5	1.4	1.0	100.0(8,247)	4.809
	한부모가정	93.5	2.5	1.5	1.3	100.0(600)	
	조손가정	90.6	4.7	1.9	1.3	100.0(88)	
	기타	91.5	2.8	2.1	2.4	100.0(96)	
학업 성적	상	93.8	2.7	1.3	1.1	100.0(2,938)	12.802
	중	94.2	2.6	1.4	1.1	100.0(4,009)	
	하	94.1	2.1	1.5	0.8	100.0(2,084)	
경제적 수준	상	94.2	2.6	1.2	1.0	100.0(4,969)	10.954
	중	94.0	2.6	1.4	1.0	100.0(3,192)	
	하	93.7	1.7	2.4	1.2	100.0(870)	

\*p<.05, \*\*p<.01, \*\*\*p<.001



\* 주: 단위: %

그림 IV-55 체벌 경험여부\_학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연도별 추이)

학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인 벌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3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중학생의 경험률이 비교적 크게 줄어들었고, 초등학생의 경험률도 줄어들고 있다. 2013년 당시 큰 차이를 보이던 초·중·고등학생의 체벌 경험률은 2018년에 들어서서 격차가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 (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sup>22)</sup>

#### ① 아동학대 사례 건수

여기서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낮은 편으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2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는 2018년 10월 현재 미발간 상태이므로 김영지 외 (2017)에서 인용하였던 현황 자료를 활용하였음.

사례 수와 아동학대 신고 건수의 차이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수, 그리고 실제 아동학대 발생 건수에 차이가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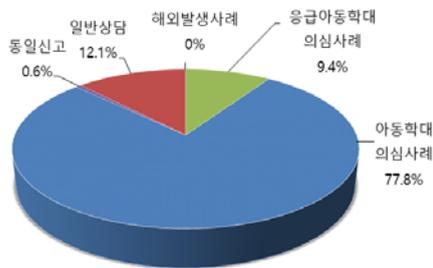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6년에 신고 된 아동학대 건수는 총 29,674 건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5,878건이었다. 아동학대 의심사례 중 위기개입이 필요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는 2,796건, 아동학대 의심사례에서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건수는 23,082건이었다.

표 IV-66 2016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단위 : 건(%))

아동학대 의심 사례			동일 신고	일반 상담	해외발생 사례	계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아동학대 의심사례	소계				
2,796 (9.4)	23,082 (77.8)	25,878 (87.2)	189 (0.6)	3,604 (12.1)	3 (0.0)	29,674 (1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48  
김영지 외(2017)에서 재인용



\* 주: 단위: %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48/ 단위: %  
김영지 외(2017)에서 재인용

그림 IV-56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23) 아동학대 사례판단이란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된 아동학대사례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사례, 조기지원사례, 일반사례로 분류 및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p.264)

아동학대 사례의 접수 경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접수가 52.1%로 가장 높았고, 경찰(112)을 통한 접수가 47.1%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이외에 119 안전신고센터가 0.1%, 보건복지콜센터(129)가 0.2%, 여성긴급상담전화(1366) 0.5%였다.

표 IV-67 아동학대 사례접수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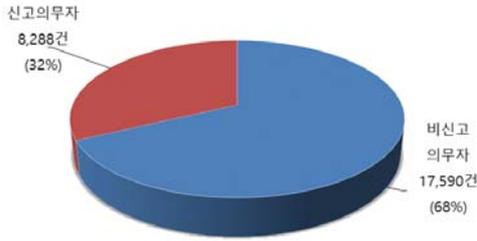
(단위 : 건(%))

경찰 (112)	아동보호전문기관				119	129	1366	계
	전화	인터넷	내방	소개				
13,991 (47.1)	14,919 (50.3)	39 (0.1)	496 (1.7%)	15,454 (52.1)	37 (0.1)	51 (0.2)	141 (0.5)	29,674 (1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87  
김영지 외(2017)에서 재인용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은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나눌 수 있다.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접수된 건에 대해 신고자 유형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288건으로 32%였고,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7,590건으로 68%였다.<sup>24)</sup>

24)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의 교직원 및 강사 등,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의료기관·정신요양시설·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61  
김영지 외(2017)에서 재인용

그림 IV-57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표 IV-68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부모				친인척					총계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	소계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소계				
명	14,218	756	74	15,048	288	134	266	107	795	18,700 (100.0)			
%	76.1	4.0	0.4	80.5	1.5	0.7	1.4	0.6	4.3				
구분	대리양육자							타인			18,700 (100.0)		
	부모 동거인	유치원/ 보육 교직원	초중 고교 원	학원/ 교습 소 종사 자	아동복 지시설 설종사 자	기타시 설종사 자	청소 년시 설 종사 자	위탁 부모	베이 비서 터	이웃, 낯선 사람		기타	파악 안됨
명	311	827	576	167	253	28	2	5	4	2,173	201	454	29
%	1.7	4.4	3.1	0.9	1.4	0.1	0.0	0.0	0.0	11.6	1.1	2.4	0.2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p.114-115 재정리,  
김영지 외(2017)에서 재인용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보면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비율이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친부모인 경우가 76.1%, 계부모인 경우가 4.0%, 양부모인 경우가 0.4%였다. 친인척인 경우는 4.3%, 대리양육자인 경우는 11.6%였다.<sup>25)</sup>

② 아동학대 유형별 경험률

아동학대의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학대의 유형들은 독립적으로 나타나기보다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2016년에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된 18,700건 중 아동학대 유형이 두 개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한 중복학대는 8,980건으로 전체의 48.0%였다. 신체학대만 발생한 경우는 14.5%, 정서학대만 발생한 경우는 19.2%, 성학대만 발생한 경우는 2.6%, 방임만 발생한 경우는 15.6%였다.

표 IV-69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학대유형 단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	계
건수	2,715	3,588	493	2,924	8,980	18,700
%	14.5	19.2	2.6	15.6	48.0	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p.121-122, 김영지 외(2017)에서 재인용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아동학대 판단 사례들을 아동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유형별 발생비율이 연도별로 꾸준히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학대와 방임의 구성비는 조금 감소하였지만, 사례판단건수는 모두 증가한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IV-70 연도별 아동학대사례 유형(중복학대 별도분류)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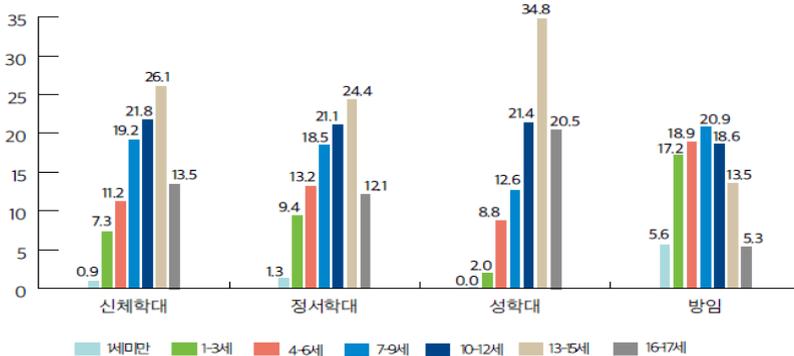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계
2013년	753(11.1)	1,101(16.2)	242(3.6)	1,778(26.2)	2,922(43.0)	6,796 (100.0)
2014년	1,453(14.5)	1,582(15.8)	308(3.1)	1,870(18.6)	4,814(48.0)	10,027(100.0)

25) 대리양육자는 “어떤 형태로든 다른 사람의 자녀를 하루의 일정시간 동안 대신 양육해주는 사람”을 의미함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p.115)

유형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계
2015년	1,884(16.1)	2,046(17.5)	428(3.7)	2,010(17.2)	5,347(45.6)	11,715(100.0)
2016년	2,715(14.5)	3,588(19.2)	493(2.6)	2,924(15.6)	8,980(48.0)	18,573(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2017). 2013~2016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3년 현황보고서의 경우 p.88, 2014년 현황보고서는 p.125, 2015년 현황보고서 p.122, 2016년 현황보고서 pp.121~122에서 내용 발췌하여 표 재구성.  
김영지 외(2017)에서 재인용.

아동학대의 발생유형을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에서 중학생 나이에 해당하는 만13-15세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성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중 13-15세 비율이 월등히 높게 이 시기 청소년들(특히 여자 청소년들)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방임 피해아동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7-9세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주: 단위: %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25

그림 IV-58 피해아동 연령과 아동학대사태 유형

### ③ 방임 정도

이 연구에서는 어느 정도의 아동·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양육행동과 양육환경이 부재한 아동방임의 위험에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몇 가지 문항을 조사하였다. 이 문항들은 최근 1년 간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지, 위생적이지 않은 옷이나 이부자리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적이 있는지, 배고플 때 식사를 주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학교에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은 적이 있었는지 등이다.

표 IV-71 방임\_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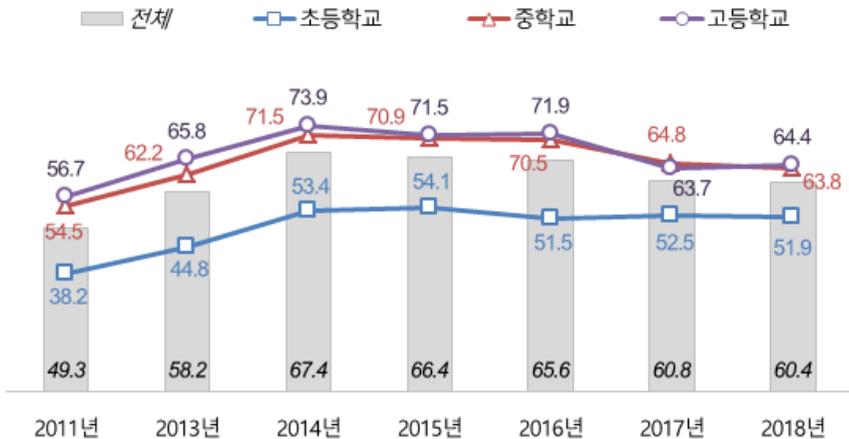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39.6	35.1	11.9	7.5	5.9	100.0(9,058)	
성별	남학생	38.4	36.2	11.8	7.5	100.0(4,702)	8.568
	여학생	41.0	33.9	12.0	7.6	100.0(4,356)	
학교급	초등학교	48.2	31.5	7.9	6.1	100.0(2,744)	158.372 ***
	중학교	36.2	35.9	13.6	8.0	100.0(2,858)	
	고등학교	35.7	37.3	13.7	8.2	100.0(3,456)	
지역 규모	대도시	41.1	34.9	11.2	6.9	100.0(3,689)	9.630
	중소도시	38.6	35.4	12.3	7.9	100.0(4,416)	
	읍면지역	38.8	34.3	12.7	8.1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0	35.9	11.7	7.2	100.0(8,264)	135.434 ***
	한부모가정	35.1	24.9	13.5	11.8	100.0(600)	
	조손가정	37.9	31.1	16.8	9.2	100.0(89)	
학업 성적	상	42.5	35.0	11.3	6.3	100.0(2,950)	77.378 ***
	중	40.6	34.9	11.9	7.4	100.0(4,010)	
	하	33.8	35.5	12.6	9.5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41.8	35.5	10.9	6.9	100.0(4,985)	109.081 ***
	중	38.1	35.6	12.5	8.2	100.0(3,196)	
	하	33.3	30.4	15.3	8.8	100.0(870)	

\*p<.05, \*\*p<.01, \*\*\*p<.00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방치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전체의 60.4%였고, 1주일에 1-2회 이상 경험한 사람은 5.9%였다. 이러한 경험은 초등학생이 가장 낮고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으나, 초등학생도 51.8%가량 나타나 낮지 않은 수준이었다. 가족 유형에서는 한부모 가정에서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도 66.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수의 아동·청소년이 돌봄의 부재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돌봄 부재의 원인에 따라 부모의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방과 후에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방치 경험 비율을 보면 2011년에 비해 점차 증가되다가 최근에 약간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고 맞벌이가 일반화되는 현재의 추세를 볼 때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따라서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 주: 단위: %

그림 IV-59 방임\_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깨끗하지 않은 옷이나 이부자리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전체의 8.7%였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경험 비율이 높았고, 학년별로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경험 비율이 높았다.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 12.3%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수준별로는 가장 낮은 집단이 1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깨끗하지 않은 옷이나 이부자리를 이용한 경험은 한부모 가정에서의 돌봄의 부재(혹은 돌봄의 어려움)나 가정에서의 빈곤과 결핍 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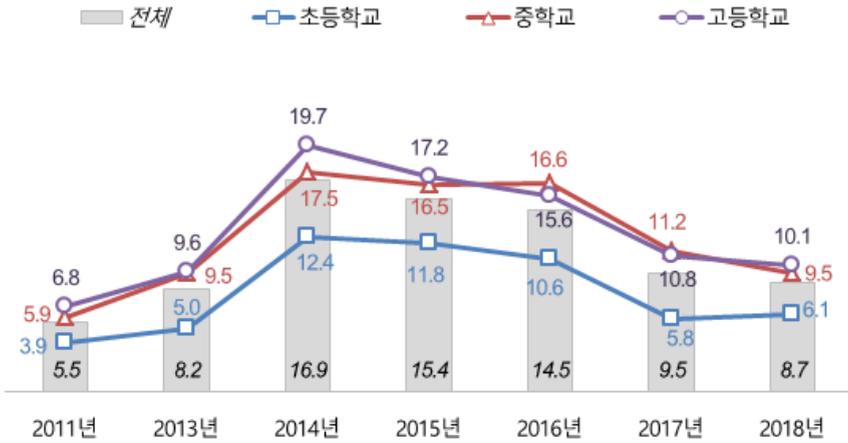
표 IV-72 방임\_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거나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 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91.3	5.6	1.5	0.8	0.8	100.0(9,052)	
성별	남학생	90.1	6.3	1.8	0.7	100.0(4,698)	26.456***
	여학생	92.6	4.8	1.2	0.9	100.0(4,354)	
학교급	초등학교	94.0	4.3	0.8	0.3	100.0(2,739)	48.506***
	중학교	90.6	6.2	1.7	1.0	100.0(2,856)	
	고등학교	89.8	6.1	1.9	1.1	100.0(3,456)	
지역 규모	대도시	92.1	5.0	1.4	0.7	100.0(3,688)	16.157*
	중소도시	90.8	6.1	1.4	1.0	100.0(4,412)	
	읍면지역	90.9	5.4	2.6	0.5	100.0(9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1.6	5.5	1.4	0.7	100.0(8,260)	30.412**
	한부모가정	87.7	7.9	2.6	1.2	100.0(599)	
	조손가정	90.7	4.4	1.9	3.0	100.0(87)	
	기타	91.0	3.2	1.6	3.6	100.0(97)	
학업 성적	상	93.3	4.4	1.2	0.5	100.0(2,949)	47.149***
	중	91.5	5.4	1.5	0.7	100.0(4,008)	
	하	88.1	7.6	1.9	1.4	100.0(2,087)	
경제적 수준	상	92.5	4.9	1.3	0.7	100.0(4,981)	53.150***
	중	91.1	5.8	1.4	0.7	100.0(3,193)	
	하	85.5	8.9	2.8	1.9	100.0(870)	

\*p<.05, \*\*p<.01, \*\*\*p<.001

깨끗하지 않은 옷이나 이부자리를 이용한 경험 비율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 주: 단위: %

그림 IV-60 방입\_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거나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연도별 추이)

자신이 식사를 못해도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전체의 5.9%였다. 가족 유형에 따라서는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들의 경험률이 9.1%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수준으로는 가장 안 좋은 아동·청소년의 경험률이 1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아동이 경험하는 방입 위험행동은 가정 내의 돌봄 부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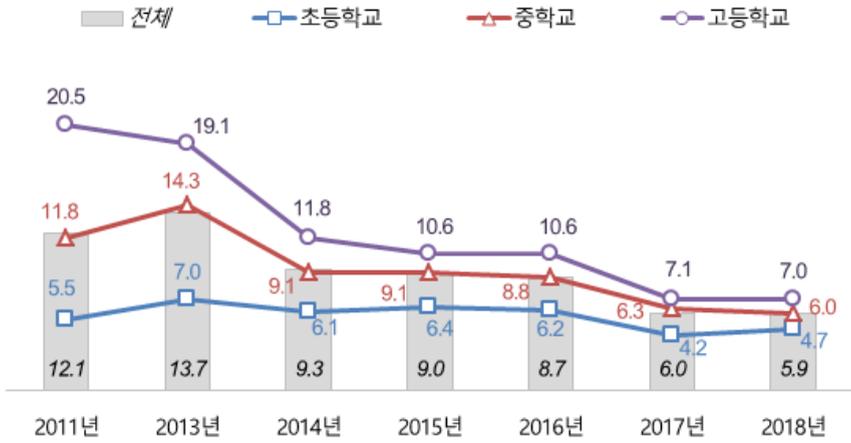
표 IV-73 방임\_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 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94.0	3.2	1.2	0.6	0.9	100.0(9,045)	
성별	남학생	94.5	2.8	1.2	0.5	100.0(4,694)	9.116
	여학생	93.5	3.7	1.1	0.7	100.0(4,352)	
학교급	초등학교	95.3	3.1	0.7	0.4	100.0(2,739)	31.292 ***
	중학교	94.0	3.3	0.9	0.7	100.0(2,852)	
	고등학교	93.1	3.3	1.8	0.7	100.0(3,454)	
지역 규모	대도시	94.6	2.9	0.8	0.6	100.0(3,684)	18.488*
	중소도시	93.8	3.5	1.3	0.6	100.0(4,409)	
	읍면지역	93.0	3.6	2.1	0.5	100.0(9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4.3	3.2	1.1	0.6	100.0(8,252)	43.616 ***
	한부모가정	90.9	4.2	1.9	0.4	100.0(599)	
	조손가정	93.6	1.3	4.6	0.0	100.0(89)	
	기타	89.2	6.2	1.2	2.1	100.0(97)	
학업 성적	상	95.6	2.6	0.8	0.4	100.0(2,947)	32.903 ***
	중	93.8	3.4	1.3	0.5	100.0(4,002)	
	하	92.1	3.9	1.5	1.0	100.0(2,087)	
경제적 수준	상	94.8	2.8	1.0	0.5	100.0(4,978)	84.949 ***
	중	94.4	3.3	1.2	0.3	100.0(3,191)	
	하	88.0	5.6	2.1	2.1	100.0(869)	

\*p<.05, \*\*p<.01, \*\*\*p<.001

자신이 식사를 못해도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았던 경험 비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에서부터 2018년까지 점진적으로 감소된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2011년에는 학교급별로 큰 차이를 보이던 것에 비해 2018년에는 격차가 크게 감소한 특징이 있다.



\* 주: 단위: %

그림 IV-61 방임\_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연도별 추이)

자녀가 아파도 적절한 의료적인 처치를 하지 않는 것은 의료 방임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들에게 의료방임과 관련 경험을 조사한 결과, 아파도 부모님이 그냥 내버려둔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전체의 4.8%였다. 학교급별로는 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는 기타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제적 수준으로는 가장 낮은 집단의 경험 비율이 9.6%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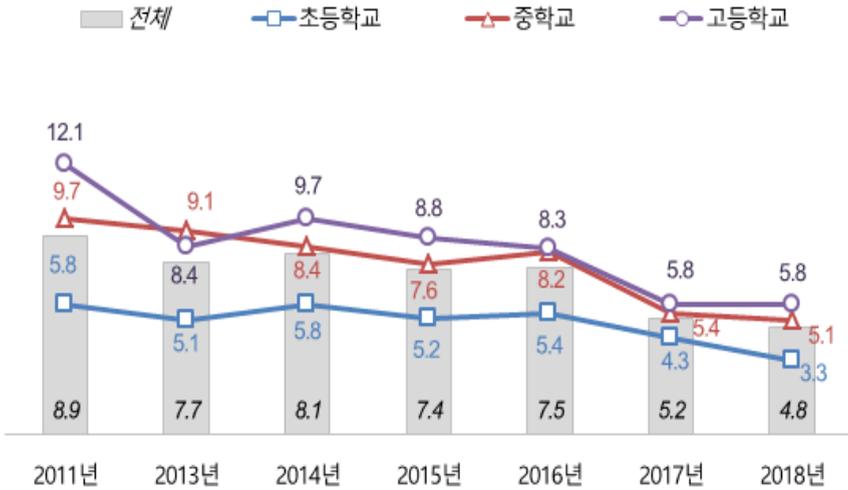
자신이 아파도 부모님이 그냥 내버려둔 경험 비율을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11년 이래로 점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다. 2011년에 학교급 별 격차도 2018년에 점차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표 IV-74 방임\_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 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95.2	3.1	0.9	0.6	0.2	100.0(9,048)	
성별	남학생	95.7	2.6	0.9	0.5	100.0(4,696)	14.119**
	여학생	94.6	3.8	0.8	0.7	100.0(4,351)	
학교급	초등학교	96.7	2.3	0.5	0.3	100.0(2,738)	28.833***
	중학교	94.8	3.4	0.9	0.5	100.0(2,855)	
	고등학교	94.3	3.6	1.1	0.9	100.0(3,455)	
지역 규모	대도시	95.5	2.9	0.7	0.6	100.0(3,687)	7.860
	중소도시	94.8	3.5	1.0	0.6	100.0(4,408)	
	읍면지역	95.4	2.7	1.1	0.5	100.0(9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5.4	3.0	0.9	0.6	100.0(8,256)	22.332*
	한부모가정	93.5	4.9	0.9	0.3	100.0(599)	
	조손가정	94.5	2.6	2.4	0.5	100.0(88)	
	기타	90.3	7.0	0.0	1.4	100.0(97)	
학업 성적	상	96.5	2.5	0.6	0.2	100.0(2,947)	32.951***
	중	95.2	3.1	0.9	0.7	100.0(4,005)	
	하	93.3	4.1	1.4	0.9	100.0(2,087)	
경제적 수준	상	96.5	2.3	0.5	0.4	100.0(4,979)	79.335***
	중	94.4	3.5	1.3	0.5	100.0(3,191)	
	하	90.4	6.6	1.2	1.5	100.0(870)	

\* $p < .05$ , \*\* $p < .01$ , \*\*\* $p < .001$



\* 주: 단위: %

그림 IV-62 방임\_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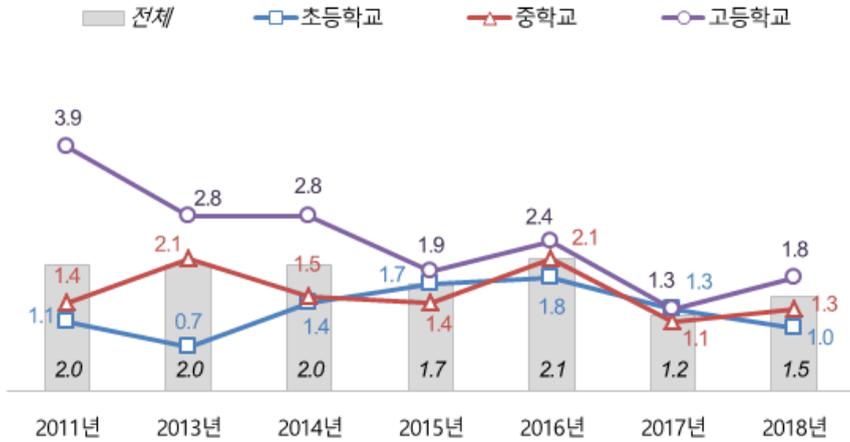
자녀가 학교를 가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교육방임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에게 교육방임과 관련 경험을 조사한 결과, 자신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은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전체의 1.5%였다. 학업성적이 낮거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청소년들이 비교적 이러한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5 방임\_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 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98.6	0.7	0.3	0.2	0.3	100.0(9,043)	
성별	남학생	98.2	0.9	0.5	0.2	100.0(4,691)	14.561 **
	여학생	99.0	0.5	0.1	0.2	100.0(4,352)	
학교급	초등학교	99.0	0.6	0.2	0.1	100.0(2,734)	11.232
	중학교	98.7	0.6	0.3	0.2	100.0(2,857)	
	고등학교	98.1	0.8	0.4	0.2	100.0(3,453)	
지역 규모	대도시	98.7	0.6	0.3	0.2	100.0(3,685)	18.717*
	중소도시	98.5	0.9	0.2	0.1	100.0(4,406)	
	읍면지역	98.2	0.3	0.8	0.3	100.0(9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6	0.7	0.3	0.2	100.0(8,251)	12.260
	한부모가정	98.8	0.7	0.3	0.0	100.0(598)	
	조손가정	96.4	1.6	0.0	0.5	100.0(89)	
	기타	96.1	1.0	0.0	1.4	100.0(97)	
학업 성적	상	99.1	0.3	0.2	0.2	100.0(2,947)	30.962 ***
	중	98.6	0.6	0.5	0.1	100.0(4,003)	
	하	97.7	1.4	0.2	0.3	100.0(2,085)	
경제적 수준	상	98.8	0.6	0.3	0.2	100.0(4,978)	17.391*
	중	98.5	0.7	0.3	0.1	100.0(3,187)	
	하	97.5	1.2	0.5	0.3	100.0(870)	

\*p<.05, \*\*p<.01, \*\*\*p<.001



\* 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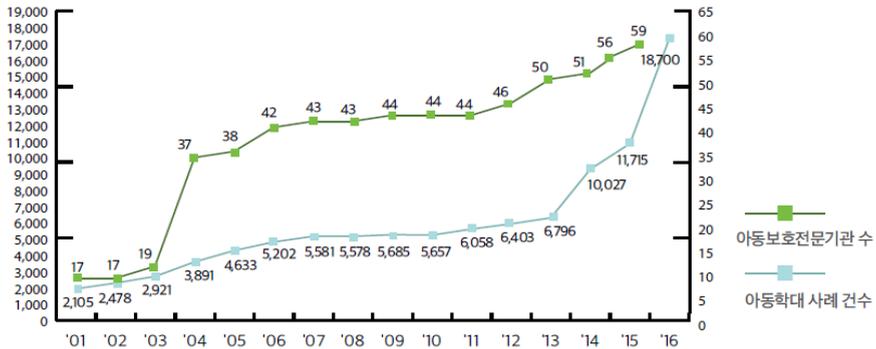
그림 IV-63 방임\_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은 경험 비율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도부터 꾸준히 2%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은 연도에 따라 약간씩 출렁이는 양상을 보였지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 3.9%에서 2018년 1.8%로 절반 넘게 감소하였다.

## (2) 학대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수준

### ① 아동학대 사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학대 건수 추이를 살펴보면, 2001년에 2,105건에서 2016년 18,700건으로 대폭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수가 2001년에서 2016년 사이에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3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울산 초등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개편되면서 아동학대 신고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240 / 단위: 건수

그림 IV-64 아동학대 사례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연도별 추이)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현황을 보면, 2018년 현재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61개소였다. 경기도가 12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9개소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반면 광주, 울산, 제주가 2개소, 대전이 1개소로 가장 적었다. 지역 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 격차는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의미하므로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표 IV-76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2017년	9	4	3	3	2	1	2	12	4	3	3	3	3	4	3	2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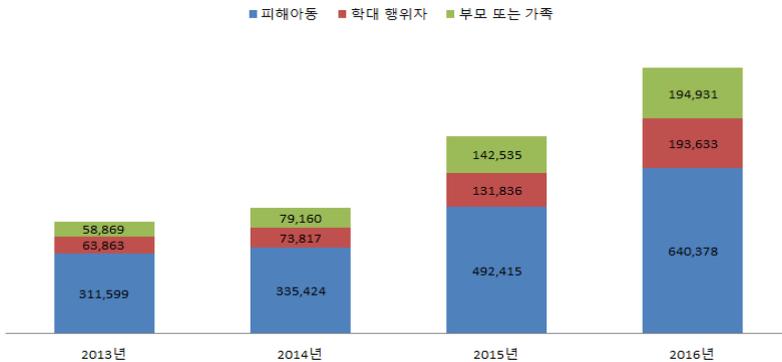
\*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8.03.01. 기준).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stats&wr\\_id=36](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stats&wr_id=36)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 ②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를 경험한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가해자, 그리고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첫째,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 학대행위자의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그리고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 등이다. 이 서비스들은 상담·의료·심리치료·가족기능강화·일시보호 등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sup>26)</sup>

아동학대사태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은 연도별로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2013년에 311,599건에서 2016년 640,378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서비스도 63,863건에서 193,633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부모 또는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58,869건에서 194,931건으로 3.5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제공 기능은 양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2017). 2013~2016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3년 현황 보고서에서는 p.109, 2014년 현황보고서에서는 p.165, 2015년 현황보고서에서는 p.157, 마지막으로 2016년 현황보고서에서는 p.157에서 해당 내용을 발췌·정리하였음. 김영지 외(2017)의 자료를 재가공하였음.

그림 IV-64-1 아동학대사태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

- 26) ○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집단상담, 기관상담, 주변인상담  
 ○ 의료서비스: 검진 및 검사, 입원치료, 통원치료  
 ○ 심리치료서비스: 심리검사, 심리치료  
 ○ 가족기능강화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공적자원연결  
 ○ 일시보호서비스: 일시보호시설 및 쉼터를 통한 피해아동 일시보호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 진행과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또는 고소·고발 등 사건 처리에 대한 서비스

2016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18,700건에 대한 피해아동 최종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 보호가 72.6%, 분리보호가 19.9%였다. 이는 2011년의 원가정 보호 비율인 65.3%에서 약간 증가 수치이고, 분리보호는 26.2%에서 약간 감소한 수치이다. 초기에 분리 보호되었다가 학대 발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피해아동을 다시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가정 복귀는 2011년 6.8%에서 2016년 7.2%로 약간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망사례는 2011년 13건(0.2%)에서 2016년 50건(0.3%)으로 증가하였다.

표 IV-77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

연도	원가정 보호	분리 보호	사망	타기관 의뢰	가정복귀	계
2011	3,956(65.3)	1,585(26.2)	13(0.2)	91(1.5)	413(6.8)	6,058(100.0)
2012	4,079(63.7)	1,937(30.3)	10(0.2)	0	377(5.9)	6,403(100.0)
2013	4,376(64.4)	1,944(28.6)	22(0.3)	0	454(6.7)	6,796(100.0)
2014	9,969(64.5)	4,256(27.5)	25(0.2)	-	1,208(7.8)	15,458(100.0)
2015	11,305(64.0)	4,485(25.4)	26(0.1)	-	1,846(10.5)	17,662(100.0)
2016	13,573(72.6)	3,730(19.9)	50(0.3)	-	1,347(7.2)	18,700(100.0)

\*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2017). 2011~2016년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011년도 현황 보고서에서는 p.136, 2012년도 현황보고서에서는 p.110, 2013년 현황보고서에서는 p.108, 2014년 현황보고서에서는 p.144, 2015년 현황보고서에서는 p.139, 마지막으로 2016년 현황보고서에서는 p.138의 해당 내용을 발췌·정리하였음.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최종조치 결과란 2016년 아동학대사례의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조치 중 당해 연도 가장 마지막 차수에 해당하는 결과를 의미한다(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 결과를 보면 지속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연계기관과 협조적 관계에 있으면서 모니터링하는 지속관찰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소/고발/사건처리 등 사법절차가 진행된 경우가 32.2%, 학대행위자와 아동과의 분리가 3%였다.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2.1%로 행방불명, 수감, 사망, 개입거부 등으로 만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표 IV-78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사건처리	만나지 못함	총계
11,733(62.7%)	560(3.0)	6,018(32.2)	389(2.1)	18,700(100.0)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142

### 3) 소결

‘아동에 대한 폭력’은 2015년부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별도의 대분류로 지정되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의도를 가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김영지 외, 2017). 이 장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속에서 얼마나 신체적, 정신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경미한 체벌에서부터 심각한 아동학대까지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폭력 경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폭력 경험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2011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학원에서 교사로부터의 폭력도 감소 추세에 있다. 또래로부터의 폭력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중고등학생의 감소 추세가 뚜렷한 것에 비해 초등학생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에서의 체벌금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에 비해, 가정 내에서의 체벌은 여전히 충분히 감소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의 부모로부터의 체벌 경험 비율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초등학생에 대한 체벌은 오히려 약간 증가하였다.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도 지속적으로 유지 되어 있어 가정 내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적 훈육 위험이 상존하는 것을 보인다.

사회적 인식변화와 인프라 확충 등으로 중앙아동보호기관이 접수한 아동학대의

신고건수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종사자의 수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격차도 발생하고 있었다. 성학대는 연령별로는 13-15세, 성별로는 여성청소년들의 피해비율이 높게 나타나 성학대에 취약한 대상군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고,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망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취약한 환경과 대상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의 폭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체계를 확충하여 아동학대 발생 및 위험 사례에 대한 개입을 체계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성학대에 취약한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예방 방안 및 위기 개입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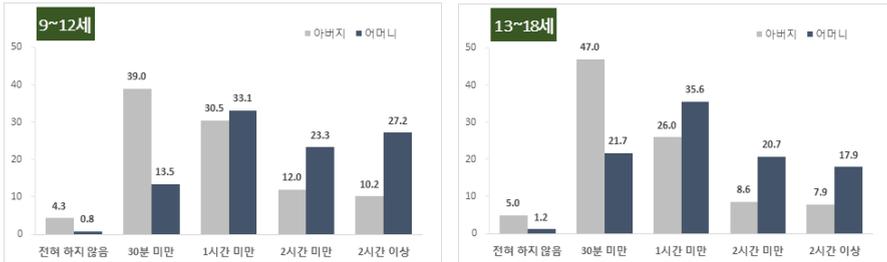
###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 (1) 부모와의 관계

##### ① 부모와의 대화시간

아동·청소년의 웰빙에서 부모와의 좋은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부모와의 좋은 관계의 양적 측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가족관계의 단면을 살펴보는 데 유용할 것이다. 여성가족부(2017)의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만9~24세의 청소년들 중 또 주중 1시간 이상 아버지와 대화를 한다는

경우는 16.6%였고, 어머니와 대화를 한다는 경우는 37.4%로 나타났다. 반면 주중 아버지와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6.2%, 어머니와 전혀 대화하지 않는 경우는 1.4%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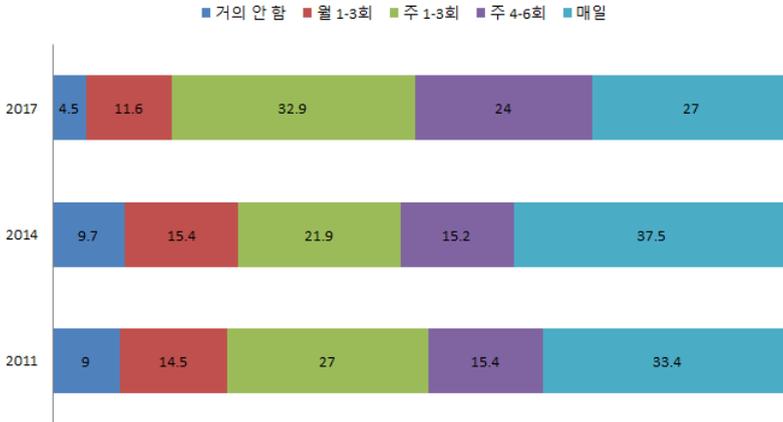


\* 출처: 여성가족부(2017b).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p.71. 표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 단위: %

그림 IV-65 부모님과와의 주중 대화시간(연령별 구분)

## ② 부모와의 저녁식사 횟수

부모님(양육자)과 저녁식사를 하는 경우를 보면, 매일 같이 하는 경우가 27%, 주4-6회를 하는 경우가 24%, 주1-3회를 하는 경우가 32.9%, 월1-3회를 하는 경우가 11.6%,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4.5%였다. 연차별로 비교해보면 매일 함께 식사를 하는 비율은 감소는 하였지만, 주1회 이상 식사를 하는 경우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여성가족부(2017b),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p.68. 표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 단위: %

그림 IV-66 부모님과의 주중 저녁식사 횟수(연도별 비교)

## (2) 보호·보육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 ①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영유아의 생활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보육시설은 영유아들의 하루 시간 중 상당 부분을 보내는 곳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환경을 살펴보는 것은 영유아들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설립 주체별 설치 및 운영 현황,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그리고 개소 당 교직원 수와 아동수의 비율 등을 살펴봄으로써 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가. 보육시설 설립주체별 설치 현황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종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

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이다.<sup>27)</sup> 아동보육시설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2017d)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은 총 40,238개소로 2013년 43,770개소에서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157개소였으며, 직장어린이집은 1,053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운영 어린이집, 민간운영 어린이집 등은 약간 감소하였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개소 수는 164개소로 가장 적지만 꾸준한 증가세에 있었다.

---

2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종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①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②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③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④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기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⑤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⑥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⑦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표 IV-79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2004년-2017년)

(단위 : 개소, 명)

구분·연도	설립주체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합동	직장	계
보육 시설 설치 개소 수 (단위: 개소)	2004	1,349	1,537	966	12,225	10,583	미분류	243	26,903
	2005	1,473	1,495	979	12,769	11,346	42	263	28,367
	2006	1,643	1,475	1,066	12,864	11,828	59	298	29,233
	2007	1,748	1,460	1,002	13,081	13,184	61	320	30,856
	2008	1,826	1,458	969	13,306	15,525	65	350	33,499
	2009	1,917	1,470	935	13,433	17,359	66	370	35,550
	2010	2,034	1,468	888	13,789	19,367	74	401	38,021
	2011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39,842
	2012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42,527
	2013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43,770
	2014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43,742
	2015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42,517
	2016	2,859	1,402	804	14,316	20,598	157	948	41,084
	2017	3,157	1,392	771	14,045	19,656	164	1,053	40,238
보육 시설 자원 아동 수 (단위: 명)	2004	107,335	135,531	48,414	507,398	119,787	미분류	11,787	930,252
	2005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933	12,985	989,390
	2006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238	14,538	1,040,361
	2007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444	15,124	1,099,933
	2008	123,405	113,894	53,818	615,647	210,438	1,491	16,809	1,135,502
	2009	129,656	112,338	52,718	623,045	236,843	1,655	18,794	1,175,049
	20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1,898	21,901	1,279,910
	2011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1,348,729
	2012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1,487,361
	2013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1,486,980
	2014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1,496,671
	2015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1,452,813
	2016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1,451,215
	2017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4,580	58,454	1,450,243

\* 출처: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pp.2-3, 보건복지부(2016c). 2016 보육통계. pp.2-3, 보건복지부(2017d). 2017 보육통계. pp.3-5.

## 나. 어린이집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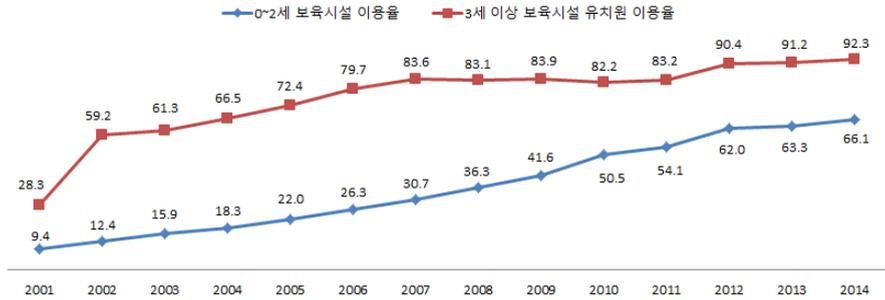
어린이집의 정원 대비 이용자 수를 비율로 계산하여 살펴보면, 2013년 이용률이 83.4%였으나 2017년에는 82.6%로 소폭 감소하였다. 운영 주체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률에 큰 차이를 보였는데, 2017년 기준으로 가정 운영시설 89.2%, 국·공립시설 89.1%, 민간운영시설 80.6%, 부모협동 운영시설은 83.2%, 각종 법인 및 단체 운영시설 76.8%, 직장 운영시설 76.1%, 사회복지법인 운영시설 73.4%로 국공립 어린이집과 개인이 운영하는 가정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V-80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현황(2014년-2017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2013년	정원	170,050	139,669	62,820	937,632	423,533	3,972	44,783	1,782,459
	현원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1,486,980
	이용률	90.8	77.9	82.3	82.1	86.0	81.2	77.0	83.4
2014년	정원	179,939	137,017	61,483	946,519	419,352	4,682	51,667	1,800,659
	현원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1,496,671
	이용률	88.5	76.3	80.0	81.9	87.1	80.6	76.0	83.1
2015년	정원	188,661	135,741	60,509	942,103	399,649	4,913	59,245	1,790,821
	현원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1,452,813
	이용률	87.9	73.5	77.4	79.4	86.1	84.0	75.6	81.1
2016년	정원	197,365	134,189	58,511	927,517	374,907	5,052	69,683	1,767,224
	현원	175,929	99,113	45,374	745,663	328,594	4,240	52,302	1,451,215
	이용률	89.1	73.9	77.5	80.4	87.6	83.9	75.1	82.1
2017년	정원	209,727	131,820	56,514	915,855	360,397	5,506	76,784	1,756,603
	현원	186,916	96,794	43,404	738,559	321,608	4,580	58,454	1,450,243
	이용률	89.1	73.4	76.8	80.6	89.2	83.2	76.1	82.6

\* 출처: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통계. p.15,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pp.3-5,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6c). 2016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7d). 2015 보육통계. p.3-5 등의 표 재구성



\* 출처:보건복지부(2016a). 2015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p.231 내용을 그래프로 재구성하였음 / 단위: %

그림 IV-67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연도별 비교)

다음으로 전체 영유아들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를 비율로 계산하여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9.4%에 불과하였던 0-2세 보육시설 이용률은 2014년에 66.1%로 증가하였고, 3세 이상 보육시설·유치원 이용률은 2001년 28.3%에서 2014년 92.3%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보육 인프라가 확대되고,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늘어나면서 영유아들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보육시설의 질을 관리하고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에 장시간 머물면서 나타나는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다. 어린이집 1개소 당 아동 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영유아 보육의 질을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로서 어린이집 개소 당 아동 수 및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살펴보았다. 2017년 기준으로 평균적인 어린이집 1개 당 아동 수는 36명이었다. 이는 2013년 34명이었던 것에 비해 2명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사회복지법인 운영 어린이집 아동 수가 69.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 어린이집의 아동 수가 16.4명으로 가장 적었다.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평균 4.4명으로 2013년 4.9명이었던 것에 비해 감소된 수치이다.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법인·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어린이집이 3.1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IV-81 어린이집 1개소 당 아동 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2014년-2017년)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어린이집 1개당 아 동 수	2013년	66.0	76.0	60.0	52.0	15.0	25.0	56.0	34.0
	2014년	64.0	73.6	57.7	52.3	15.7	25.3	56.7	34.2
	2015년	63.0	70.5	56.2	51.1	15.6	26.6	57.0	34.2
	2016년	61.5	70.7	56.4	52.1	16.0	27.0	55.2	35.3
	2017년 <sup>28)</sup>	59.2	69.5	56.3	52.6	16.4	27.5	55.5	36.0
보육교사 1인당 아 동 수	2013년	5.8	5.8	5.9	5.7	3.5	4.4	4.4	4.9
	2014년	5.5	5.5	5.6	5.5	3.5	4.4	4.2	4.8
	2015년	5.4	5.3	5.4	5.1	3.3	4.3	4.1	4.5
	2016년	5.3	5.2	5.4	5.1	3.2	4.3	4.0	4.5
	2017년	5.2	5.1	5.3	5.0	3.1	4.2	3.9	4.4

\* 출처: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통계. p.4,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6c). 2016 보육통계. p.5, 보건복지부(2017d). 2017 보육통계 p.5

## ②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나눌 수 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주관 부처는 각기 다른데 방과후학교는 교육부,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가족부이다. 이 서비스들의 공통점은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아동청소년들의 방과 후 방치를 막기 위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sup>29)</sup>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방과 후에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방치될 위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필요한 돌봄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8) 2013~2016년 모두 현원기준으로 여기에는 2015년까지는 종일, 야간, 24시간, 방과후가 포함되며, 2016년은 종일, 맞춤, 야간, 24시간, 방과후가 포함됨.

29) 단, 서비스 제공주체나 서비스 제공인력은 민간위탁이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가. 방과후학교 이용 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방과 후 학교의 전반적인 참여율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증가하다 2017년 까지 다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지만, 중고등학교가 하락 추세인 것에 비해 초등학교는 상승 추세인 것으로 나타난다. 고등학교는 2010년 79%에서 2017년 59.8%로, 중학교는 2010년 50%에서 2017년 37.2%로 감소한 반면, 초등학교는 2010년에 45%에서 2017년에 60.4%로 증가하였다.

표 IV-82 방과후학교 참여 실태(2010년-2017년)<sup>1)</sup>

(단위 :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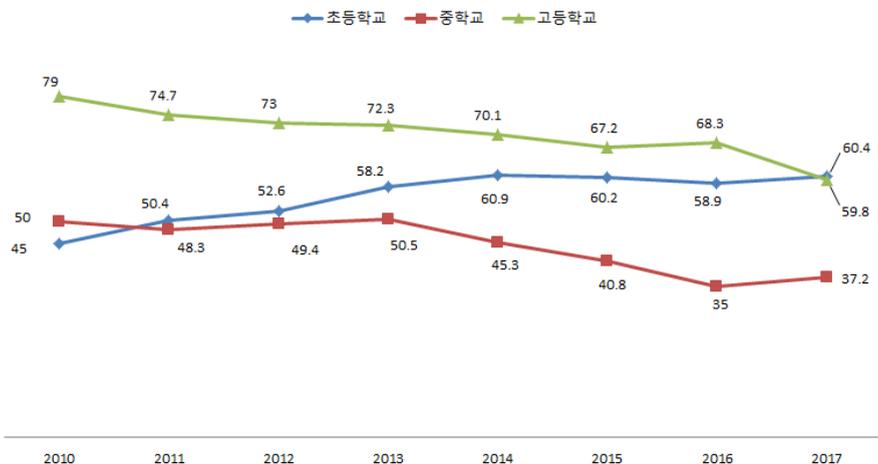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참여율 <sup>2)</sup>	비용 <sup>3)</sup>	참여율	비용	참여율	비용	참여율	비용
2010	45.0	1.3	50.0	0.7	79.0	2.3	55.6	1.4
2011	50.4	1.6	48.3	0.6	74.7	2.2	56.6	1.5
2012	52.6	1.5	49.4	0.4	73.0	1.8	57.6	1.3
2013	58.2	2.0	50.5	0.4	72.3	2.0	60.2	1.5
2014	60.9	2.3	45.3	0.4	70.1	1.9	59.3	1.7
2015	60.2	2.2	40.8	0.4	67.2	1.7	57.2	1.6
2016	58.9	2.1	35.0	0.3	68.3	1.8	55.8	1.6
2017	60.4	2.2	37.2	0.3	59.8	1.3	54.6	2.2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 통계. p.23.

통계청·교육부(2017), 2017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 원자료: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각년도

- \* 주: 1) 방과후 초등 돌봄 프로그램, 특기·적성관련 프로그램, 교과 관련 프로그램 포함  
 2) 참여율은 무상과 유상 합친 비율, 3)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금액



\* 출처: 통계청,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 통계. p.23.  
 통계청·교육부(2017), 2017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 원자료: 통계청,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각년도

**그림 IV-68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률 (연도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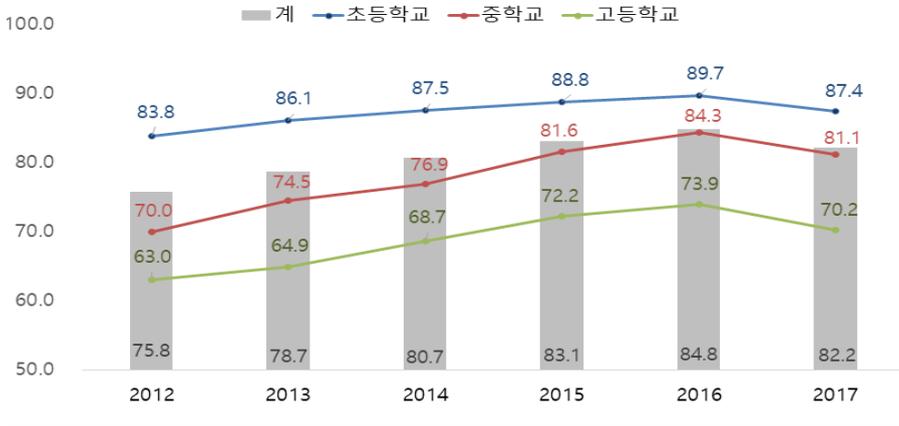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이래로 교과 프로그램의 비율은 줄어들고,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특히 초등학교에서 73.3%로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는 45.3%, 고등학교는 14.0%였다. 학교급에 따라 제공되는 방과후 프로그램의 차이가 있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과에 초점을 맞춘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었다.

표 IV-8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2010년-2017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초	중	고	계	
교과	수(개)	338,891	355,158	367,025	323,888	294,396	255,079	238,916	58,775	36,313	115,400	210,488
	비율(%)	68.5	66.9	60.9	56.8	54.7	53.6	52.7	26.7	54.7	86.0	50.0
특기	수(개)	156,074	175,492	235,605	246,433	243,712	220,611	214,475	161,652	30,026	18,809	210,487
	비율(%)	31.5	33.1	39.1	43.2	45.3	46.4	47.3	73.3	45.3	14.0	50.0
계	수(개)	494,965	530,650	602,630	570,321	538,108	475,690	453,391	220,427	66,339	134,209	420,975

\* 출처: 교육부(2017a).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1.  
교육부(2018).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1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초등학교생의 만족도가 87.4%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의 만족도가 81.1%,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70.2%로 뒤를 이었다.



(단위 : %)

\* 출처: 교육부(2018).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p.3. 표를 그래프로 재구성.

그림 IV-69 방과후학교 교급별 서비스 만족도

#### 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현황 및 서비스 만족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과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중학교 3학년생까지를 대상으로 학습지원 및 체험활동 등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2004년 46개소로 시작하여, 2011년에 200개소에서 정체되었다가, 2017년에 250개소로 확대되었다. 이용인원은 2005년 2,350명에서 2017년 9,940명으로 10여년 사이 4배가량 증가하였다.

표 IV-8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2005년-2017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개소	46	100	151	185	178	161	200	200	200	200	244	250	250
인원 (명)	2,350	4,200	6,300	7,980	7,560	6,672	8,200	8,060	8,200	8,043	9,490	9,745	9,940
연인원 (명)	225,600	1,260,000	1,890,600	2,274,300	2,177,280	1,754,736	2,148,400	2,095,600	2,205,800	1,962,492	2,325,050	2,368,035	-

\* 출처: 김영지 외(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VI: 총괄보고서. p.273.  
 여성가족부(2016a). 2016 청소년백서. pp.151-153.  
 여성가족부(2017a). 2017 청소년백서. pp.167-16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으로 프로그램과 지도자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급식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85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서비스 만족도

구분	프로그램 만족도	지도자 만족도	교과목 강사 만족도	주중체험강사 만족도	시설환경 만족도	급식 만족도
평균(표준편차)	4.26(.59)	4.32(.58)	4.34(.55)	4.50(.52)	4.38(.57)	3.72(.84)
100점 환산점수	85.3	86.3	86.8	89.9	87.6	74.4

\* 출처: 양계민 (2016).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도 및 만족도 조사연구. p.31

##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는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보호대상 아동들에 대한 대안양육 배치 현황 및 국내외 입양 현황을 살펴보고, 가정 밖에 있는 가출청소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1) 보호대상아동 현황 및 대안양육 배치 비율

#### ① 보호대상아동 현황

「아동복지법」 제3조 4항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의미한다. 아동이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원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아동은 대안양육(alternative care)에 배치되어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게 된다.

2017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현황을 보면 총 4,846명이 빈곤, 실직 학대, 가출, 미혼모 출산, 기아, 미아 등으로 원가족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보호대상아동 발생의 주요 원인은 빈곤, 실직, 학대,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의 사유로 2017년에 3,494명이 발생하였으며 전체의 72.1%였다. 미혼자녀출산 여성도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의 두 번째로 큰 원인이었고, 2017년에 850명이 발생하여 전체의 17.5%였다. 이 두 가지 사유를 볼 때 원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보호대상아동이 되는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인다. 비행·가출과 기아의 사유는 5% 내외였고, 미아는 0.2%였다. 연도 별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아동 수 감소로 인해 점차 감소 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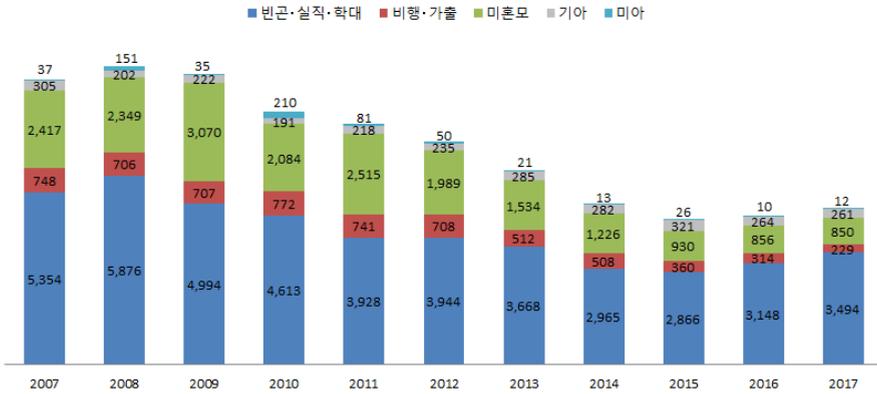
표 IV-86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2007년-2017년)

(단위 :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8,861	9,284	9,028	8,590	7,483	6,926	6,020	4,994	4,503	4,592	4,846
빈곤·실직·학대 <sup>1)</sup>	5,354	5,876	4,994	4,613	3,928	3,944	3,668	2,965	2,866	3,148	3,494
비행·가출 <sup>2)</sup>	748	706	707	772	741	708	512	508	360	314	229
미혼모	2,417	2,349	3,070	2,084	2,515	1,989	1,534	1,226	930	856	850
기아	305	202	222	191	218	235	285	282	321	264	261
미아	37	151	35	210	81	50	21	13	26	10	12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원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주: 1) 학대, 빈곤,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 포함됨.  
2) 비행, 가출, 부랑을 포함함.



(단위 : 명)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원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그림 IV-70 발생유형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2007년-2017년)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한 이후에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입양 등의 대안양육의 보호를 받는다.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 총 4,121명이 배치되었고, 시설보호에 배치된 아동이 2,421명, 가정위탁 아동이 1,700명, 입양된 아동이 285명이었다. 소년소녀가장의 경우 2000년부터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고 추가 지정은 하지 않도록 하여(보건복지부, 2017c), 큰 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6년 6명, 2017년에는 2명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보건복지부(2017b)에 따르면 2016년 말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정은 전국에 62세대, 92명이 있다.<sup>30)</sup> 소년소녀가정은 실질적 보호자가 없이 미성년의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신규 지정은 금지되어야 한다.

표 IV-87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07년-2017년)

(단위 :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8,861	10,534	10,153	8,590	7,483	6,926	6,020	4,994	4,503	4,592	4,121
시설보호 <sup>1)</sup>	3,245	4,964	4,767	4,842	3,752	3,748	3,257	2,900	2,682	2,894	2,421
	36.6	47.1	47.0	56.4	50.1	54.1	54.1	58.1	59.6	63.0	58.7
가정위탁	3,378	2,838	2,734	2,124	2,350	2,289	2,265	1,688	1,582	1,449	1,700
	38.1	26.9	26.9	24.7	31.4	33.0	37.6	33.8	35.1	31.6	41.3
입양 <sup>2)</sup>	1,191	1,304	1,314	1,393	1,253	772	478	393	239	243	285
	13.4	12.4	12.9	16.2	16.7	11.1	7.9	7.9	5.3	5.3	6.9
소년소녀가정	247	178	213	231	128	117	20	13	0	6	2
	2.8	1.7	2.1	2.7	1.7	1.7	0.3	0.3	0.0	0.1	0.0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원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주: 1) 시설보호는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포함됨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법상의 입양(사 인간의 입양)은 미포함

30) 보건복지부(2017b). 2016 보건복지백서. 세종: 보건복지부. p.304. 소년소녀가정 현황.

대안양육 배치에서 특징적인 것은 아동복지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과반 이상으로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는 추세 속에서 가정위탁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아동인구 감소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감소의 경향과 가정위탁보호의 증가 경향을 고려할 때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절대적인 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원출처: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 \* 주: 1) 시설보호는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포함됨
-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요보호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민법상의 입양(사인간의 입양)은 미포함

그림 IV-71 보호유형별 보호대상아동 현황(2007년-2017년)

## ② 국내외 입양

우리나라는 과거 많은 아동들을 해외입양 보내어 세계 최대의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쓸 만큼 해외입양이 활성화된 국가 중 하나였다. 오랜 기간 동안 민간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해외입양 결정과 진행과정이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어 국가의 허가에 의해서만 입양이 진행되도록 변화되었다.<sup>31)</sup> 우리나라는 이와 동시에 2013년 헤이그

31) 2012년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의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아동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이 법률의 제명을

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고자 하였다. 하지만 헤이그협약에 대한 비준은 2018년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회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sup>32),33)</sup>

표 IV-88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단위 : 명(%))

구분	계	2007년 이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246,480	230,635	2,556	2,439	2,475	2,464	1,880	922	1,172	1,057	880	863
국내	79,634 (32.3%)	70,327 (30.2%)	1,306 (51.1)	1,314 (53.9)	1,462 (59.1)	1,548 (62.8)	1,125 (59.8)	686 (74.4)	637 (54.4)	683 (64.6)	546 (62.0)	465 (53.9%)
국외	166,846 (67.7%)	160,308 (69.8%)	1,250 (48.9)	1,125 (46.1)	1,013 (40.9)	916 (37.2)	755 (40.2)	236 (25.6)	535 (45.6)	374 (35.4)	334 (38.0)	398 (4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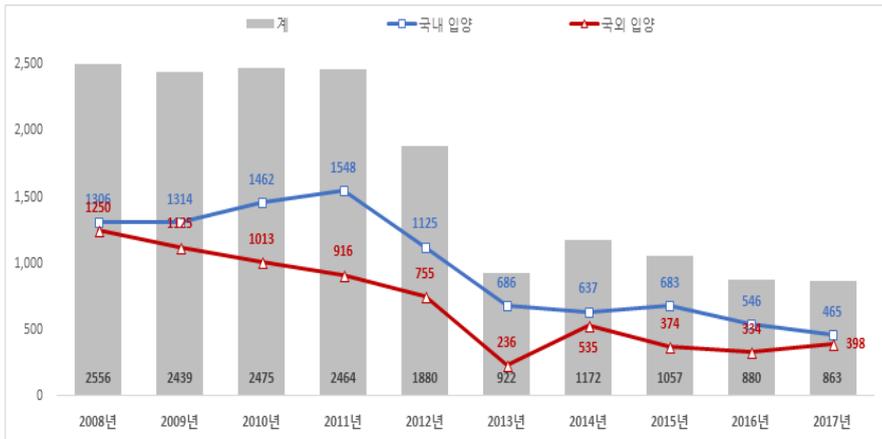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2018.5.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평범한 사람들의 입양이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꿉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국내외 입양 추이는 2012년을 기점으로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입양은 2008년 이후로 약간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이후 절반

「입양특례법」으로 변경하고,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친생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하고, 아동이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나고 나서 입양동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양자가 된 사람에게 자신에 대한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 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32)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 한국의 제2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1993년 헤이그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지난번 권고의견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반복하고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a) 아동권리협약의 원칙과 조항, 특히 21조에 완전히 부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국내/해외입양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b)1993년 헤이그협약 비준”
- 33)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 한국의 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1993년 헤이그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49. 위원회는 발효되면 입양 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도록 한 당사국의 입양특례법 및 민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본안이 발효되기 전 과도기간의 아동입양의 경우에 대해 염려하며, 다음의 사항에 여전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 a) 명시적으로 임무권한이 부여된 입양관련 규제감독 중앙기구 및 주무당국이 해외입양절차에 개입할 의무를 성문화한 법률의 부재, b) 13세 미만 아동의 입양 시 아동 의사 청취의 부재, c) 압도적 대다수의 청소년 미혼모의 자녀가 입양되며, 청소년 미혼모의 동의 없이 이들의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이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d) 입양 후 서버시의 부족, 특히 해외 입양아동과 생물학적 출신에 대한 정보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언어문제 해결을 포함, e) 당사국이 국제입양 관련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1993년 헤이그 협약에 여전히 가입하지 않고 있음”

이상 감소하였고 이 추세는 계속 유지되어 2017년에 465명이 국내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해외입양이 된 아동 역시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오면서 1/3 가량 감소되었으나, 2014년에 535명으로 다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398명이 해외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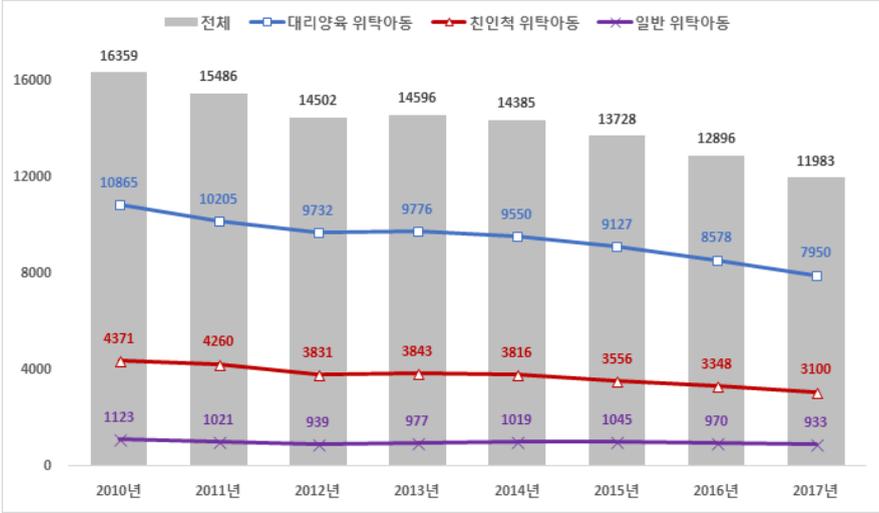
\* 출처: 보건복지부(2018.5.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평범한 사람들의 입양이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꿉니다」 표를 그래프로 재구성. 단위/명

그림 IV-72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

### ③ 가정위탁보호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보호하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17). 가정위탁보호는 크게 대리양육가정위탁, 친인척가정위탁, 일반가정위탁으로 구분된다.

2017년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수를 보면, 조부모에게 양육 받는 대리양육위탁이 7,950명, 조부모 이외의 친인척에게 양육 받는 친인척위탁이 3,100명, 그 외의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인 일반가정위탁이 933명이었다. 가정위탁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므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반가정위탁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단위: 명)

\* 출처: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p.314. 표를 그래프로 재구성.  
 보건복지부(2017e). 2017년 가정위탁 현황(2017.12.31. 기준).

그림 IV-73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

### (3) 가출청소년의 서비스 이용률

#### ① 가출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가출을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3.8%로 남학생의 가출 경험 비율이 여학생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과 경제 수준이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들에 비해 가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89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

(단위 : %(명))

구분	가출한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없다	전체(n)	$\chi^2$
전체	3.8	96.2	100.0(9,025)	
성별	남학생	4.5	100.0(4,688)	10.729**
	여학생	3.1	100.0(4,338)	
학교급	초등학교	2.9	100.0(2,725)	9.373**
	중학교	4.1	100.0(2,848)	
	고등학교	4.3	100.0(3,452)	
고교 유형	일반계고	4.2	100.0(2,788)	9.875*
	특성화계고	4.8	100.0(664)	
지역 규모	대도시	4.2	100.0(3,680)	4.144
	중소도시	3.7	100.0(4,397)	
	읍면지역	2.8	100.0(94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7	100.0(8,234)	7.059
	한부모가정	4.6	100.0(598)	
	조손가정	7.9	100.0(88)	
	기타	5.9	100.0(97)	
학업 성적	상	2.4	100.0(2,940)	57.892***
	중	3.4	100.0(3,995)	
	하	6.5	100.0(2,082)	
경제적 수준	상	3.3	100.0(4,966)	24.441***
	중	3.8	100.0(3,183)	
	하	6.7	100.0(869)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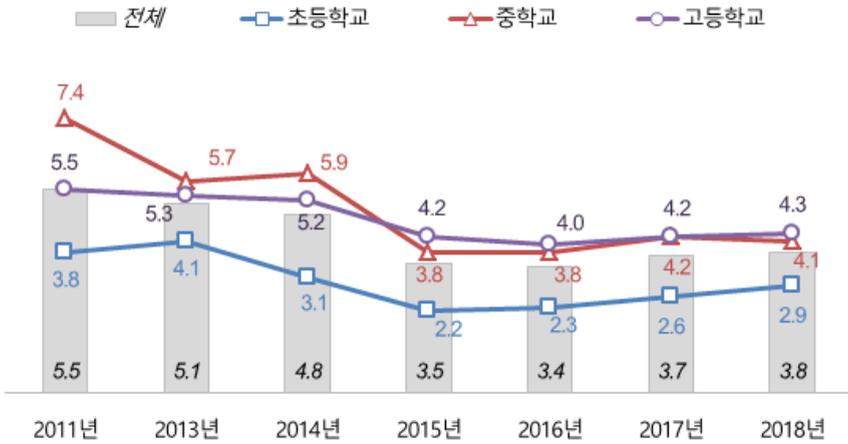


그림 IV-74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

최근 1년 간 가출 경험을 보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가출 비율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2018년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1년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간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지만, 2018년에는 이러한 격차가 감소하였고 특히 중고등학생의 가출 경험 비율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출을 한 주된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응답 결과를 보면 절반이 넘는 경우가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이었다. 이러한 비율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학업문제는 15.6%였고,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12.0%였다.

표 IV-90 가출을 한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문제 (학업부 담, 성적 등) 때문에	부모님 (보호자) 과의 문 제(불화, 폭행, 간 섭 등) 때문에	학교 문제 (갈등, 폭력 등)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타	전체(n)	$\chi^2$
전체	15.6	58.0	3.0	4.1	12.0	7.2	100.0(336)	
성별	남학생	18.4	51.8	3.2	4.4	13.4	100.0(203)	9.136
	여학생	11.4	67.4	2.8	3.8	10.0	100.0(133)	
학교급	초등학교	26.5	46.0	8.6	6.4	6.8	100.0(74)	27.524**
	중학교	9.8	58.9	1.9	2.5	17.8	100.0(113)	
	고등학교	14.6	63.2	1.2	4.2	10.3	100.0(149)	
고교 유형	일반계고	17.8	61.1	0.0	3.3	9.5	100.0(117)	39.283
	특성화계고	2.7	70.8	5.4	7.9	13.2	100.0(32)	***
지역 규모	대도시	13.6	55.5	1.9	5.3	14.3	100.0(151)	14.063
	중소도시	15.2	60.2	3.3	3.8	11.9	100.0(159)	
	읍면지역	29.4	58.8	7.9	0.0	0.0	100.0(2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6.4	57.3	3.5	2.5	13.2	100.0(295)	45.095
	한부모가정	7.8	64.8	0.0	24.0	3.5	100.0(28)	
	조손가정	10.9	64.1	0.0	0.0	0.0	100.0(7)	
학업 성적	상	19.4	54.8	7.4	1.0	9.9	100.0(68)	12.294
	중	17.0	59.5	2.3	4.8	12.2	100.0(134)	
	하	12.4	57.8	1.6	5.1	13.0	100.0(133)	
경제적 수준	상	21.0	49.7	2.4	4.0	13.9	100.0(158)	15.481
	중	12.1	64.0	4.9	3.1	9.1	100.0(120)	
	하	8.3	67.4	0.9	6.7	13.2	100.0(57)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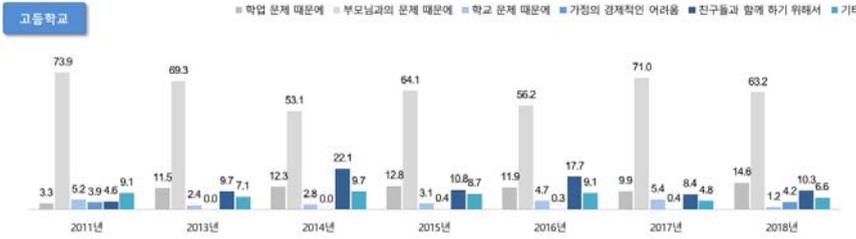


그림 IV-75 가출을 한 주된 이유(연도별 비교)

②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청소년쉼터의 운영 및 이용 현황을 보면 2017년 현재 청소년쉼터 개소 수는 총 123개였다. 이중 일시쉼터는 30개, 단기쉼터는 53개, 중장기 쉼터는 40개였다. 이는 2008년에 비해 1.6배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표 IV-91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2008-2017년)

(단위 : 개소, 백만 원, 명)

구분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쉼터 수	9	10	10	10	13	21	22	26	28
(개소 수)	일시쉼터	9	10	10	10	13	21	22	26	28	30
	단기쉼터	42	47	49	48	49	50	50	52	51	53
	중장기쉼터	25	24	24	25	30	32	37	41	40	40
	총계	76	81	83	83	92	103	109	119	119	123
예산(백만 원)		4,639	4,661	5,874	6,262	7,287	8,137	8,710	10,002	12,666	-
이용인원(연인원)		235,209	245,663	267,117	400,533	405,204	465,219	584,510	545,907	551,106	-

\* 출처: 여성가족부(2017a). 2017 청소년백서. pp.160-162의 표를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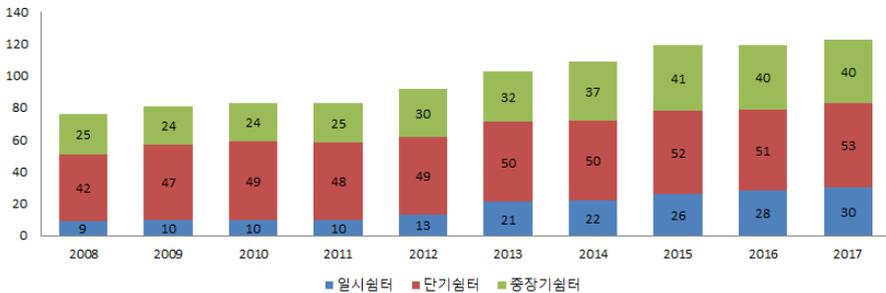


그림 IV-76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추이

③ 가출시 서비스 이용기관 및 만족도

청소년쉼터의 개소 수는 연도별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262명 중 청소년쉼터를 이용해본 청소년은 4.9%로 극소수였다. 청소년상담기관은 1.5%였고,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전화는 1% 미만이었다. 가출 경험 청소년의 88.1%는 아무런 서비스를 이용해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V-92 가출 후 이용한 기관

(단위 : %(명))

구분	이용해 본 적 없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 기관	청소년 수련관 (센터)	청소년 전화 1388	기타	전체(n)	$\chi^2$	
전체	88.1	4.9	1.5	0.5	0.3	4.7	100.0(262)		
성별	남학생	87.9	4.3	2.6	0.0	0.0	100.0(152)	6.127	
	여학생	88.4	5.6	0.0	1.1	0.8	100.0(110)		
학교급	중학교	87.2	6.3	2.0	1.1	0.8	100.0(113)	4.938	
	고등학교	88.7	3.8	1.2	0.0	0.0	100.0(149)		
고교 유형	일반계고	90.6	2.3	0.0	0.0	0.0	100.0(117)	14.721	
	특성화계고	81.7	9.1	5.4	0.0	0.0	100.0(32)		
지역 규모	대도시	87.2	7.8	0.0	0.0	0.0	100.0(110)	17.277	
	중소도시	88.9	2.4	1.8	0.9	0.7	100.0(130)		
	읍면지역	87.6	4.4	8.0	0.0	0.0	100.0(2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0.0	3.3	1.0	0.0	0.4	100.0(234)	84.766	
	한부모가정	82.1	4.6	7.8	5.5	0.0	100.0(22)		
	조손가정	65.1	34.9	0.0	0.0	0.0	100.0(2)		***
	기타	12.2	87.8	0.0	0.0	0.0	100.0(4)		
학업 성적	상	88.0	3.8	3.8	0.0	0.0	100.0(45)	8.351	
	중	89.7	2.7	2.4	0.0	0.0	100.0(95)		
	하	86.9	6.9	0.0	1.0	0.7	100.0(121)		
경제적 수준	상	89.7	5.2	1.5	0.0	0.0	100.0(119)	8.271	
	중	86.5	3.9	2.5	0.0	1.0	100.0(90)		
	하	87.2	5.8	0.0	2.3	0.0	100.0(53)		

\*p<.05, \*\*p<.01, \*\*\*p<.001

가출한 청소년들이 이용한 기관들은 연도별로 보면, 가출한 청소년들이 이용한 기관은 2011년에 5.7%에 불과하였으나 2018년 11.9%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청소년쉼터 이용률 역시 1.7%에서 2018년 4.9%로 증가되었다. 과거에 비해서는 가출한 청소년들의 서비스 이용률이 증가되고 있기는 하나, 아직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가정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은 의식주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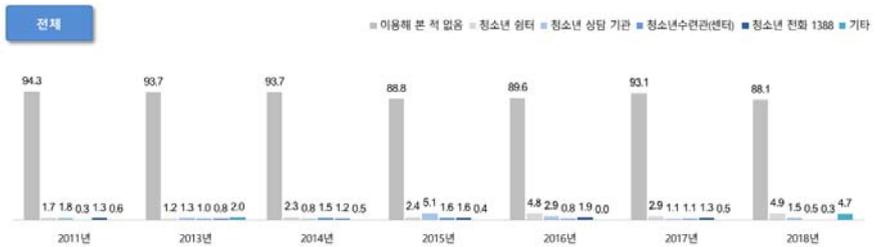


그림 IV-77 가출 후 이용한 기관(연도별 추이)

가출 후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과반이상이었다. 연차별로 보면 중학생들의 만족도가 고등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모두 약간씩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문항에는 단 29명만이 응답하여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IV-93 가출 후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 족하지 않는다	만족하 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 는 편이 다	매우 만 족한다	전체(n)	$\chi^2$	
전체	2.89(0.967)	12.5	13.7	45.9	27.9	100.0(29)		
성별	남학생	2.88(0.968)	14.5	7.5	53.4	24.5	100.0(18)	3.269
	여학생	2.91(1.012)	9.1	24.0	33.4	33.5	100.0(11)	
학교급	중학교	3.07(0.680)	0.0	18.4	56.5	25.1	100.0(14)	5.803
	고등학교	2.72(1.181)	24.5	9.2	35.8	30.6	100.0(15)	
지역 규모	대도시	3.12(0.886)	7.1	9.8	47.0	36.1	100.0(14)	23.633***
	중소도시	3.04(0.702)	0.0	20.9	54.4	24.7	100.0(13)	
	읍면지역	1.00(0.000)	100.0	0.0	0.0	0.0	100.0(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0(0.807)	4.4	13.1	50.1	32.4	100.0(22)	18.547*
	한부모가정	1.31(0.534)	69.3	30.7	0.0	0.0	100.0(4)	
	조손가정	3.00( - )	0.0	0.0	100.0	0.0	100.0(1)	
	기타	3.40(0.594)	0.0	0.0	60.3	39.7	100.0(3)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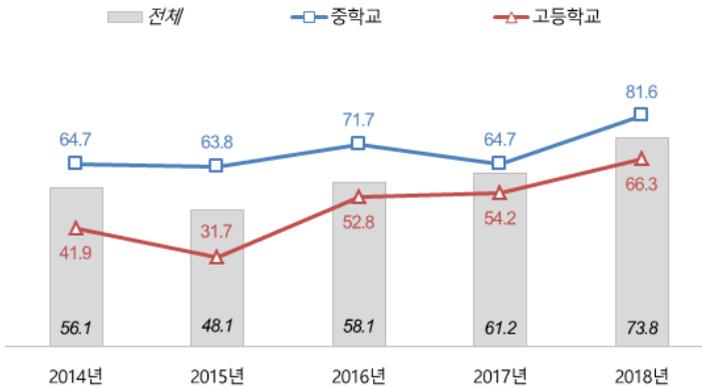


그림 IV-78 가출 후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 (1) 양육·보호조치에 대한 서비스 적절성

##### ① 양육·보호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의 평가기준은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평가는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평가가 의무화 되었고, 1999년에서 2001년까지의 1기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부터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6기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진행되었다. 현재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7기 사회복지시설평가가 진행 중이다.

아동복지시설평가는 6개 영역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시설 및 환경 영역은 응급상황 및 화재에 대비하는 안전체계구축 등을 점검하고, 재정 및 조직운영 영역은 투명한 회계 관리를, 인적자원 관리 영역에서는 직원들의 근로상황 및 복지정도를,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아동의 개별적인 발달기록 및 아동학대에 대한 치료를, 아동의 권리에 영역에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직원의 인권보장을, 지역사회 관계 영역에서는 외부자원개발과 지역사회연계를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영지 외, 2017).

표 IV-94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2016년도 평가지표 대비 2019년도 평가지표)

평가영역	2016년도 평가지표	2019년도 평가지표
A. 시설 및 환경	공통: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안전관리,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구축,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수정: A1. 편의시설의 적절성, A2. 안전관리, A3.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A4.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평가영역	2016년도 평가지표	2019년도 평가지표
개별지표	A6. 시설구조(거실), A7. 생활공간의 적절성, A9. 식품보관 위생상태, A10. 심리검사·치료실 및 상담실	·수정: A6. 식품보관 위생상태 ·유지: A5. 시설구조(거실), A7. 심리검사·치료실 및 상담실 ·삭제: A7. 생활공간의 적절성
B. 재정 및 조직운영	공통지표 B1. 월평균 아동 수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B2. 월평균 아동 수 대비 운영법인의 사업비, B3. 월평균 아동 수 대비 운영법인의 후원금, B4. 회계의 투명성	·수정: B1. 법인의 자부담(전입금), B3. 후원금, B4. 회계의 투명성 ·유지: B2. 사업비 ·예고지표(신규): B5. 중증장애인 생상품 구매
개별지표	B4. 법인이사회 구성, B5. 비품관리, B6. 운영(원무)일지와 보육일지, B7. 입·퇴소 관련기록	·삭제: B4. 법인이사회 구성, B5. 비품관리 ·통합수정: B6. 일지 및 입·퇴소 관련 기록 (←B6 운영(B6.원무일지와 보육일지 & B7. 입·퇴소 관련기록))
C. 인적 자원 관리	공통지표 C1. 직원총원율,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C3. 직원 근속률, C4. 직원 교육 활동비,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C6. 시설장의 전문성, C7. 최고 중간 관리자의 전문성, C8. 직원교육, C9. 직원복지	·수정: C1. 직원총원율, C2. 자격증 소지 직원 비율, C3. 직원 근속률, C4. 직원 교육 활동비, C5. 직원채용의 공정성, C8. 직원 교육, C9. 직원복지 ·유지: C6. 시설장의 전문성, C7. 최고 중간 관리자의 전문성 ·예고지표(신규): C10. 직원의 권리 및 인권보호
개별지표	C5. 직원교육 활동시간	·유지: C11. 직원교육 활동시간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개별지표 D1. 직원 및 보육사(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D2.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D3. 초기적응 프로그램, D4.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D5. 자립 직전아동 자립준비의 적절성, D6.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D7. 자립지원(취업·학업지도) 프로그램, D8. 퇴소지원 프로그램, D9.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D10. 아동상담, D11. 가족·연고자 상담, D12. 사례관리, D13. 맞춤형 지도·학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D14. 정서 및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수정: D2. 초기적응 프로그램, D5. 만기퇴소 및 연장종료(자립)아동 관리의 적절성, D6. 자립지원(취업·학업지도) 프로그램, D8.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D9. 아동상담, D14.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D18.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수준, D19.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적응 프로그램, D20. 영유아 장난감, D21.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 ·유지: D2. 아동 1인당 프로그램 사업비, D7. 퇴소지원 프로그램, D10. 가족·연고자 상담, D11. 사례관리, D12. 맞춤형 지도·학습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D13. 정서 및

평가영역	2016년도 평가지표	2019년도 평가지표
	D15. 가족의 시설방문 및 아동의 원가족 방문 프로그램, D16. 치료프로그램, D17. 식사문화, D18. 아동 개인별 사진첩(앨범) 기록정도, D19. 가족단위 소규모 나들이, D20. 영유아 및 아동의 발달 수준, D21.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적응 프로그램, D22. 영유아 장난감, D23. 직접 서비스 자원봉사자	사회성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D15. 치료프로그램, D17. 아동 개인별 사진첩(앨범) 기록정도 ·삭제: D1. 직원 및 보육사(생활지도원) 1인당 아동수, D19. 가족단위 소규모 나들이 통합수정: D4. 자립지원 및 자립준비의 적절성(←D4.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 D5. 자립직전아동 자립준비의 적절성), D16. 식당 및 식물관리(←A8. 식당 및 식품보관 위생상태 & D17. 식사문화) 영역이동: D3. 프로그램 기획회의(←C11.) 신규: D22. 멘토-멘티 결연실적
E. 아동의 권리	공통지표 E1. 비밀보장, E2. 아동의 고충처리,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개별지표), E6. 자치활동 보장(개별지표)	·유지: E1. 비밀보장, E2. 아동의 고충처리(→E3) 아동의 고충처리. ·수정: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개별지표) → E2.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신규: E4. 인권진정함 설치·운영, E5. 서비스 정보제공·통합신규: E6. 자치활동 보장(개별지표) → E6. 서비스 과정에 아동의 참여 및 자기 결정권
	개별지표 E3. 아동 및 직원의 인권보장 노력, E4.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건강검진, E5.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E7. 체벌금지, E6. 자치활동 보장	·유지: E7. 입소 시 건강진단 및 정기건강검진, E8. 교우 및 학교생활 관리, E9. 체벌금지 공통지표로 수정: E2. 학대예방 및 인권보장 공통지표로 통합수정: E6. 서비스과정에서 아동의 참여 및 자기결정권
F. 지역사회 관계	공통지표 F1. 외부자원개발, F2. 자원봉사자관리, F5. 후원금(품)의 사용 및 관리	·유지: F1. 외부자원개발 ·수정: F2. 자원봉사자관리, F5. 후원금(품)의 사용 및 관리
	개별지표 F3. 지역사회 연계, F4. 지역사회 연계(자립지원시설 및 영유아시설)	·유지: F4. 지역사회 연계, F5. 지역사회 연계(자립지원시설 및 영유아 시설)
* 출처: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2017). 2019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pp.19-24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시하였음		

이러한 6개 평가영역관련 변화 외에 평가점수 배점 역시 일부 변경되었는데, ‘인적자원 관리’는 2016년에는 20점 만점이었으나, 2019년에는 15점으로 하향되었으며,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역의 경우 2016년에는 40점 만점이었으나 2019년에는 35점으로 조정되었다. ‘아동의 권리’ 영역은 2016년 10점에서 2019년 15점으로 상향되었으며, ‘지역사회관계’는 2016년 5점에서 2019년 10점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아동의 권리 및 지역사회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 ② 보호·양육시설 예산

보호·양육시설의 예산 상황을 살펴보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요보호아동자립지원, 가정위탁지원,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사업들 중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2015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복권기금으로 이관하여 편성되고 있는데(김영지 외, 2016),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약 5%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은 약 16%의 예산이 증액되었다. 이외에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사업과 가정위탁지원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다.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운영비 지원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9.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대상 시설인 4,124개소에 월 운영비가 약간 증액되어 2017년에는 월 516만원 가량이 지원되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는 이외에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특수목적형 센터 추가 지원, 토요운영 지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등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보건복지부, 2016d).

표 IV-95 보호·양육시설 예산(2012년~2018년)

(단위 : 백만 원)

연도 사업명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7,600	15,261	7,630	7,630	7,630	6,867	6,524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6,913	7,259	7,407	8,623	13,714	16,476	19,132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960	1,014	1,024	1,021	1,000	1,012	1,021
가정위탁지원	1,521	1,369	1,232	1,232	1,232	1,241	1,285
지역아동센터	78,700 (3,500개소, 월 395만원)	90,500 (3,742개소, 월 420만원)	97,900 (3,989개소, 월 433만원)	103,500 (4,113개소, 월 443만원)	108,500 (4,113개소, 월 458만원)	112,100 (4,113개소, 월 473만원)	122,600 (4,124개소, 월 516만원)

\* 출처: 보건복지부(2012~2018). 각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건복지부(2016d, 2017i, 2018c).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2014~2015). 각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2017). 기금사업활동.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2018). 기금사업활동.

#### 4) 소결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영역은 3개의 중분류와 6개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중분류는 부모의 지도와 책임, 두 번째 중분류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이다.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이 가정에서 혹은 가정과 유사한 대안양육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부모의 지도와 책임 영역에서는 가정 내 아동청소년들의 가족과의 생활과 보육·보호 실태를 살펴보면, 부모와의 대화시간을 보면 주중 1시간 이상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경우는 16.6%, 어머니와 1시간 이상 대화하는 경우는 37.4%였다. 반면 전혀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는 아버지 6.2%, 어머니 1.4%였다. 일주일에

부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횟수는 매일 같이 하는 경우가 27%, 주4-6회를 하는 경우가 24%, 주1-3회를 하는 경우가 32.9%였다. 반면 월 1-3회를 하는 경우가 11.6%,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4.5%로 나타났다.

보육시설 이용실태를 보면, 0-2세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여 2014년에 92.3%였고, 3세 이상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률은 66.1%였다.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2013년 4.9명에서 2017년 4.4명으로 감소하였다. 학령기 아동청소년들의 돌봄 상황을 살펴보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중고등학생의 참여는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방과후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은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비율이 높았으나 중고등학생은 교과 관련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방과후학교의 만족도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초등학생의 만족도가 특히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개소수와 이용인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만족도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은 2017년에 4,846명이 발생했다. 보호대상아동의 주요 발생원인은 빈곤, 실직, 학대,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으로 전체의 72.1%였음. 미혼자녀 출산은 발생원인의 17.5%로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아동 수 감소로 점차 감소되고 있었다. 대안양육 배치 결과를 보면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가정위탁 보호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의 절대적인 수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양아동 수는 입양특례법 개정과 보호대상아동의 감소로 점차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고 있다. 2017년에는 국내입양 아동이 465명, 국외입양 아동이 398명이었다. 대리양육 배치에서 가정위탁보호의 구성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조부모에게 양육 받는 대리양육위탁이 7,950명, 조부모 이외의 친인척에게 양육 받는 친인척

위탁이 3,100명, 그 외의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인에 의한 양육인 일반가정위탁이 933명으로 일반가정위탁의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최근 1년 간 가출해본 청소년은 3.8%였다. 가출경험 비율은 중고등학생들은 감소하고 있고, 초등학생들은 낮게 유지되고 있었다. 가출이유는 상당수는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이었다. 가출을 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조금씩 확충되고 있지만,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88.1%는 아무런 청소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가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청소년쉼터를 이용해본 사람은 4.9%에 불과하였다.

이 절의 시사점은 첫째, 가정 내에서 부모님과의 대화나 저녁식사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줄어들고, 부모와의 교류가 전혀 없는 비율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부모와의 좋은 관계는 아동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의 완충제가 될 수 있어 가정 내 부모와의 교류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청소년들은 점차 보육시설 및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가정 내에서의 돌봄의 부재를 사회적으로 보완해주는 의미가 있다.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므로 돌봄서비스 질의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보호대상아동이 인구구조의 변화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직, 빈곤, 이혼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미혼 부모의 출산으로 인하여 보호대상아동이 되는 경우도 17.1%나 되는 상황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에는 아동이 빈곤으로 인해 가족과 분리되지 않도록 국가가 지원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원가족 지원을 통하여 아동과 부모가 분리되지 않도록 제도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지난 몇 년 간 입양 사례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단,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기준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입양 관련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한 후,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을 도입하는 것이 아동권리 차원에서 적절한 접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들은 청소년지원체계를 이용하

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가출청소년들이 의식주 마련을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쉼터의 개소 수를 늘리고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쉼터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력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 1) 장애

#### (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

##### ① 특수교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특수학교의 수는 173개교이며, 2016년에 비해 3개 학교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2017년을 기준으로 특수학급 수는 10,325개이며, 2016년 대비 260개의 학급이 증가하였다. 2017년을 기준으로 전체 학생 수는 89,353명이며, 2016년 대비 1,403명이 감소하였다. 2017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학생 수는 장애영아 549명, 유치원 5,437명, 초등학교 35,505명, 중학교 19,218명, 고등학교 23,655명, 전공과 4,98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유치원, 초등학생, 전공과는 증가하였고, 장애영아와 중학교, 고등학생은 감소하였다.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특수교육 교원의 수는 19,327명으로 2016년 대비 555명이 증가하였으며, 특수교육 교원의 수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IV-96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단위: 교, 학급, 명)

연도	특수 학교 수	특수 학급수	학생 수							교원수
			장애 영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계	
2010	150	7,792	290	3,225	35,294	19,375	19,111	2,416	79,711	15,244
2011	155	8,415	356	3,367	35,124	20,508	20,439	2,871	82,665	15,934
2012	156	8,927	403	3,675	34,458	21,535	21,649	3,292	85,012	16,727
2013	162	9,343	578	4,190	33,518	22,241	22,466	3,640	86,633	17,446
2014	166	9,617	680	4,219	33,184	22,159	22,973	4,063	87,278	17,922
2015	167	9,868	742	4,744	33,591	21,108	23,422	4,460	88,067	18,339
2016 (A)	170	10,065	656	5,186	33,770	19,793	23,943	4,602	87,950	18,772
2017 (B)	173	10,325	549	5,437	35,505	19,218	23,655	4,989	89,353	19,327
B-A	3	260	-107	251	1735	-575	-288	387	1403	555

\* 출처: 교육부(2017b).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5

②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비율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특수교육 대상 아동·청소년의 수는 89,353명이며 전년 대비 1,40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7). 전체 특수교육 대상 아동·청소년 중 29.3%인 26,199명이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되었으며, 70.7%에 해당하는 63,154명은 일반학교에 배치되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장애아동·청소년의 통합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47,564명으로 2016년보다 919명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학급에서 교육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15,590명으로 2016년보다 246명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특수학급에 배치된 아동·청소년의 수는 2011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지만, 일반학급에 배치된 아동·청소년의 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에 증가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7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단위 : 명(%))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 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학생 수			전체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011	24,741(29.9)	43,183	14,741	57,924(70.1)	82,665(100.0)
2012	24,932(29.3)	44,433	15,647	60,080(70.7)	85,012(100.0)
2013	25,522(29.5)	45,181	15,930	61,111(70.5)	86,633(100.0)
2014	25,827(29.6)	45,803	15,648	61,451(70.4)	87,278(100.0)
2015	26,094(29.6)	46,351	15,622	61,973(70.4)	88,067(100.0)
2016	25,961(29.5)	46,645	15,344	61,989(70.5)	87,950(100.0)
2017	26,199(29.3)	47,564	15,590	63,154(70.7)	89,353(100.0)

\* 출처: 교육부(2017b). 2017 특수교육연차보고서. p.16

### ③ 장애 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

2017년을 기준으로 장애 청소년의 졸업 후 상황을 살펴보면 졸업생 2,546명 중 상급학교로 진학한 학생의 비율은 53.1%(1,353명)로 2016년 상급학교 진학률 55.0%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취업한 학생의 비율은 5.7%(145명)로 2016년 취업률 6.3%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학이나 취업하지 않은 무직자의 비율은 41.2%(1,048명)로 2016년 무직률 38.7%에 비해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변화추이를 보면 진학률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취업률의 경우에는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률의 경우 2010년 16.6%에서 2017년 5.7%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직률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감소하다가 2015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나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98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단위 : %(명))

연도	졸업자(명)	진학률 (진학자 수) (%, (명))	취업률 (취업자 수) (%, (명))	무직률 (무직자 수) (%, (명))
2010	2,301	47.2(1,087)	16.6(383)	36.1(831)
2011	2,428	29.9(726)	14.7(357)	55.4(1,345)
2012	2,537	29.5(748)	15.8(402)	53.9(1,367)
2013	2,536	43.5(1,104)	13.5(343)	42.9(1,089)
2014	2,615	54.8(1,433)	11.8(308)	33.4(874)
2015	2,385	57.5(1,372)	7.8(185)	34.7(828)
2016	2,460	55.0(1,354)	6.3(155)	38.7(951)
2017	2,546	53.1(1,353)	5.7(145)	41.2(1,048)

\* 출처: 교육부(2017b).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p.29, 100.

## 2) 생존 및 발달

### (1) 사망률

#### ① 0세의 기대여명(평균수명)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82.36세로 2005년 78.24세에 비해 4.12세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대수명이 매년 평균 약 0.37년씩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기대수명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79.30세, 여자의 경우 85.41세로 여자의 기대수명이 남자 보다 6.11세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2005년의 경우 기대수명에서 남녀 간의 차이는 6.71세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기대 수명의 차이는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표 IV-99 0세의 기대여명

(단위 : 세)

연도	남자	여자	전체
2005	74.89	81.60	78.24
2006	75.44	82.12	78.78
2007	75.86	82.45	79.16
2008	76.25	82.96	79.60
2009	76.68	83.39	80.04
2010	76.84	83.63	80.24
2011	77.26	83.97	80.62
2012	77.57	84.17	80.87
2013	78.12	84.60	81.36
2014	78.58	85.02	81.80
2015	78.96	85.17	82.06
2016	79.30	85.41	82.36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생명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58](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58) (2018년 7월 22일 인출)

\* 주: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

## ②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영아 사망률이란 출생 후 365일 이내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출생아 수로 나눈 것이다. 이 지표는 국제적으로 국민 보건 수준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만큼 보건 수준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통계청 e-나라 지표, 2017). 2017년까지의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영아 사망률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신생아 사망률은 천 명당 1.6명, 신생아 후기 사망률은 천명당 1.2명이었으며, 이 둘을 합한 영아 사망률은 천 명당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0 연도별 영아사망률

(단위 : 명/1,000명 당)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남	여	전체																		
신생아 사망률	2.1	1.5	1.8	2.0	1.5	1.7	1.9	1.5	1.7	1.8	1.6	1.7	1.8	1.6	1.7	1.7	1.4	1.5	1.7	1.4	1.6
신생아 후기사망률	1.6	1.2	1.4	1.6	1.2	1.3	1.1	1.1	1.2	1.3	1.2	1.3	1.4	1.2	1.3	1.2	1.1	1.2	1.3	1.1	1.2
영아 사망률	3.7	2.7	3.2	3.4	2.7	3.0	3.1	2.7	2.9	3.1	2.9	3.0	3.2	2.8	3.0	2.9	2.5	2.7	3.1	2.6	2.8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영아사망추이.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69&stts\\_cd=276902&freq=U](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69&stts_cd=276902&freq=U) (2018년 7월 22일 인출)

\* 원자료: 보건복지부. 사망원인통계조사(국가승인통계 제101054호).

\* 주: 1) 영아사망률: (당해연도 0세 사망아수/당해연도 연간출생아수)×1,000.

2) 통계청으로 통합된 이후 첫 조사 (2012년 실시, 2009~2011년 대상) 이후 매년 작성

2016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 사망률을 살펴보면,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0세로 인구 10만 명당 282.1명이었다. 그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10세-14세로 8.0명이었다. 연령대별로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출생이후 10-14세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5세-19세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세에는 더욱 급격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들은 성장 과정에서 자연적인 질병 이외의 사고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사망이 많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사망률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0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대 중에서 15세에서 19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101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단위: 명/10만 명당 사망자 수)

연령 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망 자수	사망 률												
0세	1,508	345.5	1,435	318.9	1,405	306.8	1,305	294.6	1,305	310.2	1,190	281.9	1,154	282.1
1-4세	386	20.9	389	20.9	377	20.2	342	18.3	289	15.4	287	15.4	278	15.2
5-9세	277	10.8	239	10.0	268	11.4	253	10.8	204	8.8	207	8.9	205	8.7
10-14세	417	12.7	402	12.6	325	10.7	272	9.5	239	8.7	220	8.6	193	8.0
15-19세	1,034	29.4	1,003	28.3	905	25.8	812	23.6	870	25.9	685	20.9	718	22.5
20-24세	1,411	45.1	1,318	41.7	1,255	38.6	1,217	36.3	1,131	32.9	1,155	32.9	1,131	32.0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7&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18년 7월 22일 인출)

\* 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 ③ 사고 사망률

2016년을 기준으로 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1~4세와 5~9세, 10~14세, 20~24세, 25~29세에서는 사고 사망률이 2015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0세와 15~19세는 사고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최근 7년간의 변화추이를 보면 20세-29세의 사고 사망률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0세의 사고 사망률은 2014년까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V-102 사고 사망률

(단위 : 명/10만 명당)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0세	17.9	16.9	16.8	13.8	12.4	14.0	15.2
1~4세	6.8	5.9	5.9	5.9	4.3	4.6	4.1
5~9세	4.5	3.9	5.0	4.4	3.7	3.1	2.7
10~14세	5.8	5.3	4.7	4.0	3.1	3.9	3.0
15~19세	19.2	19.4	16.5	15.3	17.9	13.2	14.5
20~24세	32.9	29.6	26.7	25.1	22.7	21.9	21.6
25~29세	44.0	43.1	36.2	32.4	32.0	30.8	29.6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18년 7월 22일 인출)

\* 주: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

연령대별 사고 사망의 외인을 살펴보면 운수사고는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사고 사망의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0~9세까지의 연령대에서는 사고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자살이 가장 큰 사고 사망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5세 이후부터 연령대가 증가할 수록 자살로 인한 사망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7년간의 자살률을 살펴 볼 때에도 15세~19세 구간부터 자살로 인한 사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추세가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세~29세까지의 경우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약 3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3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

(단위 : 명/10만 명당)

구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2010	0세	2.1	0.9	0.5	0.2	-	5.0
	1~4세	3.1	1.3	0.2	0.3	0.2	0.8

구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5~9세	2.5	0.2	0.5	0.2	-	-	0.5
	10~14세	1.9	0.2	0.7	0.1	-	1.9	0.4
	15~19세	7.6	0.3	1.0	0.1	0.1	8.3	0.6
	20~24세	9.1	0.5	1.0	0.3	0.1	18.3	0.7
	25~29세	8.9	0.8	0.6	0.2	0.1	29.3	0.8
2011	0세	1.3	0.9	-	-	-	-	4.4
	1~4세	2.4	1.1	0.7	0.2	0.1	-	0.8
	5~9세	1.8	0.4	0.6	0.2	-	-	0.7
	10~14세	1.3	0.1	0.7	0.2	-	1.8	0.6
	15~19세	7.8	0.3	0.7	0.3	-	8.9	0.2
	20~24세	7.8	0.7	0.8	0.0	0.0	17.7	0.8
	25~29세	7.9	0.8	0.9	0.2	0.3	30.1	0.6
2012	0세	1.3	1.3	0.4	-	-	-	2.6
	1~4세	2.1	0.8	0.3	0.4	0.1	-	1.4
	5~9세	1.9	0.5	0.9	0.2	-	0.0	0.9
	10~14세	1.4	0.2	0.8	0.1	-	1.5	0.5
	15~19세	6.0	0.4	0.9	0.2	-	8.2	0.3
	20~24세	7.7	0.5	0.9	0.3	0.1	14.9	0.8
	25~29세	7.7	0.7	0.6	0.3	0.2	23.9	0.7
2013	0세	0.5	1.1	0.2	0.2	-	-	3.4
	1~4세	2.1	1.0	0.9	0.3	0.1	-	0.9
	5~9세	2.1	0.2	0.6	0.3	-	-	0.8
	10~14세	1.1	0.3	0.4	0.1	0.0	1.3	0.5
	15~19세	5.1	0.4	0.9	0.1	0.0	7.9	0.3
	20~24세	7.0	0.5	0.7	0.1	0.1	14.5	0.6
	25~29세	7.3	0.7	0.3	0.1	0.2	21.7	0.5
2014	0세	1.7	1.4	1.0	-	-	-	1.4
	1~4세	1.2	0.9	0.3	0.1	0.1	-	1.0
	5~9세	1.3	0.3	0.6	0.1	0.0	0.1	0.9
	10~14세	0.8	0.0	0.5	0.1	-	1.1	0.4
	15~19세	8.0	0.3	0.7	0.3	-	7.2	0.5
	20~24세	5.5	0.5	0.6	0.3	0.1	13.6	0.7
	25~29세	6.7	0.4	0.4	0.2	0.2	22.4	0.4
2015	0세	0.5	0.7	-	-	-	-	5.0
	1~4세	1.9	0.6	0.5	0.1	-	-	0.8
	5~9세	1.5	0.2	0.3	0.3	-	-	0.6
	10~14세	1.2	0.3	0.4	0.1	-	1.2	0.4

구분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	
	15~19세	5.0	0.2	0.4	0.2	0.0	6.5	0.4
	20~24세	5.6	0.6	0.6	0.2	0.1	13.2	0.4
	25~29세	7.4	0.7	0.6	0.3	0.2	19.9	0.4
2016	0세	1.7	0.5	0.2	-	-	-	3.7
	1~4세	1.5	0.4	0.4	0.1	-	-	1.1
	5~9세	1.4	0.2	0.3	-	0.0	-	0.5
	10~14세	0.8	0.2	0.5	0.2	-	0.9	0.2
	15~19세	4.6	0.4	0.7	0.2	0.1	7.9	0.3
	20~24세	5.5	0.5	0.5	0.1	0.1	13.3	0.5
	25~29세	5.8	0.9	0.8	0.2	0.1	19.8	0.4

\* 출처: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34E01&vw_cd=MT_ZTITLE&list_id=D11&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  
(2018년 7월 22일 인출)  
통계청(2016.9.27). 2015년 사망원인통계. p.18.

- \* 주: 1)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  
2)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사고(논발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반면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를 의미  
3) 추락 사고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 (2) 안전에 대한 인식률

### ① 범죄 피해율

2016년을 기준으로 청소년의 범죄 피해 건수는 90,087건이었으며, 2015년과 비교할 때 4,563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는 2016년 기준 55,689건으로 2015년(59,760건)에 비해 4,071건이 감소하였으며, 여자 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는 34,398건으로 2015년(34,890건)에 비해 492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4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

연도	남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청소년 전체		
	피해 건 수 (건)	추계 인구 수 (명)	피해율	피해 건 수 (건)	추계 인구 수 (명)	피해율	피해 건 수 (건)	추계 인구 수 (명)	피해율
2003	17,892	2,751,257	6.5	10,858	2,520,331	4.3	28,750	5,271,588	5.5
2004	25,000	2,705,387	9.2	17,038	2,463,396	6.9	42,038	5,168,783	8.1
2005	26,733	2,703,107	9.9	17,116	2,447,997	7.0	43,849	5,151,104	8.5
2006	27,526	2,729,734	10.1	17,355	2,450,374	7.1	44,881	5,180,108	8.7
2007	34,487	2,758,794	12.5	20,280	2,461,537	8.2	54,767	5,220,331	10.5
2008	38,680	2,797,367	13.8	22,580	2,480,493	9.1	61,260	5,277,860	11.6
2009	44,797	2,831,004	15.8	24,895	2,501,424	10.0	69,692	5,332,428	13.1
2010	39,695	2,841,982	14.0	24,363	2,518,442	9.7	64,058	5,360,428	12.0
2011	37,034	2,882,185	12.8	22,786	2,565,557	8.9	59,820	5,447,742	11.0
2012	65,614	2,841,888	23.1	36,657	2,539,523	14.4	102,271	5,381,411	19.0
2013	55,518	2,785,807	20.0	35,070	2,496,525	14.0	90,588	5,282,332	17.1
2014	56,796	-	-	33,772	-	-	90,568	-	-
2015	59,760	-	-	34,890	-	-	94,650	-	-
2016	55,689	-	-	34,398	-	-	90,087	-	-

\* 출처: 통계청(각 연도). 범죄별/피해자 성별·연령별 범죄발생 건수. 통계청 웹 사이트.

\* 원자료: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 \* 주: 1) 피해율: 인구 1천 명당 피해건수 추계인구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 (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이용  
 2) 청소년: 만 13세에서 만 20세

②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인식률

지역사회 내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을 살펴보면,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81.2%,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77.8%,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에 대해서는 71.5%, 동네 음식점의 음식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87.8%가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냈다.

먼저 학교급식의 위생에 대해서 안전하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매우 그렇다' 25.7%, '그런 편이다' 55.5%로 학교급식의 위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81.2%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위생도에 관한 인식을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급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급식의 위생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도시지역, 중소도시지역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도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이 3.02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부모 가정 3.01점, 조손가정 2.8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급식의 위생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05 학교급식의 위생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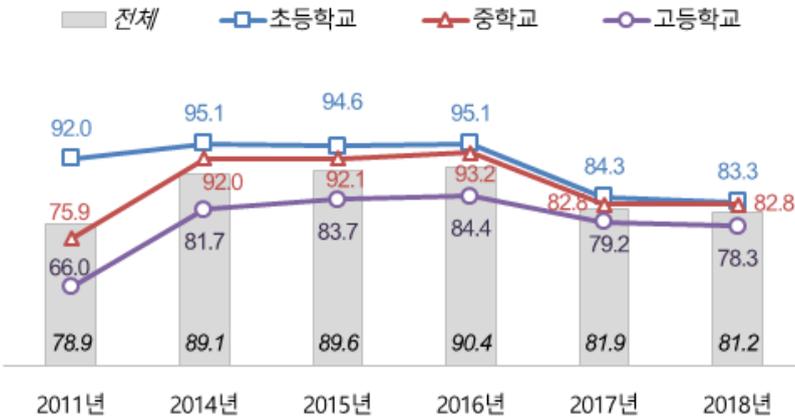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3.01(0.779)	5.4	13.4	55.5	25.7	100.0(9,047)		
성별	남학생	3.03(0.808)	6.5	11.6	54.1	27.8	100.0(4,700)	65.083
	여학생	3.00(0.745)	4.2	15.3	57.1	23.4	100.0(4,347)	***
학교급	초등학교	3.17(0.874)	7.2	9.5	42.2	41.1	100.0(2,743)	629.716 ***
	중학교	3.03(0.728)	4.0	13.2	59.0	23.8	100.0(2,857)	
	고등학교	2.88(0.713)	5.2	16.6	63.3	14.9	100.0(3,447)	
지역	대도시	3.06(0.774)	5.1	11.9	55.0	28.1	100.0(3,685)	106.798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규모	중소도시	2.95(0.770)	5.5	15.6	57.1	21.8	100.0(4,408)	***
	읍면지역	3.14(0.809)	5.9	9.0	50.6	34.5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2(0.773)	5.2	13.4	55.8	25.6	100.0(8,252)	31.282 ***
	한부모가정	3.01(0.805)	6.1	13.6	53.6	26.6	100.0(601)	
	조손가정	2.86(1.016)	17.2	7.2	47.6	28.0	100.0(89)	
	기타	2.93(0.867)	9.0	14.1	52.1	24.8	100.0(97)	
학업 성적	상	3.10(0.785)	4.8	11.8	51.8	31.6	100.0(2,947)	111.108 ***
	중	3.01(0.776)	5.5	13.3	56.3	24.9	100.0(4,009)	
	하	2.91(0.761)	6.0	15.9	59.3	18.8	100.0(2,083)	
경제적 수준	상	3.06(0.800)	5.6	12.6	52.4	29.4	100.0(4,980)	91.237 ***
	중	2.97(0.750)	5.2	13.7	59.4	21.6	100.0(3,191)	
	하	2.92(0.745)	5.0	16.7	59.1	19.1	100.0(868)	

\*p<.05, \*\*p<.01, \*\*\*p<.001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학교급식의 안전도를 물었던 2016년까지에 비해, 학교 급식의 '위생도'로 변경하여 설문한 2017년 이후 긍정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전년도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79 학교급식의 위생도(연도별 추이)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 대한 응답을 합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77.8%로 나타났다. 집단별 평균 점수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 보다 범죄로부터의 안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며,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3.05점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도시 2.99점, 중소도시 2.90점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3.12점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양부모가정 2.96점, 한부모가정 2.85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6년간 거주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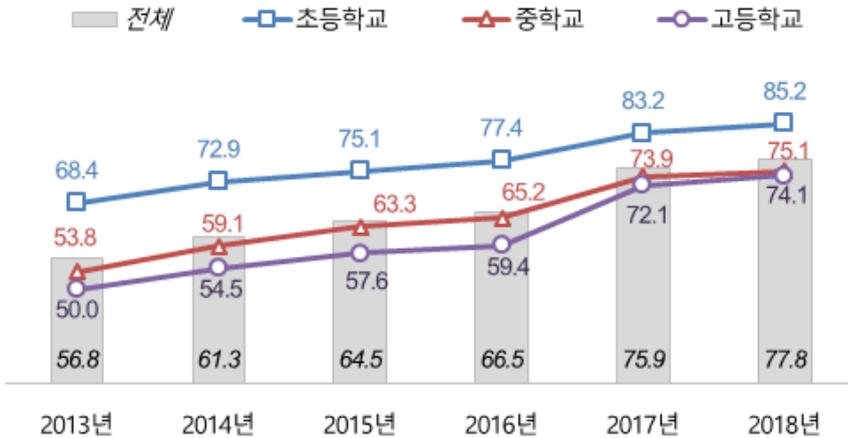
표 IV-106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2.95(0.751)	4.2	18.0	56.1	21.7	100.0(9,053)		
성별	남학생	3.09(0.734)	3.4	12.4	55.6	28.5	100.0(4,698)	383.637 ***
	여학생	2.80(0.740)	5.0	24.0	56.5	14.5	100.0(4,355)	
학교급	초등학교	3.14(0.767)	4.2	10.6	51.7	33.4	100.0(2,744)	385.768 ***
	중학교	2.89(0.735)	4.1	20.8	57.1	18.0	100.0(2,858)	
	고등학교	2.85(0.723)	4.3	21.6	58.6	15.6	100.0(3,452)	
지역 규모	대도시	2.99(0.763)	4.5	16.2	55.2	24.1	100.0(3,690)	65.373 ***
	중소도시	2.90(0.740)	4.3	19.9	57.2	18.7	100.0(4,410)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읍면지역	3.05(0.734)	2.8	16.1	54.2	26.9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6(0.747)	4.1	17.8	56.2	21.9	100.0(8,258)	24.661 **
	한부모가정	2.85(0.783)	5.8	21.7	54.0	18.4	100.0(601)	
	조손가정	3.12(0.793)	6.4	6.6	55.5	31.5	100.0(89)	
	기타	2.98(0.774)	4.0	18.9	52.5	24.7	100.0(97)	
학업 성적	상	3.07(0.739)	3.6	13.4	55.8	27.2	100.0(2,950)	228.795 ***
	중	2.97(0.731)	3.8	17.0	57.8	21.3	100.0(4,008)	
	하	2.77(0.771)	5.9	26.4	52.9	14.8	100.0(2,087)	
경제적 수준	상	3.05(0.742)	3.6	14.3	55.4	26.6	100.0(4,980)	269.285 ***
	중	2.87(0.724)	4.2	21.0	58.4	16.4	100.0(3,195)	
	하	2.69(0.798)	7.9	28.1	50.8	13.3	100.0(870)	

\*p<.05, \*\*p<.01, \*\*\*p<.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80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연도별 추이)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71.5%로 긍정적 응답비율이 부정적 응답비율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을 비교해 보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높을수록 거주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 지역이 대도시와 읍면지역에 비해 교통사고로부터 불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거주 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6년간 거주지역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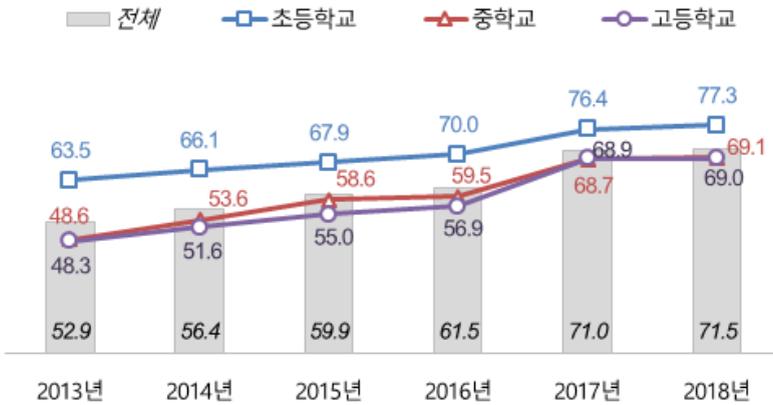
표 IV-107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2.82(0.748)	5.0	23.5	55.9	15.6	100.0(9,046)		
성별	남학생	2.91(0.753)	4.4	19.9	55.8	19.8	100.0(4,695)	171.921 ***
	여학생	2.72(0.729)	5.6	27.3	56.1	11.0	100.0(4,351)	
학교급	초등학교	2.95(0.774)	4.8	17.9	54.4	22.9	100.0(2,737)	192.324 ***
	중학교	2.78(0.734)	4.9	26.0	55.7	13.4	100.0(2,855)	
	고등학교	2.75(0.724)	5.3	25.7	57.4	11.6	100.0(3,454)	
지역 규모	대도시	2.85(0.756)	5.3	21.1	56.5	17.0	100.0(3,685)	36.905 ***
	중소도시	2.78(0.742)	5.1	25.3	55.6	13.9	100.0(4,409)	
	읍면지역	2.87(0.735)	3.5	23.7	55.0	17.8	100.0(9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82(0.748)	4.9	23.4	55.9	15.8	100.0(8,251)	8.402
	한부모가정	2.76(0.732)	5.5	24.8	57.5	12.2	100.0(601)	
	조손가정	2.80(0.814)	6.8	24.3	50.9	18.0	100.0(89)	
	기타	2.87(0.781)	5.3	21.7	53.9	19.1	100.0(97)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학업 성적	상	2.90(0.751)	4.3	20.7	55.6	19.5	100.0(2,947)	140.607 ***
	중	2.84(0.728)	4.6	22.0	58.3	15.1	100.0(4,008)	
	하	2.67(0.760)	6.9	30.2	52.0	11.0	100.0(2,084)	
경제적 수준	상	2.90(0.748)	4.4	20.2	56.2	19.2	100.0(4,975)	218.943 ***
	중	2.76(0.721)	5.2	25.1	58.0	11.7	100.0(3,194)	
	하	2.57(0.764)	7.9	36.1	47.0	8.9	100.0(870)	

\*p<.05, \*\*p<.01, \*\*\*p<.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81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연도별 추이)

거주지역의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87.8%로 나타났다. 평균 점수를 통해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거주지역의 동네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에 대해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 동네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로 보면 거주지역의 규모가 작아

질수록 동네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에 대해서 불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동네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에 대해서 불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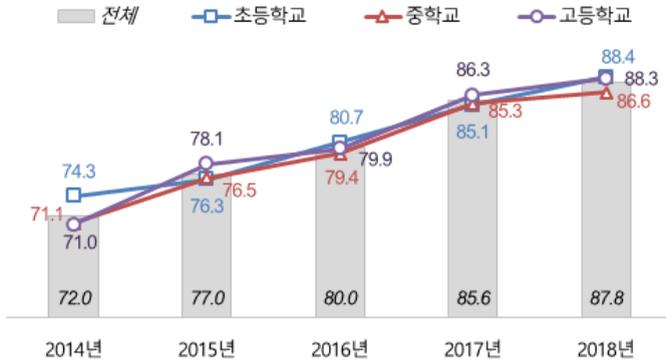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6년간 거주지역의 음식물 안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IV-108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지 않다	그렇 지 않 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3.06(0.639)	2.8	9.4	67.1	20.7	100.0(9,034)		
성별	남학생	3.11(0.661)	3.0	8.2	64.1	24.7	100.0(4,686)	103.631 ***
	여학생	3.01(0.611)	2.5	10.8	70.3	16.5	100.0(4,348)	
학교급	초등학교	3.17(0.703)	3.1	8.4	57.3	31.2	100.0(2,732)	286.516 ***
	중학교	3.02(0.629)	2.7	10.7	68.5	18.1	100.0(2,853)	
	고등학교	3.00(0.582)	2.5	9.2	73.6	14.7	100.0(3,448)	
지역 규모	대도시	3.09(0.651)	2.9	8.1	65.5	23.4	100.0(3,678)	52.711 ***
	중소도시	3.02(0.632)	2.9	10.5	68.6	18.0	100.0(4,403)	
	읍면지역	3.10(0.613)	1.5	9.8	65.7	23.0	100.0(9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6(0.635)	2.6	9.3	67.1	21.0	100.0(8,240)	29.070 ***
	한부모가정	2.98(0.655)	3.6	11.6	67.8	17.1	100.0(600)	
	조손가정	3.04(0.841)	8.9	6.2	56.8	28.1	100.0(88)	
	기타	2.99(0.614)	2.4	11.8	69.8	16.0	100.0(97)	
학업 성적	상	3.14(0.646)	2.3	8.0	63.3	26.3	100.0(2,939)	130.487 ***
	중	3.06(0.618)	2.4	9.3	68.5	19.8	100.0(4,004)	
	하	2.95(0.654)	4.2	11.7	69.6	14.6	100.0(2,082)	
경제적 수준	상	3.13(0.650)	2.5	8.0	63.5	26.0	100.0(4,973)	249.591 ***
	중	3.00(0.593)	2.6	9.7	72.7	15.1	100.0(3,183)	
	하	2.85(0.677)	5.0	16.4	67.1	11.5	100.0(870)	

\*p<.05, \*\*p<.01, \*\*\*p<.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82 거주지역의 안전수준\_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연도별 추이)

### 3) 보건서비스

#### (1) 보건 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 ① 아동, 청소년의 질병유형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의 지표로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을 조사하고 있다. 소아 비만 유병률 관련 국가통계를 살펴보면 2012년까지는 소아 청소년을 2세에서 18세로 설정하고, 2세-5세, 6세-11세, 12세-18세 등의 연령대에 따라 정상, 과체중, 비만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2013년에는 6세에서 18세로 조사대상 연령을 축소하고, 6세-11세, 12세-18세의 연령대에 대해 비만 유병률을 조사하였으며, 정상과 과체중은 통계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동일 연령대에 대하여 정상, 과체중, 비만 등의 비율을 모두 조사하는 방식으로 다시 전환하였다(김영지 외, 2017: 245).

2016년 통계자료를 기초로 살펴보면 6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은 13.3%이며, 2015년의 13.9%보다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3년을 기점으로 비만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소아청소년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도 비교해 보면 6세-11세의 비만율은 2015년 7.9%에서 2016년 8.2%로 증가하였다. 반면, 12세-18세의 비만율은 2015년 18.0%에서 2016년 16.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9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연도	연령	정상 <sup>1)</sup>	과체중 <sup>2)</sup>	비만 <sup>3)</sup>	전체(N)
		분율(표준오차)	분율(표준오차)	분율(표준오차)	
2011	전체(2-18세)	82.6(1.1)	7.7(0.8)	9.7(0.9)	1,716
	2-5세	87.8(1.8)	9.4(1.7)	2.8(0.9)	424
	6-11세	80.5(1.8)	11.1(1.5)	8.4(1.4)	632
	12-18세	82.0(1.6)	4.9(1.1)	13.1(1.5)	660
2012	전체(2-18세)	82.7(1.3)	7.8(0.8)	9.6(1.0)	1,530
	2-5세	87.5(2.3)	10.7(2.2)	1.9(1.0)	349
	6-11세	82.7(1.9)	10.3(1.6)	7.1(1.3)	557
	12-18세	80.8(1.9)	5.1(1.0)	14.1(1.7)	624
2013	전체(6-18세)	-	-	10.0(0.9)	1,291
	6-11세	-	-	6.1(1.0)	633
	12-18세	-	-	12.7(1.4)	658
2014	전체(6-18세)	80.9(1.3)	7.6(0.8)	11.5(1.1)	1015
	6-11세	83.5(1.7)	10.6(1.5)	5.9(1.1)	516
	12-18세	79.0(1.8)	5.5(1.0)	15.5(1.7)	499
2015	전체(6-18세)	78.8(1.5)	7.3(0.9)	13.9(1.2)	994
	6-11세	81.1(2.0)	11.0(1.7)	7.9(1.3)	459
	12-18세	77.2(1.9)	4.8(1.0)	18.0(1.8)	535
2016	전체(6-18세)	80.0(1.6)	6.7(0.9)	13.3(1.4)	1,149
	6-11세	83.5(1.9)	8.3(1.2)	8.2(1.4)	593
	12-18세	77.6(2.1)	5.6(1.2)	16.8(1.9)	556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pp.50, 24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p.270.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p.242.

\* 주: 1) 정상: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Kg/m<sup>2</sup>) 기준 85백분위수 미만

- 2) 과체중: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이면서 체질량지수 25미만
- 3) 비만: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

2016년을 기준으로 소아 청소년의 천식 유병률을 살펴보면 1세-11세의 천식 유병률은 2.3%였으며, 남자의 경우 2.2%, 여자의 경우 2.3%로 여자의 유병률이 높았다. 12세-18세의 경우 전체 천식 유병률은 5.9%로 1세-11세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5.5%, 여자의 경우 6.3%로 여자의 유병률이 높았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하위층과 중상위층에서 천식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의 변화를 보면 1세-11세의 천식 유병률은 2011년 8.3%에서 2016년에는 2.3%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2세-18세의 천식 유병률은 2011년 3.3%에서 2013년 5.0%로 증가하다가 2014년에는 3.3%로 감소한 이후 2015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우 1세-11세 천식 유병률은 2011년 8.9%에서 2016년 2.2%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12세-18세 천식 유병률은 2011년에 3.9%에서 2016년에 5.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청소년의 경우 1세-11세 천식 유병률은 2011년 7.6%에서 2016년 2.3%로 감소한 반면, 12세-18세 천식 유병률은 2011년의 경우 2.7%에서 2016년 6.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0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

연도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2011	천식 유병률	1-11세	8.9(1.5)	606	7.6(1.4)	564	8.3(1.0)	1,170
		12-18세	3.9(1.2)	350	2.7(0.9)	306	3.3(0.7)	656
	소득수준	하	6.9(1.9)	219	7.6(2.2)	213	7.2(1.5)	432
		중하	7.2(2.1)	245	5.6(1.9)	216	6.4(1.4)	461
		중상	5.2(1.7)	246	3.1(1.5)	213	4.2(1.2)	459
상	5.5(1.8)	239	4.1(1.4)	218	4.9(1.1)	457		
2012	천식 유병률	1-11세	6.4(1.2)	560	3.5(1.0)	441	5.0(0.8)	1,001
		12-18세	3.3(1.2)	331	3.7(1.3)	278	3.5(0.9)	609
	소득수준	하	7.2(2.1)	218	5.2(1.9)	172	6.2(1.4)	390
		중하	4.6(1.4)	220	3.0(1.4)	178	3.8(1.0)	398
		중상	3.5(1.4)	222	2.7(1.1)	185	3.1(0.9)	407
상	4.0(1.4)	226	3.1(1.7)	176	3.6(1.1)	402		
2013	천식 유병률	1-11세	7.8(1.3)	581	3.8(0.9)	526	5.9(0.9)	1,107
		12-18세	4.4(1.2)	331	5.8(1.7)	315	5.0(1.0)	646
	소득수준	하	6.5(1.9)	228	4.3(1.6)	209	5.4(1.3)	437
		중하	7.9(2.1)	224	5.5(1.5)	206	6.7(1.4)	430
		중상	5.1(1.5)	243	6.5(2.5)	211	5.8(1.5)	454
상	5.6(1.9)	210	2.3(1.1)	210	4.0(1.2)	420		
2014	천식 유병률 <sup>1)</sup>	1-11세	3.8(1.0)	511	2.4(1.0)	457	3.1(0.7)	968
		12-18세	3.5(1.3)	261	3.0(1.1)	230	3.3(0.8)	491
	소득수준 <sup>2)</sup>	하	1.9(0.9)	185	4.1(1.8)	168	2.9(1.0)	353
		중하	5.2(1.6)	196	5.0(2.4)	171	5.1(1.5)	367
		중상	3.5(1.9)	198	1.0(0.7)	173	2.3(1.0)	371
상	3.3(1.4)	187	0.3(0.3)	173	1.9(0.7)	360		
2015	천식 유병률 <sup>1)</sup>	1-11세	3.5(1.0)	417	3.1(0.9)	367	3.3(0.7)	804
		12-18세	6.8(1.6)	289	3.8(1.3)	240	5.4(1.0)	529
	소득수준 <sup>2)</sup>	하	4.3(1.7)	176	2.0(1.3)	150	3.2	326
		중하	2.3(1.1)	181	4.1(1.5)	160	3.2	341
		중상	9.3(2.4)	176	3.0(1.5)	157	6.3	333
상	4.5(1.9)	169	4.5(1.9)	157	4.5	326		
2016	천식 유병률	1-11세	2.2(0.7)	568	2.3(0.8)	547	2.3(0.5)	1,115
		12-18세	5.5(1.5)	282	6.3(1.7)	270	5.9(1.1)	552
	소득수준	하	5.5(2.2)	202	6.4(2.1)	200	6.0(1.5)	402
		중하	2.5(1.2)	212	4.0(2.1)	211	3.2(0.9)	423
		중상	3.8(1.5)	210	3.3(1.8)	206	3.6(1.2)	416
상	3.0(1.1)	221	2.1(1.2)	199	2.6(0.8)	420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p.28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 통계. p.317.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p.272.

- \* 주: 1) 천식유병률: 의사로부터 천식 진단을 받은 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 단위) 사분위로 분류  
\*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25~50%

2016년 통계 자료를 토대로 소아청소년의 각 질환별 유병률을 연령대별로 살펴 보면 1세-11세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13.7%)과 폐렴(16.5%)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12세-18세의 경우에도 아토피 피부염(15.7%)과 폐렴(6.5%)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통계 자료에 기초하여 각 질환별 유병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천성심장질환은 1세-11세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 감소한 후 2015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12세-18세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 이후부터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는 1세-11세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와 증가 추세를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12세-18세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증가하다가 2014년에는 감소하고 2015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의력결핍장애의 경우 1세-11세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12-18세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로감염의 경우 1세-11세는 2014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2세-18세의 경우에는 2013년 이후 2015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렴은 1세-11세의 경우와 12세-18세의 경우 모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감소하였으며, 2015년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1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

연도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2011	선천성심장질환	1-11세	0.6(0.3)	606	1.0(0.5)	564	0.8(0.3)	1,170	
		12-18세	0.0(-)	351	0.7(0.4)	306	0.3(0.2)	657	
	아토피피부염	1-11세	12.0(1.6)	606	13.4(1.8)	564	12.7(1.2)	1,170	
		12-18세	7.0(1.4)	351	13.1(2.0)	306	9.8(1.3)	657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0.9(0.5)	606	0.4(0.3)	564	0.7(0.3)	1,170	
		12-18세	0.7(0.4)	351	0.4(0.2)	306	0.5(0.2)	657	
	요로감염	1-11세	3.3(0.9)	606	2.4(0.7)	564	2.9(0.6)	1,170	
		12-18세	1.6(0.8)	351	0.4(0.3)	306	1.0(0.5)	657	
	폐렴	1-11세	12.1(1.7)	606	11.8(2.0)	564	12.0(1.4)	1,170	
		12-18세	4.2(1.2)	351	4.6(1.6)	306	4.4(1.0)	657	
	2012	선천성심장질환	1-11세	1.3(0.8)	560	1.0(0.6)	441	1.1(0.5)	1001
			12-18세	0.0(-)	332	1.3(0.8)	278	0.6(0.4)	610
아토피피부염		1-11세	15.6(2.2)	560	14.1(2.0)	441	14.9(1.6)	1001	
		12-18세	8.8(1.9)	332	13.3(2.5)	278	10.9(1.5)	610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0.6(0.4)	560	0.3(0.2)	441	0.5(0.2)	1001	
		12-18세	1.4(0.7)	332	0.6(0.4)	278	1.0(0.4)	610	
요로감염		1-11세	2.4(0.8)	560	1.6(0.6)	441	2.0(0.5)	1001	
		12-18세	1.1(0.8)	332	0.7(0.5)	278	0.9(0.5)	610	
폐렴		1-11세	16.2(2.2)	560	15.2(2.4)	441	15.7(1.8)	1001	
		12-18세	7.9(2.0)	332	6.8(1.8)	278	7.4(1.4)	610	
2013		선천성심장질환	1-11세	1.4(0.6)	581	2.1(0.8)	526	1.7(0.5)	1,107
			12-18세	0.7(0.5)	330	1.9(0.8)	315	1.3(0.5)	645
	아토피피부염	1-11세	19.1(1.8)	581	18.8(2.1)	526	19.0(1.5)	1,107	
		12-18세	10.0(1.9)	331	19.2(2.5)	315	14.4(1.5)	646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1.2(0.5)	581	0.0(-)	526	0.6(0.3)	1,107	
		12-18세	2.7(1.0)	330	2.2(0.9)	315	2.5(0.7)	645	
	요로감염	1-11세	5.3(1.1)	581	4.9(1.1)	526	5.1(0.8)	1,107	
		12-18세	1.5(0.5)	331	1.5(0.7)	315	1.5(0.4)	646	
	폐렴	1-11세	17.7(2.1)	581	17.7(1.8)	526	17.7(1.6)	1,107	
		12-18세	7.9(1.8)	330	6.9(1.8)	315	7.4(1.3)	645	
	2014	선천성심장질환 <sup>1)</sup>	1-11세	0.2(0.2)	512	0.9(0.5)	457	0.6(0.2)	969
			12-18세	0.4(0.4)	261	1.8(1.1)	230	1.1(0.6)	491
아토피피부염 <sup>2)</sup>		1-11세	15.7(2.0)	511	11.1(1.7)	457	13.5(1.3)	968	

연도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2015	주의력결핍장애 <sup>3)</sup>	12-18세	10.8(2.1)	260	15.6(2.7)	230	13.1(1.7)	490
		1-11세	1.9(0.6)	512	0.0(-)	457	1.0(0.3)	969
		12-18세	2.2(1.0)	261	1.4(1.0)	230	1.8(0.7)	491
	요로감염 <sup>4)</sup>	1-11세	2.8(0.7)	511	2.5(0.8)	456	2.7(5.0)	967
		12-18세	1.5(0.8)	261	1.1(0.7)	230	1.3(0.6)	491
	폐렴 <sup>5)</sup>	1-11세	14.6(1.7)	512	12.3(1.6)	457	13.5(1.2)	969
		12-18세	4.6(1.2)	261	7.5(1.9)	230	6.0(1.1)	491
	선천성심장질환	1-11세	1.0(0.5)	417	1.4(0.6)	387	1.2(0.4)	804
		12-18세	0.8(0.5)	289	0.5(0.4)	240	0.7(0.3)	529
	아토피피부염	1-11세	18.7(2.0)	416	10.6(1.6)	387	14.9(1.3)	804
		12-18세	14.3(2.2)	289	16.8(2.5)	240	15.5(1.7)	529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1.4(0.6)	417	0.3(0.3)	387	0.9(0.4)	804
12-18세		3.1(1.1)	289	0.4(0.4)	240	1.9(0.6)	529	
요로감염	1-11세	3.3(0.8)	417	3.9(1.1)	387	3.6(0.7)	804	
	12-18세	1.6(1.0)	289	0.9(0.5)	240	1.3(0.6)	529	
폐렴	1-11세	15.2(2.1)	417	12.5(1.9)	387	13.9(1.5)	804	
	12-18세	6.7(1.7)	289	6.3(2.0)	240	6.5(1.3)	529	
2016	선천성심장질환	1-11세	1.1(0.4)	547	1.7(0.6)	547	1.4(0.4)	1,115
		12-18세	0.0(-)	270	0.7(0.4)	270	0.3(0.2)	552
	아토피피부염	1-11세	14.4(1.6)	568	12.9(1.7)	547	13.7(1.2)	1,115
		12-18세	16.2(2.5)	282	15.2(2.5)	270	15.7(1.7)	552
	주의력결핍장애	1-11세	0.7(0.4)	547	0.6(0.4)	547	0.7(0.3)	1,115
		12-18세	0.8(0.5)	270	0.0(-)	270	0.4(0.2)	552
	요로감염	1-11세	5.3(1.1)	568	2.5(0.8)	547	3.9(0.7)	1,115
		12-18세	1.6(0.7)	282	1.7(0.8)	270	1.7(0.5)	552
	폐렴	1-11세	15.5(2.1)	568	17.6(1.8)	547	16.5(1.3)	1,115
		12-18세	6.5(1.6)	282	6.4(1.5)	270	6.5(1.1)	552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p.28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 통계. p.32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p.279.

- \* 주: 1) 선천성심장질환 유병률: 의사로부터 선천성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분을  
 2)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의사로부터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분을  
 3) 주의력결핍장애 유병률: 의사로부터 주의력결핍장애 진단을 받은 분을  
 4) 요로감염 유병률: 의사로부터 요로감염 진단을 받은 분을  
 5) 폐렴 유병률: 의사로부터 폐렴 진단을 받은 분을  
 6) 분율 0.1%미만으로 표준오차 비제시 :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25-50%, \*\*변동계수 50% 이상

## ② 보건교사 배치 현황

2017년 현재 전체 학교 수는 11,786개교이고 총 7,604명의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보건교사 배치율은 64.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82.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69.1%), 고등학교(67.9%), 중학교(52.3%)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2 2017년도 보건교사 배치현황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체 학교 수	6,040	3,213	2,360	173	11,786
보건교사배치	4,176(69.1)	1,682(52.3)	1,603(67.9)	143(82.7)	7,604(64.5)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c). 2017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최근 6년간 보건교사 배치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까지는 그렇게 큰 변화가 보이지 않다가 2015년에 소폭 감소하였으며, 2016년 이후부터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3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 추세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보건교사 배치율	65.4	65.5	64.9	65.4	63.9	64.3	64.5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a). 2016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c). 2017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 ③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 관련 시설 비율

지역사회의 보건소를 포함한 지역의 건강관련 시설의 수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시설 수는 68,293개소이며, 이 중 의원이 전체 시설의 4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치과의원 24.9%, 한의원 20.3% 등의 순으로 건강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전년 대비 변화 추이를 보면 건강 관련 시설의 경우

보건시설 중 보건진료소, 특수병원 중 결핵과 한센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에서 시설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4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단위 : 개(%))

연도	보건시설			병·의원				특수병원		치과병·의원·한방병·의원				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종합병원	요양병원	일반병원	의원	결핵	한센	정신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2010	253 (0.4)	1,294 (2.2)	1,912 (3.2)	312 (0.5)	849 (1.4)	1,154 (1.9)	27,334 (46.0)	3 (0.0)	1 (0.0)	143 (0.2)	188 (0.3)	14,074 (23.7)	159 (0.3)	11,804 (19.8)	59,480 (100.0)
2011	253 (0.4)	1,305 (2.1)	1,908 (3.1)	319 (0.5)	975 (1.6)	1,245 (2.0)	27,909 (45.2)	3 (0.0)	1 (0.0)	144 (0.2)	199 (0.3)	15,002 (24.3)	178 (0.3)	12,305 (19.9)	61,746 (100.0)
2012	254 (0.4)	1,315 (2.1)	1,895 (3.0)	323 (0.5)	1,087 (1.7)	1,327 (2.1)	28,762 (45.8)	3 (0.0)	1 (0.0)	156 (0.2)	202 (0.3)	14,800 (23.6)	199 (0.3)	12,440 (19.8)	62,764 (100.0)
2013	253 (0.3)	1,323 (2.0)	1,900 (3.0)	324 (0.5)	1,228 (1.9)	1,331 (2.1)	28,816 (44.9)	3 (0.0)	1 (0.0)	160 (0.2)	200 (0.3)	15,579 (24.3)	203 (0.3)	12,816 (20.0)	64,137 (100.0)
2014	254 (0.3)	1,339 (2.0)	1,904 (2.8)	321 (0.4)	1,304 (1.9)	1,436 (2.1)	30,689 (45.9)	3 (0.0)	2 (0.0)	170 (0.3)	202 (0.3)	15,933 (23.8)	234 (0.3)	13,135 (19.6)	66,926 (100.0)
2015	243 (0.4)	1,313 (2.0)	1,906 (2.9)	337 (0.5)	1,335 (2.0)	1,492 (2.2)	29,363 (44.0)	3 (0.0)	1 (0.0)	37 (0.1)	213 (0.3)	16,584 (24.9)	260 (0.4)	13,605 (20.4)	66,692 (100.0)
2016	252 (0.4)	1,336 (2.0)	1,904 (2.8)	341 (0.5)	1,386 (2.0)	1,510 (2.2)	30,157 (44.2)	3 (0.0)	1 (0.0)	42 (0.1)	223 (0.3)	16,996 (24.9)	282 (0.4)	13,860 (20.3)	68,293 (100.0)

\* 출처: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pp.209-211.

\* 원자료: 의료기관정책과(2010-201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5년)

\* 주: 2015년 이전자료는 보건소에서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한 보고통계, 2015년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임(시도보고통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는 기준 등의 차이로 통계 현황 다를 수 있음)

## (2)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 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용률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료서비스 현황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하였던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2012년까지 국민건강통계에 포함되어 있다가, 2013년에는 제외되었고, 2014년부터는 다시 국민건강통계에 포함되었다(김영지 외, 2017: 251). 2016년 기준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을 살펴보면 45.7%가 예방접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0년 이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의 경우 45.2%에서 2012년 49.7%로 증가하다가 2014년부터는 매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별로는 나이가 어릴수록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득수준별로는 중하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하 45.4%, 상 43.9%, 중상 43.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115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71	360	2,115	509	516	532	524
	분율 (표준오차)	73.9 (2.2)	57.4 (2.6)	31.7 (3.1)	16.3 (2.5)	45.2 (1.9)	39.3 (3.3)	46.9 (3.2)	49.7 (3.5)	46.1 (3.4)
2011	N	537	631	307	349	1,824	431	461	459	456
	분율 (표준오차)	74.0 (2.7)	56.6 (2.9)	36.0 (3.8)	24.2 (2.7)	47.3 (2.0)	42.4 (3.9)	49.6 (3.6)	49.6 (3.8)	50.1 (3.9)
2012	N	446	550	315	294	1,605	289	298	403	402
	분율 (표준오차)	78.6 (2.9)	59.7 (2.7)	38.3 (4.0)	23.5 (3.0)	49.7 (1.9)	48.0 (3.5)	50.5 (3.8)	51.1 (3.6)	48.4 (3.7)
2013	N	-	-	-	-	-	-	-	-	-
	분율 (표준오차)	-	-	-	-	-	-	-	-	-
2014	N	457	501	221	262	1,441	347	364	366	356
	분율 (표준오차)	79.2 (2.0)	55.2 (3.2)	31.4 (3.7)	20.1 (2.7)	47.8 (2.0)	51.4 (4.1)	49.8 (3.4)	45.2 (3.4)	44.9 (3.3)
2015	N	346	452	239	288	1,325	321	341	332	324
	분율 (표준오차)	76.7 (2.6)	56.2 (3.2)	42.1 (3.5)	19.8 (2.9)	49.3 (2.1)	53.1 (4.1)	48.0 (4.2)	47.4 (3.9)	49.3 (3.6)
2016	N	519	590	253	298	1,660	400	420	414	420
	분율 (표준오차)	73.3 (2.6)	55.6 (3.0)	33.6 (3.8)	17.1 (2.5)	45.7 (1.9)	45.4 (3.2)	50.0 (3.8)	43.6 (3.3)	43.9 (3.1)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p.12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 통계. p.139.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p.121.

\* 주: 1)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예방접종률: 최근 1년 동안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본인이 병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을 의미하는 아동·청소년의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은 2016년을 기준으로 볼 때 4.0%였으며, 이는 2015년보다 0.1%p 증가한 수치이다.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12세-18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별로는 '중상'과 '중하'보다는 '상'과 '하'의 경우에 미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의 자료를 통해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은 2012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6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71	361	2,116	510	516	532	524
	분율 (표준오차)	2.7 (0.6)	5.8 (1.0)	10.1 (1.8)	11.1 (2.1)	7.4 (0.8)	9.1 (1.9)	7.0 (1.4)	5.7 (1.1)	7.2 (1.7)
2011	N	538	632	307	349	1,826	432	461	459	457
	분율 (표준오차)	6.1 (1.5)	4.8 (1.2)	7.3 (1.7)	10.6 (2.0)	7.2 (0.9)	9.4 (2.4)	6.6 (1.6)	4.8 (1.3)	7.9 (1.9)
2012	N	447	554	315	294	1,610	390	398	407	402
	분율 (표준오차)	5.2 (2.0)*	4.8 (1.1)	8.7 (2.0)	12.5 (2.0)	7.8 (0.9)	7.6 (1.6)	9.9 (2.3)	8.1 (1.8)	5.6 (1.6)*
2013	N	485	622	292	353	1,752	437	429	454	420
	분율 (표준오차)	0.8 (0.4)	3.4 (0.9)	3.6 (1.1)	11.2 (1.9)	5.0 (0.7)	7.7 (1.7)	4.7 (1.2)*	4.9 (1.4)	2.3 (0.7)
2014	N	462	507	222	267	1,458	354	367	369	360
	분율 (표준오차)	1.0 (0.6)	2.8 (0.9)	7.9 (1.8)	8.3 (1.9)	4.7 (0.7)	5.2 (1.7)	4.7 (1.3)	5.9 (1.5)	2.4 (0.9)
2015	N	348	456	240	289	1,333	326	341	333	326
	분율 (표준오차)	1.7 (0.8)	3.4 (1.0)	4.3 (1.8)	6.5 (1.6)	3.9 (0.7)	5.0 (1.5)	4.0 (1.2)	3.2 (1.2)	3.7 (1.2)
2016	N	522	593	254	298	1,667	402	423	416	420
	분율 (표준오차)	1.5 (0.6)	2.8 (0.8)	6.4 (1.7)	6.3 (1.6)	4.0 (0.6)	5.4 (1.5)	3.9 (1.0)	2.6 (0.9)	4.2 (1.4)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p.32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p.14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p.123.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병의원(치과제외)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분율.

-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 25-50%, \*\*: 50% 이상.

최근 1년간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진료를 받지 못한 분율을 의미하는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은 2016년의 경우 7.7%였으며, 2015년 대비 3.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였다. 연령대별로는 15세-18세(9.7%)와 1세-5세(8.3%)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별로는 하(11.0%)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25.3%에서 2016년 7.7%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7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단위 : %)

구분		연령					소득수준			
		1-5	6-11	12-14	15-18	전체	하	중하	중상	상
2010	N	604	780	369	359	2,112	510	514	531	523
	분율 (표준오차)	14.5 (1.7)	21.0 (2.4)	26.2 (2.8)	38.6 (3.5)	25.3 (1.5)	33.2 (2.9)	25.3 (3.2)	20.6 (2.2)	19.4 (2.2)
2011	N	538	632	308	347	1,825	433	459	459	457
	분율 (표준오차)	15.2 (2.0)	12.4 (1.8)	16.1 (2.4)	31.9 (2.6)	19.3 (1.1)	22.7 (2.1)	19.1 (2.6)	17.5 (2.3)	16.2 (2.3)
2012	N	447	554	314	294	1,609	389	399	406	402
	분율 (표준오차)	10.6 (1.8)	12.6 (1.8)	18.2 (2.6)	30.4 (2.9)	18.2 (1.3)	21.9 (2.5)	18.2 (2.4)	13.7 (2.7)	18.4 (3.2)
2013	N	485	622	289	349	1,745	436	430	451	416
	분율 (표준오차)	8.6 (1.8)	8.3 (1.5)	13.9 (2.2)	23.1 (2.8)	13.4 (1.1)	19.4 (2.6)	13.7 (2.0)	10.9 (1.8)	9.2 (1.8)
2014	N	462	507	224	265	1,458	353	367	371	359
	분율 (표준오차)	7.3 (1.4)	9.2 (1.8)	8.5 (2.1)	21.3 (2.9)	11.8 (1.1)	15.2 (2.3)	12.3 (1.9)	5.7 (1.5)	13.2 (2.5)
2015	N	347	456	240	289	1,332	325	341	333	326
	분율 (표준오차)	6.1 (1.5)	11.0 (1.9)	6.2 (1.7)	18.3 (2.4)	10.9 (1.0)	15.3 (2.6)	12.0 (1.9)	6.3 (1.4)	10.0 (2.0)
2016	N	522	592	254	298	1666	401	424	415	420
	분율 (표준오차)	8.3 (1.3)	5.8 (1.2)	6.9 (1.9)	9.7 (1.9)	7.7 (0.8)	11.0 (2.1)	6.8 (1.6)	6.9 (1.5)	5.8 (1.2)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p.12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p.14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p.123.

- \* 주: 1) 소아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치과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비율  
 2) 소득수준: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3) 변동계수: \*: 25-50%, \*\*: 50% 이상.

### (3)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

#### ① 흡연율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김영지 외, 2017: 255). 2017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전체의 평균 흡연율은 6.4%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2016년 흡연율 6.3%보다 0.1%p 증가한 것이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흡연율은 3.0%, 고등학생의 흡연율은 9.2%로 나타났다. 각 학년별로 흡연율을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흡연율 변화의 연도별 변화추이를 보면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은 2009년에는 12.8%에서 2016년 6.3%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전년 대비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8 흡연율 추이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9	12.8	8.3	17.5	4.7	8.7	11.3	16.0	17.9	18.6
2010	12.1	8.0	16.2	4.9	8.7	10.4	14.8	15.6	18.1
2011	12.1	8.1	16.1	4.4	8.7	10.9	15.5	16.1	16.9
2012	11.4	7.2	15.4	3.6	6.9	10.9	14.0	15.9	16.3
2013	9.7	5.5	13.8	2.3	5.5	8.6	12.1	14.3	15.0
2014	9.2	4.7	13.5	1.7	4.1	7.9	11.3	13.5	15.7
2015	7.8	3.3	11.7	0.9	3.2	5.3	9.1	11.9	14.0
2016	6.3	2.5	9.5	0.8	2.3	4.2	7.1	9.4	12.0
2017	6.4	3.0	9.2	0.7	3.2	4.9	7.0	9.7	10.9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36-37.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37.

\* 주: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분율

## ② 음주율

음주율은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김영지 외, 2017: 256). 2017년을 기준으로 중·고등학생 전체의 평균 음주율은 16.1%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6년에 비해 1.1%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중학생의 음주율은 7.6%, 고등학생의 음주율은 23.0%로 고등학생의 음주율이 중학생의 음주율보다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음주율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의 중·고등학생의 음주율은 2009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6년과 비교해서는 1.1%p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IV-119 음주율 추이

(단위: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9	21.1	13.3	29.1	9.5	13.4	16.8	24.6	31.1	31.8
2010	21.1	13.3	28.9	9.6	12.8	17.3	24.4	30.2	32.1
2011	20.6	12.0	29.0	8.3	11.8	15.6	24.3	30.6	32.3
2012	19.4	10.3	28.2	6.6	9.8	14.3	22.4	30.0	32.2
2013	16.3	8.3	23.8	5.4	7.8	11.7	17.6	26.5	27.3
2014	16.4	8.3	24.6	4.9	7.5	12.2	18.2	25.6	29.8
2015	16.7	7.4	24.9	4.6	7.1	10.0	17.6	27.5	29.5
2016	15.0	6.5	21.9	3.7	5.9	9.6	16.6	22.4	26.9
2017	16.1	7.6	23.0	4.2	7.7	11.0	16.5	25.1	26.9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92-93.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103.

\* 주: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③ 기타 약물 사용률

평생 약물 경험률은 11차 온라인 조사통계의 조사항목에서 제외되었기에 2015년 자료 수집이 불가능한 지표이다(김영지 외, 2017: 257). 따라서 2015년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통계수치를 중심으로 평생 약물 경험률을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전체 학생의 평생 약물 경험률은 0.6%였으며, 2016년 대비 0.1%p 증가한 수치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평생 약물 경험률이 0.8%로 여학생 0.4%보다 높게 나타났다. 평생 약물 경험률의 전체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에 증가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V-120 평생 약물 경험률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남학생	0.9	0.8	0.6	0.5	0.6	-	0.5	0.8
여학생	0.5	0.5	0.6	0.4	0.4	-	0.3	0.4
전 체	0.7	0.7	0.6	0.5	0.5	-	0.5	0.6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318-319.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359.

\* 주: 평생 동안 기분의 변화나 환각 등의 경험, 과도한 살 빼기 등을 목적으로 부탄가스, 본드를 비롯하여, 각성제, 히로뵐, 암페타민, 마약, 많은 양의 기침·가래 약, 신경안정제 등을 먹거나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④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은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과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은 최근 1년간 학교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김영지 외, 2017: 257). 2017년을 기준으로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고등학생 전체의 평균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은 70.7%로 2015년 대비

5.4% 포인트 증가하였다.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중학생(77.2%)이 고등학생(65.4%)보다 높았다. 학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의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이 78.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1, 중3, 고2, 고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3의 경우에는 58.8%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표 IV-121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56.2	64.8	47.6	67.7	64.4	62.3	56.5	51.0	35.2
2011	54.1	62.6	45.7	64.0	63.2	60.6	54.0	48.4	34.3
2012	61.4	68.3	54.8	67.5	68.9	68.5	59.8	59.2	45.3
2013	61.9	68.7	55.4	67.4	70.0	68.8	60.1	59.2	47.1
2014	57.5	63.5	51.9	63.3	64.0	63.3	55.5	55.1	45.2
2015	59.6	65.7	54.2	64.0	67.5	65.5	57.6	59.8	45.5
2016	65.3	71.4	60.2	72.5	71.4	70.5	64.6	64.5	51.5
2017	70.7	77.2	65.4	77.8	78.0	75.7	67.5	70.0	58.8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72.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75.

\* 주: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최근 1년간 학교에서 술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김영지 외, 2017: 258). 2017년 기준으로 중·고등학생 전체의 평균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41.2%였으며, 2015년 대비 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의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49.3%)이 고등학생(34.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의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이 50.5%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부터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2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36.3	46.6	26.1	53.5	45.8	40.7	33.2	28.5	16.5
2011	35.2	46.0	24.5	50.2	47.3	40.7	30.7	25.7	17.0
2012	34.3	44.3	24.6	47.1	44.6	41.6	29.9	25.9	18.1
2013	38.0	49.2	27.2	51.0	51.3	45.5	33.4	28.9	19.4
2014	33.1	42.0	24.8	45.5	41.5	39.5	30.6	25.3	18.8
2015	34.6	42.8	27.3	45.5	44.4	39.4	32.9	29.7	19.7
2016	38.8	46.8	32.2	49.3	47.4	44.1	36.5	35.3	24.7
2017	41.2	49.3	34.5	50.5	50.1	47.2	37.8	37.7	28.3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124.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135.

\* 주: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술(알코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 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 (1) 건강에 대한 인식

###### ① 주관적 건강평가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아동·청소년들의 주관적 평가를 조사한 결과, ‘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는 긍정적 응답률은 87.1%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고, 그 이후 학년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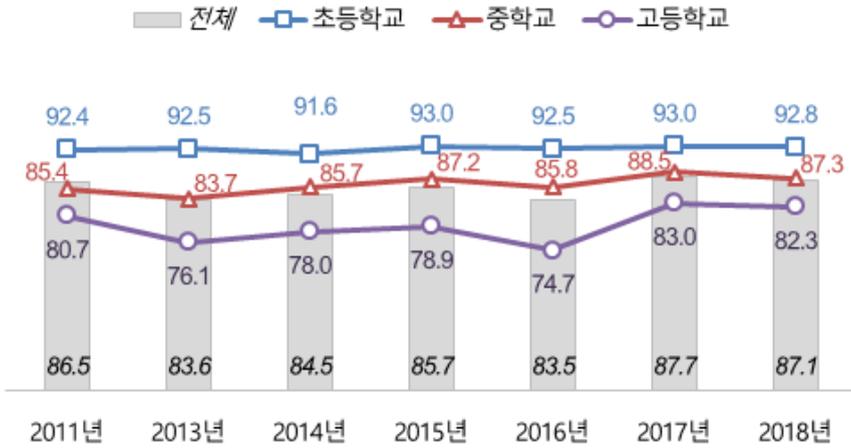
표 IV-123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건강이 매우 좋 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 강하다	전체(n)	$\chi^2$	
전체	3.17(0.666)	1.0	11.9	55.8	31.3	100.0(9,058)		
성별	남학생	3.21(0.689)	1.4	11.3	52.1	35.3	100.0(4,703)	87.130***
	여학생	3.13(0.637)	0.7	12.6	59.8	27.0	100.0(4,355)	
학교급	초등학교	3.37(0.632)	0.5	6.7	47.9	44.9	100.0(2,745)	435.254 ***
	중학교	3.16(0.653)	1.0	11.7	57.9	29.4	100.0(2,858)	
	고등학교	3.03(0.663)	1.5	16.2	60.3	22.0	100.0(3,455)	
지역 규모	대도시	3.21(0.665)	0.9	11.1	53.7	34.3	100.0(3,690)	32.694 ***
	중소도시	3.14(0.662)	1.2	12.5	57.8	28.6	100.0(4,415)	
	읍면지역	3.18(0.675)	1.1	12.2	54.6	32.1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8(0.660)	1.0	11.4	56.0	31.7	100.0(8,263)	34.860 ***
	한부모가정	3.03(0.704)	1.8	17.8	55.7	24.7	100.0(601)	
	조손가정	3.19(0.729)	1.5	14.0	48.4	36.0	100.0(89)	
	기타	3.16(0.729)	2.4	12.5	52.2	32.9	100.0(97)	
학업 성적	상	3.29(0.651)	0.6	9.1	51.0	39.2	100.0(2,950)	236.780 ***
	중	3.17(0.642)	0.8	11.1	58.2	30.0	100.0(4,011)	
	하	3.01(0.696)	2.1	17.4	58.0	22.5	100.0(2,089)	
경제적 수준	상	3.28(0.646)	0.8	8.3	52.6	38.3	100.0(4,985)	461.345 ***
	중	3.09(0.642)	1.1	13.3	61.5	24.1	100.0(3,195)	
	하	2.86(0.713)	1.9	27.6	52.9	17.6	100.0(870)	

\*p<.05, \*\*p<.01, \*\*\*p<.001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이후 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16년에 다소 하락하였지만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8년의 경우 전년도와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 '건강한 편이다'와 '매우 건강하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83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연도별 추이)

## (2) 신체적 건강

### ① 운동 실천율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의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건강 관리를 위해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23.5%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달에 1~2회 정도는 비슷한 수준인 22.4%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1회 이상은 절반을 약간 넘는 54.1% 정도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분석을 해보면 성별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일주일에 1회 이상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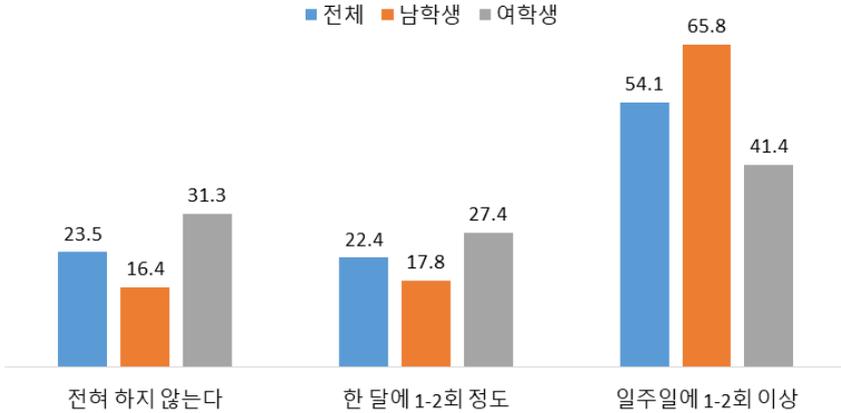
표 IV-124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한 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23.5	22.4	23.5	30.6	100.0(9,053)		
성별	남학생	16.4	17.8	26.4	39.4	100.0(4,701)	590.261***
	여학생	31.3	27.4	20.4	21.0	100.0(4,352)	
학교급	초등학교	8.7	15.5	27.1	48.6	100.0(2,740)	1009.641***
	중학교	24.0	25.1	24.9	26.0	100.0(2,858)	
	고등학교	34.9	25.6	19.5	20.0	100.0(3,455)	
지역 규모	대도시	23.2	22.1	23.9	30.8	100.0(3,688)	3.017
	중소도시	23.5	22.8	23.5	30.2	100.0(4,411)	
	읍면지역	25.0	21.8	22.1	31.1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3.2	22.6	23.9	30.3	100.0(8,259)	27.677**
	한부모가정	30.0	20.4	17.9	31.7	100.0(601)	
	조손가정	19.1	19.2	20.6	41.1	100.0(88)	
	기타	17.3	21.5	27.1	34.0	100.0(97)	
학업 성적	상	20.0	19.3	25.4	35.3	100.0(2,949)	142.367***
	중	22.3	24.1	24.0	29.6	100.0(4,010)	
	하	30.9	23.6	19.8	25.7	100.0(2,086)	
경제적 수준	상	18.1	20.6	25.7	35.6	100.0(4,983)	290.708***
	중	28.9	25.5	20.7	24.9	100.0(3,194)	
	하	35.0	21.3	21.3	22.3	100.0(869)	

\*p<.05, \*\*p<.01, \*\*\*p<.001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남학생은 16.4%인데 비해, 여학생은 31.3%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일주일에 1-2회 이상 운동하는 비율도 남학생은 65.8%이고, 여학생은 41.4%로 성별에 따라 운동 실천율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 단위는 비율(%)

그림 IV-84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실천율(성별)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실천율은 2014년에 80.7%로 가장 높았다가 이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8년의 경우 2017년에 비해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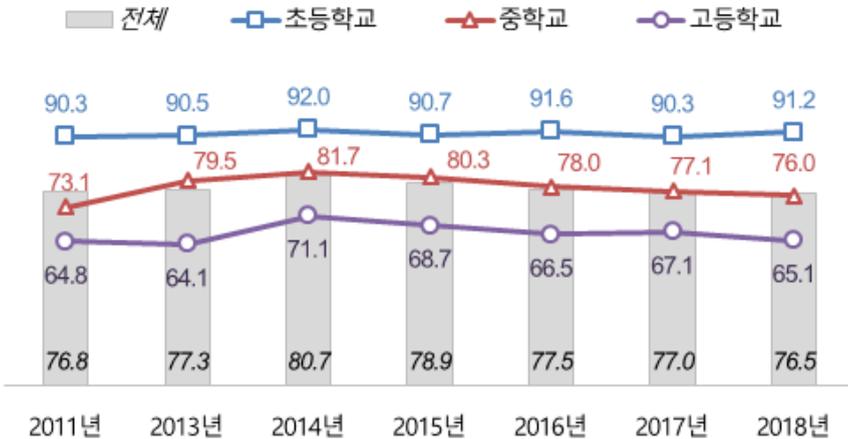


그림 IV-85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연도별 추이)

② 아침식사 결식률과 결식 이유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이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아침을 먹는다는 긍정적인 응답은(보통 먹는 편이다, 거의 매일 먹는 편이다) 70.0%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5 아침식사 여부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거의 먹 지 않는 편이다	보통 먹 지 않는 편이다	보통 먹 는 편이 다	거의 매 일 먹는 편이다	전체(n)	$\chi^2$	
전체	3.01(1.186)	19.9	10.2	18.8	51.2	100.0(9,007)		
성별	남학생	3.07(1.164)	18.2	10.1	18.7	53.0	100.0(4,674)	19.822***
	여학생	2.96(1.208)	21.6	10.3	18.9	49.2	100.0(4,334)	
학교급	초등학교	3.26(1.048)	11.9	9.7	19.1	59.3	100.0(2,711)	227.293** *
	중학교	3.01(1.196)	20.1	10.8	17.3	51.9	100.0(2,849)	
	고등학교	2.82(1.245)	26.0	10.0	19.8	44.2	100.0(3,447)	
지역 규모	대도시	3.03(1.177)	19.1	10.6	18.8	51.5	100.0(3,668)	5.676
	중소도시	3.01(1.195)	20.4	9.6	18.6	51.3	100.0(4,392)	
	읍면지역	2.98(1.187)	20.1	11.0	19.6	49.3	100.0(94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5(1.174)	19.0	9.9	18.7	52.4	100.0(8,223)	88.017***
	한부모가정	2.60(1.265)	31.6	12.8	19.3	36.2	100.0(595)	
	조손가정	2.96(1.287)	24.7	9.9	10.2	55.1	100.0(87)	
	기타	2.89(1.153)	19.9	12.1	27.0	41.1	100.0(95)	
학업 성적	상	3.28(1.075)	13.2	8.0	16.4	62.4	100.0(2,939)	340.758** *
	중	2.99(1.172)	19.4	11.0	20.8	48.8	100.0(3,982)	
	하	2.68(1.273)	30.1	11.7	18.2	40.0	100.0(2,079)	
경제적 수준	상	3.15(1.127)	15.8	9.8	18.3	56.1	100.0(4,954)	173.531** *
	중	2.89(1.220)	23.4	10.2	20.2	46.3	100.0(3,178)	
	하	2.69(1.281)	30.1	12.5	16.3	41.1	100.0(868)	

\*p<.05, \*\*p<.01, \*\*\*p<.001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침식사를 먹는 응답 비율은 지난 7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3.1%p 감소하였고, 중학생의 감소 폭이 5.7%p로 다소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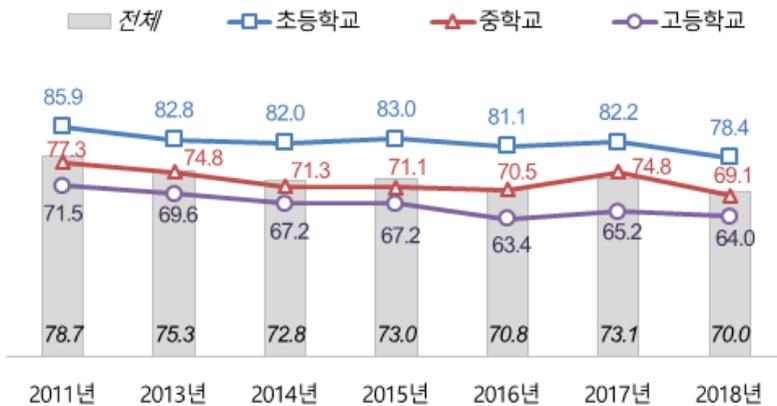


그림 IV-86 아침식사 여부(연도별 추이)

아침식사를 ‘거의 먹지 않는 편이다’와 ‘보통 먹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sup>34)</sup>를 선택하게 한 결과, ‘입맛이 없어서’가 32.5%,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는 27.7%, ‘일찍 등교해야 해서’는 19.9%로 이 세 가지 이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배경변인별로 두드러진 특징을 살펴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는 입맛이 없어서가 주된 이유인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가 가장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상’과 ‘중’인 청소년들은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가 주된 이유인 반면 학업성적이 ‘하’인 청소년들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위층의 경우에는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가 주된 이유인 반면 중위층과 하위층의 경우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가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34) 그동안 결식 사유 항목으로 포함되었던 ‘가정형편이 어려워져서’와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응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 2017년 조사에서부터는 포함하지 않음.

표 IV-126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가족 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기타	전체(n)	$\chi^2$
전체	27.7	19.9	3.4	32.5	8.0	8.6	100.0(2,609)	
성별	남학생	28.3	16.9	3.2	35.5	7.1	100.0(1,269)	21.421***
	여학생	27.1	22.7	3.6	29.6	8.8	100.0(1,340)	
학교급	초등학교	22.1	12.6	4.3	43.8	8.3	100.0(563)	88.710***
	중학교	29.3	16.3	3.6	32.3	8.6	100.0(854)	
	고등학교	29.2	25.9	2.9	27.2	7.3	100.0(1,192)	
지역 규모	대도시	29.3	19.7	3.3	30.2	7.9	100.0(1,057)	10.677
	중소도시	27.1	20.3	3.4	32.9	8.3	100.0(1,264)	
	읍면지역	24.6	18.7	3.8	38.6	6.4	100.0(28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6	19.9	3.1	32.7	7.7	100.0(2,295)	23.717
	한부모가정	28.9	20.3	5.7	27.4	11.4	100.0(252)	
	조손가정	19.1	22.8	9.3	38.5	4.2	100.0(29)	
	기타	23.9	10.4	0.0	51.5	6.1	100.0(29)	
학업 성적	상	28.5	16.5	3.8	37.6	6.0	100.0(607)	24.431**
	중	26.9	19.6	3.3	33.3	8.2	100.0(1,161)	
	하	28.1	22.8	3.3	27.6	9.1	100.0(840)	
경제적 수준	상	25.6	19.3	2.9	36.4	7.6	100.0(1,220)	33.864***
	중	30.4	19.5	2.9	29.7	8.1	100.0(1,033)	
	하	26.8	22.8	6.8	26.8	8.8	100.0(355)	

\*p<.05, \*\*p<.01, \*\*\*p<.001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라는 이유는 일정한 추세보다는 해마다 증가와 감소가 반복하여 나타나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라는 이유는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7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일찍 등교해서라는 이유는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초, 중학생보다 감소 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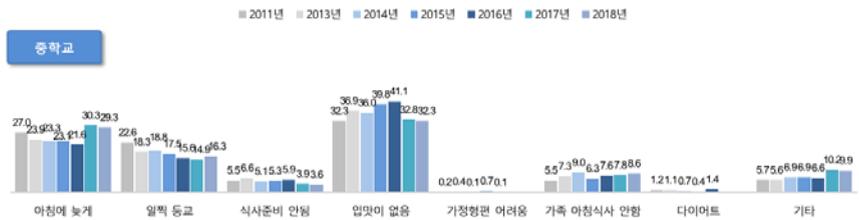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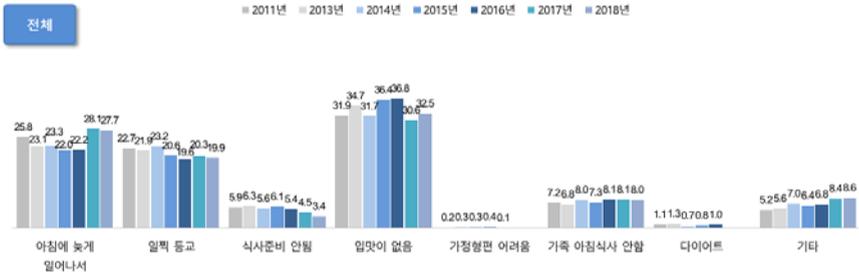


그림 IV-87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연도별 추이)

③ 수면시간과 수면 부족 이유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에게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질문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면시간을 도출한 결과, 전체 평균 수면시간은 7.29시간(7시간 17분) 정도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수면시간이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수면 시간은 2015년 이후 7.3시간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표 IV-127 수면 시간

(단위 : %(명))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7시간 이상 -	8시간 이상 -	9시간 이상	평균	전체(n)	
		6시간 미만	7시간 미만	8시간 미만	9시간 미만				
전체	5.0	14.7	19.8	21.9	21.7	17.0	7.29	100.0(9,049)	
성별	남학생	3.9	11.3	20.1	23.2	23.6	17.9	7.43	100.0(4,694)
	여학생	6.2	18.3	19.5	20.4	19.7	15.9	7.14	100.0(4,355)
학교급	초등학교	0.2	0.6	3.4	12.4	36.3	47.1	8.70	100.0(2,742)
	중학교	1.3	7.9	17.8	36.6	28.9	7.5	7.41	100.0(2,856)
	고등학교	11.9	31.6	34.4	17.1	4.1	0.8	6.07	100.0(3,451)
지역 규모	대도시	6.0	16.4	20.3	21.0	21.5	15.0	7.17	100.0(3,686)
	중소도시	4.5	13.6	18.7	23.0	22.1	18.1	7.37	100.0(4,409)
	읍면지역	3.7	13.2	23.1	19.8	20.6	19.5	7.38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0	14.8	19.6	21.7	21.9	17.0	7.29	100.0(8,256)
	한부모가정	5.4	15.3	24.1	22.7	17.6	14.8	7.12	100.0(599)
	조손가정	5.3	11.0	9.8	26.3	26.0	21.6	7.65	100.0(89)
	기타	2.6	6.1	17.0	24.9	26.4	23.0	7.77	100.0(97)
학업 성적	상	3.5	10.4	15.4	21.3	26.1	23.3	7.65	100.0(2,950)
	중	4.3	14.0	19.1	22.2	22.2	18.2	7.36	100.0(4,005)
	하	8.4	22.1	27.2	22.0	14.4	5.8	6.65	100.0(2,085)
경제적 수준	상	4.0	12.3	16.2	21.2	25.0	21.3	7.54	100.0(4,981)
	중	5.4	16.3	23.8	22.5	19.3	12.6	7.08	100.0(3,193)
	하	9.4	22.3	25.3	23.3	11.7	8.0	6.65	100.0(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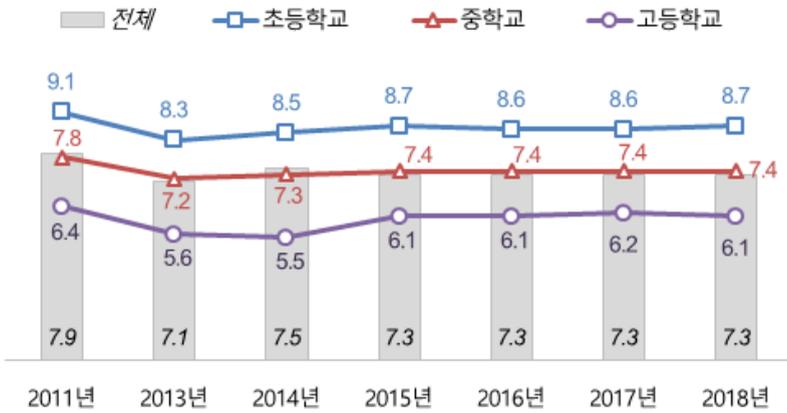


그림 IV-88 수면 시간(연도별 추이)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에게 수면이 부족한지를 조사한 결과, 과반수를 약간 넘는 52.4% 청소년이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집단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수면 부족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면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수면 부족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경제적 수준별로는 경제 수준이 낮을수록 수면 부족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수면 부족 응답 비율은 2016년 이후 다소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8년의 경우 전년도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

표 IV-128 수면 부족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chi^2$	
전체	52.4	47.6	100.0(9,051)		
성별	남학생	47.8	52.2	100.0(4,697)	81.875***
	여학생	57.3	42.7	100.0(4,354)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chi^2$
학교급	초등학교	33.1	66.9	100.0(2,740)	762.341***
	중학교	51.6	48.4	100.0(2,855)	
	고등학교	68.3	31.7	100.0(3,456)	
지역 규모	대도시	51.8	48.2	100.0(3,688)	1.529
	중소도시	53.0	47.0	100.0(4,409)	
	읍면지역	51.5	48.5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2.0	48.0	100.0(8,256)	11.687**
	한부모가정	58.2	41.8	100.0(601)	
	조손가정	43.3	56.7	100.0(89)	
	기타	53.5	46.5	100.0(97)	
학업 성적	상	46.7	53.3	100.0(2,947)	185.567***
	중	49.8	50.2	100.0(4,008)	
	하	65.2	34.8	100.0(2,087)	
경제적 수준	상	46.4	53.6	100.0(4,980)	213.381***
	중	56.6	43.4	100.0(3,193)	
	하	70.9	29.1	100.0(87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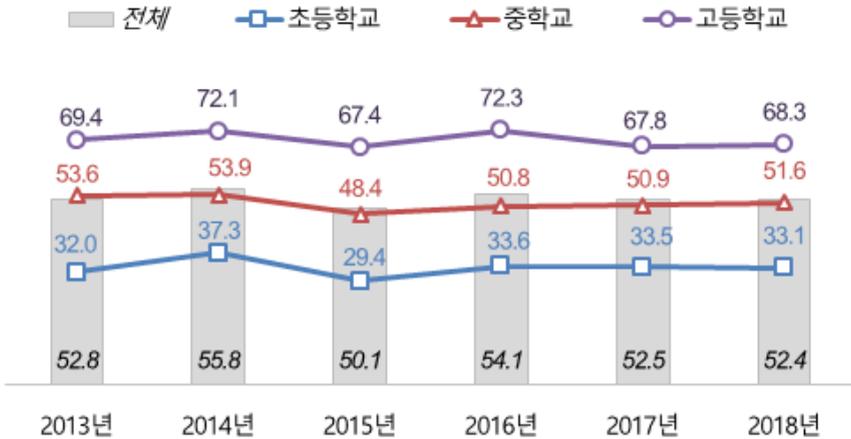


그림 IV-89 수면 부족 여부(연도별 추이)

수면이 부족한 1순위 이유로는 가정학습이 1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학원·과외 (18.4%), 채팅·문자 메시지(14.1%), 인터넷사이트이용(13.0%), 야간 자율학습(10.1%), 게임(8.8%), 드라마·영화시청·음악 청취 등(8.0%) 순으로 나타났다. 수면 부족의 이유로 학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응답률이 총 47.6%(야간자율학습, 학원과외, 가정학습)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학원·과외, 가정학습 다음으로 게임을 1순위 수면 부족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여학생보다 3.5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다(남: 14.1%, 여: 4.0%). 여학생의 경우에는 채팅·문자메시지에서(남: 10.8%, 여: 17.0%) 남학생보다 6.2%p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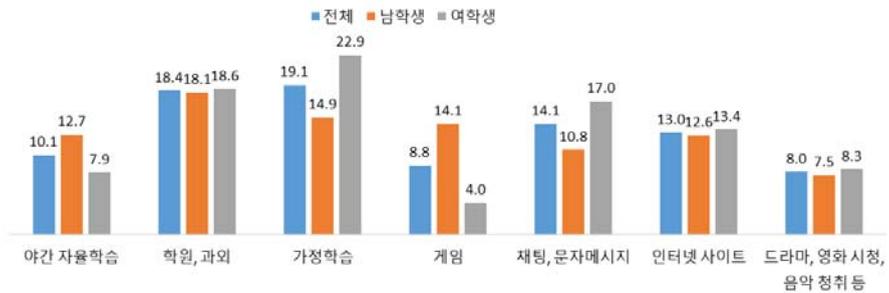


그림 IV-90 수면 부족 이유(1순위 기준)

표 IV-129 수면 부족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게임(인 터넷 게 임, 휴대 전화 게 임 포함)	채팅 (카톡 등), 문자 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만화, 블 로그 등)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전체	10.1	18.4	19.1	8.8	14.1	13.0	8.0	8.5	100.0(4,727)	
성별	남학생	12.7	18.1	14.9	14.1	10.8	12.6	7.5	9.3	100.0(2,234)
	여학생	7.9	18.6	22.9	4.0	17.0	13.4	8.3	7.8	100.0(2,493)
학교급	초등학교	0.0	23.4	25.5	14.1	4.4	9.5	10.2	12.9	100.0(906)
	중학교	2.0	19.9	15.9	11.6	18.4	16.4	9.4	6.4	100.0(1,466)
	고등학교	19.1	15.5	18.7	5.0	15.1	12.3	6.2	8.1	100.0(2,355)
지역 규모	대도시	10.6	19.8	19.2	8.2	12.8	11.9	8.1	9.5	100.0(1,905)
	중소도시	8.6	17.8	19.3	8.9	14.8	14.0	8.2	8.3	100.0(2,333)
	읍면지역	15.5	15.4	18.1	10.1	15.4	13.2	6.4	5.9	100.0(48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0.5	19.0	19.8	8.4	13.3	13.0	7.8	8.3	100.0(4,286)
	한부모가정	7.2	12.1	13.1	11.0	21.6	15.5	9.9	9.4	100.0(348)
	조손가정	10.5	17.1	9.1	18.4	23.8	9.8	2.9	8.4	100.0(38)
	기타	3.1	11.1	13.7	13.9	20.8	3.0	15.8	18.7	100.0(51)
학업 성적	상	9.2	22.9	26.8	6.3	8.8	11.5	6.9	7.5	100.0(1,373)
	중	9.6	18.3	18.3	9.6	14.4	12.5	8.6	8.7	100.0(1,990)
	하	11.9	13.9	12.5	10.0	18.9	15.4	8.2	9.3	100.0(1,356)
경제적 수준	상	9.5	20.2	21.4	8.3	11.9	11.6	8.6	8.5	100.0(2,305)
	중	10.5	17.7	17.8	9.0	16.2	13.3	7.3	8.1	100.0(1,802)
	하	11.4	13.6	14.6	10.0	15.9	17.3	7.6	9.7	100.0(616)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가정학습과 학원/과외가 수면부족 1순위 이유인 반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가정학습과 학원/과외 뿐만 아니라 채팅과 인터넷 사이트도 수면 부족 1순위 이유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의 경우에는 상과 중의 경우에 가정학습과 학원/과외가 1순위 이유로 높은 반면, 하의 경우에는 채팅/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사이트 이용이 1순위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130 수면 부족 이유(1+2+3순위)

(단위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숙제, 인터넷 강의)	게임 (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채팅 (카톡 등), 문자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전체	17.8	44.8	45.4	33.0	46.6	46.2	37.2	15.0	100.0(4,727)	
성별	남학생	20.1	43.2	40.1	47.0	38.5	45.6	34.4	15.4	100.0(2,234)
	여학생	15.7	46.3	50.2	20.6	53.9	46.7	39.8	14.6	100.0(2,493)
학교급	초등학교	0.0	48.0	57.2	41.8	28.4	35.5	43.4	22.0	100.0(906)
	중학교	5.0	46.1	38.7	43.0	55.3	53.2	37.9	12.5	100.0(1,466)
	고등학교	32.6	42.8	45.1	23.4	48.3	46.0	34.5	13.9	100.0(2,355)
지역 규모	대도시	18.3	47.8	48.0	32.3	43.6	44.0	36.1	15.5	100.0(1,905)
	중소도시	15.5	43.7	44.3	33.1	49.7	48.3	38.0	14.6	100.0(2,333)
	읍면지역	27.0	38.6	40.6	35.4	43.9	44.8	37.9	15.3	100.0(48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8.3	46.1	46.8	32.4	46.1	45.9	36.3	14.6	100.0(4,286)
	한부모가정	13.9	33.4	32.1	39.3	52.5	51.6	44.5	17.5	100.0(348)
	조손가정	16.7	33.7	39.6	38.0	50.7	36.9	49.4	21.2	100.0(38)
	기타	6.3	28.3	26.2	39.9	50.0	37.5	57.9	28.6	100.0(51)
학업 성적	상	17.1	54.8	58.1	27.5	39.0	42.2	31.0	13.7	100.0(1,373)
	중	16.7	44.8	45.1	34.5	47.7	44.7	38.3	15.4	100.0(1,990)
	하	20.1	35.0	33.0	36.4	52.9	52.2	42.0	15.8	100.0(1,356)
경제적 수준	상	17.0	49.5	49.9	32.3	44.3	41.4	35.6	14.9	100.0(2,305)
	중	18.6	41.4	42.4	32.8	48.8	49.4	38.5	14.7	100.0(1,802)
	하	18.6	37.6	37.8	36.4	49.1	54.6	39.6	16.2	100.0(6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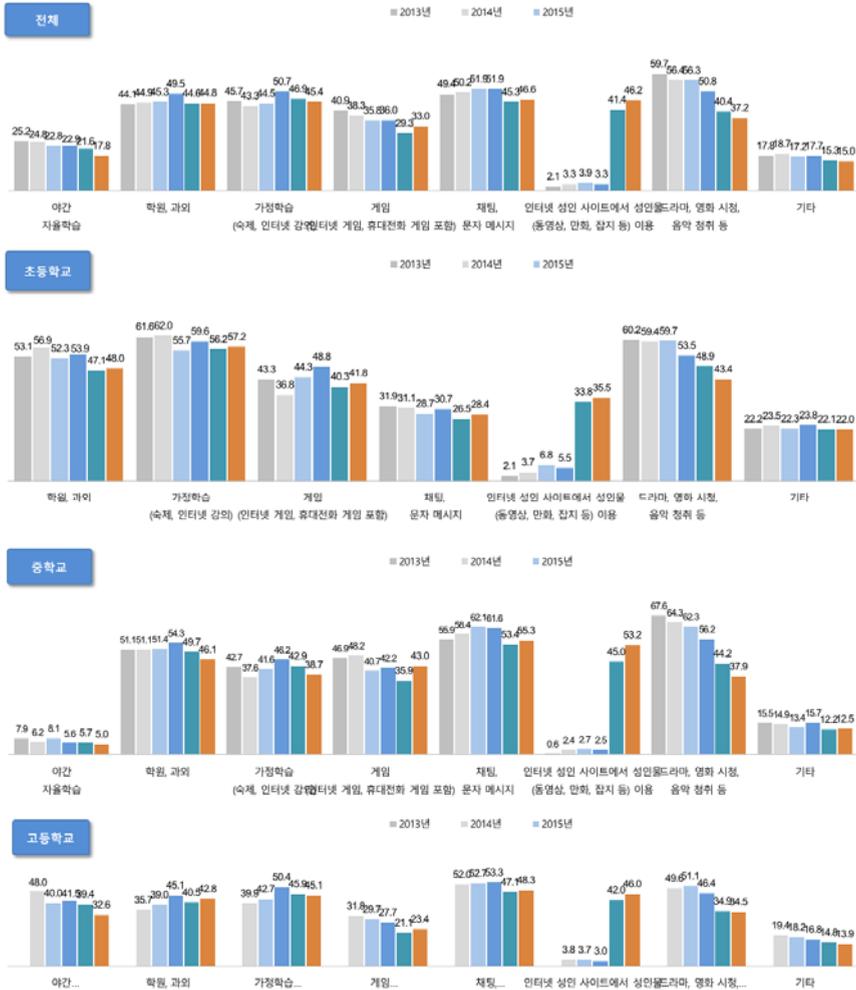


그림 IV-91 수면 부족 이유(1+2+3순위)(연도별 추이)

수면 부족 이유에 대해 3순위까지 중복 응답한 결과를 총합기준으로 살펴보면 1순위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와는 약간 상이하거나 새롭게 주목할 부분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채팅·문자메시지(46.6%)와 인터넷사이트 이용(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포함)(46.2%)이 가정학습 및 학원과의와 더불어 수면 부족의 가장 주된 이유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게임과 인터넷 사이트 이용이 높은 반면, 여학생은 채팅과 인터넷 사이트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상'인 경우에는 가정학습과 학원과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중'과 '하'의 경우에는 채팅이나 문자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이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들의 수면 부족이 가정학습이나 학원과의 뿐만 아니라 채팅·문자메시지, 인터넷 사이트 이용, 게임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야간 자율학습때문이라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드라마, 영화시청, 음악 청취의 비율 역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게임의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8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 ④ 비만율

최근 교육부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도와 중등도, 고도 비만을 모두 합친 비율의 경우 2017년에는 17.3%로 나타나는데 이는 2016년 대비 0.8%p 증가한 수치이며, 2008년과 비교했을 때도 6.1%p 증가한 수치이다.



\* 출처: 교육부(2017.2.22). 보도자료: 2016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p.9 재편집.  
교육부(2018.3.15). 보도자료: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9. / 단위: %

그림 IV-92 2008-2017년 비만도 현황

2017년도 비만을 자료를 토대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교육부 2018), 초등 남학생의 경우 비만율은 17.7%로 여학생보다 5.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남학생의 비만율은 18.4%이며, 여학생보다 4.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남학생의 비만율(22.7%)이 여학생의 비만율(19.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1 2010~2016년도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

(단위 : %)

연도/구분	정상	비만도 현황					
		경도	중등도	고도	계		
2010년	85.8	7.4	5.6	1.3	14.3		
2011년	85.7	7.5	5.5	1.3	14.3		
2012년	85.3	7.6	5.8	1.4	14.7		
2013년	84.7	7.9	6.0	1.5	15.3		
2014년	85.0	7.6	6.0	1.4	15.0		
2015년	84.4	7.9	6.1	1.6	15.6		
2016년	전체	83.5	8.1	6.6	1.9	16.5	
	초등학생	남학생	82.6	8.6	7.3	1.6	17.4
		여학생	88.3	6.4	4.4	0.8	11.7
	중학생	남학생	81.5	9.0	7.5	2.0	18.5

	고등학생	여학생	86.2	7.5	4.9	1.4	13.8
		남학생	79.5	8.7	8.4	3.4	20.5
		여학생	81.2	8.6	7.5	2.7	18.8
2017년	전체		82.7	8.3	7.0	2.0	17.3
	초등학생	남학생	82.3	8.6	7.6	1.6	17.7
		여학생	87.3	7.0	4.9	0.8	12.7
	중학생	남학생	81.6	8.9	7.4	2.1	18.4
		여학생	86.1	7.0	5.6	1.4	13.9
	고등학생	남학생	77.3	9.6	9.4	3.7	22.7
		여학생	80.3	8.9	7.4	3.3	19.7

\* 출처: 교육부(2017.2.22). 보도자료: 2016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p.9 재편집.  
교육부(2018.3.15). 보도자료: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9.

- \* 주: 1) 측정 학생의 체중이 성별, 신장별 표준체중에 대비 초과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산정하여 경도비만(20% 이상~ 30% 미만), 중등도 비만(30% 이상~50% 미만), 고도비만(50% 이상)으로 구분  
2) 비만도(%) = {(측정체중-표준체중)/표준체중}×100  
3) 표준체중은 질병관리본부·대한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신체발육 표준치의 성별 표준체중 사용

### (3) 정신적 건강

#### ①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33.8%로 나타났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았으며,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 유형의 경우 조손가정의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한다는 비율이 21.6%로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죽고 싶다고 생각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5년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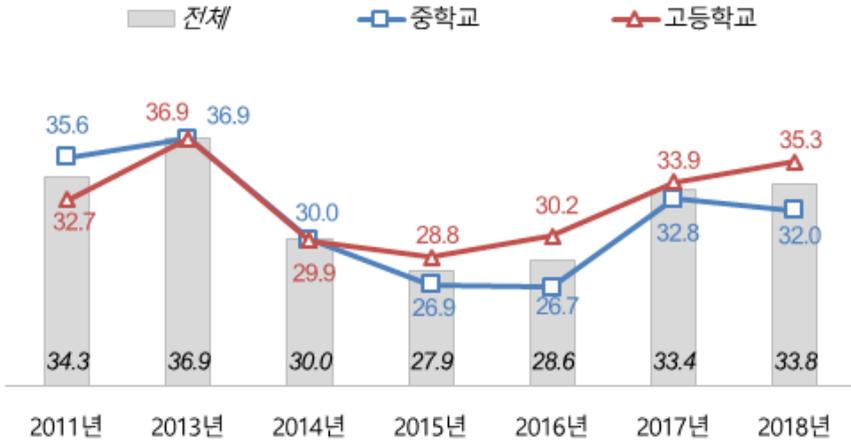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고등학생에게서 죽고 싶다고 생각해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2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

(단위 : %(명))

구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	전체(n)	$\chi^2$
전체		66.2	28.6	5.2	100.0(6,307)	
성별	남학생	76.3	21.0	2.8	100.0(3,285)	321.598***
	여학생	55.3	36.8	7.9	100.0(3,022)	
학교급	중학교	68.1	26.9	5.1	100.0(2,854)	8.128*
	고등학교	64.7	30.0	5.3	100.0(3,453)	
지역 규모	대도시	67.6	27.1	5.3	100.0(2,604)	6.867
	중소도시	64.9	29.6	5.4	100.0(3,073)	
	읍면지역	66.7	29.4	3.9	100.0(63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7.0	28.0	5.0	100.0(5,745)	48.425***
	한부모가정	58.2	36.0	5.8	100.0(450)	
	조손가정	64.7	13.7	21.6	100.0(49)	
	기타	55.1	39.0	5.9	100.0(57)	
학업 성적	상	71.6	24.7	3.7	100.0(1,660)	84.909***
	중	68.0	27.7	4.3	100.0(2,717)	
	하	59.1	33.0	7.9	100.0(1,924)	
경제적 수준	상	71.3	25.0	3.6	100.0(3,052)	152.058***
	중	65.4	28.6	6.0	100.0(2,481)	
	하	48.5	42.4	9.1	100.0(768)	

\*p<.05, \*\*p<.01, \*\*\*p<.001



\*주: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의 응답을 합계(단위: %)

그림 IV-93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연도별 추이)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청소년들은 전체적으로 '학업문제'를 37.2%로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21.9%), 가족간의 갈등(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신규로 포함된 보기문항인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을 21.1%가 응답했다. 집단별 비교결과 대부분의 집단에서 학업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나타났지만 이와 함께 특이한 점도 발견된다. 즉,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가족간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족 간의 갈등과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요인은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학업 문제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요인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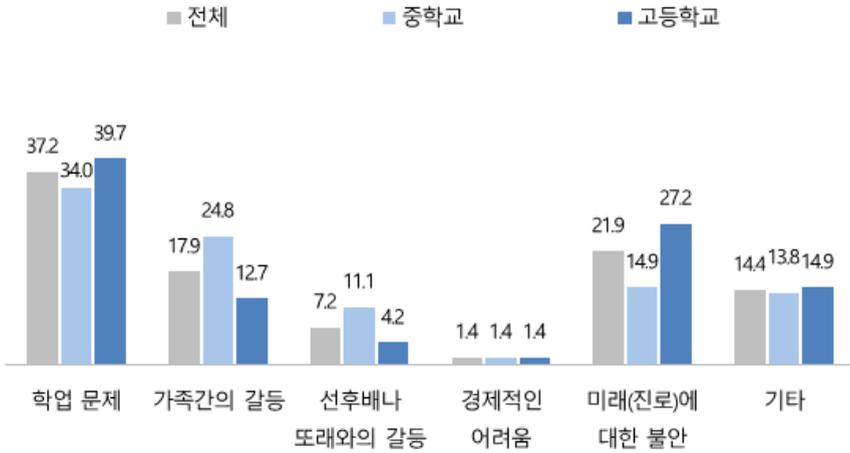


그림 IV-94 죽고 싶은 이유(학교급별)

표 IV-133 죽고 싶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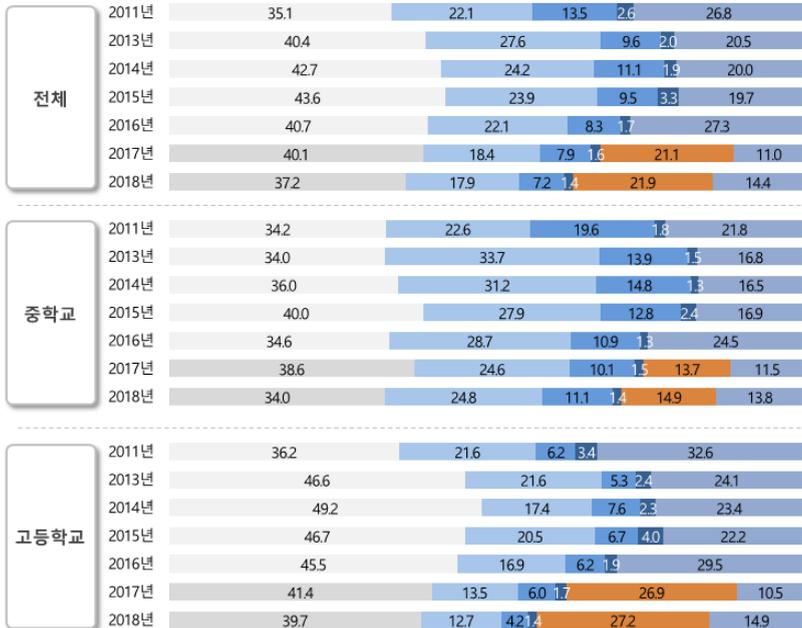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학업문제 (학업부담, 성적 등)	가족 간의 갈등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 폭력 등)	경제적 인 어려움	미래 (진로) 에 대한 불안	기타	전체(n)	$\chi^2$	
전체	37.2	17.9	7.2	1.4	21.9	14.4	100.0(2,087)		
성별	남학생	38.4	19.8	4.7	2.1	21.7	13.3	100.0(765)	18.110 **
	여학생	36.5	16.7	8.6	1.1	22.0	15.1	100.0(1,323)	
학교 급	중학교	34.0	24.8	11.1	1.4	14.9	13.8	100.0(899)	116.712 ***
	고등학교	39.7	12.7	4.2	1.4	27.2	14.9	100.0(1,188)	
지역 규모	대도시	37.0	20.1	6.3	0.7	22.3	13.6	100.0(833)	15.145
	중소도시	38.3	16.3	7.8	1.8	20.8	15.1	100.0(1,050)	
	읍면지역	32.6	17.0	7.6	2.6	26.0	14.3	100.0(205)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8.9	16.9	7.4	0.9	22.2	13.7	100.0(1,863)	88.526 ***
	한부모가정	22.1	25.9	3.8	7.0	20.8	20.4	100.0(183)	
	조손가정	32.7	36.9	15.2	0.0	15.1	0.0	100.0(17)	
	기타	25.6	18.1	8.0	4.1	15.9	28.4	100.0(24)	

구분		학업문제 (학업부담, 성적 등)	가족 간의 갈등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 폭력 등)	경제적 인 어려움	미래 (진로) 에 대한 불안	기타	전체(n)	$\chi^2$
학업 성적	상	37.3	17.7	8.6	0.8	22.9	12.8	100.0(464)	22.357 *
	중	41.2	15.9	7.2	1.4	19.4	14.8	100.0(848)	
	하	32.5	20.2	6.3	1.9	24.1	15.0	100.0(772)	
경제 적 수준	상	42.0	16.5	7.9	0.2	20.6	12.9	100.0(861)	72.647 ***
	중	35.4	17.9	7.6	1.0	23.7	14.4	100.0(837)	
	하	29.9	21.1	4.9	5.2	21.0	17.9	100.0(386)	

\* $p < .05$ , \*\* $p < .01$ , \*\*\* $p < .001$

■ 학교 성적 ■ 학업 문제 ■ 가족간의 갈등 ■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 경제적인 어려움 ■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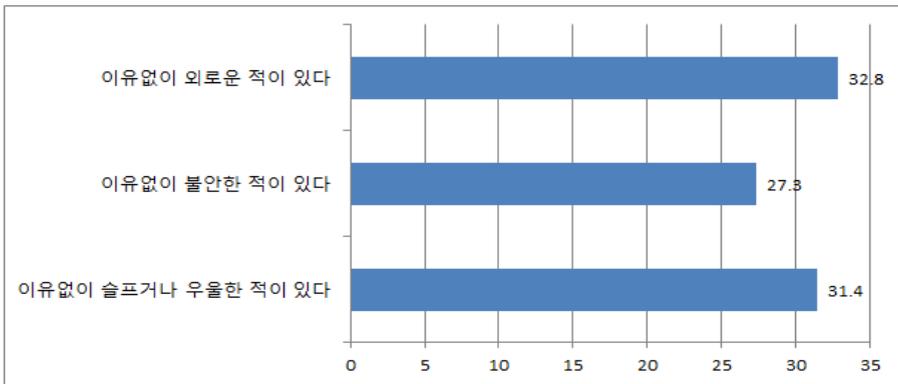


\*주: 2017년도 조사부터 '학교 성적'이 '학업 문제'로 수정되었고,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보기 문항이 새로 추가됨.

그림 IV-95 죽고 싶은 이유(연도별 추이)

## ② 우울증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우울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등의 세가지 항목에 대해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을 합친 비율을 기준으로, 외로운 적이 있다는 32.8%였으며, 불안한 적이 있다는 27.3%,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31.4%로 나타났다.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친 비율(단위: %)

그림 IV-96 우울정도 항목별 비교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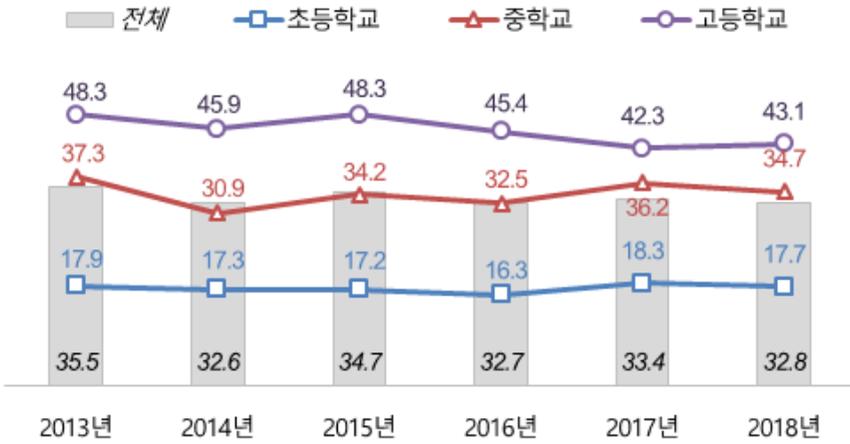
먼저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는 항목에 대해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변인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가장 높았으며, 가족 유형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두 경우 모두 낮을수록 외로운 적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4 우울증\_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1.95(0.984)	44.7	22.5	26.3	6.5	100.0(9,054)		
성별	남학생	1.72(0.900)	54.7	22.0	19.7	3.6	100.0(4,698)	509.428 ***
	여학생	2.19(1.013)	34.0	23.0	33.4	9.7	100.0(4,355)	
학교급	초등학교	1.59(0.878)	62.9	19.4	13.4	4.4	100.0(2,744)	647.514 ***
	중학교	1.99(0.983)	41.9	23.4	28.0	6.7	100.0(2,854)	
	고등학교	2.19(0.984)	32.7	24.2	35.0	8.1	100.0(3,456)	
지역 규모	대도시	1.89(0.969)	47.2	22.6	24.3	5.9	100.0(3,686)	34.346 ***
	중소도시	2.00(0.994)	42.1	22.9	27.8	7.3	100.0(4,413)	
	읍면지역	1.90(0.978)	47.9	19.8	26.9	5.4	100.0(95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3(0.976)	45.5	22.5	26.0	6.1	100.0(8,260)	59.139 ***
	한부모가정	2.21(1.042)	34.1	22.2	32.0	11.8	100.0(601)	
	조손가정	1.92(1.051)	47.8	23.9	17.0	11.2	100.0(89)	
	기타	1.99(1.025)	43.5	22.3	25.5	8.7	100.0(96)	
학업 성적	상	1.77(0.929)	52.7	21.6	21.4	4.3	100.0(2,948)	308.525 ***
	중	1.91(0.962)	45.1	24.2	24.9	5.8	100.0(4,007)	
	하	2.25(1.033)	32.9	20.3	35.7	11.1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1.79(0.936)	51.8	22.2	21.3	4.7	100.0(4,979)	409.858 ***
	중	2.04(0.995)	40.0	23.0	29.6	7.4	100.0(3,197)	
	하	2.47(0.980)	22.0	22.3	42.3	13.5	100.0(870)	

\*p<.05, \*\*p<.01, \*\*\*p<.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97 우울증\_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두 번째 조사항목인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변인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유형의 경우에도 한부모가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두 경우 모두 낮을수록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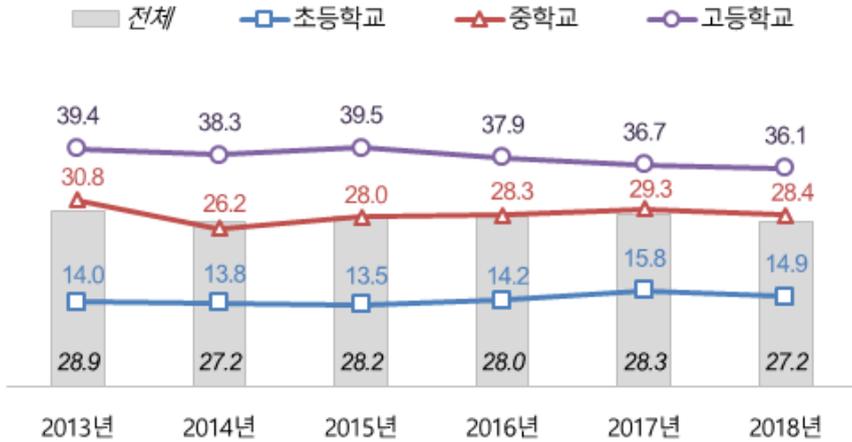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일정한 비율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이후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 응답 비율의 차이가 다소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35 우울증\_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1.83(0.967)	50.1	22.6	21.0	6.3	100.0(9,053)		
성별	남학생	1.62(0.872)	60.2	20.8	15.3	3.6	100.0(4,701)	470.079 ***
	여학생	2.06(1.012)	39.2	24.6	27.1	9.1	100.0(4,351)	
학교급	초등학교	1.51(0.829)	67.8	17.3	11.4	3.5	100.0(2,742)	574.789 ***
	중학교	1.87(0.965)	47.3	24.3	22.1	6.3	100.0(2,855)	
	고등학교	2.06(0.998)	38.4	25.5	27.6	8.5	100.0(3,456)	
지역 규모	대도시	1.78(0.950)	52.9	22.7	18.5	6.0	100.0(3,687)	48.132 ***
	중소도시	1.90(0.983)	47.0	23.2	22.9	6.9	100.0(4,411)	
	읍면지역	1.76(0.938)	54.2	19.9	21.4	4.5	100.0(95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82(0.962)	50.7	22.5	20.8	6.0	100.0(8,258)	28.267 ***
	한부모가정	2.00(1.008)	41.5	25.9	23.5	9.1	100.0(601)	
	조손가정	1.73(1.005)	59.5	15.9	17.0	7.7	100.0(89)	
	기타	1.91(1.001)	46.3	24.1	21.5	8.0	100.0(97)	
학업 성적	상	1.69(0.916)	57.7	20.1	17.7	4.5	100.0(2,947)	257.306 ***
	중	1.80(0.937)	50.6	24.4	19.5	5.4	100.0(4,008)	
	하	2.11(1.036)	38.4	22.7	28.4	10.4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1.70(0.917)	57.0	21.1	17.1	4.8	100.0(4,979)	348.068 ***
	중	1.92(0.973)	45.1	24.3	24.2	6.5	100.0(3,195)	
	하	2.30(1.042)	29.4	25.3	31.0	14.2	100.0(870)	

\*p<.05, \*\*p<.01, \*\*\*p<.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98 우울증\_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세 번째 조사항목인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부모가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두 경우 모두 낮을수록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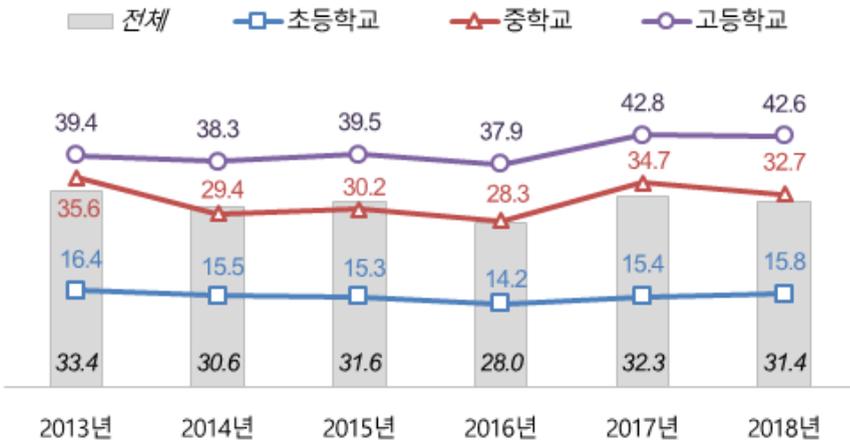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8년의 경우 중학생의 응답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2.0%p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36 우울증\_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1.90(0.998)	48.6	20.0	24.5	6.9	100.0(9,043)		
성별	남학생	1.62(0.868)	60.6	20.0	16.2	3.2	100.0(4,696)	752.627 ***
	여학생	2.20(1.043)	35.7	20.1	33.4	10.9	100.0(4,347)	
학교급	초등학교	1.50(0.846)	69.6	14.6	12.0	3.8	100.0(2,735)	791.342 ***
	중학교	1.96(0.995)	44.2	23.0	25.4	7.4	100.0(2,854)	
	고등학교	2.16(1.013)	35.6	21.9	33.5	9.0	100.0(3,453)	
지역 규모	대도시	1.84(0.985)	51.2	19.7	22.7	6.4	100.0(3,685)	29.476 ***
	중소도시	1.95(1.009)	45.9	20.7	25.8	7.6	100.0(4,404)	
	읍면지역	1.86(0.987)	51.1	18.0	25.1	5.8	100.0(95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88(0.991)	49.0	20.1	24.4	6.5	100.0(8,250)	30.826 ***
	한부모가정	2.07(1.059)	41.4	20.9	26.7	11.1	100.0(601)	
	조손가정	1.88(1.061)	52.8	16.1	21.4	9.7	100.0(87)	
	기타	1.87(1.067)	53.4	16.6	19.6	10.3	100.0(97)	
학업 성적	상	1.72(0.937)	56.9	18.9	19.4	4.8	100.0(2,942)	310.720 ***
	중	1.86(0.974)	49.5	20.6	24.1	5.8	100.0(4,006)	
	하	2.21(1.054)	35.1	20.5	32.4	12.0	100.0(2,087)	
경제적 수준	상	1.74(0.940)	55.8	19.8	19.3	5.0	100.0(4,974)	402.366 ***
	중	2.01(1.011)	42.7	20.9	28.7	7.7	100.0(3,193)	
	하	2.39(1.052)	28.6	18.3	38.4	14.8	100.0(868)	

\*p<.05, \*\*p<.01, \*\*\*p<.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99 우울증\_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연도별 추이)

### ③ 스트레스 인지율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최근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교육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7), 청소년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을 기준으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은 30.9%인데 비해 고등학교 3학년은 42.2%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증가될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대비 최근 8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학년에서 2017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2009년의 스트레스 인지율보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7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

연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9	40.1	39.4	40.5	42.3	44.4	53.4
2010	39.9	40.7	41.7	42.8	44.8	53.2
2011	36.9	39.2	40.8	41.1	43.5	50.5
2012	37.0	38.8	40.7	43.7	44.2	46.3
2013	35.7	40.3	41.2	40.3	44.7	46.1
2014	32.3	32.7	35.1	36.5	39.9	44.5
2015	30.3	32.5	31.9	36.0	38.7	41.4
2016	32.6	33.7	34.3	37.5	40.7	43.3
2017	30.9	35.5	35.6	35.8	40.9	42.2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208-209.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237.

\* 주: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청소년들이 인지하는 스트레스를 원인별로 살펴본 결과,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전체 응답자 중 63.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48.2%), 외모 및 신체조건(27.6%), 또래와의 관계(24.1%), 가정불화(16.3%), 경제적인 어려움(9.3%)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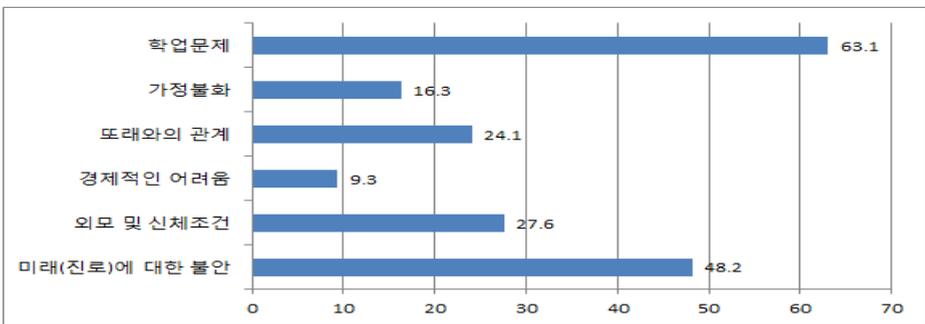


그림 IV-100 원인별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 원인 중 학업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전체 평균은 2.67점(4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낮았으며, 가족 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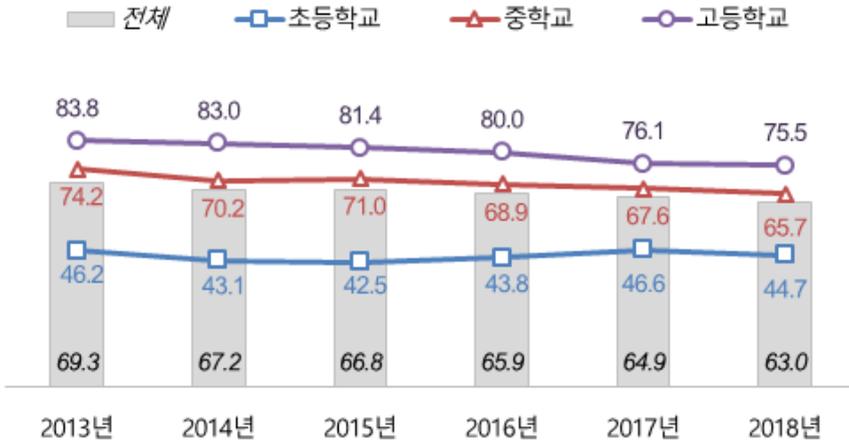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스트레스 원인 중 학업문제에 대한 응답 비율은 점차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38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학업문제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2.67(1.058)	20.2	16.7	38.4	24.7	100.0(9,037)		
성별	남학생	2.51(1.084)	25.6	17.9	35.9	20.6	100.0(4,685)	229.241
	여학생	2.85(1.000)	14.5	15.4	41.0	29.1	100.0(4,352)	***
학교급	초등학교	2.27(1.063)	32.2	23.1	30.2	14.4	100.0(2,738)	724.569
	중학교	2.71(1.014)	17.9	16.5	42.4	23.3	100.0(2,849)	***
	고등학교	2.97(0.983)	12.7	11.8	41.4	34.0	100.0(3,450)	
지역 규모	대도시	2.68(1.057)	20.0	17.3	37.8	24.9	100.0(3,681)	
	중소도시	2.68(1.055)	20.2	16.5	38.8	24.5	100.0(4,403)	3.025
	읍면지역	2.66(1.071)	21.4	15.5	38.3	24.8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69(1.059)	20.1	16.6	38.1	25.2	100.0(8,244)	
	한부모가정	2.57(1.015)	20.9	19.3	41.6	18.3	100.0(601)	31.272
	조손가정	2.36(1.135)	34.7	11.7	36.2	17.4	100.0(88)	***
	기타	2.79(1.021)	17.3	12.1	44.4	26.1	100.0(96)	
학업 성적	상	2.54(1.072)	23.8	19.7	35.3	21.2	100.0(2,943)	157.714
	중	2.66(1.048)	20.4	16.5	39.8	23.3	100.0(4,001)	***
	하	2.89(1.020)	15.0	12.9	39.9	32.3	100.0(2,084)	
경제적 수준	상	2.57(1.086)	24.0	17.9	35.4	22.7	100.0(4,970)	165.069
	중	2.76(1.007)	16.5	15.6	42.8	25.1	100.0(3,191)	***
	하	2.96(0.991)	12.4	13.8	39.1	34.7	100.0(868)	

\*p<.05, \*\*p<.01, \*\*\*p<.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01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학업문제(연도별 추이)

스트레스 원인 중 가정불화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1.60점(4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정불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 가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가정불화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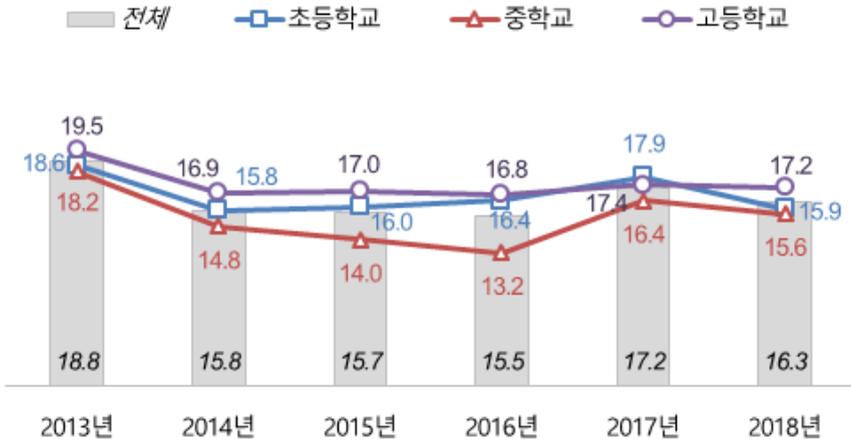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 응답 비율은 201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8년에는 다시 감소하였다. 중학생의 응답 비율에서 해마다 증감의 폭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39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가정 불화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1.60(0.859)	60.2	23.5	12.0	4.3	100.0(8,952)		
성별	남학생	1.55(0.828)	63.4	22.2	10.8	3.7	100.0(4,642)	44.710***
	여학생	1.67(0.887)	56.7	25.0	13.3	5.0	100.0(4,310)	
학교급	초등학교	1.55(0.874)	65.7	18.4	10.9	5.0	100.0(2,728)	78.353***
	중학교	1.61(0.846)	58.5	26.0	11.4	4.2	100.0(2,818)	
	고등학교	1.64(0.855)	57.1	25.7	13.3	3.9	100.0(3,406)	
지역 규모	대도시	1.58(0.855)	62.4	21.9	11.4	4.3	100.0(3,639)	19.458**
	중소도시	1.63(0.863)	58.0	25.2	12.4	4.4	100.0(4,366)	
	읍면지역	1.59(0.851)	61.6	22.1	12.4	3.9	100.0(94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58(0.843)	61.0	23.5	11.6	3.9	100.0(8,170)	69.790***
	한부모가정	1.87(0.995)	47.8	25.9	17.5	8.8	100.0(591)	
	조손가정	1.63(0.941)	62.9	18.0	12.6	6.5	100.0(87)	
	기타	1.63(0.953)	61.9	20.7	9.3	8.0	100.0(97)	
학업 성적	상	1.51(0.809)	65.7	20.9	10.1	3.4	100.0(2,928)	103.407 ***
	중	1.60(0.844)	60.1	24.3	11.7	3.9	100.0(3,963)	
	하	1.75(0.933)	52.5	26.0	15.2	6.4	100.0(2,053)	
경제적 수준	상	1.46(0.780)	68.3	20.1	8.4	3.2	100.0(4,923)	545.875 ***
	중	1.68(0.863)	54.5	27.9	13.4	4.3	100.0(3,163)	
	하	2.15(1.013)	34.1	27.8	27.2	10.8	100.0(858)	

\*p<.05, \*\*p<.01, \*\*\*p<.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02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가정 불화(연도별 추이)

스트레스 원인 중 또래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1.82점(4점 만 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또래와의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또래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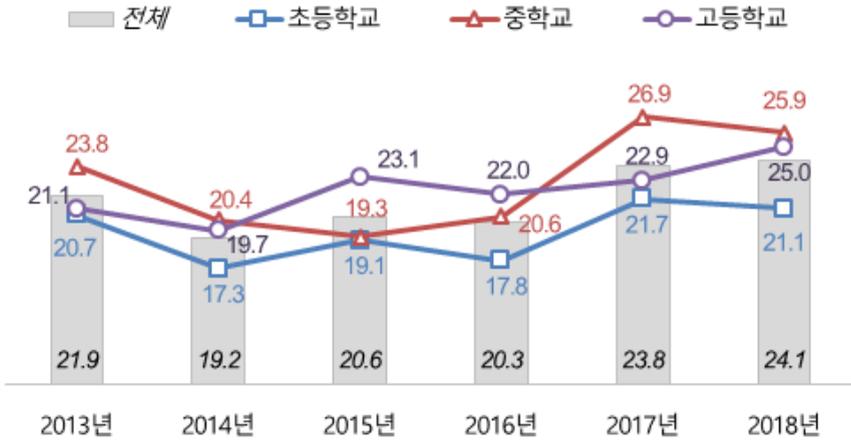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또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응답 비율은 해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고등학생은 증가하였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0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도래와의 관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1.82(0.920)	48.0	27.9	18.8	5.3	100.0(9,049)		
성별	남학생	1.58(0.791)	58.8	27.2	11.5	2.5	100.0(4,696)	657.929 ***
	여학생	2.07(0.979)	36.3	28.7	26.6	8.4	100.0(4,353)	
학교급	초등학교	1.70(0.933)	56.8	22.1	15.1	6.0	100.0(2,737)	159.286 ***
	중학교	1.86(0.934)	45.5	28.5	20.1	5.8	100.0(2,857)	
	고등학교	1.87(0.891)	42.9	32.0	20.6	4.4	100.0(3,455)	
지역 규모	대도시	1.76(0.901)	50.9	26.8	17.8	4.5	100.0(3,687)	25.778 ***
	중소도시	1.86(0.932)	45.6	28.9	19.6	5.9	100.0(4,407)	
	읍면지역	1.83(0.928)	47.4	28.0	19.0	5.6	100.0(95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81(0.920)	48.4	27.7	18.6	5.3	100.0(8,255)	31.732 ***
	한부모가정	1.96(0.921)	38.6	33.1	22.4	6.0	100.0(600)	
	조손가정	1.60(0.845)	59.5	24.3	12.6	3.6	100.0(89)	
	기타	1.77(0.958)	54.5	18.8	21.8	4.9	100.0(97)	
학업 성적	상	1.71(0.890)	53.4	26.5	15.3	4.7	100.0(2,947)	115.437 ***
	중	1.80(0.913)	48.4	27.8	18.8	5.0	100.0(4,004)	
	하	1.98(0.952)	39.3	30.0	23.8	6.9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1.69(0.889)	55.0	25.1	15.3	4.5	100.0(4,974)	311.408 ***
	중	1.90(0.917)	41.9	31.8	20.8	5.6	100.0(3,197)	
	하	2.20(0.967)	29.6	29.8	31.5	9.1	100.0(870)	

\*p<.05, \*\*p<.01, \*\*\*p<.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03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포래와의 관계(연도별 추이)

스트레스 원인 중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1.43점(4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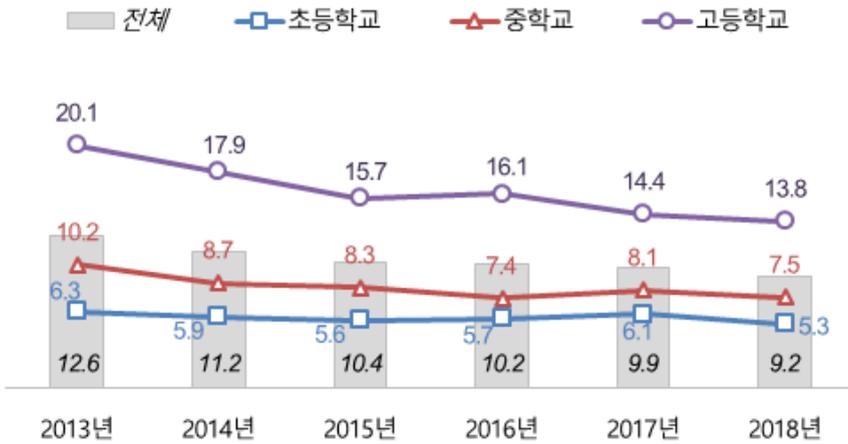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비율은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감소 폭이 커서 초, 중학생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1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경제적인 어려움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1.43(0.702)	67.6	23.1	7.7	1.6	100.0(9,038)		
성별	남학생	1.37(0.653)	71.8	21.1	5.7	1.3	100.0(4,694)	95.495***
	여학생	1.50(0.745)	63.1	25.3	9.8	1.8	100.0(4,344)	
학교급	초등학교	1.27(0.601)	79.5	15.2	4.0	1.4	100.0(2,733)	353.395 ***
	중학교	1.41(0.666)	67.3	25.2	6.2	1.3	100.0(2,854)	
	고등학교	1.57(0.773)	58.5	27.7	11.9	1.9	100.0(3,451)	
지역 규모	대도시	1.41(0.704)	70.2	20.7	7.2	1.8	100.0(3,682)	34.259 ***
	중소도시	1.45(0.696)	65.3	25.3	8.1	1.2	100.0(4,402)	
	읍면지역	1.43(0.719)	68.1	22.3	7.6	2.0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41(0.678)	68.7	23.1	6.8	1.4	100.0(8,248)	171.863 ***
	한부모가정	1.76(0.898)	51.4	25.6	19.1	4.0	100.0(597)	
	조손가정	1.41(0.769)	74.3	11.8	12.3	1.6	100.0(89)	
	기타	1.50(0.782)	65.2	22.9	9.0	2.9	100.0(96)	
학업 성적	상	1.29(0.592)	76.9	17.6	4.7	0.8	100.0(2,945)	270.767 ***
	중	1.44(0.698)	66.7	24.4	7.3	1.6	100.0(3,997)	
	하	1.61(0.801)	56.2	28.7	12.6	2.5	100.0(2,087)	
경제적 수준	상	1.22(0.503)	81.4	15.8	2.2	0.6	100.0(4,969)	2374.696 ***
	중	1.51(0.679)	58.8	32.6	7.6	1.0	100.0(3,193)	
	하	2.36(0.912)	21.1	30.7	39.3	8.9	100.0(869)	

\*p<.05, \*\*p<.01, \*\*\*p<.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04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경제적인 어려움(연도별 추이)

스트레스 원인 중 외모·신체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1.88점(4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외모·신체조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외모·신체조건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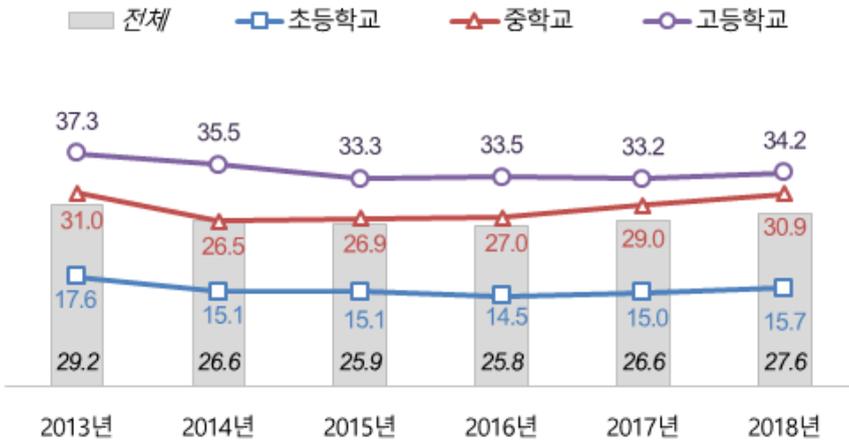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외모·신체 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비율은 2016년까지 감소해 오다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중학생의 비율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2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외모·신체조건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1.88(0.950)	45.9	26.6	21.5	6.1	100.0(9,048)		
성별	남학생	1.64(0.842)	56.6	26.0	14.1	3.3	100.0(4,696)	621.905 ***
	여학생	2.13(0.993)	34.3	27.1	29.4	9.2	100.0(4,352)	
학교급	초등학교	1.56(0.856)	64.4	19.9	11.5	4.3	100.0(2,740)	596.664 ***
	중학교	1.95(0.955)	41.7	27.4	24.6	6.3	100.0(2,854)	
	고등학교	2.07(0.952)	34.6	31.2	26.8	7.4	100.0(3,455)	
지역 규모	대도시	1.85(0.945)	47.5	26.2	20.4	6.0	100.0(3,687)	9.386
	중소도시	1.91(0.956)	44.5	26.7	22.4	6.4	100.0(4,408)	
	읍면지역	1.86(0.937)	46.2	27.0	21.3	5.5	100.0(95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87(0.946)	46.2	26.9	20.9	6.1	100.0(8,254)	47.031 ***
	한부모가정	2.06(0.978)	38.0	25.2	29.8	7.0	100.0(601)	
	조손가정	1.69(1.002)	61.5	15.9	14.3	8.2	100.0(89)	
	기타	1.83(0.949)	50.7	18.8	27.0	3.5	100.0(97)	
학업 성적	상	1.68(0.875)	55.4	24.4	16.5	3.6	100.0(2,947)	379.091 ***
	중	1.85(0.927)	45.8	28.5	20.2	5.5	100.0(4,003)	
	하	2.20(1.012)	32.5	25.9	30.9	10.7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1.72(0.898)	54.1	24.4	17.1	4.4	100.0(4,976)	574.512 ***
	중	1.96(0.936)	39.7	30.4	23.9	6.0	100.0(3,195)	
	하	2.49(1.002)	21.5	24.4	37.9	16.2	100.0(870)	

\*p<.05, \*\*p<.01, \*\*\*p<.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05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외모·신체조건(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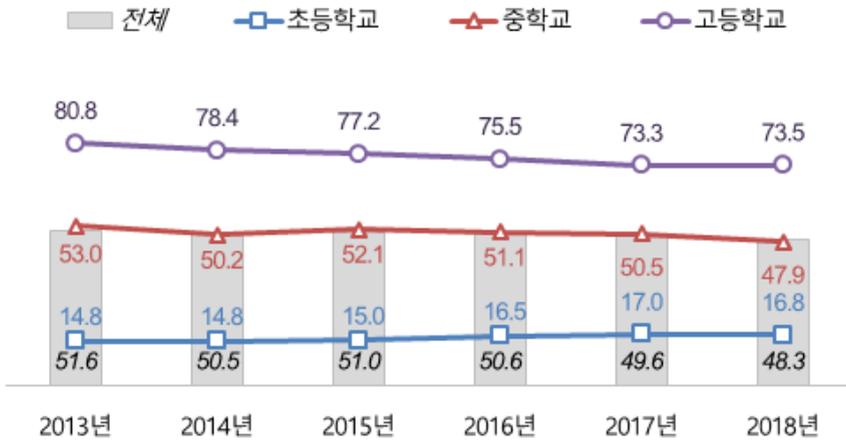
스트레스 원인 중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2.33점 (4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3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2.33(1.133)	34.3	17.4	29.4	18.8	100.0(9,048)		
성별	남학생	2.13(1.100)	40.9	18.7	26.7	13.8	100.0(4,694)	288.893 ***
	여학생	2.54(1.132)	27.3	16.0	32.4	24.3	100.0(4,354)	
학교급	초등학교	1.58(0.886)	63.7	19.5	11.7	5.1	100.0(2,735)	2309.115 ***
	중학교	2.33(1.058)	30.1	22.0	33.1	14.8	100.0(2,857)	
	고등학교	2.92(1.013)	14.6	12.0	40.4	33.0	100.0(3,456)	
지역 규모	대도시	2.30(1.126)	34.8	18.4	28.7	18.1	100.0(3,686)	9.239
	중소도시	2.35(1.136)	33.6	17.0	29.9	19.5	100.0(4,409)	
	읍면지역	2.31(1.144)	35.8	15.5	29.9	18.7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32(1.133)	34.4	17.5	29.3	18.8	100.0(8,254)	17.706*
	한부모가정	2.43(1.124)	29.8	17.9	31.4	20.9	100.0(601)	
	조손가정	2.10(1.161)	46.1	13.4	24.7	15.9	100.0(89)	
	기타	2.20(1.114)	40.8	11.4	35.1	12.7	100.0(96)	
학업 성적	상	2.06(1.104)	44.5	18.6	23.2	13.6	100.0(2,947)	512.381 ***
	중	2.29(1.112)	34.6	18.2	30.4	16.8	100.0(4,003)	
	하	2.77(1.081)	19.4	14.1	36.3	30.2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2.12(1.113)	42.2	18.4	24.9	14.5	100.0(4,974)	512.312 ***
	중	2.49(1.105)	27.5	16.7	34.7	21.0	100.0(3,197)	
	하	2.93(1.031)	14.2	14.1	35.9	35.8	100.0(870)	

\*p<.05, \*\*p<.01, \*\*\*p<.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06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_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연도별 추이)

#### ④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현재 행복한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 청소년의 83.1%가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 기준으로는 4점 만점에 3.10점(SD=.70)으로 나타났다. 주요 배경변인별 차이를 분석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행복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행복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가장 낮았으며,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 행복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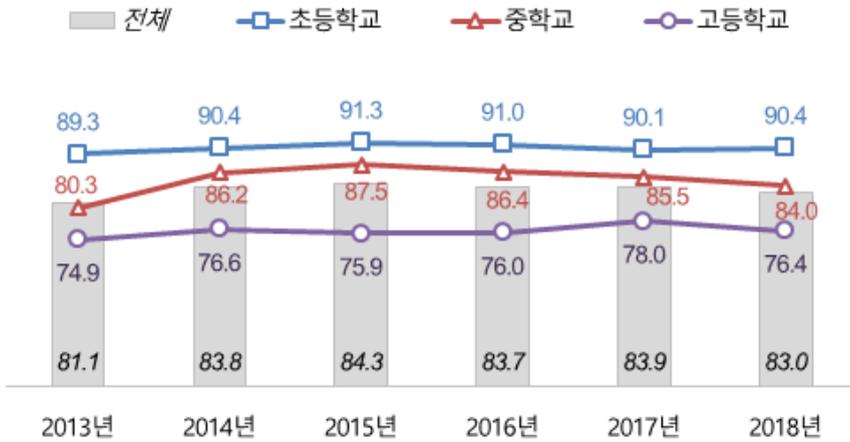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행복하다는 응답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가 201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 (1.5%p)과 고등학생(1.6%p)은 감소하였고, 초등학생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표 IV-144 현재 행복 정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 하다	전체(n)	$\chi^2$	
전체	3.10(0.704)	1.7	15.3	54.4	28.7	100.0(9,032)		
성별	남학생	3.19(0.693)	1.5	11.6	52.8	34.1	100.0(4,685)	192.760 ***
	여학생	3.00(0.702)	1.8	19.3	56.1	22.8	100.0(4,348)	
학교급	초등학교	3.38(0.684)	1.0	8.6	42.0	48.4	100.0(2,727)	885.914 ***
	중학교	3.08(0.677)	1.5	14.5	58.1	25.9	100.0(2,854)	
	고등학교	2.89(0.669)	2.3	21.2	61.1	15.3	100.0(3,451)	
지역 규모	대도시	3.13(0.693)	1.4	14.3	54.5	29.8	100.0(3,680)	16.850 **
	중소도시	3.07(0.714)	2.0	16.0	54.6	27.4	100.0(4,405)	
	읍면지역	3.12(0.698)	1.0	16.1	52.9	29.9	100.0(94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1(0.701)	1.7	14.7	54.7	28.9	100.0(8,243)	35.202 ***
	한부모가정	2.99(0.719)	1.6	21.5	53.1	23.8	100.0(598)	
	조손가정	3.10(0.841)	2.6	22.7	36.6	38.2	100.0(88)	
	기타	3.11(0.704)	0.8	17.4	52.0	29.8	100.0(96)	
학업 성적	상	3.27(0.675)	0.8	10.3	49.5	39.3	100.0(2,940)	487.808 ***
	중	3.11(0.672)	1.3	13.9	57.5	27.3	100.0(3,999)	
	하	2.84(0.729)	3.6	24.9	55.1	16.4	100.0(2,084)	
경제적 수준	상	3.25(0.676)	1.0	10.6	51.1	37.3	100.0(4,969)	678.418 ***
	중	2.99(0.676)	2.0	17.6	60.2	20.3	100.0(3,188)	
	하	2.67(0.716)	4.6	33.7	51.7	10.0	100.0(868)	

\*p<.05, \*\*p<.01, \*\*\*p<.001



\*주: '행복한 편이다'와 '매우 행복하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07 현재 행복 정도(연도별 추이)

행복하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행복하지 않다)을 보인 청소년(17.0%)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학업문제 때문에'가 44.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19.6%,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가 9.3%,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가 8.1%, '외모나 신체적 불만족'이 5.7%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배경변인별로 차이를 분석해 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여학생보다 학업문제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미래에 대한 불안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학업문제가 모두 높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의 의 경우 학업문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의 비중이 높았으며, 특히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에 대해서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문제 때문에 라는 응답은 높게 나타난 반면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라는 응답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학업 부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고, 특히 초등학생에게서 이러한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145 행복하지 않은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타	전체(n)	$\chi^2$	
전체	44.5	8.1	9.3	2.8	5.7	19.6	10.0	100.0(1,496)		
성별	남학생	51.3	8.8	7.3	3.4	3.5	14.8	10.9	100.0(601)	36.607 ***
	여학생	40.0	7.7	10.6	2.3	7.1	22.8	9.4	100.0(895)	
학교급	초등학교	44.1	15.8	12.3	3.5	8.6	11.4	4.3	100.0(258)	122.978 ***
	중학교	36.2	11.1	14.7	2.7	5.6	16.0	13.7	100.0(443)	
	고등학교	49.4	4.1	5.2	2.5	4.7	24.3	9.8	100.0(795)	
지역규모	대도시	43.0	8.3	8.1	3.2	6.3	21.0	10.1	100.0(564)	10.688
	중소도시	45.7	8.2	10.9	2.5	5.1	18.1	9.5	100.0(772)	
	읍면지역	44.3	7.2	5.8	2.3	5.9	22.1	12.4	100.0(160)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46.5	6.9	9.2	2.1	6.0	19.8	9.5	100.0(1,322)	58.594 ***
	한부모가정	31.2	17.0	9.2	8.2	3.7	18.8	11.9	100.0(135)	
	조손가정	19.5	24.1	15.3	6.3	0.0	17.4	17.4	100.0(21)	
	기타	33.7	17.1	10.2	4.2	0.0	17.5	17.3	100.0(17)	
학업성적	상	48.2	8.4	8.4	2.9	5.3	17.7	9.1	100.0(321)	11.930
	중	46.1	7.7	10.8	2.4	4.8	18.3	10.1	100.0(597)	
	하	40.9	8.5	8.2	3.1	6.8	22.1	10.5	100.0(579)	
경제적수준	상	50.9	8.3	10.1	0.9	4.8	15.3	9.7	100.0(562)	89.721 ***
	중	44.0	7.7	8.0	1.0	6.4	21.9	11.0	100.0(609)	
	하	34.7	8.6	10.3	9.3	5.5	22.9	8.6	100.0(324)	

\*p<.05, \*\*p<.01, \*\*\*p<.001



그림 IV-108 행복하지 않은 이유(연도별 추이)<sup>35)</sup>

35) 2014~2016년도 조사에 포함되었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가 2017년도 조사부터 제외됨에 따라 해당 문항이 없는 연도의 조사 결과만 비교함.

### ⑤ 삶의 만족도

2015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부터 포함되기 시작한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주관적인 안녕감(행복감)(subjective well-being)을 확인하고 삶의 만족도 수준에 대한 상대적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사용하는 삶의 만족도 캔트릴 사다리(Cantril ladder of life satisfaction)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고 있는데, 응답자로 하여금 0점에서 10점까지 점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0=worst, 10=best)을 의미한다(김영지 외, 2017: 301).

2018년 조사 결과를 보면, 1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 평균이 7.11점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가 실시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실시된 이후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남학생 응답자의 평균은 7.52점으로 여학생(6.67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별 차이는 2015년부터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별로 삶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값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2015년 6.6점에서 2016년에는 6.72점, 2017년에는 6.63점, 2018년에는 6.67점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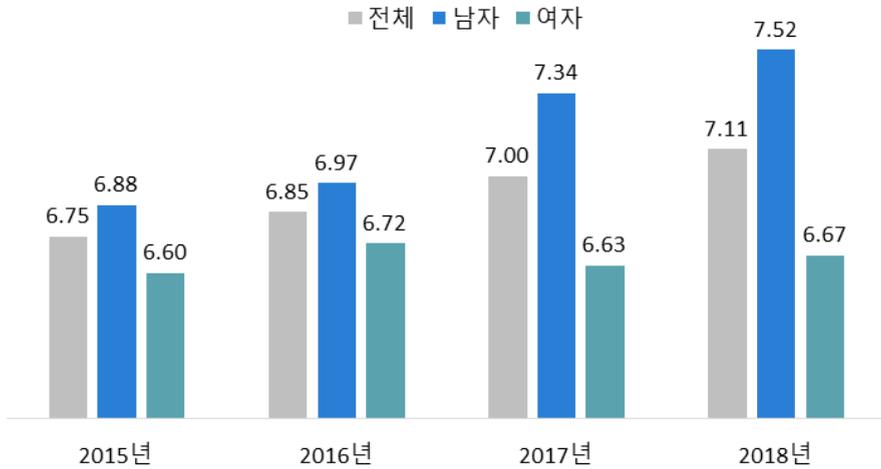


그림 IV-109 삶의 만족도 평균(연도별 추이)

2018년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학교유형별로 보면,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이후 초등학생의 ‘매우 높음’ 응답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6 삶의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⑩ 삶의 만족도 낮음										⑩ 삶의 만족도 높음	전체(n)	x <sup>2</sup>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7.11(2.356)	0.7	1.1	2.1	4.2	6.1	12.4	9.1	14.0	17.1	13.6	19.4	100.0(9,042)		
성별	남학생	7.52(2.217)	0.6	0.8	1.3	2.9	4.0	10.8	8.0	14.2	18.5	15.0	23.9	100.0(4,692)	321.706 ***
	여학생	6.67(2.421)	0.8	1.5	3.0	5.8	8.5	14.1	10.3	13.8	15.6	12.1	14.5	100.0(4,351)	
학교 급	초등학교	8.11(2.181)	0.5	0.9	0.9	1.7	3.5	8.2	4.7	8.5	14.9	19.6	36.5	100.0(2,741)	1226.559 ***
	중학교	7.06(2.260)	0.4	1.1	2.3	3.8	6.2	11.9	9.4	16.1	18.8	14.0	15.8	100.0(2,854)	
	고등학교	6.35(2.275)	1.1	1.4	2.8	6.6	8.1	16.2	12.4	16.6	17.5	8.6	8.7	100.0(3,448)	
지역 규모	대도시	7.22(2.304)	0.5	1.2	1.8	3.5	6.4	11.8	8.6	14.6	17.3	14.0	20.4	100.0(3,680)	34.526*
	중소도시	7.01(2.404)	1.0	1.2	2.3	4.9	6.1	12.7	9.2	13.7	17.1	13.5	18.4	100.0(4,409)	
	읍면지역	7.14(2.309)	0.5	0.8	2.2	4.2	5.3	13.4	10.7	13.3	16.7	12.9	20.1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14(2.336)	0.6	1.1	1.9	4.3	6.0	12.0	9.1	14.2	17.4	13.9	19.4	100.0(8,250)	83.347 ***
	한부모가정	6.69(2.439)	1.3	0.7	3.6	4.5	7.7	16.6	11.0	12.2	15.5	10.3	16.5	100.0(600)	
	조손가정	7.16(2.990)	2.8	3.9	2.2	4.6	8.0	11.2	2.8	5.6	14.1	11.0	33.7	100.0(89)	
	기타	6.77(2.588)	1.3	1.4	3.7	1.8	10.2	21.8	3.0	13.5	10.3	11.6	21.3	100.0(96)	
학업 성적	상	7.83(2.130)	0.5	0.6	1.2	2.3	4.1	6.9	7.2	13.4	18.1	18.0	27.9	100.0(2,947)	780.001 ***
	중	7.14(2.243)	0.4	0.9	1.7	3.6	5.8	14.0	9.4	14.6	17.7	13.8	18.2	100.0(4,003)	
	하	6.03(2.470)	1.6	2.5	4.2	8.3	9.8	17.2	11.4	13.5	14.7	7.2	9.7	100.0(2,084)	
경제 적 수준	상	7.75(2.115)	0.3	0.6	1.0	2.4	4.1	8.6	7.7	13.2	18.5	17.4	26.2	100.0(4,981)	1024.520 ***
	중	6.55(2.336)	0.8	1.6	2.6	5.4	7.9	17.2	10.8	15.1	16.6	9.7	12.4	100.0(3,185)	
	하	5.52(2.466)	2.4	2.7	6.6	11.0	11.6	16.9	11.1	14.3	11.1	6.4	5.9	100.0(868)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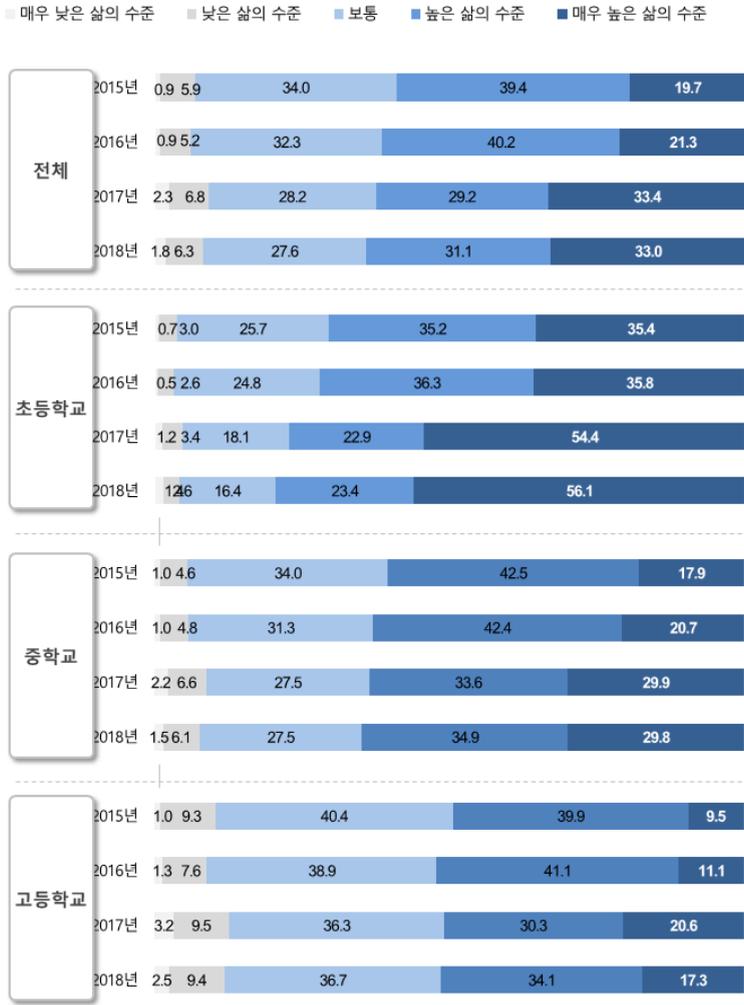


그림 IV-110 삶의 만족도 응답 구성(연도별 추이)

이와 더불어 본 조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국제비교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4년마다 조사를 실시하는 “학령기아동 건강행태연구(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 HBSC)를 토대로 HBSC연구

에 포함된 41개국<sup>36)</sup>의 전체 평균과 한국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제시해 오고 있다. 연령 계산 방법의 차이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비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되는 폭이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47 삶의 만족도(한국과 WHO의 HBSC 연구결과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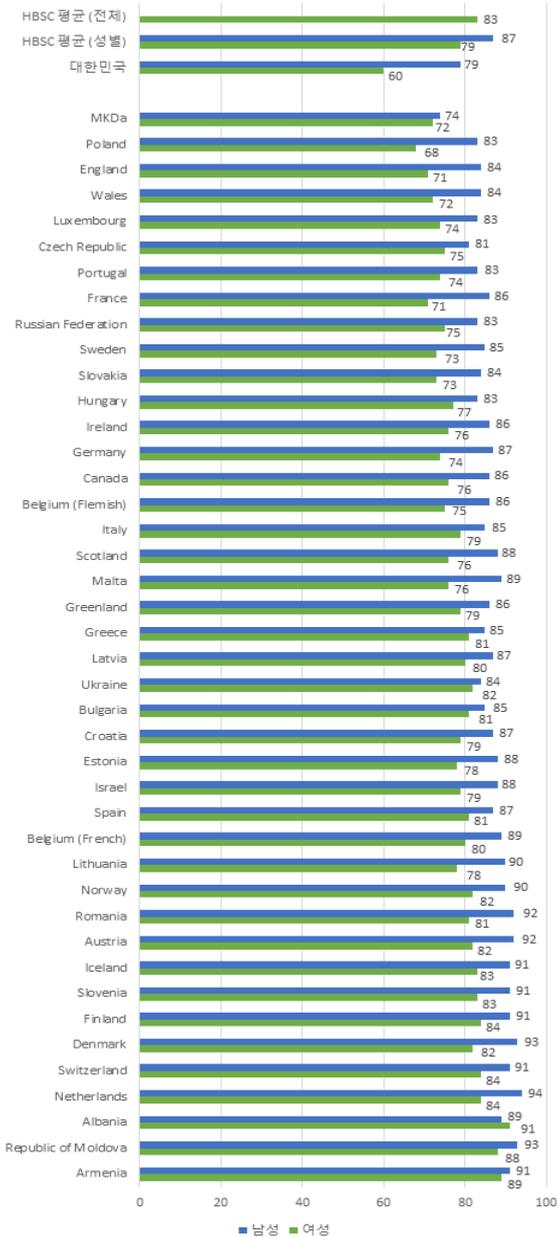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11세	13세	15세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전체	2016 <sup>a)</sup>	80	73	70
		2017	80	76	69
		2018	86	79	70
	남자	2016	82	78	74
		2017	81	82	77
		2018	87	86	79
	여자	2016	78	67	67
		2017	79	68	61
		2018	85	72	60
HBSC*	전체	2009/2010 <sup>b)</sup>	88	85	83
		2013/2014 <sup>c)</sup>	89	86	83
	남자	2009/2010	88	85	83
		2013/2014	89	89	87
	여자	2009/2010	88	83	79
		2013/2014	89	82	79

\*출처: a) 김영지 외(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 p. 304  
 b) Bradshaw, J., B. Martorano, L. Natali, & C. de Neubourg (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Working Paper 2013-03. UNICEF Office of Research, Florence. p.11.  
 c) Inchley, J., Currie, F., Young, T., Samdal, O., Torsheim, T., Augustson, L., Mathiso, F., Aleman-Diaz, A., Molcho, M., Weber, M., & Barnekow, V. (2016). Growing up unequal. HBSC 2016 study(2013/2014 survey).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HBSC) STUDY: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13/2014 survey. pp. 76-77

\*주: 0점에서 10점까지의 11점 척도 중, 6점 이상을 응답한 아동청소년의 비율

36) 알바니아, 그리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몰도바, 아르메니아, 스코틀랜드, 몰타, 스페인, 노르웨이, 루마니아,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덴마크, 스위스, 불가리아, 리투아니아, 영국, 이스라엘, 포르투갈, 웨일즈,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룩셈부르크, 벨기에, 라트비아, 독일, 캐나다, 폴란드, 슬로베니아, 그린란드, 러시아연방, 프랑스, 체코, 마케도니아



\* 주1)평균은 조사대상 국가인 42개 국가의 전체 평균임

주2) 0점에서 10점까지 중 6점 이상을 응답한 비율임

주3) 이 그래프는 HBSC 연구의 일부(Inchley et al, 2016: p.77)이며, 연구진이 한국 통계치를 추가하여 재작성하였음.

그림 IV-111 삶의 만족도 국제비교(15세 청소년 기준 성별비교)

전 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가 개발되고 있다. 올해는 Children's Worlds의 국제 아동 삶의 질 조사(the International Survey of Children's Well-Being: ISCWeB)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 삶의 만족도 척도(Student Life Satisfaction Scale : SLSS)를 신규로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 42.4%는 자신의 삶에 매우 만족(8점-10점)하고 있는 반면, 3.1%는 매우 불만족(0-2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성별, 연령 등에서 유의했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도 삶의 만족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IV-147-1. 삶의 만족도(학생삶의만족도 척도 평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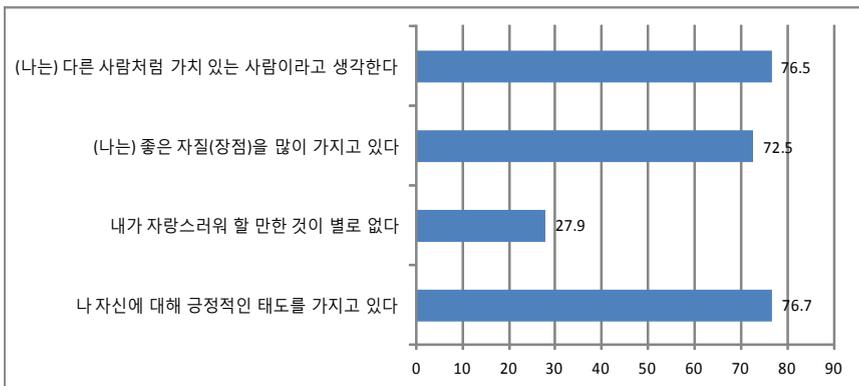
구분	평균 (표준편차)	0-2점 미만	2-4점 미만	4-6점 미만	6-8점 미만	8-10 점	전체(n)	$\chi^2$	
전체	7.00(2.45)	3.1	7.8	22.5	24.2	42.4	100.0(9057)		
성별	남학생	7.45(2.31)	2.3	5.1	18.6	24.2	49.7	100.0(4702)	304.687 ***
	여학생	6.52(2.51)	4.0	10.7	26.7	24.2	34.4	100.0(4355)	
학교 급	초등학교	8.05(2.23)	2.0	4.1	12.2	17.0	64.7	100.0(2744)	974.426 ***
	중학교	6.95(2.38)	3.0	7.3	22.9	26.4	40.5	100.0(2858)	
	고등학교	6.22(2.38)	4.1	11.1	30.4	28.2	26.2	100.0(3455)	
지역 규모	대도시	7.12(2.44)	2.8	7.5	21.6	23.8	44.4	100.0(3690)	26.723* *
	중소도시	6.90(2.49)	3.6	8.5	22.6	24.2	41.1	100.0(4414)	
	읍면지역	7.06(2.31)	2.3	6.0	25.5	25.9	40.3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04(2.43)	2.9	7.6	22.2	24.5	42.9	100.0(8263)	72.085* **
	한부모가정	6.47(2.59)	4.9	10.3	27.6	24.2	33.0	100.0(601)	
	조손가정	6.72(3.22)	11.7	10.2	12.1	14.2	51.8	100.0(89)	
학업 성적	기타	7.06(2.56)	1.7	8.9	31.1	11.9	46.4	100.0(97)	819.071 ***
	상	7.81(2.22)	1.5	4.7	14.6	21.6	57.7	100.0(2948)	
	중	7.02(2.32)	2.3	6.7	23.9	25.6	41.5	100.0(4011)	
경제 적 수준	하	5.82(2.55)	6.9	14.4	31.2	25.2	22.3	100.0(2090)	959.836 ***
	상	7.66(2.22)	1.7	4.6	16.3	23.4	54.0	100.0(4985)	
	중	6.44(2.41)	3.6	9.9	29.4	26.2	30.9	100.0(3195)	
하	5.30(2.52)	9.8	18.4	33.0	21.7	17.1	100.0(870)		

\* $p < .05$ , \*\* $p < .01$ , \*\*\* $p < .001$

주) 학생 삶의 만족도 척도는 6개 항목(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나는 내 인생이 좋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 행복감을 느낀다)에 대한 평균값임. 응답범주는 11점 척도(0점-10점)로 측정되었으며, 높을수록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⑥ 자아존중감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4개 항목에 대해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로 조사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긍정적인 응답(그런편이다, 매우 그렇다)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76.5%,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72.5%, ‘내가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부정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27.9%,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76.7%로 응답해 각각의 자아존중감 관련 항목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조사 결과를 보였다.



\*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친 비율(%)

그림 IV-112 자아존중감 항목별 비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개별 항목에 대해 평균값 기준으로 살펴보면, 먼저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는 조사항목의 전체 평균값은 3.00점(SD=.94)이었다.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초등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을 가치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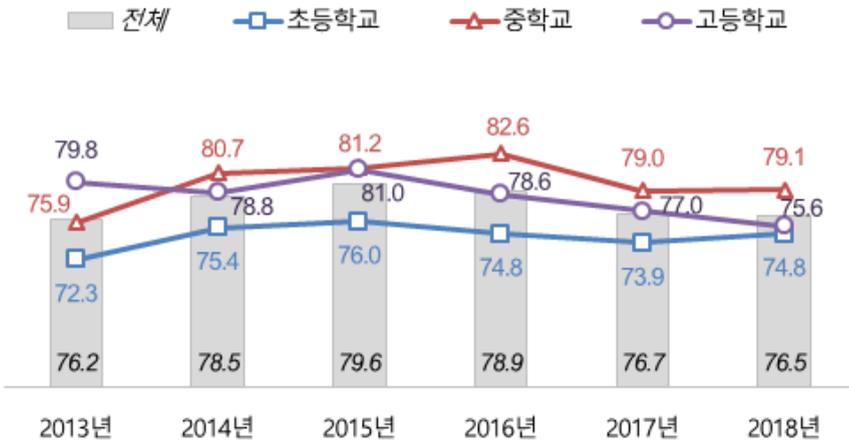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긍정적 응답 비율이 79.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이래 조금씩 감소해오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으며, 고등학생의 응답 비율 감소 경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8 자아존중감\_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3.00(0.940)	10.3	13.3	42.6	33.9	100.0(9,044)		
성별	남학생	3.02(0.991)	12.8	9.9	40.2	37.1	100.0(4,694)	182.666 ***
	여학생	2.98(0.881)	7.6	16.8	45.1	30.4	100.0(4,350)	
학교급	초등학교	2.99(1.082)	16.8	8.4	33.3	41.4	100.0(2,733)	427.699 ***
	중학교	3.06(0.890)	8.0	12.9	44.4	34.7	100.0(2,857)	
	고등학교	2.96(0.852)	7.1	17.3	48.4	27.2	100.0(3,454)	
지역 규모	대도시	3.04(0.946)	10.2	11.9	41.0	36.8	100.0(3,682)	31.502 ***
	중소도시	2.96(0.933)	10.4	14.2	44.1	31.3	100.0(4,409)	
	읍면지역	3.01(0.940)	9.9	13.8	41.6	34.7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1(0.938)	10.2	12.8	42.6	34.4	100.0(8,251)	32.662 ***
	한부모가정	2.93(0.916)	9.3	17.9	43.5	29.3	100.0(600)	
	조손가정	2.74(1.043)	17.0	19.2	36.7	27.1	100.0(88)	
학업 성적	상	3.22(0.928)	9.0	7.3	35.9	47.8	100.0(2,944)	539.282 ***
	중	2.96(0.921)	10.5	12.9	46.6	30.0	100.0(4,003)	
	하	2.76(0.922)	11.6	22.4	44.2	21.8	100.0(2,089)	
경제적 수준	상	3.11(0.959)	10.8	8.9	39.3	41.0	100.0(4,972)	412.793 ***
	중	2.90(0.903)	9.9	16.4	47.1	26.6	100.0(3,194)	
	하	2.76(0.876)	9.0	26.5	44.4	20.1	100.0(870)	

\*p<.05, \*\*p<.01, \*\*\*p<.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13 자아존중감\_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나는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조사항목의 전체 평균값은 2.95점 (SD=.88)이었다.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을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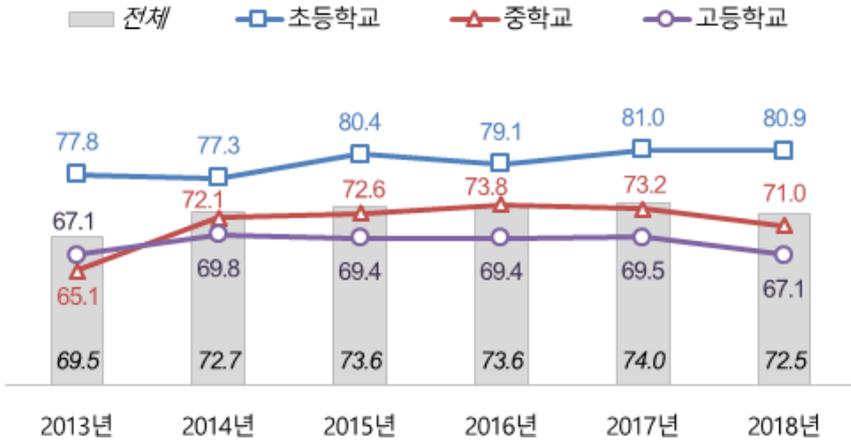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까지 긍정적 인식 비율이 증가하다 2018년의 경우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9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2.95(0.887)	7.3	20.2	43.0	29.5	100.0(9,035)		
성별	남학생	3.00(0.916)	8.7	16.1	42.1	33.1	100.0(4,694)	150.658
	여학생	2.89(0.851)	5.9	24.6	44.0	25.6	100.0(4,342)	***
학교급	초등학교	3.13(0.888)	7.3	11.8	41.3	39.6	100.0(2,734)	311.853
	중학교	2.90(0.894)	8.2	20.9	43.6	27.3	100.0(2,854)	***
	고등학교	2.84(0.857)	6.7	26.2	43.9	23.2	100.0(3,447)	
지역 규모	대도시	2.98(0.898)	7.6	18.3	42.2	31.9	100.0(3,682)	34.004
	중소도시	2.91(0.887)	7.6	21.8	43.2	27.5	100.0(4,403)	***
	읍면지역	2.99(0.836)	5.1	19.7	45.6	29.5	100.0(95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96(0.885)	7.2	19.8	43.0	30.0	100.0(8,245)	27.283
	한부모가정	2.81(0.871)	7.8	25.7	44.2	22.3	100.0(596)	**
	조손가정	2.83(1.014)	14.1	18.7	37.6	29.6	100.0(89)	
기타	기타	2.89(0.898)	7.7	22.8	42.1	27.4	100.0(97)	
	상	3.24(0.824)	4.5	11.1	39.7	44.7	100.0(2,942)	773.992
	중	2.90(0.851)	7.1	20.3	47.9	24.7	100.0(4,001)	***
학업 성적	하	2.61(0.903)	11.7	32.6	38.5	17.2	100.0(2,084)	
	상	3.09(0.873)	6.5	14.5	42.4	36.6	100.0(4,970)	419.751
	중	2.81(0.864)	7.7	25.3	45.1	21.9	100.0(3,188)	***
경제적 수준	하	2.62(0.883)	10.5	33.7	39.2	16.6	100.0(870)	

\* $p < .05$ , \*\* $p < .01$ , \*\*\* $p < .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14 자아존중감\_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연도별 추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조사항목의 전체 평균값은 1.95점 (SD=.88)이었다.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양부모가정, 조손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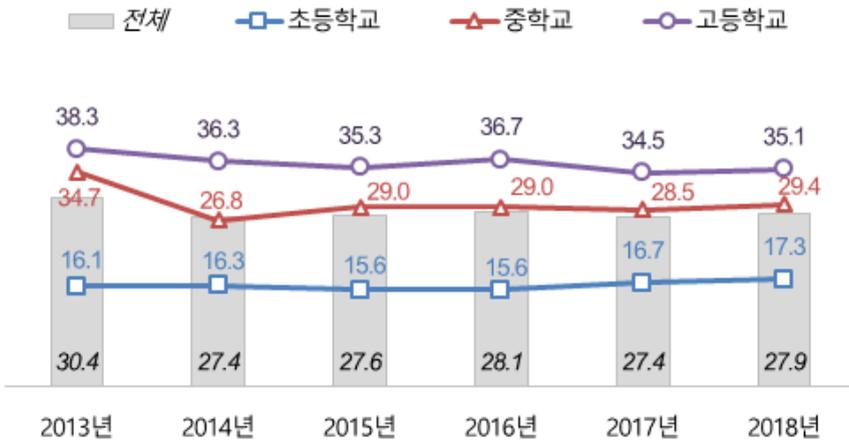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응답 비율은 조금씩 감소해 오다 201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V-150 자아존중감\_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1.95(0.875)	37.0	35.1	23.9	4.0	100.0(9,036)		
성별	남학생	1.82(0.840)	43.1	35.0	19.0	3.0	100.0(4,690)	223.457 ***
	여학생	2.09(0.890)	30.4	35.2	29.3	5.1	100.0(4,347)	
학교급	초등학교	1.68(0.821)	52.5	30.3	14.6	2.7	100.0(2,730)	478.484 ***
	중학교	2.00(0.877)	33.8	36.8	24.9	4.5	100.0(2,854)	
	고등학교	2.12(0.864)	27.4	37.5	30.5	4.5	100.0(3,452)	
지역 규모	대도시	1.90(0.873)	39.9	33.6	22.9	3.6	100.0(3,681)	32.908 ***
	중소도시	2.00(0.881)	34.4	36.0	25.2	4.5	100.0(4,402)	
	읍면지역	1.91(0.848)	37.9	36.8	22.1	3.2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4(0.871)	37.4	35.4	23.4	3.9	100.0(8,242)	38.509 ***
	한부모가정	2.12(0.923)	31.5	30.1	32.8	5.5	100.0(601)	
	조손가정	1.87(0.834)	37.9	41.1	17.2	3.8	100.0(89)	
	기타	1.95(0.840)	33.9	41.3	21.0	3.8	100.0(97)	
학업 성적	상	1.67(0.789)	51.1	33.1	13.7	2.1	100.0(2,945)	684.614 ***
	중	1.97(0.849)	34.3	37.5	25.1	3.2	100.0(3,998)	
	하	2.30(0.905)	22.3	33.4	36.2	8.1	100.0(2,085)	
경제적 수준	상	1.77(0.828)	45.9	33.8	17.6	2.6	100.0(4,967)	571.138 ***
	중	2.11(0.868)	28.2	37.5	29.7	4.6	100.0(3,191)	
	하	2.40(0.892)	18.1	33.5	38.8	9.7	100.0(870)	

\*p<.05, \*\*p<.01, \*\*\*p<.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15 자아존중감\_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연도별 추이)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조사항목의 전체 평균값은 3.02점(SD=.85)이었다. 주요 배경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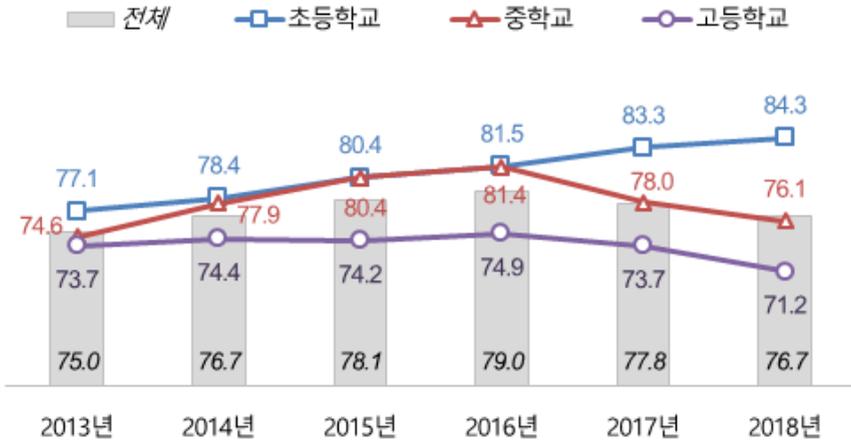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응답 비율은 2016년까지 증가해 오다 이후 조금씩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201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p 감소하였으며, 초등학생만 1%p 증가하였고, 중학생(1.9%p)과 고등학생(2.5%p)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52 자아존중감\_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3.02(0.847)	5.7	17.6	45.3	31.4	100.0(9,041)		
성별	남학생	3.10(0.877)	7.0	13.0	43.3	36.7	100.0(4,695)	242.242 ***
	여학생	2.95(0.806)	4.2	22.6	47.4	25.8	100.0(4,346)	
학교급	초등학교	3.19(0.827)	5.4	10.3	44.3	40.0	100.0(2,732)	267.379 ***
	중학교	3.02(0.858)	5.9	18.0	44.2	31.8	100.0(2,854)	
	고등학교	2.90(0.831)	5.7	23.1	46.9	24.3	100.0(3,455)	
지역 규모	대도시	3.05(0.853)	5.9	16.0	44.7	33.3	100.0(3,686)	22.018 **
	중소도시	2.99(0.848)	5.8	18.9	45.5	29.8	100.0(4,402)	
	읍면지역	3.05(0.813)	4.2	17.9	46.3	31.7	100.0(95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04(0.843)	5.5	17.1	45.4	31.9	100.0(8,247)	50.949 ***
	한부모가정	2.90(0.842)	5.8	23.7	45.6	24.9	100.0(600)	
	조손가정	2.94(1.004)	14.6	9.1	43.9	32.4	100.0(89)	
	기타	2.88(0.887)	5.1	30.4	36.0	28.5	100.0(97)	
학업 성적	상	3.24(0.804)	4.0	11.2	41.5	43.3	100.0(2,940)	490.787 ***
	중	3.01(0.823)	5.4	17.1	48.5	29.1	100.0(4,006)	
	하	2.75(0.864)	8.5	27.8	44.4	19.3	100.0(2,087)	
경제적 수준	상	3.15(0.831)	5.2	12.5	44.3	38.1	100.0(4,970)	415.999 ***
	중	2.92(0.830)	5.8	21.2	48.0	25.0	100.0(3,192)	
	하	2.68(0.848)	7.7	34.1	40.8	17.4	100.0(870)	

\* $p < .05$ , \*\* $p < .01$ , \*\*\* $p < .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16 자아존중감\_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연도별 추이)

### ⑦ 고민거리 대화상대

청소년들이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누구와 이야기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어머니와 친구라는 응답이 각각 38.5%, 3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없다'는 응답이 9.6%, 형제·자매 6.1%, 아버지 5.2% 순으로 나타났으며, 담임교사와 학교상담교사, 청소년상담센터 등은 각각 1%미만의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배경변인별로도 거의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특히 고민거리 대화상대로 어머니와 친구를 응답한 경우 배경변인별로 약간의 증감이 있을 뿐 대부분 유사한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고민거리 대화상대로 특히 어머니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집단은 초등학교생과 양부모가정,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었다. 반면 친구를 고민거리 대화상대로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생이, 조손가정이나 양부모가정보다는 한부모가정이,

학업성적이 상과 중인 청소년보다는 하인 청소년이,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상이 청소년보다는 중이나 하인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민에 대한 대화상대 조사 결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없다’는 응답에 대한 응답이 약 10%정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과 학교교사·상담교사·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고민거리 대화 상대가 없다는 응답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자청소년보다는 남자청소년에게서(남: 10.3%, 여: 8.8%), 그리고 양부모가정보다는 한부모·조손·기타 가정에서 더 응답률이 높았으며, 학업성적이나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경우 ‘없다’는 응답이 각각 11.7%, 13.0%로 평균인 9.6%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하인 청소년들도 11.3%, 경제적 수준 중과 하인 청소년들도 각각 11.4%, 16.9%로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고민이나 걱정거리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학교교사·상담교사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의 경우 모두 각각 1% 미만의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며, 청소년들의 고민상담 측면에서 이들 전문가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민 대화상대를 엄마라고 응답한 비율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친구라고 응답한 비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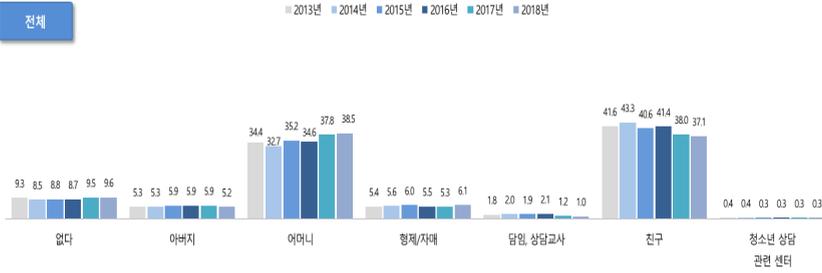
표 IV-153 고민거리 대화 상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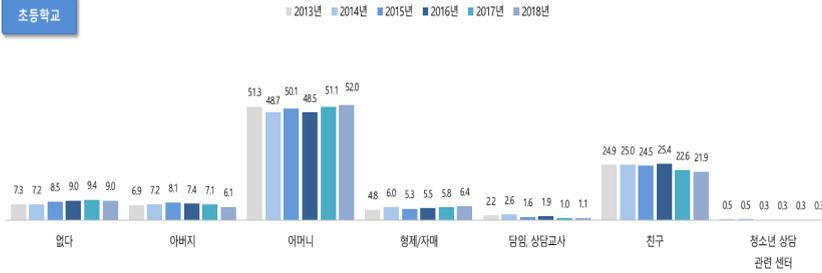
구분	없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	담임선생님	학교상담선생님	친구	이웃/친척	청소년상담관련기관선생님	기타	전체(n)	$\chi^2$	
전체	9.6	5.2	38.5	6.1	0.4	0.6	37.1	0.9	0.3	1.4	100.0(8,924)		
성별	남학생	10.3	8.0	40.4	4.9	0.5	0.3	33.1	0.8	0.3	1.3	100.0(4,617)	238.741 ***
	여학생	8.8	2.2	36.4	7.4	0.3	0.9	41.3	1.0	0.2	1.5	100.0(4,307)	
학교급	초등학교	9.0	6.1	52.0	6.4	0.2	0.9	21.9	1.3	0.3	1.8	100.0(2,712)	501.245 ***
	중학교	10.5	5.4	34.2	5.5	0.7	0.6	40.2	1.0	0.3	1.6	100.0(2,813)	
	고등학교	9.2	4.3	31.2	6.4	0.4	0.3	46.5	0.5	0.2	0.9	100.0(3,399)	
지역규모	대도시	8.8	5.3	40.2	6.2	0.5	0.5	35.8	1.0	0.3	1.5	100.0(3,640)	20.418
	중소도시	10.1	5.1	37.4	5.9	0.3	0.7	37.9	0.9	0.3	1.3	100.0(4,346)	
	읍면지역	9.9	4.7	36.7	6.7	0.9	0.7	38.0	0.7	0.2	1.5	100.0(938)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9.3	4.9	39.6	5.9	0.4	0.6	36.8	0.8	0.3	1.4	100.0(8,138)	183.171 ***
	한부모가정	11.7	9.3	24.7	8.5	1.1	0.6	41.8	1.3	0.3	0.6	100.0(592)	
	조손가정	13.0	3.9	23.1	9.1	0.0	1.9	35.0	10.0	1.6	2.5	100.0(89)	
	기타	14.8	1.6	34.8	8.1	1.0	0.0	35.9	0.8	0.0	3.1	100.0(97)	
학업성적	상	8.0	5.9	46.6	5.4	0.2	0.5	30.8	0.9	0.2	1.3	100.0(2,909)	258.140 ***
	중	9.8	5.3	38.2	6.7	0.4	0.5	36.6	0.7	0.2	1.7	100.0(3,953)	
	하	11.3	3.9	27.3	6.1	0.9	0.9	46.8	1.3	0.4	1.1	100.0(2,054)	
경제적수준	상	7.1	5.9	44.6	5.8	0.3	0.5	33.2	0.8	0.3	1.6	100.0(4,907)	287.655 ***
	중	11.4	4.3	32.9	6.1	0.5	0.7	41.7	1.0	0.2	1.2	100.0(3,152)	
	하	16.9	4.7	24.0	8.2	1.0	0.7	42.2	1.0	0.3	1.1	100.0(857)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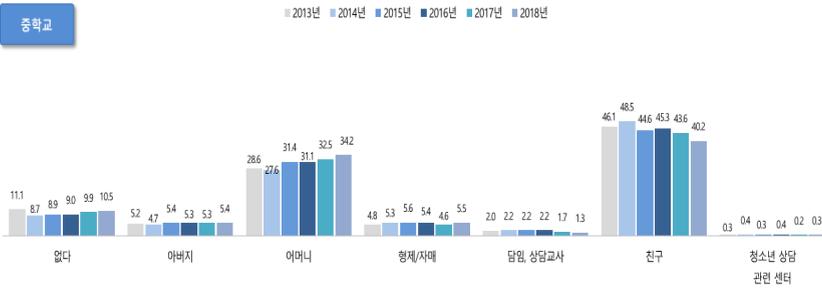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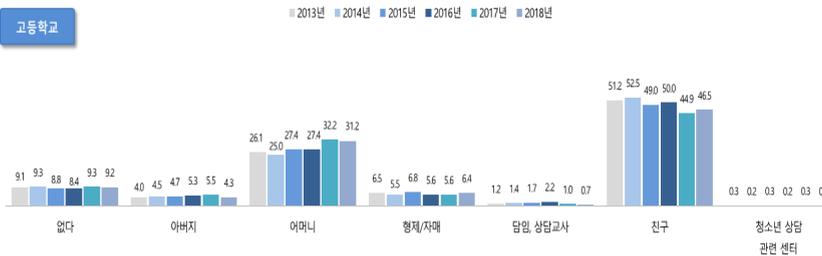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 '담임교사와 학교상담교사는 합친 값은 제시하였고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인 이웃/친척, 기타항목은 제외함.

그림 IV-117 고민거리 대화 상대(연도별 추이)

##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 (1) 아동·청소년복지 예산 국가 간 비교

#### ① 아동·청소년 빈곤율

빈곤선은 3년 주기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연도별 최저생계비와 중위값의 일정 비율(40%, 50%, 60%)을 사용하여 결정된다(강신욱, 유진영, 이주미, 2016: 22, 김영지 외, 2017: 317에서 재인용). 아동빈곤율은 전체 아동 중 빈곤선 아래에 있는 아동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정부의 최저생계비 기준의 절대빈곤율과 중위소득 기준의 상대빈곤율을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강신욱 외, 2016, 김영지 외, 2017: 317에서 재인용).

표 IV-154 아동빈곤율

(단위 : %)

구분	절대아동빈곤율(최저생계비 기준)			상대아동빈곤율(중위 50%기준)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1인가구 제외	2006	8.1	5.9	7.1	12.4	11.1	11.1
	2007	8.2	5.9	7.1	12.9	11.5	11.5
	2008	8.2	5.6	7.1	12.1	10.8	10.8
	2009	8.3	4.9	7.3	12.4	10.2	10.9
	2010	7.5	4.8	6.6	11.3	9.3	10.1
	2011	7.1	4.3	6.5	11.1	9.7	10.3
	2012	6.1	4.4	5.9	10.5	9.4	10.2
	2013	5.3	3.6	4.7	9.1	8.5	8.4
	2014	4.7	3.3	4.0	8.4	7.9	7.5
	2015	5.0	3.6	4.5	8.7	7.9	7.4
	2016	5.4	3.7	4.5	8.7	7.6	7.2

구분		절대아동빈곤율(최저생계비 기준)			상대아동빈곤율(중위 50%기준)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경상소득	가처분소득
1인가구 포함	2006	8.1	5.9	7.1	12.1	10.5	10.7
	2007	8.2	5.9	7.1	12.3	11.1	11.2
	2008	8.2	5.6	7.0	11.6	10.3	10.3
	2009	8.3	4.9	7.3	11.7	9.2	10.2
	2010	7.5	4.8	6.6	10.8	8.9	9.5
	2011	7.1	4.3	6.5	10.6	9.2	9.9
	2012	6.1	4.4	5.9	9.5	9.0	9.4
	2013	5.3	3.6	4.7	8.4	7.8	7.9
	2014	4.7	3.3	4.0	7.7	7.0	7.0
	2015	5.0	3.6	4.5	8.1	7.2	6.9
	2016	5.4	3.7	4.5	7.6	6.9	6.7

\* 출처: 김영지 외(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총괄보고서. p. 378  
강신욱 외(2016).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85, 88. 표 재구성.  
여유진 외(2017). 2017년 빈곤통계연보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89, 92. 표 재구성.  
\* 원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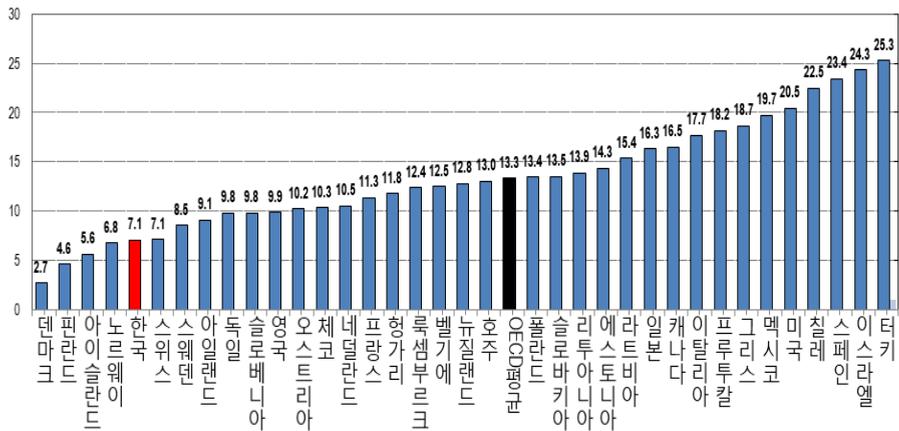
- \* 주: 1) 전가구 기준,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농어가가구 제외  
2) 시장소득은 시장(노동, 금융, 서비스 시장 등)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의 합계,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연금·정부지원금, 가처분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제외한 소득  
3) 상대적 빈곤율: 중위소득의 50%를 빈곤기준선으로 잡아 이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의 비율

1인가구를 제외하고 빈곤선 아래에 있는 아동의 비율을 아동빈곤율로 볼 수 있는데, 절대아동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2009년의 경우 8.3%를 기록한 이후 2014년 4.7%까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2015년 이후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상소득은 3.7%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가처분 소득은 전년과 동일한 4.5%로 나타났다.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상대아동빈곤율의 경우에는 2016년에는 시장소득 기준 8.7%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며, 경상소득과 가처분 소득은 각각 7.6%, 7.2%로 전년 대비 0.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아동빈곤율 국제비교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빈곤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 데이터(Family database)와 관련된 보고 자료

를 활용해왔다. OECD국가와의 비교에서 활용되는 빈곤율은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에 해당하는 0세~17세의 아동 비율로 산출되는데, OECD(2016) 자료에 따르면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할 수 있는 36개 국가 중 덴마크(2.7%), 핀란드(4.6%), 아이슬란드(5.6%), 노르웨이(6.8%)의 뒤를 이어 스위스와 동일한 7.1%로 5번째로 낮은 빈곤율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빈곤율이 OECD 국가의 전체 평균인 13%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라는 점을 드러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낮은 빈곤율 수치는 아동빈곤율이 20%가 넘는 칠레, 이스라엘, 스페인, 터키, 미국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김영지 외, 2017: 318).



\* 출처: OECD(2016). Family Database: Child pove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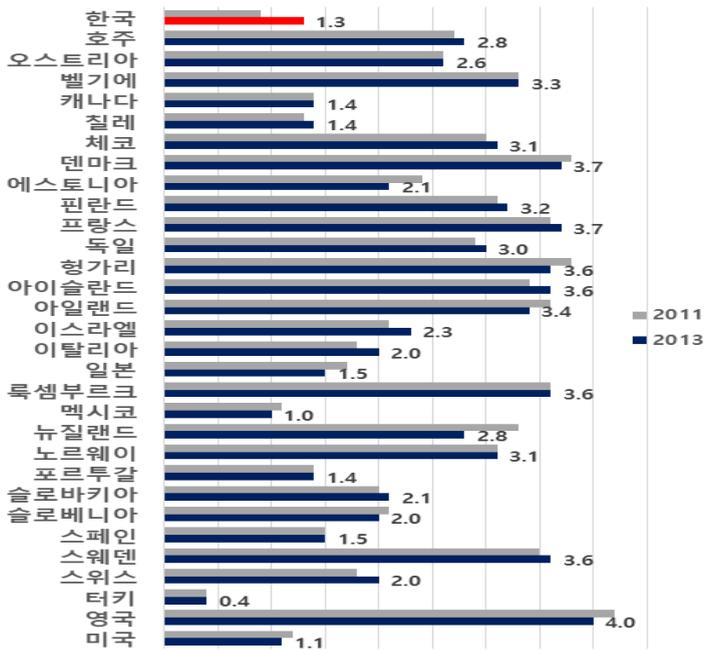
\* 주: 중위소득 50%이하인 전체인구 대비 0세~17세 아동의 비율(%). 일본과 뉴질랜드는 2012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한국, 멕시코는 2014년, 나머지 국가는 2013년도 데이터 활용(OECD, 2016)

그림 IV-118 0세~17세 아동빈곤율 OECD 국제비교

## (2) 아동·청소년관련 복지예산 국가 간 비교

우리나라의 아동을 포함한 가족복지지출 예산에 대한 국제비교를 위해 본 조사에서는 OECD의 SOCX(Social Expenditure Database)의 GDP대비 아동가족

부문(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지출 관련 데이터를 추출하여 활용하고 있다. OECD의 SOCX의 가장 최근자료는 2013년도 자료로서, 이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기준 한국의 GDP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은 1.3%로 2011년의 0.9%보다 0.4%p 상승하였다. 하지만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수치는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국보다 낮은 비율을 보인 국가로는 터키 0.4%, 멕시코 1%, 미국 1.1% 정도였으며, 캐나다, 칠레,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은 1.4% 또는 1.5%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지 외, 2017: 319).



\* 출처: OECD(2017). StateExtracts. Social Expenditure, Family.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SOCX_AGG) 에서 데이터를 인출하여 그래프 작성함.

- \* 주: 1) 2011년 또는 2013년 데이터가 누락된 네덜란드와 폴란드 수치는 그래프 작성 시 제외함.
- 2) 그래프의 수치는 가독성을 위해 2013년 것만 제시하였음.

그림 IV-119 OECD 국가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2011, 2013)

아동가족관련 정책을 위한 지출에는 현금 급여(cash benefits)와 현물서비스<sup>37)</sup>가 포함되는데, 2013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아동가족정책을 위한 지출의 대부분은(1.3% 중 0.9%) 현물서비스였으며, 현금 급여는 0.2%수준이었다. 현금 급여의 경우 2011년의 0.1%보다는 증가한 것이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현금 급여 및 현물서비스 모두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김영지 외, 2017: 320).

###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수준

#### ① 취약계층 아동현황

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455,997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3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와 비교하면 24세 미만 수급자의 수는 54,752명이 감소하여 전체 수급자 수의 감소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의 24세 미만 수급자를 연령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24세 미만 수급자 전체 455,997명 중 0세-9세는 85,025명으로 전체의 18.7%를 차지했으며, 10-14세는 120,662명(26.5%), 15-19세 청소년은 181,195명(39.7%)으로 가장 큰 분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세 청소년은 69,115명으로 15.2%를 차지하였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5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80.5%로 나타났다.

---

37) 현금급여에는 아동가족수당, 육아휴직, 기타 현금급여가, 그리고 현물서비스에는 의료서비스, 보육가사 및 방과후 돌봄 서비스 등과 기타 현물지원이 포함된다(OECD, 2012. 이주연·김미숙, 2013: 91)에서 재인용

표 IV-15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4세 미만)

(단위 : 명)

연도		0-24세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수급자 전체
2004		432,666	30,641	82,724	127,251	141,729	50,321	1,337,714
2005		464,888	32,015	87,408	143,017	150,698	51,750	1,425,684
2006		471,503	30,757	85,431	147,672	158,400	49,243	1,449,832
2007		468,795	29,405	79,163	144,829	165,833	49,565	1,463,140
2008		457,122	27,073	70,251	138,023	169,986	51,789	1,444,010
2009		466,872	28,338	65,428	135,623	179,584	57,899	1,482,719
2010		445,080	27,106	56,051	124,724	176,277	60,922	1,458,198
2011		407,415	25,104	47,787	109,979	163,648	60,897	1,379,865
2012		364,650	22,412	41,804	93,517	146,939	59,978	1,300,499
2013		337,810	20,871	37,804	81,506	136,087	61,542	1,258,582
2014	명	315,603	20,428	34,928	71,185	125,294	63,768	1,237,386
	%	100.0	6.5	11.1	22.6	39.7	20.2	-
2015	명	524,209	24,242	73,176	137,462	216,066	73,263	1,554,484
	%	100.0	4.6	14.0	26.2	41.2	14.0	-
2016	명	510,749	21,988	73,282	133,922	209,498	72,059	1,539,539
	%	100.0	4.3	14.3	26.2	41.0	14.1	-
2017	명	455,997	19,886	65,139	120,662	181,195	69,115	1,491,650
	%	100.0	4.4	14.3	26.5	39.7	15.2	-

\* 출처: 보건복지부(2017c).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40. 발체·정리.  
보건복지부(2018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38. 발체·정리.

\* 주: 수급자 전체는 시설수급자(2016년도 91,075명)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전체를 말함.

아동·청소년의 성장 환경으로서 한부모가구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17년 기준 한부모가구는 총 2,127천 가구로 전체 19,524천 가구 중 1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대비 0.1%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한부모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한부모가구 전체 및 한부모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156 한부모가구 비율

(단위 : 천가구,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체가구(A)	16,791	17,052	17,339	17,687	18,119	18,388	18,705	19,013	19,285	19,524
한부모가구	1,509	1,551	1,594	1,639	1,796	1,880	1,970	2,052	2,090	2,127
한부모가구 비율	9	9.1	9.2	9.3	9.9	10.2	10.5	10.8	10.8	10.9

\* 출처: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 비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 (2018년 7월 22일 인출)

\* 원자료: 통계청(각 연도), 「장래가구추계 2015-2045」

\* 주: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 중 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가구형태별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해당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현황을 살펴보면,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2017년 기준 181,023세대, 449,469세대원으로 전년 대비 50,388세대가 감소하였으며, 세대원은 116,179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모자가정은 전년 대비 34,074세대가 감소한 141,207세대로 전체에서 약 7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가족은 전년 대비 12,224세대가 감소한 38,880세대로 나타났으며, 전체에서 2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족은 2016년 대비 4,090세대가 감소한 936세대로 조사되었다. 저소득 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그리고 조손가족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세대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방안은 지속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다.

표 IV-157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

(단위 : 세대, 명)

구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가족		미혼부가족		조손가족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세대	세대원	
2004	109,039	294,648	88,179	238,341	20,860	56,307	-	-	-	-	-	-	
2005	123,666	334,066	99,671	268,945	23,995	65,091	-	-	-	-	-	-	
2006	140,188	374,094	112,347	299,430	27,841	74,664	-	-	-	-	-	-	
2007	147,947	395,335	118,074	315,220	29,873	80,115	-	-	-	-	-	-	
2008	152,853	400,646	118,116	312,718	30,534	82,456	-	-	-	-	2,203	5,472	
2009	170,767	454,742	129,935	347,889	36,847	97,872	1,888	3,926	360	814	1,737	4,241	
2010	184,749	480,999	138,071	361,066	40,759	106,738	2,392	5,033	379	839	3,148	7,323	
2011	188,969	495,703	140,825	370,938	42,519	112,198	3,252	6,823	636	1,404	1,737	4,340	
2012	명	217,547	578,663	163,171	438,365	46,839	124,611	1,782	3,696	208	422	5,547	11,569
	%	100.0	100.0	75.0	75.8	21.5	21.5	0.8	0.6	0.1	0.1	2.6	2.0
2013	명	222,593	591,818	166,152	446,428	48,670	129,266	2,123	4,432	232	479	5,416	11,213
	%	100.0	100.0	74.6	75.4	21.9	21.8	1.0	0.75	0.1	0.08	2.4	1.9
2014	명	225,472	595,624	171,260	455,318	49,152	129,845	-	-	-	-	5,060	10,461
	%	100.0	100.0	76.0	76.4	21.8	21.8	-	-	-	-	2.2	1.8
2015	명	229,985	574,285	174,401	437,903	50,666	126,516	-	-	-	-	4,918	9,866
	%	100.0	100.0	75.8	76.3	22.0	22.0	-	-	-	-	2.1	1.7
2016	명	231,411	565,648	175,281	431,538	51,104	124,372	-	-	-	-	5,026	9,738
	%	100.0	100.0	75.7	76.3	22.1	22.0	-	-	-	-	2.2	1.7
2017	명	181,023	449,469	141,207	350,674	38,880	96,575					936	2,220
	%	100.0		78.0		21.5						0.5	

\* 출처: 김영지 외(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총괄보고서. p. 384  
 여성가족부(2017c). 2017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7.  
 여성가족부(2018b). 2018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5.

\* 원자료: 보건복지부(각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 주: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 국가보훈법대상(2011년 까지)  
 저소득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2012년 부터)

## ②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현황수준

드림스타트(Dream Start)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로서, 출발기회의 공평한 제공과 세대 간 빈곤의 악순환 차단을 목적으로 지원 대상 아동 및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여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보건복지부, 2017). 지원 대상은 0세(임산부)부터 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으로 특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 및 조손가정,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을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c).

드림스타트는 2007년 16개 센터에서 3,769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2017년 현재 전국 시군구에 229개의 센터가 운영 중이며 134,853명을 지원하는 규모로 크게 확대·운영되었다. 특히 욕구에 근거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7a), 아동의 근육발달, 건강증진 행동, 부모애착 및 학교 적응, 자아탄력성 뿐 아니라 양육자에 계도 긍정적인 결과 및 높은 만족도를 보여 드림스타트 개입의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노충래, 조용남, 이대성, 송미령, 박형경, 2016). 하지만 현장인력의 과도한 사례부담과 사례관리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 등 현장 및 실무자와 관련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정정호, 2016; 김영지 외, 2017: 324에서 재인용).

표 IV-158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실시	16	32	75	101	131	181	211	220	229	229
사업예산(억 원)	50	98	225	301	372	462	576	632	658	668
아동 수(명)	3,769	9,901	26,208	32,641	44,651	65,724	95,133	107,127	125,562	134,853
가구 수(가구)	2,465	6,516	17,141	21,699	29,332	42,387	61,630	66,551	80,102	86,681

\* 출처: 여성가족부(2017a). 2017 청소년백서, p.174.  
 보건복지부(2017g).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보건복지부(2018b).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보건복지부(2017a). '어려운 아이들의 친구, 드림스타트 2017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pp.7-8.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시설 아동, 중위소득 40%이하의 수급가구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성인기 이행과정에서 대학진학 및 취업, 주거 마련 등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아동과 정부지원의 1:1 매칭펀드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이 사업은 2007년에 시작되었으며 2016년 기준 총 70,417명의 가입자들에게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다(보건복지부, 2017b). 2016년 기준으로 월평균 적립액은 39,196원인데, 2017년부터는 정부 지원 금액이 4만원으로 확대되어 취약계층 아동들이 만 18세 이후 자립하는 데 있어 좀 더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보건복지부, 2017b). 또한 디딤씨앗 통장으로 모아진 저축은 ‘학자금’, ‘취업훈련’, ‘주거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이러한 디딤씨앗 통장은 단순히 자립을 위해 저축액을 증가시키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목표와 계획에 맞게 돈을 모으게 하는 경제교육 효과도 있으며, 청소년들 나름대로 디딤씨앗 통장으로 사회진출시 어떠한 목적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게 함으로써 자립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키워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a).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입자 수가 매년 약 4천명에서 5천명 정도만 증가하면서 2016년 현재 70,417명의 수준이지만, 취약계층 아동 규모를 고려할 때 지원대상 확대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김영지 외, 2017:

324-325).

표 IV-159 디딤씨앗통장 저축 현황

연도	가입자(명)	월평균 적립액 (원)	적립금 누계(억 원)		
			아동	정부	계
2009	36,469	28,184	258	223	481
2010	40,829	29,129	377	308	685
2011	41,180	30,903	510	409	919
2012	46,703	37,792	670	527	1,197
2013	51,670	35,172	854	660	1,514
2014	56,479	36,601	1,061	807	1,868
2015	61,000	38,247	1,296	969	2,265
2016	70,417	39,196	1,562	1,150	2,712

\* 출처: 여성가족부(2016a). 2016 청소년백서. p.164.  
여성가족부(2017a). 2017 청소년백서. p.182.

\* 주: 만기(18세) 후 통장보유 아동 제외.

## 6) 소결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에서는 2017년도와 동일하게 중분류 단계에서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사회 보장 및 아동보호시설로 지표를 구분하였다. 우선 장애에서는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호(지원)을 조사하였으며, 생존 및 발달에서는 사망률과 안전에 대한 인식률이, 보건서비스에서는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 현황, 취약계층 보건 서비스 이용률,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을 조사하였다.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서는 건강에 대한 인식,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에서는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 국가 간 비교,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수준에 대해서 조사 및 분석하였다.

먼저 장애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관련해서는 특수교육 현황 및 특수교사 수,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 비율, 장애청소년 진학률 및 취업률 추이를 조사하였다. 우선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과 특수교사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각각 173개교, 10,325개 학급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수교육 교원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도 2017년 기준 89,353명이며, 이중 29.3%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70.7%는 일반학교에 배치되었다. 특수학급에 배치된 아동·청소년의 수는 2011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인 반면, 일반학급에 배치하는 아동·청소년의 수는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의 특수학교 졸업 후 진로를 살펴보면,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이후의 진학률과 취업률은 모두 감소한 데 비해 무직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생존 및 발달과 관련해서는 사망률과 안전에 대한 인식률을 조사하였다. 사망률에서는 0세의 기대여명과 영아·아동·청소년 사망률, 사고사망률 등 3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조사하였는데, 0세의 기대여명은 2016년 기준 82.36세이며,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의 사망률은 2016년 기준 1,000명당 2.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사망자수와 사망률을 살펴보면 0세부터 14세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감소하다가 15세부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7년간의 추이를 보면 0세에서 24세까지의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별 사고사망률 역시 14세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15세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망의 외인으로는 운수사고가 주요 사망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14세까지의 연령에서 운수사고가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주요 사망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5세 이후부터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자살로 인한 사망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세~29세까지의 경우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가 운수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약 3~4배정도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안전에 대한 인식률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율과 안전에 대한 인식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범죄 피해율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청소년의 범죄피해 건수는 총 90,087건이며, 전년 대비 4,563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 81.2%, 거주지역의 범죄로부터의 안전수준에 대해서는 77.8%,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에 대해서는 71.5%, 거주지역의 음식물 안전 수준에 대해서는 87.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의 보건서비스와 관련하여 우선 보건서비스 인프라 구축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과 보건교사 배치 현황,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등 3개의 지표를 살펴보았다. 아동·청소년의 질병유형과 관련하여 2016년 기준 6세-18세의 비만율은 13.3%이며,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의 천식 유병률은 12세-18세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아청소년의 질환별 유병률과 관련해서는 아토피 피부염과 폐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7년 기준 전체 학교 가운데 64.5%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중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의 보건소 포함 신체·정신건강 관련 시설들을 살펴보면 보건진료소, 특수병원 중 결핵과 한센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에서 시설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취약계층 보건서비스 이용률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을 살펴본 결과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률은 45.7%였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소득수준은 중하와 하인 집단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과 치과 미치료율은 소득수준이 '하'인 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 제공률과 관련하여 흡연율, 음주율, 기타 약물 사용률,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 등 4개의 지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6.4%, 16.1%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교급별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율과 음주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흡연예방교육과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대상 음주·흡연예방교육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고학년 대상 음주·흡연예방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과 관련해서는 건강에 대한 인식, 신체적 건강, 정신 건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먼저 건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87.1%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건강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1회 이상 운동하는 비율은 54.1%로 나타났는데, 특히 성별로는 여학생이,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인 집단에서 운동 실천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70.0%는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입맛이 없어서(32.5%),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27.7%), 일찍 등교해서(19.9%)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아동·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17분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수면시간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반수 이상(52.4%)이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수면 부족의 이유로는 가정학습과 학원 및 과외가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만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가장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세부지표항목은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이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의 33.8%가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의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업문제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가족간의 갈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우울증관련 항목과 관련해서 ‘외로운 적이 있다’는 32.8%, ‘불안한 적이 있다’는 27.3%,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는 31.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응답자의 1/3정도는 우울증관련 경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청소년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은 학업문제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의 17.0%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는 학업부담과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가장 많았다. 삶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이 7.11점으로 나타났으며(0점~10점), 41개 국가가 조사에 포함된 WHO의 ‘학령기아동 건강행태연구’(HBSC)와 비교한 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의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로 70%가 넘는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고민거리 대화상대로는 어머니(38.5%)와 친구(37.1%)가 가장 많았으며, 고민거리가 있을 경우 대화상대가 없다는 응답도 9.6%로 아버지, 형제/자매, 담임선생님, 학교상담선생님, 이웃/친척, 청소년상담관련 기관 등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과 관련하여 우선 아동·청소년 빈곤율을 보면, 절대아동빈곤율의 경우 시장소득 기준 2014년에 4.7%였으나 2016년에는 5.4%로 나타났으며, 중위소득 50%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아동빈곤율 역시 2014년의 8.4%에서 2016년 8.7%로 약간 높았다. 그러나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빈곤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아동 및 가족관련 복지예산을 OECD국가와 비교하면 2013년 기준 한국은 GDP대비 1.3%로 영국의 4%, 프랑스 3.7%, 헝가리 3.6%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수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30.6%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는 2008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드림스타트는 2007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역시 200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취약계층 아동의 규모를 고려할 때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1) 교육에의 권리

#### (1) 교육기회 보장 정도

##### ① 학생 취학률

학생 취학률은 학생 진학률,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의 세부지표들과 함께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세부지표 중 하나이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준다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28조에서 요구하는 아동·청소년의 교육에 관한 권리를 충족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 취학률은 배움의 연령에 이른 인구가 실제로 배우기 위하여 학교에 입학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취학률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의 <표 IV-16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에 해당하는 유치원부터 고등교육기관까지 취학하고 있는 재적 학생 수를 통계청 기준의 취학 적령 인구로 나누어 100을 곱해 얻어진 수치이다.

표 IV-160 각급 학교의 연도별 취학률 추이(2011~2017)

(단위 : %)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유치원	40.9	44.9	47.4	47.3	49.4	50.7	50.7
초등학교	99.1	98.6	97.2	96.4	98.5	98.1	97.3
중학교	96.7	96.1	96.2	97.7	96.3	94.9	94.2
고등학교	91.9	92.6	93.6	93.7	93.5	94.1	93.7
전체 고등교육기관	71.0	68.4	69.0	68.2	68.1	68.5	67.6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b). 2016 간추린 교육통계. p.1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a). 2017 간추린 교육통계. p.11.  
 교육부(2017.8.31). 2017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20.

〈표 IV-160〉에는 2011~2017년까지의 7년간 대한민국 각급 학교의 연도별 취학률이 나타나 있다. 유치원의 취학률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취학률이 다소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이는 최근 학업중단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취학률도 따라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유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중등교육의 취학률은 90%를 넘어 비교적 높은 편이라 할 수 있어 교육에의 권리가 대체로 잘 보장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 ② 학생 진학률

학생 진학률은 취학률과는 달리 각급 학교들이 바로 위의 상급학교 과정으로 이동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28조 1항에도 각 나라가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 명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상급학교로의 진학 비율은 각 나라가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해주고 있는가를 알아 볼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아래의 〈표 IV-161〉은 2011~2017년 기간 동안의 대한민국의 교육단계별 진학률 추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표 IV-161 교육단계별 연도별 진학률 추이(2011~2017)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초등학교→중학교과정	99.9	99.9	99.9	99.9	100.0	100.0	100.0	
중학교→고등학교과정	99.7	99.7	99.7	99.7	99.7	99.7	99.7	
고등학교 → 고등교육기관	전체	72.5	71.3	70.7	70.9	70.8	69.8	68.9
	일반고	(75.8)	(76.6)	(77.7)	78.7	78.9	78.0	77.3
	특수목적고	(67.4)	(64.2)	(60.0)	59.6	58.4	55.9	56.9
	특성화고	(61.0)	(50.0)	(41.7)	37.9	36.1	35.0	32.8
	자율고	(69.3)	(72.6)	(74.7)	75.7	75.8	74.9	73.5
	일반계고	75.2	76.2	77.5	-	-	-	-
	전문계고	63.7	54.4	46.8	-	-	-	-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b). 2016 간추린 교육통계. p.1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a). 2017 간추린 교육통계. p.11.

\* 주: 1) ( )는 참고 수치로 2015년 4월 현재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진학률임.  
2) 일반계·특성화계 고교 진학자는 2011년 이후는 대학등록자 기준임(전체 고등학교 진학률은 대학 등록자 기준).

위의 <표 IV-162>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의 진학률은 지난 2015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계속 100%에 달하고 있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으로의 진학률도 2011년 이래로 계속 99.7%의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일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평균 78%에 가까운 진학률을 보여 세계적으로도 최상위에 해당되고 있다. 직업계고인 특성화고의 진학률은 2014년 37.9%에서 계속 낮아져 2017년에는 32.8%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졸업생들의 취업난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려는 진로 선택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추이이다.

### ③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각 나라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에의 권리를 보장시켜 주는 것을 나타내주는 지표 중 하나는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표이다. 이 세부지표는

국내총생산량을 나타내는 GDP(Gross Domestic Product) 중 국가가 학생 1인에게 그의 교육과정에 얼마나 교육비를 투입하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각국의 화폐 가치가 다르므로 보통 GDP 대비 1인당 공교육비의 계산은 구매력지수 기준 국민소득(ppp)으로 표기하는데, 이는 물가와 환율이 동등하다는 가정 하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의한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의 산출은 교육기관이 직접 투자한 경상비와 자본비를 합한 수치를 학생수로 나눈 값을 구매력지수로 다시 나누어 얻어진다.

아래의 <표 IV-162>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7년도 자료에 의하면 2014년 OECD 국가들 평균과 대한민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ppp)를 비교하자면 초등교육과정에서는 각각 \$8,733(22%)와 \$9,656(29%)이고, 중등교육과정에서는 \$10,106(25%)와 \$10,316(31%), 고등교육과정에서는 \$16,143(40%)와 \$9,570(28%)로 나타나 있다. 가장 최근인 2018년 9월 11일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ppp에 따라 산출한 결과로 2015년 대한민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1,143로 OECD평균인 \$10,520보다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다(교육부, 2018.9.11).

표 IV-162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단위 : ppp)

구 분		초등교육과정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공교육비 비율(%)
2000	한국	3,155	21	4,069	27	6,118	40
(2003)	OECD 평균	4,381	19	5,957	25	9,571	42
2005	한국	4,691	22	6,645	31	7,606	36
(2008)	OECD 평균	6,252	21	7,804	26	11,512	40
2010	한국	7453	26	8911	31	9998	35
(2013)	OECD 평균	7974	23	9014	26	13528	41
2012	한국	8811	28	9728	30	9896	31
(2015)	OECD 평균	8247	22	9518	25	15028	41
2013	한국	9341	29	9913	30	9353	29
(2016)	OECD 평균	8477	22	9811	25	15772	41
2014	한국	9656	29	10316	31	9570	28
(2017)	OECD 평균	8733	22	10106	25	16143	40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a). 2017 간추린 교육통계. p.54

\* 원자료: OECD(해당년도). 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 \* 주: 1) 「OECD 교육지표 2017」부터 교육단계 구분 없는 프로그램의 지출액을 각 교육단계에 포함하여 공교육비 산출  
 2) 2010(2013), 2012(2015), 2013(2016) 한국 자료는 시계열 비교를 위하여 KEDI에서 산출한 것으로 「OECD교육지표」 미수록 자료  
 3)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경상비+자본비)/학생 수 /PPP  
 4) 한국 1인당 GDP는 '00년 US\$ 15,186, '05년 US\$ 21,342, '10년 US\$ 28,829, '12년 US\$ 32,022, '13년 US\$ 32,664, '14년 US\$ 33,632  
 5) 한국 PPP환율은 '00년 \$1당 731.19원, '05년 \$1당 788.92원, '10년 \$1당 823.67원, '12년 \$1당 860.25원, '13년 \$1당 871.41원, '14년 \$1당 870.74원

2018년 9월 11일 발표된 교육부 세부적인 보도자료에 따르면 초등교육은 \$11,047, 중등교육은 \$12,202로 OECD 평균(초등 : \$8,631, 중등 : \$10,010)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의 경우 \$10,109로 OECD 평균(\$15,656)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교육부, 2018). 이를 볼 때에 대한민국은 초중등교육과정에서는 OECD 국가들보다 GDP 대비 공교육비를 더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교육부, 2018a: 4), 고등교육과정에서의 예산 투입은 OECD 평균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사립 고등교육기관들이 많아 교육의 공공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에의 권리를 나타내 주는 교육기회의 보장 정도를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세부지표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이다. 이는 교육의 여건에 해당하는 지표로서, 과밀한 학급에서는 학생 개개인이 교사로부터 제대로 교육의 기회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척도로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다.

표 IV-163 교원 1인당 학생 수(2011~2017)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유치원	14.6	14.5	14.3	13.4	13.4	13.3	12.9	
초등학교	17.3	16.3	15.3	14.9	14.9	14.6	14.5	
중학교	17.3	16.7	16.0	15.2	14.3	13.3	12.7	
고등학교	전체	14.8	14.4	14.2	13.7	13.2	12.9	12.4
	일반고	15.8	15.4	15.2	14.6	14.1	13.7	13.1
	특목고	11.0	10.3	10.0	9.7	9.3	9.1	8.9
	특성화고	12.5	12.1	12.0	11.6	11.4	11.0	10.6
	자율고	15.2	14.6	14.3	13.9	13.7	13.5	13.2

\* 출처: 교육부(2017.8.31.).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보도자료. p.18.  
김영지 외(2017). p.336.

\* 주: 교원에는 정규 교원(휴직 교원 포함)과 기간제 교원이 포함되며, 퇴직교원과 강사는 제외됨

먼저 위의 <표 IV-163>에는 대한민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2011~2017년 동안의 추이가 잘 나타나 있다. 초등교육과정인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2017년에는 가장 낮아 평균 약 13명이 조금 넘는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중등교육과정에서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같은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2017년에는 각각 12.7명과 12.4명을 보이고 있다. 이는 출생률이 낮아짐으로 나타나는 학생 수의 자연 감소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164 학급당 학생 수(2011~2017)

(단위 : 명)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유치원	20.9	21.6	21.5	19.7	20.0	19.7	19.0	
초등학교	25.2	24.3	23.2	22.8	22.6	22.4	22.3	
중학교	33.0	32.4	31.7	30.5	28.9	27.4	26.4	
고등학교	전체	33.1	32.5	31.9	30.9	30.3	29.3	28.2
	일반고	34.7	34.2	33.6	32.4	31.3	30.6	29.3
	특목고	28.4	26.7	25.8	25.0	24.4	24.0	24.7
	특성화고	28.5	28.0	27.6	26.9	26.4	25.7	23.7
	자율고	33.5	32.3	31.5	30.7	30.3	30.2	29.6

\* 출처: 교육부(2017.8.31.).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p.17.  
김영지 외(2017). p.337.

한편 위의 <표 IV-164>에는 학급당 학생 수의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추이가 나타나 있는데, 이는 특히 과밀 학급일수록 교육의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 표를 보면 위에서 서술한 교원 1인당 학생 수와 마찬가지로 모든 각급 학교에서의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초등교육과정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2011년 평균 약 23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7년에는 평균 21명에 가까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이러한 감소 추이는 마찬가지이다. 2011년 중학교과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각각 33.0명과 33.1명에서 2017년에는 26.4명과 28.2명으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갈수록 학생 수의 자연 감소로 인해 교육의 기회 보장 정도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 (2) 학교 부적응률

### ① 학업중단율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28조는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소분류 지표 중 하나인 학교 부적응률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에 부적응함으로써 교육 받을 권리가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학업 부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학교 문화나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등교에 대한 만족도가 심하게 낮아지면 학생들은 학교를 떠나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학업 중단 및 포기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나 가정, 학교, 사회의 책임은 학생들이 받을 교육권을 박탈한 것과 같으므로, 결국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먼저 아래의 <표 IV-165>에는 대한민국의 2011년에서 2016년까지 학업중단율 추이가 나타나 있다. 2012년과 2017년만 단순히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각급 학교의 학업중단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급 학교 중에는 2017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가 0.6%, 중학교가 0.7%, 고등학교가 1.5%로 나타나 고등학교에서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백분율로만 보면 학업중단율이 낮아 보이지만 학업중단자의 수치로 보면 이는 매우 심각한 수치임을 알 수 있다. 2012년에 학업중단자의 총 수는 68,188명이었고 이후 하향 추세를 보여 2017년도에는 50,057명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난 6년 간 대한민국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누적 계수는 총 325,452명이다. 교육받을 권리를 잃은 아동과 청소년이 30만 명 넘게 학교를 벗어나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치라 할 수 있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그 수치가 줄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 수의 자연 감소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학업중단율은 교육의 권리를 침해하고 위협하는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특성화고교와 산학협력 도제학교 등을 대폭 확대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특단의 대책들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IV-165 연도별 학업중단을 추이(2012~2017)

(단위 : %(명))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초등학교	0.6	0.6	0.5	0.5	0.6	0.6
중학교	0.9	0.8	0.7	0.6	0.6	0.7
고등학교	1.8	1.6	1.4	1.3	1.4	1.5
계 (학업중단자)	1.0 (68,188)	0.9 (60,568)	0.8 (51,906)	0.8 (47,070)	0.8 (47,663)	0.9 (50,057)

\* 출처: 교육부(2018.8.30.). 2018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보도자료. p.17.

- \* 주: 1)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는 학업중단자에 포함  
 2) 고등학교의 학업중단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몸행), 유예, 면제, 제적임.  
 3) 사망자는 학업중단자에 미포함  
 4) 구분연도는 학년도로 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4월 1일 기준이며, 학업중단자는 해당 학년도 3월에서 차년도 2월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 ②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아래의 <표 IV-166>에는 위의 학업중단을 지표와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학업을 포기하려고 결심한 여부와 그에 대한 이유를 물어 조사된 최근 2018년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국의 9,047명의 청소년에게 자퇴의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하여 물었을 때에 자퇴 충동이 있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28.8%에 해당되었다. 이 중 여학생이 34.4%로 남학생의 23.5%보다 11%에 가깝게 많았다. 학교 급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퇴 충동의 비율이 높아 초등학교 17.9%, 중학교 26.0%, 고등학교 39.6%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10명 중 4명에 가깝게 자퇴충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수치이다. 지역규모에 따른 편차는 크지 않았으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서는 편차가 나타났다. 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어려울수록 자퇴의 충동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에 자퇴 충동 응답 비율이 최고치를 나타난 이래 감소해 오다가 2017년부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전년도

보다 0.6%p 증가하였고, 초등학생의 증가폭이 1.4%p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IV-166 자퇴 총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chi^2$	
전체	28.8	71.2	100.0(9,047)		
성별	남학생	23.5	76.5	100.0(4,693)	129.588***
	여학생	34.4	65.6	100.0(4,354)	
학교급	초등학교	17.9	82.1	100.0(2,737)	368.790***
	중학교	26.0	74.0	100.0(2,855)	
	고등학교	39.6	60.4	100.0(3,455)	
지역 규모	대도시	26.9	73.1	100.0(3,684)	11.448**
	중소도시	30.3	69.7	100.0(4,411)	
	읍면지역	28.9	71.1	100.0(952)	
학업 성적	상	19.2	80.8	100.0(2,945)	447.103***
	중	26.6	73.4	100.0(4,005)	
	하	46.1	53.9	100.0(2,088)	
경제적 수준	상	23.7	76.3	100.0(4,981)	219.050***
	중	31.5	68.5	100.0(3,190)	
	하	47.3	52.7	100.0(869)	

\*p<.05, \*\*p<.01, \*\*\*p<.001



그림 IV-120 자퇴 총동 여부(연도별 추이)

표 IV-167 자퇴 총동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괴롭힘을 당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가정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공부가 하기 싫어서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기타	전체(n)	
전체	4.8	12.9	5.3	0.2	28.2	6.2	12.2	18.4	11.7	100.0(2,595)	
성별	남학생	5.6	11.2	6.4	0.3	32.8	6.2	12.6	15.7	9.1	100.0(1,104)
	여학생	4.3	14.2	4.5	0.1	24.7	6.3	11.8	20.4	13.6	100.0(1,492)
학교급	초등학교	14.9	8.6	8.5	0.2	32.1	2.8	7.0	15.6	10.2	100.0(488)
	중학교	3.6	7.8	6.1	0.4	30.1	7.6	10.3	19.7	14.3	100.0(741)
	고등학교	1.9	17.2	3.8	0.1	25.7	6.7	15.1	18.7	10.8	100.0(1,366)
고교 유형	일반계고	1.0	20.2	3.6	0.1	26.6	6.7	14.5	17.9	9.4	100.0(1,123)
	특성화계고	5.9	3.3	4.6	0.0	21.6	6.8	17.8	22.6	17.4	100.0(243)
지역 규모	대도시	4.5	11.9	5.2	0.2	29.0	6.3	12.6	17.7	12.5	100.0(989)
	중소도시	5.4	12.9	5.1	0.3	28.1	6.3	12.0	19.4	10.6	100.0(1,331)
	읍면지역	3.1	16.8	6.8	0.0	25.7	5.7	11.5	16.1	14.4	100.0(276)
학업 성적	상	7.0	5.3	7.4	0.2	25.5	8.0	12.0	19.5	15.2	100.0(565)
	중	5.7	12.6	5.2	0.3	29.1	5.7	10.6	18.7	12.0	100.0(1,066)
	하	2.6	17.8	4.3	0.1	28.6	5.9	14.0	17.3	9.3	100.0(960)
경제적 수준	상	5.8	11.8	5.5	0.2	31.8	7.8	10.4	15.5	11.3	100.0(1,180)
	중	3.6	13.4	5.6	0.3	27.1	4.5	13.2	19.7	12.3	100.0(1,004)
	하	4.9	15.0	3.9	0.1	20.3	6.1	15.0	23.4	11.4	100.0(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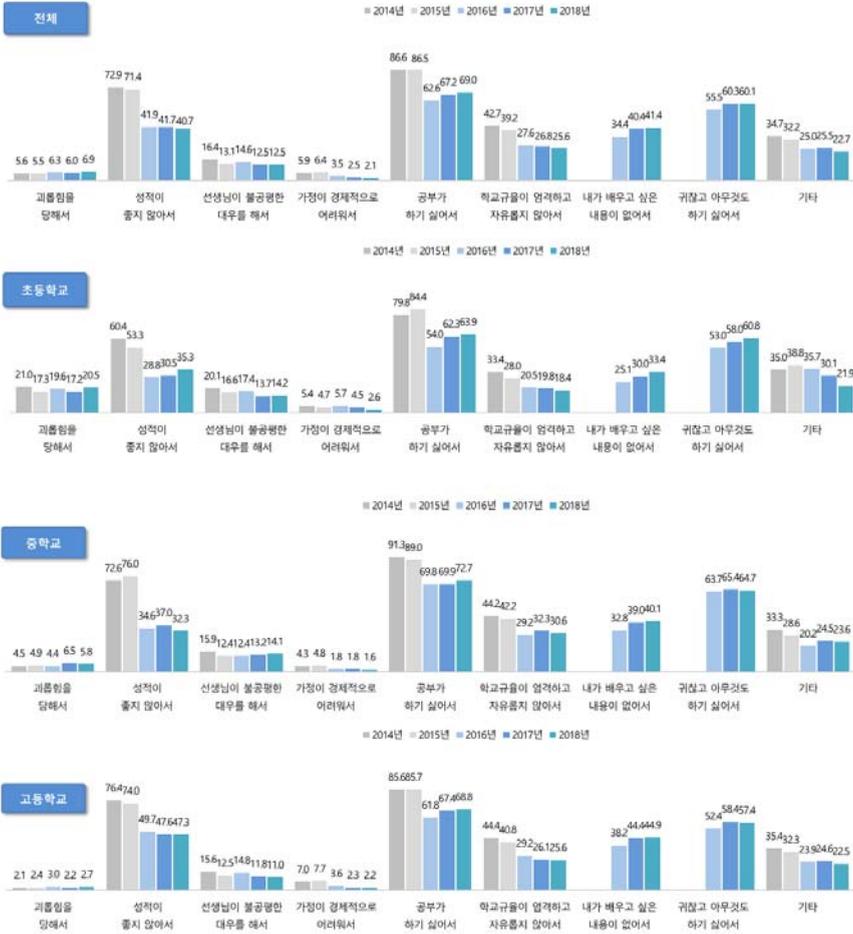


그림 IV-121 자퇴 총동 이유(1순위) (연도별 추이)

위의 <표 IV-167>에는 이러한 자퇴 총동의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퇴 총동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중 1순위로 응답된 결과는 ‘공부하기가 싫어서’인데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가 18.4%, ‘성적이 좋지 않아서’가 12.9%,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가 12.2%로 조사되었다. ‘공부하기 싫어서(28.2%)’와 ‘성적

이 좋지 않아서(12.9%)'를 합하면 41.1%로 학업에 대한 혐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자퇴 충동의 원인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18.4%)'와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12.2%)'도 학교 학업 부적응으로 인한 무기력 증세로 볼 수 있어 대부분의 학생들의 자퇴 충동의 원인은 학교의 학업에 있다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성적, 선생님, 가정형편, 학교규율 등의 요인의 응답 비율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공부가 하기 싫어서'와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등의 요인에 대한 응답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어서, 학업에 대한 동기 부족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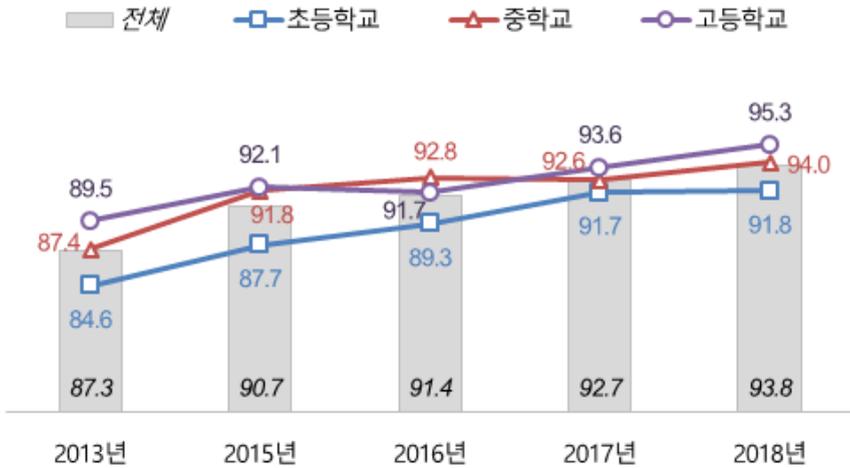
### ③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

표 IV-168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3.25(0.592)	1.0	5.1	61.8	32.0	100.0(9,049)		
성별	남학생	3.23(0.611)	1.3	5.7	61.2	31.8	100.0(4,697)	15.726**
	여학생	3.26(0.572)	0.7	4.5	62.5	32.3	100.0(4,352)	
학교급	초등학교	3.28(0.652)	1.5	6.7	54.0	37.8	100.0(2,741)	115.140***
	중학교	3.24(0.571)	0.7	5.3	63.8	30.2	100.0(2,856)	
	고등학교	3.23(0.558)	0.9	3.8	66.3	29.0	100.0(3,451)	
지역 규모	대도시	3.30(0.600)	1.0	4.4	57.8	36.8	100.0(3,685)	72.288***
	중소도시	3.20(0.590)	1.1	5.9	64.4	28.6	100.0(4,411)	
	읍면지역	3.24(0.556)	0.6	4.4	65.2	29.7	100.0(953)	
학업 성적	상	3.35(0.591)	0.9	3.4	55.1	40.6	100.0(2,946)	198.573***
	중	3.23(0.587)	1.0	5.5	63.1	30.5	100.0(4,007)	
	하	3.13(0.579)	1.4	6.9	68.9	22.9	100.0(2,087)	
경제 수준	상	3.32(0.594)	0.9	4.0	57.4	37.7	100.0(4,980)	243.152***
	중	3.20(0.565)	0.9	5.4	66.7	27.0	100.0(3,191)	
	하	3.03(0.612)	2.2	10.7	69.3	17.8	100.0(869)	

\* $p < .05$ , \*\* $p < .01$ , \*\*\* $p < .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22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연도별 추이)

학생들의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학교에의 부적응 여부와 부적응의 원인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위의 <표 IV-168>에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는 설문 내용 중에서 응답학생이 생각하기에 학교 친구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총 9,049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었을 때에 학교 친구들이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은 '그런 편이다' 61.8%, '매우 그렇다' 32.0%를 합하여 총 93.8%로 나타났다. 이로 볼 때에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자신이 다른 학생으로부터 존중과 배려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및 학교급에서의 편차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인 응답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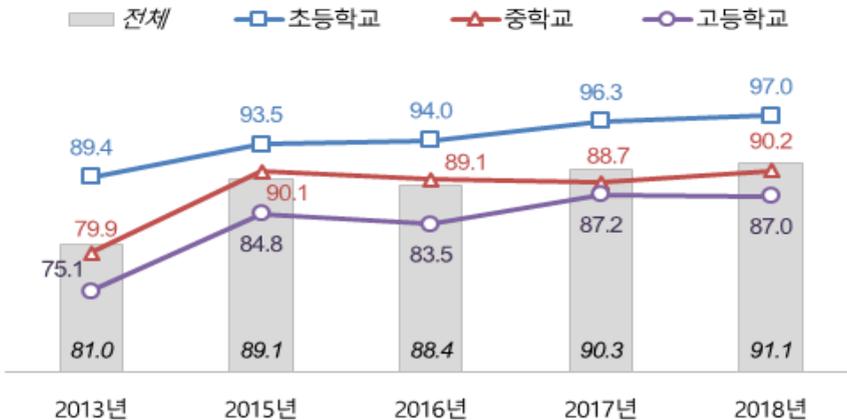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친구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표 IV-169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덜지 다	그 렇지 않은 편 이다	그 런 편 이다	매우 그 렇다	전체(n)	$\chi^2$	
전체	3.29(0.678)	1.8	7.1	51.0	40.1	100.0(9,050)		
성별	남학생	3.33(0.681)	2.0	6.2	48.9	42.9	100.0(4,698)	40.923***
	여학생	3.26(0.673)	1.7	8.1	53.3	36.9	100.0(4,352)	
학교급	초등학교	3.62(0.572)	0.8	2.2	31.6	65.4	100.0(2,742)	1137.973***
	중학교	3.21(0.677)	2.3	7.5	56.6	33.6	100.0(2,856)	
	고등학교	3.10(0.663)	2.3	10.7	61.8	25.2	100.0(3,451)	
지역 규모	대도시	3.35(0.658)	1.4	6.0	48.8	43.8	100.0(3,685)	52.738***
	중소도시	3.24(0.697)	2.3	8.2	52.5	37.1	100.0(4,412)	
	읍면지역	3.31(0.646)	1.2	6.6	52.6	39.6	100.0(953)	
학업 성적	상	3.44(0.671)	1.6	5.5	40.4	52.6	100.0(2,947)	429.538***
	중	3.29(0.658)	1.7	6.3	53.0	39.1	100.0(4,007)	
	하	3.08(0.670)	2.6	11.0	62.1	24.3	100.0(2,087)	
경제적 수준	상	3.39(0.681)	1.7	6.1	44.0	48.2	100.0(4,981)	342.385***
	중	3.21(0.648)	1.9	7.1	59.5	31.5	100.0(3,191)	
	하	3.08(0.680)	2.3	12.6	60.0	25.1	100.0(869)	

\* $p < .05$ , \*\* $p < .01$ , \*\*\* $p < .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23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연도별 추이)

위의 <표 IV-169>는 학교생활에 있어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의 여부를 학생들에게 물은 응답결과이다. 전체 학생의 91.1%는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고, '그렇지 않은 편이다' 7.1%와 '전혀 그렇지 않다' 1.6%의 부정적인 응답이 나왔다. 남학생과 여학생 및 학교급 간의 편차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선생님이 자신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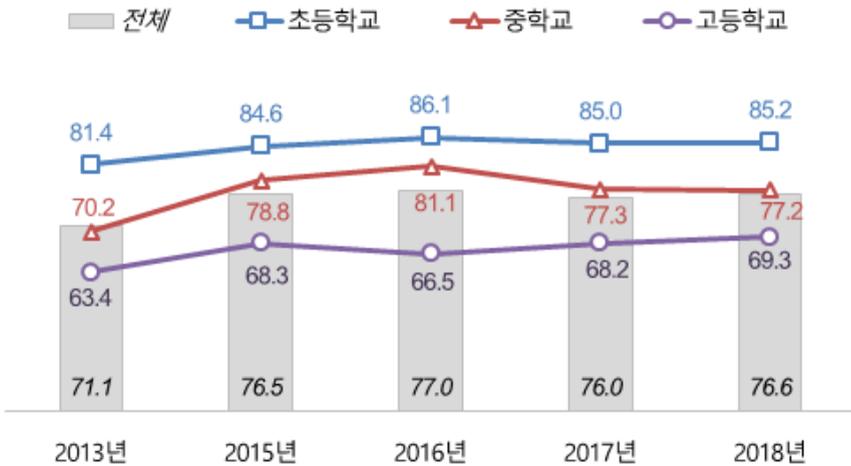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교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에 비해 중·고등학생의 비율은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

표 IV-170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2.97(0.794)	4.8	18.6	51.2	25.4	100.0(9,048)		
성별	남학생	3.00(0.805)	5.0	17.2	50.1	27.7	100.0(4,697)	32.925 ***
	여학생	2.94(0.780)	4.5	20.1	52.4	23.0	100.0(4,351)	
학교급	초등학교	3.23(0.776)	3.2	11.6	44.4	40.8	100.0(2,739)	627.289 ***
	중학교	2.97(0.765)	4.0	18.8	53.4	23.8	100.0(2,857)	
	고등학교	2.77(0.773)	6.6	24.1	54.8	14.5	100.0(3,451)	
지역 규모	대도시	3.02(0.790)	4.2	17.5	50.2	28.2	100.0(3,686)	34.052 ***
	중소도시	2.93(0.799)	5.4	19.7	51.8	23.1	100.0(4,409)	
	읍면지역	2.99(0.777)	4.2	18.1	52.4	25.3	100.0(953)	
학업 성적	상	3.19(0.754)	2.8	12.2	47.9	37.0	100.0(2,946)	631.285 ***
	중	2.98(0.751)	3.5	18.5	54.1	23.8	100.0(4,006)	
	하	2.64(0.819)	10.0	27.7	50.2	12.1	100.0(2,087)	
경제적 수준	상	3.11(0.778)	3.7	14.4	49.6	32.3	100.0(4,980)	446.598 ***
	중	2.86(0.764)	5.2	21.4	55.3	18.2	100.0(3,191)	
	하	2.60(0.818)	9.4	32.8	45.8	12.0	100.0(869)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24 학교생활에 대한 생각\_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연도별 추이)

위의 <표 IV-170>은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그런 편이다' 51.2%, '매우 그렇다' 25.4%를 합하여 76.4%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정적인 응답은 '그렇지 않은 편이다'가 18.6%, '전혀 그렇지 않다'가 4.8%로 조사되었다. 남녀 간의 편차는 적었으나, 초등학생의 긍정적 응답은 84.8%인 반면 중학생은 77.2%, 고등학생은 69.3%로 학업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이 즐겁다는 응답 비율이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 2) 교육의 목표

### (1)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 ① 학교의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정도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연구에서 중분류 지표 ‘교육의 목표’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9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먼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잠재력의 최대한 계발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을 명시되어 있다. 2018년의 인권 실태조사는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학교가 이러한 교육의 목표를 인권적 차원에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에 관한 내용들을 물었다. 아래의 <표 IV-171>은 학생들이 학교가 자신들을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전체 응답학생 9,051명 중에서 긍정적인 응답은 ‘그런 편이다’ 58.3%과 ‘매우 그렇다’ 22.5%를 합하여 80.8%로 나타났다. 남학생 83.2%보다 여학생이 78.1%로 긍정적인 응답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에서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긍정적인 응답이 적어 초등학생은 92.8%, 중학생은 81.7%, 고등학생은 70.3%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고등학생들이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은 것은 대학입학 준비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가 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학업에 시달려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학교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없었을 것이다. 한편, 응답한 학생 중에서 학업성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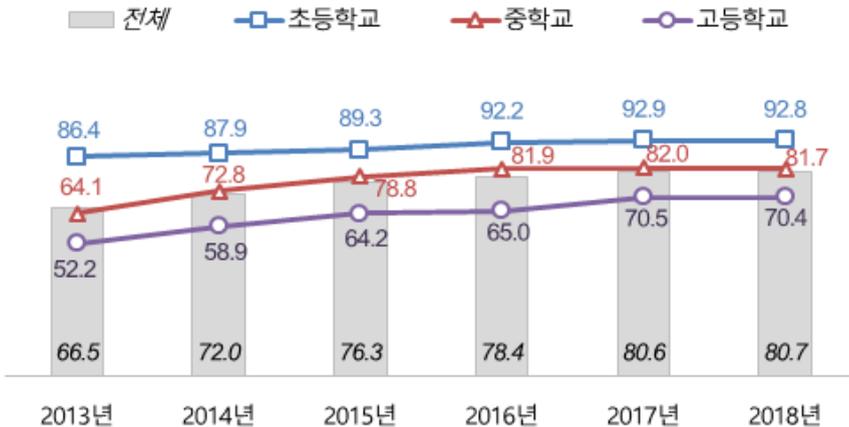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IV-171 학교에 대한 생각\_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2.99(0.733)	4.0	15.3	58.3	22.5	100.0(9,053)		
성별	남학생	3.05(0.742)	4.2	12.6	57.3	25.9	100.0(4,698)	99.675 ***
	여학생	2.93(0.718)	3.8	18.2	59.3	18.8	100.0(4,355)	
학교급	초등학교	3.32(0.645)	1.4	5.8	52.6	40.2	100.0(2,740)	1022.831 ***
	중학교	2.98(0.684)	3.2	15.1	62.7	19.0	100.0(2,858)	
	고등학교	2.75(0.741)	6.7	22.9	59.0	11.3	100.0(3,455)	
지역 규모	대도시	3.06(0.734)	3.6	13.5	56.6	26.3	100.0(3,688)	66.755 ***
	중소도시	2.94(0.728)	4.3	17.0	59.4	19.3	100.0(4,412)	
	읍면지역	3.00(0.733)	4.4	13.9	59.5	22.3	100.0(953)	
학업 성적	상	3.17(0.731)	3.1	10.5	52.8	33.6	100.0(2,948)	563.409 ***
	중	3.01(0.681)	2.9	14.1	62.4	20.5	100.0(4,008)	
	하	2.72(0.750)	7.4	24.3	57.8	10.6	100.0(2,089)	
경제적 수준	상	3.11(0.727)	3.4	11.6	56.1	28.9	100.0(4,981)	359.593 ***
	중	2.88(0.701)	4.3	18.2	62.4	15.1	100.0(3,195)	
	하	2.74(0.760)	6.6	25.4	55.4	12.7	100.0(869)	

\*p<.05, \*\*p<.01, \*\*\*p<.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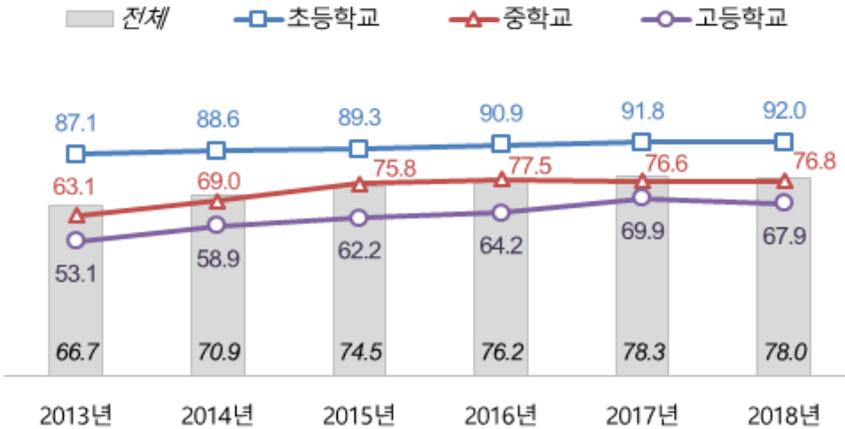
그림 IV-125 학교에 대한 생각\_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연도별 추이)

표 IV-172 학교에 대한 생각\_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2.96(0.767)	4.6	17.4	55.0	23.0	100.0(9,051)		
성별	남학생	3.02(0.765)	4.4	15.0	54.6	26.0	100.0(4,697)	69.828 ***
	여학생	2.90(0.764)	4.9	19.9	55.3	19.9	100.0(4,354)	
학교급	초등학교	3.34(0.674)	1.8	6.3	48.4	43.6	100.0(2,742)	1204.847 ***
	중학교	2.91(0.721)	3.9	19.2	59.0	17.9	100.0(2,857)	
	고등학교	2.71(0.758)	7.5	24.6	56.9	11.0	100.0(3,453)	
지역 규모	대도시	3.02(0.757)	4.0	15.4	54.8	25.8	100.0(3,685)	59.079 ***
	중소도시	2.90(0.768)	5.1	19.4	55.5	20.1	100.0(4,413)	
	읍면지역	3.01(0.781)	4.7	15.9	53.1	26.3	100.0(953)	
학업 성적	상	3.13(0.781)	3.9	13.1	49.1	33.9	100.0(2,945)	495.312 ***
	중	2.98(0.718)	3.4	16.5	58.6	21.5	100.0(4,008)	
	하	2.69(0.767)	8.1	25.1	56.1	10.7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3.08(0.759)	3.7	14.0	52.8	29.5	100.0(4,983)	342.457 ***
	중	2.86(0.739)	5.2	20.0	58.8	16.0	100.0(3,191)	
	하	2.69(0.783)	8.1	26.8	53.3	11.8	100.0(869)	

\* $p < .05$ , \*\* $p < .01$ , \*\*\* $p < .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26 학교에 대한 생각\_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연도별 추이)

위의 <표 IV-172>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자신들에게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고 있는가에 대하여 물은 응답 결과이다. 긍정적인 응답은 '그런 편이다' 55.0%, '매우 그렇다' 23.0%를 합하여 78.0%로 나타났다. 남학생(80.6%)보다 여학생이 75.2%로 긍정적인 응답이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에서는 역시 상급학교로 갈수록 긍정적인 응답이 적어 초등학교는 92.0%, 중학생은 86.9%, 고등학생은 67.9%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앞의 <표 IV-171>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업성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긍정적인 응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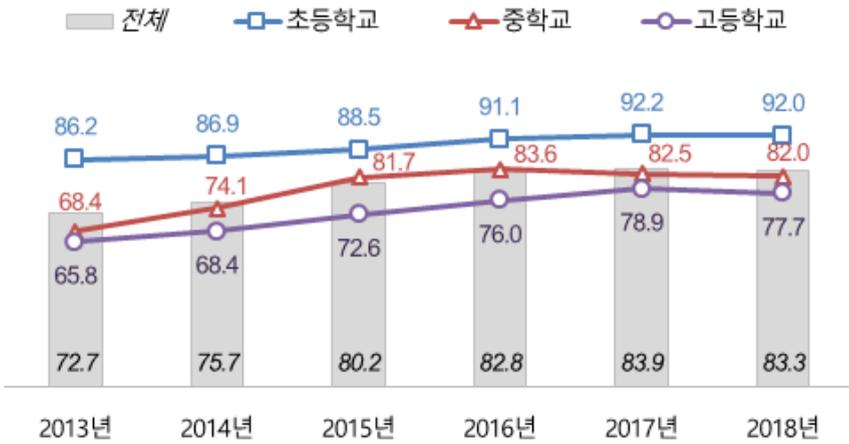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이후 학교가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는 인식은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18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0.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3 학교에 대한 생각\_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3.05(0.728)	3.7	12.9	58.1	25.3	100.0(9,052)		
성별	남학생	3.08(0.735)	3.7	12.2	56.4	27.7	100.0(4,699)	32.287
	여학생	3.01(0.718)	3.8	13.7	59.9	22.6	100.0(4,353)	***
학교급	초등학교	3.35(0.673)	1.6	6.4	47.5	44.4	100.0(2,739)	876.296 ***
	중학교	2.99(0.699)	3.4	14.6	61.4	20.6	100.0(2,858)	
	고등학교	2.86(0.717)	5.7	16.6	63.7	14.0	100.0(3,455)	
지역 규모	대도시	3.10(0.734)	3.7	11.2	56.3	28.8	100.0(3,687)	63.539 ***
	중소도시	3.00(0.721)	3.9	14.6	59.6	21.9	100.0(4,412)	
	읍면지역	3.09(0.718)	3.3	11.6	57.6	27.4	100.0(953)	
학업 성적	상	3.21(0.734)	3.0	9.7	50.6	36.7	100.0(2,948)	483.962 ***
	중	3.06(0.682)	2.8	12.0	61.6	23.5	100.0(4,006)	
	하	2.80(0.737)	6.6	19.2	61.6	12.6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3.16(0.720)	3.0	10.5	54.6	32.0	100.0(4,981)	344.318 ***
	중	2.95(0.700)	4.2	14.3	63.4	18.1	100.0(3,194)	
	하	2.78(0.751)	6.6	21.9	58.6	12.9	100.0(869)	

\*p<.05, \*\*p<.01, \*\*\*p<.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27 학교에 대한 생각\_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연도별 추이)**

위의 <표 IV-173>은 동일한 학생들에게 학교가 자신들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이다. 전체 9,052명의 학생 중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은 83.4%로 나타났는데, '그런 편이다'가 58.1%로 '매우 그렇다'가 25.3%로 조사되었다. 남녀 학생 간 차이는 미미했으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긍정적인 응답이 낮게 나왔는데, 초등학생은 91.9%, 중학생은 82.0%, 고등학생은 77.7%로 조사되었다. 위에서 물어본 두 질문에서의 응답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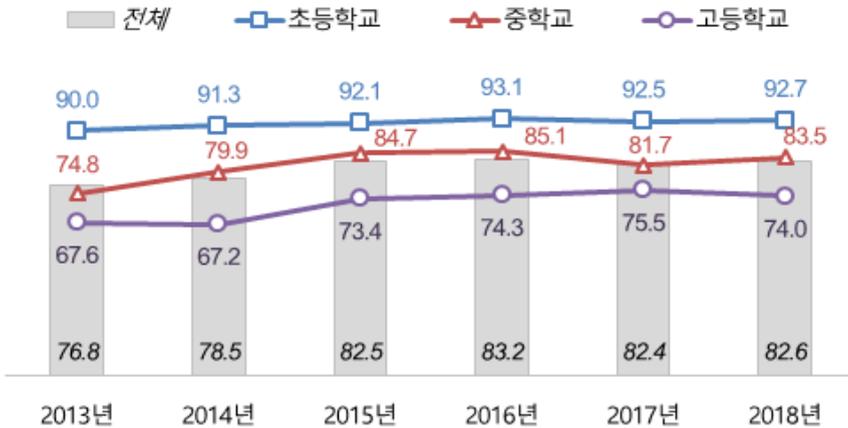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앞의 문항과 마찬가지로 2013년 이후 긍정적 인식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18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0.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4 학교에 대한 생각\_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chi^2$	
전체	3.07(0.767)	4.4	12.9	54.0	28.7	100.0(9,055)		
성별	남학생	3.11(0.780)	4.8	11.0	52.3	31.9	100.0(4,701)	70.167***
	여학생	3.02(0.751)	4.0	15.0	55.7	25.2	100.0(4,354)	
학교급	초등학교	3.42(0.672)	1.5	5.8	41.6	51.0	100.0(2,743)	1144.838 ***
	중학교	3.03(0.721)	4.0	12.5	60.0	23.4	100.0(2,858)	
	고등학교	2.82(0.770)	7.1	19.0	58.7	15.2	100.0(3,454)	
지역 규모	대도시	3.13(0.753)	3.7	11.6	52.7	32.1	100.0(3,687)	52.440***
	중소도시	3.01(0.775)	5.2	13.9	55.4	25.6	100.0(4,415)	
	읍면지역	3.08(0.765)	3.9	13.8	52.5	29.8	100.0(953)	
학업 성적	상	3.22(0.768)	3.5	10.2	46.8	39.5	100.0(2,949)	409.935 ***
	중	3.08(0.737)	3.7	12.4	56.0	27.9	100.0(4,008)	
	하	2.83(0.765)	7.2	18.0	59.9	14.9	100.0(2,090)	
경제적 수준	상	3.18(0.769)	3.9	10.5	49.6	36.0	100.0(4,984)	346.850 ***
	중	2.97(0.730)	4.5	14.5	60.2	20.9	100.0(3,194)	
	하	2.80(0.783)	7.1	21.3	56.0	15.6	100.0(869)	

\*p<.05, \*\*p<.01, \*\*\*p<.001



\*주: '그런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28 학교에 대한 생각\_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연도별 추이)

위의 <표 IV-174>에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전체 응답학생 9,055명 중 긍정적인 응답은 82.7%로, ‘그런 편이다’가 54.0%, ‘매우 그렇다’가 28.7%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84.2%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여학생의 80.9%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역시 상급학교로 갈수록 긍정적인 응답은 낮게 나와 초등학생이 92.6%, 중학생이 83.4%, 고등학생이 73.9%로 나타났다. 이 질문에 있어서도 다른 질문에서와 같이 학업성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긍정적 응답도 낮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까지는 긍정적 인식 비율이 높아지다 이후 약간 감소한 상태임을 볼 수 있다. 201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0.2%p 높게 나타났다.

## (2)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

### ① 대안교육 참여 기회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서는 교육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면서(“일반 및 직업 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을 장려하고...”) 동시에 협약 제29조 2항에서는 “제28조의 어떠한 조항도 개인 및 단체의 교육기관 설립·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가 아동권리협약의 제29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안적 교육을 찾아 학생들에게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이행하는 실천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치열한 대학입학 경쟁 속에서 지나치게 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주요 교과목에 집중하고, 교육이 암기식 위주로 치우치면서 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따라서 점차 국가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게 되면서 대안학교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97년 경상남도 산청의 지리산 자락에 최초의 전일제 대안학교인 간디청소년학교가 설립되었다.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의 선택권을 늘려주고 현 교육체제의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2005년 초·중등교육법에 제60조3(대안학교) 조항을 신설하였고, 2007년에는 세부적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2017년에는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의 규정을 완화하여 대안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중이다(김영지 외, 2017: 353).

아래의 <표 IV-175>에서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각종학교에 포함되어 학력이 인정되는 가장 최근의 대안학교 현황이 나타나있다. 지난 2017년 1월 초에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는 정부로부터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수가 총 25개였는데, 2018년 4월에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총 39개교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중 11개교가 공립이고 28개교는 사립이다. 총 39개의 대안학교 중 초등학교는 2개교, 중학교는 10개교, 고등학교는 12개교이며, 초·중 통합이 3개교, 중·고 통합이 9개교, 초·중·고 통합이 3개교로 나타났다. 각종학교로서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는 경기도에 8개교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북에 6개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서울, 충북, 경남에 각 4개교, 인천에 3개교, 대전, 충남, 전남에 각 2개교, 대곡, 광주, 울산, 강원에는 각 1개교가 설립되어 있다.

표 IV-175 공립·사립 대안학교(각종학교) 39개교 현황

시·도	학교명	구분	학교급	설립연도	소재지
서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사립	고	'09	중구 신당동
	여명학교	사립	고	'10	중구 남산동
	지구촌학교	사립	초	'12	구로 오류동
	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	공립	고	'12	종로 송인동
대구	대구해울중고등학교	공립	중·고 통합	'18	대구 달서구
인천	인천청담학교	사립	고	'11	연수 동춘동
	인천해밀학교	공립	중·고 통합	'12	남동 구월동
	인천한누리학교	공립	초·중·고 통합	'13	남동 논현동

시·도	학교명	구분	학교급	설립연도	소재지
광주	월광기독교학교	사립	초	'14	서구 화정동
대전	그라시아스음악고등학교	사립	고	'12	서구 도마동
	그라시아스음악중학교	사립	중	'17	서구 도마동
울산	울산두남중고등학교	공립	중·고 통합	'17	울산 울주군
경기	TLBU글로벌학교	사립	초·중통합	'08	경기 고양시
	화요일아침예술학교	사립	고	'11	경기 연천군
	쉐마기독교학교	사립	초·중·고 통합	'11	경기 양주시
	새나래학교	사립	중·고 통합	'11	경기 용인시
	경기새울학교	공립	중	'13	경기 이천시
	광성드림학교	사립	초·중 통합	'14	경기 고양시
	하늘꿈학교	사립	중·고 통합	'16	경기 성남시
강원	중앙예담학교	사립	중·고 통합	'18	경기 용인시
	해밀학교	사립	중	'18	강원 홍천군
충북	글로벌선진학교	사립	중·고 통합	'11	충북 음성군
	한국폴리텍다솜학교	사립	고	'12	충북 제천시
	다다예술학교	사립	초·중 통합	'17	충북 청주시
	은여울중학교	공립	중	'17	충북 진천군
충남	여해학교	공립	중	'13	충남 아산시
	드림학교	사립	고	'18	충남 천안시
전남	월광기독교학교	사립	중	'18	전남 함평군
	성요셉상호문화학교	사립	고	'18	전남 강진군
경북	한동글로벌학교	사립	초·중·고 통합	'11	경북 포항시
	글로벌선진학교 문경	사립	중·고 통합	'13	경북 문경시
	산자연학교	사립	중	'14	경북 영천시
	나무와학교	사립	중	'14	경북 영천시
	링컨학교	사립	중·고 통합	'17	경북 김천시
경남	유파스학교	사립	고	'18	경북 경산시
	꿈키움중학교	공립	중	'14	경남 진주시
	지리산중학교	사립	중	'14	경남 하동군
	고성음악고등학교	공립	고	'17	경남 고성군
	밀양영화고등학교	공립	고	'17	경남 밀양시

\* 출처: 교육부(2018.4.11.). 2018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 보도자료.

아래의 <표 IV-176>에는 가장 최근인 2018년 4월 현재 대안교육 특성화학교의 현황이 나타나 있다. 이들의 법적 설립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

중학교)와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에 명시되어 있다.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도 직업계 학교인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이 특정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현장실습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이러한 대안교육 특성화학교가 전국에 총 38개교였는데, 2018년 4월 현재 중학교 17개교(공립 5개, 사립 12개)와 공립 26개교(공립 5개, 사립 21개)로 총 43개교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76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단위 : 명)

지역	학 교 명	설립구분	지정연도	소재지
대구	한울안중학교	사립	'18	달성군
	가창중학교	사립	'18	달성군
광주	평동중학교	공립	'14	광주시
경기	두레자연중학교	사립	'03	화성시
	이우중학교	사립	'03	성남시
	헌산중학교	사립	'03	용인시
	중앙기독교중학교	사립	'06	수원시
	한겨레중학교	사립	'06	안성시
강원	팔렐중학교	사립	'11	홍천군
	가정중학교	공립	'17	춘천시
전북	전북동화중학교	공립	'09	정읍시
	지평선중학교	사립	'02	김제시
전남	용정중학교	사립	'03	보성군
	성지송학중학교	사립	'02	영광군
	청람중학교	공립	'13	강진군
	나산실용예술중학교	공립	'18	함평군
경남	남해상주중학교	사립	'15	남해군
중학교 : 17교(공립5, 사립12)				
부산	지구초고등학교	사립	'02	연제구
대구	달구벌고등학교	사립	'03	동구
인천	산마을고등학교	사립	'00	강화군
광주	동명고등학교	사립	'99	광산구

지역	학 교 명	설립구분	지정연도	소재지
경기	두레자연고등학교	사립	'99	화성시
	경기대명고등학교	공립	'02	수원시
	이우고등학교	사립	'03	성남시
	한겨레고등학교	사립	'06	안성시
강원	전인고등학교	사립	'05	춘천시
	팔려고등학교	사립	'06	홍천군
	현천고등학교	공립	'14	횡성군
충북	양업고등학교	사립	'98	청원군
충남	한마음고등학교	사립	'03	천안시
충남	공동체비전고등학교	사립	'03	서천군
전북	세인고등학교	사립	'99	완주군
	푸른꿈고등학교	사립	'99	무주군
	지평선고등학교	사립	'09	김제시
	고산고등학교	공립	'18	완주군
전남	영산성지고등학교	사립	'98	영광군
	한빛고등학교	사립	'98	담양군
	한울고등학교	공립	'12	곡성군
경북	경주화랑고등학교	사립	'98	경주시
경남	간디고등학교	사립	'98	산청군
	원경고등학교	사립	'98	합천군
	지리산고등학교	사립	'04	산청군
	태봉고등학교	공립	'10	창원시

고등학교 : 26교(공립5, 사립21)

\* 출처: 교육부(2018.4.11.). 2018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 보도자료.

이 밖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아래의 <표 IV-17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에 교육부가 총 237개교 중 170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이후 통계가 있지 않은 상황이다. 미인가 대안학교는 대부분 민간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다문화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특정 종교와 선교 관련 자녀, 국제교육 관련 학생, 미혼모, 학교 부적응 학생, 기타 대안교육 학생 등 총 6,762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종교와 선교 관련 학생이 36.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 부적응 학생 33.2%, 대안교육 18.8%의 순으로 분포를 보였다.

표 IV-177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현황

(단위 : 개, 명, %)

구 분	초	중	고	초·중	중·고	초·중·고	합계	(%)	학생 수	(%)
다문화		1			4	6	11	6.5	299	4.4
탈북					2	4	6	3.5	148	2.2
종교·선교	3		2	5	8	9	27	15.9	2,471	36.5
국제교육	1	1	1	1	1	1	6	3.5	319	4.7
미혼모					4	1	5	2.9	9	0.1
부적응학생		5	9	4	46	19	83	48.8	2,248	33.2
대안교육	7	1	2	5	12	5	32	18.8	1,268	18.8
합계	11	8	14	15	77	45	170	100%	6,762	100

\* 출처: 교육부(2014.11.10.).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 보도자료. p.9.  
김영지 외(2017). p.356.

\* 주: 부적응학생 : 학업중단학생 / 위기학생  
대안교육 : 인성 / 인문 / 특기·적성계발 / 전인교육 / 자아발견 등

## ② 직업교육 참여 기회

교육부의 2017년도 취업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일반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평균 64.8%로 10명중 3~4명이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교육부, 2017a: 38-39) 학벌위주의 사회로 수십 년 간 지속되어온 대한민국의 교육사회학적 문제는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에 편승하여 결국 ‘청년실업’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만들었다. 과거로부터 좋은 대학을 나와야 취업이 잘되고 사람 구실을 한다는 대한민국 학벌사회 속의 무한경쟁 교육풍토는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을 만들어 내었다. 하지만 재벌 위주의 산업경제구조가 지속되면서 재벌들의 탐욕으로 정부의 기대만큼 더 이상 고용의 기회가 늘어나지 않자 급기야 학벌사회의 폐단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결국 고등교육을 받았는데도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초래된 것이다.

이미 앞에서 학업중단율과 관련하여 언급하였지만 대한민국의 초중등교육과정은 대학입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모두에게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되지 않는 최근의 사회상황은 대학으로의 진학보

다는 일찍 취업을 하는 것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수요 증가에도 교육부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학업중단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고자 해도 공급이 부족하여 직업계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직업계고의 입학에 실패한 학생들이 다시 인문계 고등학교에 와서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학생들이 바로 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다. 교육부는 2015년 뒤늦게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를 특성화학교까지 확대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어 교육부는 2016년 8월에는 기존에 운영해오던 도제학교 60개교에다 새롭게 특성화고등학교 140개교를 선정하여 2017년까지 총 200개교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교육부, 2016.8.19.).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회를 늘려줌으로서 학업중단율을 줄이고, 진로교육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대한민국의 기존 직업교육의 기회는 직업계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들 수 있었다. 교육부는 직업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해 유럽의 전통적인 도제식 직업교육 체제를 수입하였다. 아래의 <표 IV-17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직업교육 방식인 유럽형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교육은 현장 실습형 직업교육으로 산업체에 가서 실제로 일을 배우면서 생산에 참여하는 일종의 노작교육이다.

표 IV-178 마이스터고 · 특성화고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비교

구 분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유형이 아닌 교육방식)
학교 수	47개교	465교	60개교 (특성화고 수에 포함)
운영 범 위	학교 전체	학교 전체	특성화고 내 도제교육 적합 학과
재학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료, 입학금, 학교운 영비) 전액 면제</li> <li>○기숙사 설치 필수</li> <li>○학급당 학생 수 20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업료 · 입학금) 장학금 으로 지원</li> <li>○(학교운영비) 학생 부담</li> </ul>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 도제교육생에게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li> </ul>
학생 모 집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국 단위 학생 선발</li> <li>- 단, 정원 중 일부는 지역 단위 내 선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역단위 학생 선발</li> <li>※ 교육감이 정하는 경우 전국단위 선발 가능</li> </ul>	(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성화고 1학년생 중 기 업견학, 사업설명회를 거 쳐 1학년 2학기에 참여학 생 선발</li> </ul>
교육과 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 육과정 운영 자율</li> <li>-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 정으로 전면 운영</li> <li>-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과 정 지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따 라 운영(원칙)</li> <li>○자율학교로 지정 시 교 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부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과정 운영 자율</li> <li>○NCS 기반의 교육훈련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필 요 인력 양성</li> <li>* 2년간 평균적으로 1,297 시간이 NCS 기반 과정으 로 구성</li> <li>○학교 -기업 간 교육과정 공동 개발·운영</li> <li>○학생은 2~3년간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교육</li> </ul>
지원 규 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이스터고 선정 시 기반 조성금 50억 지원(특성화 교)</li> <li>○운영비로 보통교부금 산 정 시 9~11억원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업역량 강화사업, 글로벌 해외 인턴십 등 재정지원사업으 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용부) 연 20억원 상한 시설 장비비 · 운영비 · 인 건비 지원</li> <li>○(교육부) 특교로 교재개발 비, 방과후 프로그램비, 연수 비 등 지원</li> </ul>

\* 출처: 교육부(2016.8.1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7년까지 특성화고 200여개로 확대" 보도자료. p.12, 김영지 외(2017). p.359.

\* 주: 2016년 4월 1일 기준.

위의 표에서 읽을 수 있듯이 이 체제는 도제교육생에게 산업체에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국가직무표준능력인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를 기반으로 교육훈련을 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체제이다.

표 IV-17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및 참여기업 지원내용

대상	지원 내용	세부내용	지원 부처
학생	지위	· 교육근로계약 체결로 기업 내 현장교육훈련 기간은 학생이자 근로자 지위 보장 · 참여기업 및 학생, 산업기능요원 1순위 지정	고용부 병무청
	보수	· 기업 내 근로 시간(교육훈련시간 포함)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기업
학교	시설 기자재 및 운영비	· 시설기자재: 연간 10억 한도 · 일반운영비(인건비포함): 연간 10억 한도 ※ 사업계획서를 매년 심사하여 지원 금액 결정(5년간 연간 20억원 한도)	고용부
	사업 보조비	· 사업관리비 · 교원연수비 · 전문교과 교재 개발비 · 학생·학부모 사업설명회 등	교육부
기업	훈련 지원금	· 현장훈련비용 지원 : 직종 및 시간을 고려하여 지급 ·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지원(사업주) * 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급	고용부
	인프라 구축 지원	· 학습도구 컨설팅 지원(최대 300만원, 개발기관에 지원) · 프로그램 개발비(580만원~890만원, 개발기관에 지원) · 기업현장교사 수당 지원(연 400~1,600만원) · HRD 담당자 수당 지원(연 300만원 한도) · 기업현장교수 및 HRD 담당자 연수 지원(한국기술교육대학)	

\* 출처: 교육부(2016.8.1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7년까지 특성화고 200여개로 확대” 보도자료. p.13, 김영지 외(2017). p.361.

\* 주: 2016년 8월 18일 기준.

위의 <표 IV-179>에서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을 읽을 수 있다. 먼저 도제학교의 학생은 학생이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따라서 근로기준법 상의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된다. 학교에는 시설기자재 비용으로 연간 10억 원과 일반운영비(인건 비 포함) 10억 원이 정부로부터 5년간 총 연간 2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된다. 참여 기업에는 학습근로자 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으며, 그 밖에 학습도구 컨설팅과 프로그램 개발 비용, 기업현장 교사 및 교수와 HRD 담당자 수당 등이 지원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2014년에 2,079개에서 2016년 7월에는 7,686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도제학교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추이는 같은 기간에 3,197명에서 21,530명으로 증가되어 약 670%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영지 외, 2017: 361~362). 이에 교육부는 2017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를 개정하였다.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목고와 함께 일반고등학교에서도 산업계의 수요에 따른 학과의 교과를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17년 5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력적인 직업계고등학교 100개를 선정하고 현장의 높은 관심과 추가 요구를 반영하여 50개를 추가로 선정하여, 150개교에 3년간 총 900억 원을 투입해서 직업계고의 종합적 혁신을 유도한다는 이른바 'MAGIC(Make an Attractive, Good & Innovative sChool)' 사업을 발표하였다. 이는 전체 직업계고 594개교를 대상으로 한 1단계(2017년~2019년) MAGIC 사업이고, 2020년~2022년에 2단계 사업이 추진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 (1)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 수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제31조 1항에는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31조 2항에는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해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 제공을 촉진해야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아래의 세부지표들은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의 여가와 문화 및 문화예술 활동의 권리를 보장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들이다.

#### ① 전국 문화예술 기반 시설 수

표 IV-180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단위 : 개)

연도별	총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2012	2,072	786	694	154	209	229	-
2013	2,182	828	740	171	214	229	-
2014	2,266	865	754	198	221	229	116
2015	2,519	930	809	202	232	229	116
2016	2,595	978	826	219	229	228	114
2017	2,657	1011	853	229	236	228	100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7.2.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전년 대비 3.02% 증가” 보도자료, p.1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p.9 2017.1.1. 기준.

위의 <표 IV-180>에는 대한민국의 전국 문화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문화의집의 연도별 현황이 제시되어 있다. 2012년 총 2,072개였던 문화기반시설이 2017년에는 2,657개로 28%가 증가하였다. 이 중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문화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은 2012년에 786 개소였는데 2017년에는 1011개소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②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 수

아래의 <표 IV-181>에는 청소년시설 중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활동시설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이 나타나 있다. 2017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800개소가 설립되어 있고, 주로 생활권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258개소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연권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원이 189개소이며, 도심지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185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로 해외나 국내의 여행청소년이나 그의 가족들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서 기능하고 있는 유스호스텔은 전국에 115개소이며, 직업이나 정보화, 인권 등 특성화된 시설은 10개소에 달하고 있다.

**표 IV-18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800	185	258	189	43	115	10
공 공	551	184	253	64	19	21	10
민 간	249	1	5	125	24	94	0

\* 출처: e-나라지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5) (2018년 7월 22일 인출)

\* 주: 2017년 12월 31일 기준.

아래의 <표 IV-182>에 따르면 청소년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총 157개소가 설립되어 있어 가장 많고, 강원도가 80개소로 다음으로 많으며, 경남 75개소, 경북 64개소, 서울 60개소 순으로 나타나 있다. 특화시설은 서울이 6개소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 모든 종류의 수련시설은 경기도의 수련시설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82 전국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800	185	258	189	43	115	10
서울	60	32	15	3	0	4	6
부산	26	8	12	3	2	1	0
대구	14	5	4	2	0	2	1
인천	29	8	5	5	6	5	0
광주	11	5	4	1	0	0	1
대전	15	4	7	3	0	1	0
울산	10	1	8	1	0	0	0
세종	2	1	1	0	0	0	0
경기	157	33	58	42	9	15	0
강원	80	15	30	18	4	12	1
충북	47	6	13	21	1	6	0
충남	49	11	12	15	2	9	0
전북	53	10	18	14	3	7	1
전남	58	10	20	14	6	8	0
경북	64	15	15	14	4	16	0
경남	75	18	15	28	4	10	0
제주	50	3	21	5	2	19	0

\* 출처: e-나라지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5) (2018년 7월 22일 인출)

\* 주: 2017년 12월 31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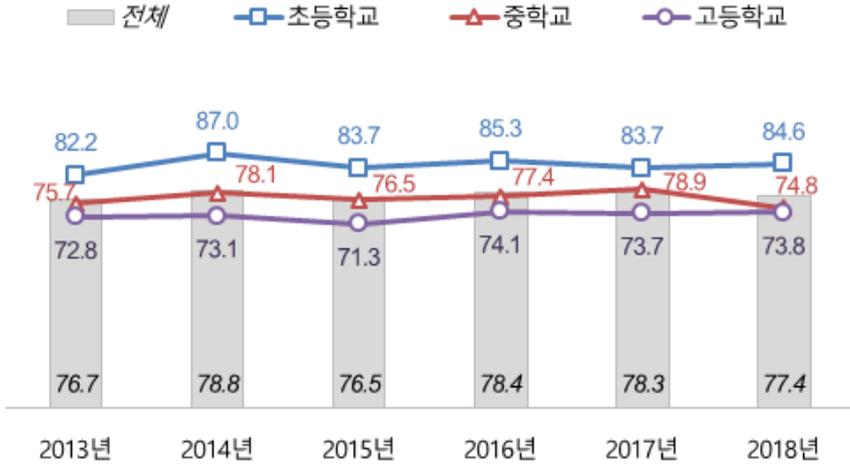
아래의 <표 IV-183>에는 청소년이 문화기반시설인 공공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결과가 나타나 있다. 전체 응답청소년 9,039명 중 한 번도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22.6%로 나타났고, 1주일에 1~2회 이상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11.4%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학업수준이 높을수록 도서관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83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공공도서관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 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22.6	27.4	20.7	17.9	11.4	100.0(9,039)	
성별	남학생	27.9	26.0	19.2	16.0	100.0(4,691)	161.289***
	여학생	16.9	28.8	22.4	20.0	100.0(4,348)	
학교급	초등학교	15.3	25.2	17.5	21.2	100.0(2,734)	448.791***
	중학교	25.3	29.1	21.0	16.9	100.0(2,849)	
	고등학교	26.1	27.6	23.1	16.2	100.0(3,456)	
지역 규모	대도시	23.7	27.7	20.3	17.0	100.0(3,676)	16.013*
	중소도시	22.3	27.2	20.7	18.7	100.0(4,410)	
	읍면지역	19.7	26.7	22.3	17.6	100.0(952)	
학업 성적	상	15.2	23.6	21.4	23.3	100.0(2,943)	398.071***
	중	23.1	28.5	20.9	17.2	100.0(4,003)	
	하	32.2	30.6	19.2	11.8	100.0(2,084)	
경제적 수준	상	20.8	25.6	20.8	19.9	100.0(4,974)	77.027***
	중	24.6	29.7	20.8	15.5	100.0(3,192)	
	하	25.8	28.8	19.8	15.7	100.0(865)	

\*p<.05, \*\*p<.01, \*\*\*p<.001



\*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단위: %)

그림 IV-129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공공도서관(연도별 추이)

아래의 <표 IV-184>에는 청소년들이 앞에서 제시되었던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이용 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가 나타나 있다.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57.2%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도서관의 이용과는 달리 1주일에 1~2회 이상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은 3%에 그치고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학교급에서도 차이는 그다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시설의 이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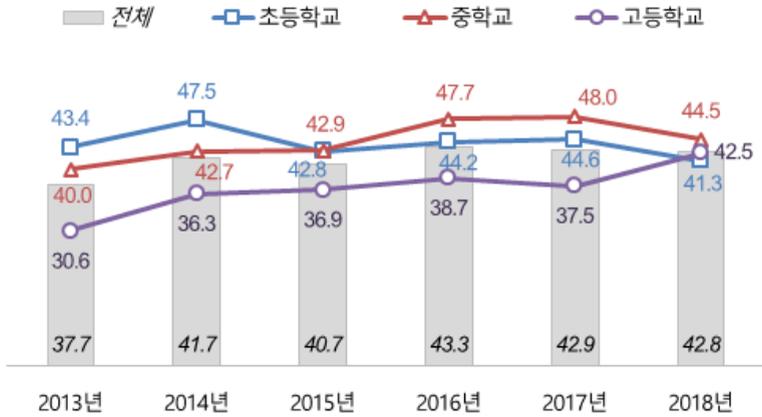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시설 이용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다 2017년 이후 다소 정체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의 경우, 초·중·고등학생 간의 이용 비율 차이가 예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4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청소년시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 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 에 1-2 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57.2	31.0	4.7	4.1	3.0	100.0(8,990)		
성별	남학생	57.5	30.2	4.8	4.1	3.5	100.0(4,670)	9.877*
	여학생	56.9	31.8	4.7	4.1	2.5	100.0(4,320)	
학교급	초등학교	58.7	25.4	6.6	4.7	4.6	100.0(2,704)	113.434***
	중학교	55.5	34.3	3.7	3.7	2.8	100.0(2,842)	
	고등학교	57.5	32.6	4.1	3.9	1.9	100.0(3,445)	
지역 규모	대도시	55.5	34.8	3.9	3.3	2.5	100.0(3,662)	81.688***
	중소도시	59.7	27.4	5.0	4.4	3.6	100.0(4,384)	
	읍면지역	52.6	32.7	6.8	5.6	2.4	100.0(945)	
학업 성적	상	53.4	32.5	5.4	4.7	3.9	100.0(2,930)	44.372***
	중	57.9	30.7	4.6	4.0	2.8	100.0(3,981)	
	하	61.2	29.5	4.0	3.4	2.0	100.0(2,072)	
경제적 수준	상	55.6	31.2	5.5	4.3	3.3	100.0(4,945)	28.313***
	중	59.2	30.7	3.5	3.7	2.8	100.0(3,174)	
	하	58.8	30.8	4.4	4.0	2.0	100.0(864)	

\* 주: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함.  
\*p<.05, \*\*p<.01, \*\*\*p<.001



\*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단위: %)

그림 IV-130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청소년시설(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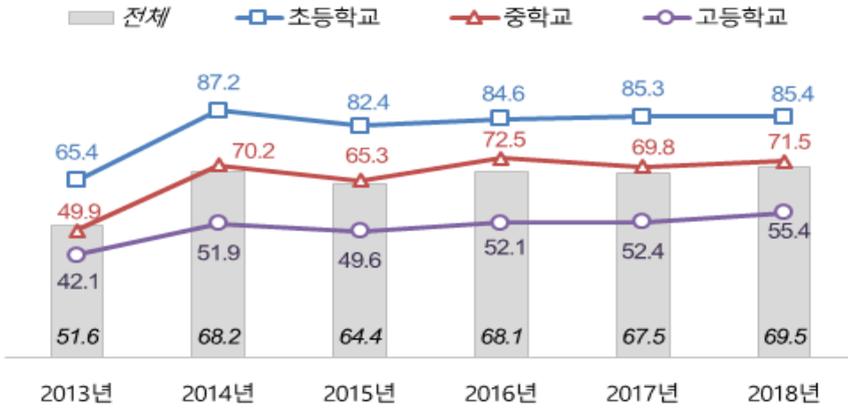
표 IV-185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체육시설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 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30.4	27.1	15.0	12.0	15.4	100.0(9,006)		
성별	남학생	27.2	22.0	14.5	14.2	22.1	100.0(4,675)	448.491***
	여학생	33.9	32.7	15.4	9.7	8.2	100.0(4,330)	
학교급	초등학교	14.5	24.4	17.4	16.2	27.4	100.0(2,712)	982.406***
	중학교	28.5	29.2	17.3	12.0	13.0	100.0(2,846)	
	고등학교	44.6	27.6	11.1	8.7	8.0	100.0(3,447)	
지역 규모	대도시	30.1	26.4	15.1	11.8	16.5	100.0(3,670)	9.382
	중소도시	31.1	27.6	14.8	11.9	14.6	100.0(4,389)	
	읍면지역	28.9	27.7	15.1	13.4	14.9	100.0(947)	
학업 성적	상	22.4	25.4	16.4	14.6	21.3	100.0(2,932)	318.747***
	중	30.6	28.1	15.3	12.0	14.0	100.0(3,983)	
	하	41.6	27.9	12.3	8.4	9.8	100.0(2,082)	
경제적 수준	상	24.4	25.3	16.5	14.2	19.6	100.0(4,954)	346.087***
	중	36.5	29.5	13.6	9.6	10.8	100.0(3,178)	
	하	42.7	29.1	11.0	8.8	8.4	100.0(865)	

\* 주: 응답 학생에게 제시된 체육시설이란 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말함.

\*p<.05, \*\*p<.01, \*\*\*p<.001



\*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단위: %)

그림 IV-131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체육시설(연도별 추이)

위의 <표 IV-185>는 청소년들의 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의 체육 시설 이용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청소년 9,006명 중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한 청소년은 30.4%에 달했다. 1주일에 1~2회 이상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은 15.4%로 나타나고 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도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학업시간에 쫓기는 상급학생들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교유형이나 지역규모에 따른 편차는 크지 않았으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체육시설 이용도가 낮아 적지 않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체육 시설 이용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해 왔다. 201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3.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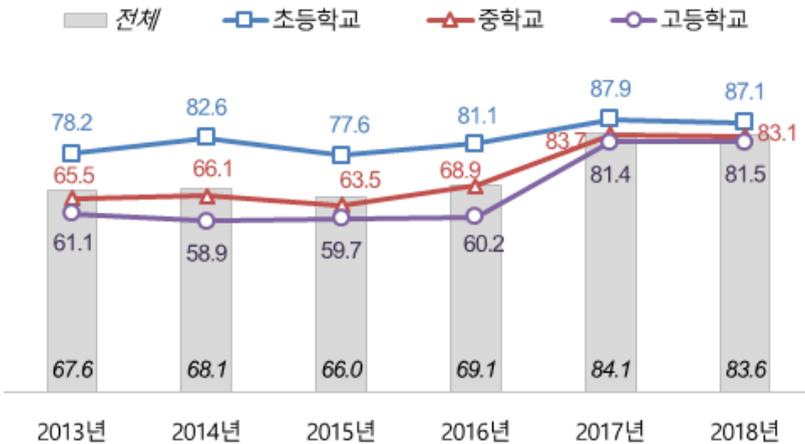
표 IV-186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문화 예술 공간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 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16.3	23.8	31.0	24.7	4.1	100.0(9,019)		
성별	남학생	20.5	22.5	28.2	24.2	4.5	100.0(4,679)	142.704***
	여학생	11.8	25.3	34.1	25.3	3.6	100.0(4,341)	
학교급	초등학교	12.9	28.8	30.3	22.9	5.1	100.0(2,725)	125.578***
	중학교	17.0	25.4	29.8	24.1	3.8	100.0(2,844)	
	고등학교	18.5	18.6	32.7	26.7	3.5	100.0(3,450)	
지역 규모	대도시	15.3	23.0	31.1	26.3	4.4	100.0(3,670)	15.745*
	중소도시	17.1	24.7	30.8	23.5	3.8	100.0(4,399)	
	읍면지역	17.0	23.1	31.8	24.2	3.9	100.0(950)	
학업 성적	상	10.8	23.6	32.4	28.0	5.2	100.0(2,937)	136.424***
	중	17.5	24.4	30.9	23.6	3.6	100.0(3,993)	
	하	21.9	23.1	29.5	22.2	3.4	100.0(2,082)	
경제적 수준	상	14.0	23.0	30.8	27.1	5.1	100.0(4,963)	98.601***
	중	19.6	24.2	31.4	21.8	3.0	100.0(3,183)	
	하	17.6	27.3	30.8	22.0	2.2	100.0(865)	

\* 주: 응답 학생에게 제시된 문화 예술 공간이란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을 말함.

\*p<.05, \*\*p<.01, \*\*\*p<.001



\*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단위: %)

그림 IV-132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_문화 예술 공간(연도별 추이)

위의 <표 IV-186>에는 2018년 현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이용한 정도가 제시되어 있다. 일 년에 문화예술 공간을 한 번도 이용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9,019명 중 16.3%나 되었다. 2~3개월에 1~2회 정도 이용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아 31%정도 되었고, 1주일에 1~2회 이용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1%로 조사되었다. 남학생보다는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더 많은 문화예술 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급학교로 갈수록 이용시간이 적었으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문화예술 공간의 이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문화 예술 공간 비율은 2017년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이용 비율이 높아져 초등학생과의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

## (2)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 ①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아래의 <표 IV-187>에는 2016년도 하반기에 조사된 15~19세 청소년들의 여가와 문화예술 등 활동에의 참여 실태가 제시되어 있다. 이들이 지속적으로 여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유형들을 살펴보면 취미와 오락 활동이 46.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스포츠 참여활동이 29.8%로, 문화·예술에의 관람 및 참여가 17.6%, 사회 및 기타활동은 4.6%로 조사되었다.

표 IV-187 지속적으로 하는 여가활동의 유형 - 상위 10개

(단위 : %)

		문화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참여	관광	취미· 오락	사회 및 기 타
전체		4.0	5.0	1.3	44.9	1.3	30.2	13.4
성별	남성	3.1	2.5	2.3	46.6	1.3	34.7	9.5
	여성	5.0	7.8	0.2	43.1	1.3	25.0	17.7
연령 대	15-19 세	8.4	9.2	0.8	29.8	0.5	46.8	4.6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국민여가활동 조사 결과 보도자료(2017. 01.12). p.10.

- \* 주: 1) 2016년 9.1~10.28일 동안 가구방문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응답자는 전국 17개 시도 만 15세 이상 남녀 참가자 10,602명이었고, 그 중 청소년은 총 827명으로 연령은 15~19세였으며 조사 결과는 복수 응답한 결과임
- 2) 여기서 남성과 여성은 전체 연령층의 응답자 성별을 의미함.
- 3) 사회 및 기타 활동은 봉사활동, 친구만남 등 사회공헌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사회봉사활동, 종교활동, 클럽가기와 같은 활동을 뜻함

아래의 <표 IV-188>에는 위의 같은 조사에서 15~19세 청소년들이 하루에 여가 활동으로 보내는 시간과 여가활동 중 스마트기기의 활용 시간을 평일과 휴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들의 여가활동 시간은 평일에 2.7시간이고 이중 스마트기기 이용시간은 2.0시간, 휴일에는 여가활동 시간이 5.1시간, 이중 스마트기기 이용시간 2.6시간으로 나타났다. 응답청소년들의 평일과 휴일의 전체 여가시간 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시간의 비중은 각각 74.1%와 51.0%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대부분은 휴일보다 평일의 여가시간에 스마트기기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휴일이나 평일 여가활동 시간의 반 이상을 스마트기기의 이용으로 보내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표 IV-188 일일 여가활동 시간과 여가활동 시간 중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단위 : 시간)

		평일		휴일	
		여가활동 시간	*스마트기기 활용 시간	여가활동 시간	스마트기기 활용시간
	전체	3.1	1.3	5.0	1.6
성별	남성	2.9	1.4	5.1	1.7
	여성	3.3	1.3	4.9	1.5
연령대	15-19세	2.7	2.0	5.1	2.6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국민여가활동 조사 결과 보도자료(2017. 01.12). p.12.

- \* 주: 1) 2016년 9.1~10.28일 동안 가구방문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응답자는 전국 17개 시도 만 15세 이상 남녀 참가자 10,602명이었고, 그 중 청소년은 총 827명으로 연령은 15~19세였으며 조사 결과는 복수 응답한 결과임.  
 2) 여기서 남성과 여성은 전체 연령층의 응답자 성별을 의미함.

아래의 <표 IV-189>는 청소년들이 여가활동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하는 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여가활동 동반자의 1순위는 혼자서가 76.2%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구와 함께 15.5%, 가족과 함께 8.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령층에서도 역시 혼자서가 59.8%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과는 달리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가 29.7%이었고, 친구와 함께는 8.8%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89 여가활동 동반자 1순위

(단위 : %)

구분	혼자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동호회 회원과 함께	직장동료	
전체	59.8	29.7	8.8	1.0	0.8	
성별	남성	59.4	29.3	8.8	1.3	1.2
	여성	60.1	30.0	8.8	0.7	0.4
연령대	15-19세	76.2	8.0	15.5	0.2	0.1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국민여가활동 조사 결과 보도자료(2017. 01.12). p.12.

- \* 주: 1) 2016년 9.1~10.28일 동안 가구방문 면접조사에 참여했던 응답자는 전국 17개 시도 만 15세 이상 남녀 참가자 10,602명이었고, 그 중 청소년은 총 827명으로 연령은 15~19세였으며 조사 결과는 복수 응답한 결과임.  
 2) 여기서 남성과 여성은 전체 연령층의 응답자 성별을 의미함.

②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에서 아래의 <표 IV-190>은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여부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총 응답청소년 9,056명중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한 청소년은 86.0%에 해당하였으며, 가입은 했으나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은 학생은 6.4%,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학생은 7.7%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학업의 부담이 있는 상급학교 학생일수록 청소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대한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표 IV-190 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입하지 않았다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았다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체(n)	$\chi^2$	
전체	86.0	6.4	7.7	100.0(9,056)		
성별	남학생	87.0	6.1	6.9	100.0(4,700)	9.538**
	여학생	84.9	6.7	8.4	100.0(4,356)	
학교급	초등학교	79.4	7.2	13.5	100.0(2,743)	204.624***
	중학교	87.5	6.7	5.8	100.0(2,857)	
	고등학교	89.9	5.5	4.6	100.0(3,456)	
지역 규모	대도시	84.5	6.9	8.6	100.0(3,689)	49.539***
	중소도시	88.3	5.6	6.1	100.0(4,412)	
	읍면지역	80.9	7.9	11.2	100.0(954)	
학업 성적	상	83.6	6.4	10.1	100.0(2,948)	49.097***
	중	86.4	6.3	7.3	100.0(4,012)	
	하	88.7	6.5	4.8	100.0(2,088)	
경제적 수준	상	84.1	6.8	9.1	100.0(4,983)	46.481***
	중	88.0	5.7	6.2	100.0(3,195)	
	하	89.8	6.1	4.1	100.0(87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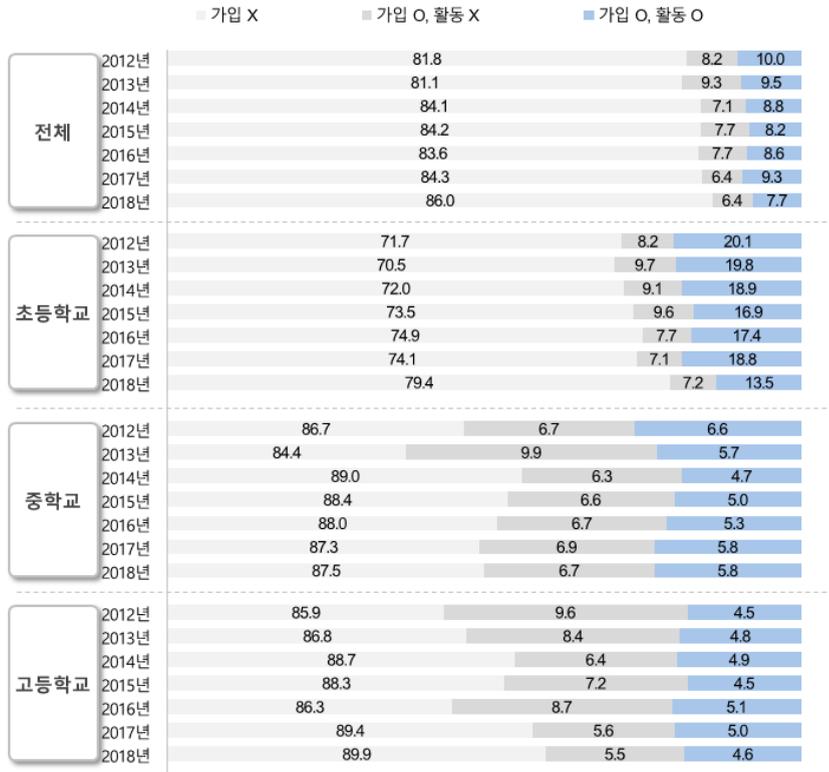


그림 IV-133 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연도별 추이)

### ③ 동아리활동 참가율

아래의 <표 IV-191>에서는 청소년의 동아리활동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총 9,051명의 응답청소년 중 3/4에 해당되는 75.9%의 학생은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학교급 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동아리활동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수준에서의 차이는 미미했으나 학업성적의 수준에서는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동아리활동에의 참여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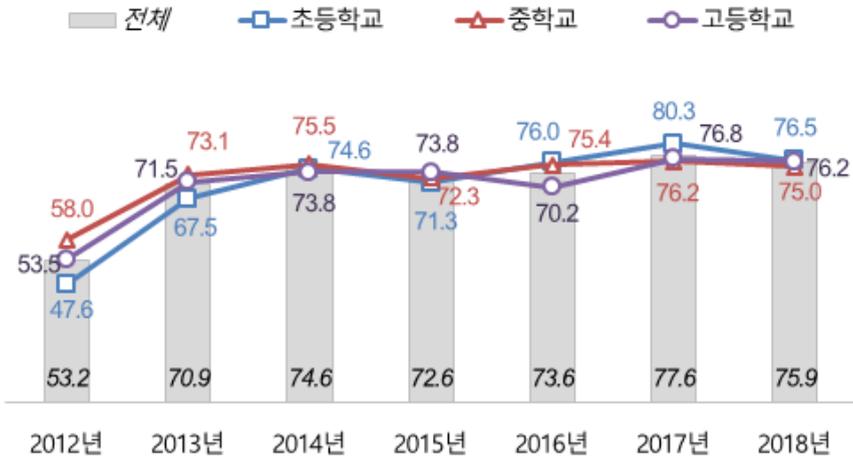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동아리 활동 참가 비율은 2013년에 크게 증가한 이후 조금씩 증가해 왔다. 201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1 동아리활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chi^2$
전체	75.9	24.1	100.0(9,051)	
성별	남학생	25.3	100.0(4,698)	8.121**
	여학생	77.2	100.0(4,353)	
학교급	초등학교	23.5	100.0(2,742)	1.801
	중학교	75.0	100.0(2,856)	
	고등학교	76.2	100.0(3,453)	
지역 규모	대도시	20.2	100.0(3,688)	57.554***
	중소도시	72.5	100.0(4,410)	
	읍면지역	76.5	100.0(953)	
학업 성적	상	19.8	100.0(2,945)	51.756***
	중	74.9	100.0(4,011)	
	하	71.7	100.0(2,087)	
경제적 수준	상	22.8	100.0(4,980)	10.400**
	중	74.4	100.0(3,193)	
	하	73.9	100.0(870)	

\*p<.05, \*\*p<.01, \*\*\*p<.001



\* 주: '있다'의 응답값(단위: %)

그림 IV-134 동아리활동 여부(연도별 추이)

④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아래의 <표 IV-192>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2018년 평일 여가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총 9,049명의 응답학생 중 16.8%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평일에 1시간 미만의 아주 적은 여가시간을 향수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여가시간이 5시간 이상으로 응답한 학생은 11.9%에 해당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평일 1시간~2시간 정도의 여가시간으로 27.4%가 해당되었다. 다음으로는 2시간~3시간 정도의 평일 여가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21.5%를 나타내고 있다. 남녀의 차이는 미미했으며, 학업부담이 많은 고학년일수록 상대적으로 평일에 여가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평일 여가시간 3시간 이상 응답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201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8%p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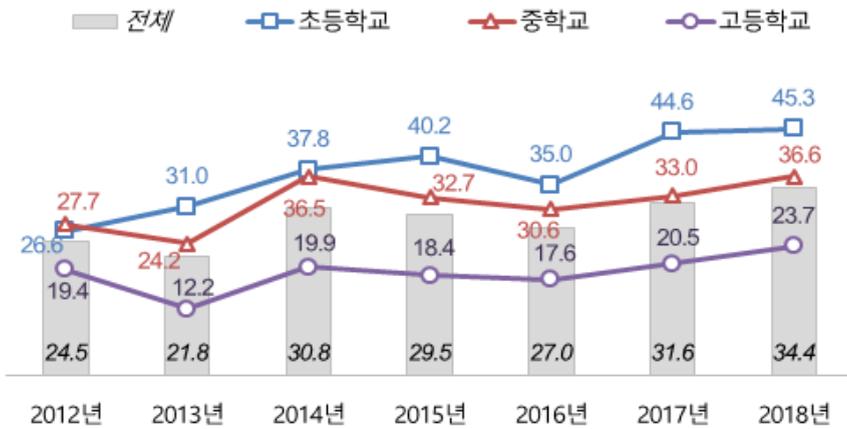
표 IV-192 평일 여가시간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전체(n)	x <sup>2</sup>	
	전체	16.8	27.4	21.5	15.4	7.1			11.9
성별	남학생	16.1	27.5	21.3	15.0	6.9	13.1	100.0(4,697)	17.676**
	여학생	17.5	27.2	21.8	15.8	7.3	10.5	100.0(4,352)	
학교급	초등학교	14.3	20.2	20.1	17.3	9.7	18.3	100.0(2,740)	495.603***
	중학교	11.2	29.2	22.9	17.4	7.7	11.5	100.0(2,856)	
	고등학교	23.3	31.5	21.5	12.2	4.5	7.0	100.0(3,454)	
지역 규모	대도시	15.7	29.3	20.8	16.1	6.8	11.3	100.0(3,685)	48.870***
	중소도시	16.2	26.5	22.4	15.4	7.3	12.2	100.0(4,410)	
	읍면지역	23.4	24.3	20.1	12.7	7.1	12.4	100.0(954)	
학업 성적	상	18.0	29.2	21.7	15.2	6.5	9.4	100.0(2,945)	49.147***
	중	15.2	27.2	22.0	15.8	7.5	12.3	100.0(4,010)	
	하	17.9	25.2	20.5	14.8	7.1	14.4	100.0(2,086)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전체(n)	$\chi^2$
		경제적 수준	상	16.6	27.4	21.3	16.0		
중	16.0	28.2	22.7	14.4	6.7	12.0	100.0(3,196)		
하	20.5	24.4	18.7	15.4	7.9	13.1	100.0(866)		

\*p<.05, \*\*p<.01, \*\*\*p<.001



\*주: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의 합계(단위: %)

그림 IV-135 평일 여가시간(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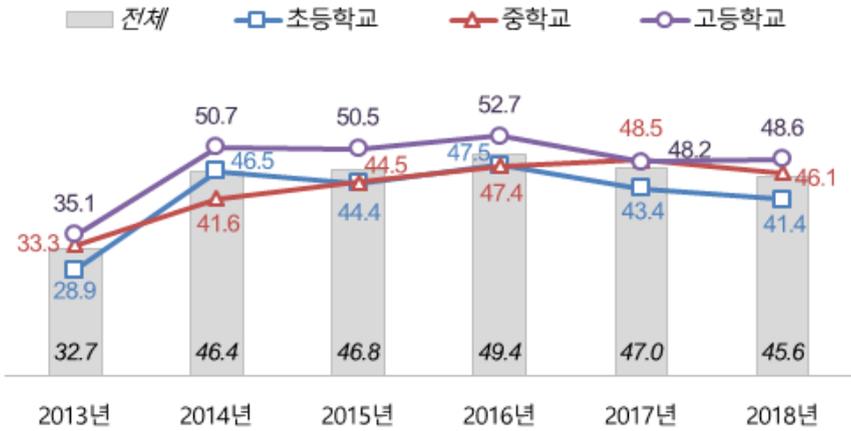
⑤ 하루 평균 학습시간

표 IV-193 평일 공부 시간

(단위 : %(명))

구분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5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전체(n)	χ <sup>2</sup>	
		~2시간 미만	~3시간 미만	~4시간 미만	~5시간 미만	~6시간 미만				
전체	15.6	16.5	22.3	19.1	13.5	7.8	5.2	100.0(9,051)		
성별	남학생	17.8	17.0	22.2	18.4	11.8	7.0	5.7	100.0(4,698)	68.825***
	여학생	13.2	15.9	22.3	19.8	15.4	8.7	4.7	100.0(4,353)	
학교급	초등학교	13.9	19.0	25.8	18.7	11.0	6.9	4.8	100.0(2,739)	169.172***
	중학교	14.1	15.7	24.1	21.9	13.6	6.5	4.1	100.0(2,856)	
	고등학교	18.3	15.2	18.0	17.1	15.4	9.6	6.5	100.0(3,456)	
지역 규모	대도시	13.0	14.8	22.9	19.5	14.8	8.7	6.4	100.0(3,689)	73.028***
	중소도시	17.2	17.4	21.9	19.0	12.9	7.4	4.3	100.0(4,408)	
	읍면지역	18.6	18.9	21.5	18.0	11.7	6.5	4.8	100.0(95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4.4	16.1	22.5	19.5	13.9	8.2	5.4	100.0(8,257)	160.323***
	한부모가정	30.1	21.5	19.0	15.1	7.7	4.1	2.5	100.0(600)	
	조손가정	19.7	18.0	21.5	15.5	15.6	5.0	4.8	100.0(89)	
	기타	22.7	17.6	26.1	14.1	13.8	0.0	5.6	100.0(97)	
학업 성적	상	7.0	13.1	21.8	22.8	16.9	10.8	7.5	100.0(2,944)	647.671***
	중	14.7	18.1	23.7	19.5	13.0	6.7	4.3	100.0(4,011)	
	하	29.6	18.1	20.3	13.0	9.6	5.7	3.7	100.0(2,088)	
경제적 수준	상	12.9	15.9	22.5	19.9	14.4	8.6	5.9	100.0(4,977)	118.798***
	중	17.3	17.6	23.0	18.3	12.6	6.8	4.3	100.0(3,197)	
	하	25.0	15.6	18.6	17.3	11.4	7.2	4.9	100.0(869)	

\*p<.05, \*\*p<.01, \*\*\*p<.001



\*주: '3~4시간', '4~5시간', '5~6시간', '6시간 이상'의 합계(단위: %)

그림 IV-136 평일 공부 시간(연도별 추이)

위의 <표 IV-193>에는 청소년의 평일 공부 시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타나 있다. 하루에 2~3시간 정도 평일에 공부한다가 가장 높아 22.3%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3~4시간이 19.1%, 1~2시간이 16.5%, 0~1시간이 15.6%, 4~5시간이 13.5%, 5~6시간이 7.8%, 6시간 이상이 5.2% 순으로 나타났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평일 공부 시간이 많았고, 일반계고 학생이 특성화계고 학생보다는 큰 편차로 공부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규모에 따른 편차는 크지 않았으나, 한부모가정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평일 공부 시간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공부 시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평일 3시간 이상 공부 시간의 응답 비율은 2016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감소 추세에 있다. 201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4%p 감소하였다.

(3) 여가·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

① 여가시설 이용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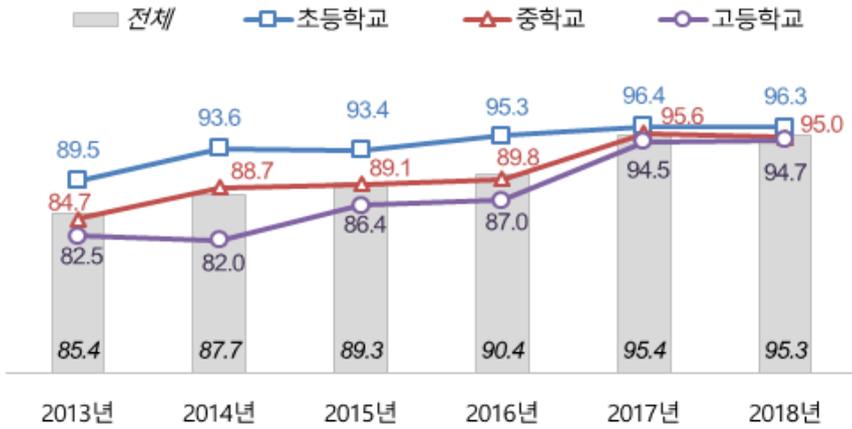
표 IV-194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 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 한다	전체(n)	$\chi^2$	
전체	3.20(0.530)	0.6	4.0	69.6	25.7	100.0(8,256)		
성별	남학생	3.23(0.566)	0.9	4.7	65.4	29.0	100.0(4,179)	72.265***
	여학생	3.18(0.490)	0.4	3.4	73.9	22.4	100.0(4,076)	
학교급	초등학교	3.37(0.577)	0.6	3.1	54.6	41.7	100.0(2,607)	529.784 ***
	중학교	3.16(0.502)	0.5	4.5	73.9	21.2	100.0(2,572)	
	고등학교	3.10(0.475)	0.7	4.5	78.7	16.0	100.0(3,077)	
지역 규모	대도시	3.23(0.534)	0.5	3.7	67.6	28.2	100.0(3,373)	28.693 ***
	중소도시	3.17(0.528)	0.8	4.3	71.5	23.3	100.0(3,999)	
	읍면지역	3.23(0.521)	0.3	4.1	68.5	27.2	100.0(883)	
학업 성적	상	3.29(0.557)	0.6	3.5	62.6	33.3	100.0(2,780)	153.961 ***
	중	3.19(0.515)	0.5	4.1	71.4	24.0	100.0(3,637)	
	하	3.11(0.503)	1.0	4.7	76.5	17.8	100.0(1,831)	
경제적 수준	상	3.25(0.546)	0.6	3.6	65.7	30.0	100.0(4,598)	100.650 ***
	중	3.15(0.504)	0.6	4.6	74.1	20.7	100.0(2,862)	
	하	3.13(0.503)	0.8	4.6	75.4	19.2	100.0(788)	

\* 주: 응답 학생에게 제시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을 말함.

\*p<.05, \*\*p<.01, \*\*\*p<.001



\*주: '만족하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37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연도별 추이)

위의 <표 IV-194>에서는 응답학생의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가 나타나 있다. 전체 응답학생 8,256명 중 95.3%가 만족하고 있는 긍정적 응답을 보이고 있다. 남녀 및 학교급에서의 차이는 미미했으나, 특성화계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일반계고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학업성적이나 경제적 수준에서의 학생 간 만족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청소년 시설 이용 만족도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2017년에 최고치 95.4%를 기록하였고, 2018년에도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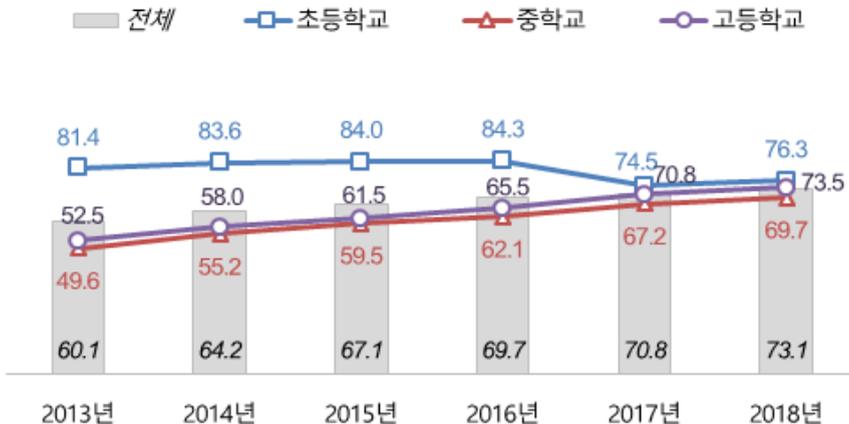
②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 지지정도

표 IV-195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가정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지 지하지 않는다	지지하 지 않는 편이다	지지 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 한다	전체(n)	$\chi^2$	
전체	2.84(0.871)	10.0	16.8	51.9	21.3	100.0(9,048)		
성별	남학생	2.78(0.922)	13.2	16.5	49.6	20.8	100.0(4,696)	105.716 ***
	여학생	2.91(0.806)	6.7	17.2	54.3	21.8	100.0(4,352)	
학교급	초등학교	2.97(0.923)	10.1	13.6	45.1	31.2	100.0(2,738)	255.762 ***
	중학교	2.77(0.859)	10.5	19.8	52.2	17.5	100.0(2,857)	
	고등학교	2.80(0.825)	9.6	16.9	56.9	16.6	100.0(3,454)	
지역 규모	대도시	2.90(0.871)	9.5	14.8	51.8	23.9	100.0(3,685)	41.557 ***
	중소도시	2.79(0.869)	10.6	18.5	52.0	18.9	100.0(4,409)	
	읍면지역	2.85(0.868)	9.6	17.0	51.5	21.8	100.0(954)	
학업 성적	상	3.00(0.868)	8.0	13.8	48.5	29.7	100.0(2,947)	253.567 ***
	중	2.82(0.839)	9.7	16.6	55.5	18.3	100.0(4,004)	
	하	2.66(0.896)	13.7	21.5	49.6	15.2	100.0(2,089)	
경제적 수준	상	2.93(0.880)	9.4	14.5	50.2	25.9	100.0(4,979)	181.534 ***
	중	2.77(0.843)	10.5	18.2	55.1	16.2	100.0(3,193)	
	하	2.64(0.863)	12.2	24.8	49.4	13.5	100.0(869)	

\*p<.05, \*\*p<.01, \*\*\*p<.001



\*주: '지지하는 편이다'와 '매우 지지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38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가정(연도별 추이)

위의 <표 IV-195>은 응답학생의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한 가정의 지지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응답학생 9,048명 중 73.2%는 긍정적으로 응답해 매우 지지한다가 21.3%, 지지하는 편이다가 51.9%로 나타났다. 여학생이(76.1%) 남학생(70.4%)보다 더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초등학교의 경우 매우 지지한다가 31.2%로 가정의 부모로부터 적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지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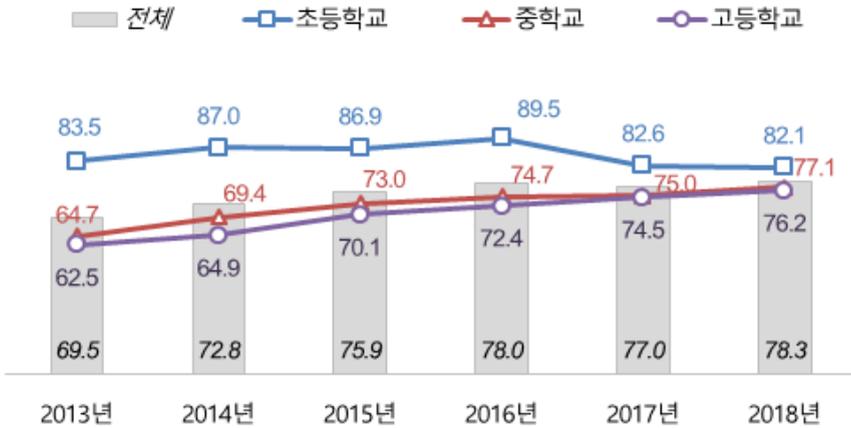
연도별로 살펴보면, 가정에서 청소년 단체활동 지지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초등학교의 응답 비율 감소로 중·고등학생과의 응답 비율 차이가 좁혀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2.3%p 증가하였다.

표 IV-196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학교

(단위 :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전체(n)	$\chi^2$	
전체	2.91(0.800)	7.5	14.2	57.8	20.5	100.0(9,049)		
성별	남학생	2.86(0.868)	10.3	14.8	53.5	21.4	100.0(4,698)	136.483**
	여학생	2.97(0.715)	4.5	13.7	62.4	19.5	100.0(4,350)	*
학교급	초등학교	3.06(0.826)	6.8	11.2	51.8	30.3	100.0(2,740)	240.290**
	중학교	2.86(0.770)	7.3	15.6	60.7	16.4	100.0(2,856)	
	고등학교	2.84(0.788)	8.3	15.5	60.2	16.0	100.0(3,453)	
지역 규모	대도시	2.98(0.801)	7.0	12.0	56.9	24.1	100.0(3,686)	81.117***
	중소도시	2.85(0.795)	8.0	16.4	58.5	17.1	100.0(4,408)	
	읍면지역	2.95(0.791)	6.9	13.1	57.8	22.2	100.0(954)	
학업 성적	상	3.05(0.796)	5.9	11.3	54.2	28.6	100.0(2,948)	269.433**
	중	2.90(0.764)	6.9	13.7	61.4	17.9	100.0(4,008)	
	하	2.73(0.832)	10.8	19.5	55.8	13.9	100.0(2,084)	
경제적 수준	상	2.96(0.814)	7.4	13.0	55.9	23.6	100.0(4,981)	85.869***
	중	2.88(0.767)	7.1	15.0	61.0	16.9	100.0(3,192)	
	하	2.78(0.815)	9.2	18.8	56.6	15.4	100.0(867)	

\*p<.05, \*\*p<.01, \*\*\*p<.001



\*주: '지지하는 편이다'와 '매우 지지한다'의 합계(단위: %)

그림 IV-139 청소년 단체활동의 지지수준\_학교(연도별 추이)

위의 <표 IV-196>은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한 학교로부터의 지지수준의 응답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로부터의 긍정적 지지는 가정에서의 지지수준보다 높아 매우 지지한다가 20.5%, 지지하는 편이다가 57.8%를 보이고 있다. 학교의 여학생의 단체활동에 대한 긍정적 지지가 81.9%인 반면, 남학생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적어 74.9%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의 단체활동에 대한 학교의 지지가 가장 높아 82.1%를 보이고 있으며, 일반계고 학생(78.1%)이 특성화계고 학생(68.0%)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학교의 지지를 받으면서 청소년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학교로부터 단체활동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학교에서 청소년 단체활동 지지 비율은 가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초등학생의 응답 비율 감소로 중·고등학생과의 응답 비율 차이가 좁혀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1.3%p 증가하였다.

#### 4) 소결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인권지표에서 대분류 지표 중 하나인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제28조에 기초한 교육에의 권리, 제29조에 근거한 교육의 목표, 그리고 제31조에 따른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세 중분류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중분류 지표인 교육에의 권리는 다시 교육기회 보장 정도, 학교 부적응률, 대안교육 참여율의 세 소분류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의 중분류 지표인 교육의 목표는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 학교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의 두 소분류 지표로 분류되어 있다. 또 다른 중분류 지표인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지표는 여가문화예술 활동기반 시설수와 여가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여가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의 소분류 지표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소분류 지표들은 각기 소분류 지표의 내용에 따른 여러 세부지표들로 구성되었는데, 아래에서는 각 세부지표들에 대한 2018년도 조사 결과를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대한민국의 교육의 기회 보장 정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OECD의 평균 수준에 뒤지지 않고 있다고 총평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6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5세~14세가 97%로 OECD 평균 98%보다 낮았으나, 15~19세가 87%, 20~24세가 50%로 OECD 평균(15~19세 85%, 20~24세 4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8.9.11) 하지만 2011~2017년까지의 각급 학교의 연도별 취학률 추이를 보면 유치원의 취학률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취학률이 다소 낮아지고 있는 중이라 정부는 학업중단율과의 상관관계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학교급별 진학률에 있어서는 2015년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특히,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진학률은 일반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평균 78%에 가까운 비정상적 진학률을 보여 세계 최상위에 해당되고 있다. 단지 직업계고인 특성화고의 진학률

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청년실업 현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려는 경향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GDP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에 있어서는 초중등교육과정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과정에서는 OECD 평균보다 많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에서는 전반적으로 인구의 자연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되는 추세라 상황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OECD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교육부, 2018.9.11). 소분류 인권지표 중 학교부적응률은 실태조사 결과에 있어서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세부지표인 학업중단율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각급 학교의 학업중단율이 미세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학업중단자 수로 보면 지난 6년 간 대한민국에서 학업중단학생의 누적 계수는 총 325,452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적 문제를 벗어나 국가적·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어, 직업계고의 수를 늘리는 등 교육부의 특단의 예방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교부적응율과 관련된 다른 세부지표들인 학생들의 학업포기 결심여부와 이유, 학교 문화 및 학교생활 만족도도 직접 학업중단율과 관계가 깊다. 실태조사 결과 학업포기에 대한 생각도 현행 교육제도에 따른 학업의 문제점과 관계가 깊고,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낮아져 이 또한 학업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태조사에서 학생들에게 자퇴충동의 이유를 물었을 때에 ‘공부하기 싫어서(28.2%)’와 ‘성적이 좋지 않아서(12.9%)’로 41.1%의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혐오를 나타낸 것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중분류 지표 교육에의 목표에서 세부지표인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교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바람직한 인성, 배려와 공동체 의식, 실용적 지식에 대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른 소분류 지표인 학교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정도에 있어서는 대안학교와 직업교육에 대한 현황이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대안교육의 실태는 크게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으나, 직업교육에 있어서는 최근의 학업중단 학생이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직업교육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직업계고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특성화고나 일반고 중에서도 도제학교 형태의 교과 운영을 허용하는 법제도 개선과 실질적 사업인 MAGIC 사업 등의 노력이 진행 중이며, 기업의 참여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그로 인한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

중분류 지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은 위에서 서술한 교육에의 권리와 교육의 목표를 보장하고 달성하기 위한 실제적인 여건과 다양한 활동에의 실천적 참여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이에 해당하는 소분류 지표 여가문화예술 활동 기반 시설 수는 활동의 여건에 관한 지표이다. 이 지표는 다시 전국의 문화예술 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의 수에 관한 세부지표들로 분류되어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및 이용시설의 수가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이 가장 많이 이용해야 할 청소년수련시설을 한 번도 이용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이 57.2%로 나타난 것은 문제가 있는 결과이다. 이는 시설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나 시설운영자가 반성해야 할 사안이다. 반면에 오히려 청소년 이용시설인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예술 공간은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소분류 지표인 여가문화예술 활동에의 참여율에 있어서는 취미와 오락 활동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평일 여가활동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는 학생이 16.8%에 해당하고 있고, 학업부담이 많은 고학년 및 일반계고일수록 상대적으로 평일에 여가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평일 공부 시간은, 하루에 2~3시간 정도가 가장 높아 22.3%로 나타났는데 역시 고학년과 일반계고 학생일수록 평일 공부 시간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평일과 휴일의 전체 여가시간 중 스마

트기기를 활용한 여가시간의 비중이 각각 74.1%와 51.0%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단체활동과 동아리활동에의 참가율은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86.0%에 해당하였으나, 동아리활동에의 참여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인해서 응답청소년 75.9%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분류 지표 여가문화예술 활동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는 부모와 학교로부터의 보장 정도에 대하여 조사되었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73.2%는 부모가 대체로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교로부터는 78.3%의 긍정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특성화학교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지를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2018년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의 결과를 종합해서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에 대한 짧은 결론을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육에의 권리 측면에서는 교육의 기회 보장에 있어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생들의 학교부적응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무엇보다도 무한경쟁의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폐해의 결과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한 지나친 학업 부담의 경감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은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해주는 시급한 과제이다. 직업계고로의 진학 및 진로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대학의 서열화를 낮추는 방향으로의 교육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률이 청소년 이용시설 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기조가 청소년 활동정책보다는 청소년 복지정책에 방점을 두고 있어 청소년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정책방향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범정부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와의 연계·협력 확대에 대한 노력을 정부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MOU를 통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 7. 특별보호조치

###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

##### ①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법무부의 최근자료(2018)에 따르면, 2017년 말까지의 난민신청자 누적 총수는 32,733명이며, 심사 종료된 19,424명 중 인정은 79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1,474명, 불인정은 17,158명, 철회는 3,738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2017년 한 해 동안 인정 121명, 인도적 체류허가 318명, 불인정 5,607명에 대한 심사결정이 내려졌으며, 철회자는 1,200명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까지의 전체 난민보호율은 11.7%이고, 2016년 한해의 난민보호율은 7.3%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연도별 난민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월 1일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신청자는 2013년에 1,574명, 2014년 2,896명, 2015년 5,711명, 2016년 7,542명, 2017년 9,942명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전년 대비 31.8% 증가하였다(법무부, 2018: 90-91).

법무부(2018)의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12월 말까지의 전체 난민신청자 32,733명을 대상으로 난민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종교가 8,193명(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치적 의견이 7,088명(21.7%),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신분 3,620명(11.1%), 인종 2,170명(6.6%)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2017년 신청자 9,942명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종교가 2,927명(29.4%), 정치적 의견이 1,565명(15.7%), 특정사회집단 구성원신분 1,101명(11.1%) 등의 순이었다(법무부, 2018: 94).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난민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2월 말까지의 전체 난민신청자 32,733명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1,332명(4.0%)이며, 2017년

의 신청자 9,942명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357명(4.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3년 7. 1. 난민법 시행 이후 난민신청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처럼,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난민신청자수도 마찬가지로 2013년에 69명에서 2017년 35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난민인정자의 숫자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3년 이후부터 평균 95명 이상의 신청자가 난민으로 인정받았으며, 2017년에는 121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이 중 아동·청소년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의 경우 전체 인정자 121명 중 18세 미만은 48명으로 39.7%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었다. 이 비율은 2017년까지의 전체 난민인정자(792명)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213명)이 차지하는 비중인 26.9%와 비교할 때 12.8%p 포인트 높은 수치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말까지 총 1,474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으며, 2017년 한 해 동안 318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법무부, 2018: 99). 그리고 인도적 체류 허가자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 말까지 총 1,474명의 인도적 체류 허가자 중 18세 미만은 335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비중은 2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7년의 경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318명 중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수는 102명(32.0%)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부터는 18세 미만 난민신청자에 대한 불인정 숫자와 비율 그리고 철회 숫자와 비율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어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난민신청자 중 불인정과 철회를 받은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2013년의 경우 불인정과 철회를 받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비중이 2.6%인 점을 고려할 때 이와 비슷한 비율의 경향을 추론해 볼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난민신청자에 대한 불인정과 철회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영지 외, 2017: 389).

표 IV-197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구분 연도	신 청			인 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 회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	전체 (명)
2003 이전	9	3.6	251	0	0.0	14	0	0.0	13	0	0.0	41	3	7.3	41
2004	0	0.0	148	2	11.1	18	0	0.0	1	0	0.0	12	0	0.0	10
2005	9	2.2	410	0	0.0	9	3	23.1	13	0	0.0	76	1	3.2	31
2006	7	2.5	278	0	0.0	11	0	0.0	13	2	1.9	108	0	0.0	46
2007	11	1.5	717	5	38.5	13	2	22.2	9	2	2.4	84	1	1.5	67
2008	20	5.5	364	8	22.2	36	0	0.0	14	1	1.3	75	0	0.0	117
2009	20	6.2	324	6	8.6	70	4	18.2	22	15	1.9	804	3	1.5	206
2010	30	7.1	423	6	12.8	47	5	14.3	35	4	1.3	310	2	2.8	71
2011	29	2.9	1,011	7	16.7	42	4	20.0	20	8	4.0	202	3	3.2	95
2012	38	3.3	1,143	14	23.3	60	7	22.6	31	9	2.0	454	3	1.4	211
2013	69	4.4	1,574	23	40.4	57	2	33.3	6	12	2.3	523	1	0.3	331
2014	129	4.5	2,886	13	13.8	94	44	8.2	539	-	-	1,745	-	-	363
2015	315	5.5	5,711	40	38.1	105	52	26.8	194	-	-	3,976	-	-	280
2016	342	4.5	7,542	47	48	98	114	46.3	246	-	-	5,050	-	-	731
2017	357	3.6	9,942	48	39.7	121	102	32.1	318	-	-	5,607	-	-	1,200

\* 출처: 김경준 외(2014a)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총괄보고서. p.529.  
 법무부(2015.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p.33.  
 법무부(2016).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p.88-99.  
 법무부(2017).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p.90-101.  
 법무부(2018).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p.90-101.

하지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 전체 18세 미만 신청자 대비 난민인정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10.1%에서 2017년 13.4%로 증가되고 있고, 인도적 체류의 경우에도 2015년 16.5%에서 2017년 28.6%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전체적인 수치에 비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난민인정, 인도적 체류비율이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② 탈북 난민 아동 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현황을 보면 1948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누적집계로 1천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한국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한이탈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탈북 청소년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통일부(2018)의 북한이탈주민통계에 기초할 때, 2018년 3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0세~19세 사이의 탈북 아동·청소년은 총 4,861명이다. 그리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2,250명(46.3%)이고, 여자 청소년은 2,611명(53.7%)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규모는 줄어들고 있지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남한 입국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 탈북청소년의 규모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a: 354-355).

표 IV-198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단위 : 명)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636	1,614	2,488	2,074	1,328	522	329	8,991
여	626	1,985	6,463	6,995	4,108	1,234	943	22,354
합계	1,262	3,599	8,951	9,069	5,436	1,756	1,272	31,345

\* 출처: 통일부(2018).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2018년 3월말 기준

표 IV-199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 명, %)

연도 대상	~98	~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3월)
남	831	665	510	474	626	424	515	573	608	662	591	795	404	369	305	251	302	188	25
여	116	478	632	811	1,272	960	1,513	1,981	2,195	2,252	1,811	1,911	1,088	1,145	1,092	1,024	1,116	939	166
합계	947	1,043	1,142	1,285	1,898	1,384	2,028	2,554	2,803	2,914	2,402	2,706	1,502	1,514	1,397	1,275	1,418	1,127	191
여성 비율	12%	46%	55%	63%	67%	69%	73%	78%	78%	77%	73%	71%	73%	76%	78%	80%	79%	83%	87%

\* 출처: 통일부(2018).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2018.3월말 기준

### ③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에 관한 경험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한번이라도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차별경험에 관한 정보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정지원법에 따라서 3년마다 조사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2015년에 실시되었고, 3년마다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2018년은 조사를 실시하는 해이다. 하지만 본 보고서의 모든 통계는 2018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2018년에 조사하고 있는 자료의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하지만 2015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차별경험 정도를 유추해볼 수는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5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구로부터 심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7%로 나타났으며,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심한 차별이 7.5%, 교사로부터의 심한 차별이 4.4%, 이웃으로부터의 심한

차별이 3.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표 IV-201 참조). 이상의 조사 결과에 기초할 때, 일반 청소년들이 인식하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경험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친구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차별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김영지 외, 2017: 391-392).

표 IV-200 차별받은 경험: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 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전체(n)	$\chi^2$
전체	99.0	0.5	0.2	0.1	0.2	100.0(9,047)	
성별	남학생	98.6	0.6	0.3	0.1	100.0(4,693)	20.929***
	여학생	99.4	0.4	0.1	0.1	100.0(4,354)	
학교급	초등학교	99.1	0.5	0.2	0.0	100.0(2,742)	11.735
	중학교	99.2	0.4	0.3	0.1	100.0(2,852)	
	고등학교	98.8	0.6	0.2	0.1	100.0(3,453)	
지역 규모	대도시	98.9	0.4	0.2	0.2	100.0(3,688)	12.214
	중소도시	99.2	0.4	0.2	0.1	100.0(4,406)	
	읍면지역	98.4	0.9	0.4	0.1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9.1	0.4	0.2	0.1	100.0(8,253)	44.100***
	한부모가정	98.4	1.4	0.1	0.2	100.0(601)	
	조손가정	96.7	2.7	0.0	0.7	100.0(89)	
	기타	97.2	0.0	1.4	1.4	100.0(97)	
학업 성적	상	98.8	0.6	0.3	0.0	100.0(2,943)	10.366
	중	99.1	0.4	0.2	0.2	100.0(4,008)	
	하	99.1	0.5	0.2	0.1	100.0(2,088)	
경제적 수준	상	99.1	0.4	0.2	0.1	100.0(4,978)	6.689
	중	99.0	0.5	0.3	0.1	100.0(3,192)	
	하	98.6	0.9	0.1	0.2	100.0(870)	

\*p<.05, \*\*p<.01, \*\*\*p<.001

표 IV-201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단위 : %(명))

구분	전혀 차별받지 않았다	차별받지 않았다	약간 차별 받았다	심한 차별을 받았다	합계
친구	11.1(631)	10.9(619)	68.2(3,856)	9.7(551)	100.0(5,657)
교사(교수)	57.6(3,104)	26.3(1,419)	11.6(625)	4.4(239)	100.0(5,387)
친척	71.3(3,740)	19.9(1,044)	8.0(421)	0.8(43)	100.0(5,248)
이웃	54.6(3,087)	22.6(1,277)	19.7(1,115)	3.1(177)	100.0(5,657)
모르는 사람	51.7(2,922)	16.0(905)	24.8(1,405)	7.5(426)	100.0(5,657)

\* 출처: 여성가족부(2015c) 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464-469에서 수정

## (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 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교육부(2018.2)의 다문화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총 109,387명이며, 이중 초등학생이 82,806명(75.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중학생이 15,983명(14.6%), 고등학생이 10,598명(9.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은 국내출생(89,314명)이었으며, 외국인 자녀는 12,281명, 중도입국은 7,79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다문화학생 수는 2014년에는 67,806명, 2015년에는 82,536명, 2016년에는 99,186명, 2017년에는 109,38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학생 중 다문화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현재 1.91%이며,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에는 0.70%, 2013년에는 0.86%, 2014년에는 1.07%, 2015년에는 1.35%, 2016년 1.68%, 2017년 1.9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2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단위 : 명, %)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한국 출생	50,279	11,075	6,745	68,099	59,988	11,489	7,657	79,134	68,624	12,273	8,417	89,314
중도 입국	3,988	1,383	880	6,261	4,583	1,627	1,208	7,418	4,865	1,740	1,187	7,792
외국인 자녀	6,016	1,397	763	8,176	9,453	1,989	1,192	12,634	9,317	1,970	994	12,281
계	60,283	13,865	8,388	82,536	74,024	15,105	10,057	99,186	82,806	15,983	10,598	109,387
비율	73.0%	16.8%	10.2%	100%	74.6%	15.2%	10.1%	100%	75.7%	14.6%	9.7%	100%

\* 출처: 교육부(2018.2).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보도자료. p.20

표 IV-203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최근 6년)

(단위 : 명)

인원수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다문화 학생 수(A)		31,788	38,678	46,954	55,780	67,806	82,536	99,186
전체 학생 수(B)		7,236,248	6,986,853	6,732,071	6,529,196	6,333,617	6,097,297	5,890,949	5,733,132
다문화 학생 비율 (A/B*100)		0.44%	0.55%	0.70%	0.86%	1.07%	1.35%	1.68%	1.91%

\* 출처: 교육부(2016.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p.6.  
 교육부(2017.1.13).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보도자료. p.6.  
 여성가족부(2017a). 2017 청소년백서. p.38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상태는 매년 3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김영지 외, 2016: 458). 2015년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75.0%이며,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녀는 9.5%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자녀는 15.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 자녀 중 대다수(84.5%)는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15.5%)도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영지 외, 2017: 394).

표 IV-204 2015년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상태

(단위: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대학교, 대학원 재학	학교를 다니지 않음 (중퇴, 미취학, 졸업 등)	합계
성별	여성	31.9	12.9	14.0	100.0
	남성	32.7	9.7	16.9	100.0
연령	9~10세	46.8	0.0	0.4	100.0
	12~14세	33.3	0.0	0.5	100.0
	15~17세	24.8	0.0	3.9	100.0
	18세 이상	7.3	68.4	51.0	100.0
전 체		75.0(61,828)	9.5(7,892)	15.5(12,756)	100.0(82,476)

\* 출처: 여성가족부(2015c). 2015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p.420-421에서 수정.

2017년 4월 기준, 탈북학생의 학교 유형별 재학현황을 살펴보면 총 2,764명 중 2,538명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전일제 대안교육 시설에는 226명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1,027명이며, 중학교에는 726명이, 고등학교에는 78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5 탈북학생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교육시설 (전일제)	계
	남	여	남	여	남	여		
학생 수	524	503	354	372	372	413	226	2,764
	1,027		726		785			
	2,538							

\* 출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2017). 2017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

탈북학생의 재학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수는 2010년 1,143명, 2011년 1,417명, 2012년 1,681명, 2013년 1,992명, 2014년 2,022명, 2015년 2,475명, 2016년 2,517명, 2017년 2,53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탈북학생의 안정적 정착과 학교생활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206 탈북학생 연도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정규 학교			합계
	초	중	고	
2010.4	562(49.2%)	305(26.7%)	276(24.1%)	1,143
2011.4	773(54.5%)	297(21.0%)	347(24.5%)	1,417
2012.4	1,020(60.7%)	288(17.1%)	373(22.2%)	1,681
2013.4	1,204(60.4%)	351(17.6)	437(21.9%)	1,992
2014.4	1,159(57.3%)	478(23.6%)	385(19.0%)	2,022
2015.4	1,224(49.5%)	824(33.3%)	427(17.3%)	2,475
2016.4	1,143(45.4%)	773(30.7%)	601(23.9%)	2,517
2017.4	1,027(40.5%)	726(28.6%)	785(30.9%)	2,538

\* 출처: 여성가족부(2016a). 2016 청소년백서. p.329.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2017). 2017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

②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은 매년 3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김영지 외, 2017: 395). 2015년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은 0.85%이며, 2014년 대비 0.1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업중단자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 필요가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학년이 증가할수록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이 높아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2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

(단위 : 명, %)

연도	구분	초	중	고	계
2012.3.~ 2013.2.	재학생 수	33,792	9,647	3,515	46,954
	학업중단자 수	278	110	73	461
	학업중단율(%)	0.8	1.1	2.1	1.0
2013.3.~ 2014.2.	재학생 수	39,430	11,294	5,056	55,780
	학업중단자 수	328	140	104	572
	학업중단율(%)	0.9	1.2	2.1	1.0
2014.3.~ 2015.2.	재학생 수	48,297	12,525	6,984	67,806
	학업중단자 수	435	146	107	688
	학업중단율(%)	0.9	1.2	1.5	1.0
2015.3.~ 2016.2.	재학생 수	60,283	13,865	8,388	82,536
	학업중단자 수	423	159	118	700
	학업중단율(%)	0.70	1.15	1.41	0.85

\* 출처: 여성가족부(2013a).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p.565에서 재구성  
 여성가족부(2015b).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p.5.  
 여성가족부(2016b). 2016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p.6.  
 교육부(2017.1.13.).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발표. p.6.

\* 주: 1) 재학생 수는 4월 1일 기준, 학업중단자 수는 해당기간 동안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  
 2) 학업중단자 비율=학업중단 자녀/(현재 재학자녀+현재 학업중단 자녀)×100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다문화가족 자녀보다 훨씬 더 높은 경향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2017년 현재 탈북 청소년들의 중도탈락률은 2.0%이며, 이는 2015년도 다문화가족 자녀의 중도탈락률인 0.85%보다 높은 수치이다.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에 10.8%에서 2016년에 2.0%로 감소하였으며,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다문화가족 자녀와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학생의 중도탈락률은 4.3%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에 대한 관심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208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

(단위 : 명, %)

구 분		초	중	고	계
'08년도	'07. 4. 재학생 수(명)	341	232	114	687
	중도탈락생 수(명)	12	30	32	74
	중도탈락률(%)	3.5	12.9	28.1	10.8
'11년도	'10. 4. 재학생 수(명)	773	297	347	1,417
	중도탈락생 수(명)	19	13	35	67
	중도탈락률(%)	2.5	4.4	10.1	4.7
'12년도	'11. 4. 재학생 수(명)	1,021	286	374	1,681
	중도탈락생 수(명)	27	11	18	56
	중도탈락률(%)	2.6	3.8	4.7	3.3
'13년도	'12. 4. 재학생 수(명)	1,204	351	437	1,992
	중도탈락생 수(명)	37	26	7	70
	중도탈락률(%)	3.1	7.4	1.6	3.5
'14년도	'13. 4. 재학생 수(명)	1,159	478	385	2,022
	중도탈락생 수(명)	7	15	29	51
	중도탈락률(%)	0.6	3.1	7.5	2.5

구 분		초	중	고	계
'15년도	'14. 4. 재학생 수(명)	1,128	684	371	2,183
	중도탈락생 수(명)	2	20	27	49
	중도탈락률(%)	0.2	2.9	7.3	2.2
'16년도	'15. 4. 재학생 수(명)	1,224	824	427	2,475
	중도탈락생 수(명)	7	19	26	52
	중도탈락률(%)	0.6	2.3	6.1	2.1
'17년도	'16. 4. 재학생 수(명)	1,143	773	601	2,517
	중도탈락생 수(명)	11	14	26	51
	중도탈락률(%)	1.0	1.8	4.3	2.0

\* 출처: 교육부(2017.3.24). 2017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 보도자료. p.11.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2017). 2017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

\* 주: 중도탈락률 = (연도별 중도탈락자 총수 / 연도별 재학생 총수) × 100

### (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 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적응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 예비학교를 들 수 있다. 다문화 예비학교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편입 전·후에 조기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이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적응을 도와주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따라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호프로그램의 활성화 정도는 다문화예비학교의 운영현황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김영지 외, 2017: 397).

교육부의 2018년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계획과 2017년까지의 다문화예비학교 운영결과 자료에 의하면 한국어 집중 교육이 필요한 중도입국학생 및 외국인 학생 등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다문화 예비학교는 2012년에 26개, 2013년에 50개, 2014년에 80개, 2015년에 100개, 2016년에 124개가

운영되었으며, 2017년에는 179개의 학급이 운영되었다(교육부, 2018.2). 그리고 2018년에는 예비학교를 총 190개의 학급으로 확대하고,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별학급을 다수 운영하는 예비학교의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18. 2: 13-14).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 정도는 무지개청소년센터(이주배경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스쿨 참가 인원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레인보우스쿨은 한국어지도, 정체성 및 교우관계, 편·입학지도, 진로지도, 심리안정 등으로 구성되며, 2010년에 2개 지역에서의 시범실시과정을 거친 후 2017년 기준 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a: 165). 무지개청소년센터의 2017년도 사업활동보고서에 의하면, 전일제와 여름·겨울학교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레인보우스쿨의 참가인원수는 2017년 기준 1,877명에 이른다.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일제가 1,119명으로 가장 많고, 여름학교가 432명, 겨울학교 326명 순으로 나타났다.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839명과 837명이 참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913명, 2015년에는 1,178명, 2016년에는 1,538명, 2017년에는 1,877명이 참가하여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수의 증가와 더불어 레인보우스쿨에 참가하는 인원수도 함께 증가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표 IV-209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

(단위 : 명)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전일제	521	512	600	721	924	1,119
주말·야간 학교	18	65	50	65		
방과후학교	14	-	-	-	-	
여름학교	286	190	246	278	406	432
겨울학교	-	70	17	114	208	326
계	839	837	913	1,178	1,538	1,877

\* 출처: 무지개청소년센터(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pp.86-88에서 재구성  
 무지개청소년센터(2014). 2014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p.16-24에서 재구성  
 무지개청소년센터(2015). 2015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p.16-38에서 재구성  
 무지개청소년센터(2016). 2016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p.24-47에서 재구성  
 무지개청소년센터(2017). 2017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p.20-35에서 재구성

## ②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서비스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실시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는 2017년에 4,830건으로 2015년 대비 2,580건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2012년 시범실시 이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된 추세와는 상반된 흐름이며, 심리정서 상담건수의 감소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한국생활 적응과 문제해결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온라인 상담과 내방상담, 찾아가는 상담과 집단 상담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210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정서 상담건수

(단위 : 건수)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온라인 상담	2,195	2,311	1,930	2,696	3,408	1,890
내방상담	340	500	1,473	1,665	2,044	1,899
찾아가는 상담	97	218	340	578	1,258	502
집단상담	-	248	37(심리검사 포함)	523(심리검사 포함)	700(심리검사 포함)	539
계	2,632	3,277	3,780	5,462	7,410	4,830

\* 출처: 무지개청소년센터(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p.99에서 재구성.  
 무지개청소년센터(2014). 2014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44  
 무지개청소년센터(2015). 2015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55  
 무지개청소년센터(2016). 2016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73  
 무지개청소년센터(2017). 2017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62

## 2) 소년 사법 아동·청소년

### (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 ①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수

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자는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우범소년)이다(여성가족부, 2017a: 447). 현행 소년법에서의 소년원 처우과정은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1개월 이내과정(8호), 단기과정(9호), 장기과정(10호)으로 구분되어 있다. 7호 처분의 경우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대산학교(대전소년원)에서 그 임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6개월이고,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호 처분의 경우는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고, 9호 처분의 경우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10호 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7a: 448). 2016년에 7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총 2,018명이며, 이중 8호 처분에 수용된 소년은 740명(36.7%), 9호 처분(단기 소년원송치처분)을 받은 소년은 682명(33.8%), 10호 처분(장기소년원송치처분)을 받은 소년은 509명(25.2%)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8호 처분의 경우에는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9호 처분 역시 2013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장기에 해당하는 10호 처분의 경우에는 2011년까지 감소하다가 2012년 이후부터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1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 수용기간

(단위 : 명(%))

연도 \ 기간	7호(의료)	8호(1개월)	9호(단기)	10호(장기)	계	평균 수용기간 (개월)
2008(08.6.22~)	66(2.6)	895(35.6)	783(30.9)	782(30.9)	2,526(100)	6.9
2009	52(2.0)	1,218(45.6)	684(25.6)	718(26.8)	2,672(100)	4.93
2010	56(2.0)	1,339(48.6)	771(28.0)	589(21.4)	2,755(100)	5.1
2011	69(2.7)	1,329(51.9)	644(25.2)	517(20.2)	2,559(100)	5.1
2012	103(3.2)	1,660(51.7)	792(24.7)	656(20.4)	3,211(100)	4.6
2013	105(3.7)	1,317(45.9)	938(32.7)	507(17.7)	2,867(100)	5.17
2014	93(3.7)	930(36.7)	842(33.2)	666(26.3)	2,531(100)	7.30
2015	106(5.3)	846(42.3)	612(30.6)	437(21.8)	2,001(100)	-
2016	87(4.3)	740(36.7)	682(33.8)	509(25.2)	2,018(100)	-

\* 출처: 여성가족부(2015a). 2015 청소년백서. p.429.  
 여성가족부(2016a). 2016 청소년백서. p.412.  
 법무연수원(2017). 2017 범죄백서. p.672.

\* 원자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5)

- \* 주: 1) 2008.6.22.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장기과정의 기존 일반A, 일반B, 일반C 과정을 10호 처분으로 통합됨.  
 2) 수용기간별 인원은 처분변경, 처분취소, 유죄판결 항고 등을 제외하고 퇴원 및 임시퇴원 보호소년출원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2008년 6월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8호 처분(1개월 미만) 인원 증가에 따라 평균 수용기간 단축됨.

## ②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은 2016년 기준 150명이며, 2015년 대비 2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09년 196명에서 2014년 114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5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을 기준으로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소년범죄자 중 가장 많은 범죄원인은 기타 원인을 제외하고, 강간 등(23.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폭력·상해(18.0%), 절도(15.3%), 강도 등(12.6%)의 순이었다.

표 IV-21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169(100)	146(100)	114(100)	170(100)	152(100)	114(100)	130(100)	150(100)
절도	62(36.7)	45(30.8)	26(22.8)	42(24.7)	43(28.3)	32(28.1)	26(20.0)	23(15.3)
사기·횡령	3(1.8)	3(2.1)	0(0.0)	2(1.2)	1(0.7)	1(0.9)	10(7.7)	2(1.3)
폭력·상해	8(4.7)	1(0.7)	5(4.4)	17(10.0)	17(11.2)	10(8.8)	10(7.7)	27(18.0)
강간 등	44(26.0)	32(21.9)	33(28.9)	54(31.7)	46(30.2)	29(25.4)	27(20.8)	35(23.3)
강도 등	32(18.9)	33(22.6)	18(15.8)	24(14.1)	16(10.5)	11(9.6)	14(10.8)	19(12.6)
살인	6(3.6)	11(7.5)	10(8.8)	11(6.5)	7(4.6)	5(4.4)	5(3.8)	5(3.3)
과실범	2(1.2)	3(2.1)	1(0.9)	2(1.2)	-	2(1.8)	2(1.5)	2(0.1)
기타	12(7.1)	18(12.3)	21(18.4)	18(10.6)	22(14.5)	24(21.0)	36(27.7)	37(24.7)

\* 출처: 여성가족부(2015a). 2015 청소년백서. p.435.  
 여성가족부(2016a). 2016 청소년백서. p.417.  
 여성가족부(2017a). 2017 청소년백서 pp.453-454.  
 \* 원자료: 법무부(2015). 교정본부 통계자료.

(2)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①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법률조력인 제도는 2011년 9월 15일에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음으로 신설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에 관한 규정과 2013년 4월 5일에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피해자 변호사 제도 및 그 권한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면서 도입된 국선변호사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학대피해 아동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범죄피해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나 형사절차상 독자적인 권리실현이 불가능한 아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법률적 부조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보호의 측면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평가되고 있다(법무연수원,

2017: 223).

2016년을 기준으로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을 살펴보면, 접수된 건수는 총 19,394건이며, 그중에서 국선보호사가 지정된 건수는 19,336건으로 지정률은 9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국선변호사 접수 건수와 지정 건수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선변호사 지정률도 2013년에는 91.7%에서 2017년에는 99.7%로 나타나 국선변호사 지정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관별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경찰신청이 12,170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원스톱센터 신청(해바라기아동센터 포함)이 6,298건, 검사지정 889건, 상담소 신청 37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접수 건수를 2015년도와 비교해보면, 경찰신청과 검사지정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원스톱센터 신청과 상담소 신청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기초할 때 국선변호사 신청 및 지정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지원대상이 2013년에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서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그리고 2014년부터는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로 확대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인권의식 증대 등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예상 할 수 있다(법무연수원, 2017: 224).

표 IV-213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

(단위 : 건)

연도	경찰신청			원스톱센터신청 (해바라기아동센터 포함)			상담소신청			검사지정		누적 합계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지정	접수	지정
2012	2,556	2,401	155	-	-	-	238	233	5	280	274	3,074	2,908
2013	3,455	3,127	328	4,813	4,418	395	91	91	-	453	448	8,812	8,084

연도	경찰신청			원스톱센터신청 (해바라기아동센터 포함)			상담소신청			검사지정		누적 합계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가	부	접수	지정	접수	지정
2014	6,334	5,959	375	7,149	6,578	571	223	222	1	604	604	14,310	13,363
2015	8,807	8,778	29	6,487	6,479	2	64	63	1	786	786	16,138	16,106
2016	12,170	12,116	54	6,298	6,295	3	37	37	-	889	888	19,394	19,336

\* 출처: 법무연수원(2016). 2016 범죄백서. p.220.  
법무연수원(2017). 2017 범죄백서. p.224.

- \* 주 : 1) 법무부 인권국 아동여성인권과 자료  
2) 2012년 원스톱센터 신청 관련 건수는 경찰신청 건수에 포함됨  
3)'12.3.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도입  
4)'13.6.1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지원 대상이 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확대  
5)'14.9.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 학대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

## ②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제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해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과교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약물남용·발달장애·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가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의료 및 재활교육과 심리치료·사회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개원당시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높여 왔다. 소년원은 과거 수용위주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적극적·개방적인 교육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소년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안양·청주·춘천·제주 등 전국 10곳에 설치되어 있다(여성가족부, 2017a: 445-446). 소년원의 교육체계는 총 3단계(신입자교육→기본교육→사회복귀교육)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체계와

내용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전기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법무연수원, 2017).



\* 출처: 법무연수원(2017). 2017 범죄백서. p.663.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전기 추가. 사회복귀교육 10일 이내 등 변화.

그림 IV-140 소년원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절차

### ③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수

소년교도소 수용 청소년의 처우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용 청소년은 법무부장관이나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할 수 있다. 그리고

처우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하여 소장에게 면담신청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신속한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우불복제도를 두고 있다(법무연수원, 2017: 411).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은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로 구분되는데, 2016년의 경우 청원이 7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고소·고발이 698건, 행정심판이 347건, 행정소송이 5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수는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4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

(단위 : 건)

연도	내용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
2008년		2,330	309	110	1,205
2009년		2,205	360	91	1,185
2010년		1,573	245	75	801
2011년		1,313	235	75	646
2012년		1,094	253	49	681
2013년		1,071	458	74	647
2014년		903	458	79	614
2015년		957	552	74	733
2016년		797	347	56	698

\* 출처: 법무연수원(2015). 2015 범죄백서. p.398.  
 법무연수원(2016). 2016 범죄백서. p.402.  
 법무연수원(2017). 2017 범죄백서. p.411.

\* 원자료: 법무부(2015). 교정본부 통계자료.

### (3)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 비율

#### 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 형법 제62조의2에 의한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청소년대상자 등에 대하여 실시되는 제도이다. 소년법의 개정으로 단기보호관찰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으며, 보호관찰 부과연령이 10세로 하향되었다(여성가족부, 2017a: 458). 2016년 기준 전체 보호관찰인원은 125,645명이며, 이중 소년보호관찰인원은 29,588명으로 23.5%를 차지하고 있다. 소년보호관찰대상자는 2012년 이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215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단위 : 명, %)

구분 연도	전체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인원	소년보호관찰비율
2008	95,137	36,099	37.9
2009	115,191	46,686	40.5
2010	86,435	45,990	53.2
2011	121,188	46,336	38.2
2012	108,495	47,621	43.9
2013	105,495	45,040	42.6
2014	121,517	34,362	28.3
2015	104,511	31,542	30.2
2016	125,645	29,588	23.5

\* 출처: 여성가족부(2015a). 2015 청소년백서. p. 439.  
 여성가족부(2016a). 2016 청소년백서. p.421.  
 여성가족부(2017a). 2017 청소년백서 p.458.  
 \* 원자료: 법무부(2015).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 시간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서,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사회봉사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연령

은 14세로 낮아졌으며, 사회봉사명령 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다. 청소년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집행은 주로 처벌적 효과보다는 교육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 등 생활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봉사체험을 통해 범죄행위에 대해 속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a: 460). 2015년의 경우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인원은 총 7,222명이었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1,553명,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5,659명이었다.

표 IV-216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구분 연도	총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					
			소계	자연보호	복지분야	공공시설	대민지원	기타
2008	5,726	1,477	4,249	11	3,990	166	17	65
2009	8,178	1,443	6,735	7	6,429	184	48	67
2010	7,394	1,324	6,070	2	5,812	157	80	19
2011	8,346	1,481	6,865	51	6,490	168	89	67
2012	8,175	1,510	6,665	10	6,259	192	130	74
2013	8,857	1,941	6,916	1	6,293	220	314	88
2014	7,742	1,816	5,926	2	5,291	152	386	95
2015	7,222	1,553	5,659	3	5,208	133	301	24

\* 출처: 여성가족부(2017a). 2017 청소년백서. p.461.

\* 원자료: 법무부(2017).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대상자의 잘못된 인식이나 행동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범죄내용에 따라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알코올남용 방지교육, 정신·심리치료교육, 성폭력방지교육, 준법운전강의, 가정폭력방지교육 등 대상자에게 적합한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이 개정되면서 소년에게 단독 수강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수강명령 부과 연령도 12세로 하향 조정되었고, 수강명령 시간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17a: 461-462). 2016년에 수감명령을 집행 받은 청소년은 총 3,915명으로 2012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2016년의 경우 3,882명이었으며, 협력기관(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서 집행한 인원은 33명이었다.

표 IV-217 청소년대상자 수감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연도	구분	총계	직접 집행	협력집행						
				소계	약물	준법운전	심리치료	가정폭력	성폭력	기타
2008		5,847	5,620	227	-	40	77	-	14	96
2009		10,397	9,954	443	3	-	2	-	46	382
2010		9,779	9,212	567	-	-	78	2	43	444
2011		10,135	9,518	617	-	11	277	-	74	255
2012		10,612	10,026	586	4	8	152	-	63	359
2013		7,864	7,374	490	2	9	240	-	48	191
2014		5,526	5,340	186	-	2	103	2	23	56
2015		4,410	4,375	35	-	2	26	1	4	2
2016		3,915	3,882	33	-	-	21	2	6	4

\* 출처: 여성가족부(2017a). 2017 청소년백서 p.462

\* 원자료: 법무부(2017).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

## ②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비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상 개선의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죄질이 다소 중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기보다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

을 갖춘 범죄예방위원에게 청소년을 맡겨 선도·보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1978년부터 도입되었다(여성가족부, 2017a: 421) 2016년에는 3,409 명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는 소년범죄 76,000명 대비 4.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8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소년범죄(명)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인원(명)	비율(%)
2008		134,992	5,886	4.4
2009		113,022	7,104	6.3
2010		89,776	2,967	3.3
2011		89,068	1,363	1.5
2012		107,490	5,812	5.4
2013		91,633	4,548	5.0
2014		77,594	3,473	4.5
2015		71,035	3,413	4.8
2016		76,000	3,409	4.5

\* 출처: 대검찰청(2008-2017), 검찰연감.  
 대검찰청(2015). 2015 범죄분석. p.664.  
 대검찰청(2016). 2016 범죄분석. p.678.  
 여성가족부(2017a). 2017 청소년백서 p.422

### ③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제도는 선도보호위원회에 의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는 달리 보호관찰소의 장이 직접 선도업무를 관장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의 방법은 보호관찰관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도교육, 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사람, 친구 등과 접촉할 수도 있고, 선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학비보조, 취학·취업 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다(여성가족부, 2017a: 423-424). 2016년의 경우 전체 기소유예자는 368,001명이었으며, 이중 4,419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실시하였고, 재범 등으로 위탁이 취소된 인원은 253명이었다. 전년 대비 추이를 보면 기소유예자 전체 인원은 전년 대비 13,631명이 증가한 반면, 선도대상자는 765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9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제	취소
2007		262,823	5,258(2.0)	12,134	4,218	66
2008		361,907	3,421(0.9)	3,967	2,614	116
2009		467,132	3,807(0.8)	3,669	2,382	129
2010		363,106	4,411(1.2)	34,038	1,915	163
2011		353,564	4,950(1.4)	6,716	2,833	313
2012		348,146	4,976(1.4)	7,423	2,912	408
2013		330,407	4,495(1.4)	7,900	2,439	269
2014		324,748	5,112(1.6)	4,360	2,638	255
2015		354,370	5,184(1.5)	4,052	3,098	353
2016		368,001	4,419(1.2)	2,776	2,087	253

\* 출처: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백서. p.383.  
 여성가족부(2015a). 2015 청소년백서. p.413.  
 여성가족부(2016a). 2016 청소년백서. p.396.  
 여성가족부(2017a). 2017 청소년백서 p.424.

\* 원자료: 대검찰청(2008-2017). 검찰연감

### 3) 경제적 착취

#### (1)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 근로조건 수준

##### ①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2016년 기준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1.2일이었으며, 2015년 대비 1일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6년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7.0시간이었으며, 2015년 대비 0.3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세-24세 청소년의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19세 이하의 청소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모두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0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연도	연령별	남 자		여 자		전 체	
		근로일수 (일)	근로시간수 (시간)	근로일수 (일)	근로시간수 (시간)	근로일수 (일)	근로시간수 (시간)
2008	전 체	21.9	191.6	21.8	182.6	21.8	188.7
	19세이하	21.0	176.8	22.2	192.0	21.7	185.6
	20-24세	22.3	204.6	21.7	181.3	21.9	188.9
2009	전 체	22.7	197.2	22.8	189.6	22.8	194.8
	19세이하	21.2	186.9	21.2	179.9	21.2	182.1
	20-24세	22.7	205.9	22.6	188.5	22.6	193.9
2010	전 체	22.5	195.7	22.5	186.9	22.5	192.8
	19세이하	19.7	165.4	19.9	162.2	19.8	163.5
	20-24세	22.6	200.3	22.4	184.9	22.5	189.9
2011	전 체	22.2	192.7	22.2	182.4	22.2	189.3
	19세이하	20.3	172.6	20.9	172.6	20.7	172.6
	20-24세	22.4	200.0	22.0	181.5	22.1	187.9
2012	전 체	21.4	185.8	21.3	175.7	21.4	182.3
	19세이하	19.7	166.9	20.4	172.7	20.1	170.5
	20-24세	21.7	194.3	21.1	174.9	21.3	181.6
2013	전 체	20.9	186.2	20.5	169.2	20.7	175.3

연도	연령별	남 자		여 자		전 체	
		근로일수 (일)	근로시간수 (시간)	근로일수 (일)	근로시간수 (시간)	근로일수 (일)	근로시간수 (시간)
	19세이하	19.9	174.4	19.6	159.5	19.7	165.6
	20-24세	21.0	187.6	20.6	170.1	20.8	176.3
	전 체	20.5	173.8	20.7	182.8	20.4	168.5
2014	19세이하	19.1	161.5	19.5	168.9	18.9	155.0
	20-24세	20.7	175.1	20.9	184.7	20.5	169.7
	전 체	22.4	184.2	22.5	188.5	22.2	176.7
2015	19세이하	20.2	158.8	20.8	164.9	19.6	151.9
	20-24세	22.0	180.3	22.2	187.3	21.9	176.3
	전 체	21.4	184.3	21.1	172.4	21.2	177.0
2016	19세이하	20.0	165.4	18.4	144.4	19.2	155.5
	20-24세	21.7	187.2	21.3	174.8	21.4	179.4

\* 출처: 여성가족부(2013b). 2013 청소년백서. p.334.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백서. p.342.

여성가족부(2015a). 2015 청소년백서. p.370.

여성가족부(2016a). 2016 청소년백서. p.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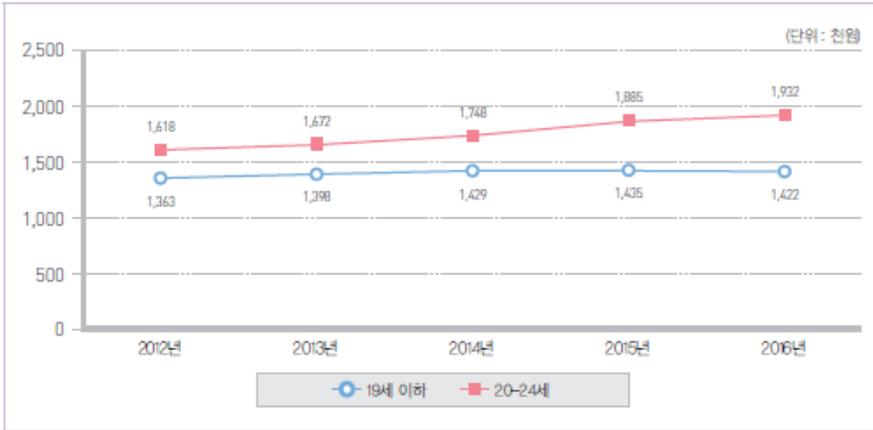
여성가족부(2017a). 2017 청소년백서 p.379.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②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16년의 경우 19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는 월평균 1,422,000원, 20세-24세 청소년은 월평균 1,932,000원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11년부터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 수준]



주: 임금 수준은 월 급여 총액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201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출처: 여성가족부(2017a). 2017 청소년백서. p.XIV.

그림 IV-141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시간당 임금총액은 전반적으로 2012년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별로 구분해서 비교하더라도 그러한 증가 추세는 모든 연령대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하지만 전체 평균과 29세 이하 청소년의 시간당 임금총액의 차이를 살펴보면 2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시간당 임금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29세 이하 청소년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다른 연령대와 동일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간당 임금총액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IV-221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단위 : 원(%))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	2013	2014	2015	2016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15,001	15,684	17,480	18,212	18,835	11,019 (73.5)	11,253 (71.7)	11,452 (66.5)	12,076 (66.3)	13,053 (68.3)	14,075	14,587	15,978	16,709	17,381
19세이하	8,338				9,886	6,612 (79.1)				7,828 (79.1)	7,006				8,336
20-29세	11,142	11,088	12,452	12,975		8,609 (77.5)	8,660 (77.3)	9,161 (70.6)		10,175 (75.4)	10,455	10,583	11,134	11,674	12,431
30-39세	14,908	15,759	17,457	18,382	18,920	13,049 (87.6)	13,183 (83.7)	13,521 (77.5)	13,880 (75.4)	14,694 (77.7)	14,659	15,392	16,882	17,749	18,280
40-49세	16,866	17,708	20,059	20,682	21,430	12,632 (74.9)	13,088 (73.8)	13,519 (67.4)	14,217 (68.7)	15,237 (71.1)	16,088	16,803	18,860	19,575	20,279
50-59세	16,445	16,964	18,910	19,565	20,609	12,143 (73.8)	12,308 (73.8)	12,464 (65.9)	13,362 (68.3)	14,406 (69.9)	15,332	15,624	17,094	17,860	18,923
60세이상	13,100	13,360	14,088	14,831	15,083	9,777 (74.6)	9,777 (74.7)	10,190 (72.6)	10,922 (73.6)	12,193 (80.8)	11,518	11,685	12,099	12,874	13,722

\* 출처: 고용노동부(201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8.  
 고용노동부(201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18.  
 고용노동부(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5.  
 고용노동부(201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1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8.4.25.). 2017년 6월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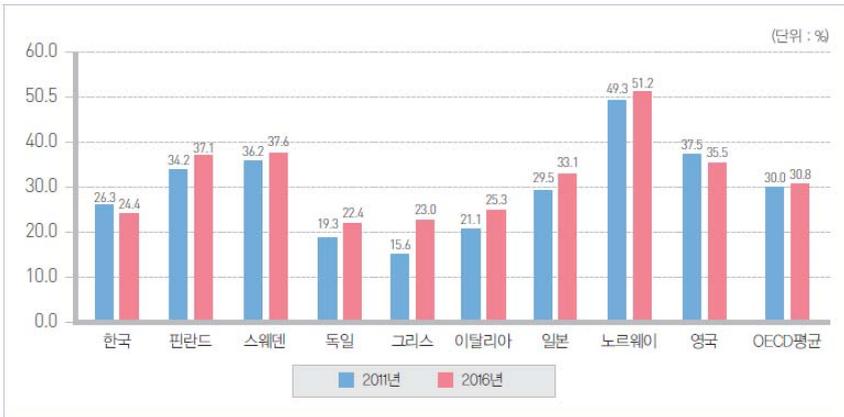
\* 주 :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 (2)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 ①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 비율

고용된 청소년 중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은 2016년에 24.4%로 OECD 평균인 30.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1년과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은 2011년의 26.3%보다 1.9% 감소한 수치이며,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고용된 청소년 중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의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2011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11/2016)]



자료 : OECD(2017). Labour Force Statistics.

\* 출처: 여성가족부(2017a). 2017 청소년백서 p. VII

그림 IV-142 고용된 청소년(15~24)세 중 파트타임 비율(2010/2015)

②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아르바이트 경험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0%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르바이트경험이 많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많았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대도시 순이었다. 가족 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양부모가정 순이었다. 그리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2 아르바이트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chi^2$	
전체	11.0	89.0	100.0(6,305)		
성별	남학생	11.4	88.6	100.0(3,282)	1.153
	여학생	10.5	89.5	100.0(3,024)	
학교급	중학교	3.1	96.9	100.0(2,850)	331.939***
	고등학교	17.5	82.5	100.0(3,455)	
지역 규모	대도시	8.9	91.1	100.0(2,603)	52.840***
	중소도시	11.1	88.9	100.0(3,070)	
	읍면지역	19.0	81.0	100.0(63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0.1	89.9	100.0(5,742)	52.216***
	한부모가정	19.6	80.4	100.0(452)	
	조손가정	22.4	77.6	100.0(49)	
	기타	21.9	78.1	100.0(57)	
학업 성적	상	6.6	93.4	100.0(1,659)	83.791***
	중	10.1	89.9	100.0(2,716)	
	하	16.0	84.0	100.0(1,924)	
경제적 수준	상	8.8	91.2	100.0(3,051)	43.860***
	중	11.9	88.1	100.0(2,481)	
	하	16.8	83.2	100.0(768)	

\* $\alpha$ .05, \*\* $\alpha$ .01, \*\*\* $\alpha$ .001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떠한 부당처우를 경험했는지 조사하였는데, 그 중 먼저 주요 항목에 대한 경험률을 살펴보면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적게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13.0%였다. 근로계약을 작성해본 경험은 32.5%로 나타났으며, 중학생(22.7%)이 고등학생(45.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2.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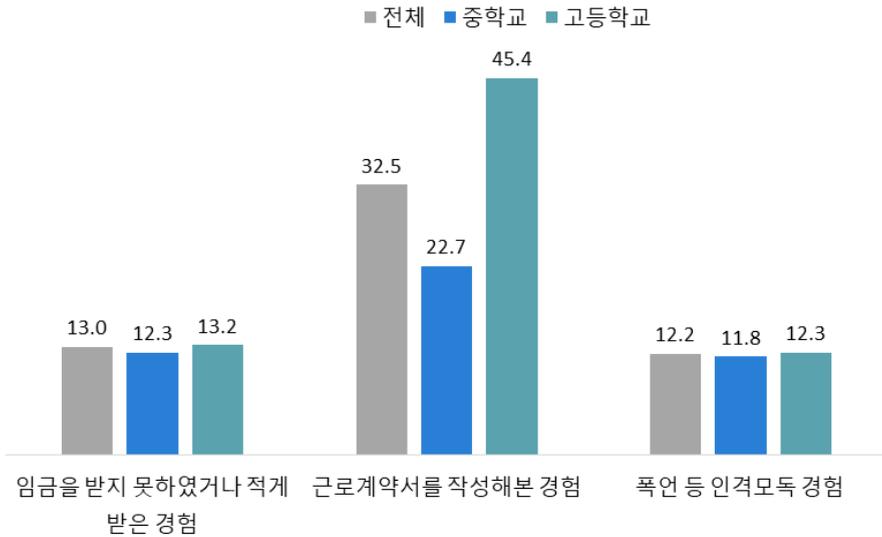


그림 IV-143 아르바이트시 청소년의 주요 부당처우 경험률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 중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13.0%였으며, 이 중 1~2회 정도가 10.0%, 3회 이상이 3.0%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의 비율을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번 이상의 경험자 비율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반면, 1-2번 경험자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해마다 피해경험의 비율에 있어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가운데, 2018년의 경우 전년 대비 4.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3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1)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chi^2$
전체		87.0	10.0	3.0	100.0(692)	
성별	남학생	86.3	8.9	4.8	100.0(374)	9.592**
	여학생	87.7	11.3	1.0	100.0(318)	
학교급	중학교	87.7	9.2	3.1	100.0(87)	0.098
	고등학교	86.8	10.1	3.1	100.0(605)	
지역 규모	대도시	88.5	7.4	4.1	100.0(232)	4.042
	중소도시	85.7	11.8	2.4	100.0(340)	
	읍면지역	87.5	9.7	2.9	100.0(12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6.9	10.3	2.9	100.0(580)	5.344
	한부모가정	86.4	8.4	5.2	100.0(88)	
	조손가정	80.9	19.1	0.0	100.0(11)	
	기타	100.0	0.0	0.0	100.0(13)	
학업 성적	상	87.5	8.1	4.4	100.0(110)	3.457
	중	85.2	10.9	3.9	100.0(275)	
	하	88.3	9.8	1.9	100.0(307)	
경제적 수준	상	85.9	11.2	2.9	100.0(268)	0.861
	중	87.2	9.6	3.2	100.0(295)	
	하	88.6	8.3	3.1	100.0(129)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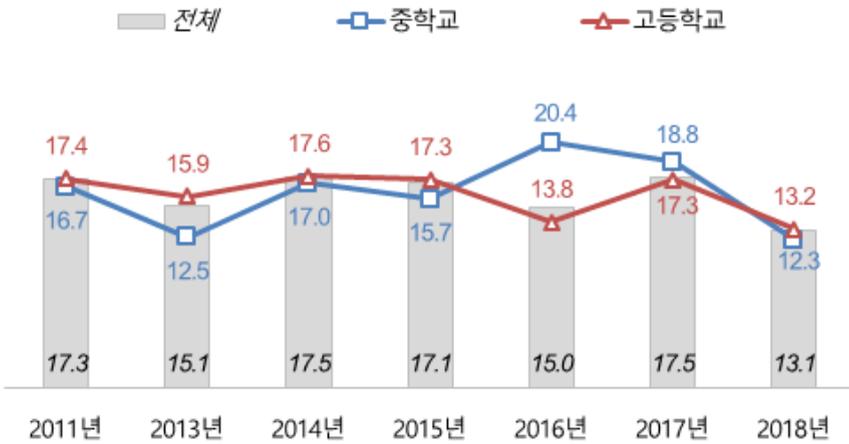


그림 IV-144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1)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는 피해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4.4%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중 1-2번은 9.5%, 3번 이상이 4.9%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14.8%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13.9%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유형별로는 고등학교가 14.8%로 중학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15.7%로 대도시나 중소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이 14.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중’이 16.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이 16.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한 피해경험은 전년 대비 2.7%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24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2)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chi^2$	
전체	85.6	9.5	4.9	100.0(692)		
성별	남학생	85.2	8.6	6.2	100.0(374)	3.367
	여학생	86.1	10.6	3.3	100.0(318)	
학교급	중학교	88.8	7.7	3.5	100.0(87)	0.832
	고등학교	85.2	9.7	5.1	100.0(605)	
지역 규모	대도시	84.7	9.5	5.8	100.0(232)	1.009
	중소도시	86.7	9.2	4.2	100.0(340)	
	읍면지역	84.3	10.5	5.2	100.0(12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5.4	10.0	4.6	100.0(580)	3.694
	한부모가정	86.2	7.1	6.6	100.0(88)	
	조손가정	87.7	0.0	12.3	100.0(11)	
	기타	88.2	11.8	0.0	100.0(13)	
학업 성적	상	85.8	8.1	6.1	100.0(110)	1.972
	중	83.9	10.5	5.5	100.0(275)	
	하	87.0	9.1	3.9	100.0(307)	
경제적 수준	상	83.4	11.0	5.7	100.0(268)	2.789
	중	88.1	7.4	4.5	100.0(295)	
	하	84.7	11.0	4.3	100.0(129)	



그림 IV-145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2) 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거나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을 작성한 적이 없는 청소년은 전체적으로 57.5%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77.3%로 고등학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58.7%로 남학생보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77.3%로 고등학교(54.6%)보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을 작성한다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8.1%p 증가하였고, 특히 고등학생의 응답 비율이 7.5%p로 높게 증가하였다.

표 IV-225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chi^2$
전체		57.5	32.2	10.3	100.0(692)	
성별	남학생	56.4	33.0	10.6	100.0(374)	0.431
	여학생	58.7	31.4	9.9	100.0(318)	
학교급	중학교	77.3	14.2	8.5	100.0(87)	17.802***
	고등학교	54.6	34.8	10.6	100.0(605)	
지역 규모	대도시	52.0	37.0	11.0	100.0(232)	4.921
	중소도시	59.8	30.6	9.6	100.0(340)	
	읍면지역	61.5	27.6	10.9	100.0(12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9.7	30.0	10.3	100.0(580)	16.169*
	한부모가정	48.3	40.5	11.2	100.0(88)	
	조손가정	59.5	40.5	0.0	100.0(11)	
	기타	18.5	70.2	11.3	100.0(13)	
학업 성적	상	61.5	28.2	10.3	100.0(110)	8.390
	중	57.1	29.3	13.5	100.0(275)	
	하	56.3	36.3	7.4	100.0(307)	
경제적 수준	상	60.8	28.9	10.3	100.0(268)	4.344
	중	57.4	32.2	10.5	100.0(295)	
	하	50.7	39.3	10.0	100.0(129)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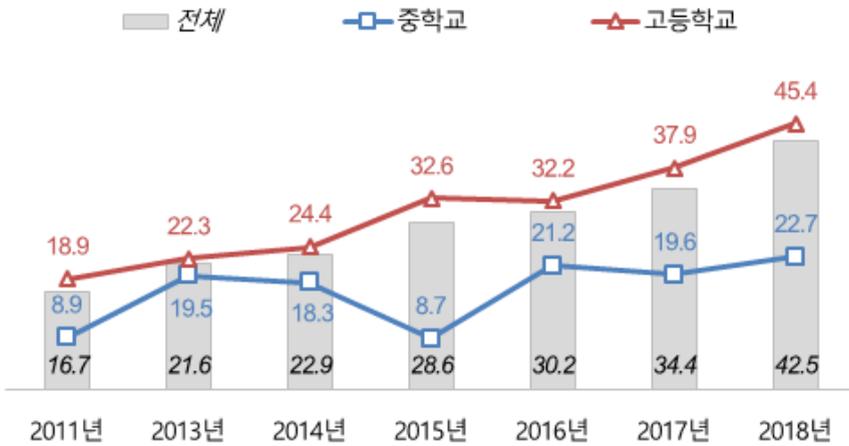


그림 IV-14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을 작성하였다(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10.2%였다. 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10.4%로 중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10.9%로 여학생보다 부당해고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가 12.6%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가족 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20.2%로 양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까지는 부당해고 경험 비율이 다소 감소해 오다가, 이후 다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3%p 높게 나타났다.

표 IV-226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chi^2$	
전체	89.8	8.2	2.0	100.0(692)		
성별	남학생	89.1	7.3	3.6	100.0(374)	9.299**
	여학생	90.6	9.1	0.2	100.0(318)	
학교급	중학교	91.3	6.6	2.2	100.0(87)	0.289
	고등학교	89.6	8.4	2.0	100.0(605)	
지역 규모	대도시	93.0	5.1	1.9	100.0(232)	9.187
	중소도시	87.4	11.1	1.5	100.0(340)	
	읍면지역	90.6	5.8	3.6	100.0(12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9.5	8.3	2.1	100.0(580)	3.423
	한부모가정	91.4	6.7	1.9	100.0(88)	
	조손가정	79.8	20.2	0.0	100.0(11)	
	기타	100.0	0.0	0.0	100.0(13)	
학업 성적	상	87.7	9.6	2.6	100.0(110)	4.065
	중	88.4	8.5	3.0	100.0(275)	
	하	91.8	7.3	0.9	100.0(307)	
경제적 수준	상	87.1	9.6	3.3	100.0(268)	6.639
	중	91.2	7.0	1.8	100.0(295)	
	하	92.2	7.8	0.0	100.0(129)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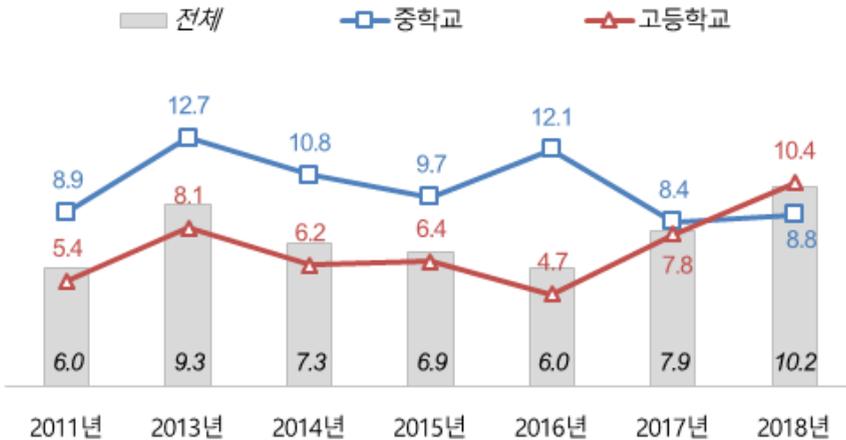


그림 IV-147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 작업환경의 불결함과 위험함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11.3%였으며, 2017년 대비 3.7%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11.3%로 중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13.6%로 여학생보다 작업환경의 불결함이나 위험함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12.8%)과 중소도시(12.3%)이 대도시(9.0%)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이 15.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이 13.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27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chi^2$	
전체	88.7	7.1	4.2	100.0(690)		
성별	남학생	86.5	7.0	6.6	100.0(372)	11.884**
	여학생	91.4	7.2	1.4	100.0(318)	
학교급	중학교	89.4	8.2	2.4	100.0(87)	0.994
	고등학교	88.6	6.9	4.4	100.0(603)	
지역 규모	대도시	91.0	5.8	3.2	100.0(232)	4.552
	중소도시	87.7	8.3	4.0	100.0(340)	
	읍면지역	87.2	6.1	6.7	100.0(11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8.9	6.9	4.2	100.0(580)	2.240
	한부모가정	87.8	8.4	3.8	100.0(87)	
	조손가정	87.7	0.0	12.3	100.0(11)	
	기타	88.2	11.8	0.0	100.0(13)	
학업 성적	상	84.7	8.2	7.1	100.0(110)	5.368
	중	88.9	6.2	4.9	100.0(273)	
	하	90.0	7.5	2.5	100.0(307)	
경제적 수준	상	86.5	6.5	7.0	100.0(268)	8.412
	중	89.9	7.2	2.9	100.0(293)	
	하	90.8	8.0	1.2	100.0(129)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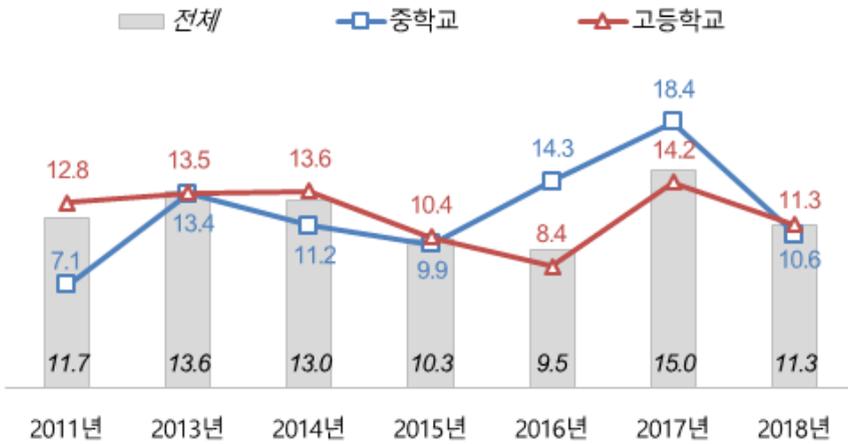


그림 IV-14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폭언 등의 인격모독을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은 12.2%였으며, 2017년 대비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12.8%로 여학생보다 인격모독을 경험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12.3%로 중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가 13.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25.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중'이 14.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이 13.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28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chi^2$	
전체	87.8	9.3	2.9	100.0(690)		
성별	남학생	87.2	10.2	2.6	100.0(372)	1.122
	여학생	88.4	8.3	3.4	100.0(318)	
학교급	중학교	88.2	9.1	2.7	100.0(87)	0.129
	고등학교	87.7	9.3	3.0	100.0(603)	
지역 규모	대도시	86.5	10.7	2.9	100.0(232)	6.379
	중소도시	88.3	9.6	2.0	100.0(340)	
	읍면지역	88.6	5.9	5.6	100.0(11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8.2	8.7	3.0	100.0(580)	7.616
	한부모가정	84.4	12.5	3.1	100.0(87)	
	조손가정	74.5	25.5	0.0	100.0(11)	
	기타	100.0	0.0	0.0	100.0(13)	
학업 성적	상	89.1	6.9	4.0	100.0(110)	4.164
	중	85.5	10.4	4.1	100.0(273)	
	하	89.2	9.3	1.5	100.0(307)	
경제적 수준	상	86.6	10.1	3.2	100.0(268)	5.595
	중	87.5	8.5	3.9	100.0(293)	
	하	90.5	9.5	0.0	100.0(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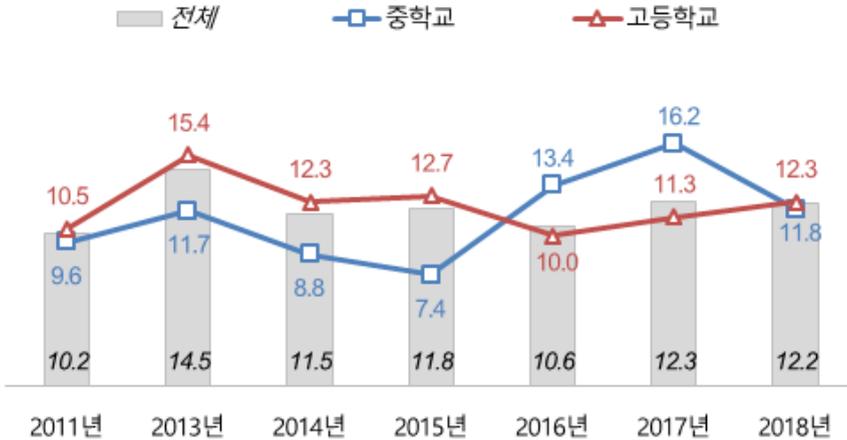


그림 IV-14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3.3%였으며, 2017년 대비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5.3%로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6.6%로 고등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6.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 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20.2%로 양부모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조손가정의 아르바이트 중 폭행이나 구타 경험 비중은 양부모가정이나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보다 월등히 높아서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229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chi^2$	
전체	96.7	1.9	1.4	100.0(691)		
성별	남학생	94.7	3.0	2.3	100.0(374)	10.395**
	여학생	99.1	0.7	0.2	100.0(317)	
학교급	중학교	93.5	4.7	1.9	100.0(87)	4.406
	고등학교	97.2	1.5	1.3	100.0(603)	
지역 규모	대도시	98.0	1.0	1.0	100.0(232)	11.467*
	중소도시	97.1	2.5	0.5	100.0(340)	
	읍면지역	93.2	2.2	4.6	100.0(11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7	1.9	1.3	100.0(579)	18.517**
	한부모가정	98.1	0.0	1.9	100.0(88)	
	조손가정	79.8	20.2	0.0	100.0(11)	
	기타	100.0	0.0	0.0	100.0(13)	
학업 성적	상	96.3	1.6	2.1	100.0(110)	2.072
	중	95.8	2.4	1.8	100.0(275)	
	하	97.6	1.7	0.7	100.0(306)	
경제적 수준	상	96.1	2.4	1.5	100.0(268)	0.681
	중	96.9	1.7	1.4	100.0(293)	
	하	97.4	1.5	1.1	100.0(129)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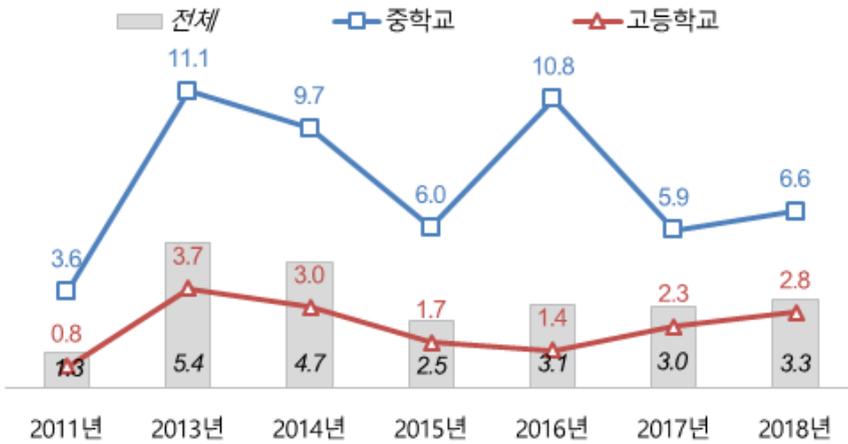


그림 IV-15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연도별 추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18.6%였으며, 2017년 대비 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22.8%로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20.3%로 고등학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이 28.0%로 중소도시나 대도시 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이 27.5%로 조손가정이나 양부모가정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상'이 26.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별로는 '중'이 20.5%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230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chi^2$	
전체	81.4	9.5	9.1	100.0(690)		
성별	남학생	85.0	6.5	8.6	100.0(371)	9.547**
	여학생	77.2	13.0	9.8	100.0(319)	
학교급	중학교	79.7	11.9	8.4	100.0(88)	1.099
	고등학교	81.6	9.2	9.2	100.0(601)	
지역 규모	대도시	85.6	6.9	7.5	100.0(232)	15.762**
	중소도시	81.8	11.0	7.2	100.0(338)	
	읍면지역	72.0	10.3	17.7	100.0(12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2.6	8.7	8.7	100.0(578)	6.458
	한부모가정	72.5	14.6	12.9	100.0(88)	
	조손가정	79.8	8.0	12.3	100.0(11)	
	기타	88.2	11.8	0.0	100.0(13)	
학업 성적	상	73.7	13.0	13.3	100.0(110)	8.618
	중	85.8	8.1	6.1	100.0(271)	
	하	80.2	9.5	10.3	100.0(308)	
경제적 수준	상	83.9	6.5	9.6	100.0(265)	8.506
	중	79.5	12.8	7.7	100.0(296)	
	하	80.5	8.1	11.4	100.0(129)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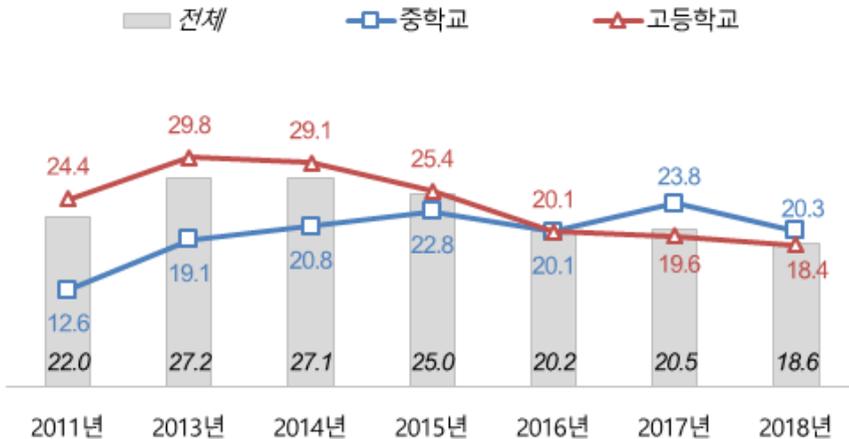


그림 IV-151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연도별 추이)

### (3)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 노력 정도

#### ①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대상 업소 수

경제활동 청소년의 근로권의 보호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방안(2014. 5)”을 마련하여 사업장 감독, 신고체계 정비,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고용노동부, 2015: 242-243). 하지만 고용백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던 청소년 근로관련법 준수 실태 점검결과는 2015년 이후부터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기존에 발표되었던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결과와 청소년 근로관련법 주요법 위반내용은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7”의 내용에서 변동사항이 전혀 없다(김영지 외, 2017: 431-432).

이와 함께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는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검은 청소년들의 근로활동이 활발해지는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에 이루어진다.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지역의 일반음식점, PC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지자체, 지역경찰이 합동으로 진행된다. 2017년 겨울방학에 실시된 점검결과를 보면 전국의 25개 지역(478개 업소)에서 청소년 근로권의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업소는 211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16건 등 총 22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법규 위반사례 211건을 분석해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 위반이 110건(52.1%)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2건(10.4%), 최저임금 미고지 38건(18%),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1건(5.2%), 야간·휴일 근로제한 9건(4.3%), 휴일·휴계시간 미부여 8건(3.8%), 임금미지급 6건(2.8%), 연장·야간수당 미지급 5건(2.4%), 최저임금 미지급·금품청산이 각각 1건(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면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위반, 최저임금 및 수당 미지급, 야간휴일 근로 미인가 및 임금체불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특히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연소자증명 대장과 인허증 등 서류 미비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점검업소 대비 적발업소의 비율을 연도 별로 분석해보면 2013년에는 513개소 중 125개소(24.4%), 2014년에는 661개소 중 187개소(28.3%), 2015년에는 438개소 중 141개소(32.2%), 2016년에는 577개소 중 247개소(42.8%), 2017년에는 576개소 중 281개소(48.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겠지만,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서 청소년근로관련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영지 외, 2017: 433). 따라서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 근로관련법 준수에 필요한 사회적 관심과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IV-231 청소년 고용사업장 법령위반 내역 및 건수

(단위: 건)

연도	점검업소	적발업소	위반 내역 및 건수					계
			근로조건 명시위반 (최저임 금 등)	최저임금 및 수당 미지급	연소자증명 대장, 인허 증 등 서 류 미비치	야간휴일 근로 미 인가 및 임금체불 등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013년 여름방학	353	86	131	3	60	20	29	243
2013년 겨울방학	160	39	57	6	22	3	13	101
2014년 여름방학	364	102	101	18	33	14	19	185
2014년 겨울방학	297	85	84	3	29	4	43	163
2015년 여름방학	197	73	68	11	42	3	31	155

연도	점검업소	적발업소	위반 내역 및 건수					계
			근로조건 명시위반 (최저임 금 등)	최저임금 및 수당 미지급	연소자증명 대장, 인허 증 등 서 류 미비처	야간휴일 근로 미 인가 및 임금체불 등	성희롱 예방교육 미 실시	
2015년 겨울방학	241	68	71	3	32	1	25	132
2016년 여름방학	299	110	74	9	50	5	13	178
2016년 겨울방학	278	137	137	13	1	7	2	236
2017년 여름방학	344	177	217	21	7	37	14	406
2017년 겨울방학	232	104	110	7	11	9	22	211

\* 출처: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6.8.2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야 -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율이 가장 높아.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7.2.20). "근로청소년 대상 부당행위 꼼짝 마!".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7.8.30). "청소년 알바, 한 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8.3.08). "18년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 ②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률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피해경험 중 심각한 피해경험이라 할 수 있는 성적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9%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1.5%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3.3%로 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7.9%로 고등학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이 12.3%로 양부모가정이나 한부모가정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23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9)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단위 : %(명))

구분	없다	1-2번	3번 이상	전체(n)	$\chi^2$	
전체	97.0	1.7	1.2	100.0(687)		
성별	남학생	96.7	1.9	1.4	100.0(371)	0.332
	여학생	97.4	1.6	1.0	100.0(317)	
학교급	중학교	92.1	5.8	2.1	100.0(87)	10.153**
	고등학교	97.7	1.2	1.1	100.0(600)	
지역 규모	대도시	97.1	1.3	1.7	100.0(232)	1.766
	중소도시	96.9	2.2	0.9	100.0(335)	
	읍면지역	97.3	1.3	1.4	100.0(12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7	1.9	1.5	100.0(576)	6.951
	한부모가정	100.0	0.0	0.0	100.0(88)	
	조손가정	87.7	12.3	0.0	100.0(11)	
	기타	100.0	0.0	0.0	100.0(13)	
학업 성적	상	97.6	2.4	0.0	100.0(109)	5.757
	중	95.5	2.1	2.3	100.0(271)	
	하	98.1	1.2	0.7	100.0(307)	
경제적 수준	상	96.4	2.4	1.2	100.0(265)	3.792
	중	97.3	1.0	1.8	100.0(293)	
	하	97.8	2.2	0.0	100.0(129)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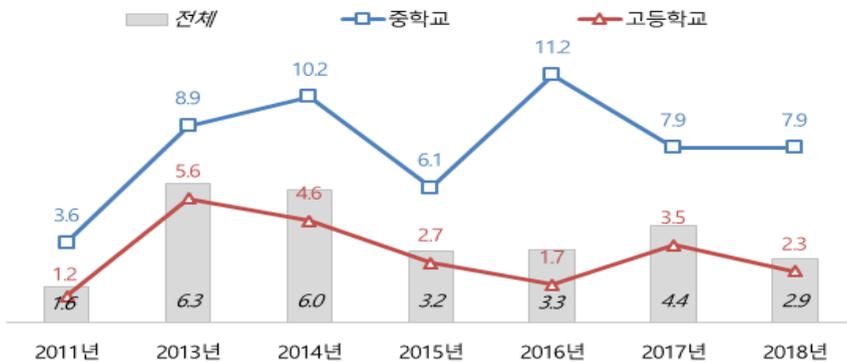


그림 IV-152 아르바이트 피해경험\_8) 성적 피해를 경험했다(연도별 추이)

청소년고용사업장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자료는 체계적으로 생산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14년까지 제시된 고용노동부의 요청자료와 여성가족부의 합동점검결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2014년까지 제시된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의 경우 청소년고용 점검사업장(6,721개소) 중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장의 비율은 43.7%( 2,934개소)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김영지 외, 2017: 436-437). 또한 <표 IV-231>에 제시된 여성가족부의 합동점검결과를 보면 2017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총 36건이 적발되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총 15건, 2015년에는 56건이 적발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할 때 청소년고용사업장에서의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표 IV-233 청소년 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단위 : 건,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청소년 고용 점검사업장(건)	2,711	1,940	3,057	6,721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건)	896	718	758	2,934
미실시 사업장 비율(%)	33.1	37.0	24.8	43.7

\* 출처: 김경준 외(2014a).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 IV-총괄보고서. p.5593

\* 원자료: 경원일보(2015.9.13.). 청소년 알바 청년인턴 다수고용 사업장은 노동법 무용지대.

#### 4) 성적 착취

##### (1)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 ①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 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현재 아동·청소년 성

폭력 예방전문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는 총 1,2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의 55명에서 2018년 1,224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4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 수

(단위 :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9월	2018년 6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전 문강사	55	198	334	412	457	737	879	1,194	1,259	1,224

\*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9.2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8.6.17)

2017년 기준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연간 성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학생은 82.6%로, 고등학생 70.9%보다 11.7%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5 연간 성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68.9	76.4	61.3	81.3	75.5	72.7	74.8	65.2	43.8
2011	66.1	74.2	58.1	77.1	74.8	70.9	69.0	61.7	43.1
2012	68.0	73.7	62.5	75.1	74.6	71.5	67.6	67.8	52.0
2013	71.6	78.1	65.5	80.8	78.8	74.8	70.1	70.1	56.3
2014	71.8	77.6	66.3	82.3	76.9	74.1	71.0	69.5	58.5
2015	73.3	79.8	67.6	84.5	79.7	76.2	71.6	73.5	58.0
2016	71.9	78.7	66.2	82.8	78.1	75.5	70.8	70.8	57.1
2017	76.2	82.6	70.9	87.3	82.7	77.7	74.4	75.1	63.3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304.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339.

\* 주: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 ②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등록이 완료된 자는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46,415명이고,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선고되어 ‘성범죄자 알림e’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되고 있는 사람은 4,337명(약 9.3%)이다(여성가족부, 2017a: 293). 그리고 2018년 6월 17일 현재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선고되어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고 있는 사람은 4,09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성범죄자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36 신상공개 성범죄자수

(단위 :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성범죄 자	신상 공개자	성범죄 자	신상 공개자	성범죄 자	신상 공개자	성범죄 자	신상 공개자	성범죄 자	신상 공개 자	성범죄 자	신상 공개 자
2,167	151	3,818	1,261	12,652	3,786	22,582	4,161	33,616	4,552	46,415	4,337

\* 출처: 여성가족부(2011-2017). 각 년도 청소년백서.

\* 주: 2011년까지의 신상공개자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이나 2013년 신상공개자는 아동과 성인 대상임. 2011년은 12월 31일 기준이며, 2013년도와 2014년도는 11월 30일 기준임. 2015년도는 9월 30일 기준임. 2016년도는 12월 31일 기준임.

표 IV-237 지역별 신상공개 성범죄자 수

(단위 : 명)

특별시 * 광역시/도	성범죄자 수
서울특별시	630
부산광역시	250
대구광역시	204
인천광역시	249
광주광역시	119
대전광역시	107
울산광역시	72
경기도	945
강원도	146
충청북도	123
충청남도	223
전라북도	195
전라남도	214
경상북도	273
경상남도	272
제주특별자치도	65
세종특별자치시	8
총 계	4,095

\* 출처: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sc>. (2018년 6월 17일 인출)

\* 주: 본 통계자료는 행정동기준(주민자치센터 관리기준)으로 집계하여 공개한 자료이며, 통계는 실제 거주지 주소 공개자 수임.

## (2)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경험률

### 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비율

신상공개 성범죄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연령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비율은 다음 <표 IV-238>와 같다.

<표 IV-238>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7년에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수는 29,695 명이었다. 이중 19세미만 청소년은 총 9,793명으로 나타나 전체 성폭력 피해자중

33.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2016년 대비 322명 증가한 수치이다. 연령별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경험자 수를 살펴보면, 7세 미만이 381명(1.3%), 7-13세 미만이 2,239명(7.5%), 13-19세 미만이 7,173명(24.2%)로 나타났다. 그리고 7세 미만, 7-13세 미만, 13-19세 미만 등 모든 연령대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성폭력 피해자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자수는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자수도 2016년의 경우 총 885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치이며, 연령별로 구분해서 살펴봤을 때 7세 미만이 21명, 7-13세 미만이 169명, 13-19세 미만 695명으로 나타나서 장애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폭력 피해자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38 연령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단위 : 명, %)

연도	계(명)	피해자 연령						
		7세 미만	7-13세 미만	13-19세 미만	19-60세 미만	60세 이상	미상	
2009년	전체	33,659	944	4,375	10,287	15,115	546	2,392
		100%	2.8	13.0	30.6	44.9	1.6	7.1
	장애인	4,603	6	228	1,312	2,828	122	107
		100%	0.1	5.0	28.5	61.4	2.7	2.3
2010년	전체	39,299	1,042	5,581	11,761	18,225	381	2,309
		100%	2.7	14.2	29.9	46.4	1.0	5.9
	장애인	1,722	36	189	574	879	9	35
		100%	2.1	11	33.3	51	0.5	2.0
2011년	전체	33,749	786	3,813	9,914	15,927	401	2,908
		100%	2.3	11.3	29.4	47.2	1.2	8.6
	장애인	2,431	7	234	983	1,137	25	45
		100%	0.3	9.6	40.4	46.8	1.0	1.9
2012년	전체	30,642	565	3,088	9,371	15,325	405	1,888
		100%	1.9	10.1	30.6	50.0	1.3	6.2
	장애인	3,449	10	166	1,251	1,681	109	232

연도	계(명)	피해자 연령						
		7세 미만	7-13세 미만	13-19세 미만	19-60세 미만	60세 이상	미상	
2013년	전체	100%	0.3	4.8	36.3	48.7	3.2	6.7
		31,323	600	2,722	7,329	16,664	350	3,660
	장애인	100%	1.9	8.7	23.4	53.2	1.1	11.7
		3,225	57	247	743	1,894	49	233
2014년	전체	100%	1.8	7.7	23.0	58.7	1.5	7.3
		31,764	591	2,405	7,866	16,244	483	4,175
	장애인	100%	1.9	7.6	24.8	51.1	1.5	13.1
		4,965	16	208	1,196	2,680	31	834
2015년	전체	100%	0.3	4.2	24	54	0.6	16.8
		34,489	552	2,317	8,839	19,949	470	2,362
	장애인	100%	1.6	6.7	25.6	57.8	1.4	6.8
		3,986	18	179	1,158	2,430	49	152
2016년	전체	100%	0.5	4.5	29.1	61.0	1.2	3.8
		33,005	303	2,100	7,068	19,901	687	2,946
	장애인	100%	0.9	6.4	21.4	60.3	2.1	8.9
		3,038	16	133	764	1,972	34	119
2017년	전체	100%	0.5	4.4	25.2	64.9	1.1	3.9
		29,695	381	2,239	7,173	15,810	593	3,499
	장애인	100%	1.3	7.5	24.2	53.2	2.0	11.8
		3,270	21	169	695	2,100	46	239
		100%	0.6	5.2	21.3	64.2	1.4	7.3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7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6.

## ②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성적인 피해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조사대상 청소년 중 5.1%의 청소년이 성적인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이 6.2%로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6.3%, 중학교 5.2%, 고등학교가 4.1%로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다.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6.1%)가 가장 높았으며, 가족 유형으로는 조손가정(11.8%)이 한부모가정이나 양부모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하(7.5%)가 상이나 중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성적 피해 경험 비율은 해마다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1.3%p 증가하였다.

표 IV-239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chi^2$
전체		5.1	94.9	100.0(9,032)	
성별	남학생	4.2	95.8	100.0(4,684)	18.535***
	여학생	6.2	93.8	100.0(4,348)	
학교급	초등학교	6.3	93.7	100.0(2,739)	15.582***
	중학교	5.2	94.8	100.0(2,849)	
	고등학교	4.1	95.9	100.0(3,444)	
지역 규모	대도시	4.0	96.0	100.0(3,682)	19.211***
	중소도시	6.1	93.9	100.0(4,397)	
	읍면지역	5.1	94.9	100.0(95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0	95.0	100.0(8,240)	8.883*
	한부모가정	6.2	93.8	100.0(601)	
	조손가정	11.8	88.2	100.0(87)	
	기타	4.9	95.1	100.0(97)	
학업 성적	상	4.9	95.1	100.0(2,944)	2.254
	중	4.9	95.1	100.0(4,000)	
	하	5.8	94.2	100.0(2,081)	
경제적 수준	상	5.1	94.9	100.0(4,970)	13.015**
	중	4.6	95.4	100.0(3,186)	
	하	7.5	92.5	100.0(869)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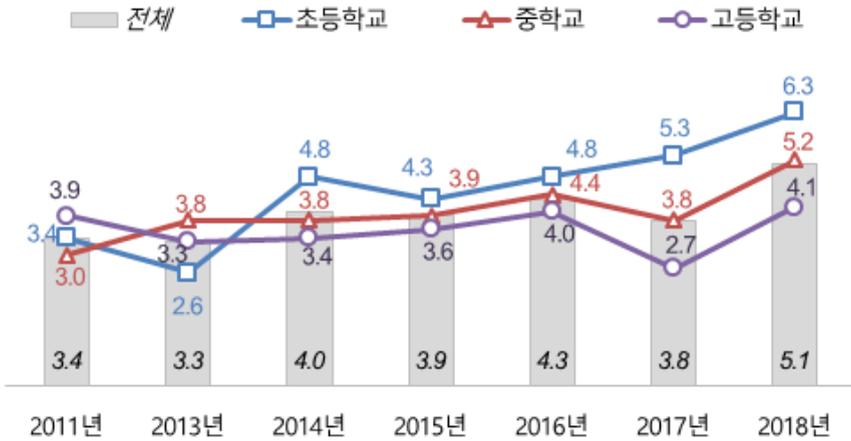


그림 IV-153 성적인 피해 경험 여부(연도별 추이)

### ③ 성적 피해 시 도움제공자

성적인 피해를 당했을 도움을 받은 사람과 관련된 질문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가 38.4%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친구가 23.1%, 부모님 18.8%, 교사 8.5%, 선후배 3.5%, 경찰 2.5%, 형제자매 2.4%, 전문상담가 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적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로부터의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이후 친구 응답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경우 교사와 부모님(보호자)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등학생은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표 IV-240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

(단위 : %(명))

구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친구	선·후 배	부모님 (보호 자)	형제· 자매	선생님	전문 상담가 (상담 전화 등)	경찰	기타	전체(n)	
전체	38.4	23.1	3.5	18.8	2.4	8.5	1.0	2.5	1.9	100.0(453)	
성별	남학생	29.4	21.1	6.7	27.1	3.4	7.9	1.7	2.0	0.6	100.0(190)
	여학생	44.9	24.5	1.2	12.8	1.7	8.8	0.4	2.8	2.7	100.0(264)
학교급	초등학교	11.9	24.7	6.7	41.6	6.6	4.6	0.7	1.3	2.0	100.0(166)
	중학교	44.5	22.6	0.0	8.0	0.0	18.5	2.2	2.5	1.8	100.0(149)
	고등학교	63.8	21.7	3.4	3.2	0.0	2.3	0.0	3.8	1.7	100.0(139)
지역 규모	대도시	34.5	29.5	5.0	18.5	2.9	5.1	0.0	2.0	2.5	100.0(141)
	중소도시	42.1	17.3	3.4	18.0	2.1	10.9	1.2	3.1	1.8	100.0(263)
	읍면지역	29.9	35.4	0.0	24.6	2.7	5.1	2.2	0.0	0.0	100.0(4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9.0	23.6	3.3	18.7	2.2	8.9	1.1	1.8	1.4	100.0(402)
	한부모가정	39.0	22.1	3.9	17.2	5.3	3.3	0.0	5.0	4.1	100.0(37)
	조손가정	16.9	9.0	10.7	16.6	0.0	13.8	0.0	20.5	12.6	100.0(10)
	기타	31.8	18.3	0.0	49.9	0.0	0.0	0.0	0.0	0.0	100.0(5)
학업 성적	상	31.0	21.0	4.5	23.5	2.2	10.4	1.9	3.1	2.2	100.0(143)
	중	37.9	23.6	4.9	21.3	3.6	7.3	0.0	1.3	0.2	100.0(195)
	하	48.6	24.8	0.0	8.8	0.6	8.1	1.4	3.6	4.2	100.0(116)
경제적 수준	상	33.0	21.1	3.8	26.1	2.3	8.8	1.3	1.6	2.0	100.0(247)
	중	42.8	27.2	4.5	11.8	3.2	6.2	0.8	3.6	0.0	100.0(144)
	하	49.9	21.5	0.0	6.5	1.1	12.2	0.0	3.2	5.7	100.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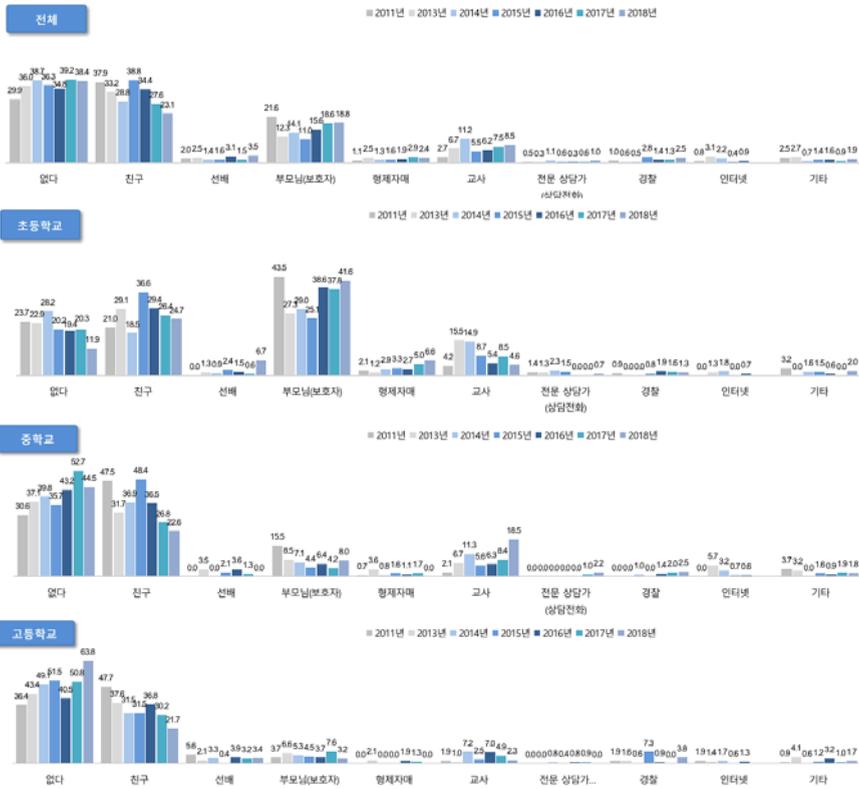


그림 IV-154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연도별 추이)

### (3)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 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4,615명이 접수되었으며, 전년 대비 9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과 기소현황도 2016년에는 4,585명이 처분 받았으며, 이 중 1,704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자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5년에 감소한 후 2016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41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 접수·처리 현황

(단위: 명)

구 분	접수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2012	4,261	4,186	1,501	390	1,228	1,067
2013	4,526	4,525	1,851	153	1,301	1,220
2014	4,626	4,688	1,882	14	1,430	1,362
2015	4,516	4,505	1,744	0	1,419	1,342
2016	4,615	4,585	1,702	2	1,461	1,420

※ 산출죄명 : 미성년자간음,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특별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간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출처: 대검찰청(2017). 검찰연감. p.560.

②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형량 변화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주요 형량은 2013년 이후 변화가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IV-242>와 같다.

표 IV-242 국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 주요 형량 변화

법령	조문	성범죄 내용	형량	
			개정 전	개정 후
형법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미만 의 제유사강간	-	징역 2년 이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작수입수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목적판매·배포·전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전시·상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선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살인·치사	-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출처: 법제처(20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 (2018년 7월 22일 인출)

#### (4)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 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2017년을 기준으로 총 30개소이며, 전년 대비 변화되지 않았다. 연도별 개소수 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에 20개소에서 2016년에 30개소로 전반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증가추이는 성폭력 피해율의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김영지 외, 2016: 468). 2017년의 경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정원은 360명이며, 성폭력 피해자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총 172명으로 전년 대비 6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43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연 도	개소수	입소정원	종 사 자 수		
			계	상근직	비상근 자원봉사
2009년	20	214	116	69	47
2010년	19	209	100	72	28
2011년	19	209	90	64	26
2012년	22	249	104	96	8
2013년	23	264	124	104	20
2014년	29	310	153	193	14
2015년	30	353	179	150	29
2016년	30	363	166	150	16
2017년	30	360	172	146	26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7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10.

2017년을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자의 연령별 입소 현황을 살펴보면 총 285명이 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으며, 이중 24세 이하는 216명으로 총 75.8%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세 미만은 1명

(0.4%), 5세-12세 이하는 15명(5.3%), 13세-18세 이하는 123명(43.2%), 19세-24세 이하는 77명(27.0%)이었다.

표 IV-244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현황 (2013-2017)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5세 미만	5-12세 이하	13-18세 이하	19-24세 이하	25-64세 이하	65세 이상
2013년	전체	238	5	15	113	44	60	1
		100%	2.1	6.3	47.5	18.5	25.2	0.4
	장애인	103	-	3	36	26	37	1
		100%	-	2.9	35.0	25.2	35.9	1.0
2014년	전체	285	2	19	141	59	63	1
		100%	0.7	6.7	49.5	20.7	22.1	0.4
	장애인	167	0	4	66	42	54	1
		100%	-	2.4	39.5	25.1	32.3	0.6
2015년	전체	286	4	20	132	77	53	0
		100%	1.4	7.0	46.2	26.9	18.5	0
	장애인	165	0	4	62	54	45	0
		100%	0	2.4	37.6	32.7	27.3	0
2016년	전체	295	1	13	117	95	68	1
		100%	0.3	4.4	39.7	32.2	23.1	0.3
	장애인	180	0	2	54	69	55	0
		100%	0	1.1	30.0	38.3	30.6	0
2017년	전체	285	1	15	123	77	69	0
		100%	0.4	5.3	43.2	27.0	24.2	0
	장애인	173	0	3	54	60	56	0
		100%	0	1.7	31.2	34.7	32.4	0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7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11.

## ②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상담 실시 인원

2017년을 기준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성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자 1,260명 중 여성이 1,191건으로 94.5%를 차지하였으며, 남성은 66건으로 5.2%를 차지하였다. 성폭력 피해자의 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7세 이하가 41건(3.3%)이었으며, 8세-13세가 83건(6.6%), 14세-19세가 146건(11.6%)으로 나타

났다. 반면 20세 이상의 성인은 964건으로 전체 상담인원의 76.5%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체 상담건수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의 비중은 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IV-245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연령대 성별	성인 (20세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916 (72.7)	141 (11.2)	75 (5.9)	36 (2.9)	23 (1.8)	1,191 (94.5)
남	46 (3.7)	5 (0.4)	8 (0.6)	5 (0.4)	2 (0.2)	66 (5.2)
미상	2 (0.2)	0 (0.0)	0 (0.0)	0 (0.0)	1 (0.1)	3 (0.2)
총계	964 (76.5)	146 (11.6)	83 (6.6)	41 (3.3)	26 (2.1)	1,260 (100.0)

\*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2018.2.28).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p.3.

현재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2017년의 경우 6월 현재까지 133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6월까지만 이루어진 교육에 대한 교육실시 인원이기 때문에 2017년도 통계수치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 소폭 증감이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2006년 94명에서 2016년 377명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V-246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 실시 인원

(단위 : 명)

연도 별	중앙 센터	40시간 교육									지적 장애	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전북		
2006	24	-	20	10	26	-	-	-	-	-	14	94
2007	108	5	58	62	47	-	-	-	-	-	25	305
2008	-	45	47	45	43	-	-	-	-	-	25	205
2009	-	44	43	36	39	34	42	-	-	-	17	255
2010	-	52	60	40	48	29	46	50	18	-	29	372
2011	-	38	46	31	31	31	43	50	18	24	21	333
2012	-	31	44	43	41	31	39	48	24	29	25	355
2013	12	22	30	31	29	27	32	26	16	30	23	278
2014	-	39	42	43	36	40	18	41	17	42	37	355
2015	-	34	40	39	43	42	24	38	34	40	35	369
2016 (12월)	-	35	40	39	49	34	36	39	30	39	36	377
2017 (6월)	-	17	10	9	18	8	18	16	3	12	22	133

\* 출처: 여성가족부(2017a). 2017 청소년백서. p.290.  
\* 원자료: 여성가족부(2016). 내부통계자료.

### ③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실적은 2017년에 총 98,954건으로 전년 대비 1,388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을 기준으로 서비스 유형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심리·정서적 지원이 48,237건(48.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립지원이 10,930건(11.0%), 의료지원 8,844건(8.9%), 학교문제 지원 8,259건(8.3%), 수사·법적지원 1,201건(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성폭력 피해자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요구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자 역시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

표 IV-247 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단위 : 건, %)

연도	계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 지원	학교문제 지원	자립 지원	기타
2009년	14,570	8,165	417	2,626	789	401	2,172
	100%	56.0	2.9	18.0	5.4	2.8	14.9
2010년	18,218	12,666	311	2,276	688	868	1,409
	100%	69.5	1.7	12.5	3.8	4.8	7.7
2011년	21,274	15,843	268	2,824	528	453	1,358
	100%	74.5	1.3	13.3	2.5	2.1	6.4
2012년	28,581	15,395	453	3,894	2,096	791	5,952
	100%	53.9	1.6	13.6	7.3	2.8	20.8
2013년	42,678	23,246	1,126	6,021	2,749	2,595	6,941
	100%	54.5	2.6	14.1	6.4	6.1	16.3
2014년	56,960	26,015	2,448	7,369	3,425	5,144	12,559
	100%	45.7	4.3	12.9	6	9	22
2015년	93,012	50,046	2,260	11,560	6,444	9,163	13,539
	100%	53.8	2.4	12.4	6.9	9.9	14.6
2016년	97,566	49,942	1,018	8,807	7,204	10,661	19,934
	100%	51.2	1.0	9.0	7.4	10.9	20.4
2017년	98,954	48,237	1,201	8,844	8,259	10,930	21,483
	100%	48.7	1.2	8.9	8.3	11.0	21.7

\* 출처: 여성가족부(2018a). 2017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14

## 5) 소결

특별보호조치의 지표체계는 2017년도와 동일하게 중분류 수준에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소년 사법 아동,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로 구분하였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관련해서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호프로그램 참여율 등을 조사하였다. 소년 사법 아동의 인권실태와 관련해서는 자유박탈 아동·청소년수용률,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비율 등을 조사하였다. 경제적 착취와 관련해서는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 근로조건 수준,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 노력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적 착취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정도,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정도 등 3개의 소분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첫째,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관련하여 우선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율을 살펴보았으며,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탈북 난민 아동 수,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이 조사되었다. 아동·청소년 난민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현재 전체 난민신청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약 4.0%이며, 2013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난민인정과 인도적 체류의 비율이 증가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인정과 인도적 체류허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 주민의 입국규모는 줄고 있지만,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의 남한입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탈북청소년의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은 다소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차별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과 관련하여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대다수(84.5%)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자녀(15.5%)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역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학교생활 지원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책 마련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의 중도탈락률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은 2014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학업중단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 중단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은 다문화가족 자녀보다 훨씬 높은 수준(2.0%)이며, 특히 고등학교 중도탈락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호프로그램 참여율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다문화예비학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예비학교 지원강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그리고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운영하는 레인보우스쿨 참가 인원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실시하는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년 사법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과 관련해서는 자유박탈 아동·청소년의 수용, 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였다.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과 관련하여 보호소년의 수용 인원수는 7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이 2016년에 총 2,018명이었다. 소년 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 역시 2015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범죄유형은 강간과 폭력·상해, 절도, 강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권친화적인 환경조성 비율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인 배치인원수를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와 학대의 피해를 받은 아동피해자의 법률적 부조를 주목적인 국선변호

사 접수 건수와 지정 건수, 지정률은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소년 대상 소년원의 교육체계는 전년 대비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등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년교도소 수용청소년의 처우불복제도와 관련하여 처우불복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청원과 고소·고발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수는 청원, 행정심판, 행정소송, 고소·고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는 2012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대상 사회봉사명령 집행자 수 역시 소폭 감소하였고, 수강명령을 받은 청소년의 수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청소년, 그리고 보호관찰소의 선도위탁 청소년의 비율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추세들은 소년 사범 아동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보다는 교육에 초점을 맞춘 징계방침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착취와 관련해서는 인권침해적인 청소년의 근로조건, 근로 시 청소년의 부당처우 경험률,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 노력 정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인권침해적인 청소년의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과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2016년 기준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1.2일, 월평균 근로시간은 177.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11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지만,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시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률과 관련해서는 파트타임 고용 청소년비의 비율과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을 조사하였다. 우선 청소년의 파트타임 고용비율은 2016년 24.4%로 OECD 평균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11.0%였으며, 고등학교, 조손가정, 낮은 학업성적, 낮은 경제적 수준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피해 경험 중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

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3.0%였으며,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험도 67.5%, 폭언 등 인격모독 경험도 12.2%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구타나 폭행의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3%로 2017년과 유사하였으며, 성적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전체 청소년의 2.9%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특히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은 경험도 18.6%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청소년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으로 높아졌지만 여전히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2017년에 실시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즉 22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최저임금 미고지,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야간·휴일근로제한,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임금미지급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고용사업장에 대한 점검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에 필요한 사회적 관심과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문제와 관련해서는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정도,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정도를 조사하였다. 우선 청소년 성폭력예방 노력정도와 관련하여 성폭력 예방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수는 2017년 9월 현재 총 1,224명이며, 2009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76.2%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성범죄자의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었으며, 신상공개자 역시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 이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 경험률과 관련해서는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성적 피해 시 도움제공자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2017년에 발생한 성폭력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의 비중은 33.1%에 해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폭력 피해자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도 전체 조사대상 청소년 중 5.1%가 성적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적 피해 시 도움제공자와 관련해서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가 3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 부모님 순이었다.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처벌 강도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 및 조치율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형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전년 대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정도와 관련해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은 30개소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172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입소자 중 24세 이하의 청소년은 75.8%(216명)를 차지하였다. 성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서비스를 받은 사람 중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3.5%로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200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실적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5장 정책제언

- 1. 정책제언 개발 과정
- 2. 2018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의 주요 시사점 분석
- 3.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민간보고서 분석
- 4. 전문가 의견조사 및 2017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분석
- 5.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 1. 정책제언 개발 과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인권지표를 개발하고, 실태를 조사하며,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를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따라서 매년 정부에 정책과제를 보고서에 담아서 제안하고 있다. 제안된 정책들은 시간의 흐름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미 수행된 것도 있고, 여전히 풀지 못한 과제들도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지 않는 사회적 환경에서 매년 새로운 정책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작업이 될 우려가 있으며, 아주 어려운 일이다. 2018년도에는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국가승인통계인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상황 개선 정책과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둘째,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이어 민간기구들에게서는 제5·6차 민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연구진은 이 민간보고서를 입수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정책과제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38) 정책 제언의 대부분은 최창욱 선임연구원이 집필하였다. 최창욱 선임연구원이 집필을 담당한 부분은 1절(정책제언 개발 과정), 2절(2018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의 주요 시사점 분석), 3절(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민간보고서 분석), 5절(주요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이다. 유민상 부연구위원은 4절(전문가 의견조사 및 2017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집필하였다.

셋째, 2017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정책과제에 반영하였다. 모니터링은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전문가의 자체평가 형태로 실시하였다.

넷째,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상황과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드러난 주요 과제들을 정책과제에 반영하였다.



그림 V-1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도출 과정

## 2. 2018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의 주요 시사점 분석

2018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는 제IV장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또한 7가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청소년 인권 하위 영역별로 소결도 제시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결과에 따른 주요 시사점을 7가지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청소년 인권 하위 영역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 인프라 구축 정도와 관련하여,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었고, 아동학대 및 범죄 예방을 위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청소년의 참여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 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 정도는 전년 대비 사이버 공간에서의 존중 정도만 낮아졌다. 인권의식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긍정적인 인식 비율은 지난 5년 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권교육 경험률은 전년 대비 고등학생의 경험률 증가가 두드러졌다. 인권교육을 경험한 곳은 학교 정규 교과시간이 가장 많았고,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 밖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이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인권교육 경험자의 4분의 3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고, 이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년에 1회 이상 차별 가해 경험은 신체조건, 학업성적, 성별, 연령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외모, 신체조건에 대한 차별과 성차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연령차별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리 존중과 아동·청소년의 인권 의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외모, 성별로 인한 차별 등,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차별 경험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정책이 확대 시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 성, 인종 등,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가정에서의 참여정도(의사결정시 존중 정도)는 진로(직업) 결정, 상급학교 결정, 집안의 중대사 결정, 공부 시간·방법 결정 순으로 긍정 응답률이 높았다. 학급회의 시 자유로운 의견제시가 가능한 정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응답은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는 2013년 이후 더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 아동·청소년참여기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활동 경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다. 선거연령을 현재 만 19세보다 낮추자는 의견은 전년도의 급격한 상승 이후 다소 하락하였다.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 수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참여 방해요인으로는 사회편견, 시간부족, 정보부족, 방법과 기회부족의 순이었다.

사상의 자유는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었으나 201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종교의 자유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고,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사 및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경험률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경험률은 2017년에 큰 폭으로 증가한 후 2018년에는 조금 감소하였다.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학교에서의 모든 검사에 있어 전년도에 비해 2018년도에 경험률이 약간 감소하였고, 용모 검사와 복장 검사는 경험률이 꾸준히 낮아지고 있고, 소지품 검사 경험률은 2016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 정보접근권과 관련하여 인터넷과 스마트 폰이 10대 청소년의 일상적인 소통방식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정보제공 정도와 관련하여 해마다 정보제공 수준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흡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에서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정도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의 실질적인 시민권 보장을 위해서는 참여기구 활동 기회의 확대, 청소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 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

### 3) 폭력 및 학대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에 대한 폭력 경험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교사로부터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은 2011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학원에서 교사로부터의 폭력도 감소 추세에 있다. 또래로부터의 폭력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중고등학생의 감소 추세가 뚜렷한 것에 비해 초등학생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에서의 체벌금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한 것에 비해, 가정 내에서의 체벌은 여전히 충분히 감소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몇 년 간의 부모로부터의 체벌 경험 비율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초등학생에 대한 체벌은 오히려 약간 증가하였다.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가정 내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적 훈육 위험이 상존하는 것을 보인다.

사회적 인식변화와 인프라 확충 등으로 중앙아동보호기관이 접수한 아동학대의

신고건수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종사자의 수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격차도 발생하고 있었다. 성학대는 연령별로는 13-15세, 성별로는 여성청소년들의 피해비율이 높게 나타나 성학대에 취약한 대상군이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었고, 아동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보호망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취약한 환경과 대상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 내에서의 폭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체계를 확충하여 아동학대 발생 및 위험 사례에 대한 개입을 체계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성(性)적 학대에 취약한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예방방안 및 위기개입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돌봄체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질적으로도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대안양육 체계는 아직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법제도적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가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아동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0-2세 아동들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90%를 넘을 만큼 보편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었다. 반면 교사 1인당 아동의 수는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보육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집 이용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보육 시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및 지원이 필요하다.

방과후 돌봄체계는 우리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방과 후 방치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에서

교과수업이 아닌 특기적성 수업을 듣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에 만족하는 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수업의 비중이 높고, 초등학생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대안양육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은 인구감소 경향에 따라 함께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대안양육배치에서는 가정위탁보호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요인에는 빈곤, 실직, 이혼 등 부모가 생존해 있지만 빈곤과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원가족과 분리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미혼모의 출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호대상아동이 17.1%나 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혼외출산에 대해 엄격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동이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와 함께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변화도 함께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비준하지 못할 만큼 입양관련 법제도 정비가 미비하다.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입양아동 수가 감소하였지만, 이는 그만큼 과거의 입양절차가 체계적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을 통하여 국제적 수준의 입양 관련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정비한 후,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국가적 지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인하여 아동에게 생물학적 부모가 존재하는데도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양은 사후적인 대안양육 방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가족이 있음에도 원가족과 성장할 수 없는 아동의 사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가출을 한 청소년들은 청소년지원체계를 아무 것도 이용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가출청소년들이 의식주 마련을 위해 범 죄나 성매매와 같은 위험한 선택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가출 쉼터의 개소 수를 늘리고

접근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력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과 특수교수 수, 특수교육 교원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에 배치된 아동·청소년의 수는 증가 추세인 반면, 일반학급에 배치된 아동·청소년의 수는 2012년 이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청소년의 특수학교 졸업 후 진로를 살펴보면, 진학률과 취업률은 모두 감소한데 비해 무직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사망자수와 사망률을 살펴보면 0세부터 14세까지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망률이 감소하다가 15세부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난 7년간의 추이를 보면 0세에서 24세까지의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각각 6.4%, 16.1%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교급별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흡연율과 음주율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흡연예방교육과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대상 음주·흡연예방교육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고학년 대상 음주·흡연예방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건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87.1%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70.0%는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17분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과반수 이상이 수면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과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비만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33.8%가 ‘가끔’ 또는 ‘자주’ 죽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의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죽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학업문제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가족 간의 갈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청소년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를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은 학업문제와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 아동·청소년들의 17.0%가 행복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는 학업부담과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이 가장 많았다. 삶의 만족도는 전체 평균이 7.11점으로 나타났으며(0점~10점), 41개 국가가 조사에 포함된 WHO의 ‘학령기아동 건강행태연구’(HBSC)와 비교한 결과, 한국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과 관련하여 우선 아동·청소년 빈곤율을 보면, OECD국가들과 비교하면 빈곤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24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수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30.6%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는 2008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대한민국의 교육의 기회 보장 정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OECD의 평균수준에 뒤지지 않고 있다고 총평할 수 있다. 2011~2017년까지의 각급 학교의 연도별 취학을 추이를 보면 유치원의 취학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취학률이 다소 낮아지고 있는 중이라 정부는 학업중단율과의 상관관계에 유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학교급별 진학률에 있어서는 2015년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고무적이다.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에서는 전반적으로 인구의 자연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되는 추세라 상황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OECD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학업중단율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각급 학교의 학업중단율이 미세하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인식정도에 관한 조사 결과는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하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교가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바람직한 인성, 배려와 공동체 의식, 실용적 지식에 대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안교육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주목할 만 한 변화는 없지만, 직업교육에 있어서는 최근의 학업중단 학생이 늘어나면서 교육부가 직업교육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직업계고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

문화예술 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및 이용시설의 수가 크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률이 낮은 반면 청소년 이용시설인 공공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예술 공간은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가문화예술 활동에의 참여율에 있어서는 취미와 오락 활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업부담이 많은 고학년 및 일반계고일수록 상대적으로 평일에 여가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평일과 휴일의 전체 여가시간 중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여가시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단체활동 참가율은 낮았고, 동아리활동 참가율은 높은 수준이었다.

부모가 대체로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있고, 학교로부터도 긍정적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특성화계고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생일수록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지지를 상대적

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의 권리 측면에서는 교육의 기회 보장에 있어서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생들의 학교부적응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한 지나친 학업부담의 경감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은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장해주는 시급한 과제이다.

다음으로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이용률이 청소년 이용시설 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청소년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범정부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와의 연계·협력 확대에 대한 노력을 정부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MOU를 통해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 7) 특별보호조치

2017년 현재 전체 난민신청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약 4.0%이며, 2013년 이후 매년 증가 추세이며,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율은 2014년 대비 소폭을 감소하였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보호프로그램 참여율과 관련하여 다문화예비학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무지개청소년센터의 레인보우스쿨 참가자도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상담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7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2016년에 총 2,018명이며,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은 2015년 이후 증가 추세이고, 주요 범죄유형은 강간과

폭력·상해, 절도, 강도 등이었다. 성폭력범죄와 학대피해를 받은 아동피해자의 법률적 부조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선변호사 접수 건수와 지정 건수, 지정률은 모두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년원의 교육체계는 전년 대비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며, 소년교도소 수용청소년의 처우불복제도 신청 건수는 청원과 고소·고발이 가장 많았다.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의 수는 감소 추세이며, 청소년대상 사회봉사명령 집행자 수 역시 소폭 감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착취와 관련하여 2016년 기준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는 21.2일, 월평균 근로시간은 177.0시간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2011년 이후 증가 추세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11.0%였으며, 아르바이트 피해경험 중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 중 13.0%, 근로계약서 미작성 67.5%, 폭언 등 인격모독 경험 12.2%, 구타/폭행경험 3.3%, 성적 피해경험 5.1%로 나타났다.

2017년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에서도 227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이중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문제와 관련하여 청소년 성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는 2017년 9월 현재 총 1,224명이며, 2009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76.2%이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성범죄자의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신상공개자 역시 2015년까지 증가하다가 2016년 이후 소폭 감소하였다. 2017년의 성폭력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의 비중은 33.1%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폭력 피해자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형량은 전년 대비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은 30개소로 전년과 동일하였으며, 성폭력피해자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성매매 대상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200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실적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민간보고서 분석

2018년 하반기에는 제5·6차 국가보고서에 이어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국제아동인권센터 등 30여개 아동·청소년 관련 NGO들이 공동으로 민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민간보고서의 구성 대부분은 국가보고서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연구진은 민간보고서 작성 주체들과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양해하여 민간보고서가 영문으로 번역되기 전 자료를 입수하였다. 민간보고서의 방대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및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에 있어 민간보고서는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주요 사항들만을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아동·청소년의 권리주체성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협약의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협약의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법상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여 중앙-광역-기초단체의 전달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등에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정책들은 거의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 간 아동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의 확보와 아동·청소년 예산수립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각종 실태조사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조사체계를 마련하고, 협약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영유아, 어린이 등 다양한 연령정의를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연령기준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지역 간, 휴식, 놀이, 여가, 문화 등에서의 차별 금지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등 아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며, 재난에서의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아동·청소년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하여 특히 학교생활 및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학생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예산과 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있어 민간보고서는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주요 사항들만을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마련하고, 온라인 출생신고제도를 확산하며,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포함한 출생 관련 정보가 공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선택의 자유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 및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투표 연령을 최소 18세 이하로 하향하고, 정당가입이나 선거운동, 피선거권의 연령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

셋째, 학교에서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 마련과 아동보호 목적 어플리케이션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아동 개인정보 취급기관의 오용을 막고, 아동의 자기결정권 증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 3) 폭력 및 학대

폭력 및 학대에 대하여 민간보고서는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주요 사항들만을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벌에 간접체벌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관련법에서 체벌을 전면 금지 및 체벌금지 이행사항을 점검해야 하며, 대안적 훈육방법을 마련하고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상담원 등 기관 및 전문 인력을 확대하고,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진단 및 분석과 함께, 아동학대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의 중립적 해결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이버폭력, 학생 간 성폭력, 교사의 성폭력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더불어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에 있어 민간보고서는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주요 사항들만을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등하게 지원되고 있는 양육지원의 개선이 필요하며, 비전형적 근로시간 부모의 아동 돌봄서비스 마련, 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 법원은 아동의 실질적인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아동분리보호 결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가정에서 분리 보호된 아동의 신속한 복귀, 친생부모의 아동 양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확대하여 가정위탁제도를 활성화하고, 대안양육 시설유형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실효성 있는 양육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전국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입양의 공적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입양 절차를 마련하고, 입양

특례법을 개정하여 원가정보호 및 국내입양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외국국적 아동의 국내입양을 위한 법제도도 개선하여야 하며, 아동반환 명령의 시의적절한 집행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감금된 부모의 자녀와 교도소에서 모와 함께 사는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 5)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에 있어 민간보고서는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주요 사항들만을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사 인력배치, 접근성을 고려한 특수학교나 학급의 신설 등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이주배경 아동의 의료보장 혜택을 부여하고, 학령기 건강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영유아를 위한 보건인력 및 인프라를 확대하고, 학교 내 성평등 문화 조성 및 실질적 성교육 확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약물남용 보호를 위하여 음주와 흡연에 대한 실태조사 등에 근거하여 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게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서비스 접근성의 지역적 형평성을 보장하고, 아동 주거 빈곤에 대한 국가통계개발 및 아동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하며, 지역별, 연령별 편차 없이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에 있어 민간보고서는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주요 사항들만을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부터 생애주기 교육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확충하고, 지역 간, 계층 간 교육 여건의 격차를 없애며, 학교 밖 청소년, 위기청소년을 위한 교육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학교교직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둘째, 경쟁적 교육제도 개선을 위해 점수와 등급 대신 학생의 성장을 확인하는 다양한 평가방식을 도입하며, 공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금지, 사교육기관의 과도한 선행사교육 규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과도한 학업부담을 완화하도록 아동의 여가와 문화생활에 대한 권리와 휴식권을 보장하고, 학원에서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며, 아동친화적 놀이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탈북학생, 다문화학생에 대한 언어교육 및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다문화가정 자녀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7) 특별보호조치

특별보호조치에 있어 민간보고서는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였다. 주요 사항들만을 간추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난민인정 심사과정에서 아동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계, 교육, 의료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난민 가정의 아동 출생신고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건강 및 보육서비스, 교육권이 보장되고, 아동보호 체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 교육 및 학교적응 지원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셋째, 소년법의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가출의 원인 해결을 위한 위기가정 대응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청소년대상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장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며, 현장실습생과 청소년 연예인의 교육권, 학습권, 노동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섯째, 아동 성폭력 예방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아동성폭력에 대한 전문수사팀 구축 및 처벌강화가 필요하다. 국외 아동성범죄에 대한 대처를 강화하고, 인신매매 관련 전담 수사팀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소년보호사건을 전담하는 소년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소년사법 전체 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며,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소년 수용자를 대상으로 차별 없는 인권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법관이 직권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아동의 사법절차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8) 아동 매매·성매매 및 포르노물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포괄적 인신매매 규정을 통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제공 아동보호장치를 마련하며, 온라인 성매매 대책을 마련하고, 해외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내의 외국인 가해자, 외국의 내국인 가해자에 대한 역외관할권 확립을 위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 9)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후속 조치

분쟁지역 파병 부대원 대상 아동권리교육을 강화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보장하며, 무력분쟁지역에서 온 난민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을 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며, 선택의정서에 대한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

## 4. 전문가 의견조사 및 2017년도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분석

### 1) 전문가 의견조사 방법 및 절차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의견조사와 덧붙여 2017년도 제1차 년도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제의 이행정도와 중요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2018년 10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 진행되었으며, 국내의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40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중 조사에 성실히 참여한 2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아동인권 관련 대학 및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 교사, 변호사, 판사, 노무사, 아동청소년 NGO 활동가 및 현장종사자 등 다양하였다. 대상자들은 법률전문가 4인, 학계전문가 14인, 교육전문가 5인, 아동 NGO 활동가 및 현장전문가 6인 등 29명이었다. 조사대상자 선정은 인권 클러스터 7개 영역의 인권실태에 대한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조사 내용은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 관련 모니터링, 인권 증진의 방해요인,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그리고 종합의견 등이었다.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 관련 모니터링은 지난 2017년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들의 중요성과, 잘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인권 증진의 방해 요인은 선행연구나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것들로 정부 차원, 법·제도 차원, 학교 차원, 시민사회 차원, 학술연구 차원, 사회문화 차원, 가정 차원, 개인 차원 등 8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는 현재의 아동·청소년 인권의 상황을 평가하고, 지난 10년 간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묻는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의견을 주관식 문항으로 제시하였다.

표 V-1 전문가 의견조사의 주요 내용

영역	하위 영역	세부영역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 모니터링	진행과제의 이행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검토</li> <li>- 인권교육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한 허브 구축</li> <li>- 읍면동 단위의 청소년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및 보급</li> </ul>
	진행과제의 중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실효적 제도 개선</li> <li>-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조사 시 대응체계 강화</li> <li>- 입양 및 파양 관련 체계적 DB구축과 사후관리 강화</li> <li>-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활성화</li> <li>-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교육을 위한 기반 확충</li> <li>-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및 건강증진 방안 수립·시행</li> <li>- 청소년상담체계 접근성 제고 및 이용 활성화</li> <li>- 직업계고 직업교육 성공사례 DB 구축과 멘토 제도 도입</li> <li>-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li> <li>-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에 대한 대안양육과 예비학교 확대 운영</li> <li>- 연소자 근로조건 위반 단속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점검활동 강화</li> </ul>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의 방해요인	정부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인권 담당 중앙부처의 분절성과 낮은 책무성</li> <li>- 아동인권 정책에 대한 예산지원 미비</li> <li>- 아동인권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시행 미비</li> <li>-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미비</li> </ul>
	법·제도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인권 관련 법 개정 및 제정 노력 미비</li> <li>- 사법절차에서 아동인권 보호장치 미비</li> <li>- 법조인들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미비</li> <li>- 법조인들의 낮은 인권감수성 및 아동권리의식</li> </ul>
	학교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 아동의 참여권 보장 장치 미비</li> <li>- 학교 내 반인권적 학칙 규정</li> <li>- 교사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미비</li> <li>- 교사의 낮은 인권감수성 및 아동권리의식</li> </ul>
	시민사회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인권 관련 단체의 수 부족</li> <li>- 아동인권 관련 활동가의 전문성 부족</li> <li>- 아동인권 관련 단체의 옹호활동 부족</li> <li>- 아동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li> </ul>
	학술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인권 관련 연구자의 수 부족</li> </ul>

영역	하위 영역	세부영역
	차원	- 아동인권 관련 연구자의 전문성 부족 - 아동인권 관련 연구와 현실과의 괴리 - 아동인권 관련 조사 데이터의 양적·질적 한계
	사회문화 차원	- 가부장적 유교 문화 - 방송매체의 낮은 인권감수성 및 아동권리의식 - 인터넷매체에서의 아동인권침해 콘텐츠 확산 - 아동인권에 대한 일반인 대상 교육 및 홍보 부족
	가정 차원	- 폭력적 훈육 방식에 대한 높은 수용성 -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가족문화 - 부모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미비 - 부모의 낮은 인권감수성 및 아동권리의식
	개인 차원	- 아동 자신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지 미비 - 또래와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부족 - 인권침해 시 발언할 수 있는 기회·창구 부족 - 인권침해 시 구제 받을 수 있는 창구 미인지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평가	- 우리사회에서 전반적인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에 대한 평가 - 지난 10년 간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수준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종합의견	- (본인의 전문 영역에 대한)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에 서의 주요 문제와 개선방안	

## 2) 전문가 의견조사 주요 결과

### (1) 2017년도 제안 정책과제 모니터링

2017년 제1차 년도 연구에서 정리하여 제안한 정책과제 14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모니터링 결과 이행정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요도는 사안에 따라 다양하였다.

표 V-2 2017년도 제안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2017년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과제(14개)	이행정도		중요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I.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2.14	.848	3.89	.875
2. 인권교육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한 허브 구축	2.11	.751	3.86	.932
II.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읍면동 단위의 청소년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및 보급	2.15	.818	3.66	.746
III. 폭력 및 학대				
1.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실효적 제도 개선	2.86	.915	4.46	.576
2.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조사 시 대응체계 강화	3.21	.774	4.71	.460
IV.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입양 및 파양 관련 체계적 DB구축과 사후관리 강화	2.45	1.055	4.32	.723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2.55	.870	4.32	.670
V.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1.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교육을 위한 기반 확충	2.72	.960	4.25	.701
2.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및 건강증진 방안 수립·시행	3.14	.743	3.81	.557
3. 청소년상담체계 접근성 제고 및 이용 활성화	3.32	.819	4.04	.649
VI.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직업계고 직업교육 성공사례 DB 구축과 멘토 제도 도입	2.96	.720	3.65	.629
2.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2.61	.786	3.19	.634
VII. 특별보호조치				
1.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에 대한 대안양육과 예비학교 확대 운영	1.79	.774	3.93	.766
2. 연소자 근로조건 위반 단속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점검활동 강화	2.48	.509	4.39	.737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과제들에 대하여 중요하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2017년도 정책과제 중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직업계고 직업교육 성공사례 DB 구축과 멘토 제도 도입, 읍면동 단위의 청소년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및 보급,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및 건강증진 방안 수립·시행 등의 과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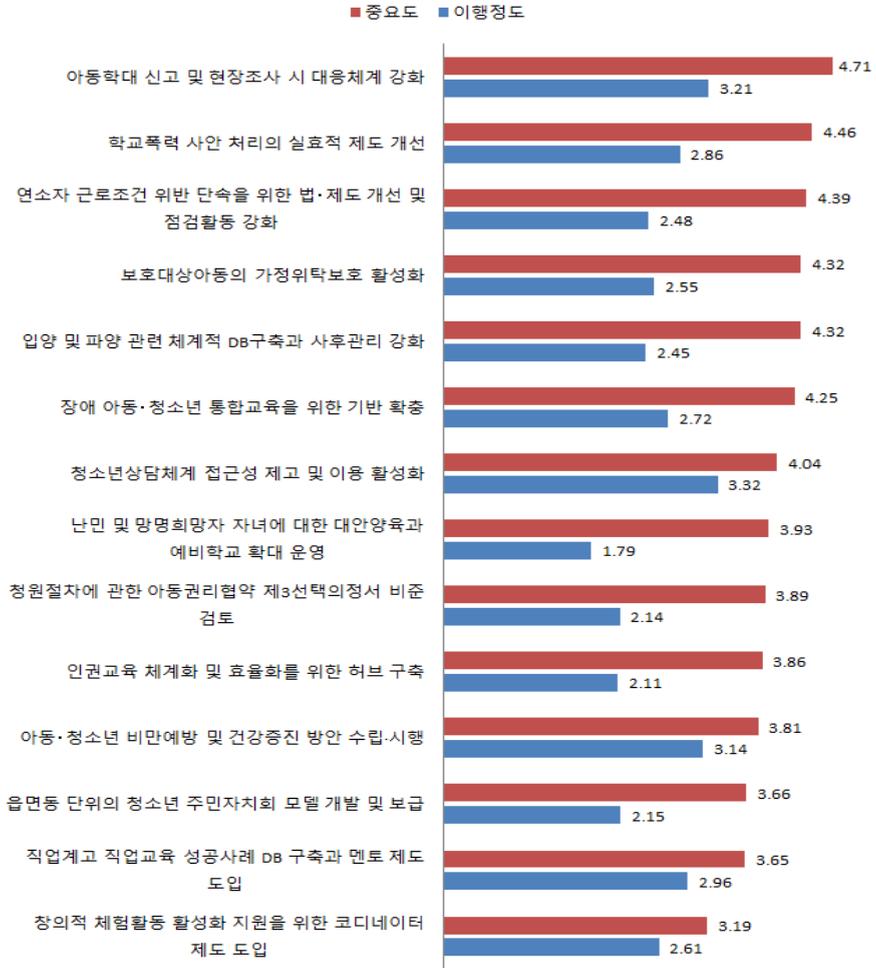


그림 V-2 2017년도 제안 정책과제 모니터링 결과(중요도 순)

(2)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의 방해 요인

아동·청소년 인권개선의 방해요인은 황옥경 외(2015a)의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제시된 인권증진의 방해요인을 기초로 하여, 기존 선행연구들이나 토론회 등에서 지적된 방해요인들을 추가하여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표 V-3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의 방해 요인 관련 전문가 응답 결과

아동청소년 인권개선의 방해요인		동의 정도	
		평균	표준편차
정부 차원	아동인권 담당 중앙부처의 분절성과 낮은 책무성	4.45	.783
	아동인권 정책에 대한 예산지원 미비	4.21	1.013
	아동인권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시행 미비	4.45	.632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미비	3.48	1.184
법· 제도적 차원	아동인권 관련 법 개정 및 제정 노력 미비	4.21	.819
	사법절차에서 아동인권 보호장치 미비	4.48	.785
	법조인들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미비	4.24	.951
	법조인들의 낮은 인권감수성 및 아동권리의식	4.31	1.039
학교 차원	학교 내 아동의 참여권 보장 장치 미비	4.10	.976
	학교 내 반인권적 학칙 규정	3.93	1.193
	교사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미비	4.10	.860
	교사의 낮은 인권감수성 및 아동권리의식	4.28	.960
시민 사회 차원	아동인권 관련 단체의 수 부족	3.10	.939
	아동인권 관련 활동가의 전문성 부족	3.48	.986
	아동인권 관련 단체의 옹호활동 부족	3.38	.979
	아동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	3.69	1.168
학술 연구 차원	아동인권 관련 연구자의 수 부족	3.72	1.099
	아동인권 관련 연구자의 전문성 부족	3.45	1.021
	아동인권 관련 연구와 현실과의 괴리	3.55	.910
	아동인권 관련 조사 데이터의 양적·질적 한계	3.95	.948
사회 문화 차원	가부장적 유교 문화	4.28	.922
	방송매체의 낮은 인권감수성 및 아동권리의식	4.31	.891
	인터넷매체에서의 아동인권침해 콘텐츠 확산	4.38	.862
	아동인권에 대한 일반인 대상 교육 및 홍보 부족	4.41	.628
가정 차원	폭력적 훈육 방식에 대한 높은 수용성	4.38	.775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가족문화	4.59	.568
	부모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미비	4.31	.850
	부모의 낮은 인권감수성 및 아동권리의식	4.34	.614
개인 차원	아동 자신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지 미비	4.07	.842
	또래와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부족	4.28	.960
	인권침해 시 발언할 수 있는 기회·창구 부족	4.52	.634
	인권침해 시 구제 받을 수 있는 창구 미인지	4.48	.634

조사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은 제시된 방해요인들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민사회 및 학술연구 차원의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3) 아동·청소년 인권수준에 대한 평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현재 아동·청소년 인권 현황과 지난 10년 간 아동인권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2가지 종류의 질문을 통해서 조사하였다.

#### ① 현재의 아동인권 현황

현재 아동·청소년인권 현황에 대하여 낮음 58.6%, 매우 낮음 6.9%로 전체의 65.5%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전체의 13.8%만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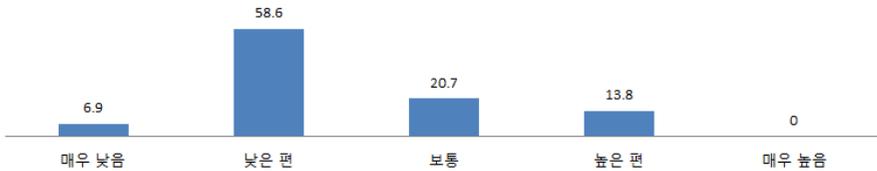


그림 V-3 우리나라의 현재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

② 지난 10년 간 아동인권이 개선되었는지 평가

지난 10년 간의 아동인권 개선에 대한 평가에서 약간 개선 72.4%, 매우 개선 10.3%로 전체의 82.7%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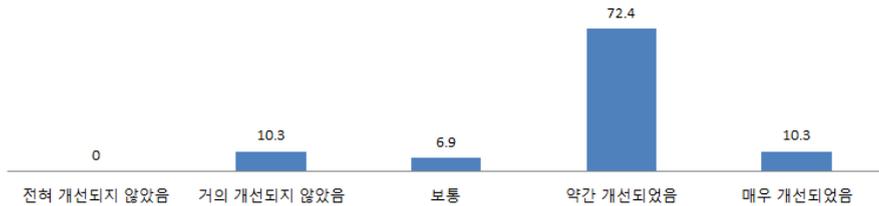


그림 V-4 지난 10년 간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③ 지난 10년 간 인권 상황 개선 또는 미개선 이유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아동학대 관련 대중의 인식 및 아동 보호체계 개선, 입양특례법 제정과 입양허가제 도입으로 법적·제도적 개선, 아동 인권관련 법령 개정 및 조례 제정 노력 및 시행, 학교 환경의 개선 (학교 내 차별과 차별 감소, 참여권 증진), 지역의 아동친화도시 인증,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투자 증대,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의 인권 증진 활동이 증대,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 개선,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인권에 관한 의식수준 증진 등의 의견이 있었다.

반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우리사회의 차별금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태도, 차별금지법안의 제정의 어려움, 대다수 아동청소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미인지 및 국가의 홍보 노력 부족, 정부 대응의 분절성, 소년보호 재판의 변화 미비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V-4 지난 10년 간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 개선 또는 미개선 이유

의견	세부 의견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관련 대중의 인식 및 아동보호체계가 개선되었음</li> <li>- 입양특례법 제정과 입양허가제 도입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li> <li>- 아동인권관련 법령 개정 및 조례 제정 노력 및 시행</li> <li>- 아동인권 강조로 학교 내 체벌과 차별이 줄어들고, 참여권이 증진되었음</li> <li>-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으로 아동친화적 환경 개선</li> <li>-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증대되고 있음</li> <li>- 아동청소년 당사자들의 인권 증진 활동이 증대되었음</li> <li>-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에 개선이 이루어짐</li> <li>-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인권에 관한 의식수준 증진</li> </ul>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금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 상의 과제</li> <li>- 차별금지법안의 제정 어려움</li> <li>- 대다수 아동청소년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미인지 및 국가의 홍보 노력 부족</li> <li>- 정부 대응의 분절성</li> <li>- 소년보호 재판의 변화 미비</li> </ul>

(4) 종합의견

7개 영역별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종합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V-5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을 위한 전문가 종합 의견 (클러스터별 요약)

인권 클러스터	세부영역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의 소송능력 인정</li> <li>- 아동관에 대한 면밀한 진단 및 이에 맞는 정책 필요</li> <li>- 아동이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 전환 필요</li> </ul>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금지</li> <li>- 청소년의 민주적 참여기회 확대</li> <li>- 학교 내의 참여기회 확대 방안 마련</li> <li>-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 원칙의 실현</li> </ul>
3. 폭력 및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체계 개편 (예산지원 및 컨트롤타워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성 강화, 통합적 대응체계로 예방부터 사후관리까지 서비스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확충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li> <li>- 방임에 대한 개입 확대</li> <li>- 가정 내 체벌금지</li> </ul>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해외입양제도의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법안 개정)</li> <li>- 입양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체계구축</li> <li>- 빈곤과 미혼출산 등으로 인한 원가족 분리가 되지 않도록 지원 강화</li> <li>- 원가족 분리를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li> <li>- 원가족 복귀를 위한 정부노력 강화</li> <li>-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강화</li> <li>- 입양숙려제의 기간 연장</li> <li>- 미혼부모에 대한 양육지원 강화 (친생부모의 양육 지원 강화)</li> <li>- 아동중심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방안 도입</li> <li>- 아동 최선의 이익을 지향하는 양육방식 결정</li> <li>- 보호대상 아동 지원은 지방사무가 아닌 중앙부처의 정책으로 전환</li> <li>-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식변화 및 지원강화</li> </ul>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양극화로 인해 소외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li> <li>-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 아동의 발굴과 지원 강화</li> <li>- 사회포장 사각지대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li> </ul>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 등 모든 수준에서의 아동청소년 참여 진작 노력</li> <li>- 놀 권리 확대, 여가와 휴식을 취할 권리 보장</li> <li>- 학교 내 혐오 증가에 대한 대처(인터넷을 통한 혐오 표현 확산 방지)</li> <li>-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참여기회 확대</li> <li>- 중도탈락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li> <li>- 다문화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li> </ul>
7. 특별 보호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아동의 출생등록 보장(보편적 출생등록), 교육권 및 건강권 보장</li> <li>- 난민아동과 이주아동의 공교육 접근성 강화 (보육지원 포함)</li> <li>- 난민아동의 난민인정을 증대</li> <li>-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 방안 강화</li> <li>- 일하는 청소년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li> <li>- 일하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강화</li> <li>- 일하는 청소년의 권익보호 창구 다양화 및 적극적 권익구제 체계 마련</li> <li>-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법제도 변화 필요</li> <li>- 소년재판에 법원선주의주의 도입</li> <li>- 소년의 품행 교정을 위한 사법체계가 될 수 있도록 교육적 변화</li> <li>- 소년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의 인권 감수성 증대</li> </ul>

## 5.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 1) 아동·청소년 인권 정책과제

표 V-6 아동·청소년인권 정책과제

아동·청소년인권 정책과제명	채택배경				비고
	2017 모니터 링결과	2018 실태조 사 결 과	민간보 고서문 석 결 과	전문가 의견조 사 결 과	
<b>I.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b>					
과제1.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	◎	◎	◎	보완
과제2. 인권교육원 설립 등 범부처 인권증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 조성	○	◎	○		신규
과제3. 연령·성적지향·인종·민족 등 청소년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 법적 근거 마련		◎	◎	◎	신규
<b>II. 시민적 권리와 자유</b>					
과제1.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인 시민권 보장		◎		◎	신규
과제2. 아동·청소년의 자유로운 의사표명 및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	◎	◎	신규
<b>III. 폭력 및 학대</b>					
과제1. 폭력·범죄·가·피해 청소년 관련 회복적 정의 중심의 대응체계 마련		◎	◎	◎	신규
과제2.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조사 시 대응체계 강화	◎	◎	◎	◎	보완
과제3. 아동·청소년 성폭력·성매매·성매매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	◎		신규
<b>IV.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b>					
과제1. 입양 및 파양 관련 체계적 DB구축과 사후관리 강화	◎	◎	◎	○	보완
과제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	◎	◎	◎	보완
과제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노력		◎	◎	◎	신규
<b>V.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b>					
과제1.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교육 운영기반 확충	◎	◎	◎	◎	보완
과제2. 청소년상담체계 접근성 제고 및 이용 활성화	◎	◎			보완
과제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		◎	◎	◎	신규
<b>VI.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b>					
과제1. 지역사회 밀착형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강화	○	◎		◎	신규
과제2.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학습지원 플랫폼		◎	○		신규

아동·청소년인권 정책과제명	채택배경				비고
	2017 모니터 링결과	2018 실태조 사 결 과	민간보 고서분 석 결 과	전문가 의견조 사 결 과	
구성					
과제3. <b>조중</b> 방과 후 등 취약 시간대 안전하고 편안한 청소년 <b>돌봄·휴식공간 마련</b>		◎	◎	◎	신규
Ⅶ. 특별보호조치					
과제1. <b>난민</b> 및 망명희망 가족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발달·교육권 <b>보장</b>	◎	◎	◎	◎	보완
과제2. <b>법정</b> 연소자 근로권익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사회적 인식 <b>확산</b>	◎	◎	◎	◎	보완

※ 참조: ◎= 매우 밀접한 관계, ○= 조금 밀접한 관계

## 2) 아동·청소년인권 정책과제별 추진일정과 주관부처(안)

아동·청소년인권 정책과제별 추진일정과 주관부처는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표 V-7 아동·청소년인권 정책과제별 추진일정과 주관부처(안)

과제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b>I.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b>					
과제1.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제3 선택의 정서 기초연구 법적 검토	국내 법제도 보완사항 논의 및 의견수렴	법제도 정비 및 비준절차 진행	제3선택의 정서 안내 및 홍보 자료 개발·배포	법무부 보건복지부
과제2. 인권교육원 설립 등 범부처 인권증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 조성	인권증진 협력체계 기본계획 연구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	인권증진 플랫폼 구축 (인권교육원 설립)	범부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과제3. 연령, 성적지향, 인종, 민족 등 청소년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 법적 근거 마련	현행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권리 관련 조항 보완	국내 법령 전반의 청소년 차별 관련 사항 분석	관련 법령 개선(안) 마련 및 개정 추진	청소년 관련 법령 전반의 차별금지 원칙 구체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b>II. 시민적 권리와 자유</b>					
과제1.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인 시민권 보장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운영 현황 분석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의 제도적 권한 확보·방안 검토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우수 운영사례 발굴	모델 확산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과제2. 아동·청소년의 자유로운 의사표명 및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부모, 교사 등 청소년 관계자 인식개선 교육 운영 모델 개발	공직자, 지역사회 일반 시민 등 교육대상 확대	캠페인, 광고 등을 통한 인식개선 지속	시행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b>III. 폭력 및 학대</b>					
과제1. 폭력, 범죄 가·피해 청소년 관련 회복적 정의 중심의 대응체계 마련	보호관찰, 교육, 처벌 등 관련제도 적용현황 분석	회복적 정의 기반 청소년 폭력·범죄 대응모델 개발	관련법·제도 개선	시행 및 지속적 홍보 강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과제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과제2.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 조사 시 대응체계 강화	아동·청소년 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인식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담당경찰관의 인력 증원	현장조사 시 상담원과 경찰의 권한 및 조사거절/아동보호 조치 불응에 대한 처벌 강화	시행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
과제3. 아동·청소년 성폭력·성 학대·성매매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제도 보완	관련법·제도 시행 및 지속 홍보	시행	시행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IV.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과제1. 입양 및 파양 관련 체계적 DB구축과 사후관리 강화	입양 후 적응 및 파양 관련 정보 수집 및 DB 구축	데이터 분석을 통한 입양·파양 현황 지속 분석	파양아동·청소년 사후 관리 방안 및 파양예방 대책 수립	시행	보건복지부
과제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가정위탁 감소 원인 파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수행	일반가정위탁 지원 확대 및 위탁가정부모 교육 강화	시설보호를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	시행	보건복지부
과제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노력	국제협약 비준 준비	국제협약 비준	협약이행	협약이행	법무부 보건복지부
V.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과제1.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 교육 운영기반 확충	장애아동·청소년 통합 교육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장애아동·청소년 통합 교육 중장기 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중장기계획의 단계적 시행 및 통합교육의 사회적 정착	시행	교육부
과제2. 청소년상담체계 접근성 제고 및 이용 활성화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 기관 홍보 및 접근성 제고	청소년 정서적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기 개입 강화	확대	확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과제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대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시행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과제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립 및 시행	실태 분석 연구 실시	및 자살예방에 대한 중·장기 대책 마련	및 자살예방 관련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VI.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1. 지역사회 밀착형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강화	지역사회 밀착형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운영체계 구축 모델 개발	지역사회 밀착형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 운영체계 시범 운영	지역별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코디네이터 및 멘토·인력 풀 구축	지속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과제2.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학습지원 플랫폼 조성	영상, 미디어 등 디지털 기술 활용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 수립	교과·비교과 학습 콘텐츠 개발 및 탑재	아동·청소년 주도의 학습 콘텐츠 개발·공유	플랫폼 지속 운영	교육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제3. 주중 방과 후 등 취약 시간대 안전하고 편안한 청소년 돌봄·휴식공간 마련	취약 시간대 청소년 돌봄·휴식 지원모델(공간/시설) 개발	청소년 돌봄·휴식 지원공간(시설) 시범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 인프라 확충	지속 확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VII. 특별보호조치					
과제1. 난민 및 망명희망 가족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발달·교육권 보장	난민아동의 구금배제와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마련	난민 혹은 이주 아동을 위한 예비학교 확대 운영	시행	시행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과제2. 법정 연소자 근로권익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사회적 인식 확산	청소년 근로관련법 준수 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청소년집중고용사업장에 대한 수시 점검체계 구축 및 사회적 관심 증진방안 마련	근로권익을 침해받은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청소년 근로권익 관련 사회적 인식을 위한 확산을 위한 지속 노력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3) 아동·청소년인권 정책과제별 주요 내용

####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b>I-1.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검토</b>	
<b>제안배경 및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1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제3선택의정서인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직접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됨.</li> <li>○ 제3선택의정서는 2014년 발효된 이후 2017년 현재 37개국에 비준하고 22개국에 서명한 상태이며 한국은 아직 비준하지 않음</li> </ul>
<b>세부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원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의 내용 검토 및 국내법적 쟁점 과제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선택의정서 비준 필요성이나 비준을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 등에 대해 범사회적으로 구체적인 논의 진행</li> <li>- 세미나, 공청회, 정책연구 등을 통한 국내법적 쟁점 정리</li> </ul> </li> <li>② 청원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 및 비준절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해서는 사법절차상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 최우선의 원칙 이행을 위해 미성년자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연령기준 개정과 아동·청소년 친화적 사법절차 지원 시스템 마련 등의 법·제도 개선</li> <li>- 청원절차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 비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내법적 쟁점과 개선과제가 도출되면 이에 따라 법·제도 정비 작업 추진</li> </ul> </li> </ul>
<b>법개정 등 특이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선택의정서 비준은 별도 법 개정 없이 일반적인 국제조약 비준 절차에 따라 진행</li> <li>○ 제3선택의정서 비준 이후 이의 준수를 위한 관련 법 개정</li> </ul>
<b>관련부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보건복지부</li> </ul>

1-2. 인권교육원 설립 등 범부처 인권증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 조성

<p><b>제안배경 및 필요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 교육 및 관련 업무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공통의 목표 및 방향이 제시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추진</li> <li>○ 양적으로 증가하는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인권교육이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협업체계 구축 필요</li> </ul>
<p><b>세부과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범부처 인권증진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처에 산재된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부처 협의회 구성·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li> <li>- 일관성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방향 설정 및 지속적인 관리·점검·개선 추진을 통한 효과성 제고</li> </ul> </li> <li>② 아동·청소년·성인대상 인권교육 등 다양한 인권교육을 총괄하는 전문 조직으로서의 인권교육원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부처의 인권 관련 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인권교육 관련 연구, 교육자료 개발, 강사 양성·파견 등을 담당하는 인권교육원 설립·운영 기본계획 수립</li> <li>- 인권교육원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li> </ul> </li> </ul>
<p><b>법개정 등 특이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조항상의 인권 관련조항, 2014년 발의된 인권교육지원법(안) 국가인권위원회 관계 법령 등의 내용 검토·분석을 통한 인권증진 협력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추진</li> </ul>
<p><b>관련부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li> </ul>

I-3. 연령, 성적지향, 인종, 민족 등 청소년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 원칙 법적 근거 마련	
제안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태조사 결과에서 외모·신체조건, 학업성적,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차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li> <li>○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유엔아동인권위원회 등은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나 성적지향, 종교, 민족 등 일부주제·이슈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못하고 있음</li> <li>○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태도나 관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을 개선하고 관점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포괄적 차원의 차별금지 원칙을 법적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음</li> </ul>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아동·청소년 인권 및 차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의 쟁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론의 장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체조건, 학업성적, 성별, 연령, 성적지향, 인종, 민족 등 차별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의 원인과 주요 쟁점을 파악·분석</li> <li>-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여 모든 아동·청소년을 한 사람의 인간이자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식별하고, 모든 유형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공론의 장 형성</li> </ul> </li> <li>②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인간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제6차 청소년 정책기본계획 등 사회 구성원의 인권 및 차별금지 원칙을 천명한 정책 계획 및 공론화 내용을 토대로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도출</li> <li>- 동시에 국내·외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및 차별금지 원칙 관련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인식 개선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해 지속 노력 하여 법령 제정 추진</li> </ul> </li> </ul>
법개정 등 특이사항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 관련 법령 조항 개정 방안 검토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b>II-1.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인 시민권 보장</b>	
<b>제안배경 및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는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정책 반영이 미흡하며, 관련 정보 및 참여기회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li> <li>○ 특히 청소년의 하루 일상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학교 및 교육정책 관련 참여와 관련하여 학교 학생회나 서울 등 일부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참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법적·제도적 참여 권한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li> </ul>
<b>세부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의 실질적 권한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유형별 구성 및 예산, 조직, 주요 정책관련 의견반영 성공·실패 사례 등 운영 현황 지속 점검</li> <li>-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사업의 기획, 추진, 평가 등 과정 전반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보장 의무화 및 참여기회 확대방안 마련</li> </ul> </li> <li>② 다양한 청소년의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 우수사례 보급·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의 운영, 정책 반영 등 우수사례를 발굴·지원·홍보하여 청소년의 실질적 시민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li> <li>- 교육, 복지, 환경, 고용정책 등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분야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참여권 보장 추진(아동총회, 학교 학생회, 교육청 학생 참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등)</li> </ul> </li> </ul>
<b>법개정 등 특이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복지법 상 아동의 정책참여 보장을 위한 아동총회 명문화 추진</li> <li>○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중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학생회)위원 참여권 보장 등 청소년 관련 정책분야 법령·제도 개선</li> </ul>
<b>관련부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li> </ul>

II-2. 아동·청소년의 자유로운 의사표명 및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제안배경 및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태조사 결과 아동·청소년의 사상의 자유, 결사 및 집회의 자유가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정당가입, 선거권·피선거권 등 정치 분야와 관련한 청소년의 의사표명은 지속적으로 제한되고 있음</li> <li>○ 아동·청소년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신과 관련한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주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신체적, 정서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 모두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li> </ul>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아동·청소년의 의사표명, 자기결정권 행사를 저해하는 사회적 여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표명 및 자기결정권 행사 보장을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 및 제도의 현황에 대한 분석</li> <li>-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아동·청소년과 유기적인 영향 관계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의사표명권, 자기결정권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전개</li> </ul> </li> <li>② 아동·청소년의 권리·책임에 대한 지속적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인정하는 지지적인 여건 조성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와 책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및 일반 시민 대상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운영</li> <li>-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 등 공공정책 및 민간 분야의 아동·청소년 권리 관련 사안에 대한 인식 전환 노력 및 범사회적 홍보 추진</li> </ul> </li> </ul>
법개정 등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의 인격 존중, 선거연령 인하 등 7차례에 걸친 헌법소원 및 10차 개헌(안)에서 다루어지고 주요 사안과 관련한 관계 법령 정비방안 검토 추진</li> </ul>
관련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li> </ul>

(3) 폭력 및 학대

<b>III-1. 폭력, 범죄 가·피해 청소년 관련 회복적 정의 중심의 대응체계 마련</b>	
<b>제안배경 및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청소년 폭력·범죄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사회적 이슈 및 논의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기존의 대응방식만으로는 청소년 관련 폭력·범죄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li> <li>○ 청소년의 폭력 및 범죄 가·피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화와 치유에 기반한 ‘회복적 정의’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li> </ul>
<b>세부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소년 폭력·범죄 가·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종합적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연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관찰, 교육, 처벌 등 청소년 폭력 가·피해자 관련 제도의 지역 사회와 관련한 지역별·유형별 현황 분석</li> <li>-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청소년 폭력·범죄 피해자 대상 사업 전문화</li> </ul> </li> <li>② 실효성 있는 청소년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관련 법 및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관계자의 범위를 청소년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 전반으로 확대</li> <li>- 청소년 폭력·범죄 가·피해 청소년의 사후 처벌·지원 중심의 대응에서 부모·교사·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전 예방과 화해·회복으로의 대응관점 전환 도모</li> </ul> </li> </ul>
<b>법개정 등 특이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원에 지역사회 외부 전문가의 참여 비율 제고</li> <li>○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지역사회 구성원 전반으로 확대 검토</li> </ul>
<b>관련부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li> </ul>

<b>III-2.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조사 시 대응체계 강화</b>	
<b>제안배경 및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안별 임시 처방이나 처벌 강화의 수준에 그치고 있음</li> <li>○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 및 인력 확충,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진단 및 분석 등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li> </ul>
<b>세부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 및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비신고의무자에 비해 낮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강화</li> <li>-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을 예방하고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병원, 보육시설 등의 인식개선 추진</li> </ul> </li> <li>②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의 인력 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사례 급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및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 등 전문인력증원</li> </ul> </li> <li>③ 현장조사 시 상담원과 경찰의 권한 및 조사거절/아동보호조치 불응 등에 대한 처벌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학대행위자의 조사거절 및 아동보호조치 및 격리 불응에 대응하기 위한 상담원 및 경찰의 권한, 조사 거절 시 처벌 강화방안 검토</li> </ul> </li> </ul>
<b>법개정 등 특이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 중 신고인에 대한 익명성 보장관련 내용과 위반 시 처벌 관련 사항 강화, 현장조사 방해 및 거절 시 처벌에 대한 내용 포함 추진</li> </ul>
<b>관련부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li> </ul>

<b>III-3. 아동·청소년 성폭력·성학대·성매매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b>	
<b>제안배경 및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성학대, 성매매 등의 성범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SNS 상의 'Me Too운동'으로 촉발된 사회 전반의 성폭력에 대한 고발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음</li> <li>○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성학대, 성매매 등 성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 필요</li> </ul>
<b>세부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보호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의 범위가 언어·시각·신체적 폭력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 강화</li> <li>-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보호조치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li> <li>-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신상 및, 피해사례 보도 등 2차 가해 예방을 위한 언론 보도기준 마련</li> <li>-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회복에 초점을 두는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강화</li> </ul> </li> <li>②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전문 수사팀 구축 및 처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성폭력과 관련한 전문 수사팀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에 따른 신체적·정서적 피해를 최소화</li> <li>- 온라인 상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성학대, 성매매 등 성범죄와 관련한 불법촬영, 채팅앱 등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 및 제재 조치 강화</li> </ul> </li> </ul>
<b>법개정 등 특이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과 관계없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기준·원칙 적용</li> </ul>
<b>관련부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li> </ul>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b>Ⅳ-1. 입양 및 파양 관련 체계적 DB구축과 사후관리 강화</b>	
<b>제안배경 및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국내·외에서 벌어진 입양아동의 학대 및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아동인권 차원에서 학대예방을 위한 입양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필요성 강조</li> <li>○ 입양 시 양부모의 자격강화 뿐만 아니라 파양 요건이 엄격해졌으나 비밀입양이 선호되는 사회 분위기에서 파양원인과 현황 파악 및 이후 대책은 미흡</li> </ul>
<b>세부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입양 후 아동·청소년의 적응을 돕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입양 아동·청소년과 가족의 적응 상황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DB)구축</li> <li>-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입양 아동·청소년의 부적응, 파양 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아동학대, 부모의 이혼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li> </ul> </li> <li>② 파양아동·청소년 사후관리 방안 및 파양예방 대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양원인 및 성격에 따라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전문적 개입방안 마련</li> <li>- 파양 이후 아동복지시설 배치, 재입양 등 다양한 사례별로 차별화된 사후 개입 대책 마련</li> </ul> </li> </ul>
<b>법개정 등 특이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양특례법 및 관련 규칙 등에 파양과정 및 절차, 파양 이후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고,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 취급 및 보호방안 강화</li> </ul>
<b>관련부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li> </ul>

## IV-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b>제안배경 및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대상아동의 전체 규모는 2014년 4,994명에서 2017년 4,121명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고아원 등 시설 입소비율은 60%내외에서 좀처럼 줄지 않고 있음</li> <li>○ 시설 입소는 원가정 보호와 입양, 가정위탁 등의 가정 보호가 모두 불가능할 경우의 최후 선택지이며, 보호대상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정위탁보호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li> </ul>
<b>세부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일반위탁가정 지원 확대 등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위탁 감소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 및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방안 연구 추진</li> <li>- 양육보조금 인상, 위탁가정 부모 대상 아동발달 및 아동양육방식 교육,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교육 등 일반위탁가정지원 확대</li> </ul> </li> <li>② 시설보호를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적인 치료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보호를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 계획 수립</li> <li>-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혈연관계 이외의 일반가정위탁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추진</li> </ul> </li> </ul>
<b>법개정 등 특이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시 이에 따른 비용 보조(양육보조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 및 재원 확보 노력 필요</li> </ul>
<b>관련부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복지부</li> </ul>

### IV-3.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노력

<b>제안배경 및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y Adoption)에 서명하였음.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아직 헤이그협약에 비준하지 않고 있어 헤이그협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li> <li>○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우리나라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어 적극적으로 비준 절차를 진행해야 함</li> </ul>
<b>세부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의 비준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 공청회, 정책연구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li> </ul> </li> <li>②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 및 비준절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내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가 도출되면 이에 따라 법·제도 정비 작업 추진. 특히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해외입양 법·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내법 정비</li> <li>- 민간기관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해외입양 사무에 국가의 책무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li> </ul> </li> </ul>
<b>법개정 등 특이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이후 이의 준수를 위한 관련 법 제정 및 개정</li> </ul>
<b>관련부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보건복지부</li> </ul>

(5) 장애, 기초 보전 및 복지

<b>V-1.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교육 운영기반 확충</b>	
<b>제안배경 및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2011년 82,665명 수준에서 2018년 현재 90,780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 수는 15,500명 내외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li> <li>○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가능한 경우 장애아동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미흡한 상황</li> </ul>
<b>세부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 특수교육 전문 교원양성 및 장애 유형별 개별화 맞춤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의 추진방향 및 전략에 대한 청사진 제시</li> <li>-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의 추진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론의 장 마련</li> </ul> </li> <li>②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에 필요한 물적·인적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을 위한 학교 현장의 물리적 환경 개선 및 합리적 편의 제공</li> <li>-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개별화 맞춤교육 콘텐츠 개발 및 특수교원 전문성 강화</li> </ul> </li> </ul>
<b>법개정 등 특이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근거로 수립되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연차별 이행 상황 지속 점검·평가</li> </ul>
<b>관련부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li> </ul>

<b>V-2. 청소년상담체계 접근성 제고 및 이용 활성화</b>	
<b>제안배경 및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17개 시도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2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전화 1388의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li> <li>○ 실태조사 결과 가출, 스트레스 등은 지속적으로 위험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경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사회 내에서의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li> </ul>
<b>세부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역사회 내 청소년상담기관 홍보 및 접근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학교, 청소년시설, 학원 등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다양한 상담매체(전화, 문자, 사이버상담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및 지속 모니터링 추진</li> <li>- 학교, 학원, 도서관,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관련 유관 시설·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정기·비정기 상담프로그램 운영</li> </ul> </li> <li>②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상담서비스 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의 상시적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li> <li>- CYS-net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한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를 통한 효과성 제고</li> </ul> </li> </ul>
<b>법개정 등 특이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반영되는 CYS-net 운영 실적 지속 점검</li> </ul>
<b>관련부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li> </ul>

<b>V-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b>	
<b>제안배경 및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7년 중·고등학생 청소년의 평상시 스트레스 경험률은 37.2%, 우울감 경험률은 25.1%로 10년 전에 비해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나 2007년 이후 9세~24세 인구 10만 명당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로 나타나고 있음</li> <li>○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과 관련한 정책과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 사업이나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li> </ul>
<b>세부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적인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연령대 및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및 자살(자해) 원인을 분석·파악하여 대상별 맞춤형 대응을 구현하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전략 수립</li> <li>- 아동·청소년 정신건강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방안 마련</li> </ul> </li> <li>②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협업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기반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청소년시설 등 아동·청소년 및 정신건강 분야 전문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추진</li> <li>- 정신건강 및 자살 고위험군 발굴, 상담·개입 등 전문 서비스 지원,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통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대책 효과성 제고</li> </ul> </li> </ul>
<b>법개정 등 특이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1월 정부에서 발표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아동·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마련</li> </ul>
<b>관련부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li> </ul>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b>VI-1. 지역사회 맞춤형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강화</b>	
<b>제안배경 및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도시와 농어촌, 특성화고와 일반계고 등의 특성별 진로·직업체험 인프라의 차이로 인해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질과 양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li> <li>○ 청소년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업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진로·직업체험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모든 청소년의 동등한 학습권과 노동권 보장 노력 필요</li> </ul>
<b>세부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험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특정 직업 위주의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지역의 실제 직업 현장을 중심으로 한 진로·직업체험처 지속 발굴</li> <li>- 지역의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을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멘토로 위촉하고 이를 연계하는 코디네이터를 양성하여 청소년이 일상을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자신의 진로·직업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li> </ul> </li> <li>② 지역사회 진로·직업체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실제 취업으로 이행해 가는 등의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li> <li>- 발굴된 우수사례의 효과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다른 특성이나 여건에 있는 지역사회, 학교, 청소년시설 등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함</li> </ul> </li> </ul>
<b>법개정 등 특이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제정된 진로교육법 제18조(진로체험 지원) 조항에서는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내용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지역의 다양한 직업현장이 진로체험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려</li> </ul>
<b>관련부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li> </ul>

<b>VI-2.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학습지원 플랫폼 조성</b>	
<b>제안배경 및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농어촌, 소득계층, 학교 유형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여건과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음</li> <li>○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간·계층 간 교육 격차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여 모든 청소년이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습지원 플랫폼 조성 필요</li> </ul>
<b>세부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차세대 교육 정책 기본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듀테크(education + technology) 매체를 활용한 청소년 개인별 역량·학습수준 진단, 맞춤형 학습계획 수립, 능동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li> <li>- 지역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장기적 실천방안 마련</li> <li>- 지역, 소득계층, 학교 유형 등에 따른 디지털 기술 접근성 차이 극복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병행</li> </ul> </li> <li>②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장려하는 디지털 플랫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이 자기주도적으로 SNS, 동영상, 프리젠테이션, 그림, 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습경험의 과정과 결과를 다른 청소년과 공유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플랫폼 조성</li> <li>- 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지속 개발 및 축적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li> </ul> </li> </ul>
<b>법개정 등 특이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6대 핵심역량(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학습지원 플랫폼 조성</li> </ul>
<b>관련부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li> </ul>

VI-3. 주중, 방과 후 등 취약 시간대 안전하고 편안한 청소년 돌봄·휴식공간 마련	
<b>제안배경 및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의 주중 방과 후 시간대의 교육 및 여가활동 관련 지원은 저소득 가정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다수의 아동·청소년은 학원을 비롯한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고착화 되고 있음</li> <li>○ 일·가정 양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등의 정책 구현 과정에서 취약시간대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 필요성 제기</li> </ul>
<b>세부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아동·청소년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연령별 편차 없이 모든 아동·청소년이 방과 후 시간대에 적절한 휴식과 학습, 안전한 여가활동 등의 돌봄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계획 수립</li> <li>-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분절적으로 투입되고 있는 공공의 비용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모든 청소년이 균일한 양과 질의 공공 방과후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li> </ul> </li> <li>② 민간 주도의 아동·청소년 학습·여가·휴식공간 조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제시된 바 있는 청소년센터“라”형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돌봄, 역량개발, 학습지원이 One-stop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는 민간 주도의 공간 조성 확대</li> <li>-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학습·여가·휴식 서비스의 능동적인 제공이 이루어지는 돌봄 서비스 접근성 제고</li> </ul> </li> </ul>
<b>법개정 등 특이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청소년 보육료 지급의 범위를 어린이집에서 청소년센터 등 아동·청소년 전반으로 확대</li> <li>○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상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을 통한 지역사회 민간 청소년센터 설치·운영근거 마련</li> </ul>
<b>관련부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li> </ul>

(7) 특별보호조치

<b>Ⅶ-1. 난민 및 망명희망 가족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발달·교육권 보장</b>	
<b>제안배경 및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난민법 제정 및 2014년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난민 및 무국적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아동·청소년의 난민 신청자 및 난민 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 또한 지속 발생하고 있음</li> <li>○ 난민, 망명희망 또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구금배제 및 본국 송환과정에서 최대 구금일수 규정 등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난민이나 무국적 아동·청소년의 출생등록, 위탁양육이나 시설보호 등 대안양육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li> </ul>
<b>세부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난민 아동·청소년에 관한 지침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 아동·청소년의 인도적 체류와 보호를 위해 보호자 유무와 관계없이 구금을 배제하고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아동·청소년의 시설보호 및 대안양육, 난민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후견인 및 지원자 등의 조치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필요</li> <li>- 난민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과 관련한 국제협약 및 권고사항의 내용을 토대로 시민 모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 홍보 및 교육 병행</li> </ul> </li> <li>② 난민 혹은 이주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비학교 운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민 혹은 이주 아동·청소년의 교육권의 측면에서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중등 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초·중학교 입학 및 적응을 지원하는 예비학교 운영 확대</li> <li>- 초·중학교 예비학교 지정, 지역 레인보우스쿨, 지역아동센터, 1:1 멘토링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한국어 교육, 기초학습지도, 인사·예절교육 등 학교 적응에 필요한 사전 지도 프로그램 운영</li> </ul> </li> </ul>
<b>법개정 등 특이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협약·권고사항과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이 지향하는 인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노력 필요</li> </ul>
<b>관련부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li> </ul>

<b>Ⅶ-2. 법정 연소자 근로권의 관련 법·제도 개선 및 사회적 인식 확산</b>	
<b>제안배경 및 필요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년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2017년 13~24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48.7%, 13~18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2.8%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청소년의 근로권의 보호의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li> <li>○ 법정 연소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준수, 임금이나 급여의 체불, 불법 초과근무 등 근로권의 침해 관련 적극적 대응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청소년 및 성인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 다각적인 노력 필요성 지속 제기</li> </ul>
<b>세부과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 실태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근로관련 법령 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수시 점검 체계의 구축</li> <li>- 청소년이 주로 일하는 청소년 집중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및 연소자 근로조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후속조치 관련 법적·제도적 근거 구체화</li> </ul> </li> <li>② 청소년 근로권의 관련 청소년 및 성인 대상 교육, 지원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 연소자의 근로권익을 명시하고 있는 관계 법령,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등 근로권의 침해 관련 지원에 대한 청소년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학교 내·외의 교육 강화</li> <li>-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 학부모,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진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캠페인 전개</li> </ul> </li> </ul>
<b>법개정 등 특이사항</b>	○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에 제시되어 있는 청소년의 근로조건과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준수여부와 관련한 처벌 강화방안 검토
<b>관련부처</b>	○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신욱, 유진영, 이주미(2016). 2016년 빈곤통계연보.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고용노동부(2013).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서울: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14).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15).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1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세종: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2018.4.25). 2017년 6월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7a).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7b).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 교육부(2014.11.10). 전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특별점검 결과 보도자료.
- 교육부(2016.8.1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7년까지 특성화고 200여개교로 확대' 보도자료.
- 교육부(2016.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7a).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7&boardSeq=70367&lev=0&searchTy>

- pe=S&statusYN=W&page=1&s=moe&m=030202&opType=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 교육부(2017b).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7.1.13).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2017.2.22). **2016년도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 보도자료**.
- 교육부(2017.3.24). **2017년 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 보도자료**.
- 교육부(2017.8.31). **2017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보도자료**.
- 교육부 (2018).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17&boardSeq=74098&lev=0&searchType=S&statusYN=W&page=1&s=moe&m=030202&opType=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 교육부(2018.2.).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보도자료**.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7925>에서 2018년 10월 1일 인출.
- 교육부(2018.3.15.).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2018.4.11.). **2018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 보도자료**.
- 교육부(2018.8.30.). **2018 교육기본통계 결과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2018.9.11.). **OECD 교육지표 2018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제12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세종: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6a). **2016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b). **2016 간추린 교육통계**.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7c). **2017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

이트.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a). **2017 간추린 교육통계**.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b). **2017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유·초·중등 교육통계편)**.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국가인권위원회(2018a). **2017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2018b). **결정례**.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decision/listDecision?menuid=001003001002001> 에서 2018년 2월 7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2018c). 보도자료.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list?boardtypeid=24&menuid=001004002001> 에서 2018년 10월 12일 인출

국가인권위원회(2018d). **“인권위, ‘2017년 연간보고서’ 발간” : 2017년 연간보고서 주요내용**.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7&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2920> 에서 2018년 10월 12일 인출

국가통계포털(2018).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 에서 2018년 7월 15일 인출.

기획재정부(2013). **2013 나라살림 예산**. 세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2014). **2014 나라살림 예산**. 세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2015). **2015 나라살림 예산**. 세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2016). **2016 나라살림 예산**. 세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2017). **2017 나라살림 예산**. 세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2018). **2018 나라살림 예산**. 세종: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2014). **2014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http://www.bokgwon.go.kr/post/postView.do?boardSeq=2&category=>

&pageNum=4&seq=66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2015). **201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http://www.bokgwon.go.kr/post/postView.do?boardSeq=2&category=&pageNum=4&seq=75>에서 2018년 10월 25일 인출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2017). **기금사업활동**.  
[http://www.bokgwon.go.kr/fund/02\\_01\\_17.jsp](http://www.bokgwon.go.kr/fund/02_01_17.jsp)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2018). **기금사업활동**.  
[http://www.bokgwon.go.kr/fund/02\\_01.jsp](http://www.bokgwon.go.kr/fund/02_01.jsp)에서 2017년 8월 28일 인출  
 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2014a).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 보고서** (연구보고 14-R1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경준, 이호균, 서여정, 김광혁, 김형욱, 윤상석, 박병식, 이석구(2014b).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한국의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실태** (연구보고 14-R14-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동윤(2015).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 나타난 아동권리 침해.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8(2), 13-37.  
 김석향, 정익중, 김미주, 오은찬(2016).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통해 본 남북한 아동권리 내용 비교. **한국아동복지학**, 54, 1-44.  
 김선애(2015). 청소년복지권의 성격과 증진 방안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7(4), 93-115.  
 김승권, 박세경, 황옥경, 장보현, 이건우(2007). **UN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사업 연구**(2006.4-2007.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김영지, 김경준, 김지혜, 이민희(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연구보고 13-R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지, 유설희, 이민희, 김진호(2016).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Ⅵ: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6-R-1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 김희진, 이민희, 김진호, 이미영, 김재나(2017).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연구보고 17-R15-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재민(2016).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에 투영된 인권의 공백. **기억과 전망**, 35, 282-318.
- 김지혜(2016).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을 위한 포용적 교육. **동향과 전망**, 96, 153-178.
- 김형욱(2011). 아동권리모니터링 제도운영에 관한 고찰. **아동과 권리**, 15(1), 1-19.
- 김효연(2016).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연령. **헌법연구**, 3(1), 137-163.
- 남미애(2017). 6호처분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의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교정복지연구**, 49, 31-58.
- 노충래, 조용남, 이대성, 송미령, 박형경(2016). **2016 드림스타트 사업효과성 보고서**. 보건복지부·드림스타트·(재)한국보육진흥원.
- 대검찰청(2008-2017). **검찰연감**. 서울: 대검찰청.
- 대검찰청(2015). **2015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대검찰청(2016). **2016 범죄분석**. 서울: 대검찰청.
- 대한출판문화협회(2013-2016). **출판통계**. <http://www.kpa21.or.kr>에서 2018년 7월 20일 인출.
- 류정희(2017).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247, 5-23.
- 무지개청소년센터(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 무지개청소년센터(2014). **2014년도 사업활동보고서**.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 무지개청소년센터(2015). **2015년도 사업활동보고서**.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 무지개청소년센터(2016). **2016년도 사업활동보고서**.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 무지개청소년센터(2017). **2017년도 사업활동보고서**. 서울: 무지개청소년센터.
-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년도(16년 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2017.2.21.). “전국 문화기반시설 전년 대비 3.02% 증가”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7.1.12.)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국민여가활동 조사 결과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2017.1.1. 기준). 세종: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5). 2015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  
    국인터넷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6). 2016 인터넷이용실태조사. 서울: 한  
    국인터넷진흥원.

백승흠(2017). 아동의 최선의 복리와 친권의 제한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의  
    검토. **한국사법학회**, 23(2), 147-181.

법무부(2015.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2016).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2017).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법무부(2018).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 법무부.

법무연수원(2015). 2015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2016). 2016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2017). 2017 범죄백서. 충북: 법무연수원.

법제처(20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보건복지부(2012~2018). 각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서울,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6a). 2015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6b).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6c). **2016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6d).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7a). **‘어려운 아이들의 친구, 드림스타트 2017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2017b). **2016 보건복지백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7c).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7d). **2017 보육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7e). **2017년 가정위탁 현황**(2017.12.31. 기준).  
[http://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  
 &MENU\\_ID=13040201&page=1&CONT\\_SEQ=293108](http://www.mohw.go.kr/react/gm/sgm0601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201&page=1&CONT_SEQ=293108)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보건복지부(2017f).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  
 &MENU\\_ID=032901&CONT\\_SEQ=338690&page=1](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38690&page=1)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보건복지부(2017g).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  
 ENU\\_ID=032901&CONT\\_SEQ=338690&page=1](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38690&page=1)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보건복지부(2017h). **공동생활가정 현황**.  
[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  
 D=03&MENU\\_ID=0321&CONT\\_SEQ=340870&page=1](http://www.moh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CONT_SEQ=340870&page=1)에서 2017년 10월 7일 인출.

보건복지부(2017i).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7j). **제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8a).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8b).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  
&MENU\\_ID=032901&CONT\\_SEQ=344220&page=1](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901&CONT_SEQ=344220&page=1)에서 2018년 7월 22  
일 인출.

보건복지부(2018c).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2018.5.17) 「**평범한 사람들의 입양이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꿉니다**」  
**보도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 **2011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  
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201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  
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  
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  
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세  
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세종: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세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  
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서울: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2017). **2019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 [http://www.w4c.go.kr/favl/note/noteView\\_new.do?SEQ=241&currentPageNo=1&SEARCH\\_WORD=&SEARCH\\_DVSN=&cntnKindCd=03&fcItKindCd=](http://www.w4c.go.kr/favl/note/noteView_new.do?SEQ=241&currentPageNo=1&SEARCH_WORD=&SEARCH_DVSN=&cntnKindCd=03&fcItKindCd=)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 서정애(2017). 한국 거주 난민 아동의 권리 - 아동 교육권을 중심으로. **제외한인연구**, 41, 79-101.
-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sc>에서 2018년 6월 17일 인출.
- 소라미(2016).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가족법연구**, 30(3), 481-496.
- 손영화, 박봉수(2015). 학교 밖 중도입국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21(1), 75-102.
- 송이은(2017). 서울시 아동영향평가 지표 개발.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양계민 (2016). 2016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도 및 만족도 조사연구 (연구보고 16-R52).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여성가족부(2011). 2011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3a).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3b). 2013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5a). 2015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5b).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5c). 2015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6a). 2016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6b). 2016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6c).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04).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7a). 2017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7b).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7c). 2017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8a). 2017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8b). 2018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8c).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6.8.2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야” -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율이 가장 높아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7.2.20). “근로청소년 대상 부당행위 꼼짝 마!”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7.8.30). “청소년 알바, 한 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여름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8.3.08). “18년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
- 여유진, 전지현 (2017). 2017년 빈곤통계연보.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경은(2016). UN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법리와 한국의 아동보호 법제. **입법과 정책**, 8(2), 193-219.
- 이기범(2018). 열린 미래를 향한 권리'를 통한 아동의 의견 존중과 최상 이익의 조화 방안. **아동과 권리**, 22(1), 23-43.
- 이노홍(2015a). UN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상 개인청원제도와 아동의 재판 청구권. **세계헌법연구**, 21(2), 113-144.
- 이노홍(2015b). 아동의 권리와 가정내 아동체벌금지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홍익법학**, 16(1), 123-157.
- 이봉주, 이숙, 황옥경, 김혜란, 박현선, 김격륜, 윤선화, 이호균(2006). **한국의 아동지표**. 보건복지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이은주, 박명숙(2016). 양육시설 아동들의 인권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동보호연구**, 1(2), 23-53.
- 이재연, 황옥경, 김효진(2009). 아동과 권리. **아동학회지**, 20(6), 153-165.
- 이정미, 이현수, 조영숙, 백진주, 백현주(2016). 장애아동인권에 대한 아동용 인식 척도개발. **장애아동인권연구**, 7(2), 49-71.
- 이주연, 김미숙(2013).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1: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 복지지출 비교. **보건복지포럼**, 203, 90-103.
- 이중희, 구은미(2016). 이주 아동의 인권에 대한 연구 : 교육권과 건강권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6(4), 297-323.
- 임희진, 김현신(201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연구보고 11-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필화, 이명선, 노지은, 김성애(2017). 여성청소년 성재생산건강권 개념과 정책 제언. **여성학논집**, 34(1), 61-101.
- 정정호(2016).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현황과 강화방안 고찰. **학교사회복지**, 35, 339-358.
- 정철호(2017). 아동복지시설 입소과정에서 권리포기각서의 위법성: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7, 91-117.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8 3. 1기준). [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stats&wr\\_id=36](http://www.korea1391.go.kr/new/bbs/board.php?bo_table=stats&wr_id=36)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 채은영, 이재연(2016). 아동의 기본심리욕구와 안녕감의 관계에서 참여권 행사의 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0(3), 347-366.
-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8). **청소년권리교육사업**. 부산: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s://www.kyci.or.kr/userSite/sub02\\_11.asp](https://www.kyci.or.kr/userSite/sub02_11.asp) 에서 2018년 10월 12일 인출.
- 최창욱, 박영균(2006).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I: 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연구보고 06-R0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2017). 2017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 통계청 (2016). 2015년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범죄별/피해자 성별·연령별 범죄발생 건수. 통계청 웹사이트.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http://meta.narastat.kr/metasvc/svc/SvcMetaDcDt aPopup.do?orgId=101&confmNo=101054&kosisYn=Y> 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국가지표체계 웹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1)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생명표.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58](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58) 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영아사망추이. [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69&stts\\_cd=276902&freq=U](http://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Search.do?idx_cd=2769&stts_cd=276902&freq=U) 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현황 e-나라지표 웹사이트.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5](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75)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통계청 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 비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8) 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통계청,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 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aSeq=360039](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6/1/index.board?bmode=read&aSeq=360039)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통계청, 교육부(2017). **2017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3/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658&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3/1/index.board?bmode=read&bSeq=&aSeq=36658&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에서 2018년 7월 22일 인출.

통일부(2018).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서울: 통일부.

한국성폭력상담소(2018.2.28).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 분석**.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18). **대한민국 아동총회(제1회~제14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웹 사이트 <http://www.kocconet.or.kr/>에서 2018년 7월 24일 인출, 재구성.

한국아동단체협의회·한국아동권리학회(2004). **아동권리모니터링 결과보고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7.9.21)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8.6.17)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http://ecos.bok.or.kr/> 에서 2018년 8월 15일 인출.

환경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18).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을 위한 이해관계자 그룹(K-MGoS) 설명회 자료집**(2018. 5. 11). 세종: 환경부.

황옥경, 안동현, 이호균, 강현아, 홍관표, 현소혜, 정선영 (2015a). **아동·청소년권리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용역보고서.

황옥경, 한유미, 김정화, 양효현(2015b). 권리로서의 놀이와 여가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행복감의 관계. **아동과 권리**, 19(4), 755-774.

황진구, 유민상(2018).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엔인권사무국고위급위원회 CRC 데이터베이스.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TBSearch.aspx?Lang=en) 에서 2018년 5월 10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8년 10월 12일 인출.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웹사이트. <http://childfriendlycities.kr> 에서 2018년 7월 18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main.html> 에서 2018년 7월 18일 인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에서 2018년 7월 18일 인출.

[국외문헌]

Bradshaw, J., B. Martorano, L. Natali, & C. de Neubourg (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Working Paper 2013-03*. UNICEF Office of Research, Florence.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CRAE) (2015). See it, Say it, Change it. Submission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from children in England.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CRAE) (2016a). State of Children's Rights in England 2016. *Briefing 2*. Children at the Centre: The General Measures and General Principles of the CRC.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CRAE) (2016b). State of Children's Rights in England 2016. *Briefing 3*. Poverty.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CRAE) (2016c). State of Children's Rights in England 2016. *Briefing 4*. Safeguarding Children.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CRAE) (2016d). State of Children's Rights in England 2016. *Briefing 5*. Immigration, Asylum & Trafficking.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CRAE) (2016e). State of Children's Rights in England 2016. *Briefing 6*. Education.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CRAE) (2016f). State of Children's Rights in England 2016. *Briefing 7*. Health.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CRAE) (2016g). State of Children's Rights in England 2016. *Briefing 8*. Policing and Criminal Justice.

Children's Rights Alliance for England (CRAE) (2017). State of Children's Rights in England 2017. *Briefing 1*. Executive Summary.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2014).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2016).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CRC/C/GBR/CO/5.
- Demeny, P. (1986). Pronatalist Policies in Low-Fertility Countries: Patterns, Performance, and Prospec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2, 335-358. doi:10.2307/2807916
- Equal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 (EHRC) (2016). *Children's Rights in the UK*. Updated submission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dvance of the public examination of the UK's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pril 2016).
- Inchley, J., Currie, F., Young, T., Samdal, O., Torsheim, T., Augustson, L., Mathiso, F., Aleman-Diaz, A., Molcho, M., Weber, M., & Barnekow, V. (2016). Growing up unequal. HBSC 2016 study(2013/2014 survey). Health Behavior in School-aged Children((HBSC) STUDY: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13/2014 survey.
-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5). The UK's compliance wit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8th report, session 2014/15. hl paper 144/hc paper 1016.
- OECD(2016). *Family Database*: Child poverty.
- OECD(2017). State Extracts. Social Expenditure, Family.
- Rees, O., & Williams, J. (2016). Framing Asymmetry: Devolution and the United Kingdom's Four Children's Commissioners.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24, 408-433.
- Scottish Government (2015). Children's rights and legislation in Scotlan

d: A quick reference guide.

Scottish Government (2016). List of issues in relation to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Scottish Government response (March 2016).

The Wales Observatory on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2015). Little Voices Shouting Out. Children's Report from Wales to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K Children's Commissioners (2015).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K Children's Commissioners (2016). *Report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Examination of the Fifth Periodic Repor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Nations Universal Periodic Review (2017). United Kingdom, British Overseas Territories and Crown Dependencies Annex to the response to the recommendations received on 4 May 2017.



## ○ ————— 부록

- 1. 201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산출방법 및 자료원
- 2.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설문지
- 3. 전문가 의견조사지



## 부록 1. 2018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산출방법 및 자료원

###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일반이행조치: 협약 4, 42, 44(6)조/ 일반원칙: 협약 2, 3, 6, 12조)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구축 정도	1-1-1-1. 아동청소년인권 관련 법제도 발전	· 아동·청소년 관련 주요 법 재개정 현황 - 출처: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등
			1-1-1-2. 아동·청소년 인권기구 조직	·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기구 및 조직 현황 - 출처: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등
			1-1-1-3.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 2012-2017 GDP 대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변화 추이 - 출처: 1)기획재정부. 2012-2018년 나라살림 예산 2)KOSIS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현황. 3)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활동별 GDP 및 GNI (원계열, 명목, 분기 및 연간)
		1-1-2. 인권에 대한 인식	1-1-2-1.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	· 인권 관련 협약 및 기관 인지도(유엔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문44.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 표를 해주세요.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내용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 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1-1-2-2.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가정, 학교, 지역, 전체, 사이버공간)	·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가정, 학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나라, 사이버공간) 문45.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내용	전혀 존중받지 못 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①	②	③	④
				(4)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1-1-2-3. 인권의식 및 태도*	· 다양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 문46.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1-1-3-1. 인권교육 실시 현황	인권교육 실시 현황 - 출처: 국가인권위원회(2018). 2017 국가위원회 연간보고서.				
		1-1-3. 인권교육	1-1-3-2. 인권교육 경험 (횟수, 장소, 도움정도)*	인권교육 경험여부 문47.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습니까?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역사,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인·타인의 권리존중, 차별·편견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⑥ 교육 받은 적 없음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p>· 인권교육 실시 기관/장소 문47-1. (위 문항 47번의 '① 1회'부터 '⑥ 5회 이상'에 응답한 경우)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교 정규교과시간(국어, 사회 등),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학교 밖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등), ④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p> <p>· 인권교육 도움 정도 문47-2. (위 문항 47번의 '① 1회'~'⑥ 5회 이상'에 응답한 경우)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p>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2-1. 차별 경험을	1-2-1-1. 차별해 본 경험*	<p>· 차별의 이유 및 경험 정도 문49.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형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양이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 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1-2. 차별받은 경험*	· 차별 받은 이유 및 경험 정도 문48.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아라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형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준수 정도	1-2-2-1. 아동영향평가 실시 현황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시행현황 - 출처: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 출처:아동친화도시 마이크로사이트 <a href="http://childfriendlycities.kr/">http://childfriendlycities.kr/</a>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협약 7, 8, 13-17, 39(a)조)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 (제13조)	2-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2-1-1-1. 가정에서의 참여 정도 (의사결정 시 부모님 태도)*	·의사결정시 부모님 태도 문1.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 <th>그런 편이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3) 장래직업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 시간이나 방법, 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body> </table>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장래직업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 시간이나 방법, 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진학할 상급학교를(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장래직업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 시간이나 방법, 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1-2. 학교에서의 참여 정도	2-1-2-1.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학생회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문2. 다음은 학생회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아니다</th> <th>그렇다</th> <th>잘 모르겠다</th> </tr> </thead> <tbody> <tr> <td>(1) 교사나 교정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상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3)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r> <td>(4)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 준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r> </tbody> </table>	내용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교사나 교정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상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3)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①	②	③	(4)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내용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교사나 교정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상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3)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①	②	③																										
(4)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2-1-2-2. 학급회의 활성화 정도 (운영 여부, 의견제시 정도)*	·학급회의 운영 여부 문3.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① 운영되고 있다, ② 운영되지 않는다 ·학급회의의 자유로운 의견제시 정도 문3-1. 학급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2-1-2-3.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학생회 운영위원회 참여정도 문4.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학교의 운영방침(학교예산, 교과서, 급식 등)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① 참여할 수 없다,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
			2-1-2-5. 교칙 재개정 시 학생 참여정도*	·교칙 재개정 학생 참여 하용 비율 문5.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하주세요.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행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2-1-3. 사회에서 의 참여 정도	2-1-3-1. 아동·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 출처: 여성가족부(2018). 청소년백서. p.87.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08~2017)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7) - 출처: 여성가족부(2018). 청소년백서. pp.84-90. ·아동총회 개최현황(2004~2017) - 출처: 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18). 대한민국 아동총회(제1회~제14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웹사이트)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내 손으로 만드는 아동정책, 주인공은 나야 나!” (2017.8.8.)				
			2-1-3-2. 아동·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청소년 참여기구 인지도 및 참여경험 여부 문6.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청소년 참여기구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2-1-3-3. 선거참여연령에 대한 인식*	·투표연령에 대한 의견 문7.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부터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예: 만 18세 등), ②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③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예: 만 20세 등), ④ 잘 모르겠다
			2-1-3-4. 참여권 보장 수준* 및 참여 장애 이유*	·청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청소년참여 권리보장 수준 문8.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문9.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학교운영이나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②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2-2. 사상, 양 심 및 종교의 자 유 (제14조)			<p>·사상의 자유 보장수준</p> <p>문10.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data-bbox="669 728 1585 892"> <thead> <tr> <th>내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 <th>그런 편이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2) 가정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3) 학교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4) 사회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body> </table>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 가정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학교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사회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 가정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학교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사회에서 사회, 정치, 인생 등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학교의 종교재단 학교 여부 문11.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① 예, ② 아니오
		2-2-2. 종교자유 보장정도	2-2-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종교행사 시 원하는 학생만 참여 정도 문11-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2-2-2-2. 가정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p>·가정에서의 종교 자유 보장수준 문10. 다음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 <th>그런 편이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1) 나는 부모형제와 상민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body> </table>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형제와 상민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부모형제와 상민없이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3.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3-1. 결사·집회 경험률	2-3-1-1. 결사·집회 경험률(경험여부, 피해경험)*	<p>·결사·집회 경험률 문12.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전혀 없다</th> <th>거의 없다</th> <th>가끔 있다</th> <th>자주 있다</th> </tr> </thead> <tbody> <tr> <td>(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2) 사회문제에 관한 거점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body> </table> <p>·집회 참여로 인한 피해 경험률 문12-1.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② 경고 및 훈계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p>	내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①	②	③	④	(2) 사회문제에 관한 거점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①	②	③	④
내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①	②	③	④														
(2) 사회문제에 관한 거점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①	②	③	④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2-4.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4-1. 용모·복 장·소지품 검사 경험 률	2-4-1-1. 용모·복 장·소지품 검사 경험 률*	·학교에서 각종 검사여부(용모, 복장, 소지품 검사) 문13.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1) 용모(머리 모양·갈기·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복장(버튼나 차마 같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물함이나 가방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2. 학생 정보 보호정도	2-4-2-1. 학교에 서 개인정보 공개정 도(교육비 미납, 징 계처분 내용, 개인 성적)*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문5.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 (O)표를 해주세요.					
				(2)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한다	①	②	③	④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문5.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 (O)표를 해주세요.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 학교는 학생의 장래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문5.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세요.				
				(4)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2-5. 정보접근 권 (제17조)	2-5-1. 매체 접근 율	2-5-1-1. 매체 이용률	·최근 1년간 매체별 이용률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 출처: 김영지 외(2016). 한국아동청소년인권실태연구VI: 총괄보고서. pp.208-209.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7).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32.				
				·인터넷 이용 목적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7). 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p.35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주 평균 스마트폰 이용시간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p.48.
				스마트폰에서 주로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 종류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7). 인터넷이용실태조사 통계표. p.240.
		2-5-1-2. 유해매체 이용률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험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p.77-78.	
			성인용 간행물 이용 경험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pp.82-83.	
		2-5-1-3. 아동·청소년 매체 접근성	일반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수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6). 2016년도('15년실적)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보고서. p.21.	
			학생 1인당 장서 수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유·초·중등 교육통계편). p.124.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2013~2016). 출판통계. p.1. 각년도	
	2-5-2.	2-5-2-1.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정보제공 정도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 정도*	문5.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 (○)표를 해주세요.	(5)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2-5-2-2. 아동·청 소년 인권관련 정보 제공 정도*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 청소년정책, 유엔아동권리협약, 권리침해 시 상담기관 문14. 다음은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 그라미(○)표를 해주세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입니다	내용	아니다	그렇다	
				(1)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장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유엔(UN)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3)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3) 폭력 및 학대 (협약 19, 24(3), 28(2), 34, 37(a), 39)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3. 폭력 및 학대	3-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3-1-1. 청소년폭력 경험률	3-1-1-1. 폭력피해 경험*	· 정서적 학대 경험 여부 및 정도 문15.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께서 신체적 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내용</th> <th>한 번도 없음</th> <th>일 년에 1-2회 정도</th> <th>2-3개월에 1-2회 정도</th> <th>한 달에 1-2회 정도</th> <th>1주일에 1-2회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td> <td>2) 모욕적인 말(욕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학교선생님으로부터</td> <td>4) 모욕적인 말(욕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학원선생님으로부터</td> <td>6) 모욕적인 말(욕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2)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교선생님으로부터	4)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원선생님으로부터	6)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2)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교선생님으로부터	4)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원선생님으로부터	6)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 청소년 폭력피해 경험 문16.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한 번도 없음</th> <th>일 년에 1-2회 정도</th> <th>2-3개월에 1-2회 정도</th> <th>한 달에 1-2회 정도</th> <th>1주일에 1-2회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3) 따돌림을 당함</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5) 협박을 당함</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6) 심각한 화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7) 강제적인 성추행</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심각한 화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7) 강제적인 성추행	①	②	③	④	⑤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심각한 화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7) 강제적인 성추행	①	②	③	④	⑤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3-1-1-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p>·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여부</p> <p>문17.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한 번도 없음</th> <th>일 년에 1-2회 정도</th> <th>2-3개월에 1-2회 정도</th> <th>한 달에 1-2회 정도</th> <th>1주일에 1-2회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2) 헐박을 당함</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3) 성희롱(놀림)을 당함</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5)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헐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놀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헐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놀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1-2. 체벌 경험률	3-1-2-1. 체벌 경험률*	<p>· 신체적 체벌 경험 여부 및 정도</p> <p>문15.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한 번도 없음</th> <th>일 년에 1-2회 정도</th> <th>2-3개월에 1-2회 정도</th> <th>한 달에 1-2회 정도</th> <th>1주일에 1-2회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1) 신체적 벌</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학교선생님으로부터 3) 신체적 벌</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r> <td>학원선생님으로부터 5) 신체적 벌</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1)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학교선생님으로부터 3)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학원선생님으로부터 5)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 1)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학교선생님으로부터 3)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학원선생님으로부터 5)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3-2-1-1. 아동학대 사례건수	·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 사례접수 경로, 신고자 유형,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3-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제39조)	3-2-1. 학대 및 방임 경험 정도	3-2-1-2. 학대 및 방임 유형별 경험률	· 아동학대사례 유형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아동학대 발생빈도 - 출처: 1) 통계청(2013).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4)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5)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중복학대사례 유형 - 출처: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4)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재학대사례 - 출처: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4)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3-2-1-3. 방임정 도	·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 문18.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2-2. 학대피해 에 대한 서비스 제 공 수준	3-2-2-1. 학대피 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7.01.01. 기준). - 출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8).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8.03.01. 기준).						
			3-2-2-2. 아동보 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업무량	·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업무량 - 출처: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3-2-2-3. 서비스 제공정도와 조치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학대사례에 대한 전체 서비스 제공 실적</li> <li>- 출처: 1)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4). 2013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li> <li>2)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li> <li>3)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li> <li>4)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 최종 조치결과</li> <li>-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2-2017). 2011-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li> <li>· 학대행위자 최종 조치결과</li> <li>-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7). 2016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li> </ul>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협약 5, 9-11, 18(1-2), 20, 21, 25 및 27(4))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4-1. 부모의 지도와 책임 (제5조, 제18조 1항, 2항)	4-1-1. 부모와의 관계	4-1-1-1. 부모와의 대화시간	· 부모와의 대화시간 및 저녁식사 빈도 -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4-1-2. 보호·보육 시설 이용률 및 서비스 실태	4-1-2-1. 보육시설 이용 및 설치 수준	· 연도별 및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 출처: 1)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통계 3) 보건복지부(2017). 2017 보육통계
				· 어린이집 정원현원 및 이용률 - 출처: 1)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3)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4)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통계 5) 보건복지부(2017). 2017 보육통계
· 지역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 출처: 1)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통계 2)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 3)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 4)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통계 5) 보건복지부(2017). 2017 보육통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1개소 및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수</li> <li>- 출처: 1) 보건복지부(2013). 2013 보육통계</li> <li>          2)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li> <li>          3)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li> <li>          4)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통계</li> <li>          5) 보건복지부(2017). 2017 보육통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직원 1인당 아동 수</li> <li>- 출처: 1) 보건복지부(2014). 2014 보육통계</li> <li>          2) 보건복지부(2015). 2015 보육통계</li> <li>          3) 보건복지부(2016). 2016 보육통계</li> <li>          4) 보건복지부(2017). 2017 보육통계</li> </ul>
			4-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학교 참여실태</li> <li>- 출처: 통계청·교육부(2017). 2017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a href="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PE501&amp;conn_path=l2">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amp;tblId=DT_1PE501&amp;conn_path=l2</a></li> </ul>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li> <li>- 출처: 교육부(2017). 2016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li> <li>· 지역아동센터 개소 수 및 이용 아동 현황추이</li> <li>- 출처: 보건복지부(2017).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2016년 12월 기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현황 추이</li> <li>- 출처: 1) 김영지 외(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VI: 총괄보고서</li> <li>          2)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li> <li>          3)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li> </ul>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 방과후학교 교급별 학생만족도 - 출처: 교육부(2017). 2017년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통계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이용 만족도 - 출처: 양계민, 김승경, 조영희(2010), 양계민, 김승경(2011), 양계민(2012), 양계민(2013), 양계민(2014), 김영자김정주정은주(2015), 양계민(2016)에서 영역별 전체 만족도 평균에 대한 100점 만점 환산 점수
	4-2. 가정의 보 호를 받지 못하는 아 동·청소년 (제20조)	4-2-1. 입양률	4-2-1-1. 국내외 입양현황과 추이	· 연도별 국내외 입양 아동 수 - 출처: 보건복지부(2018.5.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평범한 사람들의 입양이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꿉니다.」 · 국내외 입양 현황 및 추이 - 출처: 보건복지부(2018.5.1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평범한 사람들의 입양이 한 아이의 세상을 바꿉니다.」 · 입양에 대한 견해 - 출처: 1) 통계청(2012.12.20). 201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2) 통계청(2014.11.27). 2014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3) 통계청(2016). 2016년 사회조사보고서(보건·교육·안전·가족환경) · 입양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 - 출처: 1) 통계청(2012.12.20). 2012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2) 통계청(2014.11.27). 2014년 사회조사 결과(가족교육보건안전환경) 3) 통계청(2016). 2016년 사회조사보고서(보건·교육·안전·가족환경)
4-2-1-2. 국내외 입양 사후조 치			· 국내외 입양 사후서비스 -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2018). 2018 입양실무매뉴얼 · 국내 입양시 사후서비스 프로그램 - 출처: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입양원(2018). 2018 입양실무매뉴얼	
4-2-2.		4-2-2-1. 요보호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 발생 현황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대안양육 비율	아동 현황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4-2-2-2.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 아동복지시설수 및 보호아동현황 · 가정위탁보호 유형별 위탁아동현황 - 출처: 1) 보건복지부(2017).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2) 보건복지부(2017). 가정위탁 현황(2017.12.31. 기준) · 공동생활가정 시설 및 아동 수 - 출처: 보건복지부(각 연도). 공동생활가정 현황
		4-2-3. 가출청소년 년의 서비스 이용률	4-2-3-1. 가출청소년 비율과 가출 이유*	· 최근 1년간 가출 경험 문19.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가출한 이유 문19-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③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 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4-2-3-2.	·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가출청소년 보호시 설 수	-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4-2-3-3. 가출시 서비스 이용 *	<p>가출 후 이용해 본 기관 및 서비스 문19-2. (위 문항 19번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가출했을 당시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이용해 본 적 없다, ② 청소년 쉼터 ③ 청소년 상담 기관, ④ 청소년수련관(센터) ⑤ 청소년 전화 1388, ⑥ 기타</p> <p>문19-3. 가출했을 당시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p>
4-3. 양육 및 보호 조치 에 대한 심사(제	4-3-1. 양육보호 조치에 대 한 서비스 적절성	4-3-1-1. 양육보 호 서비스에 대한 평 가 및 모니터링	·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연도별 차이	- 출처: 1) 김영지 외(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VI: 총괄보고서 2) 사회보장정보원 시설평가부(2017). 2019년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 pp.19-24
		4-3-1-2. 보호·양 육시설 예산	· 보호양육시설 예산	- 출처: 1) 보건복지부(2012). 2013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25조)			2) 보건복지부(2013).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3) 보건복지부(2014).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4) 보건복지부(2015).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5) 보건복지부(2016). 2017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6) 보건복지부(2017).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7) 보건복지부(2016).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8) 보건복지부(2017).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9) 보건복지부(2018).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서 10)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사무처(2014). 2015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11)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사무처(2015). 2016년도 복권기금운용계획 12)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사무처(2017). 기금사업활동 13) 기획재정부·복권위원회 사무처(2018). 기금사업활동
			4-3-1-3.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및 사후조치	·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평가점수(2016) - 출처: 보건복지부(2017.2.15).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평가점수(2013, 2016) - 출처: 1) 보건복지부(2014.3.6)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2) 보건복지부(2017.2.15)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 아동복지시설 영역별 등급분포(2013, 2016) - 출처: 1) 보건복지부(2014.3.6) 2013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발표 2) 보건복지부(2017.2.15) 인권침해 발생 시설 좋은 평가 못 받는다.

5) 장애, 기초보전 및 복지 (협약 6, 18(3), 23, 24, 26 및 27(1-3)조)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5. 장애, 기 초 보전 및 복지	5-1. 장애(제 23조)	5-1-1. 장애아동 및 청소년보 호 (지원)	5-1-1-1. 특수교 육현황 및 특수교사 수	·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추이 - 출처: 교육부(2017b).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5
			5-1-1-2. 장애아 동·청소년 통합교 육비율	· 연도별 특수교육대상 학생 배치 현황 - 출처: 교육부(2017b). 2017 특수교육연차보고서. p.16
			5-1-1-3. 장애 청 소년 진학을 및 취업 률 추이	· 장애 청소년 졸업 후 상황(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 출처: 교육부(2017b). 2017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29. p.100.
	5-2. 생존 및 발달 (제6조 2 항)	5-2-1. 사망률	5-2-1-1. 0세의 기대여명(평 균수명)	· 0세의 기대여명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2017). 생명표
			5-2-1-2. 영아아 동·청소년 사망률	· 연도별 영아사망률 - 출처: 통계청 e-나라지표(2017). 영아사망추이 - 원자료: 보건복지부, 사망원인통계조사 ·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 출처: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5-2-1-3. 사고 사망률	· 사고 사망률 - 출처: 1)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2) 통계청. 2016년 사망원인통계 · 연도별 사고 사망의 외인 - 출처: 1) 통계청(각 연도). 사망원인통계 2) 통계청. 2016년 사망원인통계																				
			5-2-2-1. 범죄 피해율	· 청소년의 범죄 피해율 - 출처: 통계청(각 연도). 범죄별/피해자 성별·연령별 범죄발생 건수 - 원자료: 대검찰청(각 연도). 범죄분석																				
		5-2-2. 안전에 대한 인식을	5-2-2-2. 안전에 대한 인식을*	· 지역사회 내 안전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식 문20. (학교급식을 하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우리학교급식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문21.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 <th>그런 편이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3)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body> </table>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3)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3)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5-3. 보건서비	5-3-1. 보건 서비	5-3-1-1. 아동, 청소년의 질	·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 출처: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7). 2016 국민건강통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스 (제24조)	스 인프라 구축 현황		병유형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 통계	p.242.
				·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 - 출처: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 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p.272.
				· 소아청소년 질환별(선형성심장질환, 아토피피부염, 폐렴 등) 유병률 - 출처: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 통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p.279.
		5-3-1-2. 보건교사 배치 현황		· 보건교사 배치현황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도 교육통계연보	
				· 연도별 보건교사 배치 추세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도 교육통계연보	
				· 지역사회 보건소 포함 신체, 정신건강관련 시설 비율 - 출처: 보건복지부(2016).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 pp.209-211. - 원자료: 의리기관정책과(2010-2014).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5)	
	5-3-2.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현황 및 이	5-3-2-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의		· 아동·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 출처: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 통계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서비스 이 용률	용률	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p.121.
				· 아동·청소년 연간 병의원 미치료율 - 출처: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 통계
				· 아동·청소년 연간 치과 미치료율 - 출처: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5). 2014 국민건강 통계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6). 2015 국민건강 통계 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2016 국민건강통계. p.123.
				· 아동·청소년 2주간 약국이용률 - 출처: 1)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1). 2010 국민건강 통계 2)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2011 국민건강 통계 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3). 2012 국민건강 통계 4)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4). 2013 국민건강 통계
		5-3-3. 약물남용 예방 프 그램 제 공 률	5-3-3-1. 흡연율	· 현재 흡연율 추이(최근 30일동안 1일 이상 흡연)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37.
			5-3-3-2. 음주율	· 현재 음주율 추이(최근 30일동안 1일 이상 음주)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103.
			5-3-3-3. 기타 약물 사용율	· 평생 약물 경험률(부탄가스, 본드같은 각성제 마약, 기침 및 신경안정제 오남용 등)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359.
			5-3-3-4. 약물남 용률	·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용 예방교육 경험률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75. · 연간 음주예방교육 경험률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135.
	5-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제24조)	5-4-1. 건강에 대 한 인식	5-4-1-1. 주관적 건강평가*	· 신체적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 문22.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5-4-2. 신체적 건 강		5-4-2-1. 운동 실천율*	· 건강관리를 위한 운동 여부 문23.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한 달에 1-2회 정도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5-4-2-2. 아침식사 결식률과 결식이유*	·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 문24. 학교에 가기 전 아침 식사를 합니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빵, 시리얼, 미숫가루 등도 식사에 포함됩니다</div>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p>·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p> <p>문26.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② 아니오</p> <hr/> <p>· 수면부족 이유</p> <p>문26-1. (위 문항의 ①번에 응답한 경우)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순위</td> <td style="width: 50px;"></td> <td style="text-align: center;">2순위</td> <td style="width: 50px;"></td> <td style="text-align: center;">3순위</td> <td style="width: 50px;"></td> </tr> </table> <p>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p> <hr/> <p>5-4-2-4. 비만율</p> <p>· 2010~2016년 비만도 현황 및 2010~2015년도 표준체중에 대한 상대체중 초중고등학생 비만율            - 출처: 교육부(2018.3.15). 보도자료: 2017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발표 p.9.</p>	1순위		2순위		3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5-4-3. 정신적 건강	5-4-3-1. 죽고 싶다는 생각과 그 이유*	<p>·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 여부와 이유 문27.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② 가끔 생각한다 ③ 자주 생각한다</p> <p>문27-1. (위 문항의 ②, ③에 응답한 경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② 가족 간의 갈등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p>																				
			5-4-3-2. 우울증*	<p>· 우울정도 문28.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십시오.</p> <table border="1"> <thead> <tr> <th>나는 ...</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 <th>그런 편이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body> </table>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5-4-3-3. 스트레스 인지율*	<p>· 스트레스 인지율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237.</p> <p>· 스트레스 인지율 문29.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p>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 <th>그런 편이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1)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2) 가정 불화</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3) 또래와의 관계</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4) 경제적인 어려움</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5) 외모·신체조건</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body> </table>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①	②	③	④	(2) 가정 불화	①	②	③	④	(3) 또래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4) 경제적인 어려움	①	②	③	④	(5) 외모·신체조건	①	②	③	④	(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①	②	③	④																																			
(2) 가정 불화	①	②	③	④																																			
(3) 또래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4) 경제적인 어려움	①	②	③	④																																			
(5) 외모·신체조건	①	②	③	④																																			
(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5-4-3-4. 행복도와 행복하지 않은 이유*	<p>· 현재 행복 정도 문30.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③ 행복한 편이다 ④ 매우 행복하다</p> <p>· 행복하지 않은 이유</p>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p>문30-1. (위 문항의 ①, ②번에 응답한 경우)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p> <p>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p>																														
			5-4-3-5. 삶의 만족도*	<p>문31.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p> <table border="1" data-bbox="682 674 1556 749"> <thead> <tr> <th colspan="3">삶의 만족도 낮음</th> <th colspan="4">← 중간 →</th> <th colspan="3">삶의 만족도 높음</th> </tr> <tr> <th>①</th> <th>②</th> <th>③</th> <th>④</th> <th>⑤</th> <th>⑥</th> <th>⑦</th> <th>⑧</th> <th>⑨</th> <th>⑩</th> </tr> </thead> <tbody> <tr> <td></td> </tr> </tbody> </table> <p>· 삶의 수준: 삶의 만족도(한국과 WHO의 HBSC와의 비교)          - 출처: 1) 김영지 외(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총괄보고서 p. 368          2) Bradshaw, J., B. Martorano, L. Natali, &amp; C. de Neubourg (2013). Children's Subjective Well-being in Rich Countries, Working Paper 2013-03.          3) Inchley, J., Currie, F., Young, T., Samdal, O., Torsheim, T., Augustson, L., Mathiso, F., Aleman-Diaz, A., Molcho, M., Weber, M., &amp; Barnekow, V. (2016). Growing up unequal. HBSC 2016 study(2013/2014 survey).</p>	삶의 만족도 낮음			← 중간 →				삶의 만족도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삶의 만족도 낮음			← 중간 →				삶의 만족도 높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및 아동보 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 항)	년 복지 예산 국가 간 비교	올 국제비교	2) 강신욱 외(2016).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여유진 외(2017). 2017년 빈곤통계연보한국보건사회연구원. p89, p92. 표 재구성.
				· 0세~17세 아동빈곤율 OECD 국제비교 - 출처: OECD(2016). Family Database: Child poverty.
		5-5-1-2. 아동·청 소년복지예산 국가간 비교		· OECD 국가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2011, 2013) - 출처: OECD(2017). StateExtracts. Social Expenditure, Family.
		5-5-2. 취약계층 아동·청소 년 지원수 준	5-5-2-1. 취약계 층아동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24세 미만) - 출처: 보건복지부(2018).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38. · 한부모가구 비율 - 출처: 통계청(2018). e-나라지표. 한부모 가구 비율. e-나라지표 웹 사이트 가구형태별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현황 - 출처: 1) 김영지 외(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총괄보고서. p. 384 2) 여성가족부(2017). 2017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3) 여성가족부(2018). 2018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p.15. -원자료: 보건복지부(각 연도). 보건복지통계연보
			5-5-2-2.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현황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처: 1)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li> <li>2)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li> <li>- 출처: 1)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li> <li>2)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li> <li>3) 보건복지부(2017.5.30). '어려운 아이들의 친구, 드림스타트 2017 보고대회' 개최 보도자료</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딤씨앗 통장 저축 현황</li> <li>-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182.</li> </ul>

6)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협약 28, 29, 30, 31조)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6.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6-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6-1-1. 교육기회 보장 정도	6-1-1-1. 학생 취학을	· 각급 학교의 연도별 취학을 추이 - 출처: 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b). 2016 간추린 교육통계 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 3)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간추린 교육통계. p.11.
			6-1-1-2. 학생 진학을	· 교육단계별 연도별 진학을 추이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간추린 교육통계. p.11.
			6-1-1-3. GDP대비 학생1인당 공교육비	· OECD와 한국의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교 - 출처: 1)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 OECD 교육지표 2016 2)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b). 2016 간추린 교육통계 3)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 간추린 교육통계. p.54 ·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비율 추이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6b). 2016 간추린 교육통계
			6-1-1-4. 교원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 교원 1인당 학생 수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2017.8.31.기준) · 학급당 학생 수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2017.8.31.기준)
		6-1-2. 학교 부적응률	6-1-2-1. 학업중단율	·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 - 출처: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7). 2017년 교육기본통계 주요내용(2017.8.31.기준)
			6-1-2-2.	· 자퇴 총동여부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6-2. 교육의 목 표 (제29조)	6-2-1. 학교 교육 목표에 대한 인식	6-2-1-1. 학교 교육목표에 대 한 인식 정도*	· 학교에 대한 생각 문35. 학교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 (O)표를 하주세요.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 <th>그런 편이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1)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2)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3)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4)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body> </table>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①	②	③	④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①	②	③	④																													
			· 공립사립 대안학교 25개교 현황 - 출처: 교육부(2017.4.11.). 교육부 보도자료. 2018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 ·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현황 - 출처: 교육부(2017.4.11.). 교육부 보도자료. 2018년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중고등학교 현황. ·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현황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 출처: 교육부(2014). 교육부 보도자료(11.10)
			6-2-2-2. 직업교육 참여 기회	· 교육부, 고용노동부(2016).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고교 단계 일학습병행제)보도 참고자료 · 교육부(2016). 교육부 보도자료(01.16)
	6-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6-3-1. 여가문화예술 활동 기반 시설 수	6-3-1-1. 전국 문화예술 기반 시설 수	·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7). 20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p.9 2017.1.1. 기준. · 전국 문화기반시설 지역별 현황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2017).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7.2.21)
			·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출처: e-나라지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현황 (2017년 12월 31일 기준.)	
			6-3-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 사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출처: e-나라지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현황 (2017년 12월 31일 기준.)
				· 청소년 시설 이용 여부 문36.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팅장 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 예술 공간(공연장, 전시장 등)	①	②	③	④	⑤
		6-3-2. 여가문화 예술활동 참여율	6-3-2-1. 여가문화 예술활동 참여도	· 청소년의 성별·지역별 체험활동 참여도 -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6).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6-3-2-2. 아동·청소년단체활동 참가율*	· 청소년단체 가입 여부 문37.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단체(예: 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과학우주청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 ① 가입하지 않았다 ②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③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6-3-2-3. 동아리활동 참가율*	· 동아리 활동여부 문38.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동호회 포함) 활동(학교 내외 동아리 모두 포함)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6-3-2-4.	· 평일 여가시간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p>문39.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 입니까?</p> <p>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p>
			6-3-2-5. 하루 평균 학습 시간 *	<p>· 정규 수업시간 제외한 하루 평균 공부 시간</p> <p>문40.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보통 몇 시간 공부합니까?</p> <p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text-align: center;">방과 후 모든 수업, 학원수업, 과외, 자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p> <p>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⑦ 6시간 이상</p>
		6-3-3. 여가문화 예술활동	6-3-3-1. 여가시설 이용만족 도*	<p>· 청소년 시설 및 문화공간 이용 만족도</p> <p>문36-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이용해 본 청소년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p>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만족도 및 권리보장 정도	6-3-3-2. 청소년 활동에 대한 가정·학 교지지 정도*	· 청소년 단체활동에 대한 지지수준 문41.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border="1"> <thead> <tr> <th>내용</th> <th>전혀 지지하지 않는다</th> <th>지지하지 않는 편이다</th> <th>지지하는 편이다</th> <th>매우 지지한다</th> </tr> </thead> <tbody> <tr> <td>(1) 가정</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r> <td>(2) 학교</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r> </tbody> </table>	내용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내용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7) 특별보호조치 (협약 22, 30, 32, 33, 35, 36, 37(b-d), 38-40)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7. 특별보호 조치	7-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	7-1-1-1.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 출처: 1) 김경준 외(2014a).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VI: 총괄보고서 2) 법무부(2015.1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3) 법무부(2016.5). 201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4) 법무부(2017.6). 2016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5) 법무부(2018.6). 2017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pp.90-101.									
			7-1-1-2. 탈북 난민 아동수	·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 출처: 통일부(2018).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2018.3월말 기준 ·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 출처: 통일부(2018). 북한이탈주민정책 통계자료. 2018.3월말 기준									
			7-1-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경험률	·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 당한 경험 문48.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내용</th> <th>한 번도 없음</th> <th>일 년에 1-2회 정도</th> <th>2-3개월에 1-2회 정도</th> <th>한 달에 1-2회 정도</th> <th>1주일에 1-2회 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td> <td>①</td> <td>②</td> <td>③</td> <td>④</td> <td>⑤</td> </tr> </tbody> </table>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내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 다문화가족 자녀를 차별하거나 무시한 사람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 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 출처: 교육부(2018.02). 2018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보도자료. p.20
			7-1-2-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 참가율	· 다문화학생 증가 추이 - 출처: 1) 교육부(2016.3).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2) 교육부(2017.1.13).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보도자료 3)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387.
	7-1-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교육실태 및 참가율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재학 상태 - 출처: 여성가족부(2015).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 탈북학생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 출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2017). 2017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
				· 탈북학생 학교 연도별 재학 현황 - 출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2017). 2017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
			7-1-2-2.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중도탈락률	·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중단자 비율 - 출처: 1)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2) 여성가족부(2015). 2015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3) 여성가족부(2016). 2016년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계획 4) 교육부(2017.1.13).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 보도자료
				·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 - 출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2017). 2017년 탈북학생 통계 현황 홈페이지 게시자료.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7-1-3.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보호 프로그램 참여율	7-1-3-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청소년보호프로그램 참가건수	· 레인보우스쿨 참가인원수 - 출처: 1) 무지개청소년센터(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2) 무지개청소년센터(2014). 2014년도 사업활동보고서 3) 무지개청소년센터(2015). 2015년도 사업활동보고서 4) 무지개청소년센터(2016). 2016년도 사업활동보고서 5) 무지개청소년센터(2017). 2017년도 사업활동보고서
			7-1-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심리정서 서비스	· 이주배경 청소년 심리정서 상담건수 - 출처: 1) 무지개청소년센터(2013). 이주배경청소년백서 2) 무지개청소년센터(2014). 2014년도 사업활동보고서 3) 무지개청소년센터(2015). 2015년도 사업활동보고서 4) 무지개청소년센터(2016). 2016년도 사업활동보고서 5) 무지개청소년센터(2017). 2017년도 사업활동보고서. p.62
				· 이주배경 청소년의 멘토링 참가율 - 출처: 한국장학재단 내부자료(2017.9.19)
	7-2. 소 년 사법 아동	7-2-1. 자유박탈 아동·청소년 수용률	7-2-1-1. 보호소년의 수용인원 수	·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수용기간 - 출처: 1)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2)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3) 법무연수원(2017). 2017 범죄백서. p.672.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7-2-1-2.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수	·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 출처: 1)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2)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3)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p.453-454.
			7-2-2-1. 법률조력인 배치 인원수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접수 및 지정 건수 현황 - 출처: 법무연수원(2017). 2017 범죄백서. p.224.
	7-2-2. 인권친화적인 환경 조성 비율		7-2-2-2. 소년원의 인권중심 교육체계	· 소년원의 배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절차 - 출처: 법무연수원(2017). 2017 범죄백서. p.663.
			7-2-2-3. 소년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건 수	· 교도소의 처우불복 신청 현황 - 출처: 1) 법무연수원(2015). 2015 범죄백서 2) 법무연수원(2017). 2017 범죄백서. p.411.
	7-2-3. 자유박탈 이외의 대안적 프로그램 참가 비율		7-2-3-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청소년 비율	·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비율 - 출처: 1)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2)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3) 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458. ·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 출처: 1)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2)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3)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462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7-2-3-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비율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 출처: 1) 대검찰청(2015). 검찰연감 2) 대검찰청(2015). 범죄분석 3) 대검찰청(2016). 범죄분석
			7-2-3-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비율	·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 출처: 1)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백서 2)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3)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4)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424
	7-3. 경제적 취약	7-3-1. 인권 침해적인 청소년근로조건 수준	7-3-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 월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 출처: 1) 여성가족부(2013b). 2013 청소년백서 2) 여성가족부(2014). 2014 청소년백서 3) 여성가족부(2015). 2015 청소년백서 4) 여성가족부(2016). 2016 청소년백서 5)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379.
			7-3-1-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XIV. - 원자료: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8.04.25.). 2017년 6월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p.4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7-3-3. 청소년 근로 시 폭력예방노력정도	7-3-3-1. 청소년근로관련법 준수실태 점검 대상업소수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 출처: 고용노동부(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고용노동백서	
			청소년 근로관련법 주요 법 위반 내용 - 출처: 고용노동부(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고용노동백서	
			청소년 고용사업장 법령위반 내역 및 건수 출처: 1)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6.8.24).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해야' 2)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7.2.20). '근로청소년대상 부당행위 꼼짝 마' 3)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7.8.30). '청소년알바, 한달을 일해도 근로계약서 꼭 쓰세요'	
	7-4. 성적 착취	7-4-1. 청소년 성폭력 예방 노력 정도	7-3-3-2. 청소년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청소년 고용사업장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률 - 출처: 여성가족부 정책뉴스(2018.3.08). "18년 겨울방학 청소년 아르바이트 합동 점검결과 발표"
			7-4-1-1.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양성인원수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 활동인원 수 -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내부자료(2018.6.17)
			7-4-1-2.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자수	연간 성교육 경험률 - 출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339. 신상공개 성범죄자수 - 출처: 여성가족부(2011-2017). 2011-2017 청소년백서 지역별 신상공개 성범죄자수 - 출처: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2018.6.17)
7-4-2. 아동·청소년의 성폭	7-4-2-1.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연령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7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6.		



대분류	중분류	지표 (소분류)	지표항목 (* 설문조사)	지표 조사문항 또는 통계자료원 (※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의 자료원 기준)
		7-4-4.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정도	7-4-4-1.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인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7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10.
			7-4-4-2. 성폭력 피해 및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 상담 실시 인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연령별 입소 현황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7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11
			7-4-4-3.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성폭력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2018.2.28). 2017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p.3.
			7-4-4-3.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성매매 대상 청소년 교육실시 인원 - 출처: 여성가족부(2017). 2017 청소년백서. p.290.
			7-4-4-3. 재활을 위한 심리정서치료 서비스 제공 인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7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p.14



## 부록 2.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설문지

### 1) 초등학교생용



####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사학교ID (기록하지 마세요)

--	--	--	--	--	--	--	--	--	--

# 1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 초등학교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기초 생활과 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아동,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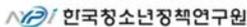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에 절대로 볼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주관기관



※ 담당자 : 최창욱 선임연구위원 044-415-2138  
유민상 부연구위원 044-415-2194

#### 수행기관



※ 담당자 : 박종경 과장  
※ 문의전화 : 080-674-1000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I. 참여활동

1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진학할 상급학교를(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은 학원을 선택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나요?

① 운영되고 있다

② 운영되지 않는다 → 3번 문항으로

2-1 학급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3 다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교의 규칙(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학생이 잘못된 일로 벌(징계)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3) 선생님은 학생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 규칙(학생생활규정 등)을 알려주고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다시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4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란, 아동정책에 대해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5

**우리 사회는 아동과 관련된 일을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듣고 아동이 참여할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6

**학교나 사회에서 아동의 참여(학교운영, 사회문제 등)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주세요.**

-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 ②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 ⑤ 아동을 성숙하지 못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이 없다

## II. 가정 및 학교 환경

**7**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벌, 무시하거나 욕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2)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 으로부터					
3)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4)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원 선생님 으로부터					
5) 신체적 벌	①	②	③	④	⑤
6) 무시하거나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8**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맞아 본 경험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성적인 희롱(농림)이나 추행(몸을 만짐)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7)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9**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농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카톡 등), 페이스북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10**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이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불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최근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나요?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12번 문항으로

**11-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 때문에(불화, 폭행 등)  
 ③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때문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III. 건강 및 복지**

**12** (학교 급식을 하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우리학교 급식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하나요?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13**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3)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4** 자신의 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 ③ 건강한 편이다
- ④ 매우 건강하다

**15**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나요?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나요?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 ② 한 달에 1-2회 정도
-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16 학교에 가기 전 아침밥을 먹나요?**

※ 빵, 시리얼, 미숫가루 등도 식사에 포함됩니다.

- ① 거의 먹지 않는 편이다
  - ② 보통 먹지 않는 편이다
  - ③ 보통 먹는 편이다
  - ④ 거의 매일 먹는 편이다
- } → 16-1번 문항으로
- } → 17번 문항으로

**16-1 아침밥을 먹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 ②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 ③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 ④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 ⑤ 가족 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17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간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 (예: 21시 30분, 22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인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 (예: 9시 0분, 22시 0분)

- ① 일어나는 시간      보통  시     분

---

-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간    보통  시     분

**18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 ① 예      → 19번 문항으로
- ② 아니요

**18-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학원, 과외
- ②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 ③ 게임(인터넷게임, 휴대전화게임 포함)
- ④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 ⑤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 ⑥ 드라마, 영화 보기, 음악 듣기 등
-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19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처럼 가치(솔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7)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20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공부하는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①	②	③	④
2) 가정에서 서로 싸우는 문제	①	②	③	④
3) 친구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4) 경제적인 어려움	①	②	③	④
5) 외모·신체조건	①	②	③	④
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21

전체적인 본인의 인생과 관련된 아래의 말들에 얼마나 찬성하는지 말씀해주세요.

※ 아래 질문들은 0~10점 사이에서 1개를 선택하여 대답해주세요.

0점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10점은 '매우 찬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 = 전혀 찬성하지 않음										10 = 매우 찬성함											
1)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2)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3)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4)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5) 나는 내 인생이 좋다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6) 나는 내 인생에 대해 행복감을 느낀다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22 현재 얼마나 행복하나요?**

-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③ 행복한 편이다
  - ④ 매우 행복하다
- 22-1 문항으로
- 23번 문항으로

**22-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공부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학업부담, 성적 등)
-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23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24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있는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없다
- ② 아버지
- ③ 어머니
- ④ 형제/자매
- ⑤ 담임선생님
- ⑥ 학교 상담선생님
- ⑦ 친구
- ⑧ 이웃/친척
-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28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해 보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텔 등)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시설 (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 예술 공간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	①	②	③	④	⑤

28-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나요?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만족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만족한다

29

**최근 1년 동안 아동·청소년 단체(예: 컵스카우트, 아람단, 해양소년단, 과학우주청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있나요?**

- ① 가입하지 않았다
- ②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았다
- ③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30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 활동(학교 내·외 동아리 모두 포함)을 한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 ② 없다





**36**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 받고 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①	②	③	④
4)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37**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동은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아동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38**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나요?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역사,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인·타인의 권리존중, 차별·편견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1회
  - ② 2회
  - ③ 3회
  - ④ 4회
  - ⑤ 5회 이상
- 38-1번 문항으로
- 
- ⑥ 교육 받은 적 없음 → 39번 문항으로

**38-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 정규교과시간(국어, 사회 등)
-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등)
- ④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38-2**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 ④ 매우 도움이 된다

39

**(차별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당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나는 주위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0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여러분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나요?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나는 주위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학생은 몇 년 몇 월에 태어났습니까?

				년			월
--	--	--	--	---	--	--	---

**배문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⑩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 다니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4**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①	⑧
2) 어머니	①	①	⑧

**배문5** 학생의 학업 성적(2018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6**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나요?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2) 중·고등학생용



### 통계법 제 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사학교ID(기록하지 마세요)

--	--	--	--	--	--	--	--	--	--

# 1 2018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 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국책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기초 생활과 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향후 아동, 청소년 관련 국가 정책 자료로 활용되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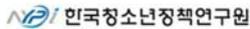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여러분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응답한 내용은 **학교나 선생님에게 절대로 볼 수 없으며**, 연구 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 이 설문지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주관기관



※ 담당자 : 최창욱 선임연구원 044-415-2138  
유민상 부연구원 044-415-2194

수행기관



※ 담당자 : 박종경 과장  
※ 문의전화 : 080-674-1000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비동의

※ 성별을 꼭 표시한 후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설문응답방법안내문

- 01 모든 질문에 대한 응답은 보기 번호(① ② ③ ④)에 동그라미(O)로 해주세요.  
표시한 응답을 바꾸고 싶을 때는 가위표(X)를 하고, 바꾼 보기에 다시 동그라미로 표시 해주세요.
- 02 보기 중 '기타'에 응답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괄호 안에 적어주세요.  
단, 다른 항목을 잘 살펴보고, 유사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하지 말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세요.
- 03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항목만 선택해야 합니다.  
단, 질문에 '모든' 또는 '3가지만' 등이 있는 문항(26-1, 34-1, 48-1, 배문2)만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6-1 평소 참이 무척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1      2순위 4      3순위 6

- |                       |                              |
|-----------------------|------------------------------|
| ① 야간 자율학습             | ② 학원, 과외                     |
|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 ④ 개인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
| ⑤ 체험, 문자 메시지          |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영화, 블로그 등) 이용 |
|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 04 선택한 항목 뒤에 '화살표'나 '음영이 있는 화살표'가 있는 문항에서는 그 화살표가 지시하는 대로 이동합니다.

**화살표 따라가기**

3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① 예 (화살표)      ② 아니오 (화살표)

3-1 학급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음영화살표 따라가기**

11 나는 학교가 종교재단의 학교입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

① 예 (음영화살표)      ② 아니오 (음영화살표)

11-1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합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기타 화살표 따라가기 1**

24 학교에 가기 전 아침 식사를 합니다? **화살표 따라가기!!**

복합 사항일 때(숫자부호 등)도 상세히 설명합니다.

① 하지 않는 편이다      ②-1번 문항으로  
③ 보통 먹는 편이다      ④-1번 문항으로  
⑤ 거의 매일 먹는 편이다

24-1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② 학교에 갈 때 기운 빠져서

**기타 화살표 따라가기 2**

① 공중도연      ② 청소년서양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관 등)

③ 체육시설(수영장, 농구장, 다목적체육관 등)

④ 문화예술 공간(공연장, 박물관, 영화관 등)

**해당 항목 응답시 화살표 따라가기!!**

36-1 (문항 36-1 응답한 내용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학생회, 학생자치회 등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직이 있습니까?

①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 05 질문아래에 설명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잘 읽고 응답하세요.

4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학교의 운영방침(학교예산, 교과서, 급식 등)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 ① 참여할 수 없다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④ 잘 모르겠다

## I. 참여활동

**1** 다음은 의사결정 시 부모님(보호자)의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진학할 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등)를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3)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 다음은 학생회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교사나 교장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3) 학교에서는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①	②	③
4) 학생회 의견을 교사, 교장이 존중해 준다	①	②	③

**3** 학급회의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① 운영되고 있다      ② 운영되지 않는다 → 4번 문항으로

**3-1** 학급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4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 대표 등이 함께 학교의 운영방침(학교예산, 교과서, 급식 등)을 의논하는 회의입니다.

- ① 참여할 수 없다
-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④ 잘 모르겠다

**5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학생생활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수업료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4)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5)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등)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6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청소년 참여기구'란,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를 말합니다.

-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7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부터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예 : 만 18세 등)
- ②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 ③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예 : 만 20세 등)
- ④ 잘 모르겠다



**12**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①	②	③	④
2)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①	②	③	④

**12-1** (위 문항에서 ③번 또는 ④번에 응답한 학생만 답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이나 참여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피해를 경험한 적이 없음  
 ② 경고 및 훈계  
 ③ 교내 상담 및 학부모상담  
 ④ 선도위원회 개최 징계처분  
 ⑤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13**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음은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입니다.

	아니다	그렇다
1)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유엔(UN)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관련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3)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 II. 가정 및 학교 환경

15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별(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부모님(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별	①	②	③	④	⑤
	2)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 으로부터	3) 신체적 별	①	②	③	④	⑤
	4)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원 선생님 으로부터	5) 신체적 별	①	②	③	④	⑤
	6) 모욕적인 말(욕설)	①	②	③	④	⑤

16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친구, 선·후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7)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17

최근 1년 동안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놀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항들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인터넷(게시판 댓글, 채팅·메신저(카톡 등), 페이스북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18

**최근 1년 동안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 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지난 1년 동안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하루 이상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가출한 적이 있다      ② 가출한 적이 없다 → 20번 문항으로

**19-1 가출을 한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출한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 ② 부모님(보호자)과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때문에
- ③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 때문에
-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⑤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19-2 가출했을 당시 어떤 기관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해 보았습니까?  
 주로 이용한 곳을 하나만 선택해주시시오.**

① 이용해 본 적 없다 → 20번 문항으로

- ② 청소년 센터
- ③ 청소년 상담기관
- ④ 청소년수련관(센터)
- ⑤ 청소년 전화 1388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19-3 가출했을 당시 이용한 기관의 서비스는 어떠했습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만족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만족한다



### III. 건강 및 복지

20

**(학교 급식을 하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우리학교 급식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21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 음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3) 우리 동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음식물은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2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 ③ 건강한 편이다
- ④ 매우 건강하다

23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 ② 한 달에 1-2회 정도
-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24 학교에 가기 전 아침 식사를 합니까?**

※ 빵, 시리얼, 미숫가루 등도 식사에 포함됩니다.

① 거의 먹지 않는 편이다  
 ② 보통 먹지 않는 편이다  
 ③ 보통 먹는 편이다  
 ④ 거의 매일 먹는 편이다

→ 24-1번 문항으로  
 → 25번 문항으로

**24-1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②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③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④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⑤ 가족 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25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시간은 모두 24시간 기준으로 기록해 주세요 (예: 22시 30분, 23시 0분 등)  
 ※ 9시 등 정각인 경우 '분'은 0으로 표시하세요 (예: 9시 0분, 22시 0분)

① 일어나는 시간 보통  시  분

② 잠자리에 드는 시간 보통  시  분

**26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예 → 27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26-1 평소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야간 자율학습  
 ② 학원, 과외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⑤ 채팅(카톡 등), 문자 메시지  
 ⑥ 인터넷 사이트(동영상, 만화, 블로그 등) 이용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⑧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27**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28번 문항으로

- ② 가끔 생각한다
- ③ 자주 생각한다

**27-1**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 ② 가족 간의 갈등
-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 ④ 경제적인 어려움
- 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 ⑥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28**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최근 1년 동안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7)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29**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①	②	③	④
2) 가정 불화	①	②	③	④
3) 또래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4) 경제적인 어려움	①	②	③	④
5) 외모·신체조건	①	②	③	④
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30 전체적인 본인의 인생과 관련된 아래의 말들에 얼마나 찬성하는지 말씀해주세요.**

※ 아래 질문들은 0~10점 사이에서 1개를 선택하여 대답해주세요.  
0점은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10점은 '매우 찬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 = 전혀 찬성하지 않음										10 = 매우 찬성함											
1) 나는 내 인생을 즐기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2) 내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3) 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4)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난다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5) 나는 내 인생이 좋다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6) 나는 내 인생에 대해 행복감을 느낀다	0	1	2	3	4	5	6	7	8	9	10	0	1	2	3	4	5	6	7	8	9	10

**31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③ 행복한 편이다
  - ④ 매우 행복하다
- 32번 문항으로

**31-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때문에
-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 ⑦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32 다음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를 0점, 가장 높은 경우를 10점이라고 할 때,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33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없다
- ② 아버지
- ③ 어머니
- ④ 형제/자매
- ⑤ 담임선생님
- ⑥ 학교 상담선생님
- ⑦ 친구
- ⑧ 이웃/친척
- ⑨ 청소년 상담 관련기관 선생님(예: 청소년전화 1388)
-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_\_\_\_\_)

**IV. 교육 및 여가·문화**

**34 최근 1년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35번 문항으로

**34-1** 학교를 그만두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 해당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 괴롭힘을 당해서               |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
|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
| ⑤ 공부가 하기 싫어서             | ⑥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
| ⑦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 ⑧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
|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

**35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2)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36 학교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	①	②	③	④

37

**최근 1년 동안 다음의 여가·문화시설 및 공간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청소년수련관은 지역에 따라 '청소년회관', '청소년문화센터', '유스센터'라고도 합니다.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공공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	①	②	③	④	⑤
3) 체육시설 (수영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 예술 공간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등)	①	②	③	④	⑤

37-1

(위 4가지 유형의 시설 중 하나라도 이용해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십시오.)  
 이용해 본 시설 및 공간에 얼마나 만족했습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③ 만족하는 편이다
- ④ 매우 만족한다

38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단체(예: 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과학우주청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가입하지 않았다
- ②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았다
- ③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39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 활동(학교 내·외 동아리, 동호회 모두 포함)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40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자유)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 ① 1시간 미만
-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⑥ 5시간 이상

41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

※ 방과 후 모든 수업, 학원수업, 과외, 자습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① 1시간 미만
-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⑦ 6시간 이상

42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VI. 인권 일반**

**45**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 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46**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①	②	③	④
4)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5)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	①	②	③	④

**47**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48**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습니까?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권교육은 인권의 역사,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인·타인의 권리존중, 차별·편견 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1회
- ② 2회
- ③ 3회
- ④ 4회
- ⑤ 5회 이상

→ 48-1번 문항으로

⑥ 교육 받은 적 없음 → 49번 문항으로

**48-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교 정규교과시간(국어, 사회 등)
-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 ③ 학교 밖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청소년단체, 사회단체 등)
- ④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48-2**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 ④ 매우 도움이 된다

49

**(차별 당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차별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나는 주위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머니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이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0

**(차별한 경험) 최근 1년 동안 학생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차별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동그라미(O)표를 해주세요.

※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나는 주위사람들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2~3개월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머니 아빠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이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학생은 몇 년 몇 월에 태어났습니까?

				년							월

**배문2**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단, 결혼해서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_\_\_\_\_ )                      ⑩ 없음

**배문3**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십시오.

※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부모님 안 계심	학교 안 다니심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4** 부모님께서는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 안 계심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①	②
2) 어머니	①	①	②

**배문5** 학생의 학업 성적(2018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6**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 산다			보통 수준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부록 3. 전문가 의견조사지



####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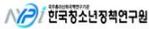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본 전문가의 견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올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연구의 일환으로 전문가의 견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한 차례만 진행될 예정이며, 메일에 대한 회신은 **10월 15일(월) 정오(12:00)**까지 설문과일을 작성하시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과 응답내용은 전적으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최창욱, 황세영, 유민상 박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의: 044-415-2194 / e-mail: [msyoo@nypi.re.kr](mailto:msyoo@nypi.re.kr)

## 이동 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과제 모니터링

문1. 지난 1년 간 다음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정책들이 잘 이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러한 정책과제들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행과제	이행상황					중요도				
	전혀 진행되지 않음	거의 진행되지 않음	보통	잘 진행 되는 편	매우 잘 진행되고 있음	전혀 중요 하지 않음	거의 중요 하지 않음	보통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청원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 선택의정서 비준 검토 (아동청소년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직접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인권교육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한 허브 구축 (인권교육인 신림)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읍면동 단위의 청소년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및 보급 (솔뿌리 지역참여기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실효적 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아동학대 신고 및 현장조사 시 대응 체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입양 및 과양 관련 체계적 DB구축과 사후관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장애 아동·청소년 통합교육을 위한 기반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및 건강증진 방안 수립·시행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청소년상담체계 접근성 제고 및 이용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직업계고 직업교육 성공사례 DB 구축과 멘토 제도 도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난민 및 망명희망자 자녀에 대한 대안양육과 예비학교 확대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연소자 근로조건 위반 단속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점검활동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의 방해요인

문2. 다음은 선행연구나 토론회 등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의 방해 요인으로 지적된 내용들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의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아동청소년 인권개선의 방해요인		각 요인들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				
		전혀 동의하지 않음	거의 동의하지 않음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정부 차원	아동인권 담당 중앙부처의 분절성과 낮은 책무성	①	②	③	④	⑤
	아동인권 정책에 대한 예산지원 미비	①	②	③	④	⑤
	아동인권도니터링 체계 구축 및 시행 미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미비	①	②	③	④	⑤
법· 제도적 차원	아동인권 관련 법 개정 및 제정 노력 미비 사법절차에서 아동인권 보호장치 미비	①	②	③	④	⑤
	법조인들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미비 법조인들의 낮은 인권감수성 및 아동권리의식	①	②	③	④	⑤
학교 차원	학교 내 아동의 참여권 보장 장치 미비 학교 내 반인권적 학칙 규정	①	②	③	④	⑤
	교사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미비 교사의 낮은 인권감수성 및 아동권리의식	①	②	③	④	⑤
시민 사회 차원	아동인권 관련 단체의 수 부족 아동인권 관련 활동가의 전문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아동인권 관련 단체의 옹호활동 부족 아동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부족	①	②	③	④	⑤
학술 연구 차원	아동인권 관련 연구자의 수 부족 아동인권 관련 연구자의 전문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아동인권 관련 연구와 현실과의 괴리 아동인권 관련 조사 데이터의 양적·질적 한계	①	②	③	④	⑤
사회 문화 차원	가부장적 유교 문화 방송매체의 낮은 인권감수성 및 아동권리의식	①	②	③	④	⑤
	인터넷매체에서의 아동인권침해 콘텐츠 확산 아동인권에 대한 일반인 대상 교육 및 홍보 부족	①	②	③	④	⑤
가정 차원	폭력적 훈육 방식에 대한 높은 수용성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가족문화	①	②	③	④	⑤
	부모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인지 미비 부모의 낮은 인권감수성 및 아동권리의식	①	②	③	④	⑤
개인 차원	아동 자신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인지 미비 포래와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 부족	①	②	③	④	⑤
	인권침해 시 발언할 수 있는 기회·창구 부족 인권침해 시 구제 받을 수 있는 창구 미인지	①	②	③	④	⑤

※ 위에서 지적된 내용 이외에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에 대한 평가

문3.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전반적인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매우 낮음
- ② 낮은 편
- ③ 보통
- ④ 높은 편
- ⑤ 매우 높음

문4. 지난 10년 간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수준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①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
- ② 거의 개선되지 않았음
- ③ 유지되었음
- ④ 약간 개선되었음
- ⑤ 매우 개선되었음

※ 지난 10년 간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시거나, 혹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종합의견

문5.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한 **귀하의 전문영역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인권 상황에서의 주요한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학교·가정·사회문화 차원의)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해주시기 감사합니다. §



## ABSTRACT

The present study is a second-year assignment of the third study on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which aims to comprehend the human rights situation and current state of children and youth through a systematic inspection of the fulfillment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to diagnose the degree of national and social efforts made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nd to ultimately derive projects for improving human rights.

The Korean government has ratifie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must submit a national report every five years to the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ddition, there is an obligation to apply recommendations and ultimately strive to enhance human rights practically for children and youth. This study produces basic materials regarding the current state and policy efforts for Korean children and youth and contributes to the compilation of the national report in fulfillment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order to systematically monitor the current state of human rights for children and youth, the "Child and Youth Rights Indicators" and survey tool were developed and implemented on about 9,000 subjects ranging from fourth-grade elementary students to third-grade high school student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e of children and youth's rights, of which the results have been made public (Nationally

Approved Statistics, Number 402001). Principal administrative statistics as well as statistical data from other fields were used to supplement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resent state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s rights.

In this study, investigation analysis was implemented after confirming the children and youth rights indicators and survey tool. An analysis was conducted regarding the Korean research trend in relation to human rights as well as social discussion and the system's present state following the submission of the United Kingdom's fifth national report o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addition, 19 policy initiatives were proposed by comprehensively applying factors such as investigating the current state, analyzing the fifth and sixth alternative reports(NGO reports), monitoring existing policy projects, and examining expert opinions.

Keywords: Child and youth rights, child and youth rights index, Current state of Korean children and youth's rights,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Monitoring

## 2018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 기관고유과제

- 18-R01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 이경상·이창호·김민
- 18-R02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김희진·백혜정·김은정
- 18-R02-1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희진·백혜정
- 18-R03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 최정원·강경균·강소영·김혁
- 18-R04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황여정·김승경
- 18-R05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 김지경·이윤주
- 18-R06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6-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임지연·유설희
- 18-R07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 임희진·문호영·정정호
- 18-R07-1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문호영
- 18-R08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김지연·이유진·정소연·박선영
- 18-R08-1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운영실태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 기초분석 보고서 / 김지연·정소연
- 18-R09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 I / 정은주·김정숙
- 18-R10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 최용환·성윤숙·박상현
- 18-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VI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 / 오해섭·최인재·염유식
- 18-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이민희·김진호
- 18-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기초분석보고서 / 최창욱·황세영·유민상
- 18-R13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IX : 사업보고서 / 하형석·이종원·정은진·김성은·한지형
- 18-R14 다문화 청소년 중단연구2018 : 총괄보고서 / 양계민·황진구·연보라·정윤미
- 18-R14-1 다문화 청소년 중단연구2018 - 신규패널설계보고서 / 양계민

##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1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V : IEA ICCS 2016 - 총괄보고서 / 장근영 · 성은모 · 모상현 · 진성희 · 최효선 · 김균희 (자체번호 18-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2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V : IEA ICCS 2016 - ICCS 결과 보고서 / 장근영 (자체번호 18-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7-03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V : IEA ICCS 2016 - 사회참여역량 분석 / 김태준 · 홍영란 · 김미란 · 김홍민 (자체번호 18-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모델 개발연구Ⅰ :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 윤철경 · 서정아 · 유성렬 · 이동훈 (자체번호 18-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8-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자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 조아미 · 임정아 · 이지연 · 김남은 (자체번호 18-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김기현 · 배상률 · 성재민 (자체번호 18-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8-59-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 채창균 · 양정승 · 김민경 · 송선혜 (자체번호 18-R17-1)

## 수시과제

- 18-R18 소외계층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김정숙 · 연보라
- 18-R19 청소년우대정책 현황 및 해외사례 분석 연구 / 김경준 · 모상현 · 송태진
- 18-R20 경찰의 가정 밖 청소년 보호조치 개선 방안 :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지연 · 김희진
- 18-R21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이경상 · 김승혜
- 18-R22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유민상
- 18-R23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최창욱 · 김기현 · 김인규
- 18-R24 청소년 통일인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이창호
- 18-R25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 이창호

## 수 탁 과 제

- 18-R26 2017년 학교 내 대안교실 컨설팅 성과분석 / 김이성·오해섭·윤철경·정윤미
- 18-R27 2018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모상현·정은주·이유진
- 18-R2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보호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지표 개발 연구 / 서정아·박선영
- 18-R29 제3차청소년보호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연·백혜정
- 18-R30 2018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8-R31 성남시청소년재단 제3차중장기 발전계획(2019~2023) 수립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1-1 2018 성남시 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성은모·남화성·이선근·정은옥·장미희·김미영
- 18-R32 이주배경 청소년의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 중국 출신 청소년을 중심으로 / 배상률·이경상·임지연
- 18-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8 / 김희진·황진구·임희진·정윤미·정선욱
- 18-R34 2018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개편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 / 최창욱·장근영
- 18-R35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5-1 2018년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 조사 - 통계결과표 / 김지경·정은진·연보라·정윤미·유설희
- 18-R36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심사원 직무분석 및 운용 개선방안 연구 / 김형주·김정주
- 18-R37 내일이룸학교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 김기현·김태성
- 18-R38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8-R38-1 직업계고 창업교육 운영 가이드북 / 강경균
- 18-R39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39-1 대구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 - 요약본 / 최용환·박윤수·김기영
- 18-R40 2018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양계민
- 18-R41 지역사회 협력망 운영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 모델 개발연구 / 이윤주·오해섭·백승주·성지은·강지원·탁현우
- 18-R4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1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교육과정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2-2 청소년의회 운영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의회 가이드북 / 이윤주·오해섭·유설희
- 18-R43 이동·청소년의 걱정 등급 게임물 이용을 위한 기초연구 / 배상률
- 18-R44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 김기현·이윤주·최정원·유설희
- 18-R45 입법 상 연령 기준과 정책 연계성을 확보를 위한 연구 / 김기현·하형석·유민상·조성호
- 18-R46 금천구 청년정책 연구 / 이윤주·문호영

- 18-R47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위기청소년 지원 종합대책 연구 / 김지연
- 18-R48 미래인개발과 교육혁신 / 장근영
- 18-R49 소년원생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지원 방안 연구II - 소년원생의 사회정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평가 / 김정숙·황여정
- 18-R50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 연구(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 18-R50-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 꿈지락(중등용) / 황세영·한지형
- 18-R5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인증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 연구 / 김성기·정제영
- 18-R52 2018년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사업 모니터링 I :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 및 기관 모니터링 결과 / 김소영·오해섭·윤철경·임하린·윤혜지
- 18-R53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실태조사 연구 / 박지영·서보람·윤철경·양수빈·이지혜
- 18-R54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연구 / 이종태·박상진·하태욱

##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8-S01 청소년 범죄의 이해와 대응방안(4/4)
- 18-S02 2018 제1차 WARDY 세미나 - Korean American Identity & the LA Riots(1/22)
- 18-S03 2018 제2차 WARDY 세미나 - 재외동포청소년 한민족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어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1/23)
- 18-S04 제1차 NYPI Lunch Bag Seminar - National Youth policy as practiced in helping nigerian youth to move forward(1/29)
- 18-S05 제3차 WARDY 세미나 - 인터넷시대의 부모와 자녀관계 및 건강실태(3/5)
- 18-S06 제2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개념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 (2/28)
- 18-S07 제3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사회참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3/16)
- 18-S08 제4회 청소년정책포럼 : 저출산 시대,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청소년정책의 과제(4/20)
- 18-S09 제2차 NYPI Lunch Bag Seminar - Digital disturbances in school : Experiences with restrictions on students use of mobile phones(5/4)
- 18-S10 대안학교(특성화 중·고 및 각종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원 연수(5/18)
- 18-S11 제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토크콘서트(5/25)
- 18-S12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지표(안)(5/23)
- 18-S13 Inclusive Korea 2018 국가 미래비전 설정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특별세션]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5/24)
- 18-S14 2018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학교/지원기관 모니터링 워크숍(6/5)
- 18-S15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을 위한 1차 워크숍(6/1)
- 18-S16 201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 공교육 내 대안교육의 정체성 및 정책 발전 방향(6/15)

- 18-S17 제6회 청소년정책포럼 : 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  
'기업-청소년NPO-학교-정부의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 (6/15)
- 18-S18 제4차 WARDY 세미나 - 몽골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투표의향(6/18)
- 18-S19 2018년 시도교육청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업무 담당자 워크숍(7/5~6)
- 18-S20 학교폭력예방 어울림 교과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집필진 워크숍(6/29)
- 18-S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29주년 세미나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지원 어떻게 할요?  
(7/18)
- 18-S22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8/3)
- 18-S23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초등)(8/1)
- 18-S24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신규 담당자 연수(중등)(8/2)
- 18-S25 제7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통일의식 함양 및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8/17)
- 18-S26 제8회 청소년정책포럼 : 해외의 소년 범죄 대응 전략과 시사점(8/24)
- 18-S27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업무담당자 워크숍(9/7)
- 18-S28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초등)(9/28~29)
- 18-S29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학교 워크숍(중등)(10/5~6)
- 18-S30 2018년 교육과정기반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활용방안 교사연수(10/1~2)
- 18-S31 2018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워크숍(10/2)
- 18-S32 제9회 청소년정책포럼 :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활동정책의 길찾기(9/28)
- 18-S33 제10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수련시설 유형개편 및 기능개선 방향(11/16)
- 18-S34 제1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8 포용사회 조성을 위한 진로교육활성화 포럼」 (11/19)
- 18-S35 제12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 한국사회 다문화청소년정책의 방향과 모색(12/12)
- 18-S36 2018 학업중단예방 국제포럼 - 학업중단예방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 학교 안과 밖의  
소통과 연계(11/26)
- 18-S37 지역사회 협력망을 통한 청소년 성장지원모델 개발(12/10)
- 18-S38 국회 정책 토론회 :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 방안(12/18)

##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1호(통권 제8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8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3호(통권 제9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9권 제4호(통권 제91호)

##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5호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사례조사 및 특성화 요인 분석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6호 : 20대 청년들의 사회활동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7호 :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8호 :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99호 :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0호 : 청소년보호정책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1호 :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제고를 통한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2호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간 효율적 화해·분쟁조정을 위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3호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보수체계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4호 : 위기청소년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도화 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5호 : 청소년의 통일인식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조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6호 : 단 1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포용적 교육사회를 실현하려면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7호 : 청소년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국내외 정책 현황 및 시사점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8호 : 미래인재 개발 전략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지원 방안 연구 III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09호 : 아동·청소년·가족 보호 통합게이트웨이 구축·운영 모형 개발 연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0호 : 청소년의 장래 및 유학의식에 관한 조사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1호 :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방안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2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2018: 추진 현황 및 정책 기여
- 
- NYPI Bluenote 통계 39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 IV
- NYPI Bluenote 통계 40호 : 다문화청소년 발달 추이 분석-일반청소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NYPI Bluenote 통계 41호 : 2017년 청년 사회·경제실태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2호 : 2017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3호 : 소년범죄자의 재범 실태 조사
- NYPI Bluenote 통계 44호 : 제2차 국제 시민성 및 시민의식연구(ICCS 2016) 결과
- NYPI Bluenote 통계 45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유지조사

연구보고 18-R12

---

##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

**인 쇄** 2018년 12월 23일

**발 행** 2018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44)863-0933 대표 유채란

**그래픽** (주)DesignOCTO 대표 유나영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206-3 94330

979-11-5654-205-6 (세트)



연구보고 18-R12

##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8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9 791156 542063 94330  
ISBN 979-11-5654-206-3  
ISBN 979-11-5654-205-6 (세트)